연구보고 17-R15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RESEARCH REPORT 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책임연구원 **김영지**

공동연구원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7-R1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 책임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민희(평택대학교·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청소년교육과 교수)
▸ 연구보조원 : 이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김재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인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1991년 한국정부는 만 18세 미만의 전 세계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준을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진전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인권환경 진전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과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협약에 따른 법·제도·정책적 개선 노력 점검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협약 이행 점검 결과, 정부는 입양허가제 도입으로 그 동안 유보해왔던 협약 21조a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위원회와 아동·청소년인권과 설치로 아동권리 모니터링 전담기구가 마련되었고, 아동학대 및 폭력대책, 영육아 보육정책, 저소득·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보편적 출생등록제, 공교육 정상화, 문화·여가 확대, 취약집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 증대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들은 여러 행복하지 못한 신호들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정도는 작은 수치이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고 아동·청소년 당사자들과 민간단체에서도 유엔 심의절차를 앞두고 지난 5년간의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점검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많이 활용되어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 장 **송 병 국**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 정도를 진단하여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1차년도 과제이다. 제3기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협약에 따른 법・제도・정책적 개선 노력 점검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 노력정도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5년마다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진전상황 및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로 본 연구진과 국가보고서 작업집단, 정부부처가 협업을 통해 협약 이행 점검과 성과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물은 총 3권으로 구성된다. 기본보고서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협약 이행점검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심화분석 보고서'는 인권데이터의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권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을 살펴보았다. '통계집'은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한 것이다.

주제어 :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인권지표, 인권실태,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연 구 요 약

- 이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정도를 진단하여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1차년도 과제임. 제3기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협약에 따른 법·제도·정책적 개선 노력 점검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제1기(2006~2010) :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Ⅰ~Ⅴ)
  제2기(2011~2016)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Ⅰ~Ⅵ)

- 이 과정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에 기반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1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0개)', '폭력 및 학대(9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3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2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19개)', '특별보호조치(31개)' 등 7개 대분류 영역에 총 135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에서 행정통계 및 타분야 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는 83개, 인권실태 설문조사로 결과를 생산하는 지표는 52개임.

- 연구결과물은 총 3권으로, 기본보고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제언을 담고 있으며, 별책 2권 중 '심화분석보고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 논문으로 인권데이터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통계집'에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함.

○ 마지막으로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및 협약에 따른 이행과제 등을 검토하여 7개 대분류 영역별로 1~3개씩 총 14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안함.

1. 연구내용

○ 인권지표 결과 생산 : 설문조사 및 행정통계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종합실태 파악
○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평가를 통해 협약 이행과제 시사점 도출
○ 실태조사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 분석 : 심화분석보고서 발간

2.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은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두 개의 중분류, 5개 지표(소분류), 총 11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인권 인프라와 관련하여 2017년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학교 밖 및 가정 밖 청소년과 근로청소년 보호, 부모교육 활성화, 한부모가정 지원 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자치단체 수준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관련 조례가 제정됨.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2016년 기준 2.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10.7%, 6.1%, 14.1%로 낮으며, 협약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45.0%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남.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는 가정(94.8%), 지역사회(90.9%), 학교(89.3%), 사이버 공간(80.2%), 우리나라 전체(77.3%) 순으로 나타났으며,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률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인권의식과 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87.6%)과 학생자치조직 의의(81.9%)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95.6%), 경제적 이유로 차별금지(96.5%), 양성평등(95.5%),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권(93.5%) 등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을 보여줌. 인권교육 경험률은 66.7%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인권교육 경험자의 74.5%가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1년에 1회 이상 차별 가해 경험은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14.2%로 가장 많았고, 학업성적(12.7%), 성별(11.3%), 연령(11.0%), 장애(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차별 피해 경험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28.3%), 성별(25.0%), 외모 및 신체조건(23.0%), 지역(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심각한 차별상황(한 달에 1회 이상)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4년 이후 차별 가해 경험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차별 피해 경험은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 중분류의 20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가정에서의 참여정도는 진로(직업)(94.1%), 상급학교 진학(93.1%), 집안 중대사(90.7%), 공부시간과 방법(89.2%) 등의 순으로 자녀 의견 존중도가 높게 나타남.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정도는 자치권 향유 수준 31.5%, 학생회 의견존중도 38.4%, 예산·장소·시간 보장 39.6%, 학생회 임원 후보 성적 제한 없음 35.4% 등으로 낮은 수준임.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의견표명권은 17.3%로 낮았고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율은 7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0.8%로 전년대비 인지도가 낮아졌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4.9%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참여기구 활동 경험률은 2.1%였음. 선거연령 하향화 의견은 47.3%로 전년도(24.7%)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60.7%로 전년도(54.2%) 대비 증가함. 참여의 장애요인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7.9%), 시간 부족(26.9%), 활동정보 부족(18.6%),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12.3%) 순으로 나타남. 학교 종교행사 의무참여율은 62.7%로 전년도 (73.3%)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사회문제 관련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17.2%)이 전년도(7.3%)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남.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용모(53.3%)와 복장(50.1%) 검사는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소지품(19.4%) 검사 경험은 소폭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자 이름(11.6%), 징계사항(25.0%), 시험성적(21.6%) 공개실태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인터넷 매체가 청소년 생활·문화의 주요영역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의 인권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학생들에게 학교규칙 공지(87.0%),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책 홍보자료(17.0%),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15.7%), 권리상담 및 구제기관 정보(26.9%)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임.

○ 「폭력과 학대」 영역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두 개의 중분류에 총 9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먼저, 폭력 영역에서는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 경험을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31.9%에 해당되었음. 이를 학교유형으로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은 26.6%, 중학생은 37.4%, 고등학생은 30.9%로 나타남. 학교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피해는 가정보다는 덜해 전체의 20.6%로 조사되었고, 초등학생의 피해는 7.5%, 중학생은 25.9%, 고등학생은 26.0%로 나타남. 한편, 신체적 폭력에 해당되는 체벌은 전체 응답 청소년 중 가정에서 26.2%, 학교에서는 15.6%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가정에서 체벌의 피해는 초등학생이 가정에서 가장 심해 35.6%, 이어서 중학생 30.3%, 고등학생이 16.1%로 나타남. 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이 7.6%, 중학생이 19.8%, 고등학생이 18.1%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폭력에 비해 학생 간의 폭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청소년 중 15.2%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폭행이나 구타로는 6.9%의 피해 경험을 보이고 있음. 한편, 전체 응답자의 5.7%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으로 사생활이 노출되는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6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총 29,674건으로 2015년도 19,21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32%(8,288건)였으나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68%(17,590건)이었음. 학대피해 아동 중 80.5%는 친부모 및 계부모 등으로부터, 4.3%는 친인척, 11.6%는 아동보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았으며, 학대유형 중 특히 중복학대가 48%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19.2%), 방임(15.6%), 신체학대(14.5%) 등의 순이었음. 실태조사결과 연 1회 이상 경험 기준으로 밤늦게까지 부모님 없이 있었던 경험률은 60.8%,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에 경험은 9.5%, 질병발생 시 부모님이 내버려 둔 경험은 5.2%, 결식을 해도 부모님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6%로 나타났으며, 학교 결석 시 가정에서 무관심했다는 응답은 1.2%로 매우 낮았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또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방임정도가 더 높았음. 학대피해 아동 보호건수는 2016년에 18,700명으로 2015년의 11,71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전년대비 3개소가 증가한 59개소로 나타났음. 아동학대 사례증가 및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인력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 전문 인력의 배치가 시급함.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관련하여 먼저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13-24세) 대화시간 짧았으며,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2016년 현재 전체 보육시설은 2013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며,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역시 2013년의 4.9명에서 2016년 기준 4.5명으로 감소하였음.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2016년 기준으로 55.8%로 나타나 2013년에 60.2%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의 이용률을 보였으나 미취학아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전년대비 6개소가 추가 설치되었으며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이용도를 보였음. 이러한 방과후보호 및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외 입양 모두 상당수 감소하였으며(2010년 국내: 1,462명, 국외: 1,013명/ 2016년 국내: 546명, 국외: 334명), 최근 사회조사결과에서도 여전히 입양을 선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음. 대안양육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 아동 수는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수가 다소 증가하였음(2015년: 2,866명→2016년: 3,148명). 또한 전년대비 시설보호아동 수가 증가하고 가정위탁이 감소하였으며, 현재 가정위탁의 92.5%가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 등 혈연관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7%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부모와의 문제(60.9%), 학업문제(14.3%)가 주요 가출 이유로 나타났음. 청소년쉼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이후 119개소로 유지되었음. 아동복지시설의 2016년 평가결과는 이전 결과와 유사한 수준(89.6점)를 보였으나, 인적자원관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는 중분류로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특수교육 현황과 특수교사 수, 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였음. 특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일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장애청소년의 특수학교 졸업 후 진학률과 취업률은 감소한 반면, 무직률의 경우에는 증가추세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0세의 기대여명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영아의 사망률은 감소하였음. 연도별 사고사망률은 5~9세, 15~19세, 20~24세, 25~29세의 경우 2014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0세와 1~4세, 10~14세는 증가함. 연도별 사고사망의 외인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운수사고가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15세 이후부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2015년에 총 94,650건이었으며, 전년대비 4,082건 증가하였음. 거주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소아청소년의 질환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아토피 피부염과 폐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보건교사는 전체 학교수 중 64.3%에 배치되어 있으며, 중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보건소, 병·의원 등의 건강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내의 보건소, 보건지소, 병·의원시설 중 의원, 특수병원 중 한센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시설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과 관련하여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87.7%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건강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55.7%였으나, 여자청소년들의 운동실천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음. 응답자의 73.1%는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6분으로 이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조사대상 청소년의 33.4%가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학업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각각 40.1%, 21.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외로운 적이 있다'는 항목의 긍정적 응답률은 33.4%, '불안한 적이 있다'는 28.3%,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32.3%로 나타나 응답자의 1/3정도가 우울증 관련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학업문제가 스트레스인 경우는 64.9%,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은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아동·청소년들의 83.9%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민거리의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이 10%에 가깝게 나타났음. 삶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7점으로 나타났으며(0점~10점), 41개 국가가 조사에 포함된 WHO의 '학령기 아동 건강행태연구 '(HBSC)와 비교한 결과, 비교대상 11세, 13세, 15세의 한국 아동·청소년, 특히 여자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자아존중감의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70%가 넘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음. 특히 여자청소년,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그리고 학교급이 높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대부분의 정신건강 관련 항목(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 우울증, 스트레스, 행복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들에서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임. 우리나라의 절대아동빈곤율은 2015년 기준 5%(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의 시장소득

기준의 상대아동빈곤율 역시 8.7% 정도여서 OECD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 및 가족관련 복지예산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GDP대비 1.3%수준이어서 영국의 4%, 프랑스 3.7%, 헝가리 3.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음. 24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33.2%를 차지했으며, 한부모 가구와 조손가족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확대 설치되었음. 아동발달지원계좌는 2017년에 정부지원 금액이 기존의 3만원에서 4만원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은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중분류 지표 아래 19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생취학률, 학생진학률,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 등 각종 지표들에서 OECD 수준에 뒤지지 않는 긍정적인 지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소분류 지표 '학교 부적응률'에 해당되는 지표들에서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음. 2011년에 74,365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2017년에는 47,663명 17% 감소되었지만 6년 동안 누적 학업중단 학생은 309,760명에 달했음. 이와 관련된 자퇴 충동여부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자퇴 충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8.2%였고,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고학년일수록 자퇴 충동 비율이 높아 초등학생은 16.5%, 중학생은 25.1%, 고등학생은 39.4%로 나타났음. 자퇴 충동의 이유에 관한 조사에서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가 27.1%, '귀찮고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가 19.1%,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2.8%,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2.2%로 나타났음. 2017년도 대분류 지표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소분류 지표였던 '대안교육 참여율'이 두 세부지표였던 '대안학교 수와 종류'와 '대안학교 학생 비율'이 '대안교육 참여 기회'로 통합되어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의 세부지표가 되었음. 또한,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에 있었던 혁신학교와 관련된 2개의 세부지표가 빠지고 '직업교육 참여 기회'가 새로운 세부지표로 신설되었음. 정부는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한 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2017년까지 총 7,000여명 학생에 200개 학교로 늘리며, 참여 기업의 수도 2016년 7월까지 7,686개로 확대되었음.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조사결과는 청소년 10명 중 9명은 1년 동안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의 활동 형태를 보면 청소년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9.3%에 지나지 않았고,

반면에 동아리활동에는 77.6%의 참여를 보이고 있음. 여가시간에 있어서는 평일 하루에 1시간도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학생이 전체의 19.7%에 이르러 5명 중 1명이 해당되고 있음. 평일 여가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15.7%, 중학생이 14.6%, 고등학생은 27.0%로 조사되었음. 이와 함께 방과 후 하루에 6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은 전체의 6.2%로 나타났고, 1시간미만으로 공부하는 비율은 일반계고 학생이 11.7%, 특성화고 학생은 45.1%로 조사되어 33.4%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별보호조치」 영역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소년사법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로 구성됨. 2016년 기준으로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총 22,792명이며, 이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총 1,015명(4.5%)이었음.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입국자수는 2011년 이후 다소 주춤한 상태임.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률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학업중단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아지는 추세임. 다문화예비학교의 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었고,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자유박탈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2015년에 2,001명이었음.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감소 추세이며, 주요 범죄유형은 기타 원인을 제외하고, 강간과 절도인 것으로 나타남. 법률조력인 배치인원수와 관련하여 국선변호사 접수건수와 지정건수, 지정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소년교도소 수용청소년의 처우불복 신청건수에서는 청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소·고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순으로 나타남. 청소년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년범죄 전체 인원수 대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과 관련해서도 전체 기소유예자의 수와 비율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아동·청소년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2.2일, 월평균 근로시간은 176.7시간이었으며, 2014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1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음. 청소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표면적으로는 많아졌지만 심층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문제와 관련하여 성폭력예방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교육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범죄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상공개자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수는 33,005명이었으며, 이중 아동·청소년은 9,471명으로 28.7%에 해당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도 3.8%로 나타나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 2017년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과정과 연계하여 본 연구진, 국가보고서 작업팀,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2011년 제3·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부처별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 성과를 분석함.
- 전문가협의회와 워크숍, 연구진회의 등을 통해 제3·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을 98개 이행과제로 정리하여 5년 간의 협약과제 추진 노력정도를 점검하여 '적극 이행' 48개, '이행 추진 중' 41개, '이행 미흡' 9개로 분류를 시도해봄. 제3·4차 권고사항 당시 과제별 추진계획과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행여부 판단 기준이 부재하므로 제한적 시도로 추진함. 이를 통해 협약 이행과제의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여 추진노력을 촉진시키고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동권리협약 이행 평가에 따른 주요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입양허가제 도입으로 유보조항 철회(협약 21조a항),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아동청소년 GDP 대비 예산비율은 3%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조직 이원화로 정책 조정 한계가 있음.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동복지법 상 아동정책영향평가 근거 마련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성별·장애·인종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청소년 참여제도의 양적 성장에 비해 실질적 참여기회가 부족함.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학교 내 종교과목 대안 의무편성, 초·중등교육법 상 학생자치활동 보장 노력을 실시함.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필요
- 폭력 및 학대 : 체벌·학대금지 법령 제·개정, 포괄적 국가전략인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 증설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무상보육 전면실시, 육아휴직제 확대, 입양숙려제 도입, 중앙입양원 설치,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장애아 특수교육기관 및 통합교육 확대,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아동전담팀 설치, 드림스타트 등 취약계층 아동 서비스 지원 확대.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 부족 등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하는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 추진
- 교육, 여가 및 문화 :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 및 관련대책 수립, 창의성 및 진로탐색 위한 자유학기제 시행, 사이버폭력 대책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경쟁적 입시문화 및 사교육 과잉, 여가·놀이문화 및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특별보호조치 : 강제송환금지 등에 관한 난민법 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 다문화아동 지원정책 추진, 아동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 제도 마련이 필요함.

3. 정책제언

-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및 협약에 따른 이행점검 및 관계부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7개 대분류 영역에 총 14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음. 각 정책과제별로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절차, 법 개정사항, 소요예산 등을 제안하였음.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인권교육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허브 구축(인권교육원 설립)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읍·면·동 단위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및 보급(풀뿌리 지역참여기구)
- 「폭력 및 학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효적 제도 개선,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조사 시 대응체계 강화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입양 및 파양 관련 체계적 DB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 방안 수립 및 시행, 청소년상담체계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직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성공사례 DB 구축과 멘토 제도 도입,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 「특별보호조치」: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의 대안양육과 예비학교 확대 운영,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단속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활동 강화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

Ⅱ.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 ····· 25
1. 아동 · 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 ····· 27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 모니터링 연구 ····· 27
2) 국제적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의 이해 ····· 30
2.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관련 국제적 논의 ····· 33
1) 유엔 및 유럽연합의 인권지표 연구 동향 ····· 33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의 이해와 시사점 ····· 41
3.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논의 ····· 49
1) 영역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보완 ····· 50
2)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61

Ⅲ.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 69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71
1) 인권일반 ····· 71
2) 일반원칙 ····· 105
3) 소결 ····· 1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112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 112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32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134
4) 사생활의 보호 ····· 136

5) 정보접근권 ····· 139
6) 소결 ····· 147
3. 폭력 및 학대 ····· 149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149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172
3) 소결 ····· 190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194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194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 206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 223
4) 소결 ····· 227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230
1) 장애 ····· 230
2) 생존 및 발달 ····· 232
3) 보건서비스 ····· 245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 259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317
6) 소결 ····· 325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331
1) 교육에의 권리 ····· 331
2) 교육의 목표 ····· 345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 365
4) 소결 ····· 384
7. 특별보호조치 ····· 388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388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 400
3) 경제적 착취 ····· 409

4) 성적 착취 ····· 437
5) 소결 ····· 450

Ⅳ.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현황과 과제 ····· 457
1. 아동권리협약 이행 성과와 과제 ····· 460
2. 아동·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 504

Ⅴ. 정책제언 ····· 521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 523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 524

참고문헌 ····· 587

부 록 ····· 609
1.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 611
2.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 654
3.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리스트 ····· 658
4. 201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초등용·중등용) ····· 675
5. 2017 아동 · 청소년 인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 712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부처별 추진사항 ····· 720
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표 ····· 744

표 목 차

〈표 Ⅰ-2-1〉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 크기 ····· 11
〈표 Ⅰ-2-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 12
〈표 Ⅰ-2-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 12
〈표 Ⅰ-2-4〉 2017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대상 현황 ····· 13
〈표 Ⅰ-2-5〉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 14
〈표 Ⅰ-2-6〉 2017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 항목 ····· 15
〈표 Ⅰ-2-7〉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세부지표항목 중요도 조사결과 ····· 18
〈표 Ⅱ-1-1〉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 30
〈표 Ⅱ-2-1〉 구조·과정·성과 지표체계 ····· 35
〈표 Ⅱ-2-2〉 OHCHR 인권지표 가이드의 지표유형별 구분 사례(교육권) ····· 36
〈표 Ⅱ-2-3〉 EU FRA: 착취와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예시) ····· 38
〈표 Ⅱ-2-4〉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에서의 구조·과정·성과지표 ····· 39
〈표 Ⅱ-2-5〉 '초기아동기 인권지표' 지표의 지표유형별 구분(예시) ····· 39
〈표 Ⅱ-2-6〉 한국의 국가인권통계지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중 일부 아동·청소년관련(예시) ····· 40
〈표 Ⅱ-2-7〉 SDGs 내용과 지표 구성 ····· 44
〈표 Ⅱ-2-8〉 SDGs 지표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관계 및 시사점(안) ····· 46
〈표 Ⅱ-3-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구성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61
〈표 Ⅱ-3-2〉 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65
〈표 Ⅲ-1-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2~2017) ····· 75
〈표 Ⅲ-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유엔아동권리협약 ····· 76
〈표 Ⅲ-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학생인권조례 ····· 78
〈표 Ⅲ-1-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국가인권위원회 ····· 79
〈표 Ⅲ-1-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가정 ····· 82
〈표 Ⅲ-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학교 ····· 83

〈표 Ⅲ-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내가 살고 있는 지역 ····· 85
〈표 Ⅲ-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우리나라 전체 ····· 86
〈표 Ⅲ-1-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 88
〈표 Ⅲ-1-10〉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 89
〈표 Ⅲ-1-11〉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 91
〈표 Ⅲ-1-12〉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92
〈표 Ⅲ-1-13〉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93
〈표 Ⅲ-1-14〉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 95
〈표 Ⅲ-1-15〉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96
〈표 Ⅲ-1-16〉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98
〈표 Ⅲ-1-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00
〈표 Ⅲ-1-18〉 인권교육 경험여부 ····· 100
〈표 Ⅲ-1-19〉 인권교육 경험 장소 ····· 102
〈표 Ⅲ-1-20〉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 104
〈표 Ⅲ-1-21〉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_전체 ····· 105
〈표 Ⅲ-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 ····· 112
〈표 Ⅲ-2-2〉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114
〈표 Ⅲ-2-3〉 학급회의 운영여부 ····· 115
〈표 Ⅲ-2-4〉 학급회의 참여정도 ····· 117
〈표 Ⅲ-2-5〉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118
〈표 Ⅲ-2-6〉 학교규칙 및 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 ····· 119
〈표 Ⅲ-2-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121

〈표 Ⅲ-2-8〉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6) ····· 122
〈표 Ⅲ-2-9〉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6) ····· 122
〈표 Ⅲ-2-10〉 아동총회 개최현황 ····· 123
〈표 Ⅲ-2-11〉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 124
〈표 Ⅲ-2-12〉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 ····· 126
〈표 Ⅲ-2-13〉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 128
〈표 Ⅲ-2-14〉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 129
〈표 Ⅲ-2-15〉 사상의 자유 보장 ····· 132
〈표 Ⅲ-2-16〉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 134
〈표 Ⅲ-2-17〉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 135
〈표 Ⅲ-2-18〉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 136
〈표 Ⅲ-2-19〉 개인의 정보 보호 ····· 138
〈표 Ⅲ-2-20〉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 139
〈표 Ⅲ-2-21〉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 139
〈표 Ⅲ-2-22〉 인터넷 이용 목적 ····· 140
〈표 Ⅲ-2-23〉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 141
〈표 Ⅲ-2-24〉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 ····· 141
〈표 Ⅲ-2-25〉 성인용 영상물 이용경험 ····· 142
〈표 Ⅲ-2-26〉 성인용 간행물 이용경험 ····· 142
〈표 Ⅲ-2-27〉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 143
〈표 Ⅲ-2-28〉 학생 1인당 장서 수 ····· 143
〈표 Ⅲ-2-29〉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 144
〈표 Ⅲ-2-30〉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144
〈표 Ⅲ-2-31〉 인권 관련 정보제공 ····· 146
〈표 Ⅲ-3-1〉 욕설 경험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149
〈표 Ⅲ-3-2〉 욕설 경험_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151

〈표 Ⅲ-3-3〉 욕설 경험_친구, 선·후배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153
〈표 Ⅲ-3-4〉 욕설 경험_사이버 공간에서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욕설이나 모욕 ····· 155
〈표 Ⅲ-3-5〉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폭행이나 구타 ····· 157
〈표 Ⅲ-3-6〉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따돌림 ····· 158
〈표 Ⅲ-3-7〉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 160
〈표 Ⅲ-3-8〉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성희롱(놀림) ····· 162
〈표 Ⅲ-3-9〉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사생활이 알려짐 ····· 163
〈표 Ⅲ-3-10〉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따돌림 ····· 165
〈표 Ⅲ-3-11〉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 167
〈표 Ⅲ-3-12〉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 168
〈표 Ⅲ-3-13〉 체벌 경험여부_학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 171
〈표 Ⅲ-3-14〉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173
〈표 Ⅲ-3-15〉 아동학대 사례접수 경로 ····· 173
〈표 Ⅲ-3-1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175
〈표 Ⅲ-3-17〉 아동학대사례 유형 ····· 176
〈표 Ⅲ-3-18〉 아동학대 발생빈도 ····· 176
〈표 Ⅲ-3-19〉 중복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177
〈표 Ⅲ-3-20〉 재학대사례: 성별, 연령별, 유형별(중복학대 미분류) 구분 ····· 178
〈표 Ⅲ-3-21〉 방임_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 179
〈표 Ⅲ-3-22〉 방임_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 181
〈표 Ⅲ-3-23〉 방임_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 ····· 183
〈표 Ⅲ-3-24〉 방임_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184
〈표 Ⅲ-3-25〉 방임_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 185
〈표 Ⅲ-3-26〉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6년~2016년) ····· 187
〈표 Ⅲ-3-27〉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187
〈표 Ⅲ-3-2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업무량 ····· 188

〈표 Ⅲ-3-29〉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189
〈표 Ⅲ-3-30〉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 190
〈표 Ⅲ-3-31〉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 190
〈표 Ⅲ-4-1〉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04년-2016년) ····· 196
〈표 Ⅲ-4-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4년-2016년) ····· 197
〈표 Ⅲ-4-3〉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2014년-2016년) ····· 198
〈표 Ⅲ-4-4〉 어린이집 1개소 및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2014년-2016년) ····· 199
〈표 Ⅲ-4-5〉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2007년-2016년) ····· 200
〈표 Ⅲ-4-6〉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2010년-2016년) ····· 201
〈표 Ⅲ-4-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2016년) ····· 202
〈표 Ⅲ-4-8〉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04년-2016년) ····· 203
〈표 Ⅲ-4-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5년-2016년) ····· 203
〈표 Ⅲ-4-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만족도(2010-2016년) ····· 206
〈표 Ⅲ-4-11〉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207
〈표 Ⅲ-4-12〉 입양에 대한 견해(2012년, 2014년, 2016년) ····· 208
〈표 Ⅲ-4-13〉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2008-2016년) ····· 208
〈표 Ⅲ-4-14〉 국내·외 입양 사후서비스 ····· 210
〈표 Ⅲ-4-15〉 국내 입양 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 210
〈표 Ⅲ-4-16〉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2007년-2016년) ····· 212
〈표 Ⅲ-4-17〉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2007년-2016년) ····· 212
〈표 Ⅲ-4-18〉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07년-2016년) ····· 213
〈표 Ⅲ-4-19〉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아동 수(2012년-2016년) ····· 215
〈표 Ⅲ-4-20〉 가출 여부 ····· 215
〈표 Ⅲ-4-21〉 가출을 한 주된 이유 ····· 217
〈표 Ⅲ-4-22〉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08-2016년) ····· 220
〈표 Ⅲ-4-23〉 가출 후 이용 기관 ····· 220
〈표 Ⅲ-4-24〉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 222

〈표 Ⅲ-4-25〉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연도별 차이 ····· 223
〈표 Ⅲ-4-26〉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년-2017년) ····· 225
〈표 Ⅲ-4-27〉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2016) ····· 225
〈표 Ⅲ-4-28〉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2013, 2016) ····· 226
〈표 Ⅲ-5-1〉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 230
〈표 Ⅲ-5-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 231
〈표 Ⅲ-5-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 232
〈표 Ⅲ-5-4〉 0세의 기대여명 ····· 233
〈표 Ⅲ-5-5〉 연도별 영아사망률 ····· 233
〈표 Ⅲ-5-6〉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234
〈표 Ⅲ-5-7〉 사고 사망률 ····· 234
〈표 Ⅲ-5-8〉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 235
〈표 Ⅲ-5-9〉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 237
〈표 Ⅲ-5-10〉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 ····· 239
〈표 Ⅲ-5-1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241
〈표 Ⅲ-5-1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 242
〈표 Ⅲ-5-1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 244
〈표 Ⅲ-5-14〉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 245
〈표 Ⅲ-5-15〉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 246
〈표 Ⅲ-5-16〉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 248
〈표 Ⅲ-5-17〉 2016년도 보건교사 배치현황 ····· 250
〈표 Ⅲ-5-18〉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 250
〈표 Ⅲ-5-19〉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 251
〈표 Ⅲ-5-20〉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 252
〈표 Ⅲ-5-21〉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 253
〈표 Ⅲ-5-22〉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 254
〈표 Ⅲ-5-23〉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이용률 ····· 255

〈표 Ⅲ-5-24〉 현재 흡연율 추이 ····· 256
〈표 Ⅲ-5-25〉 현재 음주율 추이 ····· 256
〈표 Ⅲ-5-26〉 평생 약물 경험률 ····· 257
〈표 Ⅲ-5-27〉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 258
〈표 Ⅲ-5-28〉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 258
〈표 Ⅲ-5-29〉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259
〈표 Ⅲ-5-30〉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 262
〈표 Ⅲ-5-31〉 아침식사 여부 ····· 264
〈표 Ⅲ-5-32〉 아침식사 하지 않은 이유 ····· 266
〈표 Ⅲ-5-33〉 수면 시간 ····· 267
〈표 Ⅲ-5-34〉 수면 부족 여부 ····· 268
〈표 Ⅲ-5-35〉 수면 부족 이유(1순위) ····· 270
〈표 Ⅲ-5-36〉 수면 부족 이유(1+2+3순위) ····· 271
〈표 Ⅲ-5-37〉 2010~2016년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 273
〈표 Ⅲ-5-38〉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 275
〈표 Ⅲ-5-39〉 죽고 싶은 이유 ····· 277
〈표 Ⅲ-5-40〉 우울증_외로운 적 있다 ····· 279
〈표 Ⅲ-5-41〉 우울증_불안한 적 있다 ····· 281
〈표 Ⅲ-5-42〉 우울증_우울한 적 있다 ····· 282
〈표 Ⅲ-5-43〉 우울증의 하위척도 신뢰도 ····· 283
〈표 Ⅲ-5-44〉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 ····· 284
〈표 Ⅲ-5-45〉 스트레스 인지율 ····· 285
〈표 Ⅲ-5-46〉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학업문제 ····· 286
〈표 Ⅲ-5-47〉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가정 불화 ····· 288
〈표 Ⅲ-5-48〉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또래와의 관계 ····· 289
〈표 Ⅲ-5-49〉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경제적인 어려움 ····· 291
〈표 Ⅲ-5-50〉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외모·신체조건 ····· 292

〈표 Ⅲ-5-51〉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 294
〈표 Ⅲ-5-52〉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의 배경변인별 차이 ····· 295
〈표 Ⅲ-5-53〉 스트레스유형에 따른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차이 ····· 296
〈표 Ⅲ-5-54〉 현재 행복 정도 ····· 297
〈표 Ⅲ-5-55〉 행복하지 않은 이유 ····· 299
〈표 Ⅲ-5-56〉 삶의 만족도 ····· 302
〈표 Ⅲ-5-57〉 삶의 만족도(한국과 WHO의 HBSC 연구결과와의 비교) ····· 304
〈표 Ⅲ-5-58〉 자아존중감_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 307
〈표 Ⅲ-5-59〉 자아존중감_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308
〈표 Ⅲ-5-60〉 자아존중감_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 309
〈표 Ⅲ-5-61〉 자아존중감_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311
〈표 Ⅲ-5-62〉 자아존중감 하위척도 신뢰도 ····· 312
〈표 Ⅲ-5-63〉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 313
〈표 Ⅲ-5-64〉 상관분석: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 ····· 313
〈표 Ⅲ-5-65〉 고민거리 대화 상대 ····· 314
〈표 Ⅲ-5-66〉 아동빈곤율 ····· 317
〈표 Ⅲ-5-6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 320
〈표 Ⅲ-5-68〉 한부모가구 비율 ····· 321
〈표 Ⅲ-5-69〉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 322
〈표 Ⅲ-5-7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 323
〈표 Ⅲ-5-71〉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 324
〈표 Ⅲ-5-72〉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 ····· 325
〈표 Ⅲ-6-1〉 각급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추이(2011~2017) ····· 331
〈표 Ⅲ-6-2〉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2011~2016) ····· 332
〈표 Ⅲ-6-3〉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333
〈표 Ⅲ-6-4〉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17) ····· 334
〈표 Ⅲ-6-5〉 학급당 학생 수(2011~2017) ····· 335
〈표 Ⅲ-6-6〉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1~2016) ····· 336

〈표 Ⅲ-6-7〉 자퇴 충동여부 ····· 337
〈표 Ⅲ-6-8〉 자퇴 충동이유(1순위) ····· 339
〈표 Ⅲ-6-9〉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 ····· 341
〈표 Ⅲ-6-10〉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 342
〈표 Ⅲ-6-11〉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344
〈표 Ⅲ-6-12〉 학교에 대한 생각_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 346
〈표 Ⅲ-6-13〉 학교에 대한 생각_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 348
〈표 Ⅲ-6-14〉 학교에 대한 생각_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 349
〈표 Ⅲ-6-15〉 학교에 대한 생각_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 351
〈표 Ⅲ-6-16〉 공립·사립 대안학교 25개교 현황(2016년 12월 기준) ····· 354
〈표 Ⅲ-6-17〉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 355
〈표 Ⅲ-6-18〉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현황 ····· 356
〈표 Ⅲ-6-19〉 마이스터고·특성화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교 ····· 358
〈표 Ⅲ-6-2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참여기업 지원내용 ····· 360
〈표 Ⅲ-6-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현황 개요 ····· 362
〈표 Ⅲ-6-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 364
〈표 Ⅲ-6-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 365
〈표 Ⅲ-6-24〉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366
〈표 Ⅲ-6-25〉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367
〈표 Ⅲ-6-26〉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공공도서관 ····· 368
〈표 Ⅲ-6-2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청소년시설 ····· 369
〈표 Ⅲ-6-28〉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체육시설 ····· 370
〈표 Ⅲ-6-29〉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문화 예술 공간 ····· 371
〈표 Ⅲ-6-30〉 여가·문화·예술 활동 평일과 휴일의 청소년 참여율 ····· 372
〈표 Ⅲ-6-31〉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 372
〈표 Ⅲ-6-32〉 동아리활동 여부 ····· 374
〈표 Ⅲ-6-33〉 평일 여가 시간 ····· 376
〈표 Ⅲ-6-34〉 정규 수업시간 제외 공부시간 ····· 378

〈표 Ⅲ-6-35〉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 380
〈표 Ⅲ-6-36〉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가정 ····· 382
〈표 Ⅲ-6-37〉 청소년단체 활동의 지지수준_학교 ····· 383
〈표 Ⅲ-7-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 390
〈표 Ⅲ-7-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 391
〈표 Ⅲ-7-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 391
〈표 Ⅲ-7-4〉 차별받은 경험: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 392
〈표 Ⅲ-7-5〉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 392
〈표 Ⅲ-7-6〉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 393
〈표 Ⅲ-7-7〉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6년) ····· 393
〈표 Ⅲ-7-8〉 2015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 394
〈표 Ⅲ-7-9〉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16.4) ····· 394
〈표 Ⅲ-7-10〉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16.4) ····· 395
〈표 Ⅲ-7-11〉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 395
〈표 Ⅲ-7-12〉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 396
〈표 Ⅲ-7-13〉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 398
〈표 Ⅲ-7-14〉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 398
〈표 Ⅲ-7-15〉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 399
〈표 Ⅲ-7-16〉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 400
〈표 Ⅲ-7-17〉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 401
〈표 Ⅲ-7-18〉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 403
〈표 Ⅲ-7-19〉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 405
〈표 Ⅲ-7-20〉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 405
〈표 Ⅲ-7-21〉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406
〈표 Ⅲ-7-22〉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407
〈표 Ⅲ-7-2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 408
〈표 Ⅲ-7-2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409
〈표 Ⅲ-7-25〉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410

〈표 Ⅲ-7-26〉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 412
〈표 Ⅲ-7-27〉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414
〈표 Ⅲ-7-2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 416
〈표 Ⅲ-7-2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 418
〈표 Ⅲ-7-3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420
〈표 Ⅲ-7-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 422
〈표 Ⅲ-7-3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 424
〈표 Ⅲ-7-3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 426
〈표 Ⅲ-7-3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 428
〈표 Ⅲ-7-3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 430
〈표 Ⅲ-7-36〉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 432
〈표 Ⅲ-7-37〉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 ····· 432
〈표 Ⅲ-7-38〉 청소년 고용사업장 법령위반 내역 및 건수 ····· 434
〈표 Ⅲ-7-3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성적 피해를 경험했다 ····· 435
〈표 Ⅲ-7-40〉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 437
〈표 Ⅲ-7-4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 437
〈표 Ⅲ-7-42〉 연간 성교육 경험률 ····· 438
〈표 Ⅲ-7-43〉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 439
〈표 Ⅲ-7-44〉 지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 439
〈표 Ⅲ-7-45〉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 440
〈표 Ⅲ-7-46〉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 441
〈표 Ⅲ-7-47〉 성적인 피해 시 도움을 받은 사람 ····· 443
〈표 Ⅲ-7-48〉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 445
〈표 Ⅲ-7-49〉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 446
〈표 Ⅲ-7-5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447
〈표 Ⅲ-7-5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 447

〈표 Ⅲ-7-52〉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 448
〈표 Ⅲ-7-53〉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 449
〈표 Ⅲ-7-5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 450
〈표 Ⅴ-2-1〉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 524

그림 목차

【그림 Ⅰ-2-1】 연도별 추진계획(안) ····· 6
【그림 Ⅱ-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 ····· 31
【그림 Ⅲ-1-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유엔아동권리협약(연도별 추이) ···· 77
【그림 Ⅲ-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학생인권조례 ····· 78
【그림 Ⅲ-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국가인권위원회 ····· 80
【그림 Ⅲ-1-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 81
【그림 Ⅲ-1-5】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 81
【그림 Ⅲ-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가정(연도별 추이) ····· 83
【그림 Ⅲ-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학교(연도별 추이) ····· 84
【그림 Ⅲ-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내가 살고 있는 지역(연도별 추이) ····· 86
【그림 Ⅲ-1-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우리나라(연도별 추이) ····· 87
【그림 Ⅲ-1-10】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연도별 추이) ····· 89
【그림 Ⅲ-1-11】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연도별 추이) ····· 90
【그림 Ⅲ-1-12】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연도별 추이) ····· 92
【그림 Ⅲ-1-13】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연도별 추이) ····· 93
【그림 Ⅲ-1-14】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 94
【그림 Ⅲ-1-15】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연도별 추이) ····· 96
【그림 Ⅲ-1-16】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연도별 추이) ····· 97

【그림 Ⅲ-1-17】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 99
【그림 Ⅲ-1-18】 인권교육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 101
【그림 Ⅲ-1-19】 인권교육 경험 장소(연도별 추이) ····· 103
【그림 Ⅲ-1-20】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 105
【그림 Ⅲ-1-21】 차별경험 ····· 106
【그림 Ⅲ-1-22】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1년에 1회 이상) ····· 107
【그림 Ⅲ-1-23】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3개월에 1회 이상) ····· 107
【그림 Ⅲ-1-24】 차별경험(연도별 추이) ····· 108
【그림 Ⅲ-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의견존중 정도)(연도별 추이) ····· 113
【그림 Ⅲ-2-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 115
【그림 Ⅲ-2-3】 학급회의 운영여부(연도별 추이) ····· 116
【그림 Ⅲ-2-4】 학급회의 참여정도(연도별 추이) ····· 117
【그림 Ⅲ-2-5】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 118
【그림 Ⅲ-2-6】 학교규칙 및 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연도별 추이) ····· 120
【그림 Ⅲ-2-7】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6) ····· 122
【그림 Ⅲ-2-8】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연도별 추이) ····· 124
【그림 Ⅲ-2-9】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 125
【그림 Ⅲ-2-10】 투표연령 하향화에 대한 의견(연도별 추이) ····· 126
【그림 Ⅲ-2-11】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연도별 추이) ····· 127
【그림 Ⅲ-2-12】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 129
【그림 Ⅲ-2-13】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 130
【그림 Ⅲ-2-14】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 131
【그림 Ⅲ-2-15】 사상의 자유 보장(연도별 추이) ····· 133
【그림 Ⅲ-2-16】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 134
【그림 Ⅲ-2-17】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 135
【그림 Ⅲ-2-18】 용모, 복장, 소지품검사 경험 ····· 137

【그림 Ⅲ-2-19】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 · 복장 · 소지품(연도별 추이) ····· 137
【그림 Ⅲ-2-20】 개인의 정보 보호(연도별 추이) ····· 138
【그림 Ⅲ-2-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연도별 추이) ····· 145
【그림 Ⅲ-2-22】 인권 관련 정보제공(연도별 추이) ····· 146
【그림 Ⅲ-3-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 150
【그림 Ⅲ-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 152
【그림 Ⅲ-3-3】 친구, 선 · 후배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연도별 추이) ····· 154
【그림 Ⅲ-3-4】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욕설이나 모욕(연도별 추이) ····· 156
【그림 Ⅲ-3-5】 친구, 선 · 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폭행이나 구타(연도별 추이) ····· 158
【그림 Ⅲ-3-6】 친구, 선 · 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따돌림(연도별 추이) ····· 159
【그림 Ⅲ-3-7】 친구, 선 · 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 161
【그림 Ⅲ-3-8】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성희롱(놀림)(연도별 추이) ····· 162
【그림 Ⅲ-3-9】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사생활이 알려짐(연도별 추이) ····· 164
【그림 Ⅲ-3-10】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따돌림(연도별 추이) ····· 165
【그림 Ⅲ-3-11】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 167
【그림 Ⅲ-3-12】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 169
【그림 Ⅲ-3-13】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 170
【그림 Ⅲ-3-14】 체벌 경험여부_학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 172
【그림 Ⅲ-3-15】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173
【그림 Ⅲ-3-16】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 174
【그림 Ⅲ-3-17】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방임유형별 비율 ····· 179
【그림 Ⅲ-3-18】 방임_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
(연도별 추이) ····· 180
【그림 Ⅲ-3-19】 방임_깨끗하지 않은 옷, 침구 사용 경험(연도별 추이) ····· 182
【그림 Ⅲ-3-20】 방임_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연도별 추이) ····· 183
【그림 Ⅲ-3-21】 방임_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 185
【그림 Ⅲ-3-22】 방임_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 186

【그림 Ⅲ-4-1】 부모님과의 주중 대화시간(연령별 구분) ····· 194
【그림 Ⅲ-4-2】 방과후학교 교급별 학생만족도 ····· 204
【그림 Ⅲ-4-3】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 ····· 205
【그림 Ⅲ-4-4】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 207
【그림 Ⅲ-4-5】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214
【그림 Ⅲ-4-6】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연도별 추이) ····· 216
【그림 Ⅲ-4-7】 가출을 한 주된 이유: 전체(연도별 추이) ····· 218
【그림 Ⅲ-4-8】 가출을 한 주된 이유: 초등학교(연도별 추이) ····· 218
【그림 Ⅲ-4-9】 가출을 한 주된 이유: 중학교(연도별 추이) ····· 218
【그림 Ⅲ-4-10】 가출을 한 주된 이유: 고등학교(연도별 추이) ····· 219
【그림 Ⅲ-4-11】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 이용 경험(연도별 추이) ····· 221
【그림 Ⅲ-4-12】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 서비스 만족도(연도별 추이) ····· 222
【그림 Ⅲ-4-13】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2013, 2016) ····· 226
【그림 Ⅲ-5-1】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 ····· 238
【그림 Ⅲ-5-2】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연도별 추이) ····· 240
【그림 Ⅲ-5-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범죄) (연도별 추이) ····· 241
【그림 Ⅲ-5-4】 거주지역의 안전수준(교통사고) (연도별 추이) ····· 243
【그림 Ⅲ-5-5】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음식물) (연도별 추이) ····· 244
【그림 Ⅲ-5-6】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도별 추이) ····· 260
【그림 Ⅲ-5-7】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율(성별) ····· 261
【그림 Ⅲ-5-8】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율(학교급별) ····· 262
【그림 Ⅲ-5-9】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연도별 추이) ····· 263
【그림 Ⅲ-5-10】 아침식사 여부(연도별 추이) ····· 265
【그림 Ⅲ-5-11】 수면 시간(연도별 추이) ····· 268
【그림 Ⅲ-5-12】 수면 부족 여부(연도별 추이) ····· 269
【그림 Ⅲ-5-13】 수면 부족 이유(1순위 기준) ····· 270
【그림 Ⅲ-5-14】 2010~2016년 비만도 현황 ····· 272
【그림 Ⅲ-5-15】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및 이유(전체) ····· 274

【그림 Ⅲ-5-16】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연도별 추이) ····· 276
【그림 Ⅲ-5-17】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학교급별) ····· 276
【그림 Ⅲ-5-18】 우울정도 항목별 비교 ····· 278
【그림 Ⅲ-5-19】 우울증_외로운 적 있다(연도별 추이) ····· 280
【그림 Ⅲ-5-20】 우울증_불안한 적 있다(연도별 추이) ····· 281
【그림 Ⅲ-5-21】 우울증_우울한 적 있다(연도별 추이) ····· 283
【그림 Ⅲ-5-22】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 ····· 285
【그림 Ⅲ-5-23】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학업문제(연도별 추이) ····· 287
【그림 Ⅲ-5-24】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가정 불화(연도별 추이) ····· 289
【그림 Ⅲ-5-25】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또래와의 관계(연도별 추이) ····· 290
【그림 Ⅲ-5-26】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경제적인 어려움(연도별 추이) ····· 291
【그림 Ⅲ-5-27】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외모·신체조건(연도별 추이) ····· 293
【그림 Ⅲ-5-28】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연도별 추이) ····· 294
【그림 Ⅲ-5-29】 현재 행복 정도(연도별 추이) ····· 298
【그림 Ⅲ-5-30】 행복하지 않은 이유: 전체(연도별 추이) ····· 300
【그림 Ⅲ-5-31】 행복하지 않은 이유: 초등학생(연도별 추이) ····· 300
【그림 Ⅲ-5-32】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학생(연도별 추이) ····· 300
【그림 Ⅲ-5-33】 행복하지 않은 이유: 고등학생(연도별 추이) ····· 301
【그림 Ⅲ-5-34】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 302
【그림 Ⅲ-5-35】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15세 청소년 기준) ····· 305
【그림 Ⅲ-5-36】 자아존중감 항목별 비교 ····· 306
【그림 Ⅲ-5-37】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 307
【그림 Ⅲ-5-38】 자아존중감_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 309
【그림 Ⅲ-5-39】 자아존중감_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연도별 추이) ····· 310
【그림 Ⅲ-5-40】 자아존중감_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연도별 추이) ····· 312
【그림 Ⅲ-5-41】 고민 대화상대: 전체(연도별 추이) ····· 315
【그림 Ⅲ-5-42】 고민 대화상대: 초등학생(연도별 추이) ····· 316
【그림 Ⅲ-5-43】 고민 대화상대: 중학생(연도별 추이) ····· 316

【그림 Ⅲ-5-44】 고민 대화상대: 고등학생(연도별 추이) ····· 316
【그림 Ⅲ-5-45】 0세~17세 아동빈곤율 OECD 국제비교 ····· 318
【그림 Ⅲ-5-46】 OECD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2011, 2013) ····· 319
【그림 Ⅲ-6-1】 자퇴 충동여부(연도별 추이) ····· 338
【그림 Ⅲ-6-2】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여부 ····· 339
【그림 Ⅲ-6-3】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 340
【그림 Ⅲ-6-4】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연도별 추이) ····· 342
【그림 Ⅲ-6-5】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 343
【그림 Ⅲ-6-6】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 345
【그림 Ⅲ-6-7】 학교에 대한 생각_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연도별 추이) ····· 347
【그림 Ⅲ-6-8】 학교에 대한 생각_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연도별 추이) ····· 348
【그림 Ⅲ-6-9】 학교에 대한 생각_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연도별 추이) ····· 350
【그림 Ⅲ-6-10】 학교에 대한 생각_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연도별 추이) ····· 352
【그림 Ⅲ-6-1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도별 추이 ····· 360
【그림 Ⅲ-6-1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연도별 추이 ····· 361
【그림 Ⅲ-6-13】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 ····· 366
【그림 Ⅲ-6-14】 청소년 단체 가입/활동 여부(연도별 추이) ····· 373
【그림 Ⅲ-6-15】 동아리활동 여부(연도별 추이) ····· 375
【그림 Ⅲ-6-16】 평일 여가 시간(연도별 추이) ····· 377
【그림 Ⅲ-6-17】 정규 수업시간 제외 공부시간(연도별 추이) ····· 378
【그림 Ⅲ-6-18】 평일 여가 시간 및 공부 시간(연도별 추이) ····· 379
【그림 Ⅲ-6-19】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 381
【그림 Ⅲ-6-20】 청소년단체 활동의 지지수준_가정(연도별 추이) ····· 382
【그림 Ⅲ-6-21】 청소년단체 활동의 지지수준_학교(연도별 추이) ····· 384
【그림 Ⅲ-7-1】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 404
【그림 Ⅲ-7-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411

【그림 Ⅲ-7-3】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10/2015) ····· 413
【그림 Ⅲ-7-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5개년 추이: 중학생, 고등학생) ····· 415
【그림 Ⅲ-7-5】 아르바이트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 415
【그림 Ⅲ-7-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음 (연도별 추이) ····· 417
【그림 Ⅲ-7-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함(연도별 추이) ····· 419
【그림 Ⅲ-7-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연도별 추이) ····· 421
【그림 Ⅲ-7-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부당한 해고(연도별 추이) ····· 423
【그림 Ⅲ-7-1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연도별 추이) ···· 425
【그림 Ⅲ-7-1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폭언 등 인격 모독(연도별 추이) ····· 427
【그림 Ⅲ-7-1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구타나 폭행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429
【그림 Ⅲ-7-1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 함 (연도별 추이) ····· 431
【그림 Ⅲ-7-1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성적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436
【그림 Ⅲ-7-15】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442
【그림 Ⅲ-7-16】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연도별 추이) ····· 444

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Ⅰ 장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1년 한국정부는 전세계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담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갖게 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권리실태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3). 한국정부는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아동권리협약 제4조).

한국정부는 1994년 11월에 제1차, 2000년 5월에 제2차, 2008년 12월(유엔 접수 2009. 5)에 제3・4차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에는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담은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10월 제58차 회기에서 한국의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88개 항목으로 구성된 권고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입양특례법과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 도입,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전담조직 마련 및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등으로 독립적 아동권리모니터링체계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한 학대 및 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강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빈곤아동을 위한 보호・복지 인프라 확대, 청소년한부모,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취약집단 인권보호를

1)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위한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참여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노력 등 여러 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대한민국정부, 2017: 1).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적 약속인 아동권리협약은 민간부문의 정책 감시과정에서 유용한 도구로서, 정부 내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점검과 정책개발 및 추진의 촉진제로서 일정정도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노력을 감시하고 점검하기 위해 정부 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였고(2006~201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아동상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위한 아동종합실태조사(5년 주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 종료와[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기능 미비로 협약 이행과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 점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5년마다 시행되는 아동종합실태조사로는 다양한 인권주제와 이슈, 그리고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갖는 하위집단별 인권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인권조약은 비준 당사국들에게 조약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조약 감시기구를 통해 이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하며 조약 이행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해당 인권 상황의 개선에 기여한다. 실제로 아동권리협약은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아동권리협약 비준 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준국으로서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협약의 역할과 영향력을 보다 극대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본적 과제는 먼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약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지속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정도를 진단하여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약 이행 점검작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책적 개선노력의 현황과 한계 등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언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2003년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독립적 조사권한과 충분한 자원을 갖는 모니터링 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면서 2015년부터 사업을 종료하였다. 이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 예산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어 2015년부터 독립적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 내 자체 협약점검 기구와 독립적 조사권을 갖는 인권 모니터링 기구는 각자의 위상과 기능에 따라 각자 영역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전자를 중단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 결과 현재는 정부 내 상설 협약 모니터링 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먼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로 수행될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의 연도별 추진과정을 5개년(안)을 주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Ⅰ-2-1]과 같다.

연도	주요 내용	특별과업(안)
1차년도 (2017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연구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연구 추진시스템 구축 – ① 협약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주무부처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 – ② 연도별 예상 주요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에 따른 특별과업(안) 마련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③ 심화분석보고서 : 특정 인권주제 심층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5·6차 CRC 국가보고서 유엔 제출 (2017. 6. 19) – 제4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심의(9월) – 제3기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보고서 제출(8월), 심의(11월) : 아동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추진 : 아동·청소년분야 – 제3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여성가족부, 3년 주기)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업 지원 [협약 작업집단 및 주무부처 협업]
⇩		
2차년도 (2018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③ 심화분석보고서 : 특정 인권주제 심층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5·6차 CRC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 및 UN 사전 심의(예상) – 제8차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2018.2) : 여성아동 이슈 – 제3차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보건복지부, 5년 주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시행	세부 인권이슈 정책리포트 : 협약이행 우선추진과제 중 주제 선정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전에 제도 개선 추진 지원)
⇩		
3차년도 (2019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③ 심화분석보고서 : 특정 인권주제 심층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5·6차 CRC 국가보고서 추가자료 제출 및 유엔 본심의(예상) –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 장애아동 이슈 –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제출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종료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아동정책영향평가(아동복지법 11조의2) 시행 예정	제5·6차 국가보고서 쟁점목록 (List of issues) 추가보고서 작업 지원 [주무부처 협업]
⇩		

4차년도 (2020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③ 심화분석보고서 : 특정 인권주제 심층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결과 최종견해 국내 확산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수립·시행	협약 이행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권고사항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및 담당부서 설정 [주무부처 협업]
5차년도 (2021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③ 심화분석보고서 : 특정 인권주제 심층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평가 및 제4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22~2026) 수립 : 아동·청소년분야 – 제4기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 2021~	5개년 연구성과 종합분석 및 2022년부터의 5개년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그림 Ⅰ-2-1】 연도별 추진계획(안)

1) 연구내용

(1) 아동권리협약 이행 연구 중장기 계획 수립 : 협약이행 점검체계 마련

본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중장기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서 향후 연구의 중장기적 틀을 구축하는 기초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제3기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아동권리협약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가 수행하고 있는 '정부 내 협약이행 점검 작업'과의 협업을 통해 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017년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로 본 연구진과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업팀과 협업을 통해 정부부처별 관련부서의 협약 이행성과를 취합·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모니터링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매년 수행되는 인권지표 결과 생산과 협약이행 점검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중기계획(안)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상시적인 협약 이행연구와 더불어 연도별로 주요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에 따라 수행해야할 특별과업(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예산 여건이 불가능했던 취약집단 등 하위대상별 인권실태 파악과 다양한 인권 주제와 쟁점 등을 세부 인권이슈 정책리포트 형태로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3] 정책리포트의 세부 주제는 매년 본원의 고유과제 주제선정 현황과 사회적

이슈에 따른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의성있게 선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추진계획안은 [그림 Ⅰ-2-1]로 정리하였다.

(2)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점검체계 보완 및 2017년도 인권실태 분석

본 연구는 아동권리협약의 종합적 이행 점검에 방점을 두고 기획된 신규과제이지만 본원 인권연구의 큰 흐름을 잇고자 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제3기 성격을 가진다. 협약이행 점검의 한 영역은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실태와 진전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 점검은 제2기 인권연구를 통해 개발한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보완 활용하여 진행함으로써 통계청 승인통계로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승인번호 402001).

제2기 인권실태 연구(2011~2016)를 통해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도구로서 인권지표체계(148개 지표항목: 60개는 설문조사, 88개는 행정통계와 타조사결과 활용)를 정비하고 인권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하여 2017년에는 135개 지표항목을 구성하였다(52개는 설문조사, 83개는 행정통계와 타조사결과 활용). 환경변화에 따른 보완 지표 발굴, 지표정의 및 자료원의 표준화 및 엄밀화, 그리고 효율적 지표결과 생산을 위해 지표관련 통계 생산 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지표 개선 작업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매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유엔의 인권지표 논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등의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도구는 제2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소폭 보완하여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연도별 추이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분석 : 법·제도·정책적 이행성과 및 과제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모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국가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모든 영역의 인권 개선을 위해 법・제도・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정도를 국가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본 연구가 수행할 협약이행 점검의

3)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정책이슈와 하위대상별 인권실태 파악 등 특별과업으로 수행할 정책리포트는 다양한 주제와 방법 풀을 검토하도록 한다(예시 : 주제별 – 제3선택의정서 연구, 유보조항 연구, 미가입 국제조약 연구, 보편적 출생등록제 연구, 협약 이행 국가별 비교 연구, 아동예산 관련 연구, 모든 영역에서 체벌 전면 금지 관련 연구 등, 대상별 인권실태 – 장애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 구금·보호관찰소 청소년, 대안양육상황 아동, 빈곤, 농어촌, 북한이탈,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방법론별 – 질적 연구 보완, 대상 다양화 – 부모, 교사, 세부 주제 관련 성인 종사자 대상 조사 등)

한 영역이 두번째 연구내용인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실태와 진전상황이며, 다른 한 영역은 세번째 연구내용인 정부의 법・제도・정책적 개선조치 성과라 할 수 있다. 2017년은 정부가 유엔에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협약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해보는 작업을 통해 협약 이행 관련 자체평가를 시도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심의과정에 대비하여 추가적 이행노력이 필요한 미이행 권고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이행 점검 결과인 법・제도적 상황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 분석 : 데이터 심화분석보고서 발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인권영역별로 기초적 실태 파악을 위한 문항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제2기 인권연구 3년째인 2013년도에 인권지표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면서 인권의식과 태도 관련 문항, 인권관련 학교 요인,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특성 등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인권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한 주제들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인권실태 데이터와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과 이론적 활용도를 높여 학계와 현장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인권태도 영향요인,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 요인, 인권의식에 관한 구조분석,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 관련 요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영향요인 등과 관련된 소논문들이 발간되었다. 심층적인 아동·청소년 인권관련분석(영향요인, 인과관계 등)을 시도하는 작업을 통해 여러 요인과의 관련성 등을 밝혀내어 인권 신장 방안, 인권역량과 의식 제고 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을 주제로 인권 데이터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교육 특히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였으며,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주제를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자료 및 인권지표, 그리고 인권 모니터링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 관련 다양한 실태조사보고서와 정책분야별 행정통계를 검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지표연구 및 인권통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지표연구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개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및 지표결과 생산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성과 점검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과 유엔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운영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특히 한국정부의 협약 이행점검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법령, 정책 및 사업관련 자료, 중장기계획, 보도자료 등 다양한 현황자료를 검토하였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협약 주무부서와 협업을 통해 21개 관련부처(113개 부서)에 요청하여 취합한 부처별 협약 이행성과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제3기 연구의 중장기적 추진을 위한 연구목적 및 범위, 내용 및 방법 등 전반적인 연구방향 및 수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3. 10), 국가승인통계로서 인권실태조사 결과의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자문(3. 17), 인권지표체계 및 설문문항 검토를 위한 자문(4. 6), 지표체계와 자료원 및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회의(7. 18, 8. 21) 등을 실시하였다. 4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인권지표체계와 설문지 보완을 위해 조사지를 통한 서면 자문을 실시하였다. 3월 실행계획 발표회와 6월 중간보고 발표회를 통해 연구설계와 내용 및 진행경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연구의 개선점을 보완하였다.

(3) 설문조사

① 설문조사 개요[4)]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제402001호)로 지정되어 실시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유엔에 제출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작성 기준에 맞추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7개 영역에서 인권지표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해 왔다. 매년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분과회의, 워크숍 등을 거쳐 최대한 정비하였으며, 단 시계열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위해 문항수정은 최소화하였다. 2017년에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함께 해당 조사항목을 점검, 수정하였다.

표본설계는 표본설계 전문가와 연구진, 실사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표본 수를 확정하고, 성별, 학교급, 고등학교 유형, 지역 등 할당에 대한 표본배분 방식과 대체표본 등을 결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가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조사원의 역할이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연구진의 모니터링 하에 조사원 선발 및 교육이 면밀히 진행되었다. 조사원 교육은 서울, 대전, 부산에서 집체교육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학교의 조사협조를 위해 본 조사의 발주 및 실사기관, 조사취지와 내용·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안내문을 공문과 함께 발송하고 전화접촉을 통해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사거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표본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② 표본설계[5)]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표본 수는 2016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전년도와 같은 규모인 9,000여명(초등학생: 2,600명, 중학생: 2,905명, 고등학생: 3,494명)을 추출하였다.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1.0%P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클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본 조사의 학교급과 학년별 모집단 크기와 목표 표본 크기는 <표 Ⅰ-2-1>과 같다.

---

4) 조사개요는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별도로 발간되는 통계자료집에 좀 더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일부 내용을 축약·보완하여 기술하였다.

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표본설계는 본 실태조사를 포함한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따라서 표본설계 내용은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들과 공통적으로 수록되었다. 이 총괄보고서에는 표본설계에 대한 일부 내용만 연구진에 의해 축약·제시되었으며, 이후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에 따른 표본설계 제공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문은 통계자료집에 게재하였다.

표 Ⅰ-2-1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 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29,879	1,294,448 (28.9%)		2,600 (28.9%)		2,520 (28.0%)	
		5	414,916						
		6	449,653						
중학교	중학교	1	467,388	1,446,158 (32.3%)		2,905 (32.3%)		2,772 (30.7%)	
		2	457,645						
		3	521,125						
고등학교	일반고	1	418,200	1,238,897 (27.7%)	1,739,458 (38.8%)	2,489 (27.7%)	3,494 (38.8%)	2,511 (27.9%)	3,723 (41.3%)
		2	405,945						
		3	414,752						
	자율고	1	46,570	136,969 (3.1%)		275 (3.1%)		450 (5.0%)	
		2	45,614						
		3	44,785						
	특성화고	1	112,918	334,651 (7.5%)		672 (7.5%)		624 (6.9%)	
		2	109,702						
		3	112,031						
	특수 목적고	1	9,847	28,941 (0.6%)		58 (0.6%)		138 (1.5%)	
		2	9,910						
		3	9,184						
합계				4,480,064 (100.0%)		9,000 (100.0%)		9,015 (100.0%)	

주: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본 조사의 표본배분은 변형비례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배분할 경우 특정한 층에 표본크기가 너무 작게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해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6]. 따라서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배분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수가 9,000명을 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6) 통계자료집 pp.28-29 해당 표 참조

표 Ⅰ-2-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5(5)	15(5)	12(4)	3(1)	6(2)	
경기	27(9)	24(8)	21(7)	3(1)	3(1)	
인천	6(2)	6(2)	3(1)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3(1)	3(1)			
대전	3(1)	3(1)	3(1)			
세종	3(1)	3(1)	3(1)			
경북	6(2)	6(2)	3(1)	3(1)	9(3)	6(2)
경남	6(2)	6(2)	6(2)			
부산	6(2)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전북	3(1)	3(1)	3(1)	3(1)	3(1)	
전남	3(1)	3(1)	3(1)			
광주	3(1)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05(35)	99(33)	81(27)	15(5)	24(8)	6(2)

*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30(110)개

표 Ⅰ-2-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360	420	372	90	156	
경기	648	672	651	90	78	
인천	144	168	93			
강원	72	84	93	90	78	
충북	72	84	93			
충남	144	84	93			
대전	72	84	93			
세종	72	84	93			
경북	144	168	93	90	234	138
경남	144	168	186			
부산	144	168	93			
대구	144	168	93			
울산	72	84	93			
전북	72	84	93	90	78	
전남	72	84	93			
광주	72	84	93			
제주	72	84	93			
합계	2,520	2,772	2,511	450	624	138

* 총계: 9,015명

고등학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일반고에는 일반고와 종합고등학교, 자율고에는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에는 가사・공업・농림업・상업・실업・해양고등학교와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 외국어고등학교가 포함된다. 특수목적고에는 과학, 국제, 외국어 고등학교가 해당된다. 총괄보고서에 제시하는 통계표 및 이에 따른 분석 및 기술에서는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내용이나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판단될 때는 고등학교 유형별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 기초통계결과는 통계자료집에서 모두 제시되어 있다.

표본설계와 관련한 더욱 상세한 내용, 즉 표본크기,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성별 사후층화, 가중치, 모수추정 등은 통계자료집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표본 수는 총 9,008명으로 학교급별, 고교유형별로 보면, <표Ⅰ-2-4>와 같다.

표 Ⅰ-2-4 2017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조사대상 현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고 학생	자율고 학생	특성화고 학생	특수목적고 학생	계
할당 표본 수	2,520	2,772	2,511	450	624	138	9,015
조사완료 표본 수	2,658	2,770	2,390	454	592	144	9,008

조사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된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이 52.0%, 여학생이 48.0%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8.9%, 중학생 32.3%, 고등학생 38.8%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 학생이 41.7%, 중・소도시지역 학생이 44.0%, 읍・면지역 학생이 14.2%이었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 가정의 학생이 90.5%, 한부모 가정의 학생이 7.3%, 조손가정의 학생이 1.0%이었으며,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가정의 학생은 1.2%이었다. 학생 본인의 학업성적이 높다고 인식한 학생은 33.7%, 중간이라는 학생은 42.8%, 낮다고 응답한 학생은 23.5%이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한 학생은 54.5%, 중간으로 인식한 학생은 35.0%, 낮게 인식한 학생은 10.5%였다(<표 Ⅰ-2-5>).

표 Ⅰ-2-5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9,008	100.0
성별	남자	4,686	52.0
	여자	4,322	48.0
학교급	초등학교	2,603	28.9
	중학교	2,908	32.3
	고등학교	3,498	38.8
고교유형	일반계고	2,825	31.4
	특성화계고	673	7.5
지역규모	대도시	3,760	41.7
	중소도시	3,968	44.0
	읍면지역	1,280	14.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149	90.5
	한부모가정	655	7.3
	조손가정	86	1.0
	기타	110	1.2
학업성적	상	3,034	33.7
	중	3,856	42.8
	하	2,112	23.5
경제적 수준	상	4,905	54.5
	중	3,151	35.0
	하	946	10.5

③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기본 틀로 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작성 기준에 맞도록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7개 영역에 따라 구성하였다. 시계열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위해 문항수정은 최소화하였으나 전문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일부 기존 문항들을 검토·논의하였다.

본 조사지의 최종안을 구성하기 전에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2017년 4월 17일~18일). 이때 조사완료에 소요된 시간, 조사문항별 불편도, 조사 집중도 하락 시점 등도 검토하였으며, 일부 어휘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변경하고, 인권관련 전문용어나 관련 기관 등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지 편집을 차별화하여 아동·청소년입장에서 보다 조사에 용이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전문가를 통한 조사내용 재검토, 설문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및 어휘·용어 수정, 또 설문내용 로직과 가독성을 고려한 편집 및 디자인 제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특히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와 설문문항 순서차이에 따른 독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2017년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두 번째 대분류인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해당되는 조사문항부터 인권지표체계와 동일하게 순서를 구성하여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 2종의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표 I-2-6 2017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수정*)			문항 번호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2016	2017	2016	2017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33(1~3)	34(1~3)	41(1~3)	44(1~3)
		인권의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41(1~5)	35(1~5)	43(1~5)	45(1~5)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결정능력	35(1)	36(1)	44(1)	46(1)
		-(2)사회참여	35(2)	36(2)	44(2)	46(2)
		-(3)자치조직	-	-	44(3)	46(3)
		-(4)표현의 자유	35(3)	36(3)	44(4)	46(4)
		-(5)차별(경제적이유)	-	-	44(5)	46(5)
		-(6)차별(성별)	35(4)	36(4)	44(6)	46(6)
		-(7)차별(민족,인종)	35(5)	36(5)	44(7)	46(7)
		인권교육 경험	16	37	17	47
		인권교육 받은 기관	16-1	37-1	17-1	47-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16-2	37-2	17-2	47-2
	일반원칙	차별 피해 경험* (척도)	37(1~10)	38(1~10)	46(1~10)	48(1~10)
		차별 가해 경험* (척도)	36(1~10)	39(1~10)	45(1~10)	49(1~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 표명권, 표현의 자유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17(1~4)	1(1~4)	18(1~4)	1(1~4)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	30(1-4)	2(1~4)
		학급회의 운영 여부	30	2	32	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30-1	2-1	32-1	3-1
		학생회 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	31	4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초등: 학급→학교규칙)	28(1)	3(1)	33(1)	5(1)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9	4	35	6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	-	37	7
		참여권 보장 수준	31	5	38	8
		참여 장애 이유	32	6	39	9

조 사 내 용 (수정*)			문 항 번 호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2016	2017	2016	2017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초등 삭제)	38(2~4)	–	40(2~4)	10(2~4)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	34,34–1	11,11–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초등 삭제)	38(1)	–	40(1)	10(1)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	36	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	36–1	12–1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중등 : 척도)	–	–	29(1~3)	13(1~3)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	33(2)	5(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28(2)	3(2)	33(3)	5(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28(3)	3(3)	33(4)	5(4)
	정보접근권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초등: 학급→학교규칙)	28(4)	3(4)	33(5)	5(5)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초등 삭제)	34(1~3)	–	42(1~3)	14(1~3)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척도)	20(2,4,6)	7(2,4,6)	21(2,4,6)	15(2,4,6)
		폭력피해 경험* (척도)	21(1~7)	8(1~7)	22(1~7)	16(1~7)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척도)	22(1~5)	9(1~5)	23(1~5)	17(1~5)
		체벌 경험률* (척도)	20(1,3,5)	7(1,3,5)	21(1,3,5)	15(1~6)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방임유형 및 정도* (척도)	18(1~5)	10(1~5)	19(1~5)	18(1~5)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19	11	20	19
		가출 이유	19–1	11–1	20–1	19–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만족도	–	–	20–2, 20–3	19–2, 19–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사고 및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률 (교통사고, 범죄, 먹거리, 학교급식)	4 40(1~3)	12 13(1~3)	4 49(1~3)	20,29 21(1~3)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6	14	6	22
		운동 실천율	5	15	5	23
		아침식사 결식률	3	16	3	24
		아침식사 결식이유* (⑤가정형편,⑥다이어트 삭제)	3–1	16–1	3–1	24–1
		수면시간	1	17	1	25
		수면부족 여부	2	18	2	26
		수면부족 이유* (⑤인터넷 이용내용 수정)	2–1	18–1	2–1	26–1
		자살에 대한 생각* (선택지 ⑤ 미래불안 추가)	–	–	8	27

조 사 내 용 (수정*)			문 항 번 호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2016	2017	2016	2017
		자살 생각 이유	–	–	8–1	27–1
		우울감	9(1~3)	19(1~3)	10(1~3)	28(1~3)
		자아존중감	9(4~7)	19(4~7)	10(4~7)	28(4~7)
		스트레스 인지율	7(1~6)	20(1~6)	7(1~6)	29(1~6)
		행복도	10	21	11	30
		행복하지 않은 이유* (⑦하고싶은 것 못함 삭제)	10–1	21–1	11–1	30–1
		삶의 만족도	11	22	12	31
		고민거리 대화상대	8	23	9	32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학업포기 생각여부	13	24	14	33
		학업포기 생각 이유	13–1	24–1	14–1	33–1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1)친구가 나를 존중 –(2)선생님이 학생 존중 –(3)선생님 공정함* ((3) 삭제) –(4)학교가는 것이 즐거움	14(1~4)	25(1~3)	15(1~4)	34(1~3)
	교육의 목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15(1~4)	26(1~4)	16(1~4)	35(1~4)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척도)	23	27	24	36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25	28	26	37
		동아리활동 참가율	26	29	27	38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24	39	25	39
		하루평균학습시간	12	31	13	40
		여가활동 및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23–1	27–1	24–1	36–1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27	32	28	41
7. 특별보호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	–	47, 47–1 (1~9)	42, 42–1 (1~9)
	성적 착취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9	33	48	43
		성적 피해시 도움제공자 * (⑨인터넷 삭제)	39–1	33–1	48–1	43–1

(4) 전문가 의견조사

인권지표체계의 지표항목별 중요도와 정책과제 중요도 판단을 위한 계량화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두 가지 큰 조사영역으로 구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수정・보완된 2017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연구진(안)

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자 1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지에 지표항목별 중요도 점수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계량화된 근거자료와 비교・확인하며 최종적으로 2017년 인권지표 확정작업을 수행하였다. 두번째로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1차 논의된 정책과제를 포함하여 정책과제별 중요도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 최종정책과제 선정 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9월 27일부터 10월 초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장기적으로 현재 135개 지표에서 핵심지표 중심으로 100개 정도의 지표항목까지 개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부여한 지표 중요도 점수는 후속 연구에도 지속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각 인권지표영역별, 그리고 소분류별 세부인권지표항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중요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소분류 수준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지표항목만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표 I -2-7>)[7]. 과 같으며, 모든 인권영역 분류 및 지표항목을 망라하고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의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5점 만점 기준 평균점에서 4.91점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2.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에서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M=4.73), '3. 폭력 및 학대'영역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M=4.82), '체벌경험률' 및 '방임'(M=4.7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영역의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수준'(M=4.73), '7. 특별보호조치'영역의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M=4.73)이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다.

표 I -2-7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세부지표항목 중요도 조사결과(높은 평균치 항목 제시)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제4조, 42조)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4.91	0.30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4.27	0.47
		인권교육 경험*	4.00	0.63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차별받은 경험*	4.36	0.50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4.27	0.65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4.45	0.52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4.73	0.47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4.55	0.69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사상의 자유 보장정도*	4.09	0.83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4.09	0.70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4.18	0.60

7) 여기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소분류항목은 삭제하여 제시하였다(전체 조사결과는 〈부록 5〉참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표준편차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용모 · 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4.00	0.63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4.45	0.69
	정보접근권 (제17조)	유해매체 이용률	4.18	0.60
		아동 · 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4.45	0.52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4.82	0.40
		체벌 경험률*	4.73	0.47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방임 정도*	4.73	0.47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4.64	0.67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업무량)	4.64	0.50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부모와의 대화시간	3.91	0.83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4.18	0.40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18	0.60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청소년(제20조)	입양 사후조치(입양성공률/파양률)	4.64	0.50
		요보호아동 현황	4.45	0.52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45	0.52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양육 · 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64	0.50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장애(제23조)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4.36	0.67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4.36	0.67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영아 · 아동 · 청소년 사망률	4.36	0.50
		사고 사망률	4.45	0.82
		범죄 피해율	4.55	0.52
	보건서비스 (제24조)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4.27	0.47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4.36	0.50
		흡연율	4.27	0.65
		음주율	4.27	0.65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주관적 건강평가*	4.00	0.89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4.27	0.65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4.27	0.90
		우울증*	4.64	0.50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아동 · 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4.55	0.69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4.73	0.47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제28조)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4.27	0.79
		학업중단율	4.55	0.52
		대안학교수와 종류	4.18	0.87
	교육의 목표(제29조)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4.00	0.77
		대안교육 현황	3.91	0.30
		직업교육 현황	3.91	0.30
	여가, 놀이 및 문화 · 예술 활동(제31조)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4.27	0.65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4.55	0.52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4.36	0.81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표준편차
7. 특별 보호 조치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4.82	0.40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4.64	0.50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중도탈락률	4.64	0.50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4.18	0.60
	소년사법아동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4.45	0.5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4.45	0.5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4.55	0.5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4.36	0.50
	경제적 착취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4.55	0.69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4.73	0.47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4.27	0.47
	성적 착취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	3.64	0.9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4.55	0.52
		아동 ·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4.55	0.5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4.55	0.52
		성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4.45	0.5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 · 상담 실시 인원	4.45	0.52
		재활을 위한 심리 · 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4.45	0.52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주요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전체 조사결과는 <부록 5> 참조). 먼저,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영역에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에 대한 내용이, '2.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에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관련 법률조항 및 이행 실태조사 실시 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3. 폭력 및 학대'영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아동보호 전문 인력 확대를, 그리고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영역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 직접양육을 위한 다각적 지원 확대, 청소년 한부모와 그 가족(아동 부)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의 과제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유사한 내용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 청소년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 관련내용은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아 향후 이와 관련된 내용의 포함 여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영역에서는 장애아동의 일반아동과의 통합교육률 제고, 무국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 지원 확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영역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노력을 위한 공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확대, 마지막으로 '7. 특별보호조치'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확대 강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의 과밀화현상 해소 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연구진들은 본 연구의 정책과제 제안 시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결과와 행정통계 및 2차 자료 분석 결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이와 같이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중요하게 선정된 내용들도 가능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5) 국외출장

국제사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파악을 통해 국내 협약이행 방안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요 인권단체와 인권연구소의 전문가 면담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동향과 이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방문하여 아동인권 모니터링 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회의(제75차 회기)를 참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아동권리 동향과 이슈를 파악하고 협약이행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외출장은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되었다. 제75차 회기 중에 앤티가바부다와 카메룬의 정부대표단이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들의 질의・응답과정 참관을 통해 유엔의 모니터링 절차와 세부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번째 연구내용에서 언급했듯이 제3기 연구는 협약이행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주무부처와 협약모니터링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협약 담당공무원과 국외출장을 동행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을 공유하고 2017년 대한민국정부 국가보고서 제출과 2년 내 유엔심의 등의 일정 진행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한 논의하였다. 인권이슈 동향과 관련하여서는 유엔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지표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SDGs) 지표에 대해 필수적 검토가 필요하며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에 대한 논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민간단체인 Child Rights Connect, 국제아동인권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Rights of the Child), 제네바대학교 아동인권연구소(Center for Children's Rights Studies) 담당자 면접을 통해 민간차원의 인권모니터링 활동과 인권자료 발간사업,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ild Rights Connect는 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 촉구를 위한 연합단체의 핵심조직으로 제3선택의정서 관련 다양한 설명자료 등을 생산하고 있었고, 그 중 선택의정서 주요내용에 대한 FAQ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활용하도록 제안함에 따라 본 보고서 정책과제 중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과제에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전문가협의회, 전문가워크숍 개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 현안 및 정책과제 발굴 및 검토, 협약이행 점검 연구의 효율적 수행 방안, 협약이행 점검 시 부처 지원체계 논의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아동권리업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와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업을 공동수행하면서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작업을 협업으로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본 연구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작업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와 협업구조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협의회는 제3기 연구부터 강화한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 인권영역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하여 국가보고서 작업자료 분석을 통해 협약성과 평가 및 이후 개선과제 도출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 전문가 집단은 집필진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전문가워크숍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작업을 위해 총4회 개최하였다. 7개 지표영역별로 나누어 심층 검토를 실시하였으며(5. 12, 5. 17, 6. 12, 7. 18) 그 중 1회(7. 18)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와의 연계논의를 위해 통계청 SDGs 담당 사무관과 해당분야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로 진행하였다. 9월에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워크숍을 개최하여 민간 및 학계 전문가 6인이 참석하여 7개 대분류 영역별로 정부가 이행해야 할 아동・청소년 인권신장 과제를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정책과제 워크숍에서 발굴된 정책과제 풀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7) 정기통계품질진단 컨설팅 실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1호)로 그 동안 자체품질진단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통계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왔다. 또한 매년 조사내용이나 방법 등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통계청에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 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의 모든 종류의 모니터링과 승인 절차를 받아 왔다.

올해는 그동안의 자체 품질진단이나 변경승인신청과는 달리 훨씬 높은 수준의 품질진단을 요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에 됨에 따라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조사개요,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조사 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 품질진단에 필요한 다수 항목에 대한 상세내용이 담긴 '통계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제출하였다(2017년 3월). 제출한 보고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품질진단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통계청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함께 받게 되었다. 품질진단 결과를 품질차원별로 보면, 관련성과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등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결과를 획득하였고, 접근성과 명확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통계청 간담회(6월) 및 품질진단결과보고회(7월) 등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통계청과 관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질적 수준 유지와 개선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 Ⅱ 장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관련 국제적 논의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논의

제 II 장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8)]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

1) 아동 · 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 모니터링 연구[9)]

2011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직후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점검 논의가 있었고,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과 인권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먼저,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 · 4차 권고 직후 협약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로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1. 12)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 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보고 및 전문가 토론회, 유엔인권정책센터 · 대한변호사협회(2011. 12)의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2012. 3)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 ·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아동권리협약 전반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권리협약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정기 모니터링 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협약이행 점검을 추진하였다. 2007~2013년도까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인권모니터링 결과를 수록하고 있듯이 옴부즈

8)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김희진 연구위원,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 김진호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박환보 교수(충남대학교)가 집필하였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1절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을, 김희진 연구위원은 2절의 1) 유엔 및 유럽연합의 인권지표 연구 동향을, 박환보 교수는 2절의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부분을 집필하였다. 3절은 네 명의 연구진이 담당하고 있는 지표별로 보완사항을 집필하였으며 7개 지표 대분류 영역별 분담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1영역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과 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을, 김희진 연구위원은 3영역 폭력 및 학대의 3-1 중분류와 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그리고 5영역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대분류 영역 5-4와 5-5 중분류를, 이민희 교수는 3영역의 3-2 중분류와 6영역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을, 김진호 교수는 5영역의 5-1, 5-2, 5-3 중분류와 7영역 특별보호조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9)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 모니터링 연구' 부분에서 언급한 자료들은 참고문헌에서 별도로 정리·제시하였다.

퍼슨을 위촉·운영하여 광범위한 인권영역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위탁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굿네이버스). 2013년까지의 모니터링이 민간 차원의 점검이었다면 2014년도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는(보고서 발간은 2015년 2월)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기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점검,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 취합·분석결과를 담고 있어, 최초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를 중심으로 정부 내 모니터링을 시도한 결과로 볼 수 있다(위탁기관 : 국제아동인권센터).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실태와 의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아동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1차(2008년)와 2차(2013년 실시)(위탁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가 실시되었다.

셋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정기조사 및 협약이행 연구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파악을 위해 인권지표와 체계적 통계수집체계를 마련하라는 유엔 권고에 따라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2011~2016)를 수행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대상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매년 반복횡단조사를 실시하여 변화추이를 파악하였다. 동 연구의 세부 작업으로 2014년에는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별권 보고서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협약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김경준, 이호균 외, 2014). 2015년에는 수시과제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김영지, 김희진, 2015)'를 통해 협약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권고사항별 정책과제를 개발·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가 각 부처별 협약이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에 기반한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모니터랑 결과보고서의 후속작업 성격으로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연구 및 인권실태 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2014. 11)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고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2015)' 연구를 통해 협약 조항별 의미와 실태, 정책적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비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2015년부터 인권현장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2015년 가정밖 청소년 인권, 2016년 학교 거점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2002년부터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연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24건의 인권주제별 실태 결과를 도출하였다(<표 Ⅱ-1-1>)

다섯째, 청소년정책 분야의 청소년인권 전담기구 운영 및 청소년실태조사 관련 사항이다. 청소년분야의 인권 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 사업결과보고서(2011~2016)에 따르면 청소년

인권 주제별 토론회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과 청소년 및 청소년관계자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3년 주기)를 통해 청소년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1차 2011년, 2차 2014년, 3차 2017년 실시).

지금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포괄적 점검과 실태 파악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점검현황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약이행 점검과 관련하여 정부 내(보건복지부) 모니터링기구가 운영되었던 2014년까지는 상시 점검이 가능하였으나, 이후에는 필요시 단편적 작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시과제로 추진되었고(협약 권고사항 이행 성과지표 산출 관련 협약 이행방안 연구), 2016년에는 수탁과제로 추진되는 등(국가보고서 기초연구) 2014년까지 매년 진행해온 체계적・종합적 협약 모니터링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필요 시 과제단위로 협약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형태로는 상시 협약 모니터링이 진행되기 어렵고 점검 결과와 자료의 지속적 축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부처 내 안정적 협약이행 점검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2014년까지 정기적으로 수행되던 종합적 협약이행 점검 작업 중단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관련한 작업이다. 아동과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긴 주기(아동 5년, 청소년 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간의 연계・조정 미흡,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대상 제한점(매년 학생대상 조사 실시) 등이 발견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그나마 다양한 인권상황에 대한 이슈와 집단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표 Ⅱ-1-1>) 예산 제한으로 1년에 1~2건의 인권주제에 대한 조사만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을 확대하여 다양한 인권 주제와 취약집단,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각적 연구조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 인권업무 담당 주체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아동・청소년 인권 사업 담당주체별로 독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영역 모두가 예산과 자원 불충분 문제로 큰 작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보와 현황 공유로 자원 연계 및 역할 분담 등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주체들(부처)간 협약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연계 및 자원 배분 논의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표 II-1-1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도	실태조사 내용
2002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2005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연구
	학령기 장애아동 통합교육 현황 실태조사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 지표마련을 위한 연구
2006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상황 실태조사
	학생운동선수 등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
	아동학대 실태조사
2007	빈곤층 아동급식제도 실태조사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실태조사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연구
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스포츠 성폭력 실태 및 중고교 학생선수 중심
2009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0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학생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2011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2012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5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2017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자료

2) 국제적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의 이해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연구로서, 국제사회의 협약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매 5년마다 아동권리 증진 이행 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하는 일은 국제적인 차원의 아동권리 모니터링(monitoring)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을 냄으로써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43조에 따라 1991년에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나, 2005년에 18명으로 증원되었다. 위원회는 1년에 3회기(1월, 5월, 9월) 제네바에서 열리는데, 한 회기는 3주간의 정기회의와 다음 회기 심의 국가에 대한 1주간의 사전 회의 등 4주간으로 구성되며 한 회기에 평균 9개국의 심의가 진행된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6: 74-75). 위원회는 본회의 전에 사전 실무그룹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여 비정부 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단체 등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쟁점 목록(list of issues)을 작성하여 정부 측에 추가 정보 제출을 요청한다. 당사국은 3개월 이내에 쟁점 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제네바에서 심의회의가 개최된다. 아동권리위원 중 2인은 국가보고관(rapporteur)으로 임명되어 해당 국가에 대한 심층 검토를 하게 된다.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라 부르는 본 회의는 해당국의 대표단이 제네바를 방문하여 3시간씩 두 차례 위원회와 질문과 답변 과정으로 진행된다. 심의가 끝난 후, 위원회는 긍정적 성과, 우려사항과 권고 등을 담은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당사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과정에서 개선 노력의 주요 기준이 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ohchr.org/EN/HRBodies/C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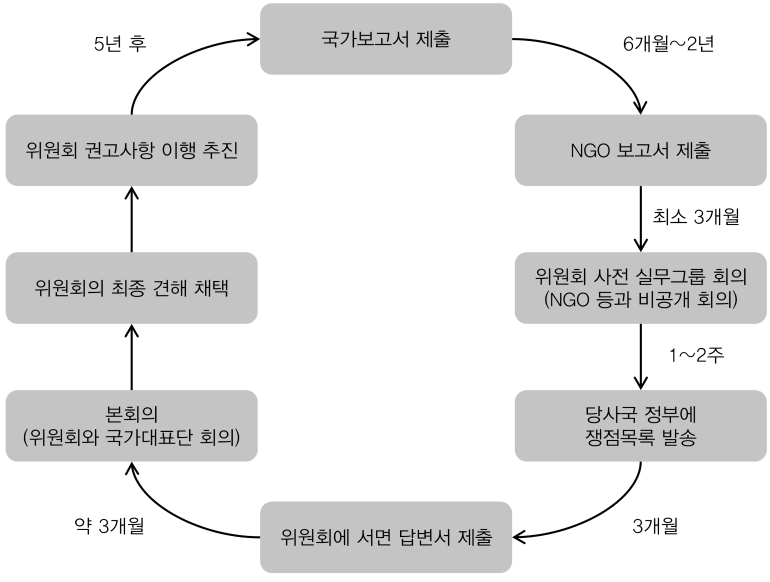

* 출처 : Theytaz Bergman, L., Fegan, R., Myers, L. (2014). p.4. 보완

【그림 II-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

본 연구 일환으로 제네바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정기심의회의 참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이내에 심의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권고사항 이행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기대하므로 정부의 추진 노력이 아동·청소년의 삶과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실질적으로 성과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최근 자료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고서에 충분한 정보가 담기지 않은 이슈가 있다면 예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사전에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하지 못한 사유 및 추후 이행 계획 등을 제시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해야 한다. 권고사항 이행의 어려움이나 국내적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솔직하고 타당성 있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심의회의 참관 결과, 새로운 아동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개 국가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전체 조항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결시킨 권고사항이 등장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관련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개발한 '인권지표'연구를 고려할 것, '청원절차에 대한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등의 권고의견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과 복지 영역에 '아동권리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일반원칙 영역에 'LGBTI(성소수자)'아동인권에 대한 언급도 볼 수 있다.

인권조약부서 대표자의 개회발언에서도 강조된 '제3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OPIC)'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그동안 제출된 15개 진정사안 중 3개를 심의한다. 그 외 제출된 80여개 사례는 청원절차에 대한 선택의정서에 관심을 보여준다. Child Rights Connect 등 아동권리 전문기관에서 제작된 리플릿 번역·배포 등의 방법으로 국내 제3선택의정서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는 노력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8명의 아동권리위원 중 2019년 2월 28일 임기만료가 9명, 2021년 2월 28일 임기만료인 위원이 9명으로, 2021년까지 재직할 9명의 위원이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바레인, 러시아, 잠비아, 에티오피아, 우루과이, 남아프리카,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2017년 6월에 심의를 받은 2개 국가의 다음 국가보고서 제출일정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통합보고서 형태로(예 : 5·6차 국가보고서, 6·7차 국가보고서 등)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 기한은

2022년으로, 위원회가 5년마다 모니터링을 하는 규정상 주기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개 국가가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시기는 2015년경이었고 심의회의는 2017년 진행된 것을 볼 때, 한국 심의일정의 경우 2017년 정부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2019년경에 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전에 위원회와 민간단체 사전회의와 쟁점 목록 서면 답변서 제출 요청 등의 절차가 있을 예정이므로 2018년도에도 지속적・적극적으로 협약이행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참관 국가의 쟁점 목록 중 아동관련 예산을 국가예산과 GNP 대비 백분율과 지역적 분배 정보를 제시하도록 한 점, 당사국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우선순위라고 생각되는 분야를 열거하도록 한 질문, 성소수자 아동 차별예방 조치, 출생신고 관련 통계자료 제출 요청 등이 있었던 점을 참고해 한국 상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관련 국제적 논의

1) 유엔 및 유럽연합의 인권지표 연구 동향[10)]

그동안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지표체계를 검토·발전시켜왔다. 그 일환으로 2013년과 2014년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는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인 FRA(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의 아동·청소년인권지표를 포함한 해외사례를 제시한 바 있으며, 더불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와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더욱 체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발달, 교육, 복지 등이 아동·청소년 인권영역에도 대부분 포함되는 특성상 인권지표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지표체계가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인권실태나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국가를 포함한 의무이행자들(duty-bearers)의 노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결국 지표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

10) 본 내용의 일부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총괄보고서」(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2014)의 III장 1절의 '1) 해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pp.185-203)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본 내용에 포함된 UN OHCHR(2012), EU의 FRA(2010), Vaghri et al(2010) 관련 내용은 일부 재인용(김영지 외, 2013, 김경준 외, 2014에서)하거나 원출처를 재번역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영역별 인권지표체계를 좀 더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2년에 제시한 '인권지표: 측정 및 이행을 위한 지침'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틀(framework)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지침은 인권관련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있어 적절한 방법론에 기초한 보다 개념적, 실증적으로 유효한 지표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국제조약 및 협약 전문가, 인권관련 학자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토론 및 검토를 거쳐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사용되는 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있다(UN OHCHR, 2012; 김영지 외 2013 재인용). 이 지침에서 인권지표는 인권 이행과 노력, 결과(commitments-efforts-results)를 측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이행자(우선적으로 당사국 또는 국가)의 노력뿐 아니라, 권리주체자(rights-holders)의 인권실현과 인권향유를 보장하는 의무이행자의 노력의 결과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UN OHCHR, 2012). 따라서 이 '인권지표: 측정 및 이행을 위한 지침'은 권리주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하기 위해 의무이행자, 그중에서도 일차적으로 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structural), 과정(process), 성과(outcome)로 구분되는 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있다(UN OHCHR, 2012).

구조지표(structural indicators)는 한 국가가 인권조약을 비준한 후 해당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기본적인 제도적 기제가 마련되었는지 여부와 법적도구의 비준·채택 여부 등을 반영하고 있다(UN OHCHR, 2012). 구조지표는 해당 권리와 관련된 국내법이 국제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격차는 없는지, 또는 국제적 기준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인권에 대한 의무이행을 위한 수단의 수용, 정도, 노력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UN OHCHR, 2012). 예를 들면, 국가에 의해 비준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국제적인 인권조약, 직업 및 기술교육 관련 국가정책의 기간과 범위, 또는 독립적 감시기구에 의한 경찰조직과 구금시설 감시 일정 및 이를 위한 공식절차의 범위 등도 해당된다(UN OHCHR, 2012: 34).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s)는 의무이행자들의 인권적 노력이 어떻게 바람직한 결과(the desired results)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조지표와는 달리 의무이행자들이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특별한 수단(예, 거버넌스, 예산배분, 특별규제 및 개입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UN OHCHR, 2012). 구체적으로, 과정지표는 정책수단과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한 국가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배분에 근거한 지표, 공공프로그램의 표적인구 집단 범위, 접수된 인권관련 민원과 시정된 민원비율, 특별한 인권이슈 해결을 위해 의무이행자에

의해 확대된 인센티브와 인식(awareness) 방안, 특수한 제도(법체계 등)의 기능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UN OHCHR, 2012: 36).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s)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인권향유 상태를 반영하는 개인적, 집단적 성취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다양한 과정의 영향을 통합함으로써, 종종 유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기대수명 및 사망률 지표는 인구의 면역, 공중보건의식, 또는 신체적 폭력과 범죄의 감소 등이 해당될 수 있다(UN OHCHR, 2012). 즉 성과지표는 인권의 향유를 더욱 촉진하는 국가 노력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체계에서의 노동참여 비율, 오심(誤審)에 대한 보고 사례 및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간 내 보상받은 희생자의 비율, 그리고 표적인구집단의 교육적 성취(예,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율) 등이 이에 해당된다(UN OHCHR, 2012: 37~38). 이러한 지표유형별 내용과 앞서 언급한 인권지표 이행 지표와 관련된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표선정기준 등을 정리하면 <표 Ⅱ-2-1>과 같다.

표 Ⅱ-2-1 구조 · 과정 · 성과 지표체계

지표체계	지표내용	지표선정기준
구조 지표 (Structural indicators)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제 마련 여부 및 법적도구의 비준 · 채택 여부 등	· 권리보장에 대한 헌법과 국내법 규정 · 권리와 관련된 공표된 공공정책과 정책격차 ·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틀
과정 지표 (Process indicators)	의무주체들이 인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정책, 수단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 측정	· 재정적 지표에 우선되는 물질적 지표 · 재고(stock)1) 지표에 우선하는 유동(flow)2) 지표 · 제도적 권한과 결과/성과를 연결하는 지표
성과 지표 (Outcome indicators)	권리향유 상태/실태 파악	· 권리 향유와의 분명한 관련성 · 과정의 영향을 누적시키는 지표 · 공통된 속성의 소수 재고(stock) 지표

* 출처: UN OHCHR(2012, pp.34~38, p.78) 내용 발췌 · 재구성

* 주: 1) 재고(stock)지표는 한 특정 시점에 통합된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학생 일인당 신체측정, 특정시기에 임의로 자유를 빼앗긴 것으로 보고된 사람 수 등이 해당됨.

2) 유동(flow)지표는 시기별 변화를 모니터하는 것으로, 식량 생산량 및 수출/수입량, 특정시기동안 임의로 자유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고된 사람 수, 또는 석방된 것으로 보고된 사람 수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인권이행 지표에 대한 지침에서는(UN OHCHR, 2012) 자유 및 안전, 적절한 식량, 높은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유,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및 처벌 금지, 공적사안(public affairs)에의 참여, 교육, 적절한 주거, 노동, 사회보장, 의사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 여성에 대한 폭력, 비차별 및 평등과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표유형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아동·청소년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교육권에 대한 지표유형별 구분을 예시로 살펴보았다. <표 Ⅱ-2-2>는 교육과 관련된 국제협약, 헌법, 또는 국내 관련법의 해당기간과 적용범위, 그리고 교육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여하는 시민단체와 관련된 내용이 구조지표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무교육의 기간과 범위, 대상, 특히 특수 표적 집단(근로아동 및 홈리스 아동)까지 포함한 국가적 교육정책의 기간과 적용범위 등도 포함하며, 더불어 직업/기술을 위한 교육,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기관의 비율과 교육시간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 역시 구조지표에 포함되어 있다(<표 Ⅱ-2-2>). 과정지표에는 교육지출 및 비용과 관련하여 공립학교 비율과 공립학교 등록 아동 비율, 중등교육비용 지원 대상 학생 비율과 중퇴비율, 교사들의 급여수준과 공교육/사교육 비율 등이 제시되어 있고, 성과지표에는 초등교육이수 비율, 인구 천명당 졸업자 수, 각 교육기관에서의 학생밀집도, 대학학위 이수 여성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Ⅱ-2-2>).

표 II-2-2 OHCHR 인권지표 가이드의 지표유형별 구분 사례(교육권)

<table>
<tr><th colspan="2">부분속성</th><th>보편 초등 교육</th><th>중등·고등 교육 접근권</th><th>교육내용과 지원</th><th>교육의 기회와 자유</th></tr>
<tr><td rowspan="6">교육권</td><td rowspan="2">구조 지표</td><td colspan="4">– 국제협약비준
– 헌법으로 보장한 시점
– 하위법으로 보장한 시점
– 등록된 혹은 활동 중인 NGO의 수</td></tr>
<tr><td>– 비용부담 없이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 국가에서 채택된 조치의 기간과 범위</td><td colspan="3">–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간 및 범위
– 모든 수준에서 인권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비율</td></tr>
<tr><td rowspan="2">과정 지표</td><td colspan="4">– 국가인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결정을 내린 비율/정부가 응한 비율
– 교육지출의 GNP에 대한 비율</td></tr>
<tr><td>– 교육료 외 부담금이 있는 공공학교의 비율
– 공공 초등학교에 등록된 아동의 비율</td><td>– 중등교육을 받기 위한 공공 지원 및 보조금을 제공받는 학생의 비율
– 학년별 중등교육과정 에서의 중퇴율(목표 집단에 따라)</td><td>– 학교 교사들의 평균 급여
– 초등/중등교육 및 공교육/사교육 영역에서의 교사 대비 학생의 비율</td><td>– “능동적 학습”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의 비율
– 100명당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 수</td></tr>
<tr><td rowspan="2">결과 * 지표</td><td>– 초등교육 수료비율
– 취학연령 아동의 미취학률</td><td>– 1,000명당 졸업자 수</td><td>– 초등/중등/고등 교육 시설에서의 학생밀집도</td><td>– 전문 자격증 혹은 대학 학위를 이수한 여성의 비율</td></tr>
<tr><td colspan="4">– 청소년(15–24세) 문해율 및 성인(15세 이상) 문해율</td></tr>
</table>

* 성과(outcome)지표는 결과지표로도 번역됨. 출처: UN OHCHR(2012, p.93 (구정우 외, 2015 p.210 재인용)

이러한 유엔의 인권지표유형별 구분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한 사례로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의 '아동·청소년권리지표'와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의 조기학습 파트너십(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초기아동기 인권지표(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의 인권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CRC)을 개념적 틀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전인적(holistic) 아동권리 관점으로 지표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의 법, 정책과 같은 제도가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EU FRA, 2009). 또한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의 보고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제시한 구조지표, 과정지표, 성과지표와 같은 지표유형별로 관련 지표들을 구분함으로써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결과 및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의 보고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4가지 핵심영역으로 '가족환경과 대안적 보호', '착취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적절한 생활수준', '교육, 시민성 및 학교와 스포츠관련 활동의 참여'를 제시하고 각 영역별로 해당되는 지표들을 지표 그룹으로 크게 구분하였다(EU FRA, 2010, 김경준 외 2014에서 재인용).

이 4가지 핵심영역에서 '착취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영역 중 '성적·경제적 아동 착취' 지표 그룹의 내용과 유형을 예시로 살펴보면 <표 Ⅱ-2-3>과 같다. '성적·경제적 아동 착취'의 경우 먼저 관련 피해자 확인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감시 기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지표유형은 구조, 과정지표로 구분되어 있다.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사회사업 지원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정책 여부, 인터넷에서의 아동학대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근로청소년보호를 위한 감사기관의 방문정도 등이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구조지표, 과정지표, 성과지표가 모두 해당된다. 특히 피해아동이 다시 재활과정을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야 다시 이러한 범죄의 피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사업 및 심리적 지원 서비스와 정책 등의 구조 및 과정지표는 매우 중요하다(EU FRA, 2010, 김경준 외 2014에서 재인용).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위해 아동성매매 사례 수와 아동학대 사진 및 이미지에 대한 형사상 기소를 위한 법 규정의 존재여부에 대한 것은 구조 및 성과로 지표유형을 구분하였는데, 특히 강력한 처벌규정과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범죄율 감소의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착취예방을 위한 학교교육과

정에서의 관련 교육 및 훈련은 과정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표 II-2-3 EU FRA: 착취와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예시)

지표 그룹		지표	지표 유형
성적/경제적 아동 착취	피해자 확인	• 성적 아동 착취: 성적 착취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감시 기제의 존재(예, 청소년복지 정부부처의 체계적인 훈련 등) • 경제적 아동 착취: 경제적 착취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감시 기제의 존재(예, 청소년 복지 당국의 체계적인 훈련)	구조/과정
	피해자 보호	• 아동 성매매: 매춘으로 착취된 아동과 함께 현실적인 경제적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사업 지원 및 사회 복귀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 아동 학대 이미지: 아동 포르노/아동 학대 이미지에 대한 피해 아동 보호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정책의 존재(예, 미디어에 의한 개인 침해 행위로부터의 보호, 심리적 치료)	구조/과정/성과
		• 아동 학대 이미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휴대폰 회사, 검색 엔진 및 기타 관련 조직이 아동 포르노/아동 학대 이미지를 포함하는 서비스와 웹사이트를 정부에 보고하고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의 존재(성행위를 목적으로 상대 아동을 구하는 채팅룸 포함) • 경제적 아동 착취: 일터에 있는 청소년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노동 감찰 방문 수치(예. 노동 시간, 안전 및 건강관련 문제 등)	
	가해자에 대한 기소	• 성적 아동 착취: 치외법권적 법률 하의 "성매매 여행" 관련 매춘 사례의 수(해외에서 행해지는 아동 성 착취와 관련된 위법행위) • 아동 학대 이미지: 아동의 실제 이미지 혹은 성 착취적 표현을 통하여 아동의 포르노/아동 학대 이미지를 생산, 배포, 수령 및 소유하는 것을 형사상으로 기소하는 법적 규정의 존재	구조/성과
	아동 착취 예방	• 아동 학대 이미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의무적인 부분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안전' 관련 정보와 인식개선(IT 훈련 수반)	과정

* 출처: EU FRA(2010), pp.80~82에서 일부 내용 정리 (김경준 외 2014 재인용, p.190의 표 일부 발췌)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의 조기학습파트너십(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을 중심으로 개발된 초기아동기 인권지표(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 역시 구조-과정-성과 지표의 범주에 따라 지표가 구분되어 있다. <표 II-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지표는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국가가 이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책무를 가리키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정책 등을 포괄하고 있다.

과정지표가 의무이행자들이 권리주체자들의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과 절차들을 의미한다고 할 때,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에서의 과정은 아동의 권리실현을 돕는 모든 구체적인

활동과 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자원과 노력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Vaghri et al., 2010).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의 경우 주어진 인권환경에서 아동의 권리실현과 관련한 내용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가 예시로 제시될 수 있다.

표 II-2-4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에서의 구조·과정·성과지표

지표체계	내용
구조(Structure)	행동을 취할 책무(commitment)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맞추어진 헌법과 법률 조항 및 정책과 제도 등
과정(Process)	책무에 따라 취해진 행동이나 노력으로, 어린 아동의 권리실현을 돕는 구체적인 활동(행동계획과 프로그램), 자원 및 시도들(initiatives)
성과(Outcome)	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권환경에서의 측정할 수 있는 변화 또는 직접적인 초기아동기발달을 측정하는 도구(예, 이전 국가보고서에서의 출생등록 아동 수의 증가)

* 출처: Vaghri et al., (2010). Manual for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Manual of the indicators of General Comment 7). p.26 내용 재구성

'초기아동기 인권지표'는 개별지표들이 지표유형별로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표 II-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훈련(human rights training)이라는 지표세트에서 구조지표는 인권훈련을 위한 확실한 정책의 유무를, 그리고 과정지표로 이 훈련과정의 유무와 프로그램 주제 및 수, 참가자 수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성과지표는 이러한 인권훈련을 통해 실제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선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Vaghri et al., 2010). 즉, 이 예시에서의 구조-과정-성과 지표의 유형별 구분은 '인권훈련 정책의 유무 - 구체적인 인권훈련 내용 및 절차 - 인권훈련결과에 따른 개선'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틀(framework)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2-5 '초기아동기 인권지표' 지표의 지표유형별 구분 (예시)

지표 세트 (Indicator Set)	지표유형	개별 지표 예시
인권훈련	구조지표	아동권리 및 일반논평 제7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무이행자를 위한 인권훈련에 관한 명확한 정책이 있는가?
	과정지표	다양한 의무이행자들을 위해 개발·수행되고 있는 훈련과정이 있는가(훈련프로그램 주제, 기획·시행되고 있는 훈련프로그램의 수, 각 프로그램의 참가자 수)?
	성과지표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실천과 다양한 영역에 어떤 개선이 있는가?

* 출처: 김경준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p.199의 표 일부 발췌
원출처: Vaghri et al., (2010). Manual for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Manual of the indicators of General Comment 7). p.51.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인권지표 구축과 이를 지표유형별로 구분한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통계지표 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행 기제, 평등권,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4가지 주요 인권 영역에 대한 상세한 인권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표유형별(구조-과정-성과)로 각각의 지표를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일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표 II-2-6>,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의 중분류와 '식량권' 소분류의 지표는 결식비율과 무상급식 지원 현황에 대한 것으로 결식비율은 결과지표,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과정지표로 구분되어 있다.

표 II-2-6 한국의 국가인권통계지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중 일부 아동·청소년관련 (예시)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단위)	통계적 정의	자료원 및 특성				근거 및 출처
				기관	자료명	생산주기	지표유형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4.1.1. 식량권	최근 1년간 가정형편으로 인한 결식비율(%)	가정형편으로 인해 결식한 학생의 비율에 대한 실태파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년	결과	사회권NGO보고서 289(00)
		아동무상급식 지원 현황	매년 말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현황	보건복지부	1)내부행정자료 2)e-나라지표 급식은 보편화된 상황이므로 무상급식대상 아동 현황 통계로 수정	1년	과정	아동권리 최종견해 20(11); 아동권리NGO보고서 1-5(10)
4.5. 교육권	4.5.1. 교육지원에 대한 접근	시도 및 학교급별 취학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 적령 인구 중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학생의 비중	1)한국교육개발원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교육기본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4.5.2. 교육선택권	학업 중단자 비율	전체 초·중고학생 대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학교급 및 성별 구분)	1)한국교육개발원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교육기본통계 2)사회보장통계	1년	결과	국가인권지수(2014)
		북한이탈학생 학업중단 현황	북한이탈학생의 학업중단자수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1년	결과	2013 인권통계
		다문화 가구 아동 취학률	결혼이주자 자녀의 취학률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아동권리 최종견해 28(11), 29(11); 아동권리NGO보고서 3-2(10), 8-1(10)
		미혼모 학업중단율	학업을 중단한 미혼모의 비율	자료구축 요망	자료구축 요망	1년	결과	아동권리NGO보고서 3-2(10)
		대안학교 수	대안학교의 수	최근자료 없음	최근자료 없음	1년	구조	아동권리 최종견해 40(03), 41(03)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6a). 2015 인권통계. p.298, p.312 내용 발췌

또한 '교육권'의 소분류 중 하나인 '교육선택권' 지표들을 보면, 대안학교 수는 구조지표로, 그리고 학업중단자 비율을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지표는 결과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별 구분은, '식량권'과 관련해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식량권이 보장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지표가 새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 또 교육선택권이 대부분 결과지표라고 할 때 전반적인 국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의 지침서(인권지표: 측정 및 이행을 위한 지침)에서 제시한 이러한 구조-과정-성과 지표의 유형별 구분, 그리고 이에 따른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의 보고서, 캐나다 조기학습파트너십의 '초기 아동기 인권지표', 또 우리나라의 국가인권통계지표에서의 지표유형 구분 시도는 우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데 매우 유용한 예시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국가를 우선으로 하는 의무이행자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여 어떻게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노력과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가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누락될 수 있는 의무이행자의 노력이나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유형별 구분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워크숍 및 의견조사, 그리고 연구진간의 논의를 거쳐, 일부 인권지표체계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각 지표항목 구성이 특정 지표유형에 치우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재검토하였다.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의 이해와 시사점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15년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좌표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되었다. SDG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 분야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를 설정했으며,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가 강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KOICA, 2015). 지난 2000년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다(박환보 외, 2014). MDGs는 빈곤의 문제를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원조 중심의 국제개발 패러다임을 인간 중심의

사회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되었다(KOICA, 2015). 그 결과 MDGs를 통해 역사상 가장 단시간 내 빈곤감소가 이루어졌으며, 개발도상국의 초등교육과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OICA, 2015). 그러나 국제사회는 MDGs라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 절대적 빈곤의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다루었지만, 개발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은 해소하지 못했다(박환보, 윤종혁, 2014).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2012년부터 2015년 이후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크게 유엔 사무총장 주도의 Post-2015 논의와 Rio+20 회의 관련 논의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안해정 외, 2016). 우선 유엔 사무총장은 2012년에 '유엔 Post-2015 개발의제 특별작업반(UN system Task Team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UN TT)'을 구성하고, MDGs를 계승하면서도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발의제의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였다(안해정 외, 2016).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개발이란 인류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김지현, 2016; 박환보, 윤종혁, 2014). 그리고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라는 개발의 문제를 넘어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열망을 실현하는 의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UN, 2014).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1992년에 개최되었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일명 리우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브라질 리우에서 다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를 개최하였다(안해정 외, 2016). Rio+20 회의라 불리는 이 회의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D)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라는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MDGs를 계승할 SDGs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안해정 외, 2016).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인류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 보고된 브룬트란트(Bruntland)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황세영, 김남수, 2016). 해당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으로 정의하고, 환경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 담론으로 제시하였다(황세영, 김남수, 2016).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사회는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이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인 SDGs를 제시하였다(KOICA, 2015).

이처럼 SDGs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최초의 전 세계적 개발의제인 MDGs를 계승하고, 이와 함께 리우환경회의에서 출발한 환경 관련 논의가 통합되는 형태로 등장하였다(안해정 외, 2016). 따라서 개도국의 빈곤퇴치 외에 환경 관련 이슈가 핵심적인 목표로 등장했으며, 국가 간 개발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등 변화하는 국제환경을 반영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가 강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권율 외, 2015). 그리고 주로 개도국의 빈곤퇴치 중심으로 진행된 MDGs와 다르게, SDGs는 환경 문제, 계층 간 형평성 문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 문제 등,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안해정 외, 2016; 황세영, 김남수, 2016).

SDGs는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던 MGDs를 계승하면서도, 목표의 범위가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의 영역으로 보다 확장됨에 따라 목표 수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SDGs의 17개 목표는 부문별로 '빈곤, 식량/농업, 보건/건강, 교육, 젠더, 주거, 물/위생,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환경, 노동, 경제, 불평등, 소비'의 15개 주제와 2개의 이행 기제 관련 목표(거버넌스, 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로 구성된다(김태균 외, 2015). 그리고 2015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UNSC)가 설립한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위한 국가 간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SDGs)'의 주도로 각 주제별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232개의 지표(indicators)도 마련하였다(박영실 외, 2017). 이러한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 등 자세한 구성은 다음의 <Ⅱ-2-7>과 같다.

SDGs 목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 각국과 다양한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전략 및 각 주체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협력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DGs의 17개 목표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방향성만을 제시했지만, 169개의 세부 목표와 232개의 지표 수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국가와 글로벌 차원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표의 선정과 개발 과정에서는 측정 및 조사가능성, 조사주체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고려하였다(IAEG-SDGs, 2017).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SDGs 목표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국가별로 SDGs

이행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2-7 SDGs 내용과 지표 구성

구분	SDGs 목표	주제	세부목표수	지표수
총괄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빈곤	7	14
사회발전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식량/농업	8	13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보건/건강	13	27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포장	교육	10	11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젠더	9	14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	주거	10	15
환경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물/위생	8	11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에너지	5	6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기후변화	5	8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해양	10	10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환경	12	14
경제발전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노동	12	17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경제	8	12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	불평등	10	11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소비	11	13
이행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거버넌스	12	23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이행수단, 글로벌파트너십	19	25
합계		17	169	244*

* 지표의 전체 합계는 244개이지만, 9개의 지표가 영역별((8.4.1/12.2.1, 8.4.2/12.2.2, 10.3.1/16.b.1, 10.6.1/16.8.1, 15.7.1/15.c.1, 15.a.1/15.b.1, 1.5.1/11.5.1/13.1.1, 1.5.3/11.b.1/13.1.2, 1.5.4/11.b.2/13.1.3)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지표를 제외한 전체 지표는 232개임

* 출처: 황세영, 김남수(2016, p.20), 박영실 외(2017, p.81), IAEG-SDGs(2017)의 내용을 발췌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하여, SDGs의 17개 목표는 인권을 독립적인 주제로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목표가 인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미 유니세프나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기관들은 SDGs 목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SDGs 목표 내에서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UNICEF, 2014; Save the Children, 2016). 특히 유니세프는 SDGs 목표와 유엔아동권리협약 간의 관계를 명료화하고, 이를 통해 SDGs 목표와 아동권리협약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UNICEF, 2016). 유니세프의 이러한 관점은 SDGs의 목표 중에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목표 달성 기간이 2030년까지라는 시점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과 성인 간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UNICEF, 2016: .2). 이처럼 SDGs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특정한 목표 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간으로 하여 17개 목표의 전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IAEG-SDGs, 2017). 따라서 SDGs의 17개 목표와 세부목표들이 아동·청소년인권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SDGs의 169개 세부목표와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232개의 지표 수준에서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로 명시한 목표가 존재한다. 이러한 세부목표와 지표들은 주로 빈곤종식(SDG 1), 기아종식(SDG 2), 보건/건강(SDG 3), 교육(SDG 4), 성평등(SDG 5), 물/위생(SDG 6), 일자리 증진(SDG 8), 기후변화(SDG 13),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SDG 16) 등의 영역에서, 아동(children)이나 청소년(youth), 또는 해당 연령대(24세 이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SDGs의 지표들은 국가 혹은 국제수준에서 측정 및 조사가능성에 따라 층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지표의 경우에도 국가 수준의 통계 자료가 존재하는 지표(tier 1) 이외에는 실제 조사 가능성은 불분명한 실정이다(UNICEF, 2017). 따라서 각 국가에서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국가별 상황과 이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SDGs에 기초한 국가적 목표가 재설정되어야 한다(황세영·김남수, 2016). 또한 반대로 SDGs 지표 개발에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SDGs 목표 중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영역의 지표와 현행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대한 교차 검토를 통해, 향후 지표체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의 예시는 다음 <표 Ⅱ-2-8>과 같다.

표 II-2-8 SDGs 지표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관계 및 시사점(안)

목표 (17개)	SDGs 지표 (232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의 시사점
1. 빈곤 종식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연령별, 빈곤유형별 조사
	1.3.1 사회적 보호를 받는 성,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빈민, 그리고 취약계층별 인구비율	5-5-2-1. 취약계층아동 현황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정의 및 조사 대상 확대
3. 보건/건강	3.7.1 현대적 방식의 피임법을 충족하는 가임기 여성(15-49세)의 비율	5-3. 보건서비스	생식보건 관련 내용 생식보건 서비스 접근에 대한 내용 포함
	3.7.2 동일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청소년 (10-14세, 15-19세) 출산율		
4. 교육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정규/비정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성별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6-1. 교육에의 권리	ICT 기술이나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내용 포함
	4.4.1 ICT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중		
	4.5.1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7.1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i) 세계시민교육과 (ii)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학생평가의 모든 차원에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1-1-3. 인권교육	국가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의 반영 정도 포함
8. 노동	8.6.1 15-24세 청(소)년 중 교육 또는 고용,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NEET) 인구 비율	없음	보완 필요
	8.b.1 국가예산과 GDP에서 전체 사회보고 및 고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정부지출 비율	없음	보완 필요
11. 주거	11.1.1 빈민가, 무허가 또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없음	보완 필요

* 출처: SDGs 지표는 김지현(2016, pp.19-39)의 번역을 참고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김영지 외(2016, p.603-642)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우선 SDG 1 빈곤종식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은 모든 세부목표에서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서도 아동·청소년의 빈곤 문제는 '5-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내에 빈곤아동·청소년의 현황이나 이들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이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SDG 1은 개도국의 빈곤퇴치라는 MDGs를 계승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빈곤에 처한 극빈층을 별도의 지표로 다룰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범위도 매우 세분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서는 취약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구에만 한정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아동 문제나 절대적 빈곤에 처한 아동·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허선 외, 2014). 따라서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제의 개선에 있어, 빈곤유형이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해서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SDG 2 기아종식, SDG 3 보건/건강, SDG 5 양성평등과 관련한 지표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내에서도 '5-2 생존 및 발달', '5-3 보건서비스',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7-4 성적 착취'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지표체계에는 SDGs 3 보건 관련 지표 중 하나인 성 및 생식 보건이나 성접촉과 관련 있는 전염병인 HIV/AIDS에 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성에 관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의 경우에는 더욱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내에서도 성과 관련된 내용은 '7-4 성적 착취'라는 항목으로 성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건 관련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청소년의 성경험률은 증가하지만 첫 성경험 연령은 낮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이재영, 2017), 청소년의 성과 관련해서도 보건서비스 지원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SDG 4 교육에서는 교육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강조하였다(김진희 외, 2015). 교육기회 보장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목표이지만, SDG 4에서는 기회 보장의 범위를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까지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성과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안해정 외, 2016, 49). 교육 관련 목표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내에서도 '6-1 교육에의 권리'와 '6-2 교육의 목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1 인권일반 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7-1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SDG 4 교육 목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권지표체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문해능력이나 ICT 기술, 직업교육

훈련 참여 등과 같은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노동시장과의 연계 혹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자립 등에 관련된 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인권지표 개선에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SDG 4 교육 목표 중에서 4.7의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는 목표의 경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의 방향 및 내용과 관련이 있다(안해정 외, 2016). 이는 기존에 평화교육,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행해졌던 교육이 하나의 전 세계적인 목표로 포함된 것이다(박환보, 조혜승, 2016). 그리고 지표 수준에서는 '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모든 교육 단계에서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등의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로 정의한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서 인권교육은 '1-1-3 인권교육'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개인 수준에서만 조사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표체계 개선에 있어, 교육정책(국가 및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등에 인권교육의 요소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조사하는 지표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SDG 8 노동 영역의 목표는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동노동의 종식과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등 아동·청소년인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7-3)는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반면에,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 비율(8.6.1)이나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8.b.1)은 지표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아동·청소년인권 지표가 주로 보통교과 중심의 교육과 아동·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인권의 차원에서도 노동 관련 지표 보완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SDG 11 주거 영역에서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게 안전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목표로 제시하며, 유엔아동인권협력에서도 주거 복지가 강조되고 있다(UNICEF, 2016). 한국에서도 주거빈곤은 아동·청소년의 활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지적·정의적·사회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세희, 2010), 따라서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주거복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권지표체계 내에서도 주거 관련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DGs의 17개 목표 중에는 아동·청소년을 명시적인 대상으로 설정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부목표나 지표가 있지만, 모든 영역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SDGs의 모든 목표는 직간접적으로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UNICEF, 2016), SDGs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이슈나 정책 과제 속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DGs 세부목표와 지표는 국제비교를 염두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측정 및 조사가능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비해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SDGs 지표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거나 개선의 근거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다. SDGs 지표 중에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방향성과 영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표 개발에 한국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표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논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에 기반하여 2013년에 인권지표체계를 정비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타당성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적・국내적으로 아동인권 상황에 중요한 변화와 영향을 주는 사안이 발견됐을 때는 이를 지표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예 : 유엔 지침 변화에 따라 2015년에 3영역인 '학대 및 폭력' 대분류 독립). 또한 지표생산을 위한 자료원의 변화에 따라 지표의 산식을 개선하거나 자료원을 발굴,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017년에는 유엔의 SDGs 지표 논의와 유엔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유엔인권지표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의 일환으로 유엔아동권리모니터링 메카니즘 이해를 위해 제네바 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과정 참관활동을 수행한 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권고내용으로 아동인권관련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유엔의 인권지표를 고려할 것과, SDGs 등 국제적 이슈의 고려, 제3선택의정서 비준 논의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인권지표체계 검토에 있어 이 두 가지 논의는 향후 지표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은 SDGs 이행 평가를 위한 도구로 SDGs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지표 연구개발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중 국제비교 지표의 발굴・개발 과정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의 현황과 추이를 보기 위한 조사로 성과지표 성격의 지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지원이라는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표체계가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의 협약 조항에 대응하여 평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유엔지표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구조, 과정,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표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SDGs 지표는 유엔차원에서 수정・보완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SDGs 지표항목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찾아보는 차원에서 반영 가능성을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1) 영역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보완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4조, 42조, 44(6)조 등과 일반원칙인 협약 제2조, 3조, 6조, 12조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협약을 위한 일반이행조치는 제4조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입법, 국가행동계획, 담당조직, 예산배분, 국제협력, 독립적 인권기구, 시민사회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지표영역이다. 즉, 대부분이 유엔인권지표로 보면 구조지표 또는 일부 과정지표에 해당되는 지표들로 구성된 영역이라 하겠다.

이 영역의 중분류인 '일반원칙'의 하위 지표로는 '차별 경험률'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가 있는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에 대한 지표는 아동인권의 철학과 가치 면에서 중요성은 있으나 지표화하기 어려움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이 원칙을 정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을 지표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차별 경험률' 지표와 관련해서는 'SDGs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및 정책 이행 및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16.b.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해 최근 12개월 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연령별, 성별)' 지표가 있다. 10.3. 불평등 감소 관련 목표에 따른 10.3.1. 지표에도 차별과 괴롭힘 관련 지표가 있어 향후 국제비교 지표로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언급됐듯이 SDGs 교육 영역의 4.7.1 지표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1-1-3. 인권교육' 지표와 관련될 수 있겠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는 아동권리협약 상으로는 참여권을 상징하는 제12조, 제13조 의견표명권, 제14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제17조 정보접근권 등을 포괄하는 영역이다. 또한 시민적 권리와 관련되는 이름과 국적(제7조),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등이 있다. SDGs 지표와 관련해서는 SDGs 세부목표 26.9가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이고 해당 지표로는 '16.9.1. 출생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연령별)'이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도입되지 않아 신고제로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위 지표는 산출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국내적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지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2영역 지표 개선사항으로는 기존 지표항목이 설문문항 한 개당 대응되어 있어 항목별 수준이 다르거나 불필요하게 지표항목 개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이들을 정비하였다. 예를 들어 인권교육 경험, 학급회의 활성화, 결사・집회경험률, 학생 정보 보호정도 등이다. 또한 정보접근권 분야 지표항목의 주요 자료원들이었던 유해환경 실태조사와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조사도구 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기존에 '매체접근율'을 아동도서 발행 수 위주로 보았던 것을 공공도서관과 1인당 장서 수 등을 보완하였다. 유엔 인권지표체계와 차원에서 2영역 지표에는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지표 발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폭력 및 학대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 중 제3영역 '폭력 및 학대'는 201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새롭게 개정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의해 이전에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포함되었던 '체벌 및 폭력' 관련 내용과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에 포함되었던' 관련 내용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독립된 대분류 지표이다. 이 중 '폭력'과 관련된 지표체계는 중분류 지표로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로, 이 중분류 지표는 다시 2개의 소분류 지표인 '청소년폭력 경험률'과 '체벌 경험률'로 구성되어 있다. 소분류 지표 '청소년폭력 경험률'에는 '정서적 학대 경험률(모욕적인 말/욕설)', 폭력피해 경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등 3개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고, 다른 소분류 지표인 '체벌 경험률'에는 동일한 이름의 세부지표

'체벌 경험률'로 구성되었다. '폭력' 영역과 관련된 세부지표들은 총 4개인데 자료원은 모두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얻어진 설문조사 결과이다. 먼저 4개의 세부지표들과 관련된 설문 문항의 변경은 척도와 관련된 것이다. 즉, 설문 문항의 척도에 있어서 응답척도의 범주를 '1~2회'로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1주일에 3회 이상'의 척도를 삭제하고 대신 4개의 세부지표 설문 문항들에 '2~3개월에 1~2회 정도'의 척도가 새롭게 삽입되어 대체되었다.

'폭력'과 관련된 인권지표들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자면 구성된 4개의 세부지표들은 이들의 자료원이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의 결과라 의무주체들의 인권적 책무 이행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측정하는 과정지표와 인권의 행사주체인 아동·청소년의 권리향유 상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표의 향후 개선사항을 언급하자면 소분류 지표 '청소년폭력 경험률'의 세부지표 '정서적 학대 경험률'과 소분류 지표 '체벌 경험률'의 세부지표 '체벌 경험률'에 관한 설문 문항에 있어서 각 두 지표 모두에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중복적 물음이 있고, '모욕적인 말(욕설)'은 체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에 세부지표 '체벌 경험률'의 설문 문항에서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물음은 삭제하고 '신체적인 벌(체벌)'에 관하여만 묻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향후 설문 문항의 지문이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벌'과 관련해서는 체벌 금지에 관한 교육관련법의 개선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 대신 폭력에 가까운 가혹한 기합과 같은 형태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폭력 및 학대' 영역 중 또 다른 중분류는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로서 이에 해당되는 지표(소분류)는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방임유형 및 정도'가 포함되며,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지표 소분류에는 '학대피해아동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가 해당된다. 이 중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임유형 및 정도'의 경우 설문 문항 척도에 '2~3개월에 1~2회 정도'를 새로 포함시켰고, '1주일에 3회 이상'은 삭제하였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표세부항목들의 경우 구조/과정/성과 지표로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학대 신고건수 및 방임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항목은 아동학대 및 방임 건수의 증가가 실제 학대/방임 건수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법·제도의 보완과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결과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의 증가를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최일선 기관의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 과정지표로 볼 것인지, 또는

그 자체로 서비스 접근 용이성 증대로 보고 성과지표로 볼 것인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 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도화되었다고 할 때 이를 구조지표로 볼 수도 있다.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정도와 조치결과의 경우는 보다 명확하게 성과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급증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로 인한 상담원의 업무과중으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일 수도 있어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과지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중분류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SDGs의 참여·권리분야의 세부목표 중 '16. 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11]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 세부목표에 해당되는 SDGs의 지표는 '최근 몇 달 동안 양육자로부터 체벌 또는 정신적 학대를 받은 1-17세 아동의 비율'(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황세영, 김남수, 2016 재인용)인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세부지표항목인 체벌 경험(3-1-2),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지표(3-2-1)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폭력 및 학대'의 해당 인권지표체계, 즉 중분류 및 소분류 내용, 지표항목의 유형별 구분을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법, 규정, 제도에 대한 내용인 구조지표가(structural indicators)가 과정지표 및 성과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19조의 내용과 'SDGs 16'에 해당되는 목표 및 지표가 상당부분 유사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다.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대분류에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의 3개 중분류가 해당된다. '부모의 지도와 책임'에는 '부모와의 관계',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가 지표(소분류)가 포함된다. '부모와의 관계' 세부지표항목인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부모와의 관계의 질' 경우, 그동안 자료원으로 활용된 3년 주기 조사인 청소년생활실태조사가 2017년 말에 새로운 조사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활용 가능한 이전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초점을 달리하여 기술하는 방식으

11) 16.2 지표의 상위항목인 SDGs 16은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으로 SDGs의 17개 목표 중 하나이다(황세영, 김남수, 2016: 29)

로 하였다.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아동의 성장환경으로서의 가정과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항목으로 과정지표로 볼 수 있다. 이 지표항목은 SDGs의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항목과 비교할 수 있는데(황세영, 김남수, 2016: 180),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의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반면, SDGs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웰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년도까지 포함되었던 '부모와의 관계의 질' 항목은 실제 정의 및 산식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빈도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인권지표체계에서 삭제하였다.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의 경우 '방과후보호자 부재 아동·청소년비율',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등의 지표항목들이 해당되는데, 이 지표들의 경우 대부분의 과정 및 성과지표로 구분될 수 있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중분류에는 '입양율'과 '대안양육 비율', '가출청소년의 서비스이용률'이 지표(소분류)로 구성된다. '입양율'에는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입양에 대한 의식',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가 세부항목으로 포함되는데, '입양에 대한 의식'의 경우 당초 향후 국내 입양현황이나 추이를 대략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가항목이었다. 2017년 전문가들과의 논의 결과, '입양에 대한 의식'은 2016년과 같이 별도 지표항목으로 구분하기보다는 향후 국내외 입양에 대한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로 그리고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대안양육 비율' 지표에는 '요보호아동 현황',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등의 항목들이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대안적 양육'이 가정위탁보호와 같은 가정유형의 대안양육인지, 아니면 공동생활가정, 시설보호도 포함할 것인지를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안적 양육을 가정위탁보호에만 한정할 경우,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보다는 더 바람직한 보호형태라고 할 때 상대적인 대안양육의 증가는 성과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과정지표에 해당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지표(소분류)는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가출경험 여부와 그 이유', '가출시 서비스 이용'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가출청소년 수'의 경우 경찰청에서 2014년 이후로 청소년 연령대를 별도로 구분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다른 방식의 항목이나 자료원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른 항목은 과정지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출시 서비스 이용'의 경우 연도별 비교에 따른 증감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의 다른 중분류인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는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을 지표(소분류)로 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보호 및 양육시설 예산,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와 사후조치 등을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지표는 과정지표로 볼 수 있는 보호·양육시설 예산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평가가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그리고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이 3년 내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세부항목을 매년 지표체계에 포함시켜 검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 지표항목을 모색해야 할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해당 인권지표체계, 즉 중분류 및 소분류 내용, 지표항목의 유형별 구분을 살펴볼 때, 앞서 '폭력과 학대' 영역과 마찬가지로 구조지표(structural indicators)가 과정지표 및 성과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운 데, 이에 대한 균형 있는 인권지표체계 구성과 향후 한국아동·청소년에 대한 면밀한 인권실태 현황 검토를 위해 이러한 지표유형별 검토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인권영역 대분류에는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내용(중분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장애'는 소분류 지표로' 장애아동 및 청소년 보호(지원)'를 선정하였으며, 이 소분류지표는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장애 청소년 취학률 및 취업률 추이' 등 3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2016년까지의 지표체계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을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가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 협의회의 의견조사 결과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은 성과지표의 성격이 강한 반면,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는 과정지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표의 구성체계상 과정지표를 먼저 제시하고, 성과지표를 나중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2017년도 지표체계에서는 이러한 전문가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정지표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를 먼저 제시하고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을 나중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지표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두 번째 중분류 지표인 '생존 및 발달'은 2개의 소분류 지표 즉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사망률'은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영아·아동 청소년 사망률’, ‘사고 사망률’등 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지표체계에 대한 검토결과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률’은 ‘범죄 피해율’과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등 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은 기존의 ‘안전에 대한 인식률’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써, 조사문항이 모두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안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명도 조사문항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생존 및 발달과 관련된 세부지표들은 대부분 성과지표의 특성이 강하며, 과정지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추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SDGs 지표와 관련하여 14세 미만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에 대한 국제비교지표를 포함하는 것도 향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중분류인 ‘보건서비스’는 3개의 소분류 지표 즉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은 3개의 세부지표 즉 ‘아동·청소년의 질병 유형’, ‘보건교사 배치현황’,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 관련 시설 비율’로 구성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은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이라는 지표였는데, 실제 지표의 내용에는 대처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지표명에서 대처방안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세부지표의 순서도 수정하였다. 즉 기존에는 “보건교사 배치현황 →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비율 →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의 순서였는데, 아동·청소년의 질병현황을 먼저 배치하고, 그 이후에 그러한 질병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보건교사 배치현황 →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비율”로 순서를 변경하였다.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은 기존의 지표와 동일하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을 세부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도 전년도 지표와 동일하게 ‘흡연율’, ‘음주율’, ‘기타 약물 사용율’,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을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이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의 소분류 지표인 ‘건강에 대한 인식’,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결과가 도출된다. ‘건강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건강평가’를 통해, 그리고 ‘신체적 건강’은 ‘운동실천율’,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비만율’등이 해당되는데, 그동안 큰 변화 없이 매년 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시계열비교를 통해 이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응답률의 증감에 따라 긍정적 변화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성과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건강'지표 중 비만율은 앞서 언급한 SDGs의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의 목표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황세영, 김남수, 2016: 180),

'정신적 건강'의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우울증', '스트레스 인지율',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고민거리 대화상대'등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의 항목들이 그간 큰 변화 없이 실태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계열비교를 통한 인권실태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성과지표로의 구분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중 삶의 만족도는 당초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2015년 이후 포함시킨 항목인데, 당초 원출처에서 제시한 '삶의 수준'으로 그동안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본래 의미에 더 가까운 '삶의 만족도'로 지표항목명과 조사내용을 수정하여 아동·청소년실태조사에 활용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정신적 건강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는 지표항목은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직접 자살을 시도하는 심각한 상황과는 구분되나, 청소년자살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간과될 수는 없는 지표항목이다. SDGs에서는 비만율과 마찬가지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항목에 해당된다(황세영, 김남수, 2016: 180),

또 다른 중분류인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는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이 해당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의 경우 OECD국가들과의 빈곤율 국제비교와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내용의 상대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항목들이다. 그러나 OECD 자료들이 생산되는 기간이 길어 그동안 시의성 있는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올해에는 0~17세의 아동빈곤율의 경우는 2016년 데이터, 그리고 OECD국가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데이터는 2013년 자료로 업데이트됨에 따라 이들 자료들을 활용한 내용들을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빈곤율 국제비교의 경우 그 증감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로,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국가 간 비교는 과정지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현황은 과정지표로 볼 수 있으나 연도별 비교 시 증감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자료는 SDGs의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증식',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등에 해당될 수 있으나(황세영, 김남수, 2016: 181),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의 경우는 OECD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 중 대분류 지표 제6영역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3개 중분류 지표 아래 총 21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21개 세부지표들 중 10개 지표들의 자료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실태조사 결과이다. 10개의 세부지표들과 관련하여 2017년도 실태조사에서 설문 문항이 변경된 지표들은 2개가 해당되는데, 먼저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지표에서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를 묻는 문항의 4개 응답지문들 중 "(3)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의 응답지문은 앞의 응답지문인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공정하다'라는 의미가 모호한 기준의 의미를 담고 있어 삭제되었다. 설문 문항이 변경된 또 하나의 세부지표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의 수'와 관련된 설문 문항으로 이 문항에서는 2017년 실태조사에서 정한 응답척도의 범주를 통일하기 위하여 4점 척도를 5점 척도로 하여 설문 문항에 '2~3개월에 1~2회 정도'의 척도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세부지표 중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관한 산출식은 국제기준에 따라 나라에서 사용한 총 교육비 중 경상비와 자본비를 합산한 액수를 학생수로 나눈 값을 다시 구매력지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로 보통 미국달러(USD)로 환산되어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경상비(인건비, 물건비) +자본비]/학생 수} x (1/구매력지수)로 표기된다. 이 지표의 최근 자료원은 'OECD 교육지표 2015'(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이고 산출에 있어서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는 각 나라마다 다른 통화의 구매력을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활용된다.[12].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과 관련된 21개 인권지표들의 향후 개선 사항들을 논의하자면 먼저 자료원이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실태조사 결과인 10개 세부지표들은 과정지표와 성과지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자료원이 대부분 통계자료로 얻어지는 세부지표들은 성과지표라 할 수 있다. 세부지표들 중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기제 마련과 비준・채택 여부 등을 나타내는 구조지표의 성격을 가지는 지표는 현행 학교제도에 대한 대안적 제도로 마련된 대안학교와 혁신학교에 관한 세부지표들이 해당된다. 이것들은 '대안학교 수와 종류'와 '대안학교 학생 비율',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 수'와 '혁신학교 운영

12)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 2016. 10. 14 인출

현황’의 4개 세부지표들이다. 대분류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 세부지표들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사항을 언급하자면 소분류 지표인 ’대안교육 참여율’은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대안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로 선택된 지표이지만 최근 대안교육 현장의 실상을 보면 대안학교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들이 만연되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적 측면에서 대안학교 설립의 근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분류 지표로 분류되었던 ’대안교육 참여율’은 그 의미를 축소하여 기존의 2개 세부지표 ’대안학교 수와 종류’와 ’대안학교 학생 비율’을 통합하여 ‘대안교육 참여 기회’의 새로운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다른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아래로 세부지표 중 하나로 이동하였다. 향후 대안교육 관련 지표가 학교 교육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계속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지표로 보존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한편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에 속했던 2개 ’혁신학교 운영 수’와 ’혁신학교 운영 현황’은 혁신학교가 지속적으로 재원이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여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지표로서 구조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으므로 삭제하고 새로운 구조지표로서 ‘직업교육 참여 기회’의 세부지표를 추가하였다. 이 지표는 심각한 대한민국의 학업중단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의 도입 등 정부가 잠재적으로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 충동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직업교육 체제로 유도하는 구조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 시점이라 새롭게 구조지표로 채택이 되었다. 이 지표는 구조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현재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과지표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특별보호조치

대분류 영역인 특별보호조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사법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착취’ 등 총 4개의 중분류 지표와 총 13개의 소분류 지표, 총 31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중분류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참가율’등 3개의 소분류 지표로 구성하였다. 우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에는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탈북난민 아동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등 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은 기존 지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즉 기존 지표의 명칭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이었다. 하지만 이 지표에는 다문화 가정 아동과 탈북난민 통계가 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주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표명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로 수정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참가율'은 기존의 지표체계와 동일하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참가율'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로 구성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모두 성과지표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과정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향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참여율'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등 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이중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는 기존의 지표체계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와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을 통합한 것으로, 이들 2개의 지표가 성격이 비슷하여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전문가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두 번째 중분류인 '소년사법아동'에서는 기존의 지표체계에서 크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도 소분류(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와 세부지표항목(총 8개)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였다. 세 번째 중분류인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결과 기존의 지표체계와 세부 지표항목에 크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도의 소분류(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근로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시 폭력예방 노력정도)와 총 6개의 세부지표항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에 포함되어 있는 "아르바이트 중 성적인 피해경험"은 오히려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률'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협의회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르바이트 중 성적인 피해경험"은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률'에 포함되도록 지표체계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묻는 질문에서도 설문지의 문항에 변화된 최저임금이 표기되도록 수정하였다("최저임금(2016년 기준 시간당 6,030원, 2017년 기준 시간당 6,47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분류인 '성적착취'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결과 기존의 지표체계와 세부 지표항목에서 크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6년도의 소분류(청소년 성폭력 예방노력 정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총10개의 세부지표항목 중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와 관련하여 실제 내용은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표명을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는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로 지표명을 수정하였다. 전반적으로 '특별보호 조치'에서는 구조지표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분류 영역에 비해 많으며, 과정지표와 성과지표가 비교적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본 연구는 2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2016년와 마찬가지로 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기준(CRC/C/58/Rev.3)(UNCRC, 2015)을 인권지표체계의 기본틀로 삼고 있으며, 세부 지표항목들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표체계 구성 이해를 위해 2016년도 선행 보고서에 제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틀과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체계 구성표를 재제시하면 <표 II-3-1>과 같다. 협약 영역 중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등은 다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약의 기본 원칙으로서 다른 모든 조항들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으로서 인권지표체계에서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로 포괄하여 구성하였고, 나머지 6개 협약 영역들은 각각 하나의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로 매치된다. 마지막 2개의 선택의정서 영역은 국가보고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별도 대분류 영역으로 구성하지는 않았다(김영지 외, 2016: 20).

표 II-3-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구성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 협약 4, 42, 44(6)조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제4조) – 유보조항, 입법, 국가행동계획, 담당조직, 예산배분, 국제협력, 독립적 인권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동권리와 기업(재계) 2) 협약 홍보(제42조) – 협약 및 선택의정서 홍보 및 인권교육, 권고사항 홍보 3)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 아동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일반논평 제2호, 2002)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 조치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일반논평 제5호, 2003) •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국가의무(일반논평 제16호, 2013)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일반논평 제19호, 2016)
2. 아동의 정의 : 협약 1조		1)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제1조) – 만 18세 미만 아동 관련 보호와 권리 관련 연령 (남·여아 혼인 최소 연령 포함) • 아동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일반논평 제14호, 2013) • 아동 의견표명권(일반논평 제12호, 2009)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3. 일반 원칙 : 협약 2, 3, 6, 12조		1)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성, 장애, 소수인종, 원주민 아동 권리 보장 조치 등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 – 입법, 행정, 사법결정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현황 3)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 사형제도, 아동의 사망과 불법 살해, 자살예방 및 유아살해 퇴치, 기타 생명·생존·발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4) 아동 견해존중(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 입법, 행정, 사법결정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현황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협약 7, 8, 13–17조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이름과 국적(제7조) 2)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3) 표현의 자유와 정보공유(제13조)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5)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6) 사생활의 보호(제16조) 7) 정보접근권 및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제17조) 8)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5. 아동에 대한 폭력 : 협약 19, 24(3), 28(2), 34, 37(a), 39조	3. 폭력 및 학대	1) 아동학대와 유기(제19조) 2) 유해한 전통관습 폐지(제24조 3항) 3)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제34조) 4)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5)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6) 아동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 유무 •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일반논평 제8호, 2006) •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13호, 2011) • 유해한 관습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일반논평 제18호, 2014)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6.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협약 5, 9–11, 18(1,2), 20, 21, 25, 27(4)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제5조) 2) 부모의 공동 책임,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제18조)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4) 가족의 재결합(제10조) 5)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6)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7)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8) 입양(제21조) 9)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10)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 이행(일반논평 제7호, 2005. 수정 2006) • 아동 대안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
7.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협약 6, 18(3), 23, 24, 26, 27(1–3), 33조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 장애아동(제23조) 2) 생존 및 발달(제6조) 3)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4)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증진 및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 치료 노력 5)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6) 약물남용 보호조치(제33조) 7)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제26조, 제18조 3항) 8)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제27조 1~3항) • HIV/AIDS와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3호, 2002) •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 청소년 건강과 발달(일반논평 제4호, 2003) • 장애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9호, 2007) • 달성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아동의 권리(제15호, 2013)
8.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협약 28–31조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직업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제28조) 2) 교육의 목적, 교육의 질(제29조) 3)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4) 인권교육과 시민교육 5) 휴식, 놀이,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제31조) • 교육의 목적(일반논평 제1호, 2001) • 유년기 아동권리의 이행(일반논평 제7호, 2005. 수정 2006) • 장애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9호, 2007)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 휴식, 레저, 놀이, 여가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17호, 2013)
9. 특별보호 조치 : 협약 22, 30, 32~36, 37(b–d), 38–40조	7. 특별보호 조치	1) 난민아동(제22조), 망명신청을 한 부모없는 아동, 이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아동 2)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3)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4) 착취상황하의 아동과 그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 –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제32조) –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 불법생산 및 거래에서 아동이용(제33조) –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제34조) –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제35조)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5) 법에 저촉된 아동, 아동 피해자, 범죄 목격 아동과 청소년사법 – 소년사법 운영(제40조), 특수법원의 존재, 형법적 책임에 대한 최소 연령 적용 여부 –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구금 최소화 및 법적 및 기타 지원 신속 제공 조치(제37조 나~라) –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에 기반한 대안처벌 유무(제37조 가)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전문가 대상 사법처리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청소년 사법 분야 훈련활동 6)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를 비롯한 무력분쟁 하의 아동(제38조) •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일반논평 제6호, 2005) •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10호, 2007)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10.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2)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 제2조와 제3조의 형법 포함 여부, 치외법권 행사 여부 3) 선택의정서 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 수립 4) 선택의정서 위반의 유해 효과 인식 증진 및 예방 5) 선택의정서 위반으로 인한 아동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조치 및 보상 절차 6) 선택의정서 위반 관행 목격아동과 피해아동 보호 조치 7) 선택의정서 위반 예방, 감시, 조사, 기소, 처벌 관련 국제협력 8) 선택의정서 위반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사회복귀, 본국 송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조치
11.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2) 군대 징집 최소연령 3) 자원입대 최소연령 4)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권 행사 여부 5) 아동의 적대행위 가담 여부 6) 적대행위에 모집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조치 7) 아동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중 무력분쟁 영향 아동 식별절차 및 이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회복 지원 8) 적대행위에 모집되어 전쟁 범죄로 기소된 아동 유무

* 출처 : 김영지 외(2016). pp. 20–23

앞 2절의 논의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논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표 Ⅱ-3-2>와 같다. '7개 대분류 – 24개 중분류 – 56개 소분류(지표) - 135개 지표항목'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 영역별 지표항목 개수는 1영역 인권일반 11개, 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 20개, 3영역 폭력 및 학대 9개, 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3개, 5영역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32개, 6영역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19개, 7영역 특별보호조치 31개 등이다. 135개 지표항목 중에서 행정통계 및 타분야 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는 83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권실태 설문조사로 결과를 생산하는 지표는 52개이다.

표 II-3-2 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식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전체, 사이버공간)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1-1-3-2. 인권교육 경험(횟수, 장소, 도움정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받은 경험*
			1-2-1-2. 차별해 본 경험*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2.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운영 여부, 참여정도)*
			2-1-2-3.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4.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 개인정보 공개정도(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률
			2-5-1-3. 아동·청소년 매체 접근성
		2-5-2. 정보제공 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폭력피해 경험*
			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2. 체벌 경험률	3-1-2-1. 체벌 경험률*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2-1-3. 방임 정도*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3-2-2-2.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3-2-2-3.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1-2. 입양 사후조치(입양성공률/파양률)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요보호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5-1-1-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3. 사고 사망률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5-2-2-2. 지역사회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5-3-1-2.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1-3.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2. 신체적 건강	5-4-2-1. 운동 실천율*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5-4-2-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5-4-2-4. 비만율
		5-4-3. 정신적 건강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5-4-3-2. 우울증*
			5-4-3-3. 스트레스 인지율*
			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5-4-3-5. 삶의 만족도*
			5-4-3-6. 자아존중감*
			5-4-3-7. 고민거리대화상대*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 · 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1. 아동 · 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5-5-1-2. 아동 · 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5-2.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6-1-1-2. 학생 진학률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6-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6-2-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6-2-2-1. 대안교육 참여 기회
			6-2-2-2. 직업교육 참여 기회
	6-3. 여가, 놀이 및 문화 · 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 · 문화 · 예술 활동기반 시설수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6-3-2. 여가 · 문화 · 예술활동 참여율	6-3-2-1. 여가 · 문화 · 예술활동 참여도
			6-3-2-2. 아동 · 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6-3-3. 여가·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7-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7-2. 소년사법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3년주기)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7-3. 경제적 착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7-4-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7-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7-4-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3년주기)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제 Ⅲ 장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폭력 및 학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7. 특별보호조치

제 III 장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13][14]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인권일반

(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①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15]

2017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개정(개정 2017.10.24., 시행 2019.1.1.)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해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

13)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김희진 연구위원 이민희 교수, 김진호 교수가 집필하였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1절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과 2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을, 김희진 연구위원은 3절 폭력 및 학대 영역의 2) 아동학대 분야와 4절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그리고 5절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의 4) 건강 분야와 5) 사회보장 분야를, 이민희 교수는 3절의 1) 폭력 분야와 6절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영역을, 김진호 교수는 5절의 1) 장애, 2) 생존 및 발달, 3) 보건서비스 분야와 7절 특별보호조치 영역을 집필하였다.

14) 본 과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추이를 살펴보는 연속과제로, 과거 인용된 행정통계나 타분야 통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게 되므로 출처 표기 시 연도별 누적이 많아질 경우는 일부 자료 성격에 따라 전년도 인권보고서를 포괄적인 출처로 제시하거나 각년도 자료명을 대표로 제시하고, 2017년에 신규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교차분석표는 주요문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전체 통계결과표는 별권인 「201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연구보고 17-R15-2)」에서 참고할 수 있다. 통계표에서 일부 빈도/비율이 0건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차분석 시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세 집단을 기본으로 분석하였으며, 고등학교 세부유형별 분석을 한 경우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계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일반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상 '일반고, 특수목적고 일부(외고, 과학고 등), 자율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고'보다 더 큰 범위의 용어이고, '특성화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91조)에서 말하는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 중에서 예술, 체육,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를 포괄하는 용어로, '특성화고' 보다 더 큰 개념의 구분이다(김영지 외, 2016: 79). 한편 직업계고 관련 정부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차년도부터는 '특성화계고'는 직업계열 범주로 성격을 명확히하여 예·체능고는 제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직업계고'로 통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main.html),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bill/main.do) 검색, 법령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동복지법 개정(개정 2017.9.19., 시행 2017.12.20.)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기관(위탁교육기관)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 및 시행 2017.3.21.)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개정 2016.12.20., 시행 2017.6.21.)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해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가정폭력이나 친족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에 대해 청소년쉼터의 장이 해당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개정 2016.12.20., 시행 2017.3.21.)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개정 및 시행 2016.12.20.)을 통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차별금지 명시 및 학교적응 지원대책 마련 등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개정 2017.3.14., 시행 2017.9.15.)을 통해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개정 2016.12.20., 시행 2017.6.21.)을 통해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종사자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아동수당법안이 2017년 9월 28일 정부에서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관련 법제가 활발히 마련되고 있는 것도 특이할 점이라 할 수 있다.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취지에 동의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이 지역사회에 구현되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 성북구(제정 및 시행 2014.5.29.), 서울시 강동구(제정 2016.5.4., 시행 2016.11.4.), 군산시(제정 및 시행 2016.10.31.) 등은 아동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아동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청소년 문화카드(진로체험카드) 지원 조례(제정 2016.10.31., 시행 2017.1.1.)와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정 및 시행 2017.7.20.), 서울시 성북구의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제정 및 시행 2017.5.18.),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 2017.10.17., 시행 2018.1.1.), 순천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시행 2017.6.30.),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시행 2017.7.7.) ,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2017.6.15., 시행 2018.1.1.) 등은 아동・청소년의 여가・문화와 진로 관련 지원을 위한 선도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제정 및 시행 2017.5.18.)는 인권 취약집단인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별 조례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시행 2017.1.5.)와 함께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제정 및 시행 2017.5.18.)를 별도로 제정하여 아동과 청소년업무 간의 효율적 연계・협력 모델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②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독립적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2014년 7월에 아동・청소년인권 전담부서로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하고 2017년 2월에는 이를 '아동・청소년인권과'로 확대하여 7명의 직원이 아동・청소년 인권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2016년 4월에는 아동・청소년 권리 독립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 소위원회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여 2016년에 7회 회의를 개최하여 131개 안건을 논의하고 93건을 의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284).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 등과 관련하여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2011년 5월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개소한 청소년 인권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가

2017년부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센터장을 포함하여 3인의 인력이 배치되어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권리교육 실시, 권리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연수를 담당하는 역량개발본부 산하에 설치되어 청소년 업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16]

아동·청소년 인권옹호를 위한 조직으로 최근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인권옴부즈퍼슨제도가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들은 아동친화도시 요건에 옴부즈퍼슨이나 아동권리위원 등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나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에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옴부즈퍼슨의 이상적인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이나 현재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나가는 초기 단계로 보이며 대부분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아동권리지킴이'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자치단체의 시민인권보호관을 아동권리지킴이로 임명하거나 지역의 민간아동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 상에 옴부즈퍼슨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제13조),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3조),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4조) 등이다.

자치단체에 확산되고 있는 아동옴부즈퍼슨제도가 정착되고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등의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은 수준의 위상과 자원을 갖는다면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청소년 관련 재원수준이 낮음을 지적하고 이를 증가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18~19). 아동·청소년정책은 다양한 부처에 관련되어 있으나 각 정책분야별 예산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분리 표시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의 정확한 범위와 산출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결과 생산 가능성을

1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제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청소년희망센터의 주요업무는 1. 센터 운영 기본계획 및 평가 및 실적보고, 2. 기획과제 선정 및 실태조사 토론회 진행, 3. 청소년 권리상황 모니터링단 운영 및 활동, 4. 청소년권리증진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권리체험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청소년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네트워크 등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웹 사이트(https://www.kyci.or.kr/userSite/index.asp)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제 규칙 참고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매년 '나라살림 예산' 자료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으로 그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유아·초중등교육, 소년사법, 아동복지, 보육, 아동폭력예방, 청소년 관련 예산 항목 등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중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일부 사업예산만 포함되는 제한점이 있으나 현재 접근 가능한 공식 국가예산자료로는 최선의 산출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2016년도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은 2.9%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2013년과 2014년에 3.2%였던 것에 비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 1인당 국가예산 지출비용은 2012년 4,344,000원이었던 것에서 2016년 5,393,000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2~2017)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국가예산(A)		223,138,337,514	236,225,287,896	247,203,163,288	258,585,647,374	268,387,199,393	275,010,413,607,
아동·청소년 예산 (천원)	유아·초중등교육	38,804,797,542	41,523,622,672	41,465,434,441	39,565,607,727	41,511,850,346	47,149,425,794
	소년사법	8,887,000	13,991,000	16,981,000	20,331,000	20,960,000	22,371,000
	아동복지	208,479,000	239,061,000	213,511,000	222,801,000	229,831,000	245,178,000
	보육	3,028,568,000	4,131,345,000	5,273,819,000	4,943,994,000	5,270,824,000	5,373,451,000
	아동폭력예방	3,192,000	6,811,000	10,397,000	12,482,000	13,650,000	11,773,000
	청소년	47,435,000	57,527,000	67,694,000	67,711,000	68,691,000	87,169,000
	소계(B)	42,101,358,542	45,972,357,672	47,047,836,441	44,832,926,727	47,115,806,346	52,889,367,794
(B)/(A)*100(%)		18.9	19.5	19.0	17.3	17.6	19.2
아동청소년 인구(명)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8,587,747
1인당 지출비용		4,344	4,874	5,121	5,003	5,393	6,159
GDP		1,377.5조원	1,429.4조원	1,486.1조원	1,558.6조원	1,637.4조원	–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		3.1	3.2	3.2	2.9	2.9	–

*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2012). 2012 나라살림 예산. pp.3, 109, 151, 241, 240, 245–246, 277–278, 280.
기획재정부(2013). 2013 나라살림 예산. pp.3, 116, 167, 271–272, 278, 277, 315, 317–318.
기획재정부(2014). 2014 나라살림 예산. pp.3, 134, 175, 263–264, 269, 268, 302–305.
기획재정부(2015). 2015 나라살림 예산. pp.3, 129, 164, 168, 255–256, 261, 260, 294, 296–297.
기획재정부(2016). 2016 나라살림 예산. pp.3, 117, 167, 171, 252–253, 258, 257, 291, 293.
기획재정부(2017). 2017 나라살림 예산. pp.3, 117, 165, 169, 249, 254, 255, 286, 287, 288.

* 아동·청소년 예산 산출식: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소년사법 예산: 1137항 여성아동인권증진+1632항 소년보호) + (아동복지 예산: 1300항 요보호아동+1400항 아동복지+1000항 아동·청소년정책) + (보육 예산: 3100항 보육지원) + (아동폭력예방 예산: 4131항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4132항 아동·청소년성보호정책지원) + (청소년 예산: 21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2200항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 인구 출처(~18세 미만):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SubCont 에서 2017년 8월 29일 인출.

* GDP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에서 2017년 7월 19일 인출.

*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 산출식: 아동·청소년 예산(총계)/GDP×100

(2) 인권에 대한 인식

①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에 대한 인식' 소분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관련 규약과 인권전담 기관에 대한 인지도,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인권의식 및 태도 등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된다.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45.0%의 아동·청소년이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름만 들어봤다' 44.4%,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0.7% 등의 응답률을 보여 절반에 가까운 아동·청소년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보지도 않고 모르고 있어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유엔아동권리협약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45.0	44.4	10.7	100.0(8,999)	–
성별	남자	46.9	41.8	11.3	100.0(4,682)	26.450***
	여자	42.9	47.2	10.0	100.0(4,317)	
학교급	초등학교	52.4	37.0	10.6	100.0(2,601)	116.703***
	중학교	39.2	48.3	12.5	100.0(2,903)	
	고등학교	44.3	46.6	9.2	100.0(3,494)	
지역 규모	대도시	43.2	45.6	11.2	100.0(3,757)	10.886*
	중소도시	45.8	43.5	10.6	100.0(3,966)	
	읍면지역	47.4	43.4	9.2	100.0(1,27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4.4	44.7	10.9	100.0(8,140)	17.186**
	한부모가정	49.1	42.9	8.0	100.0(655)	
	조손가정	51.1	37.5	11.4	100.0(86)	
	기타	57.5	34.3	8.2	100.0(110)	
학업 성적	상	41.4	44.8	13.7	100.0(3,031)	59.622***
	중	45.7	44.6	9.7	100.0(3,855)	
	하	48.7	43.3	8.0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43.0	45.0	12.0	100.0(4,901)	30.222***
	중	46.9	43.8	9.3	100.0(3,149)	
	하	48.7	43.1	8.3	100.0(944)	

*p<.05, **p<.01, ***p<.001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남 11.3%, 여 10.0%)인 경우, 중학교(12.5%), 초등학교(10.6%), 고등학교(9.2%) 순으로, 대도시일수록(대도시 11.2%, 중소도시 10.6%, 읍면지역 9.2%), 가족유형은 조손가정(11.4%), 양부모가정(10.9%), 한부모가정(8.0%) 순으로, 학업성적(상 13.7%, 중 9.7%, 하 8.0%)과 경제적 수준(상 12.0%, 중 9.3%, 하 8.3%)이 높을수록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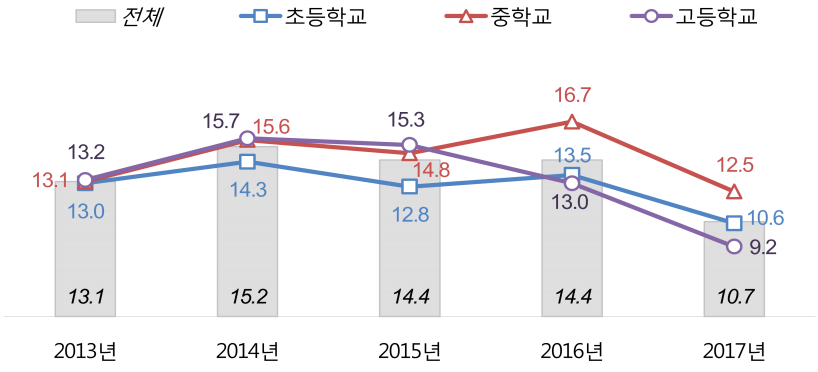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1-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유엔아동권리협약(연도별 추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13.1%에서 2014년에 15.2%로 상승했다가 2015년과 2016년에 14.4%로 소폭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10.7%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다. 교급별 현황을 보면 고등학생의 협약 인지도가 2016년부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도 감소 폭도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나. 학생인권조례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를 알아보는 두 번째 문항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54.9%의 아동·청소년이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름만 들어봤다' 39.0%,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6.1%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Ⅲ-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학생인권조례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54.9	39.0	6.1	100.0(8,995)	–
성별	남자	56.3	37.6	6.1	100.0(4,679)	8.524*
	여자	53.4	40.5	6.1	100.0(4,316)	
학교급	초등학교	62.2	33.5	4.2	100.0(2,600)	146.371***
	중학교	56.7	38.1	5.1	100.0(2,900)	
	고등학교	48.0	43.7	8.3	100.0(3,494)	
지역 규모	대도시	56.9	37.9	5.2	100.0(3,756)	24.821***
	중소도시	52.7	40.0	7.3	100.0(3,963)	
	읍면지역	55.9	38.9	5.2	100.0(1,27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4.5	39.3	6.2	100.0(8,136)	8.044
	한부모가정	58.3	37.0	4.7	100.0(655)	
	조손가정	58.5	35.1	6.4	100.0(86)	
	기타	62.7	32.2	5.2	100.0(110)	
학업 성적	상	52.1	40.2	7.8	100.0(3,030)	34.290***
	중	55.8	38.5	5.8	100.0(3,852)	
	하	57.4	38.3	4.3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54.3	38.8	7.0	100.0(4,897)	13.451**
	중	55.8	39.2	5.0	100.0(3,149)	
	하	55.5	39.1	5.4	100.0(944)	

*p<.05, **p<.01, ***p<.001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56.3%)이 여학생(53.4%)보다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고, '잘 알고 있는' 경우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8.3%, 중 5.1%, 초 4.2%), 중소도시인 경우(중소도시 7.3%, 대도시와 읍면지역 각각 5.2%),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7.8%, 중 5.85, 하 4.3%),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상 7.0%, 하 5.4%, 중 5.0%)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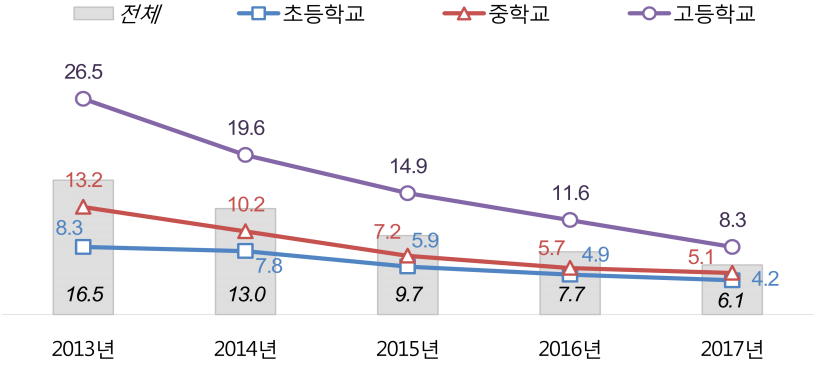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16.5%, 2014년 13.0%, 2015년 9.7%, 2016년 7.7%, 2017년 6.1%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2013년 고등학생 26.5%, 중학생 13.2%, 초등학생 8.3%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17년에는 고등학생 8.3%, 중학생 5.1%, 초등학생 6.1%만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모른다' 31.8%, '이름만 들어봤다' 54.1%,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14.1% 등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인지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름만 들어본 경우(54.1%)를 포함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68.2%로 나타났다.

표 Ⅲ-1-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국가인권위원회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31.8	54.1	14.1	100.0(8,996)	–
성별	남자	34.9	51.7	13.4	100.0(4,679)	42.945***
	여자	28.4	56.6	14.9	100.0(4,317)	
학교급	초등학교	37.5	51.4	11.1	100.0(2,601)	111.582***
	중학교	32.7	54.6	12.7	100.0(2,900)	
	고등학교	26.8	55.6	17.6	100.0(3,494)	
지역 규모	대도시	30.6	54.6	14.8	100.0(3,756)	8.752
	중소도시	33.3	53.2	13.5	100.0(3,965)	
	읍면지역	30.6	55.5	14.0	100.0(1,27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2	54.4	14.4	100.0(8,137)	17.561**
	한부모가정	36.9	51.5	11.6	100.0(655)	
	조손가정	32.6	53.0	14.3	100.0(86)	
	기타	43.7	45.6	10.7	100.0(110)	
학업 성적	상	29.2	53.0	17.8	100.0(3,031)	74.858***
	중	31.1	55.9	13.0	100.0(3,852)	
	하	36.6	52.4	11.0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30.7	53.4	15.9	100.0(4,898)	28.769***
	중	33.0	55.0	12.0	100.0(3,149)	
	하	33.4	54.6	11.9	100.0(944)	

**$p<.01$, ***$p<.001$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14.9%)이 남학생(13.4%)보다, 교급이 높을수록(고 17.6%, 중 12.7%, 초 11.1%), 양부모가정(14.4%), 조손가정(14.3%), 한부모가정(11.6%) 순으로, 학업성적(상 17.8%, 중 13.0%, 하 11.0%)과 경제적 수준(상 15.9%, 중 12.0%, 하 11.9%)이 높을수록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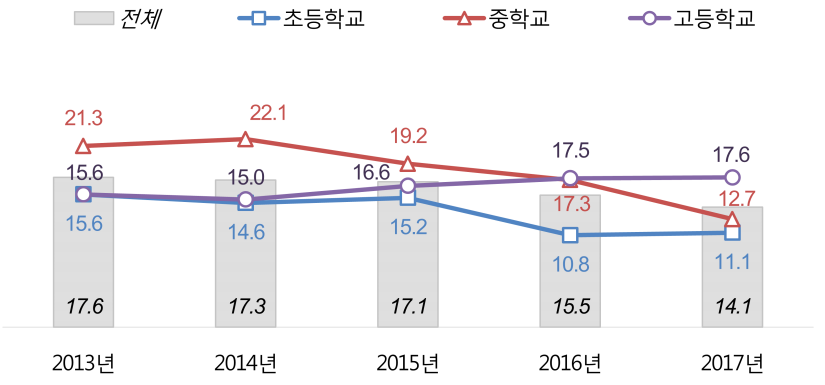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17.6%, 2014년 17.3%, 2015년 17.1%, 2016년 15.5%, 2017년 14.1%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은 2015년 15.2%에서 2016년 10.8%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7년 11.1%로 소폭 상승하였다. 중학생은 2013년 21.3%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 12.7%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소폭이지만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014년 15.0%, 2015년 16.6%, 2016년 17.5%, 2017년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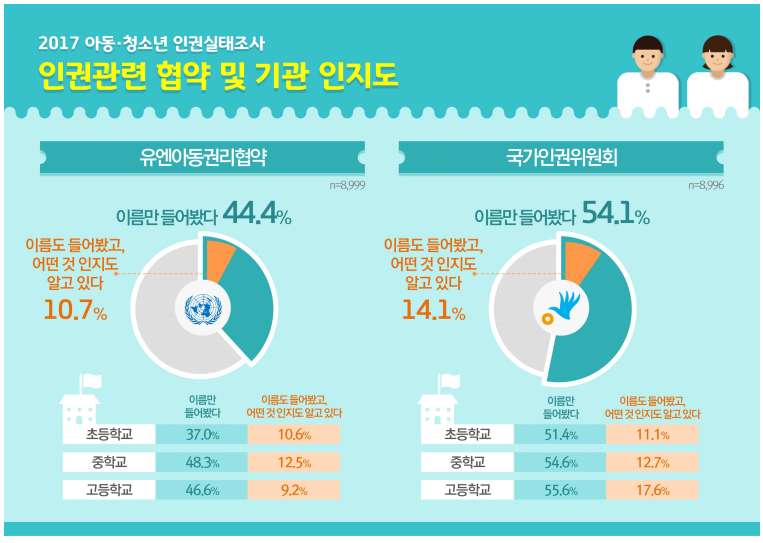

【그림 Ⅲ-1-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②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지역, 대한민국 전체, 사이버공간)

'인권에 대한 인식' 소분류를 구성하는 두 번째 지표항목은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는 항목이다. 영역별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가정(94.8%), 지역사회(90.9%), 학교(89.3%), 사이버 공간(80.2%), 우리나라 전체(77.3%) 순으로 나타나, 가까운 생활공간보다는 사회전반의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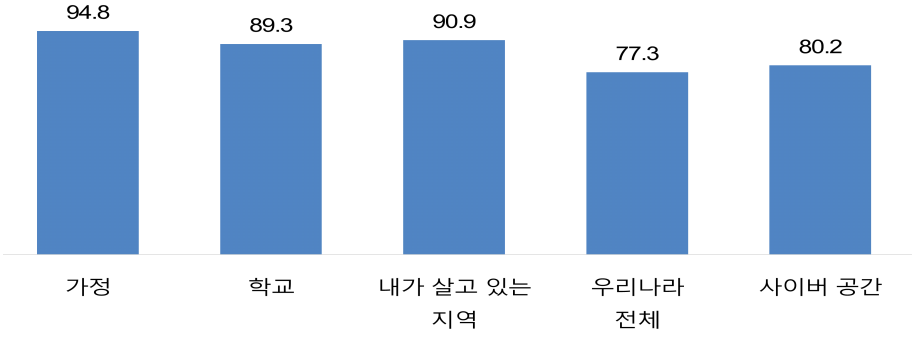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5】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다음은 가정, 학교, 지역,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 등 영역별 인권 존중 정도를 살펴본다. 먼저, 가정에서 어느정도 존중받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94.8%의 아동・청소년이 '존중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5.3%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가정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 다	전체(N)	χ^2
전체		3.44(0.63)	1.2	4.1	44.4	50.4	100.0(8,998)	-
성별	남자	3.45(0.64)	1.5	3.6	43.4	51.5	100.0(4,681)	19.383***
	여자	3.43(0.62)	0.8	4.6	45.5	49.2	100.0(4,317)	
학교급	초등학교	3.55(0.61)	1.1	3.2	35.2	60.5	100.0(2,601)	183.539***
	중학교	3.42(0.65)	1.5	4.7	44.4	49.3	100.0(2,903)	
	고등학교	3.37(0.61)	1.0	4.3	51.1	43.6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3.46(0.62)	1.0	4.0	42.5	52.4	100.0(3,758)	18.084**
	중소도시	3.43(0.64)	1.3	4.0	45.0	49.7	100.0(3,965)	
	읍면지역	3.39(0.64)	1.5	4.5	47.8	46.2	100.0(1,27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6(0.62)	1.0	3.7	43.8	51.5	100.0(8,140)	123.764***
	한부모가정	3.28(0.69)	1.9	8.1	50.6	39.4	100.0(655)	
	조손가정	3.41(0.67)	2.3	3.1	45.7	48.9	100.0(86)	
	기타	3.12(0.89)	8.8	8.0	45.9	37.3	100.0(110)	
학업 성적	상	3.55(0.61)	1.0	3.3	35.6	60.1	100.0(3,031)	257.752***
	중	3.44(0.61)	0.9	3.5	46.5	49.1	100.0(3,856)	
	하	3.28(0.67)	1.9	6.5	53.0	38.6	100.0(2,108)	
경제적 수준	상	3.54(0.58)	0.6	2.8	39.0	57.6	100.0(4,901)	422.743***
	중	3.38(0.64)	1.6	3.7	50.1	44.6	100.0(3,149)	
	하	3.14(0.74)	3.0	12.1	53.2	31.7	100.0(944)	

**$p<.01$, ***$p<.001$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94.9%)이 여학생(94.7%)보다, 초등학교(95.7%), 고등학교(94.7%), 중학교(93.7%) 순으로, 대도시일수록(대도시 94.9%, 중소도시 94.7%, 읍면지역 94.0%), 양부모가정(95.3%), 조손가정(94.6%), 한부모가정(90.0%) 순으로, 학업성적(상 95.7%, 중 95.6%, 하 91.6%)과 경제적 수준(상 96.6%, 중 94.7%, 하 84.9%)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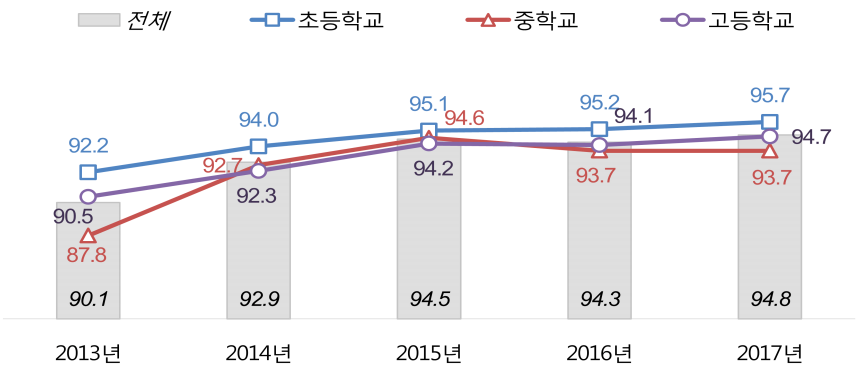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가정(연도별 추이)

가정에서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90.1%에서 2017년 94.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은 2013년 92.2%에서 2017년 9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2013년 87.8%에서 2015년 94.2%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93.7%로 소폭 감소하였다. 고등학생 응답률도 2013년 90.5%에서 2017년 94.7%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학교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하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16(0.66)	2.2	8.6	60.6	28.7	100.0(8,997)	–
성별	남자	3.18(0.68)	2.7	7.5	58.3	31.5	100.0(4,680)	63.079***
	여자	3.13(0.63)	1.6	9.8	63.1	25.6	100.0(4,317)	
학교급	초등학교	3.35(0.62)	1.0	4.7	52.5	41.8	100.0(2,600)	410.515***
	중학교	3.13(0.69)	2.7	9.7	59.5	28.2	100.0(2,902)	
	고등학교	3.03(0.63)	2.6	10.6	67.5	19.3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3.19(0.67)	2.4	7.9	58.4	31.3	100.0(3,758)	64.318***
	중소도시	3.17(0.64)	1.8	8.1	61.6	28.5	100.0(3,964)	
	읍면지역	3.04(0.66)	2.7	12.1	63.9	21.3	100.0(1,27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7(0.66)	2.0	8.3	60.1	29.5	100.0(8,138)	50.832***
	한부모가정	3.02(0.66)	3.0	11.6	65.7	19.7	100.0(655)	
	조손가정	3.09(0.69)	2.7	11.1	60.3	25.9	100.0(86)	
	기타	2.99(0.76)	7.1	7.5	64.6	20.8	100.0(110)	
학업 성적	상	3.30(0.66)	1.7	6.4	52.4	39.5	100.0(3,030)	379.091***
	중	3.15(0.62)	1.7	7.9	63.9	26.5	100.0(3,855)	
	하	2.97(0.67)	3.8	12.9	66.4	17.0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3.25(0.65)	1.8	6.6	56.4	35.1	100.0(4,901)	307.035***
	중	3.09(0.63)	2.0	10.0	65.0	23.1	100.0(3,148)	
	하	2.90(0.67)	4.6	14.3	67.6	13.5	100.0(944)	

***α<.001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정도를 보면, 89.3%의 응답자가 '존중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10.8%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89.8%)이 여학생(88.7%)보다, 교급이 낮을수록(초 94.3%, 중 87.7%, 고 86.8%), 중소도시인 경우(중소도시 90.1%, 대도시 89.7%, 읍면지역 85.2%), 양부모가정인 경우(양부모가정 89.7%, 조손가정 86.2%, 한부모가정 85.4%), 학업성적(상 91.9%, 중 90.4%, 하 83.4%)과 경제적 수준(상 91.5%, 중 88.1%, 하 81.1%)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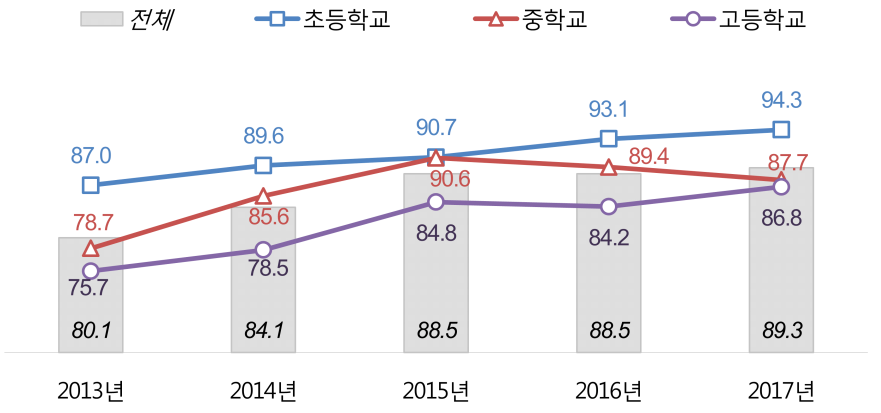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학교(연도별 추이)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80.1%에서 2017년 89.3%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 87.0%에서 2017년 94.3%까지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중·고등학생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도에 소폭 감소한 이후(중 89.4%, 고 84.2%), 2017년에 중학생은 87.7%로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고등학생은 86.8%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Ⅲ-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내가 살고 있는 지역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16(0.62)	1.6	7.5	64.2	26.7	100.0(8,991)	-
성별	남자	3.19(0.65)	2.2	6.9	60.8	30.2	100.0(4,677)	84.828***
	여자	3.13(0.58)	1.0	8.2	67.8	23.0	100.0(4,314)	
학교급	초등학교	3.24(0.69)	1.8	9.1	52.3	36.8	100.0(2,597)	288.333***
	중학교	3.16(0.62)	1.8	6.9	64.4	26.9	100.0(2,899)	
	고등학교	3.10(0.55)	1.4	6.8	72.8	19.0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3.18(0.63)	1.6	7.5	61.8	29.1	100.0(3,754)	25.439***
	중소도시	3.15(0.61)	1.6	7.4	65.2	25.9	100.0(3,963)	
	읍면지역	3.11(0.60)	1.6	8.1	68.0	22.3	100.0(1,27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7(0.61)	1.5	7.2	63.9	27.3	100.0(8,133)	-주)
	한부모가정	3.05(0.62)	2.3	10.0	68.5	19.2	100.0(655)	
	조손가정	3.25(0.59)	0.0	7.7	59.1	33.2	100.0(85)	
	기타	2.99(0.80)	7.3	9.8	59.4	23.5	100.0(110)	
학업 성적	상	3.27(0.64)	1.5	6.5	56.1	36.0	100.0(3,028)	284.314***
	중	3.16(0.58)	1.1	6.7	67.1	25.0	100.0(3,851)	
	하	3.01(0.61)	2.7	10.3	70.5	16.5	100.0(2,108)	
경제적 수준	상	3.25(0.63)	1.5	6.1	58.8	33.6	100.0(4,896)	332.204***
	중	3.10(0.58)	1.4	8.0	70.1	20.6	100.0(3,146)	
	하	2.92(0.60)	3.2	13.1	72.4	11.4	100.0(944)	

***α<.001

* 주) 앞서 본장의 각주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빈도/비율이 0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 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하 타 통계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는지에 대해 90.9%의 아동・청소년이 '존중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9.1%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91.0%)이 여학생(90.8%)보다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매우 존중받는다'는 응답의 경우 남학생(30.2%)이 여학생(23.0%)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교급이 높을수록(고 91.8%, 중 91.3%, 초 89.1%), 중소도시인 경우(중소도시 91.1%, 대도시 90.9%, 읍면지역 90.3%), 학업성적이 중위권인 경우(중 92.1%, 상 92.1%, 하 87.0%),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92.4%, 중 90.6%, 하 83.7%)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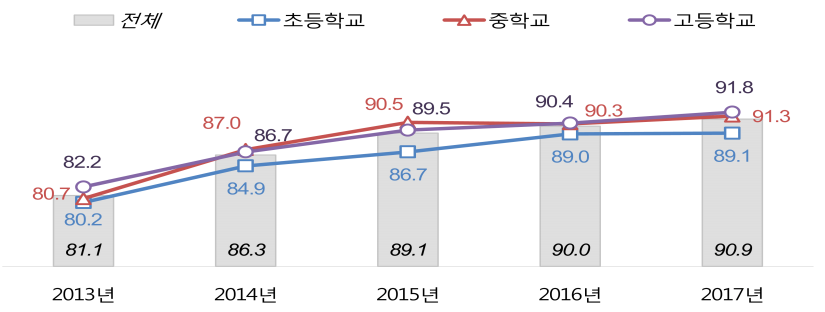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내가 살고 있는 지역(연도별 추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추이를 보면, 2013년 81.1%에서 2017년 90.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전 학교급이 비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은 2013년 80.2%에서 2017년 89.1%로, 중학생은 2013년 80.7%에서 2017년 89.1%로, 고등학생은 2013년 82.2%에서 2017년 91.8%로 전 교급이 9% 내외의 증가율을 보여 살고 있는 지역의 인권 존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우리나라 전체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전체(N)	χ^2
전체		2.92(0.76)	5.1	17.5	57.3	20.0	100.0(8,994)	–
성별	남자	2.95(0.79)	6.0	15.7	55.2	23.1	100.0(4,677)	89.355***
	여자	2.89(0.72)	4.2	19.6	59.6	16.6	100.0(4,316)	
학교급	초등학교	3.00(0.83)	6.2	15.5	50.0	28.3	100.0(2,597)	263.263***
	중학교	2.96(0.75)	4.6	16.8	56.9	21.7	100.0(2,902)	
	고등학교	2.83(0.69)	4.7	19.7	63.1	12.4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2.96(0.77)	5.0	16.9	55.9	22.3	100.0(3,758)	34.056***
	중소도시	2.91(0.76)	5.2	17.8	57.5	19.5	100.0(3,961)	
	읍면지역	2.85(0.73)	5.3	18.9	60.9	14.9	100.0(1,27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3(0.75)	4.9	17.1	57.6	20.3	100.0(8,135)	24.257**
	한부모가정	2.81(0.78)	6.7	21.2	56.4	15.6	100.0(655)	
	조손가정	2.91(0.82)	5.6	21.4	49.4	23.6	100.0(86)	
	기타	2.79(0.85)	9.1	21.7	50.5	18.7	100.0(110)	
학업 성적	상	3.04(0.78)	4.8	14.2	53.0	28.0	100.0(3,029)	271.274***
	중	2.93(0.73)	4.3	17.5	59.6	18.6	100.0(3,852)	
	하	2.74(0.75)	7.2	22.4	59.3	11.1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3.02(0.77)	4.5	14.7	54.8	26.0	100.0(4,899)	356.906***
	중	2.86(0.70)	4.5	19.1	62.1	14.3	100.0(3,147)	
	하	2.61(0.78)	10.1	27.2	54.6	8.1	100.0(944)	

**$p<.01$, ***$p<.001$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정도를 물어본 결과, 77.3%의 아동・청소년이 '존중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22.6%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78.3%)이 여학생(76.2%)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78.6%), 초등학교(78.3%), 고등학교(75.5%) 순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대도시 78.2%, 중소도시 77.0%, 읍면지역 75.8%), 양부모가정인 경우(양부모가정 77.9%, 조손가정73.1%, 한부모가정 72.0%), 학업성적(상 81.0%, 중 78.2%, 하 70.4%)과 경제적 수준(상 80.8%, 중 76.4%, 하 62.7%)이 높을수록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급별 응답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매우 존중받는다'는 응답률(28.7%)이 다른 교급(중 21.7%, 고 12.4%)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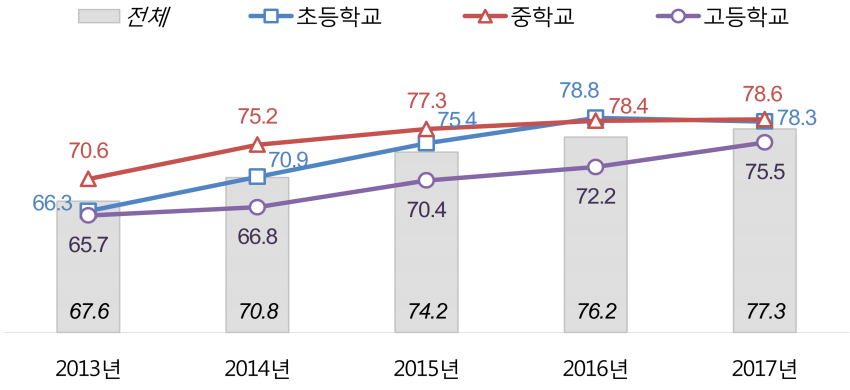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우리나라(연도별 추이)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67.6%에서 2017년 77.3%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2015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초등학생은 2017년에 전년 대비 0.5%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두 집단 모두 고등학생보다는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1-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전체(N)	χ^2
전체		2.96(0.77)	5.9	13.9	58.8	21.4	100.0(8,982)	–
성별	남자	2.95(0.81)	7.2	14.1	55.4	23.2	100.0(4,679)	66.336***
	여자	2.97(0.71)	4.4	13.7	62.6	19.4	100.0(4,303)	
학교급	초등학교	3.06(0.84)	7.1	10.9	50.5	31.5	100.0(2,584)	348.162***
	중학교	3.01(0.73)	4.3	13.2	59.8	22.6	100.0(2,903)	
	고등학교	2.84(0.72)	6.2	16.7	64.2	12.9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3.00(0.77)	5.3	13.5	57.4	23.8	100.0(3,754)	43.751***
	중소도시	2.95(0.76)	5.8	13.7	59.8	20.7	100.0(3,955)	
	읍면지역	2.85(0.78)	7.7	16.0	60.1	16.2	100.0(1,27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7(0.76)	5.8	13.4	59.1	21.7	100.0(8,126)	38.567***
	한부모가정	2.87(0.74)	5.3	18.5	59.7	16.5	100.0(653)	
	조손가정	2.84(0.89)	9.1	21.1	46.4	23.3	100.0(86)	
	기타	2.80(0.94)	13.2	16.2	48.5	22.1	100.0(110)	
학업 성적	상	3.07(0.79)	5.1	12.3	53.0	29.6	100.0(3,025)	209.177***
	중	2.94(0.75)	5.8	13.8	61.4	19.0	100.0(3,844)	
	하	2.83(0.75)	7.0	16.5	62.5	14.0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3.04(0.77)	5.6	11.3	56.7	26.4	100.0(4,892)	227.473***
	중	2.90(0.73)	5.4	15.9	62.4	16.2	100.0(3,143)	
	하	2.73(0.79)	9.0	20.8	57.9	12.3	100.0(944)	

***α<.001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해 80.2%의 아동·청소년이 '존중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19.8%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82.0%)이 남학생(78.6%)보다, 중학교(82.4%), 초등학교(82.0%), 고등학교(77.1%) 순으로, 도시규모가 클수록(대도시 81.2%, 중소도시 80.5%, 읍면지역 76.3%), 양부모가정인 경우(양부모가정 80.8%, 한부모가정 76.2%, 조손가정 69.7%), 학업성적(상 82.6%, 중 80.4%, 하 76.5%)과 경제적 수준(상 83.1%, 중 78.6%, 하 70.2%)이 높을수록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급별 응답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매우 존중받는다'는 응답률(31.5%)이 다른 교급(중 22.6%, 고 12.9%)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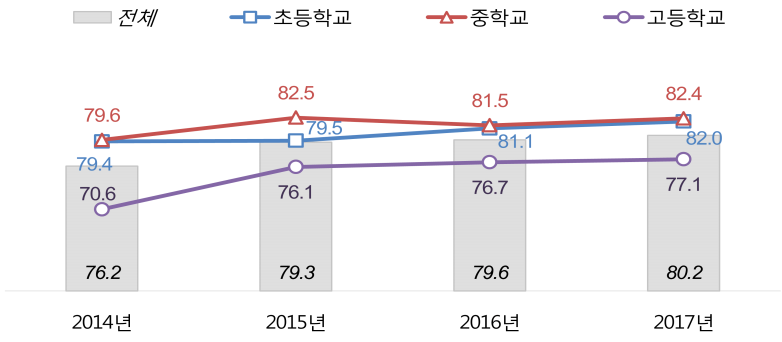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10】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연도별 추이)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 존중정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4년 76.2%, 2015년 79.3%, 2016년 79.6%, 2017년 80.2%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생은 2015년 82.5%에서 2016년 81.5%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82.4%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③ 인권의식 및 태도

'인권에 대한 인식' 소분류의 마지막 지표항목은 '인권의식 및 태도'이다. 이 항목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관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결정능력, 사회참여 필요성, 학생자치조직의 의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생각과 경제적 배경, 성별, 민족 등에 따른 차별과 관련한 7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표 Ⅲ-1-10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4(0.85)	29.7	41.0	24.8	4.5	100.0(8,998)	–
성별	남자	2.12(0.88)	27.6	38.9	27.7	5.8	100.0(4,681)	92.841***
	여자	1.96(0.81)	31.9	43.3	21.7	3.1	100.0(4,317)	
학교급	초등학교	2.27(0.93)	24.0	34.0	32.8	9.2	100.0(2,600)	360.243***
	중학교	1.96(0.81)	32.2	42.2	22.8	2.8	100.0(2,903)	
	고등학교	1.94(0.79)	31.8	45.2	20.5	2.5	100.0(3,495)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2.06(0.87)	29.7	40.2	24.4	5.6	100.0(3,758)	20.349**
	중소도시	2.03(0.84)	29.5	41.9	24.8	3.9	100.0(3,965)	
	읍면지역	2.02(0.83)	30.2	40.7	25.9	3.2	100.0(1,27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4(0.85)	29.6	41.0	24.9	4.6	100.0(8,140)	21.521*
	한부모가정	1.98(0.81)	31.2	43.1	22.7	3.0	100.0(655)	
	조손가정	2.06(0.89)	30.4	39.4	24.4	5.8	100.0(86)	
	기타	2.27(0.97)	26.5	29.4	34.4	9.8	100.0(110)	
학업 성적	상	2.04(0.88)	31.6	38.6	24.4	5.4	100.0(3,031)	19.731**
	중	2.05(0.84)	28.4	42.5	25.0	4.2	100.0(3,855)	
	하	2.03(0.84)	29.4	41.7	24.9	4.0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2.09(0.88)	29.3	38.0	27.1	5.6	100.0(4,902)	86.808***
	중	2.00(0.81)	29.1	44.7	22.8	3.3	100.0(3,148)	
	하	1.91(0.79)	33.9	44.1	19.4	2.6	100.0(944)	

*p<.05, **p<.01, ***p<.00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70.7%의 아동·청소년이 '그렇지 않다', 29.3%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75.2%)이 남학생(66.5%)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77.0%, 중 74.4%, 초 58.0%, 지역규모의 경우 중소도시(71.4%), 읍면지역(70.9%), 대도시(69.9%) 순으로, 한부모가정(74.3%), 양부모가정(70.6%), 조손가정(69.8%) 순으로, 학업성적(하 71.1%, 중 70.9%, 상 70.2%)과 경제적 수준(하 78.0%, 중 73.8%, 상 67.3%)이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른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남학생(33.5%)이 여학생(24.8%)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42.0%, 중 25.6%, 고 23.0%), 대도시인 경우(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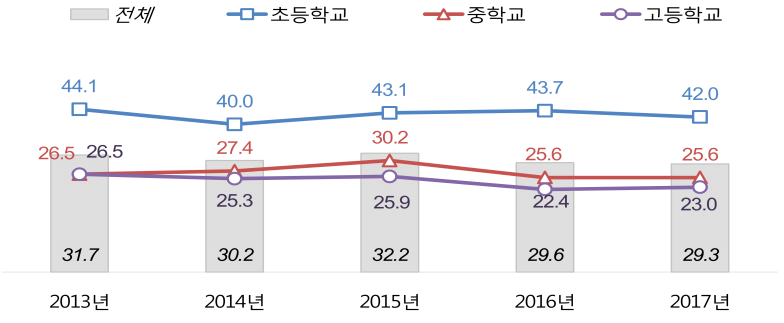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11】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연도별 추이)

30.0%, 읍면지역 29.1%, 중소도시 28.7%), 조손가정(30.2%)인 경우, 학업성적(상 29.8%, 중 29.2%, 하 28.9%)과 경제적 수준(상 32.7%, 중 26.1%, 하 22.0%)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률은 2013년 31.7%에서 2015년 32.2%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29.3%로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도 완만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초 : 2013년 44.1% → 2017년 42.0%, 중 : 2013년 26.5% → 2017년 25.6%, 고 : 2013년 26.5% → 2017년 23.0%).

표 Ⅲ-1-11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0(0.74)	3.6	8.8	51.9	35.7	100.0(8,996)	–
성별	남자	3.10(0.78)	5.0	11.1	52.5	31.4	100.0(4,680)	165.659***
	여자	3.30(0.68)	2.1	6.2	51.2	40.4	100.0(4,316)	
학교급	초등학교	3.12(0.83)	5.7	12.2	46.3	35.7	100.0(2,599)	126.591***
	중학교	3.20(0.73)	3.3	8.5	53.4	34.9	100.0(2,901)	
	고등학교	3.25(0.68)	2.4	6.4	54.8	36.4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3.22(0.74)	3.4	8.5	50.6	37.5	100.0(3,758)	11.084
	중소도시	3.18(0.75)	3.9	9.0	52.5	34.6	100.0(3,963)	
	읍면지역	3.18(0.73)	3.4	8.8	53.9	33.9	100.0(1,27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1(0.74)	3.5	8.4	52.0	36.1	100.0(8,138)	77.440***
	한부모가정	3.18(0.73)	3.3	9.6	53.4	33.7	100.0(655)	
	조손가정	2.98(0.96)	11.0	13.7	41.8	33.5	100.0(85)	
	기타	2.73(0.93)	12.3	23.0	43.9	20.8	100.0(110)	
학업 성적	상	3.30(0.76)	3.7	7.7	44.2	44.5	100.0(3,029)	170.629***
	중	3.17(0.72)	3.3	8.9	54.9	32.8	100.0(3,854)	
	하	3.10(0.74)	4.2	9.8	57.5	28.4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3.22(0.75)	3.7	8.3	50.5	37.5	100.0(4,900)	22.000**
	중	3.16(0.74)	3.7	9.4	54.3	32.6	100.0(3,148)	
	하	3.22(0.73)	3.2	8.9	51.0	37.0	100.0(943)	

**p<.01, ***p<.001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87.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2.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1.6%)이 남학생(83.9%)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91.2%, 중 88.3%, 초 82.0%), 대도시(88.1%), 읍면지역(87.8%), 중소도시(87.1%) 순으로, 양부모가정(88.1%), 한부모가정(87.1%), 조손가정(75.3%) 순으로, 학업성적(상 88.7%, 중 87.7%, 하 85.9%)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88.0%), 하(88.0%), 중(86.9%) 순으로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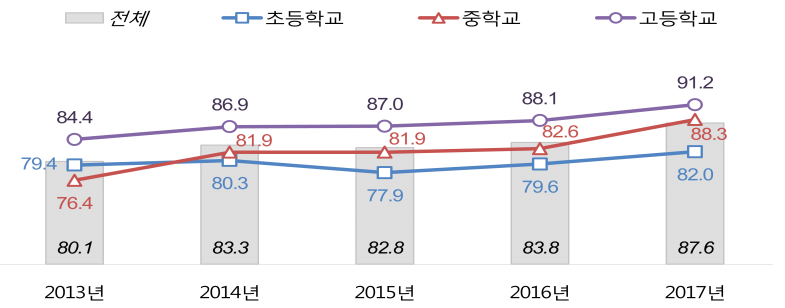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12】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연도별 추이)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은 2013년 80.1%에서 2017년 87.6%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은 2013년 79.4%에서 2015년 77.9%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82.0%로 상승하였으며, 중학생은 2013년 76.4%로 가장 낮은 응답률에서 2017년 88.3%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등학생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가지고 꾸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1-12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8(0.72)	4.6	13.4	61.4	20.5	100.0(6,395)	–
성별	남자	2.95(0.77)	6.3	13.3	59.5	20.9	100.0(3,335)	48.756***
	여자	3.01(0.67)	2.7	13.6	63.4	20.2	100.0(3,060)	
학교급	중학교	3.02(0.72)	4.4	11.8	61.2	22.6	100.0(2,899)	21.680***
	고등학교	2.94(0.72)	4.8	14.8	61.6	18.9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3.01(0.73)	4.4	12.8	60.3	22.5	100.0(2,671)	12.152
	중소도시	2.96(0.73)	5.0	13.8	62.1	19.2	100.0(2,680)	
	읍면지역	2.96(0.71)	4.3	14.4	62.3	19.1	100.0(1,04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8(0.72)	4.5	13.1	61.8	20.5	100.0(5,736)	20.342*
	한부모가정	2.98(0.72)	3.9	14.9	60.3	20.8	100.0(529)	
	조손가정	2.97(0.83)	6.5	15.5	52.3	25.7	100.0(48)	
	기타	2.74(0.93)	13.1	19.9	46.8	20.2	100.0(76)	
학업 성적	상	3.05(0.75)	4.3	12.6	56.8	26.3	100.0(1,784)	69.190***
	중	2.99(0.70)	3.8	13.2	63.1	19.9	100.0(2,678)	
	하	2.90(0.73)	6.0	14.5	63.4	16.2	100.0(1,929)	
경제적 수준	상	3.03(0.72)	4.2	11.5	61.0	23.3	100.0(3,112)	54.602***
	중	2.95(0.71)	4.5	14.4	63.2	18.0	100.0(2,439)	
	하	2.87(0.77)	6.4	17.8	58.0	17.8	100.0(842)	

*p<.05, ***p<.001

‘학생회 등 청소년 자치조직이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81.9%가 ‘그렇다’, 1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83.6%)이 남학생(80.4%)보다, 중학생(83.8%)이 고등학생(80.5%)보다, 양부모가정(82.3%), 한부모가정(81.1%), 조손가정(78.0%) 순으로, 학업성적(상 83.1%, 중 83.0%, 하 79.6%)과 경제적 수준(상 84.3%, 중 81.2%, 하 75.8%)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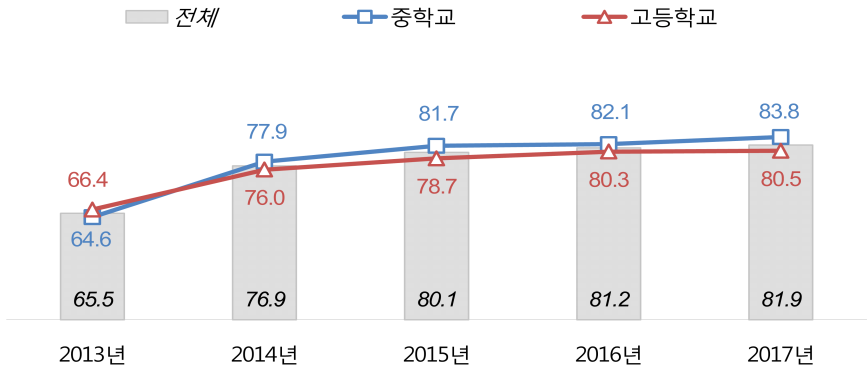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13】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연도별 추이)

‘학생회 등 청소년 자치조직이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응답률은 2013년 65.5%, 2014년 76.9%, 2015년 80.1%, 2016년 81.2%, 2017년 81.9% 등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청소년 자치조직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13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51(0.64)	1.7	2.8	38.5	57.1	100.0(8,991)	–
성별	남자	3.42(0.69)	2.6	3.9	41.8	51.7	100.0(4,676)	181.190***
	여자	3.60(0.55)	0.6	1.5	34.9	62.9	100.0(4,315)	
학교급	초등학교	3.55(0.66)	2.1	3.3	31.5	63.0	100.0(2,596)	79.021***
	중학교	3.49(0.63)	1.6	2.4	41.4	54.7	100.0(2,900)	
	고등학교	3.49(0.62)	1.4	2.6	41.4	54.6	100.0(3,49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3.53(0.63)	1.5	2.8	36.9	58.8	100.0(3,755)	30.834***
	중소도시	3.51(0.64)	1.8	2.6	38.1	57.6	100.0(3,962)	
	읍면지역	3.44(0.64)	1.6	3.2	44.9	50.3	100.0(1,27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2(0.63)	1.5	2.5	38.3	57.6	100.0(8,135)	81.451***
	한부모가정	3.48(0.63)	1.5	3.1	41.4	54.1	100.0(655)	
	조손가정	3.28(0.86)	6.3	7.5	38.4	47.8	100.0(86)	
	기타	3.16(0.91)	7.5	12.1	37.0	43.4	100.0(108)	
학업 성적	상	3.62(0.61)	1.6	2.0	29.7	66.7	100.0(3,030)	208.767***
	중	3.49(0.62)	1.4	2.9	41.0	54.7	100.0(3,850)	
	하	3.39(0.67)	2.3	3.7	46.5	47.6	100.0(2,107)	
경제적 수준	상	3.55(0.63)	1.7	2.2	35.7	60.4	100.0(4,899)	54.354***
	중	3.47(0.64)	1.6	3.3	42.1	53.0	100.0(3,143)	
	하	3.47(0.64)	1.6	3.6	41.3	53.5	100.0(944)	

***α<.001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95.6%가 '그렇다', 4.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7.8%)이 남학생(93.5%)보다, 중학교(96.1%), 고등학교(96.0%), 초등학교(94.5%) 순으로, 중소도시(95.7%), 대도시(95.7%), 읍면지역(95.2%) 순으로, 양부모가정(95.9%), 한부모가정(95.5%), 조손가정(86.2%) 순으로, 학업성적(상 96.4%, 중 95.7%, 하 94.1%)과 경제적 수준(상 96.1%, 중 95.1%, 하 94.8%)이 높을수록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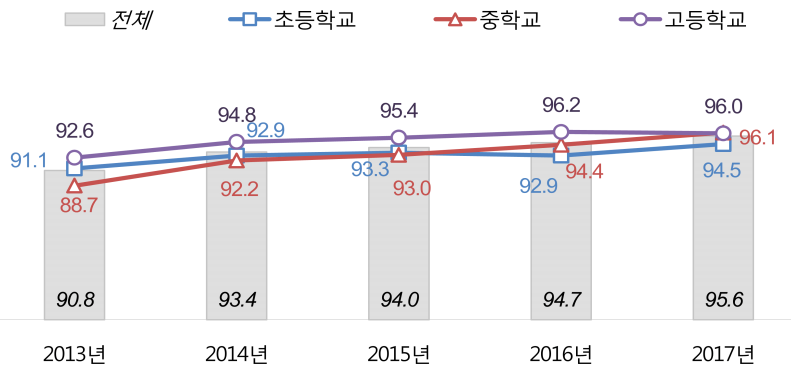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14】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에 대한 인식은 2013년 90.8%에서 2017년 95.6%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2016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다시 상승하였으며(2015년 93.3% → 2016년 92.9% → 2017년 94.5%), 중학생은 2013년 88.7%에서 2017년 96.1%로 증가하여 학교급 중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 미세하게 줄어들었다.

표 Ⅲ-1-14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62(0.61)	1.6	2.0	29.6	66.9	100.0(6,399)	–
성별	남자	3.53(0.68)	2.5	3.0	33.4	61.0	100.0(3,338)	149.111***
	여자	3.71(0.51)	0.6	0.8	25.3	73.3	100.0(3,061)	
학교급	중학교	3.63(0.61)	1.7	1.8	28.8	67.8	100.0(2,903)	2.609
	고등학교	3.61(0.61)	1.6	2.1	30.2	66.1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3.63(0.60)	1.6	1.8	28.6	67.9	100.0(2,672)	10.323
	중소도시	3.62(0.62)	1.8	1.9	29.2	67.1	100.0(2,682)	
	읍면지역	3.59(0.60)	1.2	2.4	32.8	63.6	100.0(1,04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63(0.59)	1.5	1.6	29.4	67.5	100.0(5,740)	101.826***
	한부모가정	3.57(0.64)	1.6	3.6	30.6	64.2	100.0(529)	
	조손가정	3.43(0.75)	3.8	4.1	37.4	54.7	100.0(48)	
	기타	3.13(1.01)	11.4	11.0	31.1	46.5	100.0(76)	
학업 성적	상	3.68(0.58)	1.5	1.4	24.5	72.6	100.0(1,784)	70.949***
	중	3.64(0.57)	1.1	1.6	29.9	67.4	100.0(2,679)	
	하	3.53(0.67)	2.4	2.9	33.7	60.9	100.0(1,932)	
경제적 수준	상	3.65(0.60)	1.6	1.7	27.3	69.5	100.0(3,112)	27.497***
	중	3.59(0.61)	1.6	1.9	32.6	63.9	100.0(2,441)	
	하	3.59(0.65)	2.1	3.1	29.0	65.9	100.0(844)	

***α<.001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질문에 대해 96.5%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3.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8.6%)이 남학생(94.4%)보다, 가족유형은 양부모가정(96.9%), 한부모가정(94.8%), 조손가정(92.1%) 순으로, 학업성적의 경우 중(97.3%), 상(97.1%), 하(94.6%) 순으로, 경제적 수준(상 96.8%, 중 96.5%, 하 94.9%) 순으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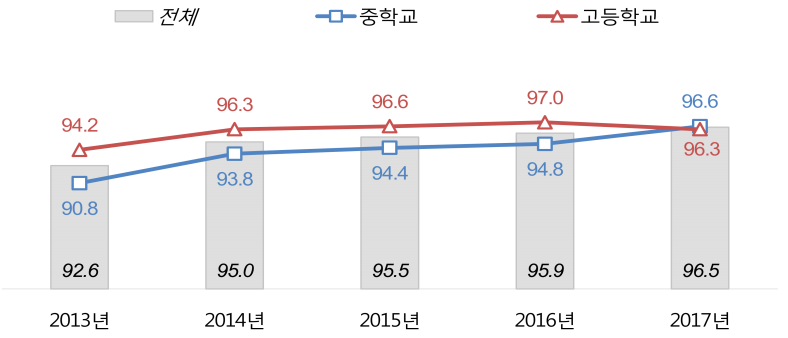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15】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연도별 추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응답률은 2013년 92.6%에서 2014년 95.0%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7년 96.5%까지 완만한 증가 양상을 보였다. 2013년에는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더 높았으나(고 94.2%, 중 90.8%) 이후 중학생의 응답률은 증가하고 고등학생 응답률이 소폭 감소하면서 2017년에는 중학생의 응답률이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96.3%, 중 96.6%).

표 Ⅲ-1-15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60(0.63)	1.7	2.7	28.8	66.7	100.0(8,997)	–
성별	남자	3.51(0.70)	2.8	3.9	33.3	60.0	100.0(4,681)	241.427***
	여자	3.71(0.52)	0.6	1.4	24.0	74.0	100.0(4,316)	
학교급	초등학교	3.64(0.64)	2.0	2.8	24.7	70.5	100.0(2,600)	50.950***
	중학교	3.63(0.60)	1.4	2.3	28.3	68.0	100.0(2,902)	
	고등학교	3.56(0.65)	1.9	3.0	32.3	62.8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3.62(0.63)	1.8	2.6	27.5	68.2	100.0(3,757)	28.135***
	중소도시	3.61(0.63)	1.7	2.6	28.3	67.3	100.0(3,966)	
	읍면지역	3.53(0.65)	1.8	3.5	34.3	60.5	100.0(1,27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62(0.62)	1.6	2.5	28.6	67.3	100.0(8,138)	60.067***
	한부모가정	3.57(0.67)	1.9	4.1	29.5	64.5	100.0(655)	
	조손가정	3.44(0.79)	4.8	4.3	33.0	57.9	100.0(86)	
	기타	3.25(0.87)	6.2	9.5	37.5	46.7	100.0(110)	
학업 성적	상	3.67(0.61)	1.9	2.0	23.2	73.0	100.0(3,029)	108.114***
	중	3.60(0.62)	1.3	3.0	30.1	65.5	100.0(3,856)	
	하	3.52(0.67)	2.3	3.2	34.5	60.0	100.0(2,108)	
경제적 수준	상	3.63(0.63)	1.8	2.5	26.7	69.0	100.0(4,901)	29.266***
	중	3.57(0.63)	1.6	3.1	31.8	63.5	100.0(3,147)	
	하	3.59(0.64)	2.0	2.5	29.9	65.6	100.0(944)	

***α<.001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95.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4%의 아동·청소년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8.0%)이 남학생(93.3%)보다, 중학교(96.3%), 초등학교(95.2%), 고등학교(95.1%) 순으로, 대도시일수록(대도시 95.7%, 중소도시 95.6%, 읍면지역 94.8%), 양부모가정(95.9%), 한부모가정(94.0%), 조손가정(90.9%) 순으로, 학업성적(상 96.2%, 중 95.6%, 하 94.5%)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95.7%), 하(95.5%), 중(95.3%) 순으로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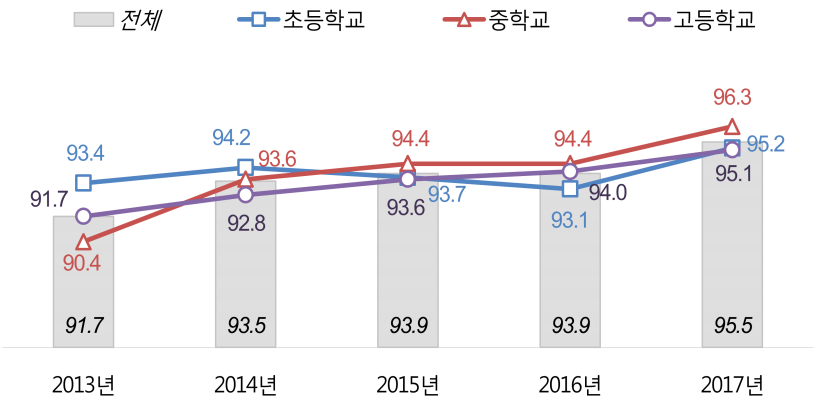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16】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연도별 추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률은 2013년 91.7%에서 2014년 93.5%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95.5%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 93.4%에서 출발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17년에는 95.2%로 소폭 상승하였다. 중학생의 응답률은 2013년 90.4%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96.3%로 교급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1-16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49(0.69)	2.3	4.1	35.7	57.8	100.0(8,994)	–
성별	남자	3.43(0.74)	3.4	5.0	37.3	54.4	100.0(4,679)	91.861***
	여자	3.56(0.62)	1.1	3.2	34.1	61.5	100.0(4,315)	
학교급	초등학교	3.46(0.76)	3.4	6.1	31.7	58.8	100.0(2,597)	93.116***
	중학교	3.54(0.65)	1.9	2.9	34.4	60.7	100.0(2,902)	
	고등학교	3.47(0.66)	1.8	3.7	39.8	54.7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3.51(0.69)	2.4	3.9	34.6	59.2	100.0(3,758)	16.880**
	중소도시	3.49(0.68)	2.2	4.2	35.4	58.2	100.0(3,962)	
	읍면지역	3.44(0.69)	2.3	4.5	40.3	52.8	100.0(1,27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0(0.67)	2.1	3.8	35.8	58.3	100.0(8,136)	61.947***
	한부모가정	3.44(0.73)	2.6	6.4	35.4	55.6	100.0(655)	
	조손가정	3.23(0.91)	8.1	8.2	36.8	46.9	100.0(86)	
	기타	3.19(0.94)	9.0	8.8	36.4	45.9	100.0(110)	
학업 성적	상	3.56(0.68)	2.5	3.6	29.1	64.9	100.0(3,028)	109.392***
	중	3.47(0.68)	1.9	4.5	38.1	55.4	100.0(3,853)	
	하	3.43(0.70)	2.7	4.2	40.9	52.2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3.51(0.69)	2.4	4.1	33.3	60.3	100.0(4,900)	33.369***
	중	3.46(0.68)	2.1	4.1	39.4	54.4	100.0(3,147)	
	하	3.47(0.71)	2.7	4.5	36.2	56.7	100.0(943)	

**p<.01, ***p<.001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93.5%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6.4%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5.6%)이 남학생(91.7%)보다, 중학교(95.1%), 고등학교(94.5%), 초등학교(90.5%) 순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대도시 93.8%, 중소도시 93.6%, 읍면지역 93.1%), 양부모가정(94.1%), 한부모가정(91.0%), 조손가정(83.7%) 순으로, 학업성적(상 94.0%, 중 93.5%, 하 93.1%)과 경제적 수준(상 93.6%, 중 93.8%, 하 92.9%)이 높을수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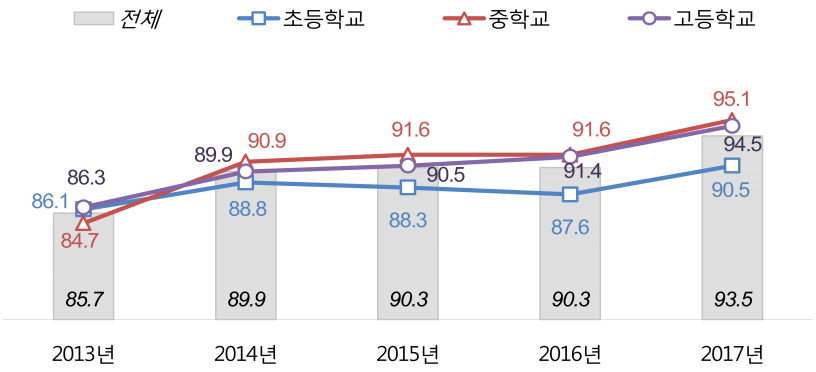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17】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국내거주 외국인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률은 2013년 85.7%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7년 93.5%로 높아졌다. 2013년 84.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던 중학생이 2017년에는 95.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초등학생 응답률은 2015년과 2016년 미세하게 낮아졌다가 2017년 90.5%로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은 2013년 86.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94.5%의 응답률을 보였다.

(3) 인권교육

'인권일반' 중분류 중 세 번째 소분류 항목은 '인권교육'으로, 이를 위한 지표항목은 인권교육 실시 현황과 인권교육 경험으로 구성된다. 인권교육 실시 현황은 인권교육을 주요 조직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교육 추진 실적을 통해 살펴보았다.

①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에 연수과정 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등을 통해 3,702회에 걸쳐 207,619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 영유아 및 초·중등학교 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총 24회(664명) 운영,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총 4회(60명) 운영, 찾아가는 인권특강 총 21회(476명) 실시, 초·중등 교사 대상 인권감수성 과정 총 3회(106명) 운영, 학교관리자

및 장학사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총 2회(63명) 운영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169-170).

표 Ⅲ-1-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계		연수과정 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2년	1,300	124,937	214	10,456	119	2,204	109	21,550	858	90,727
2013년	1,834	168,580	245	11,382	159	4,588	150	39,654	1,280	112,956
2014년	2,334	164,075	334	14,325	206	4,926	288	34,744	1,506	110,080
2015년	2,509	145,322	438	18,468	239	9,194	353	34,635	1,479	83,025
2016년	3,702	207,619	734	33,953	380	5,930	828	71,434	1,760	96,302
누계	16,608	1,239,098	2,560	116,093	1,656	42,447	2,005	263,753	10,387	816,805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6b). 2016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p.159.

②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은 인권교육을 받은 정도,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도움정도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먼저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정도를 물어본 결과,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66.7%로 나타났고 33.4%는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18 인권교육 경험여부 (단위 :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회 이상 경험 합계	교육 받은 적 없음	전체(N)	χ^2
전체		16.6	21.1	14.4	4.4	10.2	66.7	33.4	100.0(8,982)	–
성별	남자	16.0	18.4	14.4	4.0	9.7	62.5	37.5	100.0(4,670)	87.226***
	여자	17.2	23.9	14.3	4.9	10.7	71.0	29.1	100.0(4,312)	
학교급	초등학교	12.6	19.3	16.6	6.4	14.1	69.0	31.1	100.0(2,587)	212.297***
	중학교	18.4	22.5	16.0	4.6	8.7	70.2	29.9	100.0(2,901)	
	고등학교	18.0	21.1	11.4	2.8	8.5	61.8	38.1	100.0(3,493)	
지역 규모	대도시	17.4	21.7	14.7	4.3	9.8	67.9	32.2	100.0(3,750)	88.021***
	중소도시	15.7	21.1	15.4	5.0	11.2	68.4	31.5	100.0(3,954)	
	읍면지역	16.8	18.9	10.1	3.1	8.0	56.9	43.2	100.0(1,2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6.5	21.3	14.5	4.5	10.2	67.0	33.0	100.0(8,128)	21.329
	한부모가정	16.9	19.6	14.5	4.2	9.7	64.9	35.2	100.0(654)	
	조손가정	17.1	20.4	5.5	1.4	13.4	57.8	42.3	100.0(84)	
	기타	19.2	14.7	10.0	2.4	8.0	54.3	45.7	100.0(109)	
학업 성적	상	15.1	20.9	17.3	5.1	13.0	71.4	28.6	100.0(3,028)	131.416***
	중	16.6	21.5	14.1	4.3	9.1	65.6	34.4	100.0(3,844)	
	하	18.6	20.6	10.7	3.7	7.9	61.5	38.5	100.0(2,106)	
경제적 수준	상	15.2	20.7	15.6	4.8	11.2	67.5	32.6	100.0(4,891)	46.770***
	중	17.8	21.8	13.1	3.9	8.6	65.2	34.9	100.0(3,145)	
	하	19.7	20.5	12.1	4.6	10.0	66.9	33.2	100.0(942)	

***$p<.001$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률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71.0%)이 남학생(62.5%)보다, 중학교(70.2%), 초등학교(69.0%), 고등학교(61.8%) 순으로, 중소도시(68.4%), 대도시(67.9%), 읍면지역(56.9%) 순으로, 학업성적(상 71.4%, 중 65.6%, 하 61.5%)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상 67.5%, 하 66.9%, 중 65.2%)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 아동·청소년의 43.2%,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42.3%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특히 낮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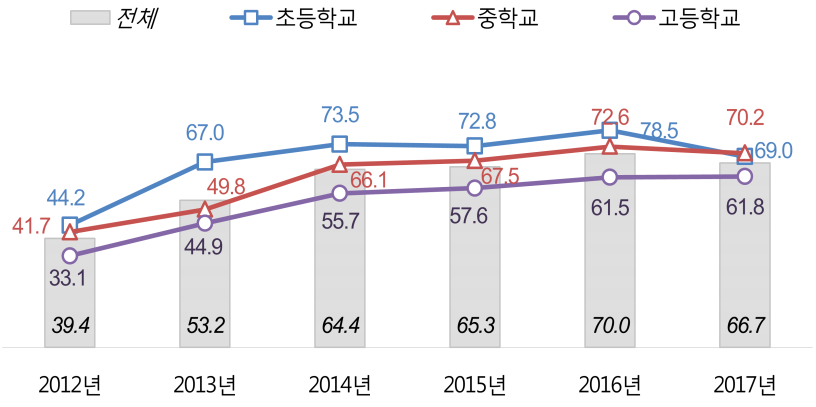

* 주: '교육 받은 적 없음'을 제외한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1-18】 인권교육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인권교육 경험 여부는 2012년 39.4%에서 2016년 70.0%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66.7%로 소폭 감소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16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초 78.5%, 중 72.6%) 2017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초 69.0%, 중 70.2%), 고등학교는 2012년 33.1%에서 2017년 61.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Ⅲ-1-19 인권교육 경험 장소 (단위 : %)

구분		학교 정규교과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전체(N)
전체		59.6	39.6	13.7	4.3	100.0(5,876)
성별	남자	58.1	39.2	14.4	3.7	100.0(2,853)
	여자	61.0	39.9	13.1	4.8	100.0(3,023)
학교급	초등학교	67.4	32.5	18.3	4.9	100.0(1,764)
	중학교	63.9	32.8	13.1	4.1	100.0(1,983)
	고등학교	49.1	51.8	10.6	4.0	100.0(2,129)
지역 규모	대도시	58.8	39.8	13.5	4.6	100.0(2,503)
	중소도시	60.9	39.4	13.9	3.7	100.0(2,662)
	읍면지역	57.2	39.6	13.8	5.6	100.0(7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9.6	39.7	13.8	4.1	100.0(5,353)
	한부모가정	56.6	42.5	12.1	6.4	100.0(421)
	조손가정	72.8	18.6	11.8	3.2	100.0(47)
	기타	64.5	28.5	16.8	2.8	100.0(55)
학업 성적	상	58.8	42.2	16.0	4.9	100.0(2,130)
	중	60.6	38.4	12.7	3.6	100.0(2,479)
	하	58.8	37.6	11.9	4.5	100.0(1,265)
경제적 수준	상	60.5	38.0	14.6	4.6	100.0(3,242)
	중	58.6	41.6	12.9	3.8	100.0(2,009)
	하	58.0	41.1	11.4	4.1	100.0(623)

인권교육을 경험한 곳은 학교 정규 교과시간이 59.6%로 가장 많았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9.6%,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13.7%, 기타 4.3%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학교 정규 교과시간에 인권교육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51.8%로 정규 교과시간(4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규 교과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초등학생(67.4%)과 중학생(63.9%), 조손가정 아동·청소년(72.8%)이 높은 편이었다.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교(18.3%)와 학업성적이 '상'인 아동·청소년(16.0%)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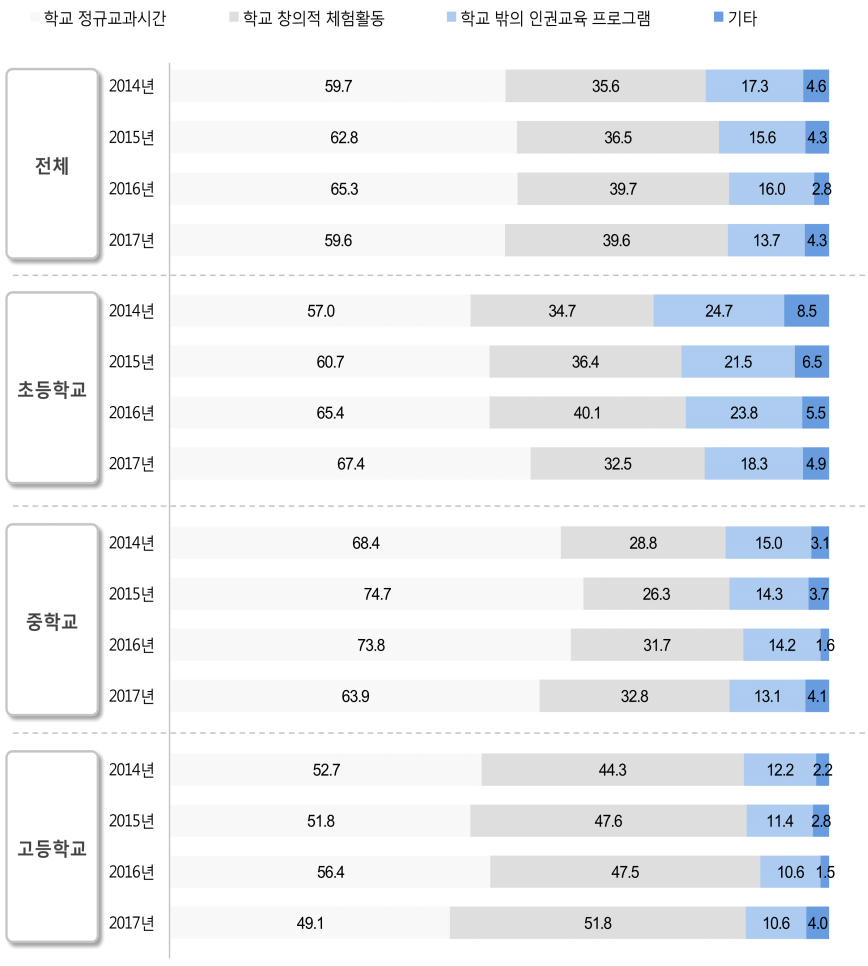

* 주: (단위: %)

【그림 Ⅲ-1-19】 인권교육 경험 장소(연도별 추이)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의 추이 변화를 보면, 정규 교과시간 인권교육 경험은 2016년까지 상승하다가 2017년에 감소하였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초등학교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2014년 57.0% → 2017년 67.4%). 2017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경험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전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2016년 16.0%에서 2017년 13.7%로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감소 경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Ⅲ-1-20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N)	χ^2
전체		2.80(0.73)	6.5	18.9	62.6	11.9	100.0(5,796)	–
성별	남자	2.81(0.75)	7.0	18.9	60.8	13.4	100.0(2,815)	15.038**
	여자	2.79(0.70)	6.1	19.0	64.4	10.5	100.0(2,981)	
학교급	초등학교	3.13(0.63)	2.0	7.9	65.0	25.1	100.0(1,756)	637.715***
	중학교	2.71(0.70)	7.6	20.9	64.7	6.9	100.0(1,954)	
	고등학교	2.60(0.73)	9.4	26.4	58.7	5.5	100.0(2,085)	
지역 규모	대도시	2.82(0.72)	6.2	18.0	63.4	12.4	100.0(2,481)	12.709*
	중소도시	2.79(0.73)	7.0	18.7	62.6	11.7	100.0(2,632)	
	읍면지역	2.76(0.72)	5.9	23.4	59.8	10.9	100.0(68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0(0.73)	6.5	19.0	62.6	12.0	100.0(5,287)	14.405
	한부모가정	2.74(0.71)	7.1	20.4	63.7	8.8	100.0(407)	
	조손가정	2.91(0.68)	4.0	15.5	66.0	14.4	100.0(46)	
	기타	2.96(0.82)	9.2	7.6	61.3	21.9	100.0(54)	
학업 성적	상	2.87(0.73)	5.2	18.3	60.2	16.2	100.0(2,105)	85.997***
	중	2.79(0.71)	6.4	18.2	64.9	10.5	100.0(2,446)	
	하	2.68(0.74)	9.0	21.5	62.3	7.3	100.0(1,243)	
경제적 수준	상	2.88(0.72)	5.5	16.4	63.0	15.0	100.0(3,206)	117.731***
	중	2.74(0.72)	6.9	21.5	62.5	9.1	100.0(1,984)	
	하	2.59(0.74)	10.7	24.0	61.1	4.1	100.0(604)	

*p<.05, **p<.01, ***p<.001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본 결과, 74.5%의 아동·청소년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25.4%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74.9%)이 남학생(74.2%)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0.1%, 중 71.6%, 고 64.2%), 대도시일수록(대도시 75.8%, 중소도시 74.3%, 읍면지역 70.7%), 학업성적(상 76.4%, 중 75.4%, 하 69.6%)과 경제적 수준(상 78.0%, 중 71.6%, 하 65.2%)이 높을수록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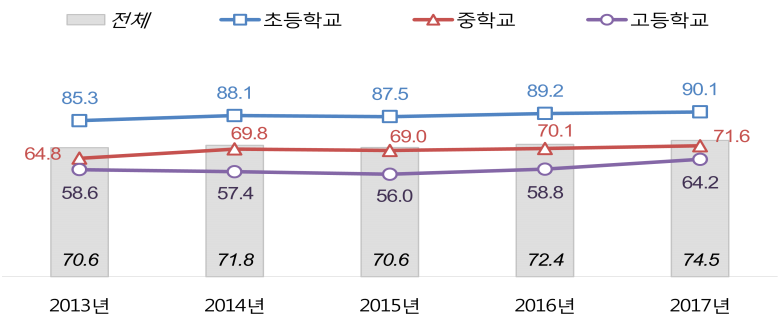

* 주: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1-20】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70.6%에서 2017년 74.5%까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 학교급에서 2015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6년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상승폭은 중학교(6.8%), 고등학교(5.6%), 초등학교(4.8%)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2) 일반원칙

(1) 차별 경험률

차별 경험률은 성,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 및 신체적 조건,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10가지 차별유형별로 최근 1년간 차별한 경험과 차별받은 경험을 알아보았다.

표 Ⅲ-1-21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_전체 (단위 : %(명))

구분	차별 가해 경험			차별 피해 경험		
	1년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1) 성차별	11.3	2.9	1.2	25.0	9.0	4.3
2)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12.7	4.3	1.8	28.3	12.7	6.2
3) 연령차별	11.0	3.3	1.2	30.5	12.2	5.3
4)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2.0	0.8	0.4	2.8	0.9	0.3
5) 지역차별	2.2	0.9	0.4	4.7	1.7	0.8
6)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14.2	5.2	2.5	23.0	10.2	5.4
7) 종교차별	2.0	0.9	0.3	2.9	1.1	0.5
8)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1.6	0.8	0.4	0.9	0.4	0.2
9) 장애에 따른 차별	4.6	1.4	0.7	1.0	0.5	0.2
10) 다문화가정 차별	1.2	0.5	0.2	1.0	0.5	0.2

10가지 차별 유형별로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는지 빈도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가 차별받은 경험과 관련하여 1년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우는 연령(30.5%), 학업성적(28.3%), 성별(25.0%), 외모 및 신체조건(23.0%), 지역(4.7%) 등의 순으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1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연령(12.2%), 외모 및 신체조건(10.2%), 성별(9.0%), 지역(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달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은 학업성적(6.2%), 외모 및 신체조건(5.4%), 연령(5.3%), 성별(4.3%), 지역(0.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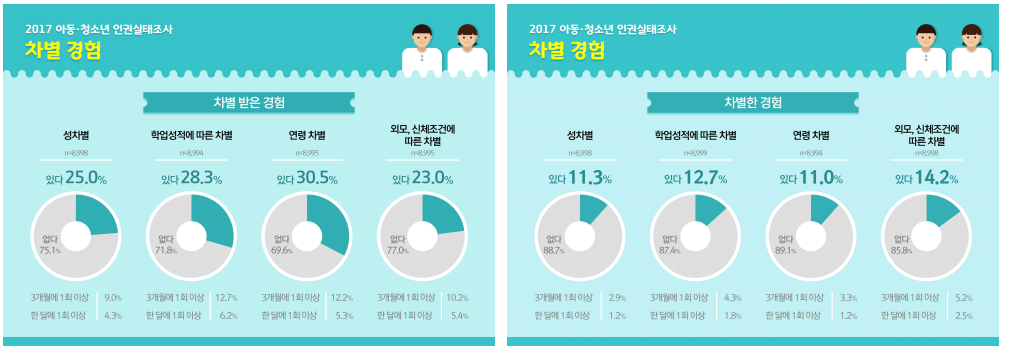

【그림 Ⅲ-1-21】 차별경험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과 관련하여 1년에 1회 이상 차별한 경우는 외모 및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1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12.7%), 성별(11.3%), 연령(11.0%), 장애(4.6%), 지역(2.2%), 가정형편(2.0%), 종교(2.0%), 가족유형(1.6%), 다문화가정(1.2%) 등의 순으로 차별한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3개월에 1회 이상 차별한 경험과 한 달에 1회 이상 차별한 경험도 외모 및 신체조건, 학업성적, 성별, 연령, 장애, 지역 등에 따른 차별 행동 빈도 순위는 1년에 1회 이상 차별행동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3개월에 1회 이상 차별행동을 한 경우는 외모 및 신체조건(5.2%), 학업성적(4.3%), 연령(3.3%), 성별(2.9%) 등에 따른 차별이 높게 나타났고, 한 달에 1회 이상 차별행동을 한 경우는 외모 및 신체조건(2.5%)과 학업성적(1.8%)에 따른 차별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내가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연령차별'과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많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과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높게 나타났으며, 심각한 차별상황(한 달에 1회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학업성적과 외모·신

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모든 경우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차별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년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연령차별의 경우 또래뿐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성인으로부터의 차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현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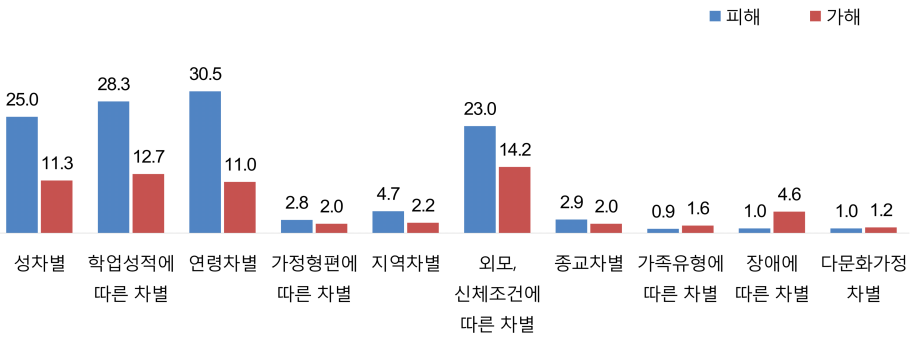

* 주: (단위: %)

【그림 Ⅲ-1-22】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1년에 1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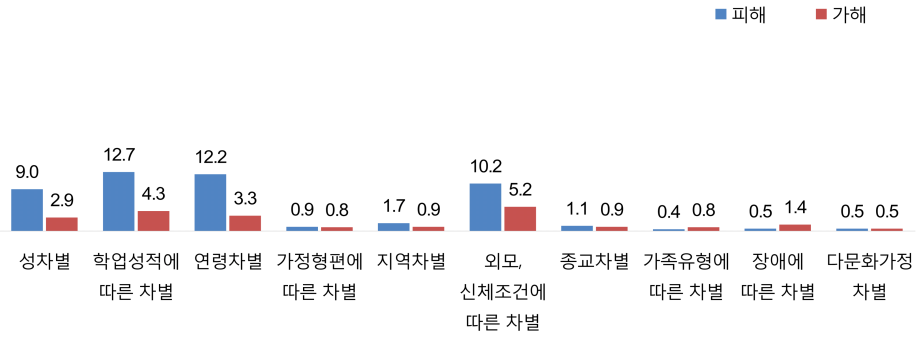

* 주: (단위: %)

【그림 Ⅲ-1-23】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3개월에 1회 이상)

[그림 Ⅲ-1-22], [그림 Ⅲ-1-23]은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과 내가 차별받은 경험을 해당 차별행위 빈도별(1년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로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많은 차별 유형들의 경우 다른 사람을 차별한(가해) 경험보다 내가 차별받은(피해) 경험률이 더 높다는 점이다. 피해경험보다 가해경험률이 많은 경우는 가족유형(한부모, 조손 가정 등),

장애, 다문화 가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설문 응답 시 해당 경우의 응답자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별 가해 경험보다 차별 피해 경험이 많은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이 하는 차별적 행동을 인지하는 데 둔감한 것을 볼 때 모든 행동과 상황에서 인권적 요소를 인식하고 고려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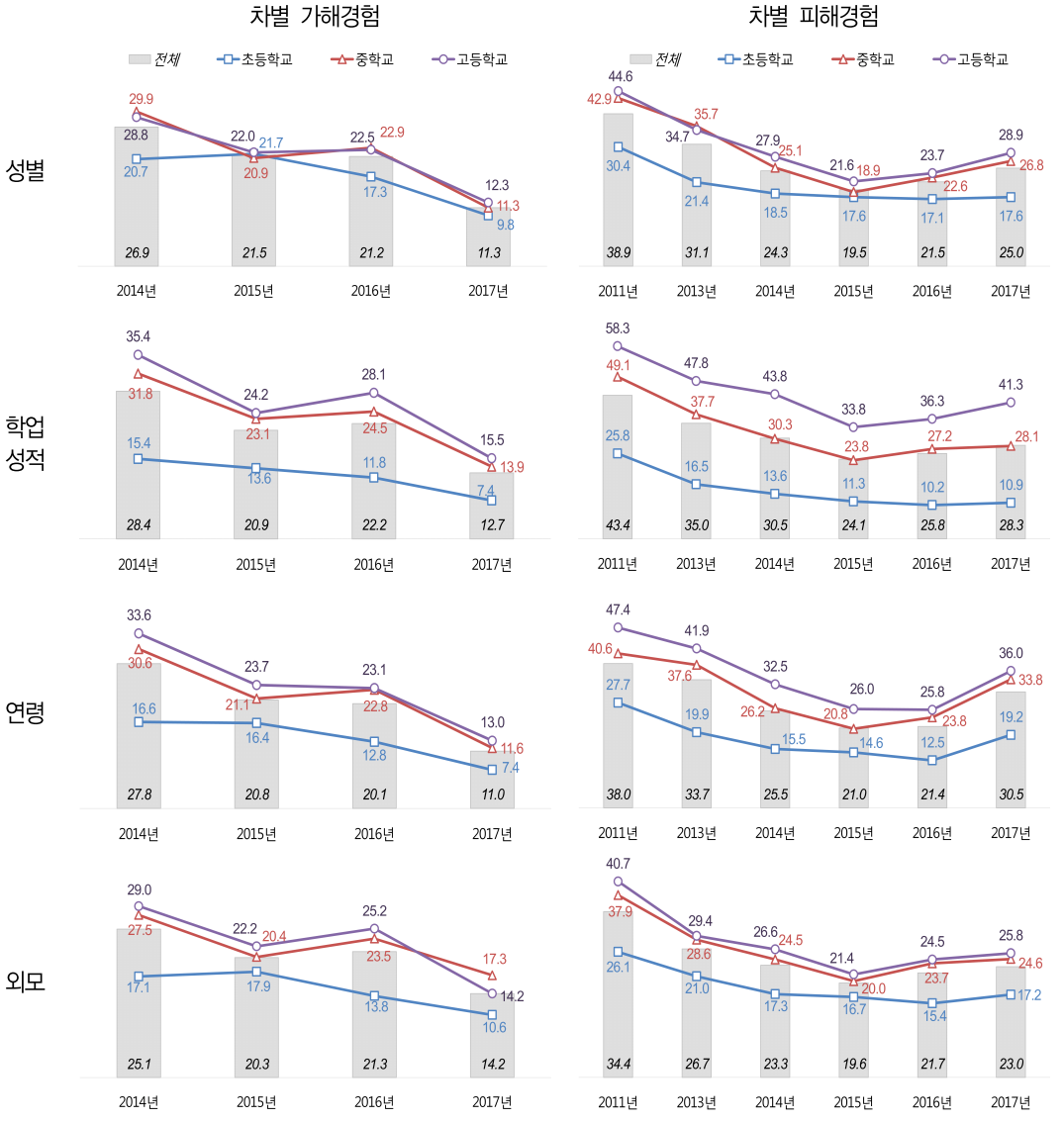

* 주: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값(단위: %)

【그림 Ⅲ-1-24】 차별경험(연도별 추이)

성별, 학업성적, 연령, 외모・신체조건 등 주요 차별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별 가해 경험은, 학업성적과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2016년에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한 적이 있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차별 가해 경험의 전체적 경향은 감소하고 있다(성별 : 26.9%('14) → 11.3%('17), 학업성적 : 28.4%('14) → 12.7%('17), 연령 : 27.8%('14) → 11.0%('17), 외모・신체조건 : 25.1%('14) → 14.2%('17)).

반면 차별 피해 경험은 네 가지 유형 모두 2015년에 감소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면, 성차별과 연령차별 피해 경험률은 2014년 대비 증가하였으며(성별 : 24.3%('14) → 25.0%('17), 연령 : 25.5%('14) → 30.5%('17)), 학업성적과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률은 소폭 감소하였다(학업성적 : 30.5%('14) → 28.3%('17), 외모・신체조건 : 23.3%('14) → 23.0%('17)).

연도별 추이에서도 차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차별 가해경험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차별받은 경험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차별 가해 행동을 하면서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민감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2014년에 가장 많은 차별 가해 경험률을 보인 것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28.4%)과 연령차별(27.8%) 순이었고 2017년에는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14.2%)과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12.7%) 순으로 나타나 최근에 들어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 피해 경험은 2014년에는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30.5%)과 연령차별(25.5%) 순으로, 2017년에는 연령차별(30.5%)과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28.3%)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연령차별과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각한 차별현상임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들어 두 가지 유형 중에 연령차별의 피해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①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일반원칙 중분류의 두 번째 지표(소분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이다.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모든 인권 영역의 기본원리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와 철학으로, 단일의 양적 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정책화한 아동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노력 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2016년 3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신설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아동영향평가를 준비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10월 현재 서울 성북구를 비롯하여 유니세프 인증을 받은 총 14개 자치단체가[17]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하였으며 그 외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조례를 제정한 45개 자치단체에서도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18]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지표항목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갖는 요소이나 지표로서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양적 현황과 더불어 영향평가의 질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는 아동영향평가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이므로 관련 자료와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지표결과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9년부터 법에 근거한 아동영향평가가 시행될 경우 지표 산출방식과 자료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소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는 2개의 중분류(인권일반, 일반원칙), 5개의 소분류(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 차별 경험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1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인권일반' 중분류의 첫 번째 지표(소분류)인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에서는 2017년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학교 밖 및 가정 밖 청소년과 근로청소년 보호, 부모교육 활성화, 한부모가정 지원 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과 자치단체 수준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기반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2.9%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17) 14개 자치단체는 부산시 금정구 (2016.9), 전라북도 군산시 (2016.10), 서울시 도봉구 (2016.11), 서울시 송파구 (2016.12), 서울시 강동구 (2017.3), 경기도 오산시 (2017.5), 전라북도 전주시 (2017.6), 충주시 (2017.8), 서울시 종로구 (2017.8), 광주시 서구 (2017.8), 수원시 (2017.9), 세종시 (2017.9) 등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사업 사이트 http://www.unicef.or.kr/education/korea/choice_city.asp 에서 2017년 10월 13일 인출.

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있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10.7%, 6.1%, 14.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권리협약 홍보와 교육이 확대되었음에도 협약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45.0%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나 인권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는 가정(94.8%), 지역사회(90.9%), 학교(89.3%), 사이버 공간(80.2%), 우리나라 전체(77.3%) 순으로 나타나, 존중정도의 순위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률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권의식과 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87.6%)과 학생자치조직 의의(81.9%)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95.6%), 경제적 이유로 차별금지(96.5%), 양성평등(95.5%),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평등권(93.5%) 등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인권교육 경험률은 66.7%(초 69.0%, 중 70.2%, 고 61.8%)이었으며, 전년도(70.0%)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권교육을 경험한 곳은 학교 정규 교과시간 59.6%,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9.6%,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13.7%로 나타났으며(복수응답), 인권교육 경험자의 74.5%가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1년에 1회 이상 차별 가해 경험은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1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12.7%), 성별(11.3%), 연령(11.0%), 장애(4.6%)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1년에 1회 이상 차별 피해 경험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28.3%), 성별(25.0%), 외모 및 신체조건(23.0%), 지역(4.7%) 등의 순으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차별상황(한 달에 1회 이상)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차별 가해 경험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차별 피해 경험은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①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중분류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지표(소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에서의 참여정도는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로, 집안의 중대사, 상급학교 진학, 진로(직업), 공부시간과 방법 등을 결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Ⅲ-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전체	3.32(0.68)	1.5	7.8	48.0	42.7	100.0(9,003)	–
	초등학교	3.38(0.70)	1.7	7.4	41.9	49.1	100.0(2,598)	69.303***
	중학교	3.31(0.67)	1.3	7.9	49.3	41.5	100.0(2,907)	
	고등학교	3.28(0.67)	1.5	7.9	51.6	39.0	100.0(3,498)	
2) 상급학교 결정	전체	3.41(0.65)	1.0	5.9	43.9	49.2	100.0(8,993)	–
	초등학교	3.42(0.67)	1.5	5.8	41.4	51.2	100.0(2,592)	21.306**
	중학교	3.42(0.64)	0.7	5.9	43.6	49.8	100.0(2,905)	
	고등학교	3.40(0.64)	0.9	5.9	45.9	47.3	100.0(3,495)	
3) 진로 (직업) 결정	전체	3.50(0.63)	0.8	5.0	37.5	56.6	100.0(8,986)	–
	초등학교	3.59(0.63)	1.1	4.2	29.4	65.3	100.0(2,590)	140.254***
	중학교	3.48(0.64)	0.8	5.7	38.0	55.5	100.0(2,905)	
	고등학교	3.45(0.62)	0.6	5.1	43.2	51.2	100.0(3,491)	
4) 공부 시간·방법 결정	전체	3.31(0.72)	2.1	8.6	45.1	44.1	100.0(8,975)	–
	초등학교	3.31(0.80)	3.7	10.1	37.9	48.3	100.0(2,581)	140.477***
	중학교	3.27(0.72)	2.0	10.0	47.2	40.8	100.0(2,903)	
	고등학교	3.35(0.65)	1.1	6.3	48.8	43.8	100.0(3,491)	

**$p<.01$, ***$p<.001$

집단의 중대사 결정 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응답은 90.7%로 나타났고 교급이 낮을수록(초 91.0%, 중 90.8%, 고 90.6%) 존중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진학할 상급학교 결정 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는 93.1%였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93.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93.2%), 초등학교(92.6%)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 진로(직업) 결정 시 존중정도

는 94.1%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94.7%), 고등학교(94.4%), 중학교(93.5%)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공부시간과 방법을 결정할 때 의견을 존중받는 경우는 89.2%였으며, 교급이 높을수록(고 92.6%, 중 88.0%, 초 86.2%)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진로(직업)(94.1%), 상급학교 진학(93.1%), 집안 중대사(90.7%), 공부시간과 방법(89.2%) 순으로 자녀 의견 존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가정 중대사와 진로(직업) 결정 시에, 중학생은 상급학교 결정 시, 고등학생은 공부시간과 방법 결정 시 의견 존중도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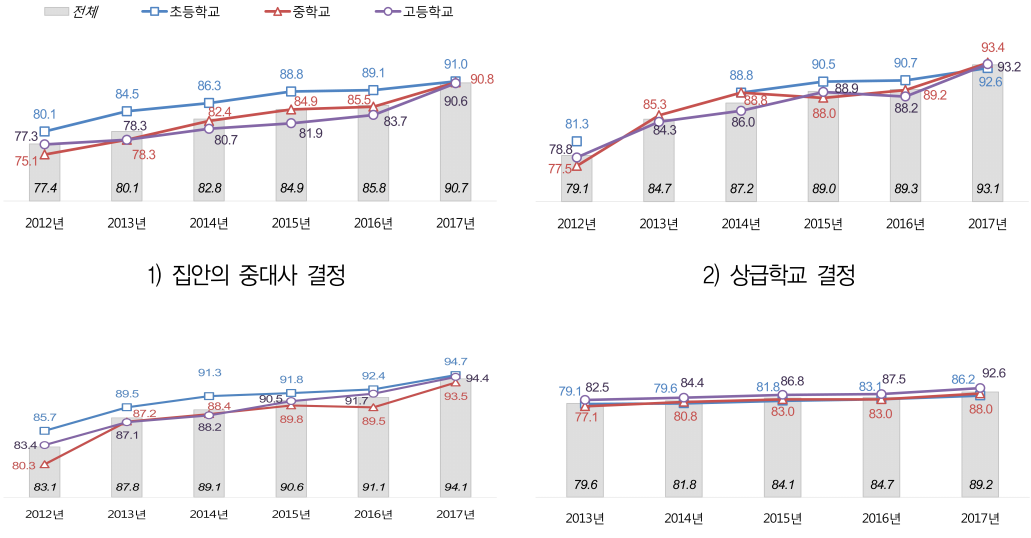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2) 상급학교 결정

3) 진로(직업) 결정

4) 공부시간방법 결정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의견존중 정도)(연도별 추이)

집안 중대사 결정 시 의견존중도는 2012년 77.4%에서 2017년 90.7%까지, 상급학교 진학 시 의견존중도는 2012년 79.1%에서 2017년 93.1%까지, 진로(직업) 결정 시 의견존중도는 83.1%에서 94.1%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공부시간과 방법 결정 시 의견존중도는 2013년 79.6%에서 2017년 89.2%로 매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 학교에서의 참여정도

①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교장의 간섭없이 활동할 수 있는지,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기 위한 성적 기준이 있는지,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하는지, 마지막으로 학생회 의견을 교사·교장이 존중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표 Ⅲ-2-2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1) 교사교장의 간섭없이 활동(자치권)	전체	14.2	31.5	54.3	100.0(6,397)	–
	중학교	10.4	33.5	56.1	100.0(2,903)	62.564***
	고등학교	17.3	29.9	52.8	100.0(3,495)	
2) 임원후보 성적기준	전체	35.4	27.3	37.3	100.0(6,396)	–
	중학교	35.0	26.0	39.1	100.0(2,901)	8.160*
	고등학교	35.7	28.5	35.9	100.0(3,495)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전체	7.9	39.6	52.6	100.0(6,391)	–
	중학교	6.0	41.6	52.4	100.0(2,898)	29.087***
	고등학교	9.4	37.9	52.7	100.0(3,492)	
4) 학생회 의견 존중	전체	11.3	38.4	50.3	100.0(6,395)	–
	중학교	8.6	43.2	48.2	100.0(2,901)	68.993***
	고등학교	13.5	34.4	52.1	100.0(3,494)	

*p<.05, ***p<.001

학생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31.5%로 나타났으며 중학생(33.5%)이 고등학생(29.9%)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기 위한 성적 기준이 있다는 응답률은 27.3%였으며, 고등학생(28.5%)이 중학생(26.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경우는 39.6%였고 중학생(41.6%)이 고등학생(37.9%)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교사·교장이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는 38.4%였고, 중학생(43.2%)이 고등학생(34.4%)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모든 항목에서 중학교 학생회의 자율권 보장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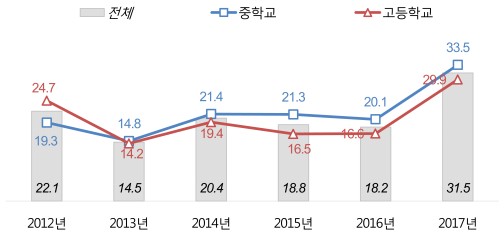

1) 자치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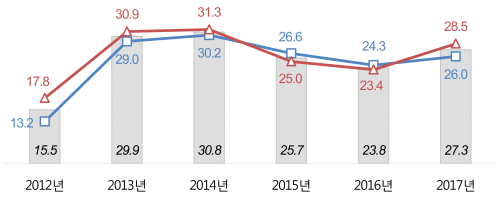

2) 임원후보 성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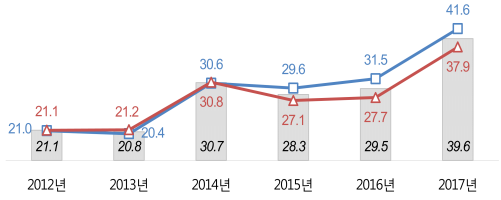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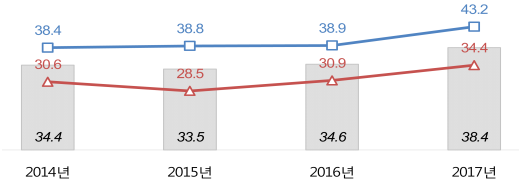

4) 학생회 의견 존중

* 주: '그렇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2-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네 가지 항목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자치권 보장, 예산·장소·시간 보장, 학생회 의견 존중 등 세 가지 문항의 경우 다소의 증감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회 임원후보 등록 시 성적 기준이 있다는 응답은 2016년 23.8%에서 2017년 27.3%로 증가하였다.

②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급회의 운영여부와 학급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표 Ⅲ-2-3 학급회의 운영여부 (단위 : %(명))

구분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지 않는다	전체(N)	χ^2
전체		70.1	29.9	100.0(8,943)	–
성별	남자	67.0	33.0	100.0(4,650)	45.039***
	여자	73.5	26.5	100.0(4,293)	
학교급	초등학교	84.3	15.7	100.0(2,570)	346.648***
	중학교	63.7	36.3	100.0(2,889)	
	고등학교	65.0	35.0	100.0(3,484)	

구분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지 않는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0.3	29.7	100.0(8,093)	11.578**
	한부모가정	65.3	34.7	100.0(650)	
	조손가정	77.8	22.2	100.0(86)	
	기타	76.6	23.4	100.0(106)	
학업 성적	상	71.3	28.7	100.0(3,017)	7.551*
	중	70.4	29.6	100.0(3,828)	
	하	67.8	32.2	100.0(2,093)	
경제적 수준	상	72.1	27.9	100.0(4,873)	20.450***
	중	68.1	31.9	100.0(3,122)	
	하	66.7	33.3	100.0(943)	

*p<.05, **p<.01, ***p<.001

학급회의를 운영하는 경우는 70.1%로 나타났고, 초등학생(84.3%), 고등학생(65.0%), 중학생(63.7%) 순으로, 학업성적(상 71.3%, 중 70.4%, 하 67.8%)과 경제적 수준(상 72.1%, 중 68.1%, 하 66.7%)이 높을수록 학급회의 운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급회의 운영률은 2014년 56.1%에서 2017년 7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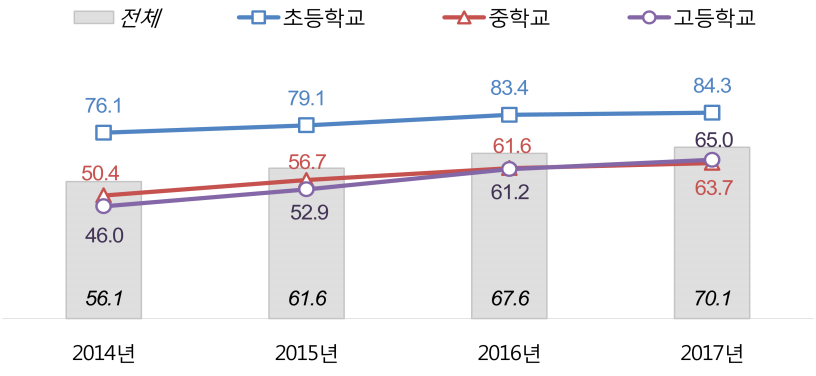

* 주: '운영되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2-3】 학급회의 운영여부(연도별 추이)

학급회의 시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 87.7%가 '그렇다', 12.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교급(고 88.9%, 중 86.1%, 초 87.7%)이 높을수록, 대도시(대도시 89.1%, 중소도시 87.2%, 읍면지역 85.0%)일수록, 학업성적(상 92.1%, 중 86.3%, 하 83.5%)과 경제적 수준(상 88.8%, 중 86.8%, 하 84.4%)이 높을수록 학급회의 시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4 학급회의 참여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0(0.70)	2.0	10.4	53.6	34.1	100.0(6,200)	–
학교급	초등학교	3.31(0.73)	1.7	10.5	42.4	45.3	100.0(2,150)	213.278***
	중학교	3.13(0.70)	2.6	11.3	56.9	29.2	100.0(1,820)	
	고등학교	3.15(0.64)	1.6	9.5	61.6	27.3	100.0(2,230)	
지역 규모	대도시	3.24(0.70)	2.1	8.8	51.9	37.2	100.0(2,604)	32.581***
	중소도시	3.18(0.69)	1.9	11.0	54.6	32.6	100.0(2,689)	
	읍면지역	3.13(0.69)	1.7	13.3	55.4	29.6	100.0(907)	
학업 성적	상	3.34(0.65)	0.9	7.0	49.5	42.6	100.0(2,134)	170.700***
	중	3.17(0.70)	1.9	11.8	54.0	32.3	100.0(2,660)	
	하	3.04(0.72)	3.6	12.9	59.0	24.5	100.0(1,402)	
경제적 수준	상	3.24(0.68)	1.5	9.7	51.9	36.9	100.0(3,469)	47.648***
	중	3.16(0.71)	2.6	10.6	54.6	32.2	100.0(2,102)	
	하	3.07(0.68)	2.2	13.4	59.5	24.9	100.0(62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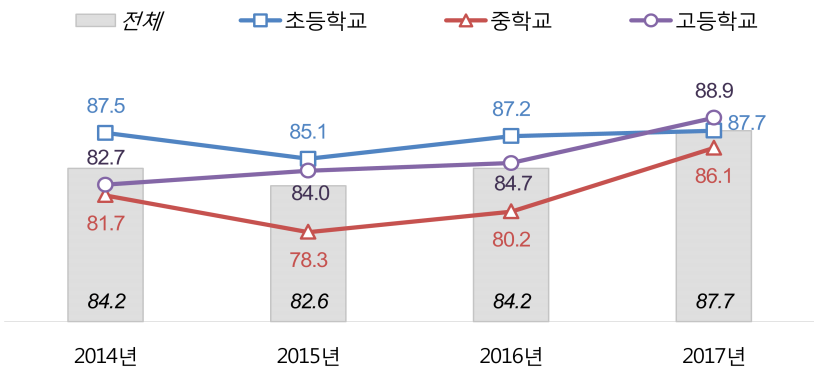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4】 학급회의 참여정도(연도별 추이)

학급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한 경우는 2015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2014년 84.2% → 2017년 87.7%).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2017년에는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③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참여불가 7.2%, 참여가능하나 발언권 없음 4.1%, 참여하여 발언 가능 17.3%, 잘 모르겠다 71.4%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여 발언 가능한 경우는 여학생(18.8%)이 남학생(15.9%)보다, 중학생(17.7%)이 고등학생(16.9%)보다, 읍면지역일수록(읍면지역 18.6%, 중소도시 17.8%, 대도시 16.2%), 경제적 수준(상 18.2%, 중 17.1%, 하 14.5%)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표 Ⅲ-2-5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가능, 발언권 없음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7.2	4.1	17.3	71.4	100.0(6,215)	–
성별	남자	8.1	4.4	15.9	71.7	100.0(3,235)	15.918**
	여자	6.3	3.9	18.8	71.0	100.0(2,981)	
학교급	중학교	6.3	4.8	17.7	71.2	100.0(2,811)	11.416**
	고등학교	8.0	3.6	16.9	71.5	100.0(3,405)	
지역 규모	대도시	7.5	3.6	16.2	72.6	100.0(2,605)	13.569*
	중소도시	6.4	4.5	17.8	71.3	100.0(2,592)	
	읍면지역	8.5	4.6	18.6	68.3	100.0(1,019)	
경제적 수준	상	7.7	4.5	18.2	69.6	100.0(3,022)	18.030**
	중	6.0	4.0	17.1	72.8	100.0(2,371)	
	하	8.7	3.3	14.5	73.5	100.0(820)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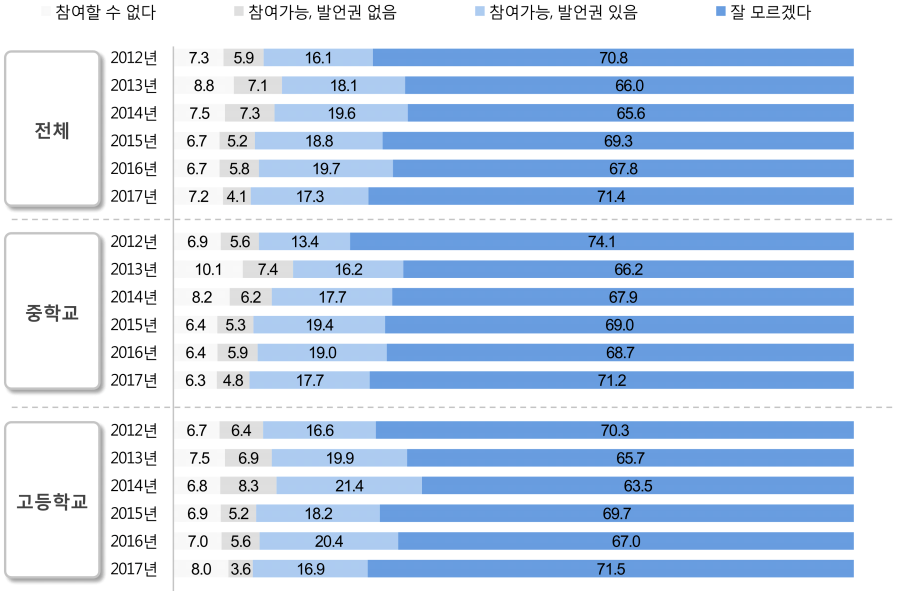

* 주: (단위: %)

【그림 Ⅲ-2-5】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현황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참여하여 발언가능한 응답률이 2016년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17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발언권 없지만 참여하는 경우도 전 학교급에서 응답률이 감소하였다.

④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학교규칙 제 · 개정 시 학생의견을 반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 73.2%, '그렇지 않다' 26.8%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응답차이를 보면, 남학생(75.0%)이 여학생(71.7%)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9.8%, 중 72.6%, 고 61.3%), 지역규모의 경우 중소도시(74.6%), 대도시(73.4%), 읍면지역(67.9%) 순으로, 학업성적(상 76.8%, 중 74.4%, 하 65.6%)과 경제적 수준(상 76.4%, 중 71.2%, 하 62.8%)이 높을수록 학생의견 반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6 학교규칙 및 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4(0.80)	7.2	19.6	55.5	17.7	100.0(8,974)	–
성별	남자	2.87(0.79)	7.0	18.0	56.3	18.7	100.0(4,660)	19.996***
	여자	2.80(0.80)	7.5	21.3	54.5	16.6	100.0(4,313)	
학교급	초등학교	3.24(0.70)	2.5	7.7	53.4	36.4	100.0(2,576)	1,204.840***
	중학교	2.78(0.77)	8.0	19.4	59.7	12.9	100.0(2,903)	
	고등학교	2.59(0.78)	10.2	28.5	53.5	7.8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2.86(0.81)	7.3	19.3	53.6	19.8	100.0(3,756)	52.933***
	중소도시	2.85(0.77)	6.4	19.0	57.3	17.3	100.0(3,937)	
	읍면지역	2.71(0.81)	9.7	22.3	55.2	12.7	100.0(1,280)	
학업 성적	상	2.95(0.81)	6.2	17.0	52.2	24.6	100.0(3,024)	235.779***
	중	2.84(0.78)	7.0	18.6	57.7	16.7	100.0(3,839)	
	하	2.66(0.77)	9.1	25.3	56.2	9.4	100.0(2,106)	
경제적 수준	상	2.91(0.80)	6.3	17.3	55.0	21.4	100.0(4,886)	156.542***
	중	2.78(0.79)	7.8	20.9	56.9	14.3	100.0(3,138)	
	하	2.62(0.79)	9.9	27.3	53.3	9.5	100.0(945)	

***α<.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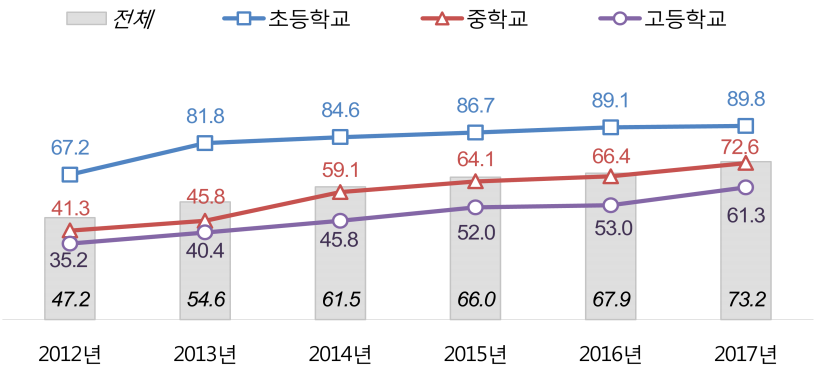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6】 학교규칙 및 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연도별 추이)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47.2%에서 2017년 73.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 학교급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는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선거참여 연령에 대한 인식,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장애 이유 등 네 가지 지표항목으로 살펴보았다.

①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는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수용율을 통해 살펴보고 있으며,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현황을 함께 살펴본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책화하는 참여기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c: 85-86). 2015년에는 역사이해를 주제로 3개 분야 23개 과제를 발굴·제안하여 20개 과제가 정부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수용률 87.0%를 보였다.

표 Ⅲ-2-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연도	의제	수용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35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1개 과제 수용	31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자원망 조성(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49개 수용 (92.4%)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 출처: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86.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참여기구로,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12월 기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총 189개가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구이다. 2016년 기준 전국 305개소, 총 5,168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c: 82-84). 이러한 참여기구를 통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 자문 및 모니터링, 워크숍 개최, 활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경험함으로써 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므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3년부터 189개로 정체되어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12년부터 305개로 정체되어 있다.

지역별 기구 현황은 <표 Ⅲ-2-9>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2-8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6) (단위 :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소년참여위원회	163	175	175	175	186	189	189	189	189
청소년운영위원회	258	273	286	286	305	305	305	305	305

* 출처: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83-8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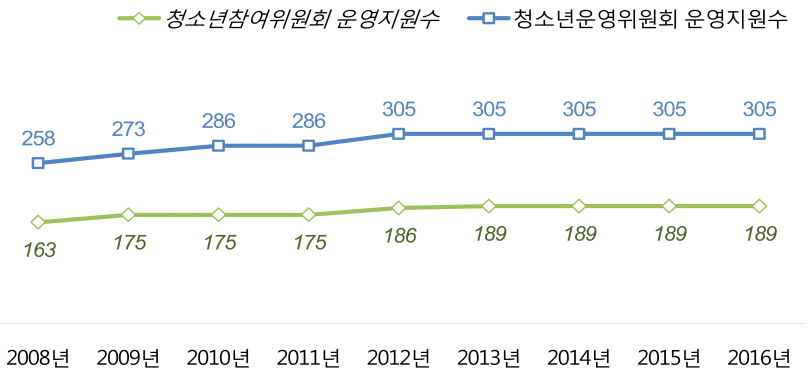

【그림 Ⅲ-2-7】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6)(단위 : 개)

표 Ⅲ-2-9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6) (단위 : 개)

	계	여성가족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참여위원회	189	1	6	3	3	10	2	2	6	1	32	19	5	16	15	23	24	20	1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	44	14	9	12	6	10	7	1	62	32	15	13	16	14	13	15	22

* 출처: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p.83-85. 재구성

아동총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본대회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국 지역대회 활동과 본대회를 통해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등 등 정책참여 활동을 실시한다(김영지 외, 2016: 170). 2016년 제13회 아동총회에서는 '우리의 꿈, 말해도 되나요? - 내가 바라는 세상'을 주제로 통학버스 안전문제 등 7가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표 Ⅲ-2-10 아동총회 개최현황

구분	주요내용
제8회	• 일시: 2011. 8. 17 ~ 19(2박 3일) • 주제: 세상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통 • 참여인원: 총 1,741명(아동 1,338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3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9회	• 일시: 2012. 8. 8 ~ 10(2박 3일) • 주제: 꿈, 행복을 향한 도전 • 참여인원: 총 1,831명(아동 1,529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2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10회	• 일시: 2013. 8. 7 ~ 9(2박 3일) • 주제: 건강한 아동, 건강한 대한민국 • 참여인원: 총 1,174명(아동 897명, 지도자 및 실무자 277명) • 주관: InCRC 국제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11회	• 일시: 2014. 8. 11 ~ 13(2박 3일) • 주제: 대한민국 아동안전은 녹색불입니까? • 참여인원: 총 810명(아동 555명, 지도자 및 실무자 255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12회	• 일시: 2015. 8. 05 ~ 7(2박 3일) • 주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삶” • 참여인원: 총 1,119명(아동 818명, 지도자 및 실무자 301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13회	• 일시: 2016. 8. 09 ~ 11(2박 3일) • 주제: 우리의 꿈, 말해도 되나요? – 내가 바라는 세상 • 참여인원: 총 1,262명(아동 924명, 지도자 및 실무자 338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출처: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7).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3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 사이트 http://www.kocconet.or.kr/에서 인출 재구성.

②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다’ 54.9%,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34.3%,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 않았다‘ 8.7%,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1%로 나타나 10.8%의 아동・청소년이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었다.

표 Ⅲ-2-11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알고 있다 합계	전체(N)	χ^2
전체		54.9	34.3	8.7	2.1	10.8	100.0(8,991)	–
성별	남자	57.2	32.1	8.4	2.3	10.7	100.0(4,676)	26.314***
	여자	52.4	36.8	8.9	1.9	10.8	100.0(4,316)	
학교급	초등학교	45.4	39.8	12.9	1.9	14.8	100.0(2,591)	208.083***
	중학교	61.2	32.1	5.3	1.4	6.7	100.0(2,904)	
	고등학교	56.7	32.1	8.3	2.9	11.2	100.0(3,495)	
학업 성적	상	50.0	35.9	11.2	2.9	14.1	100.0(3,031)	88.868***
	중	55.4	35.0	7.9	1.8	9.7	100.0(3,849)	
	하	61.0	30.9	6.4	1.7	8.1	100.0(2,107)	
경제적 수준	상	52.4	36.3	9.2	2.1	11.3	100.0(4,898)	36.911***
	중	58.1	32.6	7.3	2.0	9.3	100.0(3,142)	
	하	57.3	30.2	10.1	2.3	12.4	100.0(946)	

***$p<.001$

배경변인별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10.8%)이 남학생(10.7%)보다, 초등학생(14.8%), 고등학생(11.2%), 중학생(6.7%) 순으로, 학업성적(상 14.1%, 중 9.7%, 하 8.1%)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의 경우 하(12.4%), 상(11.3%), 중(9.3%) 순으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4.9%로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57.2%)이 여학생(52.4%)보다, 중학생(61.2%), 고등학생(56.7%), 초등학생(45.4%) 순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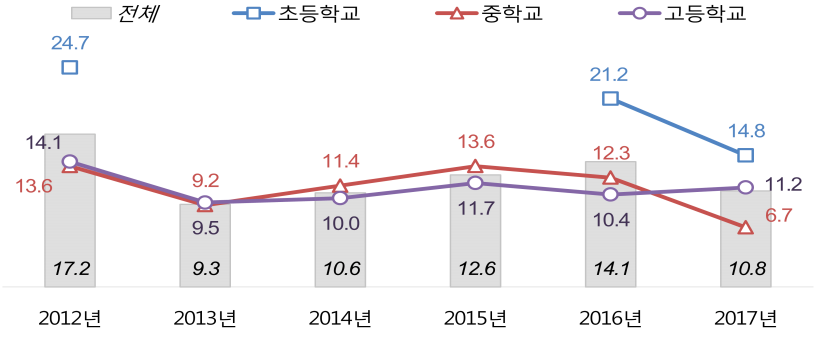

* 주: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의 합계(단위: %)
* 주: 2013~2015년 전체값에는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그림 Ⅲ-2-8】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률 추이를 보면, 2013년 9.3%에서 2016년 14.1%까지 상승하다가 2017년에는 10.8%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부터 초등학생 조사를 추가하였는데 2016년에는 21.2%의 초등학생이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17년에는 14.8%로 인지도가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학생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2016년 12.3% → 2017년 6.7%). 고등학생은 2016년 10.4%에서 2017년 11.2%로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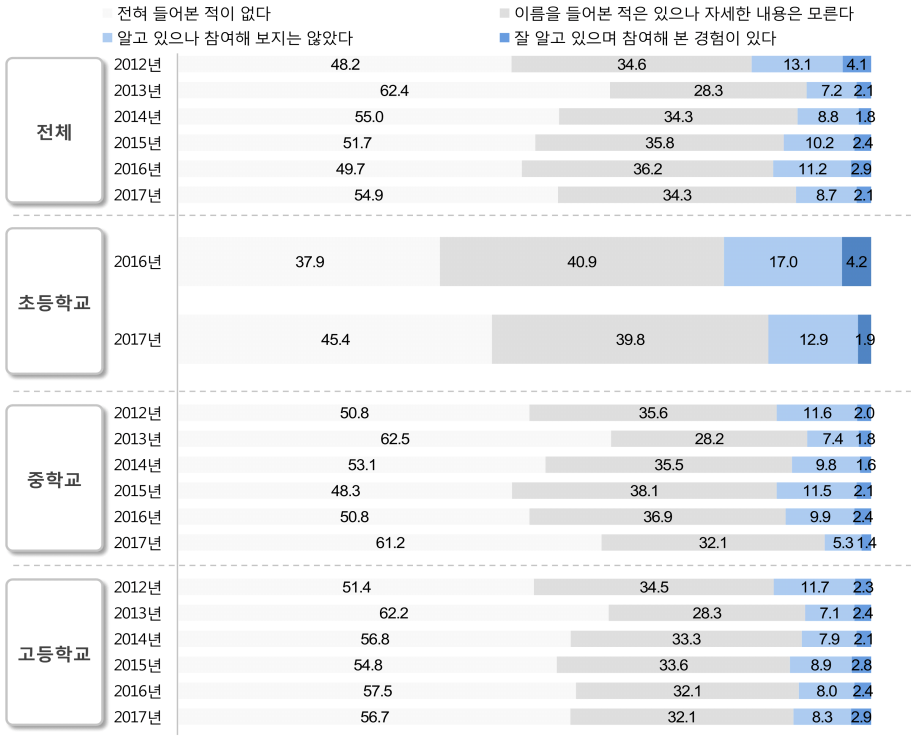

* 주: (단위:%)

【그림 Ⅲ-2-9】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2017년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응답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알고 있는' 비율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해본 경험은 2016년 2.9%에서 2017년 2.1%로 감소하였는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016년 4.2%에서 2017년 1.9%로 감소하였고 중학생도 2016년 4.2%에서 2017년에는 1.4%로 줄어들었다. 반면 고등학생은 2016년 2.4%에서 2017년 2.9%로 소폭 증가하였다.

③ 선거참여 연령에 대한 인식

투표 가능 연령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47.3%,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38.8%,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3.6%, '잘 모르겠다' 10.3%로 나타났다.

표 Ⅲ-2-12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47.3	38.8	3.6	10.3	100.0(6,403)	–
성별	남자	44.5	37.7	5.3	12.5	100.0(3,340)	100.343***
	여자	50.4	39.9	1.8	7.9	100.0(3,063)	
학교급	중학교	48.9	36.2	3.0	11.8	100.0(2,906)	30.183***
	고등학교	46.0	40.9	4.2	9.0	100.0(3,49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7.8	38.6	3.5	10.1	100.0(5,746)	39.110***
	한부모가정	42.2	43.6	3.9	10.2	100.0(529)	
	조손가정	45.5	23.1	11.6	19.7	100.0(48)	
	기타	39.8	30.8	8.1	21.2	100.0(75)	
학업 성적	상	52.5	36.7	3.9	6.9	100.0(1,787)	64.855***
	중	46.9	39.8	3.3	10.0	100.0(2,679)	
	하	43.0	39.3	3.9	13.8	100.0(1,934)	
경제적 수준	상	48.9	37.5	4.0	9.5	100.0(3,114)	32.037***
	중	44.4	41.4	2.7	11.5	100.0(2,440)	
	하	49.6	35.7	5.0	9.7	100.0(846)	

***α<.001

배경변인별 응답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50.4%)이 남학생(44.5%)보다, 중학생(48.9%)이 고등학생(46.0%)보다, 학업성적(상 52.5%, 중 46.9%, 하 43.0%)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은 하(49.6%), 상(48.9%), 중(44.4%)의 순으로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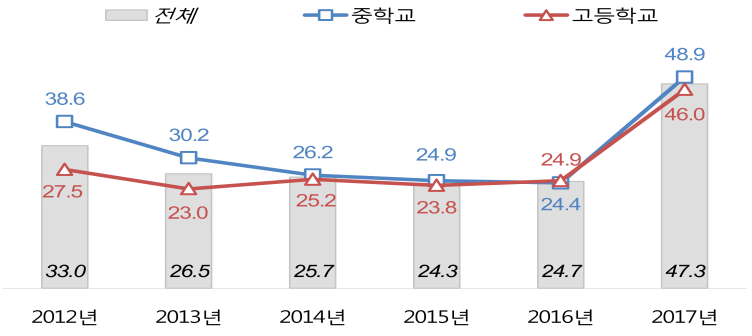

* 주: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2-10】 투표연령 하향화에 대한 의견(연도별 추이)

선거연령을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33.0%에서 2013년 26.5%로 감소한데 이어 2016년까지 24.7%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47.3%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의 경우 2016년 24.4%에서 2017년 48.9%로, 고등학생의 경우 2016년 24.9%에서 2017년 46.0%로 선거연령 하향화 의견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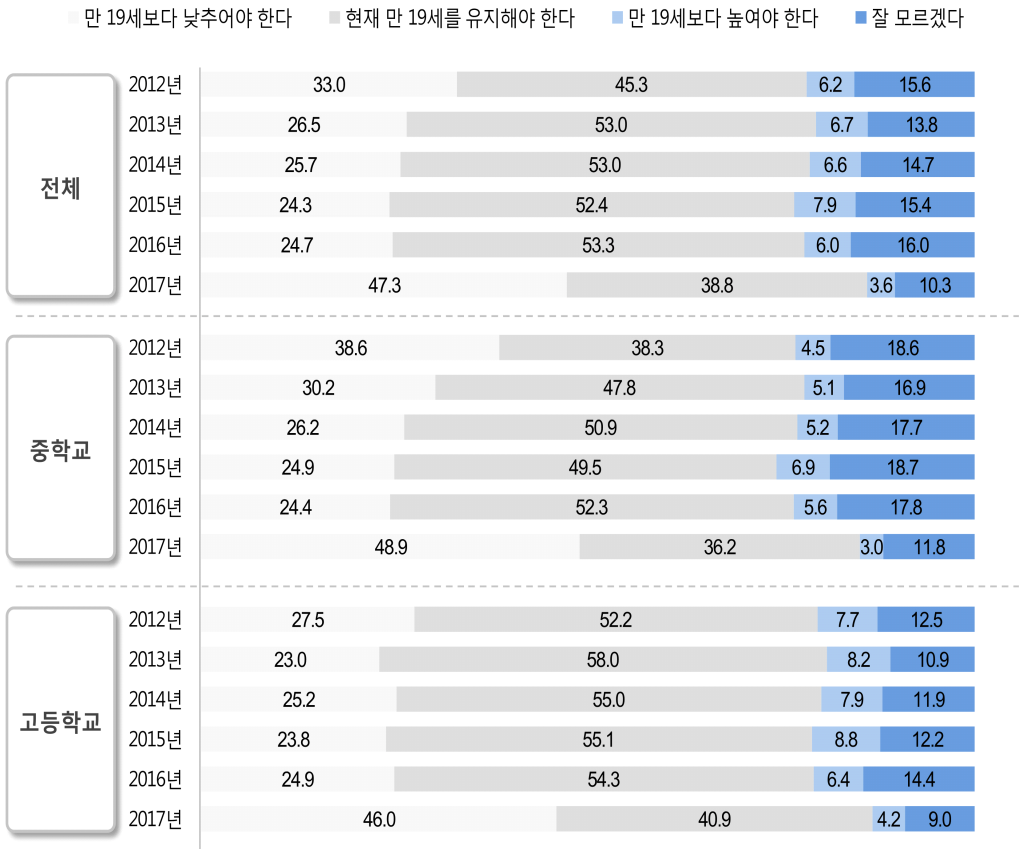

* 주: (단위: %)

【그림 Ⅲ-2-11】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연도별 추이)

한편 선거연령 하향화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응답률이 줄어든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16년 16.0%에서 2017년 10.3%로 줄어들었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 2016년 17.8%에서 2017년 11.8%로, 고등학생의 경우 2016년 14.4%에서 2017년 9.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④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가. 참여권 보장 수준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60.7%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9.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13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8(0.86)	9.4	29.9	44.2	16.5	100.0(8,990)	–
성별	남자	2.68(0.88)	10.5	27.8	44.6	17.1	100.0(4,674)	28.951***
	여자	2.67(0.84)	8.2	32.2	43.7	15.9	100.0(4,316)	
학교급	초등학교	3.03(0.77)	4.7	14.3	54.7	26.3	100.0(2,591)	796.495***
	중학교	2.64(0.84)	9.6	30.8	45.3	14.3	100.0(2,906)	
	고등학교	2.45(0.85)	12.7	40.7	35.5	11.1	100.0(3,493)	
지역 규모	대도시	2.70(0.87)	9.8	28.7	43.6	17.9	100.0(3,753)	13.686*
	중소도시	2.67(0.85)	9.0	30.4	44.7	15.9	100.0(3,958)	
	읍면지역	2.64(0.84)	9.3	31.9	44.2	14.6	100.0(1,2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8(0.86)	9.4	29.9	44.5	16.2	100.0(8,134)	30.123***
	한부모가정	2.63(0.87)	9.9	33.1	40.5	16.4	100.0(652)	
	조손가정	2.96(0.91)	8.9	16.2	45.0	29.8	100.0(86)	
	기타	2.87(0.92)	9.9	20.0	43.5	26.6	100.0(110)	
학업 성적	상	2.73(0.87)	8.8	29.1	42.7	19.4	100.0(3,029)	49.693***
	중	2.69(0.85)	9.1	28.8	46.1	16.0	100.0(3,847)	
	하	2.59(0.85)	10.8	33.0	43.0	13.3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2.75(0.85)	8.3	26.8	46.7	18.2	100.0(4,899)	109.967***
	중	2.63(0.85)	9.9	32.1	43.0	14.9	100.0(3,141)	
	하	2.48(0.88)	13.3	38.4	35.3	13.0	100.0(945)	

*$p<.05$, ***$p<.001$

배경변인별 응답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61.7%)이 여학생(59.6%)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1.0%, 중 59.6%, 고 46.6%) 순으로, 대도시일수록(대도시 61.5%, 중소도시 60.6%, 읍면지역 58.8%), 학업성적(상 62.1%, 중 62.1%, 하 56.3%)과 경제적 수준(상 64.9%, 중 57.9%, 하 48.3%)이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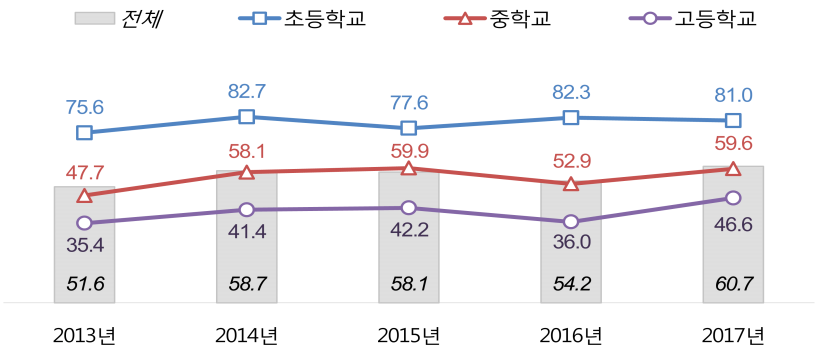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12】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51.6%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하였고, 2017년에 다시 60.7%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6년도에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초등학생은 2016년에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참여의 장애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 26.9%, '참여활동 정보 부족' 18.6%, '참여할 기회나 방법 부족' 12.3%, '부모님(보호자)의 반대' 2.2%, '학교의 반대'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4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단위 : %(명))

구 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26.9	18.6	2.2	2.1	37.9	12.3	100.0(8,958)	–
성별	남자	30.9	18.5	2.8	2.9	33.8	11.1	100.0(4,659)	153.420***
	여자	22.5	18.6	1.6	1.3	42.4	13.5	100.0(4,299)	

구 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40.7	17.0	3.7	0.6	23.5	14.5	100.0(2,581)	589.332***
	중학교	24.3	17.5	2.0	2.4	43.0	10.9	100.0(2,896)	
	고등학교	18.8	20.7	1.2	3.1	44.4	11.8	100.0(3,48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7	18.7	2.1	2.1	38.0	12.3	100.0(8,107)	44.996***
	한부모가정	25.4	16.7	2.5	1.8	41.2	12.3	100.0(652)	
	조손가정	41.8	17.5	7.6	1.6	22.2	9.3	100.0(84)	
	기타	36.8	21.3	4.5	4.3	22.0	11.0	100.0(108)	
학업 성적	상	28.3	16.6	2.1	1.5	38.1	13.4	100.0(3,016)	69.083***
	중	28.7	19.0	2.2	2.0	36.6	11.4	100.0(3,835)	
	하	21.6	20.5	2.3	3.3	40.1	12.2	100.0(2,103)	
경제적 수준	상	30.0	18.0	2.2	1.9	35.3	12.5	100.0(4,876)	77.468***
	중	24.4	19.6	2.1	2.3	39.8	11.9	100.0(3,132)	
	하	19.0	18.4	2.4	2.7	45.1	12.4	100.0(945)	

***$p<.001$

배경변인별 응답 차이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남 33.8%, 여 42.4%)'과 '시간부족(남 30.9%, 여 22.5%)'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남학생은 '시간부족'과 '부모와 학교의 반대'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 그리고 '참여활동 정보 부족' 등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시간 부족'에 40.7%로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청소년에 대한 편견'에 각각 43.0%, 44.4%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학생은 '시간 부족(24.3%)'에, 고등학생은 '정보 부족(20.7%)'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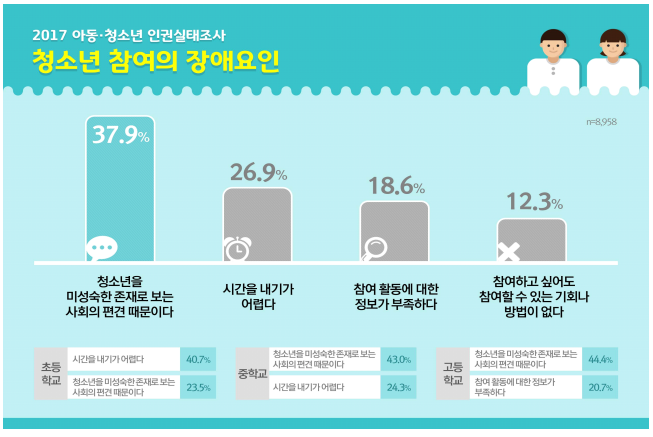

【그림 Ⅲ-2-13】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그림 Ⅲ-2-14] 청소년 참여 장애요인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시간 부족'은 2016년 37.8%까지 증가하다 2017년에는 응답률이 26.9%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활동정보 부족'은 2013년 13.3%부터 2017년 18.6%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편견'은 2013년 35.7%에서 2016년 28.8%까지 감소했다가 2017년 37.9%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러한 전체 경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간 부족'에 4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부모님 반대'가 2013년 6.9%에서 2017년 3.7%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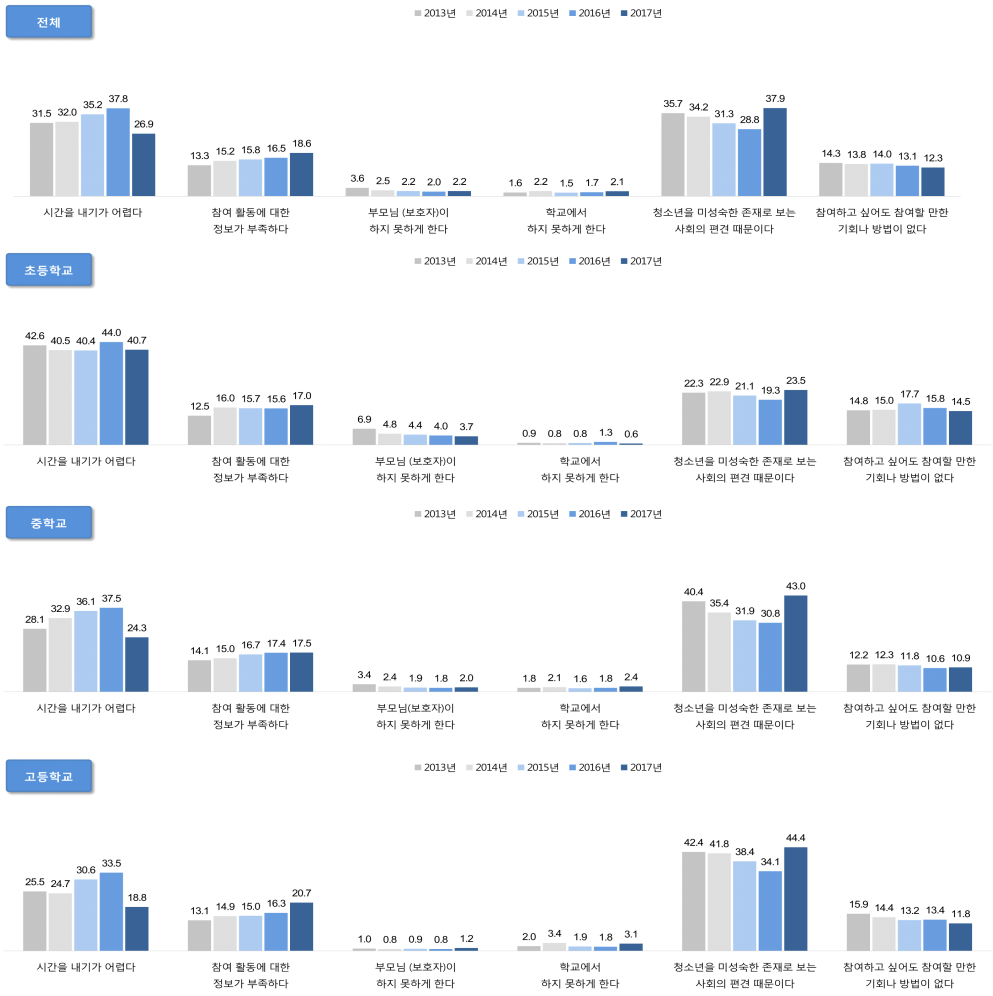

* 주: (단위:%)

【그림 Ⅲ-2-14】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①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가정, 학교,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정에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91.7%였고, 고등학생(93.0%)의 응답이 중학생(90.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사상의 자유 보장정도는 전체 85.3%였으며 고등학생(87.5%)의 응답이 중학생(82.8%)보다 높았다.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보장정도는 73.4%였고 마찬가지로 고등학생(74.9%)의 응답률이 중학생(71.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2-15]에 나타난 연도별 추이를 보면,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Ⅲ-2-15 사상의 자유 보장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가정	전체	3.36(0.68)	1.6	6.7	45.5	46.2	100.0(6,399)	–
	중학교	3.33(0.71)	2.0	7.9	45.6	44.5	100.0(2,905)	20.297***
	고등학교	3.39(0.65)	1.3	5.7	45.5	47.5	100.0(3,494)	
2) 학교	전체	3.15(0.72)	2.6	12.1	53.1	32.2	100.0(6,399)	–
	중학교	3.10(0.76)	3.4	13.9	52.2	30.6	100.0(2,905)	33.214***
	고등학교	3.19(0.69)	1.9	10.6	53.9	33.6	100.0(3,494)	
3) 사회	전체	2.92(0.80)	4.9	21.7	49.5	23.9	100.0(6,398)	–
	중학교	2.89(0.82)	5.7	22.7	48.3	23.4	100.0(2,904)	10.630*
	고등학교	2.95(0.79)	4.3	20.8	50.6	24.3	100.0(3,493)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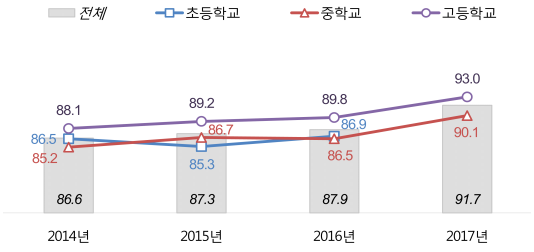

1)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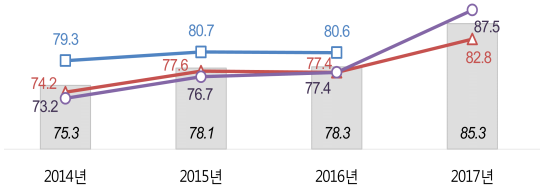

2)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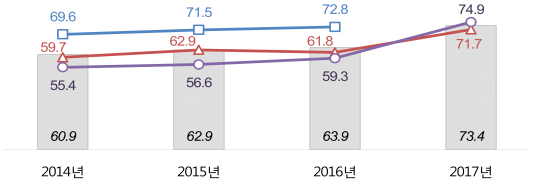

3) 사회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 주: 2017년 전체값에는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그림 Ⅲ-2-15】 사상의 자유 보장(연도별 추이)

(2) 종교 자유 보장정도

종교의 자유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보장정도 두 가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종교재단 학교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11.0%, '그렇지 않다'는 89.0%로 나타났다. 종교재단 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 37.3%, '그렇지 않다' 62.7%로 나타나 종교행사 의무 참여 학교가 60%를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43.9%)이 고등학교(35.6%)보다 종교의 자유 보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80.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답변은 고등학생(84.9%)이 중학생(76.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6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전체	2.11(1.05)	38.2	24.5	25.2	12.1	100.0(681)	-
	중학교	2.19(1.01)	33.6	22.5	34.9	9.0	100.0(144)	9.341*
	고등학교	2.09(1.06)	39.4	25.1	22.7	12.9	100.0(537)	
2)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종교선택	전체	3.19(0.89)	6.2	12.9	36.2	44.7	100.0(6,382)	-
	중학교	3.10(0.95)	8.5	15.3	34.1	42.1	100.0(2,896)	86.177***
	고등학교	3.28(0.82)	4.2	10.9	38.0	46.9	100.0(3,486)	

*p<.05, ***p<.001

[그림 Ⅲ-2-16]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일정한 경향보다는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최종적으로 2016년 26.7%에서 2017년 37.3%로 종교의 자유 응답률이 늘어난 상황이다.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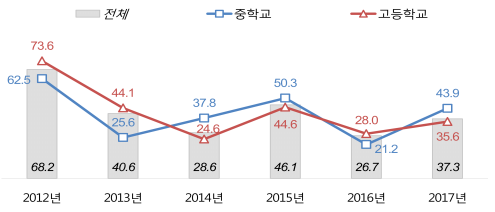

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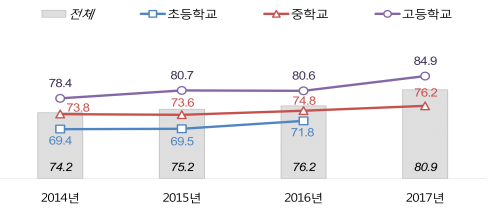

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 주: 2012년에는 '학교의 종교행사에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질문하였으므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합산한 값을 제시함.
* 주: 2017년 전체값에는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그림 Ⅲ-2-16】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 결사·집회 경험률

① 결사·집회 경험률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6%(가끔 12.0%, 자주 3.6%)로

나타났고, 중학생(17.3%)이 고등학생(14.2%)보다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은 17.2%(가끔 15.0%, 자주 2.2%)로 나타났고 고등학생(17.8%)이 중학생(16.4%)보다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7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N)	χ^2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전체	1.64(0.83)	55.5	28.9	12.0	3.6	100.0(6,377)	-
	중학교	1.68(0.87)	54.5	28.1	12.6	4.8	100.0(2,891)	24.516***
	고등학교	1.60(0.79)	56.3	29.5	11.6	2.6	100.0(3,486)	
2)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전체	1.68(0.81)	51.2	31.6	15.0	2.2	100.0(6,371)	-
	중학교	1.67(0.80)	51.7	31.8	14.3	2.1	100.0(2,887)	2.301
	고등학교	1.69(0.81)	50.7	31.4	15.5	2.3	100.0(3,483)	

***$p<.001$

[그림 Ⅲ-2-17] 연도별 추이를 보면,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률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2016년 대비 2017년 응답값의 경우 미세한 차이의 상승세를 볼 수 있다.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은 2016년 7.3%에서 2017년 17.2%로 매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중학생의 참여율이 더 높다가 2017년에 고등학생의 참여율이 미세하게나마 더 높아진 현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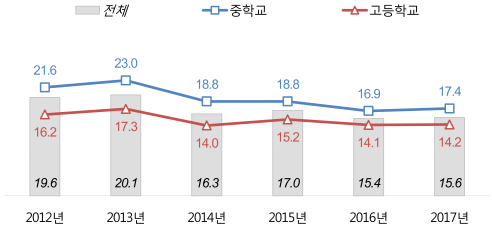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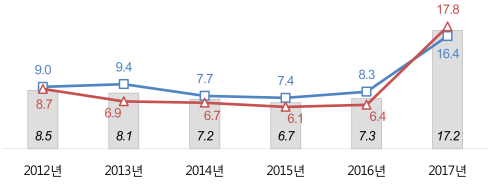

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 주: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17】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한편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경험자 대상으로 그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피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이 9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고 및 훈계 1.9%,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0.8%,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0.3% 등의 응답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3.8%가 사회문제 참여활동으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집 <표 Ⅲ-2-28> 참조).

4) 사생활의 보호

(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①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학교에서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을 알아본 결과, 1년에 1회 이상 경험률을 살펴보면 용모검사 경험률은 전체 53.3%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57.4%)이 중학생(48.4%)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복장검사 경험률은 전체 50.1%였으며 마찬가지로 고등학생(53.5%)이 중학생(46.0%)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소지품 검사 경험은 19.4%로 나타났고 중학생 18.4%, 고등학생 20.4%로 모든 문항에서 고등학생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8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1) 용모 검사	전체	46.7	16.6	11.2	12.2	13.3	53.3	100.0(6,398)	–
	중학교	51.6	14.6	10.0	11.5	12.3	48.4	100.0(2,902)	53.449***
	고등학교	42.6	18.2	12.2	12.9	14.1	57.4	100.0(3,496)	
2) 복장 검사	전체	49.9	16.4	10.1	11.3	12.3	50.1	100.0(6,394)	–
	중학교	54.0	15.3	9.2	10.8	10.7	46.0	100.0(2,899)	37.819***
	고등학교	46.6	17.3	10.8	11.7	13.7	53.5	100.0(3,494)	
3) 소지품 검사	전체	80.5	12.5	3.4	2.4	1.1	19.4	100.0(6,394)	–
	중학교	81.7	12.4	3.2	1.6	1.2	18.4	100.0(2,900)	17.953**
	고등학교	79.6	12.6	3.6	3.1	1.1	20.4	100.0(3,494)	

**$p<.01$, ***$p<.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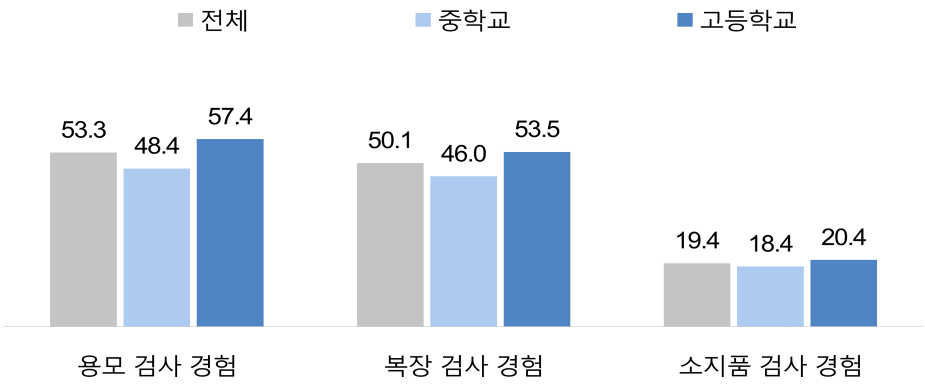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2-18】 용모, 복장, 소지품검사 경험

'사생활의 보호' 중분류에 해당하는 각종 검사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모든 검사의 경우 2011년 이후 미세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용모 검사와 복장 검사는 마지막 2017년에 상승세로 마무리되었고, 소지품 검사는 2017년에도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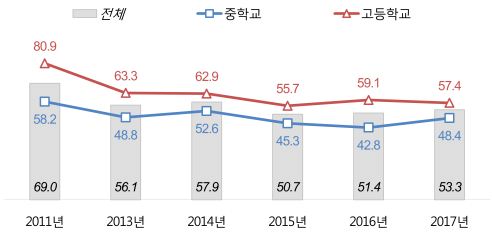

1) 용모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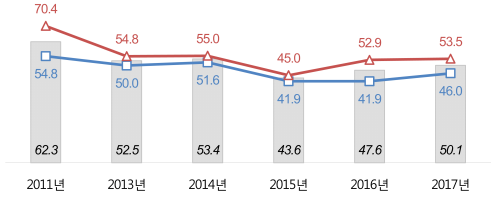

2) 복장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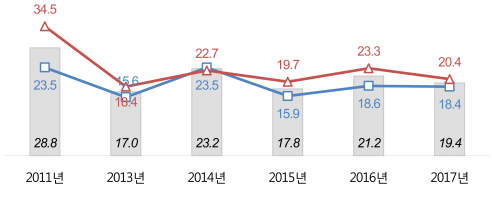

3) 소지품 검사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2-19】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연도별 추이)

(2) 학생 정보 보호정도

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교육비 미납자 이름 공개는 11.6%였고, 고등학생(12.6%)이 중학생(10.2%)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개하는 경우는 25.0%였고, 고등학생(32.1%), 중학생(21.5%), 초등학생(19.2%)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는 21.6%였으며, 고등학생 33.1%, 중학생 22.1%, 초등학생 5.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응답률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2-19 개인의 정보 보호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교육비 미납	전체	1.50(0.76)	63.8	24.7	9.0	2.6	100.0(6,394)	–
	중학교	1.45(0.74)	67.3	22.6	7.7	2.5	100.0(2,898)	29.603***
	고등학교	1.54(0.78)	60.9	26.5	10.0	2.6	100.0(3,496)	
2) 징계사항	전체	1.95(0.87)	35.2	39.8	19.9	5.1	100.0(8,949)	–
	초등학교	1.79(0.84)	43.6	37.1	15.5	3.7	100.0(2,570)	
	중학교	1.88(0.85)	38.1	40.4	16.9	4.6	100.0(2,890)	259.444***
	고등학교	2.12(0.88)	26.6	41.4	25.6	6.5	100.0(3,488)	
3) 개인 시험성적	전체	1.81(0.89)	45.7	32.7	16.3	5.3	100.0(8,958)	–
	초등학교	1.34(0.61)	72.5	22.2	4.2	1.1	100.0(2,575)	
	중학교	1.85(0.88)	42.4	35.5	17.0	5.1	100.0(2,896)	1,289.801***
	고등학교	2.13(0.93)	28.8	38.2	24.6	8.5	100.0(3,487)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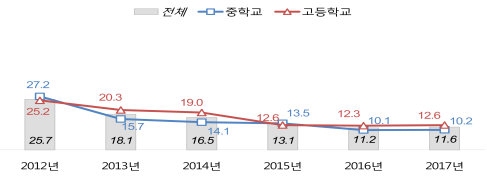

1) 교육비 미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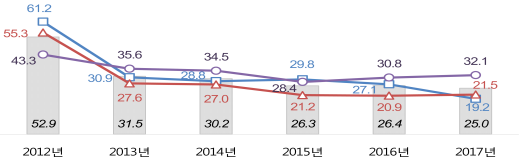

2) 징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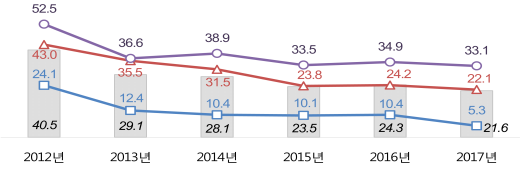

3) 개인 시험성적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 주: 2012년에는 질문 문장이 부정형이었으므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합산한 값을 제시함.

【그림 Ⅲ-2-20】 개인의 정보 보호(연도별 추이)

5) 정보접근권

(1) 매체 접근율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을 보면, 지상파 TV(94.9%),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2.5%),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1.7%), 지상파 제외 TV(86.9%), 웹툰(81.5%)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생활에서 TV와 인터넷은 매우 긴밀한 매체임을 알 수 있다.

① 매체 이용률

표 Ⅲ-2-20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단위 : %)

구분		지상파 TV	지상파 제외 TV	종이 신문	종이 만화책	종이 잡지/책	인터넷 신문	웹툰	인터넷 잡지/전자서적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전체		94.9	86.9	26.3	54.4	63.3	55.2	81.5	26.0	92.5	91.7	78.9	34.3
학교급	초등학교	95.9	81.5	27.0	77.5	69.7	34.1	69.6	22.7	92.2	82.7	56.1	22.9
	중학교	95.5	88.9	23.1	53.9	61.6	55.4	86.6	26.4	94.4	96.2	88.0	32.1
	고등학교	93.7	89.2	28.6	37.5	60.1	70.7	86.0	28.2	91.2	94.4	88.0	44.8

* 출처: 여성가족부(2016e).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70.
* 주: 복수응답 결과

인터넷 이용 빈도와 시간을 보면, 10대의 93.9%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평균 이용시간은 15.4시간으로 나타났다. 3-9세의 경우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54.0%였고 주평균 이용시간은 5.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1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구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평균 이용시간(시간)
2011	10대	97.8	2.2	0.1	0.0	13.2
	20대	98.5	1.5	–	0.0	20.4
2012	10대	97.6	2.4	0.0	0.0	14.1
	20대	98.5	1.4	0.0	0.0	21.7
2013	10대	95.8	4.1	0.0(0.02)	–	14.1
	20대	99.3	0.7	0.0(0.03)	–	20.3

구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평균 이용시간(시간)
2014	10대	95.2	4.7	0.1	–	14.4
	20대	99.3	0.7	0.0(0.026)	–	20.5
2015	10대	96.6	3.3	0.1	0.1	14.5
	20대	99.8	0.2	–	–	21.0
2016	3–9세	54.0	42.9	2.9	0.2	5.3
	10대	93.9	5.6	0.3	0.2	15.4
	20대	99.6	0.4	–	–	22.8

* 출처: 김영지 외(2016).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VI: 총괄보고서. pp.208–209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7–38.

인터넷 이용 목적을 보면 3-9세의 경우 여가활동이 9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35.3%), 교육・학습(33.9%) 순으로 나타났으며, 10대의 경우 커뮤니케이션(95.1%), 여가활동(94.5%), 자료 및 정보 획득(88.4%), 교육・학습(72.4%)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2-22 인터넷 이용 목적 (단위 : %)

구분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 획득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학습	직업·직장
2015	3–9세	34.0	95.6	17.9	4.9	25.9	0.4
	10대	95.7	96.7	85.3	48.5	58.7	6.5
	20대	100.0	97.4	99.6	70.3	50.6	33.8
2016	3–9세	35.3	95.0	16.9	5.7	33.9	–
	10대	95.1	94.5	88.4	51.5	72.4	7.9
	20대	99.9	98.5	99.8	74.7	60.4	42.2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9.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41.
* 주: 복수응답 결과

만6세 이상 인구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5.0%이고 6~19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2.3%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454). 3~9세의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3.4시간이고, 10대의 경우는 9.6시간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Ⅲ-2-23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미만	3시간~7시간 미만	7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21시간 미만	21시간~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주평균(시간)
3-9세	18.7	38.1	23.7	16.1	2.6	0.7	0.2	3.4
10대	2.0	8.8	18.9	41.8	19.8	7.5	1.1	9.6
20대	0.2	2.6	10.6	41.4	27.9	14.6	2.8	12.7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230.

12~19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는 커뮤니케이션(채팅, SNS 등)(83.4%), 사진 및 동영상(70.0%), 게임(42.2%), 음악, 미디어(35.4%), 뉴스(2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24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 (단위 : %)

구분	채팅, SNS 등 커뮤니케이션	사진 및 동영상	뉴스	게임	음악, 미디어	맛집 등 지역정보	사전, 백과사전 등 지식	버스, 철도, 항공 등 공공교통수단
12-19세	83.4	70.0	29.4	42.2	35.4	5.1	7.0	5.5
20대	82.6	60.7	42.2	28.8	26.6	9.4	5.2	6.5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470.

② 유해매체 이용률

유해매체 이용률은 성인용 영상물과 성인용 간행물 이용경험을 살펴보았다. 최근 1년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1.5%였고 남자청소년(51.7%)과 고등학생(58.0%)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상물의 이용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27.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9.1%)로 나타났다.

표 Ⅲ-2-25 성인용 영상물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이용률	TV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스마트폰 앱
전체		41.5	13.8	27.6	19.1	10.0	18.1	10.4	11.2
성별	남자	51.7	16.3	37.4	21.6	12.4	19.8	15.2	15.1
	여자	30.5	11.1	17.0	16.3	7.3	16.2	5.0	6.9
학교급	초등학교	18.6	10.0	10.3	13.1	9.8	7.1	3.2	10.4
	중학교	42.4	12.7	30.4	19.4	10.5	19.8	6.6	11.0
	고등학교	58.0	17.7	38.2	23.2	9.6	24.9	19.0	11.8

* 출처: 여성가족부(2016e).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p.77-78.
* 주: 최근 1년간 경험(복수응답), 초등학교는 4-6학년 대상조사

최근 1년간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은 22.0%였고,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남자청소년(25.8%)과 고등학생(29.1%)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간행물의 이용 경로는 인터넷 만화(웹툰)(17.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이 만화책(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이용경험은 남자청소년(20.9%)과 고등학생(24.4%) 집단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26 성인용 간행물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이용률	신문		잡지		만화책		사진집		소설책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	종이 잡지	인터넷 잡지	종이 만화책	인터넷 만화 (웹툰)	종이 사진집	전자 사진집	서적	전자책 (eBook)
전체		22.0	1.4	3.1	1.8	2.3	5.2	17.8	1.8	3.8	2.5	3.1
성별	남자	25.8	1.5	3.3	1.8	2.5	5.8	20.9	1.9	5.0	2.4	2.7
	여자	17.8	1.4	2.9	1.8	2.0	4.6	14.5	1.6	2.4	2.7	3.6
학교급	초등학교	11.8	2.4	2.4	2.4	1.8	7.4	8.1	2.2	1.8	2.6	1.8
	중학교	22.5	1.1	3.1	1.8	2.6	4.4	18.7	2.0	4.2	2.3	3.3
	고등학교	29.1	1.0	3.7	1.4	2.4	4.3	24.4	1.3	4.8	2.7	4.0

* 출처: 여성가족부(2016e).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p.82-83.
* 주: 최근 1년간 경험(복수응답), 초등학교는 4-6학년 대상조사

③ 아동·청소년 매체 접근성

아동・청소년의 매체 접근성은 도서관 수와 도서 접근성으로 알아보았다. 일반 공공도서관은 2011년 708개에서 2015년 889개까지 늘어났으며 어린이도서관은 2011년 78개에서 2015년 89개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Ⅲ-2-27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단위 : 개)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 공공도서관	708	745	780	842	889
어린이도서관	78	83	85	88	8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도(2015년 실정)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2011년 초등학교 23권, 중학교 16.1권, 고등학교 13권이었던 것에서 2016년 초등학교 36.6권, 중학교 29.4권, 고등학교 19.9권 등으로 증가하였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1인당 장서 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8 학생 1인당 장서 수 (단위 : 권)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등학교	23.0	26.6	30.2	33.4	34.9	36.6
중학교	16.1	18.2	19.8	22.6	25.9	29.4
고등학교	13.2	14.4	16.0	17.2	18.7	19.9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b).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p.116.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는 2016년까지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통계를 활용했으나 2017년부터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산업 통계를 활용하였다. 출판산업 통계의 도서 분류는 유아동, 교육, 문학, 인문, 예술/대중문화, 실용,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크게 8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2016년 75,727종의 신간 중에 유아동 도서는 8,535종으로 11.3%의 분포를 보여 전년도 2015년(12.6%)에 비해 1.3%p가 낮아졌다. 유아동 도서 분포는 2012년(12.9%) 이후 꾸준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2-29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단위 : 종, %)

구분	발행종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총계	66,804	61,548	67,062	70,091	75,727	8.0
유아	2,654	2,339	2,323	2,563	2,479	△3.6
아동(어린이)	5,972	5,059	5,110	6,247	6,065	△2.9
유·아동 소계	8,615	7,398	7,433	8,810	8,535	△3.1
유·아동 발행분포	12.9%	12.0%	11.1%	12.6%	11.3%	△1.3

* 주: '유아'도서는 유아교양, 과학, 놀이, 학습 등의 내용으로 전집을 포함함. '아동(어린이)'도서는 어린이 교양, 동화 등으로 초등입학 학습지와 전집을 포함하는 분류 기준임(반기 단위 발행).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7). KPIPA 출판산업 동향(2017 상반기). pp.69–73.

(2) 정보제공 정도

①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학생생활규정 등)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87.0%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3.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30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6(0.74)	3.9	9.1	53.8	33.2	100.0(8,960)	–
학교급	초등학교	3.42(0.71)	2.9	4.7	39.7	52.7	100.0(2,577)	770.169***
	중학교	3.17(0.73)	3.7	8.3	55.5	32.4	100.0(2,892)	
	고등학교	2.97(0.72)	4.7	13.0	62.8	19.5	100.0(3,491)	
지역 규모	대도시	3.21(0.74)	3.4	8.6	51.5	36.4	100.0(3,750)	48.082***
	중소도시	3.15(0.74)	3.9	9.3	54.5	32.4	100.0(3,932)	
	읍면지역	3.07(0.75)	5.1	9.8	58.6	26.5	100.0(1,278)	
학업 성적	상	3.26(0.76)	3.7	7.9	46.7	41.6	100.0(3,021)	188.008***
	중	3.16(0.73)	3.7	8.8	55.7	31.7	100.0(3,830)	
	하	3.04(0.72)	4.3	11.3	60.4	23.9	100.0(2,104)	
경제적 수준	상	3.21(0.75)	3.9	8.2	50.8	37.1	100.0(4,878)	89.465***
	중	3.13(0.72)	3.6	9.8	56.8	29.9	100.0(3,135)	
	하	3.03(0.74)	4.8	11.4	59.6	24.2	100.0(942)	

***α<.001

배경변인별 응답 차이를 보면, 교급이 낮을수록(초 92.4%, 중 87.9%, 고 82.3%), 대도시일수록(대도시 87.9%, 중소도시 86.9%, 읍면지역 85.1%), 학업성적(상 88.3%, 중 87.4%, 하 84.3%)과 경제적 수준(상 87.9%, 중 86.7%, 하 83.8%)이 높을수록 학교가 학교규칙을 공지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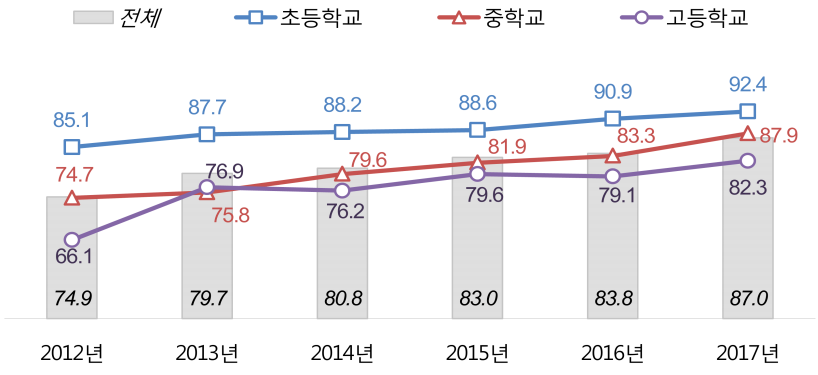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연도별 추이)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학교가 학교생활규정을 공지한다는 응답률은 2012년 74.9%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에는 8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은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책자료,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문항이다. 아동・청소년용 정책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0%로 나타났으며 중학생(19.1%)이 고등학생(15.2%)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은 15.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중학생(17.9%)의 경험률이 고등학생(1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받을 기관 정보는 26.9%가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27.1%)이 중학생(26.6%)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2-31 인권 관련 정보제공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전체(N)	χ^2
1) 아동·청소년용 정책자료	전체	83.0	17.0	100.0(6,396)	–
	중학교	80.9	19.1	100.0(2,901)	17.372***
	고등학교	84.8	15.2	100.0(3,495)	
2)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	전체	84.3	15.7	100.0(6,392)	–
	중학교	82.1	17.9	100.0(2,897)	19.777***
	고등학교	86.2	13.8	100.0(3,495)	
3) 인권상담·구제기관 정보	전체	73.1	26.9	100.0(6,393)	–
	중학교	73.4	26.6	100.0(2,898)	0.283
	고등학교	72.9	27.1	100.0(3,495)	

***$p<.001$

정보제공 정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책자료는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2016년 대비 2017년도 응답값이 감소하였다(중학교 2016년 21.1% → 2017년 19.1%, 고등학교 2016년 17.6% → 2017년 15.2%).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 제공은 2016년 대비 2017년 응답값이 소폭 상승하였다(중학교 2016년 16.4% → 2017년 17.9%, 고등학교 2016년 12.1% → 2017년 13.8%).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받을 기관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률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중학교 2016년 20.9% → 2017년 26.6%, 고등학교 2016년 23.9% → 2017년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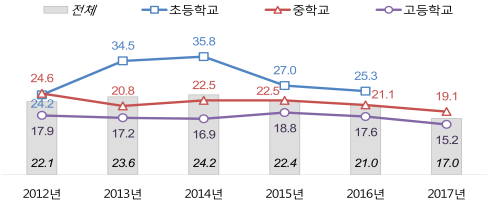

1)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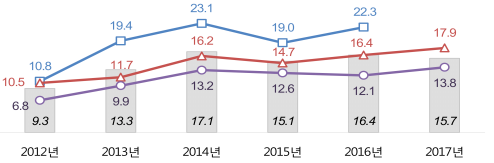

2)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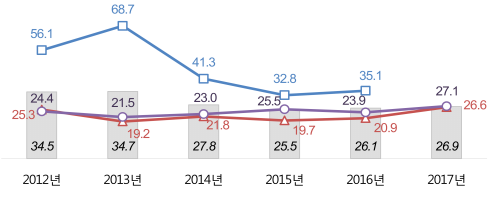

3) 인권 상담·구제기관 정보

* 주: '그렇다'의 응답값(단위: %)
* 주: 2017년 전체값에는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그림 Ⅲ-2-22】 인권 관련 정보제공(연도별 추이)

6) 소결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영역은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 중분류, 10개 지표(소분류), 20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된다.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시 의견존중정도)는 진로(직업)(94.1%), 상급학교 진학(93.1%), 집안 중대사(90.7%), 공부시간과 방법(89.2%) 등의 순으로 자녀 의견 존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정도는 자치권 향유 수준 31.5%, 학생회 의견존중도 38.4%, 예산・장소・시간 보장 39.6%, 학생회 임원 후보 성적 제한 없음 35.4% 등으로 나타나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급회의를 운영하는 경우는 70.1%로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급회의 시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한 정도는 87.7%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우는 17.3%로 전년 대비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73.2%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2013년 이후 더 늘어나지 않고 각각 189개, 305개로 정체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0.8%로, 전년도 14.1%보다 낮아졌으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4.9%로, 전년도 49.7%보다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해본 경험은 2016년 2.9%에서 2.1%로 감소하였다.

선거연령을 현재 만19세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47.3%로, 전년도 24.7% 대비 두 배 가까이로 대폭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60.7%로, 전년도 54.2%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 26.9%, ‘참여활동 정보 부족’ 18.6%, ‘참여할 기회나 방법 부족’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상의 자유는 가정(91.7%), 학교(85.3%), 사회(73.4%)에서 70% 이상 보장받고 있었고 연도별 추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62.7%로 전년도 73.3%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도 80.9%로 전년도 76.2%보다 높아졌다.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은 15.6%였으며,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은 17.2%로 2016년도 7.3%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용모(53.3%)와 복장(50.1%) 검사는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소지품(19.4%) 검사 경험은 전년도 대비 소폭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자 이름(11.6%), 징계사항(25.0%), 시험성적(21.6%) 공개실태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10대 청소년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5.4시간,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9.6시간이며 인터넷 이용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95.1%를 차지하며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또한 커뮤니케이션(채팅, SNS 등)이 83.4%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소통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27.6%)와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9.1%)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학생들에게 학교규칙 공지(87.0%),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책 홍보자료(17.0%),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15.7%), 권리상담 및 구제기관 정보(26.9%) 등의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관련 정보 제공 정도는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3. 폭력 및 학대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청소년폭력 경험률

① 폭력피해 경험

'폭력 및 학대' 영역의 소분류인 '청소년폭력 경험률'은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에 의한 '정서적 학대 경험률'과 신체적인 폭력을 포함한 '물리적 폭력 피해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정서적 폭력 경험률

정서적 폭력으로 부모, 학교교사 및 친구와 선후배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었는지(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 포함)를 조사한 결과 <표 Ⅲ-3-1>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Ⅲ-3-1 욕설 경험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68.2	15.1	6.5	5.2	5.1	100.0(8,999)	–
성별	남자		69.5	14.4	6.3	4.8	4.9	100.0(4,678)	8.399
	여자		66.8	15.8	6.6	5.5	5.2	100.0(4,320)	
학교급	초등학교		73.4	13.1	4.7	4.0	4.8	100.0(2,598)	89.022***
	중학교		62.6	16.8	7.8	6.4	6.4	100.0(2,906)	
	고등학교	전체	69.0	15.2	6.6	5.0	4.1	100.0(3,495)	
		일반계고	69.2	15.6	6.4	4.8	3.9	100.0(2,824)	
		특성화계고	68.3	13.2	7.7	6.1	4.8	100.0(67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8.7	15.1	6.3	5.0	4.8	100.0(8,141)	34.992***
	한부모가정		62.6	14.2	8.8	7.1	7.2	100.0(655)	
	조손가정		69.2	12.8	5.2	1.6	11.2	100.0(86)	
	기타		69.7	18.5	3.7	5.1	3.0	100.0(109)	
학업 성적	상		69.5	14.1	6.3	4.7	5.4	100.0(3,029)	57.772***
	중		70.3	15.2	5.9	4.4	4.1	100.0(3,852)	
	하		62.7	16.3	7.6	7.2	6.2	100.0(2,111)	
경제적 수준	상		71.0	13.7	6.3	4.6	4.4	100.0(4,900)	129.900***
	중		67.5	16.8	6.2	4.9	4.6	100.0(3,149)	
	하		56.1	16.5	8.2	9.0	10.2	100.0(943)	

***$p<.001$

UN의 아동권리협약(CRC) 제19조에는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표 Ⅲ-3-1>은 2017년 초, 중, 고 청소년 8,999명을 대상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협약 제19조의 정신적 폭력에 해당되는 모욕적인 말(욕설)로 인권침해를 당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의 언어폭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전체 31.9%에 해당하고 있고, 이중 여학생이 33.1%로 남학생 30.4%보다 피해가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 중, 고 교급별로 비교했을 때에는 중학생들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욕설을 가장 많이 들어 37.4%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30.9%, 초등학생은 2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37.3%로 가장 높았고,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에(37.3%) 속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43.9%) 학생이 상대적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더 많은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로 정신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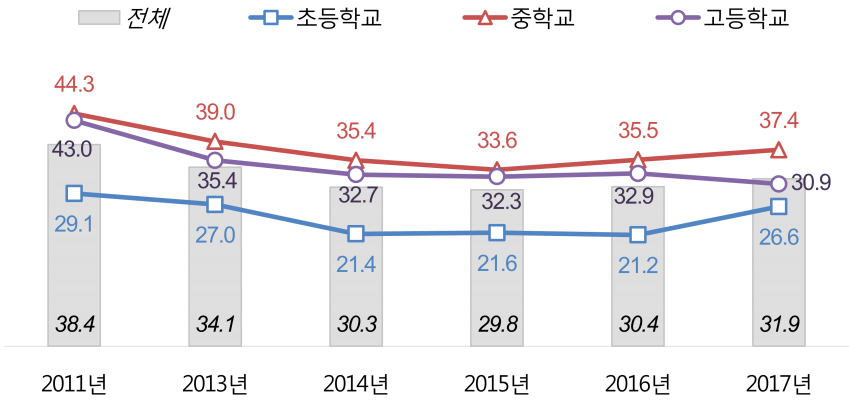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위의 [그림 Ⅲ-3-1]에는 2011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이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경험한 실태의 연도별 추이가 잘 드러나 있다. 전체적으로 2011년 이후부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언어폭력은 2015년까지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은 다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이 증가 추세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러한 경향이 초등학생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 2016년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21.2%에서 2017년에는 26.6%로 5.4%나 증가해 그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경향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로 정신적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이는 다시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로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예방적 조처가 요청되는 실태조사 결과이다.

표 Ⅲ-3-2 욕설 경험_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9.4	10.4	3.7	3.3	3.2	100.0(8,995)	–
성별	남자		78.5	9.7	4.0	3.7	4.1	100.0(4,676)	36.896***
	여자		80.4	11.2	3.3	2.9	2.2	100.0(4,318)	
학교급	초등학교		92.5	4.7	1.1	0.7	1.0	100.0(2,598)	400.024***
	중학교		74.2	11.9	4.8	4.4	4.8	100.0(2,901)	
	고등학교	전체	74.1	13.4	4.7	4.4	3.5	100.0(3,496)	
		일반계고	74.4	13.8	4.7	3.9	3.2	100.0(2,823)	
		특성화계고	72.5	11.8	4.7	6.5	4.6	100.0(673)	
지역 규모	대도시		79.6	10.5	3.8	3.4	2.6	100.0(3,756)	41.958***
	중소도시		80.8	10.2	3.2	2.9	3.0	100.0(3,961)	
	읍면지역		74.8	10.8	4.7	4.2	5.5	100.0(1,277)	
학업 성적	상		80.4	10.1	3.3	3.4	2.8	100.0(3,028)	30.102***
	중		80.6	10.2	3.4	2.9	2.8	100.0(3,850)	
	하		75.8	11.3	4.6	3.9	4.4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80.6	9.8	3.2	3.4	3.1	100.0(4,896)	30.902***
	중		78.9	11.1	4.2	3.0	2.8	100.0(3,148)	
	하		74.8	11.5	4.4	4.2	5.1	100.0(944)	

***α<.001

위의 <표 Ⅲ-3-2>은 청소년이 학교에서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경험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의 언어폭력에 의한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정에서보다는 덜해서 전체 20.6%로 5명 중 1명꼴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 피해경험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교급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언어폭력 피해 경험(7.5%)이 가장 낮아 고무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학교(25.9%)와 고등학교(26.0%)에서는 4명 중 1명이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도시(19.3%)보다는 읍면지역(25.2%)에서, 학업성적(24.2%)과 경제적 수준(25.2%)이 낮은 청소년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로 정신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Ⅲ-3-2]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로 청소년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연도별(2011년, 2013년~2017년) 추이를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연도별 추이는 가정에서의 언어폭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이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에서의 언어폭력 추이 경향과 가정에서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면 가정에서는 지난 2년간 초등학생에 대한 언어폭력 상승폭이 컸지만, 학교에서는 중학생에 대한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상승폭이 가장 높아 2016년에 21.0%였던 것이 올해에는 25.9%로 나타나 5% 가까이 피해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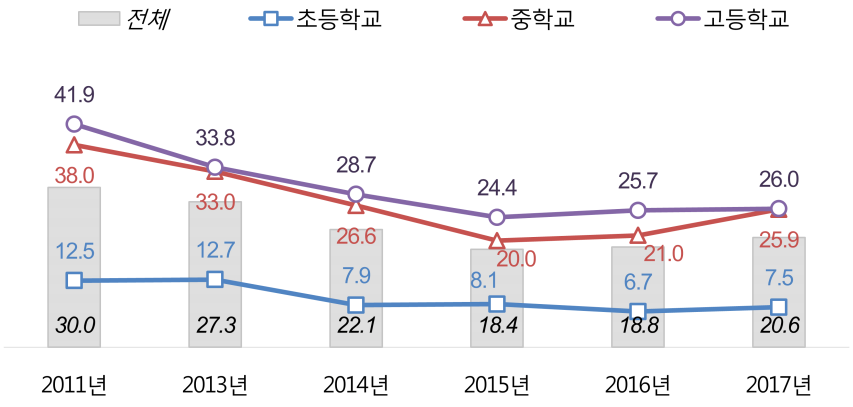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6년간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로 청소년에게 정신적 폭력의 인권 침해 피해의 경향이 2015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비록 작은 상승폭이지만 다시 지난 2년 동안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성인들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부모의 책임만은 아니겠으나 청소년들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책임자들이 보다 인내를 가지고 이들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조사결과이다.

아래의 <표 Ⅲ-3-3>은 청소년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한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 정부는 학교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해결 방안들을 강구하고 대책들을 쏟아 놓았다. 이는 모두 청소년들 간에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실제 아래에서 조사된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은 놀랍게도 가정에서와 학교에서 성인들로부터 경험하는 것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3>과 같이 9,003명의 전체 응답청소년 중에서 15.2%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위에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받은 피해경험이 31.9%,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받은 피해경험이 20.6%였던 것에 비하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훨씬 적게 나타났다.

표 Ⅲ-3-3 욕설 경험_친구, 선·후배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4.8	8.7	2.2	1.9	2.4	100.0(9,003)	–
성별	남자		82.2	9.1	2.7	2.5	3.5	100.0(4,681)	85.795***
	여자		87.6	8.3	1.6	1.3	1.3	100.0(4,322)	
학교급	초등학교		81.4	11.1	2.9	1.9	2.8	100.0(2,598)	56.122***
	중학교		84.1	9.3	2.1	2.2	2.4	100.0(2,908)	
	고등학교	전체	87.8	6.5	1.7	1.7	2.2	100.0(3,497)	
		일반계고	88.8	6.0	1.5	1.7	1.9	100.0(2,824)	
		특성화계고	83.6	8.5	2.5	1.8	3.5	100.0(67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5.1	8.7	2.0	1.9	2.3	100.0(8,144)	–
	한부모가정		82.5	7.2	3.9	2.6	3.9	100.0(655)	
	조손가정		74.8	15.6	4.1	2.6	2.9	100.0(86)	
	기타		85.8	11.9	0.2	0.0	2.2	100.0(110)	
학업성적	상		84.4	9.0	2.2	1.7	2.8	100.0(3,032)	28.289***
	중		86.1	8.5	2.0	1.9	1.6	100.0(3,854)	
	하		83.0	8.8	2.4	2.4	3.4	100.0(2,112)	
경제적수준	상		85.7	8.7	1.9	1.6	2.1	100.0(4,903)	38.941***
	중		84.8	8.7	2.2	2.0	2.3	100.0(3,149)	
	하		80.0	8.9	3.4	3.4	4.3	100.0(946)	

*$p<.05$, ***$p<.001$

위의 조사결과에서 여학생(12.5%)은 남학생(17.8%)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초등학생이 18.7%로 제일 피해가 많고, 중학생은 16.0%, 고등학생은 12.1%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언어폭

력의 피해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 중에는 특성화계 학교에서 16.3%로 일반계 학교 11.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 자녀가 25.2%로 가장 피해가 높았고,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학업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게서 폭력의 피해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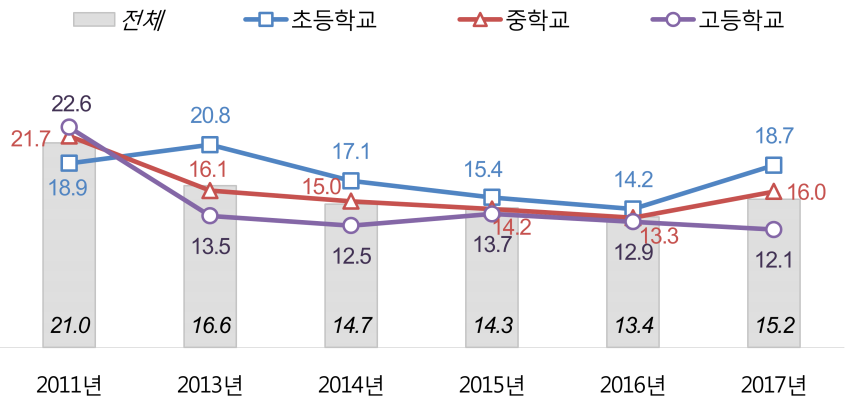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3】 친구, 선·후배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연도별 추이)

위의 [그림 Ⅲ-3-3]에서는 친구와 선후배로로부터의 폭력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2011년, 2013~2017년)가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심한 욕설이나 모욕의 폭력 경험이 2013년 20.8%로 가장 높았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 14.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2017년에 다시 18.7%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2011년 21.7%로 가장 높은 피해 수치가 보였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16년에 가장 폭력이 적어서 13.3%까지 낮아졌으나 2017년에 다시 16.0%로 높아졌다. 반면에 2011년에 세 교급 중에서 가장 폭력이 심했던 고등학생의 경우(22.6%) 2015년에 잠시 13.7%로 조금 높았다가 지속적으로 수치가 하락해 2017년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는 달리 12.1%의 폭력 피해 경험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전체적으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언어폭력은 감소 추세라 할 수 있으나 올해에 다시 초등학생 및 중학생과 같은 저학년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Ⅲ-3-4 욕설 경험_사이버 공간에서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욕설이나 모욕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3.8	8.6	2.8	2.2	2.6	100.0(9,004)	–
성별	남자	81.8	8.2	3.2	2.8	4.0	100.0(4,683)	108.418***
	여자	85.9	9.1	2.5	1.4	1.0	100.0(4,321)	
학교급	초등학교	86.8	7.7	2.1	1.5	2.0	100.0(2,600)	98.221***
	중학교	78.5	10.7	4.2	3.1	3.4	100.0(2,907)	
	고등학교	86.0	7.6	2.2	1.9	2.3	100.0(3,49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4.2	8.6	2.7	2.1	2.4	100.0(8,146)	–
	한부모가정	79.3	9.3	3.9	3.4	4.1	100.0(655)	
	조손가정	85.4	3.9	4.0	2.3	4.4	100.0(86)	
	기타	82.5	11.2	2.9	0.0	3.4	100.0(110)	
학업 성적	상	84.0	8.1	2.6	2.5	2.8	100.0(3,033)	24.612**
	중	85.0	8.6	2.6	1.7	2.1	100.0(3,855)	
	하	81.3	9.5	3.7	2.4	3.2	100.0(2,112)	
경제적 수준	상	85.0	8.0	2.9	1.8	2.4	100.0(4,904)	32.752***
	중	83.6	8.8	2.6	2.3	2.7	100.0(3,151)	
	하	78.5	11.2	3.3	3.7	3.3	100.0(946)	

**$p<.01$, ***$p<.001$

위의 <표 Ⅲ-3-4>는 청소년이 심한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정서적 학대를 사이버 공간에서 당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결과는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조사 결과로 또 다른 의미를 지난다.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을 받은 경험은 전체 응답 청소년 9,004명 중 16.2%에 해당하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남자청소년에 대한 언어폭력이 18.2%로 여자청소년의 1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비교하면 초등학생 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13.3%, 중학생 간에는 21.4%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14.0%로 조사되었다. 가족유형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20.7%로 피해가 가장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에 속하고(18.8%),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21.5%)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4]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2013년~2017년)를 잘 읽을 수 있다. 대체로 2011년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피해 경험은 각 교급에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이 2016년도 17.1%로 낮아졌다가 2017년 올해 다시 21.4%로 대폭 상승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결과이다. 언어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 수치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적극적인 조기 개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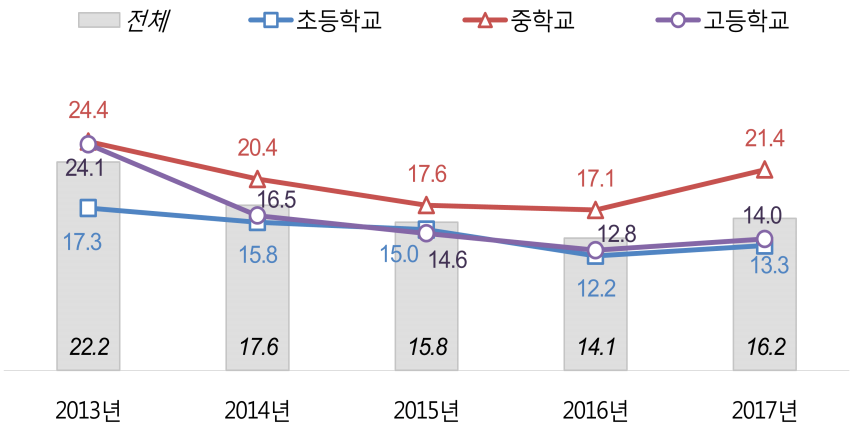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4】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욕설이나 모욕(연도별 추이)

나. 물리적 폭력 경험률

물리적 폭력 경험률은 주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행이나 구타와 같은 물리적 폭력의 경험, 따돌림과 같은 심리적·정신적 폭력, 그리고 성적 희롱과 추행과 같은 성폭력에 관한 청소년들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교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Ⅲ-3-5>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폭력으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학생 9,003명 중 6.9%에 해당되었고, 이중 남자청소년이 9.9%로 여자청소년 3.6%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15.9%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3.9%, 고등학생이 2.5%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실태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초등학생이 성인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는 스트레스가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결과라 추정할 수 있어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에 대한 교육이 조기

개입의 차원에서 적극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행이나 구타로 인한 피해는 조손가정 자녀(17.1%)일수록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Ⅲ-3-5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폭행이나 구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3.1	3.7	1.2	0.6	1.4	100.0(9,003)	–
성별	남자	90.2	5.2	1.7	1.0	2.0	100.0(4,683)	137.356***
	여자	96.3	2.1	0.6	0.2	0.7	100.0(4,321)	
학교급	초등학교	84.0	9.3	2.8	1.1	2.7	100.0(2,599)	499.156***
	중학교	96.1	1.9	0.5	0.6	0.9	100.0(2,907)	
	고등학교	97.4	1.0	0.5	0.3	0.7	100.0(3,49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3.6	3.5	1.1	0.6	1.3	100.0(8,144)	–
	한부모가정	91.4	4.6	1.5	0.5	2.0	100.0(655)	
	조손가정	82.8	3.7	6.7	0.7	6.0	100.0(86)	
	기타	79.6	15.2	3.8	0.0	1.3	100.0(110)	
학업 성적	상	92.2	4.6	1.1	0.4	1.7	100.0(3,033)	36.716***
	중	92.9	4.0	1.3	0.6	1.2	100.0(3,854)	
	하	95.0	1.9	1.0	0.9	1.1	100.0(2,111)	
경제적 수준	상	92.6	4.4	1.2	0.6	1.4	100.0(4,905)	23.149**
	중	93.8	3.1	1.2	0.7	1.1	100.0(3,147)	
	하	94.0	2.2	1.0	0.5	2.3	100.0(946)	

**$p<.01$, ***$p<.001$

[그림 Ⅲ-3-5]에서는 이러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행이나 구타 피해 경험의 2011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추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2011년에는 교급별 차이가 거의 없어 피해 경험의 비율이 초등학생이 6.5%, 중학생이 7.4%, 고등학생이 6.3%로 보였는데, 2013년 초등학생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15.3%로 급상승한 반면 중학생은 4.3%, 고등학생은 3.1%로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이러한 상승추이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올해에는 지난 6년 동안 가장 높은 15.9%를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추이 조사결과이다. 계속 강조되는 말이지만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영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이 필요하고, 부모교육과 교사교육도 신혼 초나 교사자격 취득과정에서부터 일찍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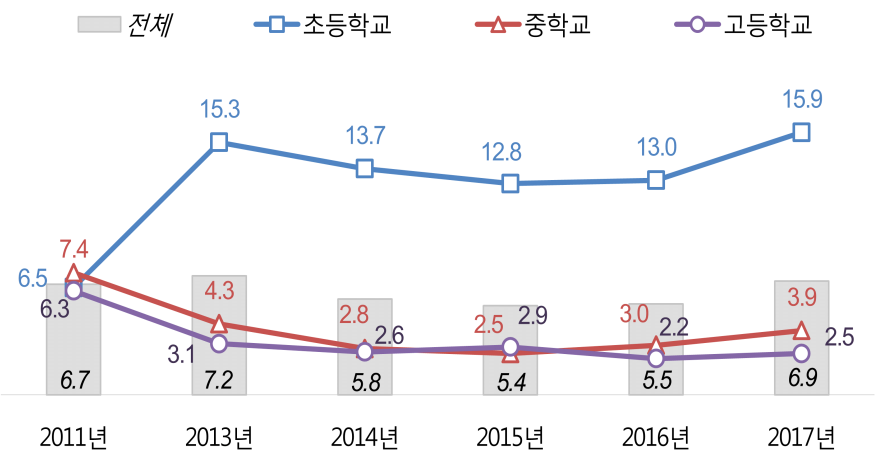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5】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폭행이나 구타(연도별 추이)

표 Ⅲ-3-6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따돌림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4.7	3.2	1.0	0.4	0.7	100.0(9,002)	–
성별	남자	94.8	2.7	1.2	0.5	0.8	100.0(4,681)	15.351**
	여자	94.6	3.7	0.7	0.4	0.7	100.0(4,321)	
학교급	초등학교	90.9	5.6	1.7	0.6	1.2	100.0(2,597)	124.023***
	중학교	94.9	3.0	0.9	0.4	0.7	100.0(2,907)	
	고등학교	97.3	1.5	0.5	0.3	0.4	100.0(3,49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0	3.0	0.9	0.4	0.7	100.0(8,142)	–
	한부모가정	94.4	3.1	1.3	0.5	0.7	100.0(655)	
	조손가정	89.9	2.2	5.8	0.9	1.3	100.0(86)	
	기타	80.6	12.5	4.3	2.6	0.0	100.0(110)	
학업 성적	상	95.0	3.1	0.8	0.4	0.7	100.0(3,033)	8.102
	중	94.6	3.2	1.2	0.4	0.6	100.0(3,854)	
	하	94.4	3.2	0.9	0.5	1.1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94.6	3.5	0.9	0.4	0.6	100.0(4,905)	17.610*
	중	95.3	2.6	1.0	0.4	0.7	100.0(3,146)	
	하	93.0	3.4	1.4	0.9	1.3	100.0(946)	

*p<.05, **p<.01, ***p<.001

<표 Ⅲ-3-6>에는 또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따돌림 피해에 대한 실태가 나타나 있다. '따돌림'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폭력'이다. 2017년도 조사에서 전체 9,002명의 응답 청소년 중 5.3%가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교급 중에서 초등학생이 9.1%로 가장 따돌림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 5.0%, 고등학생 2.7%로 조사되었다. 가족유형에 있어서는 조손가정 자녀가 10.2%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 정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 초등학생 2,597명 중 1.2%에 해당하는 약 31명 정도는 1주일에 1~2회 이상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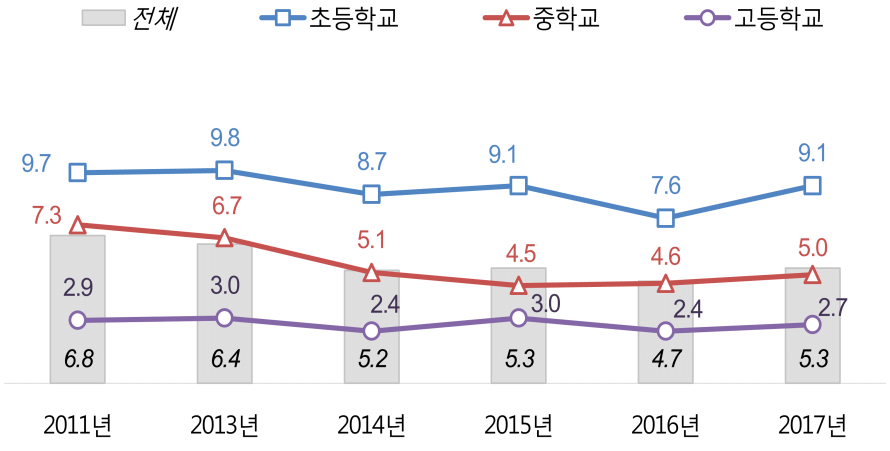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6】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따돌림(연도별 추이)

한편 [그림 Ⅲ-3-6]에서는 학교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에 대한 2011년,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2011년에 비해 초, 중, 고 교급에서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 상황을 그나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다양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이러한 따돌림을 통한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정신적 폭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실태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6년 7.6%의 피해 경험이 2017년 9.1%로 상승폭이 적지 않은 것이 더욱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표 Ⅲ-3-7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6.1	1.8	0.6	0.6	0.9	100.0(9,002)	–
성별	남자	95.3	1.8	0.8	0.8	1.3	100.0(4,683)	33.081***
	여자	97.0	1.7	0.5	0.3	0.4	100.0(4,319)	
학교급	초등학교	96.6	1.5	0.7	0.6	0.6	100.0(2,598)	5.248
	중학교	95.8	1.9	0.7	0.5	1.1	100.0(2,908)	
	고등학교	96.1	1.9	0.5	0.6	0.9	100.0(3,496)	
지역 규모	대도시	96.6	1.6	0.6	0.6	0.6	100.0(3,757)	15.857*
	중소도시	96.2	1.6	0.6	0.5	1.1	100.0(3,965)	
	읍면지역	94.8	2.6	0.7	1.0	0.9	100.0(1,280)	
학업 성적	상	95.5	1.7	0.8	0.8	1.1	100.0(3,034)	18.091*
	중	96.7	1.7	0.5	0.6	0.5	100.0(3,853)	
	하	96.0	1.9	0.6	0.3	1.1	100.0(2,111)	
경제적 수준	상	96.6	1.6	0.4	0.5	0.9	100.0(4,903)	32.190***
	중	96.3	1.8	0.8	0.5	0.6	100.0(3,148)	
	하	93.3	2.9	1.2	1.0	1.6	100.0(946)	

*p<.05, ***p<.001

위의 <표 Ⅲ-3-7>에는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의 피해를 경험한 실태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학생 9,002명 중 3.9%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자청소년이 4.7%로 여자청소년 2.9%보다 피해 경험이 더 많지만, 교급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학생(5.2%)들의 피해가 대도시(3.4%)나 중소도시(3.8%) 학생들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 수준에 있어서는 성적 희롱이나 추행의 피해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낮은 집단 수준의 응답학생(6.7%)이 상(3.4%), 중(3.7%)의 경제적 수준 집단의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Ⅲ-3-7]에는 지난 2011년,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받은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가 교급별로 나타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에 3.4%의 피해 경험을 보였는데, 2017년에도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년도인 2016년 1.8%에 비하면 거의 배 가까이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는 상황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성적 폭력을 통한 인권침해가 적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예방이 적극 필요해 보인다. 정보사회가 심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선정적

장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성적 폭력을 통한 인권침해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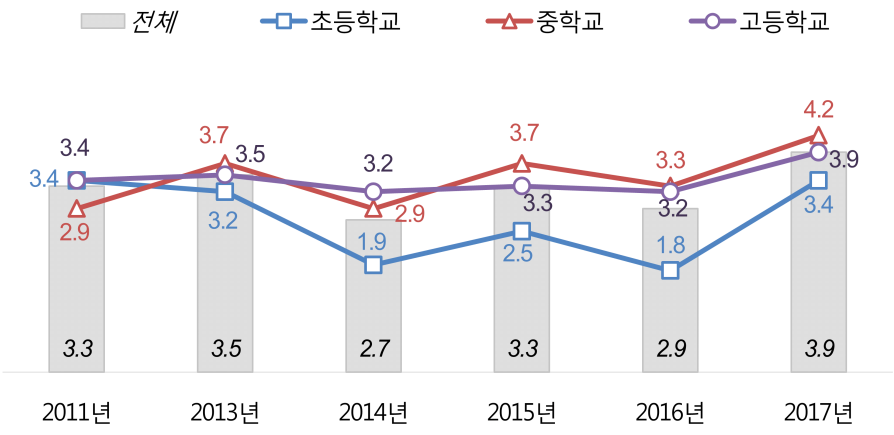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7】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②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청소년폭력 경험률'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이 세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교폭력이 과거에는 주로 오프라인 공간인 학교 현장에서 주로 일어났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엄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최근 정보사회에 들어와서 뉴미디어 매체들의 발전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공간이 사이버 공간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을 통한 인권침해를 더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Ⅲ-3-8>에는 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서 성희롱(놀림)과 같은 인권침해의 피해를 경험한 실태조사 결과가 드러나 있다. 전체 응답자의 3.2%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녀 차이는 없었으며, 초, 중, 고 교급,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성폭력은 아직 다른 유형의 폭력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특징인데,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도 청소년이 아직 성적으로 미성숙하고 호기심만 있는 발달심리 상태이어서 적극적인 성폭력의 양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Ⅲ-3-8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성희롱(놀림)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6.8	1.6	0.7	0.4	0.5	100.0(9,003)	–
성별	남자	96.7	1.4	0.5	0.7	0.7	100.0(4,681)	32.471***
	여자	97.0	1.8	0.9	0.1	0.2	100.0(4,322)	
학교급	초등학교	97.6	1.3	0.4	0.4	0.3	100.0(2,600)	16.107*
	중학교	96.0	1.8	0.9	0.6	0.7	100.0(2,905)	
	고등학교	96.9	1.7	0.6	0.3	0.5	100.0(3,498)	
지역 규모	대도시	97.0	1.8	0.5	0.4	0.4	100.0(3,758)	14.982
	중소도시	97.1	1.3	0.7	0.4	0.5	100.0(3,964)	
	읍면지역	95.6	1.9	0.9	0.7	0.9	100.0(1,280)	
학업 성적	상	96.9	1.4	0.6	0.4	0.7	100.0(3,032)	7.743
	중	97.1	1.6	0.6	0.4	0.3	100.0(3,855)	
	하	96.2	1.9	0.8	0.5	0.5	100.0(2,112)	
경제적 수준	상	97.1	1.5	0.5	0.4	0.5	100.0(4,902)	22.212**
	중	96.8	1.6	1.0	0.2	0.4	100.0(3,151)	
	하	95.4	2.3	0.7	0.9	0.6	100.0(946)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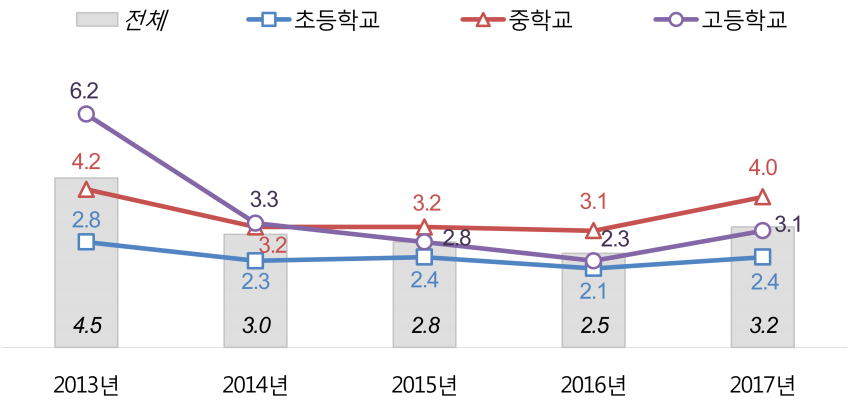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8】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성희롱(놀림)(연도별 추이)

위의 [그림 Ⅲ-3-8]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놀림)에 대한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도 다른 폭력의 유형에서 보여준 추이와 같이 2013년에 초등학생 6.2%, 중학생 4.2%, 고등학생이 2.8%순으로 가장 높았다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 초등학생이 2.3%, 중학생이 3.1%, 고등학생이 2.1%로 낮아졌다가 다시 2017년 올해에 소폭 상승하여 초등학생이 3.1%, 중학생이 4.0%, 고등학생이 2.4%를 보이고 있다. 다른 유형의 폭력에서도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2017년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수치의 실태들이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표 Ⅲ-3-9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사생활이 알려짐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4.2	4.0	1.0	0.4	0.3	100.0(9,003)	–
성별	남자	94.7	3.4	0.9	0.5	0.5	100.0(4,681)	17.379**
	여자	93.8	4.6	1.1	0.4	0.2	100.0(4,322)	
학교급	초등학교	96.1	3.0	0.4	0.3	0.3	100.0(2,600)	42.372***
	중학교	92.4	5.0	1.4	0.7	0.5	100.0(2,905)	
	고등학교	94.5	3.9	1.1	0.3	0.3	100.0(3,49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5	3.9	1.0	0.4	0.3	100.0(8,144)	–
	한부모가정	92.2	5.0	1.5	0.6	0.7	100.0(655)	
	조손가정	93.2	3.7	2.3	0.8	0.0	100.0(86)	
	기타	89.8	9.2	0.0	0.1	1.0	100.0(110)	
학업 성적	상	94.2	4.0	1.0	0.5	0.4	100.0(3,032)	15.382
	중	95.1	3.5	0.8	0.3	0.2	100.0(3,855)	
	하	92.7	4.9	1.3	0.5	0.5	100.0(2,112)	
경제적 수준	상	94.7	3.6	1.0	0.3	0.3	100.0(4,902)	39.142***
	중	94.8	3.9	0.7	0.4	0.2	100.0(3,151)	
	하	90.1	6.3	1.9	0.9	0.7	100.0(946)	

**$p<.01$, ***$p<.001$

위의 <표 Ⅲ-3-9>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차별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시키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이다. 전체 응답 청소년 9,003명 중 5.7%가 이러한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학생의 5.3%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여학생은 6.3%로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의 4.0%, 중학생의 7.6%, 고등학생의 5.6%가 사이버 공간에서 사생활이 알려지는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7.8%의 피해 경험률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7.2%),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할수록(9.8%) 사생활 침해의 사이버 폭력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의 [그림 Ⅲ-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에 학교유형 중 6.6%로 가장 높았다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여 2017년에는 다른 교급보다 가장 낮은 4.0%를 보였다.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는 정반대의 추이를 보였는데 2013년 3.4%로 가장 낮았다가 2017년에는 7.6%로 큰 폭으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 폭력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4년 6.5%로 가장 수치가 높았다가 2017년에는 5.6%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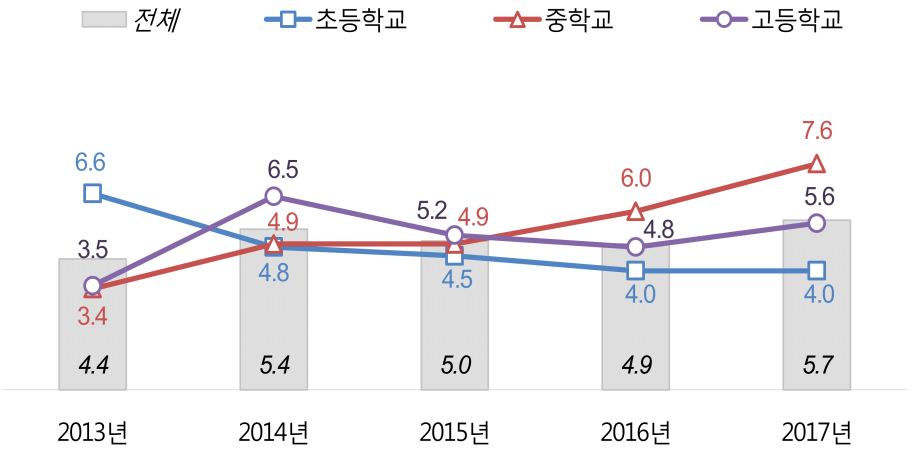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9】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사생활이 알려짐(연도별 추이)

아래의 <표 Ⅲ-3-10>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따돌림 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가 잘 드러나 있다. 전체 응답 청소년 9,003명 가운데에 2.0%가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교급에서도 중학생이 2.7%로 다소 높게 나왔고, 초등학생은 1.8%, 고등학생은 1.8%로 차이가 없었다. 가족유형 중에는 한부모가정 자녀(3.5%)나 조손가정 자녀(4.9%)가 양부모가정 자녀(1.8%)보다 2~3배 정도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각각 3.1%, 3.2%) 학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따돌림의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간 따돌림의 피해는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Ⅲ-3-10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따돌림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7.9	1.3	0.3	0.2	0.2	100.0(9,003)	–
성별	남자	98.0	1.2	0.4	0.3	0.2	100.0(4,682)	2.671
	여자	97.9	1.4	0.3	0.1	0.3	100.0(4,320)	
학교급	초등학교	98.3	1.1	0.2	0.2	0.3	100.0(2,599)	17.448
	중학교	97.3	1.5	0.5	0.3	0.4	100.0(2,906)	
	고등학교	98.2	1.3	0.3	0.1	0.1	100.0(3,49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2	1.1	0.3	0.2	0.2	100.0(8,144)	–
	한부모가정	96.5	2.2	0.3	0.4	0.6	100.0(655)	
	조손가정	95.1	1.3	2.8	0.8	0.0	100.0(86)	
	기타	89.0	7.3	0.0	0.0	3.6	100.0(110)	
학업 성적	상	98.2	1.2	0.3	0.1	0.3	100.0(3,032)	21.065**
	중	98.3	1.1	0.2	0.3	0.2	100.0(3,855)	
	하	96.9	1.7	0.7	0.3	0.4	100.0(2,112)	
경제적 수준	상	98.3	1.1	0.2	0.1	0.3	100.0(4,902)	17.683*
	중	97.6	1.5	0.4	0.3	0.3	100.0(3,151)	
	하	96.8	1.8	0.8	0.4	0.2	100.0(946)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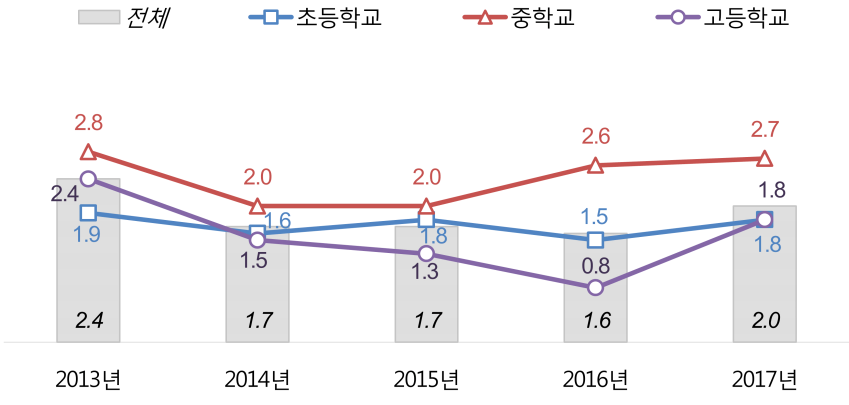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10】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따돌림(연도별 추이)

위의 [그림 Ⅲ-3-10]은 청소년의 사이비 공간에서 따돌림 피해 경험에 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돌림 피해에 관한 연도별 추이도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 성적 폭력과 같은 다른 유형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2013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에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생에게서는 2016년부터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피해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체벌 경험률

① 체벌 경험률

체벌은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제19조에서 금하고 있는 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정신적·심리적 폭력도 수반한다고 볼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체벌은 과거로부터 교육의 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사회적으로도 묵인되고 용인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에 대하여 엄하게 금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1991년 이 협약의 비준국이 되면서부터 협약 조항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져 지속적인 제도개선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체벌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교육이 공교육을 능가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학원에서조차 체벌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래의 <표 Ⅲ-3-11>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의 응답 실태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 청소년 8,999명 중 26.2%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이 가정에서 체벌로 인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남녀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교급을 보면 초등학생에 대한 가정에서의 체벌이 가장 많아 3명 중 1명이 넘는 35.6%가 피해 경험을 말하고 있다. 중학생도 30.3%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6.1%가 체벌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조손가정 자녀들이 29.3%로 양부모가정 자녀의 26.4%에 비해 체벌로 인한 피해 경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폭력의 피해가 가장 커 중간인 집단 25.4%, 낮은 집단 24.7%에 비해 28.7%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의 부모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체벌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낮은 집단의

학생들(27.1%)이 상대적으로 체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11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3.7	18.0	4.3	2.6	1.3	100.0(8,999)	–
성별	남자	73.6	18.2	4.6	2.5	1.2	100.0(4,677)	3.835
	여자	73.7	17.9	4.1	2.8	1.5	100.0(4,322)	
학교급	초등학교	64.4	22.6	6.5	3.9	2.6	100.0(2,596)	357.461
	중학교	69.7	20.9	4.8	3.2	1.4	100.0(2,907)	
	고등학교	83.9	12.2	2.3	1.2	0.4	100.0(3,49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3.5	18.2	4.3	2.6	1.3	100.0(8,143)	10.097
	한부모가정	76.4	16.2	4.3	1.8	1.3	100.0(654)	
	조손가정	70.7	15.9	7.0	3.8	2.6	100.0(85)	
	기타	72.9	20.4	1.0	3.9	1.7	100.0(109)	
학업 성적	상	71.3	19.2	4.4	3.4	1.7	100.0(3,030)	25.332**
	중	74.7	17.7	4.4	2.0	1.3	100.0(3,852)	
	하	75.2	17.1	4.0	2.6	1.0	100.0(2,111)	
경제적 수준	상	73.5	18.2	4.2	2.7	1.4	100.0(4,899)	14.250
	중	74.1	18.3	4.2	2.2	1.1	100.0(3,147)	
	하	72.9	16.2	5.5	3.6	1.8	100.0(946)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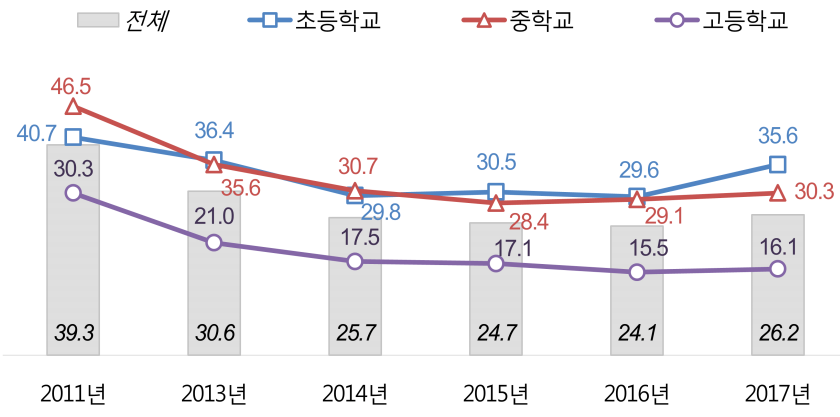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11】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그림 Ⅲ-3-11]은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의 체벌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2011년, 2013년~2017년)를 보여주고 있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가장 체벌 경험 비율이 높았던 중학생의 경우 46.5%로 거의 2명 중 1명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 29.1%, 2017년 30.3%로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 40.7%였던 가정에서의 체벌 비율이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여 2016년에 가장 낮은 29.6%로 보이다가 2017년 올해 35.6%로 다시 급상승하고 있는 중이라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30.3%이었던 부모로부터의 체벌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15.5%로 거의 반으로 감소되었다가 2017년 올해에 16.1%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Ⅲ-3-12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4.4	7.8	3.1	2.4	2.3	100.0(8,997)	–
성별	남자	80.5	9.3	4.4	2.9	3.0	100.0(4,679)	126.014***
	여자	88.6	6.2	1.8	1.9	1.4	100.0(4,318)	
학교급	초등학교	92.3	4.4	1.4	0.7	1.1	100.0(2,595)	193.574***
	중학교	80.2	9.3	4.1	2.9	3.4	100.0(2,907)	
	고등학교	81.9	9.1	3.6	3.2	2.1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83.4	8.5	3.2	2.9	2.0	100.0(3,757)	41.374***
	중소도시	86.6	6.5	2.8	1.8	2.2	100.0(3,961)	
	읍면지역	80.3	9.8	4.1	2.9	3.0	100.0(1,279)	
학업 성적	상	85.2	8.0	2.8	1.9	2.1	100.0(3,031)	52.657***
	중	86.0	7.2	2.6	2.1	2.1	100.0(3,850)	
	하	80.2	8.6	4.6	3.7	2.8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85.2	7.2	2.9	2.2	2.5	100.0(4,898)	23.299**
	중	84.2	8.4	3.1	2.4	1.9	100.0(3,147)	
	하	80.9	8.7	4.6	3.5	2.1	100.0(945)	

*p<.05, **p<.01, ***p<.001

위의 <표 Ⅲ-3-12>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체벌을 경험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UN의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에 이어 2011년 재차 우리나라에 권고한 아동에 관한 학교체벌과 관련하여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76)고 촉구한 바 있다. 이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을 마련하여 UN의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체 8,997명 중 15.6%가 학교에서 체벌로 인한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청소년 중 2.3%에 해당하는 207명 정도는 1주일에 1~2회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19.6%가 학교에서 체벌을 당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11.3%가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7.6%로 가장 체벌의 피해가 낮았으며, 중학생이 19.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은 18.1%가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학교에서의 체벌은 읍면지역이 19.7%로 대도시(16.6%)나 중소도시(1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을 상, 중, 하로 나누었을 때에 높은 집단은 14.8%가, 중간 집단은 14.0%가, 낮은 집단이 제일 높아 19.8%의 체벌 피해 경험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에도 높거나(14.8%) 중간(15.8%)인 집단보다 낮은 집단(19.1%)에서 체벌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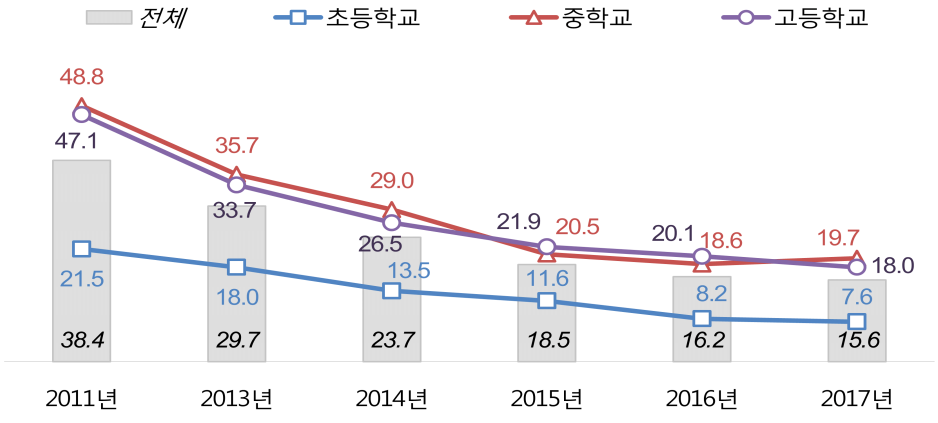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12】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위의 [그림 Ⅲ-3-12]는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체벌에 대한 지난 2011년, 2013년~2017년간의 연도별 추이이다. 교급별로는 2011년에 중학생이 가장 체벌을 많이 받아 48.8%이었고, 이어서 고등학생이 47.1%, 초등학생이 21.5%이었는데, 2017년 올해에는 각각 19.7%, 18.0%, 7.6%로

체벌의 경향이 뚜렷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교급에서 2011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학교 체벌이 감소된 결과로서 매우 고무적인 긍정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사로부터의 체벌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가 학교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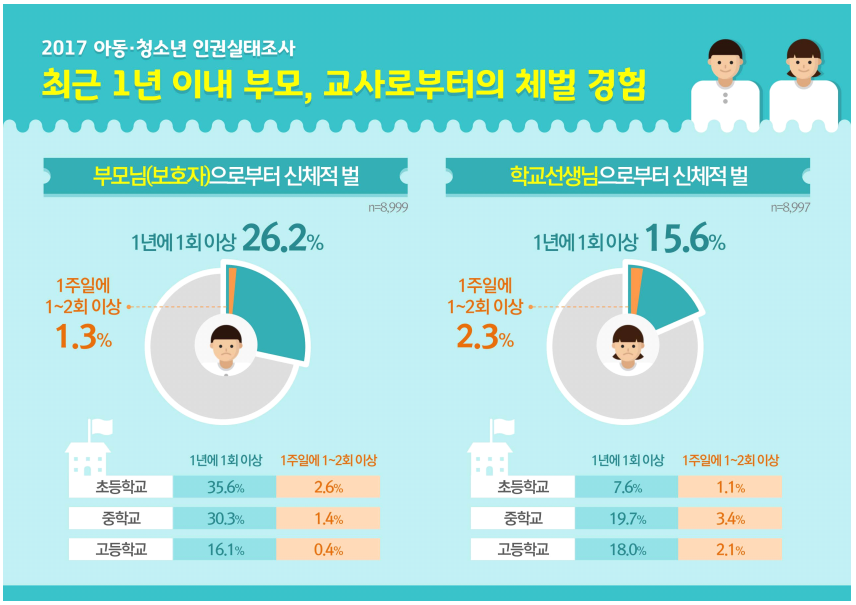

【그림 Ⅲ-3-13】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우리나라에서 사설학원은 공교육 기관에 버금가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사설학원은 대학과 같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시험 준비 기관으로서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교육 기관으로서 학교는 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사교육 기관인 사설학원은 영리 기관으로 방문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높이는 데만 그 존재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설학원에게 공공성과 공익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그 또한 교육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한에는 교육의 근본이념과 그의 공공성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고 그 누구도 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준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원에서도 수강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Ⅲ-3-13 체벌 경험여부_학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2.0	3.6	1.6	1.3	1.5	100.0(8,991)	–
성별	남자	89.2	4.8	2.1	1.8	2.0	100.0(4,676)	105.112***
	여자	95.0	2.4	1.1	0.7	0.8	100.0(4,315)	
학교급	초등학교	91.3	4.5	1.4	1.2	1.6	100.0(2,592)	126.983***
	중학교	88.5	4.4	2.5	2.1	2.4	100.0(2,902)	
	고등학교	95.4	2.4	1.0	0.6	0.5	100.0(3,49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3	3.5	1.6	1.3	1.3	100.0(8,135)	33.003***
	한부모가정	91.2	3.9	1.7	0.8	2.4	100.0(654)	
	조손가정	85.8	4.4	2.5	2.8	4.4	100.0(86)	
	기타	83.3	11.5	2.0	1.4	1.9	100.0(108)	
학업 성적	상	90.2	4.5	2.0	1.5	1.8	100.0(3,030)	22.935**
	중	92.6	3.4	1.4	1.3	1.4	100.0(3,846)	
	하	93.5	2.8	1.6	0.9	1.2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91.4	3.9	1.8	1.3	1.6	100.0(4,895)	10.494
	중	92.3	3.5	1.6	1.2	1.4	100.0(3,148)	
	하	94.3	2.7	0.9	1.2	0.9	100.0(944)	

**$p<.01$, ***$p<.001$

위의 <표 Ⅲ-3-13>은 사설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체벌을 받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학원에서의 체벌은 학교에서보다 크게 적어 전체 응답 청소년 8,991명 중 8.0%가 학원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자청소년은 5.0%가 학원에서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자청소년의 경우 이보다 높아 10.7%가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교급에서는 중학생이 피해경험이 가장 많아 11.4%가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초등학생은 8.7%가 고등학생은 4.5%가 학원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에서는 조손가정 자녀들이 14.1%로 가장 높은 피해 수치를 보였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원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어려울수록 학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과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체벌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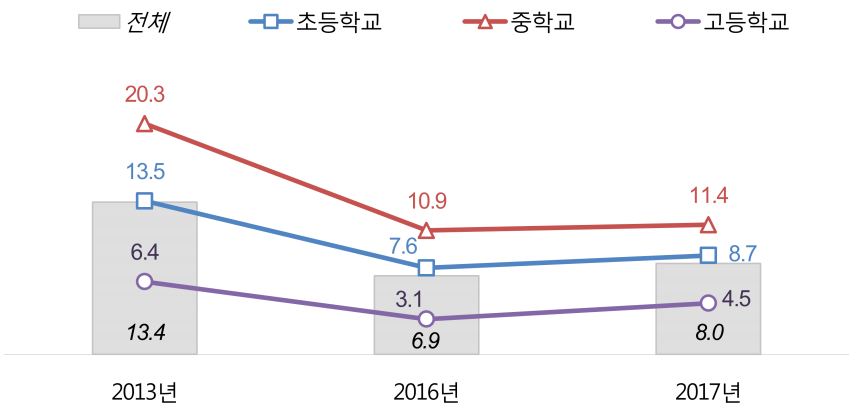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14】 체벌 경험여부_학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위의 [그림 Ⅲ-3-14]에는 지난 2013년, 2016년, 2017년 3개년도 사설학원에서의 체벌 피해에 대한 추이가 나타나 있다. 2013년, 2016년, 2017년에 교급별로 사설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것을 비교해 보면 중학생은 20.3%에서 10.9%, 11.4%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초등학생이 2013년, 2016년, 2017년에 각각 13.5%, 7.6%, 8.7%의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6.4%, 3.1%, 4.5%를 보여 학원에서 체벌로 인한 청소년의 인권침해 추이는 감소하다가 올해에 다시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①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위기상황의 아동 때문에 신속한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한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응급아동을 제외한 사례인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접수 후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 중 다른 신고자에 의한 '동일신고'사례, 자녀양육 및 시설보호 상담문의와 관련된 '일반상담',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국적 아동의 학대사례 지원을 위해 접수된 '해외발생사례'로 구분,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6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전체 29,674건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3,082건

(7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상담 3,604건(12.1%),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796건(9.4%), 동일신고 189건(0.6%), 해외발생사례 3건(0%)순으로 나타났다(<표 Ⅲ-3-14>).

표 Ⅲ-3-14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아동학대 의심 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2,796 (9.4)	23,082 (77.8)	25,878 (87.2)	189 (0.6)	3,604 (12.1)	3 (0.0)	29,674 (1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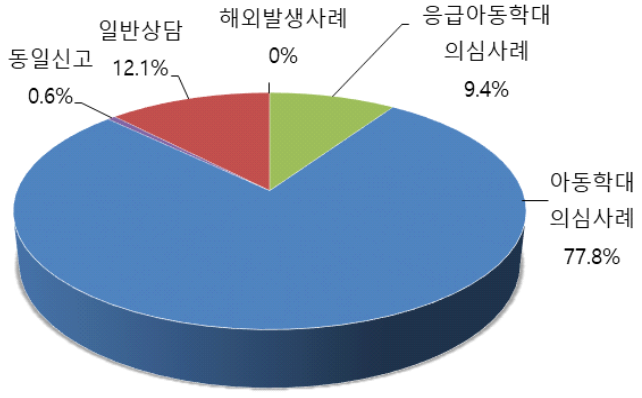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48/ 단위: %

【그림 Ⅲ-3-15】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표 Ⅲ-3-15 아동학대 사례접수 경로 (단위 : 건(%))

경찰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119	129	1366	계
	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13,991 (47.1)	14,919 (50.3)	39 (0.1)	496 (1.7%)	15,454 (52.1)	37 (0.1)	51 (0.2)	141 (0.5)	29,674 (100)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87

아동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경로를 살펴보면(<표 Ⅲ-3-15>),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전화신고가 14,919건(50.3%), 그리고 경찰을 통한 신고건수가 13,991건(47.1%)으로 나타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 및 경찰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여성긴급전화 1366이 141건(0.5%),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방신고가 496건(1.7%), 희망의 전화 129가 51건(0.2%),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넷 39건(0.1%), 응급전화 119가 37건(0.1%)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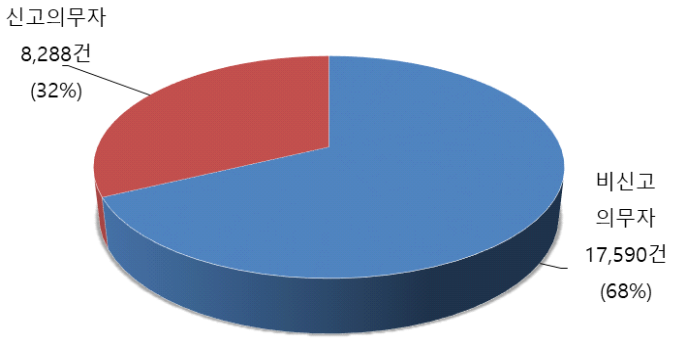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61

【그림 Ⅲ-3-16】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해서 보면([그림 Ⅲ-3-16], 전체 25,878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288건으로 32%,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17,590건으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보다 2배 이상 많은 68%였다. 이 통계에 포함된 신고의무자 중 교직원이 3,978건 신고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815건),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695건), 아동복지시설종사자(498건), 사회복지시설종사자(312건), 가정폭력상담보호소(301건),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296건), 보육교직원(286건),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223건), 의료인(216건), 유치원교직원 및 강사(114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1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소방구급대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보호센터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를 신고한 신고의무자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비신고의무자중에서는 부모(4,619건)와 사회복지관련종사자(4,088건)가 아동학대 신고를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으로 아동 본인(2,322건), 형제자매(341건), 친인척(657건), 이웃이나 친구(1,858건), 경찰(1,426건), 사회복지관련종사자(4,088건), 낯선 사람(649건),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619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익명신고자에 의한 건수도 244건이나 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아동학대는 흔히 부모를 포함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표 Ⅲ-3-16>), 전체적으

로 부모에 따른 학대가 15,048건(80.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친부모의 학대가 14,218건(7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계부모인 경우는 756건(4%), 양부모는 74건(0.4%)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전체 2,173건으로 11.6%를 나타냈는데, 그 중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교직원이 827건(4.4%), 초·중·고 교원이 576건(3.1%), 부모의 동거인이 311건(1.7%), 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 253건(1.4%), 학원·교습소 종사자 167건(0.9%) 순이었고, 이외에도 기타시설이나 베이비시터에 따른 학대가 소수 나타났다. 이웃이나 낯선 타인으로부터의 학대는 201건(1.1%)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강화를 포함한 부모와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대안양육자와 기타 지역사회 내에서의 학대와 관련해서도 교육 및 모니터링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3-1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부모				친인척					총계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소계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소계	
명	14,218	756	74	15,048	288	134	266	107	795	18,700 (100.0)
%	76.1	4.0	0.4	80.5	1.5	0.7	1.4	0.6	4.3	

구분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파악 안됨
	부모 동거인	유치원/ 보육 교직원	초중고 교원	학원/ 교습소 종사자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종사자	위탁 부모	베이비 시터	소계	이웃, 낯선 사람		
명	311	827	576	167	253	28	2	5	4	2,173	201	454	29
%	1.7	4.4	3.1	0.9	1.4	0.1	0.0	0.0	0.0	11.6	1.1	2.4	0.2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4-115. 재정리

②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아동학대 및 방임의 사례별 유형을 살펴보면(<표 III-3-17>), 전체 18,700건을 기준으로 중복학대가 8,980건으로 48%를 차지해 과반에 가까운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고, 이어 정서학대가 3,588건으로 19.2%, 방임이 2,924건으로 15.6%, 신체학대는 2,715건으로 14.5%, 성학대는 487건으로 2.6%로 나타났다. 중복학대가 거의 과반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정서학대와 방임, 신체학대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3-17 아동학대사례 유형

학대유형 / 단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계
건수	2,715	3,588	493	2,924	8,980	18,700
%	14.5	19.2	2.6	15.6	48.0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p.121-122

아동학대의 발생빈도를 보면(<표 III-3-18>), '거의 매일'이 23.3%로 학대피해아동 1/4 정도가 매우 자주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3일에 한번'인 경우는 12.7%, '일주일에 한번'은 12.1%로 나타나 일주일에 한번 이상 아동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48.1%로 거의 과반수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2주일에 한번은 5.5%, 1개월에 한번은 11.7%, 2-3개월에 한번은 8.4%, 6개월에 한번은 5.1%로 나타났다. 지난년도 통계와 비교할 때 거의 매일 학대를 받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일회성이라는 응답률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2015년: 16.1%→2016년: 16.5%), 이는 단순히 잦은 학대가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변화라기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면서 일회성의 학대 역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고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표 III-3-18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구분	거의 매일	2-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2-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일회성	계
2011	2,624 (43.4)	1,054 (17.7)	785 (13.2)	286 (4.9)	376 (5.4)	233 (3.9)	101 (1.7)	58 (0.9)	541 (8.9)	6,058 (100.0)
2012	2,614 (40.9)	1,054 (16.5)	796 (12.5)	389 (6.0)	438 (6.7)	283 (4.5)	125 (1.9)	66 (1.0)	638 (10.0)	6,403 (100.0)
2013	2,629 (38.7)	1,049 (15.4)	747 (11.0)	311 (4.6)	554 (8.2)	375 (5.5)	146 (2.1)	111 (1.6)	874 (12.9)	6,796 (100.0)
2014	3,073 (30.6)	1,371 (13.7)	1,253 (12.5)	658 (6.6)	1,002 (10.0)	705 (7.0)	366 (3.7)	236 (2.4)	1,363 (13.6)	10,027 (100.0)
2015	2,845 (24.3)	1,546 (13.2)	1,361 (11.6)	692 (5.9)	1,255 (10.7)	1,095 (9.3)	566 (4.8)	469 (4.0)	1,886 (16.1)	11,715 (100.0)
2016	4,364 (23.3)	2,384 (12.7)	2,260 (12.1)	1,027 (5.5)	2,180 (11.7)	1,564 (8.4)	956 (5.1)	880 (4.7)	3,085 (16.5)	18,700 (100.0)

* 출처: 통계청 (2013).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7). 2013~201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3년 현황 보고서의 경우 p.86, 2014년 현황 보고서에서는 p.123, 2015년 현황 보고서에서는 p.120, 2016년 현황 보고서에서는 p.174에서 발췌 · 정리

한 가지 유형의 단순학대 역시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만 중복학대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서학대의 경우 다른 유형의 학대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적인 학대를 당한 아동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피해까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도 중복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우울이나 불안, 비행, 공격성, 행복감 뿐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까지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원, 2016).

표 Ⅲ-3-19 중복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단위 : 건(%))

유형	건수(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체학대	753(11.1)	1,453(14.5)	1,884(16.1)	2,715(14.5)
정서학대	1,101(16.2)	1,582(15.8)	2,046(17.5)	3,588(19.2)
성학대	242(3.6)	308(3.1)	428(3.7)	493(2.6)
방임	1,778(26.2)	1,870(18.6)	2,010(17.2)	2,924(15.6)
중복학대	2,922 (43.0)	4,814 (48.0)	5,347(45.6)	8,980(48.0)
계	6,796 (100.0)	10,027(100.0)	11,715(100.0)	18,573(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7). 2013~201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3년 현황보고서의 경우 p.88, 2014년 현황보고서는 p.125, 2015년 현황보고서 p.122, 2016년 현황보고서 p.121-122에서 내용 발췌하여 표 재구성

최근 통계는 중복학대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에 43%였던 중복학대는 2014년에는 48%까지 증가했다가 2015년에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시 48%를 기록하였고, 무엇보다 중복학대 사례 수가 2013년 2,922건에서 2016년에는 8,980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중복학대의 심각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복학대 뿐 아니라 재학대 역시 일회성 학대와 비교할 때 피해아동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만성적 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학대 건수 역시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표 Ⅲ-3-20>), 특히 10대 청소년기의 재학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학대유형 중에서는 정서학대의 재학대 비율이 높았다.

표 Ⅲ-3-20 재학대사례: 성별, 연령별, 유형별(중복학대 미분류) 구분 (단위 : 건(%))

	구분	건수(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성	계	980(100.0)	1,027(100.0)	1,240(100.0)	1,591(100.0)
	남	303(30.9)	503(47.0)	617(49.8)	778(48.9)
	여	677(69.1)	524(51.0)	623(50.2)	813(51.1)
연령	계	980(100.0)	1,027(100.0)	1,240(100.0)	1,591(100.0)
	1세미만	10(1.0)	4(0.4)	14(1.1)	14(0.9)
	1~3세	43(4.4)	101(9.8)	102(8.2)	125(7.9)
	4~6세	138(14.1)	135(13.1)	173(14.0)	210(13.2)
	7~9세	198(20.2)	228(22.2)	277(22.3)	348(21.9)
	10~12세	236(24.1)	256(24.9)	281(22.7)	377(23.7)
	13~15세	275(28.1)	241(23.5)	279(22.5)	369(9.3)
	16~17세	80(8.2)	62(6.0)	114(9.2)	148(9.3)
유형	계	1,506(100.0)	1,556(100.0)	1,951(100)	1,591(100.0)
	신체학대	440(29.2)	515(33.1)	676(34.6)	176(11.1)
	정서학대	545(36.2)	587(37.7)	785(40.2)	318(20.0)
	성학대	81(5.4)	61(3.9)	51(2.6)	17(1.1)
	방임	440(29.2)	393(25.3)	439(22.5)	271(50.8)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7). 2013~201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3년 현황보고서의 경우 p.90-91, 2014년 현황보고서는 p.128-129, 2015년 현황보고서 p.179-180, 2016년 현황보고서 p.180-181에서 표 재구성

③ 방임 정도

아동·청소년의 방임정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 있거나, 위생적이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 사용, 또 질병발생시 방치하거나, 결식이나 학교 결석에도 부모(보호자)가 신경 쓰지 않는지 등 여러 유형의 방임을 경험한 정도를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방임과 관련된 각 조사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경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그림 Ⅲ-3-17]), 밤늦게까지 부모님 없는 집에 혼자 있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깨끗하지 않은 옷과 이부자리에 대한 경험률이 9.5%, 결식 시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 질병발생시 부모님이 내버려 둔 적이 있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학교 결석 시 부모님(보호자)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1.1%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응답대상 아동·청소년들이 연 1회 이상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60.8%였는데(<표 Ⅲ-3-21>), 성별로는 남학생 60.7%, 여학생 60.9%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절반 이상인 52.5%로 나타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64.8%, 63.7%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연 1회 이상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 있었던 경험률이 68%로, 60.6%의 양부모가정과 50.7%의 조손가정 응답률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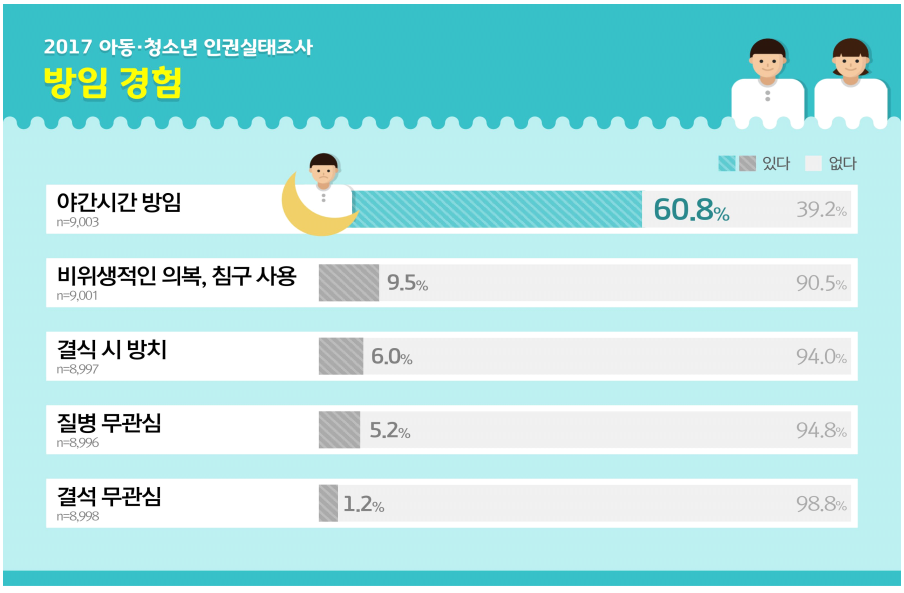

【그림 Ⅲ-3-17】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방임유형별 비율

표 Ⅲ-3-21 방임_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연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39.2	34.7	11.3	8.2	6.6	60.8	100.0(9,003)	–
성별	남자	39.3	33.8	12.0	8.3	6.6	60.7	100.0(4,683)	6.898
	여자	39.1	35.8	10.6	8.0	6.5	60.9	100.0(4,321)	
학교급	초등학교	47.5	30.5	8.1	7.2	6.7	52.5	100.0(2,599)	126.651***
	중학교	35.1	36.2	12.6	9.1	6.9	64.8	100.0(2,907)	
	고등학교	36.4	36.7	12.7	8.1	6.2	63.7	100.0(3,49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39.5	35.6	11.4	7.8	5.8	60.6	100.0(8,147)	174.254***
	한부모가정	31.9	27.1	11.3	12.7	16.9	68.0	100.0(654)	
	조손가정	49.3	26.9	6.8	7.4	9.6	50.7	100.0(86)	
	기타	55.3	24.1	7.4	11.0	2.3	44.8	100.0(109)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연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42.8	32.7	11.1	8.1	5.3	57.2	100.0(3,034)	91.455***
	중	39.3	36.7	10.1	8.0	5.9	60.7	100.0(3,855)	
	하	33.9	34.1	13.9	8.5	9.7	66.2	100.0(2,111)	
경제적 수준	상	41.9	34.2	10.9	7.7	5.3	58.1	100.0(4,904)	107.835***
	중	37.7	35.9	11.4	8.3	6.8	62.4	100.0(3,149)	
	하	30.1	33.5	13.5	10.4	12.5	69.9	100.0(946)	

***α<.001

연 1회 이상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표 Ⅲ-3-21>), 학업성적이 가장 낮다고 인식한 집단이 66.2%로, 학업성적이 높다는 집단(57.2%)과 중간이라는 집단(60.7%)보다 높았고, 경제적 수준 역시 가장 낮게 인식한 집단이 약 70%로 응답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58.1%, 중간인 집단의 62.4%보다 훨씬 높은 경험률을 보이면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Ⅲ-3-18]은 연 1회 이상 밤늦게까지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률의 최근 6년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2014년에 연 1회 이상 경험 비율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후 2017년 조사에서는 60.8%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5~6% 정도 감소한 것에 비해, 초등학생의 경우 전년대비 1%정도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 있었던 경험률이 미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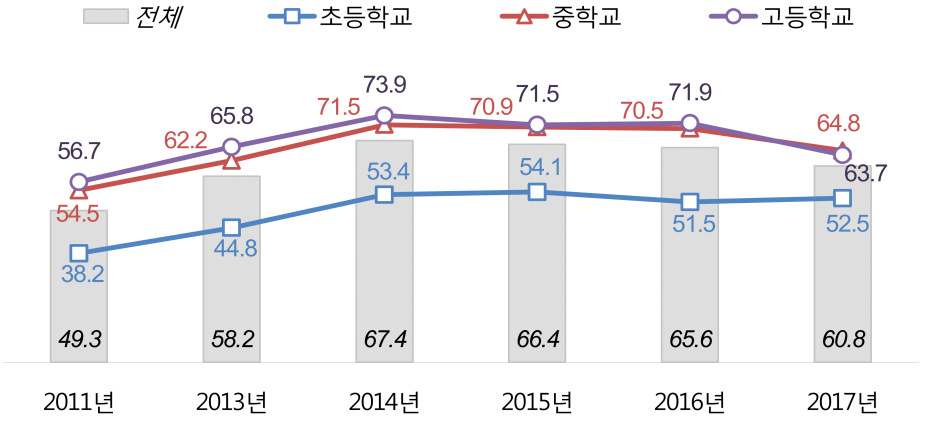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18】 방임_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연도별 추이)

표 Ⅲ-3-22 방임_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연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0.5	6.2	1.7	0.9	0.7	9.5	100.0(9,001)	–
성별	남자	89.4	7.1	1.8	0.9	0.7	10.5	100.0(4,681)	17.020**
	여자	91.8	5.2	1.5	0.9	0.6	8.2	100.0(4,320)	
학교급	초등학교	94.1	4.5	0.7	0.2	0.4	5.8	100.0(2,598)	70.816***
	중학교	88.8	7.4	1.8	1.1	0.9	11.2	100.0(2,906)	
	고등학교	89.3	6.6	2.3	1.3	0.6	10.8	100.0(3,49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0.9	6.1	1.5	0.8	0.6	9.0	100.0(8,145)	20.780
	한부모가정	86.7	8.2	2.5	1.6	1.0	13.3	100.0(654)	
	조손가정	89.7	4.6	3.8	0.8	1.1	10.3	100.0(86)	
	기타	87.3	8.0	3.3	1.0	0.3	12.6	100.0(109)	
학업 성적	상	91.6	5.6	1.3	0.9	0.6	8.4	100.0(3,034)	36.699***
	중	91.6	5.6	1.5	0.7	0.6	8.4	100.0(3,854)	
	하	87.3	8.1	2.4	1.2	1.0	12.7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91.6	5.8	1.3	0.7	0.6	8.4	100.0(4,903)	80.153***
	중	90.9	6.1	1.7	0.8	0.5	9.1	100.0(3,148)	
	하	83.6	9.0	3.4	2.2	1.8	16.4	100.0(945)	

**$p<.01$, ***$p<.001$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 Ⅲ-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비율은 10.5%, 여학생은 8.2%로 나타났다. 연 1회 이상 경험에 대해 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8%, 중학생 11.2%, 고등학생 10.8%로 나타나 청소년 연령대의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이 가장 낮고(중·상: 8.4%, 하: 12.7%), 또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다고 응답한 집단(상: 8.4%, 중: 9.1%, 하: 16.4%)에서 연 1회 이상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침구에서 잔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유형의 방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3-19]), 2017년도 경험률(9.5%)이 2011년의 5.5%, 2013년의 8.2%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2014년의 16.9%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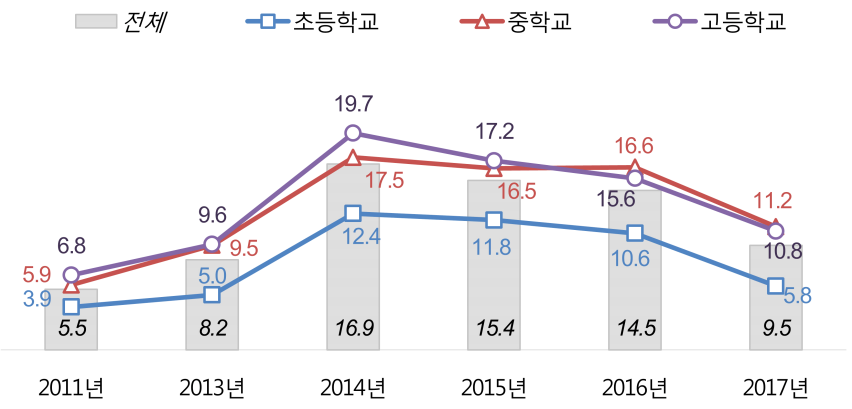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19】 방임_깨끗하지 않은 옷, 침구 사용 경험(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이 아플 때 부모님(보호자)이 내버려 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5.2%만이 연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은 높지 않았다(<표 Ⅲ-3-23>).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4.7%, 여학생인 경우는 5.8%로 여자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4.3%, 중·고등학생이 각각 5.4%, 5.8%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 가정에서의 연 1회 이상 경험률이 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은 모두 5.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가장 낮고(상: 4.7%, 중: 4.5%, 하: 7.5%), 또 경제적 수준 역시 가장 낮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상: 4%, 중: 5.3%, 하: 11.7%)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이러한 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질병 발병 시 방임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유병 시 적절한 치료 및 대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는 질문에 대해 연 1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Ⅲ-3-20]과 같다. 전체적인 응답률 기준으로 2011년에 8.9%의 비율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은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보이지 않았다.

표 Ⅲ-3-23 방임_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연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4.8	3.6	0.9	0.4	0.3	5.2	100.0(8,996)	–
성별	남자	95.3	3.0	1.1	0.3	0.3	4.7	100.0(4,676)	18.675***
	여자	94.2	4.3	0.7	0.5	0.3	5.8	100.0(4,320)	
학교급	초등학교	95.7	3.1	0.9	0.2	0.1	4.3	100.0(2,595)	12.646
	중학교	94.6	3.8	0.9	0.5	0.2	5.4	100.0(2,904)	
	고등학교	94.2	3.9	0.9	0.5	0.5	5.8	100.0(3,49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0	3.6	0.9	0.3	0.3	5.1	100.0(8,141)	–
	한부모가정	92.1	5.1	1.2	1.1	0.5	7.9	100.0(654)	
	조손가정	94.9	2.0	2.3	0.8	0.0	5.1	100.0(86)	
	기타	97.9	0.8	1.3	0.0	0.0	2.1	100.0(108)	
학업 성적	상	95.4	3.3	0.9	0.3	0.2	4.7	100.0(3,033)	31.380***
	중	95.5	3.1	0.8	0.4	0.2	4.5	100.0(3,850)	
	하	92.5	5.2	1.2	0.6	0.5	7.5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96.1	2.8	0.7	0.3	0.2	4.0	100.0(4,901)	106.420***
	중	94.7	3.9	0.9	0.3	0.2	5.3	100.0(3,145)	
	하	88.4	7.3	2.3	1.0	1.1	11.7	100.0(94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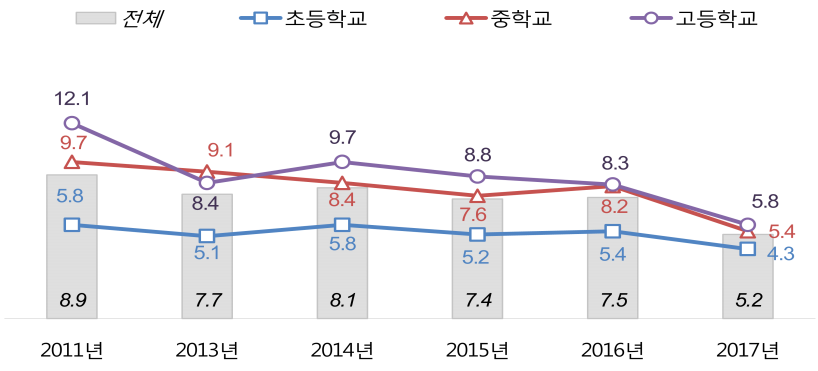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20】 방임_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연도별 추이)

응답자의 결식에 대해 부모님(보호자)이 신경 쓰지 않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6%정도만이 연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Ⅲ-3-24>).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4.2%의 연 1회 경험률을 보인 것에 비해, 중학생은 6.3%, 고등학생은 7.1%로 중·고등학생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보면, 한부모가정 응답율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이 7.2%로 나타나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의 응답율이 양부모가정의 5.8%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5%, 중: 5.5%, 하: 8.6%),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4.5%, 중: 6.3%, 하: 12.6%) 결식에 대한 가정에서의 무관심 비율이 높았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의 결식 시 무관심에 대한 연 1회 이상 경험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Ⅲ-3-24 방임_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연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4.0	3.0	1.4	0.7	0.9	6.0	100.0(8,997)	–
성별	남자	94.2	3.0	1.5	0.6	0.7	5.8	100.0(4,678)	5.361
	여자	93.8	3.0	1.3	0.8	1.1	6.2	100.0(4,320)	
학교급	초등학교	95.8	2.8	0.6	0.4	0.4	4.2	100.0(2,595)	45.031***
	중학교	93.7	3.1	1.8	0.6	0.8	6.3	100.0(2,906)	
	고등학교	92.9	3.1	1.5	1.1	1.4	7.1	100.0(3,49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4.2	3.1	1.3	0.6	0.8	5.8	100.0(8,142)	–
	한부모가정	91.6	2.7	2.4	1.5	1.8	8.4	100.0(653)	
	조손가정	92.8	1.1	3.6	0.8	1.7	7.2	100.0(86)	
	기타	94.2	0.8	1.3	3.7	0.0	5.8	100.0(109)	
학업성적	상	95.1	2.8	1.0	0.5	0.7	5.0	100.0(3,033)	49.654***
	중	94.6	2.7	1.2	0.9	0.7	5.5	100.0(3,851)	
	하	91.4	3.9	2.3	0.7	1.7	8.6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95.4	2.6	0.9	0.4	0.6	4.5	100.0(4,900)	122.187***
	중	93.7	3.1	1.7	0.7	0.8	6.3	100.0(3,148)	
	하	87.4	4.8	2.7	2.4	2.7	12.6	100.0(945)	

***α<.001

결식 시 부모(보호자)의 무관심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3-21]), 전체적으로 2013년에 13.7%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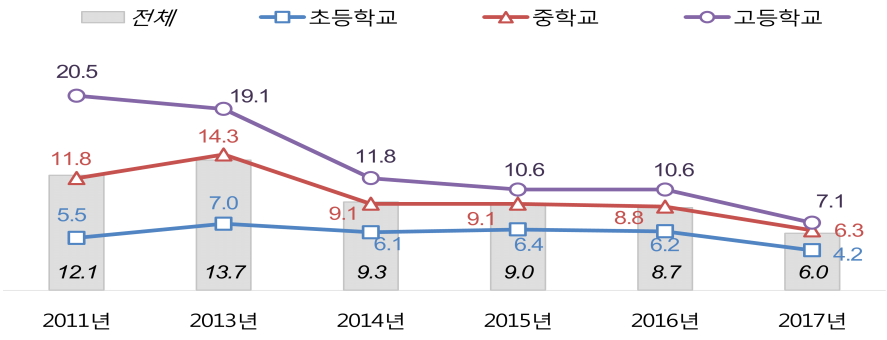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21】 방임_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학교 결석 시 가정에서의 무관심에 대한 연 1회 이상 경험율은 전체적으로 1.2%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Ⅲ-3-25>). 각 배경변인별 차이도 크지 않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유형별 구분에서는 양부모가정의 경우 1%, 한부모가정 1.7%, 기타 유형의 가정 3.6%인데 비해 조손가정의 경우 5.5%의 연 1회 이상 경험률을 보여 조손가정에서의 교육방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 및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Ⅲ-3-25 방임_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연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8.8	0.7	0.3	0.1	0.1	1.2	100.0(8,998)	–
성별	남자	98.4	0.9	0.4	0.1	0.2	1.6	100.0(4,679)	10.421*
	여자	99.2	0.5	0.2	0.1	0.1	0.9	100.0(4,319)	
학교급	초등학교	98.8	0.9	0.1	0.1	0.2	1.3	100.0(2,596)	9.774
	중학교	98.9	0.5	0.4	0.1	0.1	1.1	100.0(2,906)	
	고등학교	98.7	0.7	0.3	0.2	0.1	1.3	100.0(3,49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9	0.6	0.2	0.1	0.1	1.0	100.0(8,142)	–
	한부모가정	98.2	0.9	0.4	0.3	0.1	1.7	100.0(654)	
	조손가정	94.5	1.1	3.6	0.8	0.0	5.5	100.0(86)	
	기타	96.3	1.3	2.3	0.0	0.0	3.6	100.0(109)	
학업 성적	상	99.1	0.6	0.1	0.1	0.1	0.9	100.0(3,033)	15.478
	중	98.7	0.8	0.2	0.1	0.1	1.2	100.0(3,852)	
	하	98.5	0.6	0.6	0.1	0.1	1.4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99.0	0.6	0.1	0.2	0.1	1.0	100.0(4,901)	16.785*
	중	98.4	0.8	0.5	0.1	0.1	1.5	100.0(3,147)	
	하	99.1	0.6	0.1	0.2	0.1	1.0	100.0(945)	

*p<.05

결석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무관심과 관련해서 연도별 비교결과([그림 Ⅲ-3-22]),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011년 2%에서 2017년 1.2%로 미미한 수준의 감소를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1년 3.9%에서 2017년 1.3%로 다른 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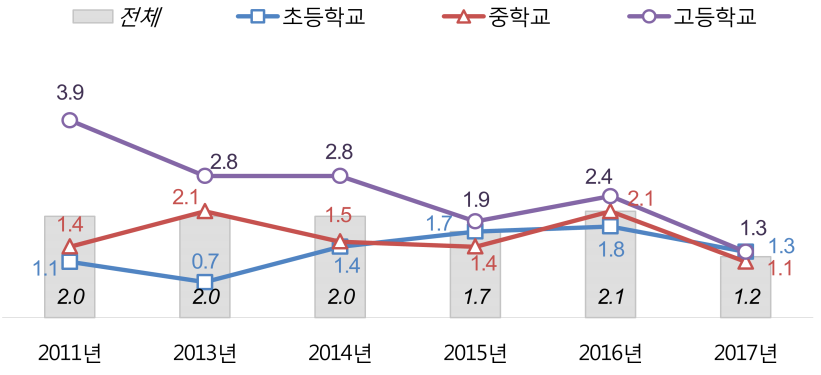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3-22】 방임_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전체적인 방임경험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정리해 보면, 전체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가정 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서, 또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방임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거나 식사를 못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한부모가정의 경우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경험,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 사용, 질병 발병 시 방치, 결식이나 학교 결석 시 부모의 무관심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부모가정 다음으로는 조손가정에서 부정적인 통계치를 보였는데 특히 학교결석 시 무관심에 대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방임 경험 항목들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특히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보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침구 사용을 연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5% 내외의 감소폭을 보였으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다'는 항목에서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났다.

(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수준

①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보호기관 수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상승하였는데(<표 Ⅲ-3-26>), 특히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의 6,796건에서 2014년의 10,027건, 그리고 2015년의 11,715건에서 2016년의 18,700건으로 두 차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전국에 걸쳐 그 수가 증가하여 2006년에는 42개소였으나 2017년 1월 기준으로 59개소에 달했다.

표 Ⅲ-3-26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6년~2016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	건수(건)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700
아동보호 전문기관수	기관수(개소)	42	43	43	44	44	44	46	50	51	56	59*
	증가수(개소)	4	1	–	1	–	–	2	4	1	5	4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40.
* 주: 2015년에 1개 기관이 폐소됨.

각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살펴보면(<표 Ⅲ-3-27>), 경기지역이 12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지역 8개소, 부산과 강원, 경북이 4개소였는데, 특히 2015년과 비교해서 부산, 대구, 광주 경기는 1개소씩 증가하여 전년대비 4개소가 증가한 59개소로 나타났다(1개소는 2015년에 폐소됨). 이러한 지역규모를 고려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배치는 학대피해아동과 관련한 현장조사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있어 더욱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 지역별 전문기관의 적절한 배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Ⅲ-3-27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6년	8	4	3	3	2	1	1	12	4	3	3	3	3	4	3	2	59
2015년	8	3	2	4	1	1	1	11	4	3	3	3	3	4	3	2	56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265-26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7.01.01. 기준).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역할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현장조사,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홍보까지 그 역할이 매우 다양하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그러나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 및 사례건수와 비교할 때 상담원의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소진,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는 바(김미정, 최말옥, 2012; 현지희, 2017),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2014년 1인당 업무량을 보면, 2013년과 비교해서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Ⅲ-3-28>)[19].

표 Ⅲ-3-2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업무량 (단위 : 건(%))

업무량		2013년		2014년	
		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상담지원 사업	신고접수	13,071	34.9	17,773	48.8
	현장조사	21,319	56.9	61,242	168.2
	서비스제공	449,172	1,197.8	488,326	1,341.6
교육·홍보·협력사업	교육사업	17,425	46.5	13,831	38.0
	홍보사업	1,794,960	4,786.6	11,254,082	30,917.8
	협력사업	1,441	3.8	1,288	3.5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70.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238.

이렇게 급증하는 업무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연구를 수행하면서 적정 인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상담원은 1,181명, 임상심리치료인력은 1174.2명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이 인원은 2015년 12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상담원 637명, 상근임상심리치료인력 63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 규모(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로, 증가하고 있는 학대사례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기관별 적정 전문 인력의 배치가 시급하다.

19) 상담원 1인당 업무량에 대한 내용이 2015년 이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는 미포함됨에 따라 그중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③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와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보면(<표 Ⅲ-3-29>), 상담서비스로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 및 주변인 상담 등이, 그리고 의료서비스로 검진 및 검사, 입원 및 통원치료, 심리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표 Ⅲ-3-29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건)

구분	서비스 건수				서비스 내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피해아동	311,599	335,424	492,415	640,378	○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 상담 ○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 ○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심리치료 ○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공적자원연결 ○ 일시보호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를 통한 피해아동 일시보호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
학대행위자	63,863	73,817	131,836	193,633	
부모 또는 가족	58,869	79,160	142,535	194,931	
계	434,331	488,401	766,786	1,028,942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7). 2013~201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3년 현황 보고서에서는 p.109, 2014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65, 2015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57, 마지막으로 2016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57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뿐 아니라 기타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그리고 정부지원과의 연결까지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및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체 서비스 건수는 2013년에 434,331건, 2014년에는 488,401건, 2015년에는 766,786건, 2016년에는 1,028,942건으로 학대사례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포함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표 Ⅲ-3-30>, 2016년 기준으로 원가정 보호 사례 13,573건(72.7%), 분리 보호 3,730건(19.9%), 가정 복귀 1,347건(7.2%), 사망이 50건(0.3%)로 나타났다. 각 조치결과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가 전년대비 8.7%p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망의 경우 2015년도의 26명(0.1%)에 비해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 아동학대 피해의 치명적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와 가정 복귀는 각각 5.5%p, 3.3%p 감소하였다.

표 III-3-30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단위 : 명(%))

연도	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사망	타기관 의뢰	가정복귀	계
2011	3,956(65.3)	1,585(26.2)	13(0.2)	91(1.5)	413(6.8)	6,058(100.0)
2012	4,079(63.7)	1,937(30.3)	10(0.2)	0	377(5.9)	6,403(100.0)
2013	4,376(64.4)	1,944(28.6)	22(0.3)	0	454(6.7)	6,796(100.0)
2014	9,969(64.5)	4,256(27.5)	25(0.2)	–	1,208(7.8)	15,458(100.0)
2015	11,305(64.0)	4,485(25.4)	26(0.1)	–	1,846(10.5)	17,662(100.0)
2016	13,573(72.7)	3,730(19.9)	50(0.3)	–	1,347(7.2)	18,700(100.0)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7). 2011~201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1년도 현황 보고서에서는 p.136, 2012년도 현황보고서에서는 p.110. 2013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08, 2014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44, 2015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39, 마지막으로 2016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38의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표 III-3-31>), 지속적인 관찰이 11,733건으로 62.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고소/고발/사건처리로 6,018건(32.2%)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과의 분리는 560건(3%), 행방불명이나 수감, 사망 등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389(2.1%)건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표 III-3-31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단위 : 건(%))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총계
11,733(62.7%)	560(3.0)	6,018(32.2)	389(2.1)	18,700(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42

3) 소결

2015년부터 유엔의 아동인권위원회는 인권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을 대분류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이전에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지표에 속했던 중분류 지표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가 새롭게 지정된 대분류 지표 '폭력 및 학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는 유엔의 아동인권위원회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보다 깊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각과 대책 마련에 대하여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엔의 시각과는 별도로 대한민국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폭력은 사회문제로 다루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아래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에 모든 관심과 대책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2017년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인권적 측면에서 오히려 가정에서의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 경험과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인권 침해가 청소년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피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폭력의 피해경험이나 가해경험이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가정에서부터 이른 연령에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면서 성장한 학습 효과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위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2017년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전체 응답자 중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 심한 욕설이나 모욕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응답 학생은 가정에서 31.8%,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20.6%, 친구나 선후배로부터는 15.2%로 나타났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관련법의 개정을 권고하였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체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8,999명 중 26.3%에 해당하여 4명 중 1명이 가정에서 체벌로 인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유형을 보면 초등학생에 대한 가정에서의 체벌이 가장 많아 3명 중 1명이 넘는 35.6%로 나타났다.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의 체벌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2011년~2017년)를 보면 2011년에 가장 높아 39.3%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7년에는 26.2%로 낮아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체벌도 같은 기간인 2011년에는 38.4%였던 것이 2017년에는 15.6%로 많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사설학원에서도 체벌이 있어 2017년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 청소년의 8.0%가 학원선생님으로부터 체벌로 인권침해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인들로부터 폭력을 통한 인권침해의 피해 경험에 비해 사회적 문제로 4대악으로까지 문제가 되었던 학생 간의 학교폭력의 실태는 오히려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이 자신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학생 9,003명 중 6.9%였으며, 정신적 폭력에 해당되는 따돌림과 같은 피해 경험은 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성적 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3.9%, 사이버 공간에서 3.2%의 피해로 나타났다. 최근 사이버 공간도 학교현장을 피해 폭력이 행사되는 공간으로 주의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상대방 학생에 대한 사생활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유포하는 폭력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전체 응답청소년 중 5.8%가 피해 경험을 보고하였다.

‘폭력 및 학대’의 대분류 지표영역 중 두 번째 중분류는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로 이에 해당되는 소분류는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와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이다.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의 첫 번째 세부지표항목은 아동학대 사례건수로 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사례접수 경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2016년 동안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수는 총 29,674건으로 2014년도 17,752건, 2015년도 19,21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아동학대가 만연되었다기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특히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신고건수가 급증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설치되면서 신고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사례의 접수경로는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52.1%) 및 경찰 신고(47.1%)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32%였으나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6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중 80.5%는 친부모 및 계부모로부터, 4.3%는 친인척으로부터, 11.6%는 아동보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2006년 42개소 → 2016년 59개소), 이는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역별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업무과중과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더욱 현실적인 인원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학대(19.2%), 방임(15.6%), 신체학대(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와 재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그 심각성을 더욱 드러냈으며, 피해아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면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방임 정도를 살펴본 결과(연 1회 이상 경험 기준), 밤늦게까지 부모님 없이 혼자 집에 있었던 경험률은 60.8%,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 경험은 9.5%, 질병발생 시 부모님이 방치한 경험은 5.2%, 결식을 해도 부모님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6%로 나타났으며, 학교 결석 시 가정에서 무관심했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한부모가정에서, 또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방임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특히 한부모가정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취약한 청소년의 야간시간 방임, 의복 및 침구의 위생문제, 질병발병 시 방치, 결식 및 결석 시 무관심(결석의 경우는 특히 조손가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방임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대피해 아동 보호건수는 2016년 18,700명으로 2015년의 11,71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수는 전년대비 3개소가 증가한 59개소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그리고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각 지역 및 기관을 고려한 적정 전문 인력의 배치가 시급하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 원가정보호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분리보호 및 가정복귀는 감소하였으며 학대행위자의 경우 지속관찰은 약 63%, 고소·고발·사건처리는 3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 부모와의 관계

① 부모와의 대화시간

아동·청소년의 일차적인 성장환경으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모와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부모와의 대화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바,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의 부모와의 대화시간 조사결과를 살펴보았다. 만9~24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주중 아버지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 어머니의 경우는 2.6%였다. 또 주중 1시간 이상 아버지와 대화를 한다는 응답은 31.8%였고, 어머니의 경우는 53.1%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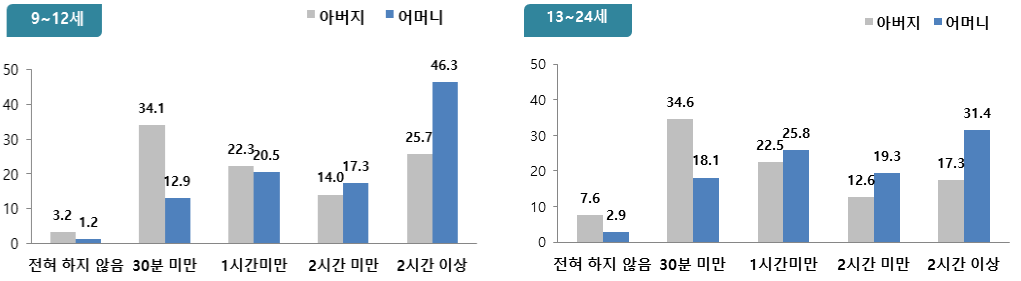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68. 표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 단위: %

【그림 Ⅲ-4-1】 부모님과의 주중 대화시간(연령별 구분)

조사결과를 초기 청소년기인 만 9~12세와 중·후기 청소년기인 만 13~24세로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Ⅲ-4-1]과 같다. 9~12세 초기 청소년의 경우 주중에 아버지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2%였으나, 13~24세 청소년의 경우 7.6%로 나타나 중·후기청소년에게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9~12세 집단에서는 주중에 1시간 이상 아버지와 대화한다는 비율이 39.7%이나, 13~24세의 경우는 29.9%에 불과했다.

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현재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14년에 수행된 조사결과이다. 따라서 이전년도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와는 가능한 초점을 달리하여 분석, 기술하고자 하였다.

상대적으로 대화를 더 많이 하는 대상인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주중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응답은 9~12세의 경우는 63.6%, 13~24세는 50.7%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보호, 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①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동보육 요구가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보육시설 설치가 확대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출산율 감소 등의 이유로 그 수가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양적인 확대가 강조되었다면 향후에는 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강조 뿐 아니라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보육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 실태파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설립주체별 설치 및 운영현황,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개소 당 교직원 수와 아동수의 비율 등을 살펴봄으로써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보육시설 설립주체별 설치 현황

아동보육시설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운영 시설과 각종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운영 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 보육시설, 보호자들이 결성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모협동 운영시설, 그리고 직장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민간 시설로 분류된다(김경준 외, 2014: 363). 보건복지부(2016b)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은 41,084개소로 2013년 43,770개소로 최고치에 달한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국·공립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859개소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역시 전년도 785개소에서 948개소로 전년대비 8.3%p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운영주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2016년 기준 20,598개소로 전년 대비 9.3%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외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운영시설, 그리고 민간운영시설역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 수 역시 2013년 1,486,980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1,598명이 감소한 1,451,215명으로 나타났다(<표 Ⅲ-4-1>). 국공립 운영 시설과 직장운영 시설의 증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전년대비

약 만여 명이 증가한 175,929명이었고, 직장어린이집 역시 2015년에 비해 7,537명이 증가한 52,302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외에 사회복지법인, 각종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민간운영 어린이집의 이용 아동 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Ⅲ-4-1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04년-2016년) (단위 : 개소)

구분·연도 \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 (단위: 개소)	2004	1,349	1,537	966	12,225	10,583	미분류	243	26,903
	2005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28,367
	2006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29,233
	2007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30,856
	2008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33,499
	2009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35,550
	2010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38,021
	2011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39,842
	2012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42,527
	2013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43,770
	2014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43,742
	2015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42,517
	2016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41,084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단위: 명)	2004	107,335	135,531	48,414	507,398	119,787	미분류	11,787	930,252
	2005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989,390
	2006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40,361
	2007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99,933
	2008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135,502
	200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175,049
	20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279,910
	2011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348,729
	2012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487,361
	2013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486,980
	2014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1,496,671
	2015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2016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 출처: 보건복지부(2015a). 2015 보육통계. pp.2-3.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pp.2-3.

나. 어린이집 이용률

어린이집 이용률은 어린이집의 이용정원과 현원 간의 차이를 통해 파악되는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표 Ⅲ-4-2>), 2013년 이용률이 83.4%였으나 2015년에는 81.1%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82.1%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운영주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률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2016년 기준으로 국·공립시설 89.1%,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 73.9%, 각종 법인 및 단체 운영시설 77.5%, 민간운영시설 80.4%, 가정 운영시설 87.6%, 부모협동 운영시설 83.9%, 직장 운영시설 75.1%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법인과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전년 대비 국공립 시설과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각종 법인과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률은 2013년에 비해 4~5%p의 감소율을 보였다.

표 Ⅲ-4-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4년-2016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13년	정원	170,050	139,669	62,820	937,632	423,533	3,972	44,783	1,782,459
	현원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486,980
	이용률	90.8	77.9	82.3	82.1	86.0	81.2	77.0	83.4
2014년	정원	179,939	137,017	61,483	946,519	419,352	4,682	51,667	1,800,659
	현원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1,496,671
	이용률	88.5	76.3	80.0	81.9	87.1	80.6	76.0	83.1
2015년	정원	188,661	135,741	60,509	942,103	399,649	4,913	59,245	1,790,821
	현원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이용률	87.9	73.5	77.4	79.4	86.1	84.0	75.6	81.1
2016년	정원	197,365	134,189	58,511	927,517	374,907	5,052	69,683	1,767,224
	현원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이용률	89.1	73.9	77.5	80.4	87.6	83.9	75.1	82.1

* 출처: 보건복지부(2013a). 2013 보육통계. p.15,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통계. p.3, 5, 보건복지부(2015a). 2015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p.5. 등의 표 재구성

다.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지역유형에 따른 보육시설 개소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역유형별 분포에 따른 보육시설 접근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6년 기준 전체 보육시설 41,084개소 중 대도시 소재 시설은 15,177개소로 36.9%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소도시는 17,859개소로 43.5%,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은 19.6%인 8,048개소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보육시설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표 Ⅲ-4-3>), 소재하는 지역유형별 분포율을 보면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2013년 36.2%에서 2017년 36.9%로 큰 차이가 없으나 중소도시 소재 보육시설은

2013년 44.9%에서 2016년 43.5%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시설은 2013년 18.9%에서 2016년 19.6%의 비율을 보여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보다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개소수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3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2014년-2016년) (단위 : 개소)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3년	전국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43,770
	대도시	1,120	383	302	5,746	7,927	56	318	15,852
	중소도시	643	286	204	5,785	12,481	52	198	19,649
	농어촌	569	770	362	3,220	3,224	21	103	8,269
2014년	전국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43,742
	대도시	1,226	378	287	5,720	7,985	64	339	15,999
	중소도시	676	288	207	5,858	12,155	61	233	19,478
	농어촌	587	754	358	3,244	3,178	24	120	8,265
2015년	전국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42,517
	대도시	1,321	377	270	5,619	7,671	66	371	15,695
	중소도시	702	283	201	5,740	11,350	62	268	18,606
	농어촌	606	754	363	3,267	3,053	27	146	8,216
2016년	전국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41,084
	대도시	1,494	373	256	5,413	7,128	70	443	15,177
	중소도시	740	283	192	5,675	10,585	60	324	17,859
	농어촌	625	746	356	3,228	2,885	27	181	8,048

* 출처: 보건복지부(2013a). 2013 보육통계. p.62,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통계. p.81, 보건복지부(2015a). 2015 보육통계. p.82,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p.84.

특히 <표 Ⅲ-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규모에 따른 어린이집 개소수를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2013년 기준 1,120개소였던 국공립시설은 2016년 1,494개소로 지난 4년간 374개소가 증가하였고, 중소도시에서는 2013년에 643개소였던 국공립시설이 2016년에는 740개로 약 백 개소가 증가하였다. 또한 농어촌지역에서도 계속 증가하여 2013년 569개소에서 2014년 587개소, 2015년 606개소, 2016년 625개소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대도시에서의 국공립시설 증가폭이 컸다.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직장 어린이집 역시 2013년 기준 대도시에서 318개소였으나 2016년에는 443개소로 확대되었고, 중소도시의 경우 2013년 198개소였던 직장 어린이집이 2016년에는 324개소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농어촌지역에서의 직장 어린이집 역시 2013년 103개소에서 2016년 기준 181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가정 어린이집을 보면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에 위치한 가정 어린이집의 감소 폭이 더 컸고(2013년 12,481개소 52.8% → 2016년 10,585개소 51.4%),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는 대도시에서의 감소 폭이 더 컸다(2013년 5,746개소 → 2016년 5,413개소).

라. 어린이집 1개소 및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 및 지역규모에 따른 접근성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개소 당 아동 수 및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를 살펴보았다(<표 Ⅲ-4-4>). 2016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1개소당 아동 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35.3명으로 나타났는데, 국공립 시설의 경우는 1개소 당 61.5명으로 2013년에 66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 법인과 기타 법인단체 및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전년대비 어린이집 1개당 아동수가 각각 51.1명에서 52.1명, 15.6명에서 16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표 Ⅲ-4-4 어린이집 1개소 및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2014년-2016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어린이집 1개당 아동 수	2013년	66.0	76.0	60.0	52.0	15.0	25.0	56.0	34.0
	2014년	64.0	73.6	57.7	52.3	15.7	25.3	56.7	34.2
	2015년	63.0	70.5	56.2	51.1	15.6	26.6	57.0	34.2
	2016년[21]	61.5	70.7	56.4	52.1	16.0	27.0	55.2	35.3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2013년	5.8	5.8	5.9	5.7	3.5	4.4	4.4	4.9
	2014년	5.5	5.5	5.6	5.5	3.5	4.4	4.2	4.8
	2015년	5.4	5.3	5.4	5.1	3.3	4.3	4.1	4.5
	2016년	5.3	5.2	5.4	5.1	3.2	4.3	4.0	4.5

* 출처: 보건복지부(2013a). 2013 보육통계. p.4,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5a). 2015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p.5.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2013년의 4.9명에서 2016년 기준 4.5명으로 감소하면서 보육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아동수가 약 0.5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표 Ⅲ-4-5>). 또한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6.5명에서 2016년 4.5명으로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2명이

21) 2013~2016년 모두 현원기준으로 여기에는 2015년까지는 종일, 야간, 24시간, 방과후가 포함되며, 2016년은 종일, 맞춤, 야간, 24시간, 방과후가 포함되었다.

줄어 보육교사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다(<표 Ⅲ-4-5>). 운영주체별로 보면, 2016년의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국·공립시설 5.3명, 사회복지법인 시설 5.2명, 법인 및 단체 운영시설 5.4명, 민간 운영시설 5.1명, 가정 운영시설 3.2명, 부모협동 시설 4.3명,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4명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2013년에 비해 보육교사 1인당 담당아동 수가 2016년에는 0.4~0.6명 정도 감소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4-5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2007년-2016년)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육아동 수	1,099,933	1,135,502	1,175,049	1,279,910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1,452,813	1,451,215
보육교직원 수*	169,585	175,729	206,912	229,084	248,635	284,237	301,719	311,817	321,067	321,766
교사 1인당 아동 수	6.5	6.5	5.7	5.6	5.4	5.2	4.9	4.8	4.5	4.5

* 출처: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통계. pp.4-5. 재구성.
보건복지부(2015a). 2015 보육통계. pp.4-5. 표 재구성.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pp.3-5. 표 재구성.
* 주: 보육교직원수는 정상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임용, 출산휴가 상태인 보육교직원 수

②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한부모가정 및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인해 요구되는 방과후 돌봄 뿐 아니라 방과후 시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로는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살펴볼 수 있다. 각 사업별 운영주체가 방과후학교는 교육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방과후 시간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교사 및 시설종사자들의 지도와 보호 하에 방과 후 시간을 적절히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방과후 시간에 방치될 위험이 높거나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경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는 더욱 필요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이용수준과 서비스 만족도를 통해 그 현황과 서비스 적절성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 방과후학교

전체적인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6년에 55.8%로 나타났는데, 2010년도 55.6%의 참여율에서 2013년에 60.2%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표 Ⅲ-4-6>). 학교급별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도에 45%였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4년 60.9%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58.9%로 감소하였다. 중학교는 2013년까지 50%내외의 참여율을 나타냈으나 2014년 45.3%, 2015년 40.8%, 2016년 35%로 비교적 큰 감소 폭을 보여 상당부분 방과후학교 대신 사교육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학교급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도에는 79%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67.2%, 2016년 68.3%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표 Ⅲ-4-6 방과후학교[1] 참여 실태(2010년-2016년) (단위 : %, 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2]		계	
	참여율[3]	비용[4]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2010	45.0	1.3	50.0	0.7	79.0	2.3	55.6	1.4
2011	50.4	1.6	48.3	0.6	74.7	2.2	56.6	1.5
2012	52.6	1.5	49.4	0.4	73.0	1.8	57.6	1.3
2013	58.2	2.0	50.5	0.4	72.3	2.0	60.2	1.5
2014	60.9	2.3	45.3	0.4	70.1	1.9	59.3	1.7
2015	60.2	2.2	40.8	0.4	67.2	1.7	57.2	1.6
2016	58.9	2.1	35.0	0.3	68.3	1.8	55.8	1.6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7.4.17). 2017 청소년 통계. p.23.
* 원자료: 통계청(2010~2016),「초·중·고 사교육비조사」각년도
* 주: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포함
2) 참여율은 무상과 유상 합친 비율, 3)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표 Ⅲ-4-7>), 교과 비율은 2010년 68.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기준 52.7%로 나타났으며,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2010년에 31.5%였으나 2016년에는 47.3%로 증가하여 현재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비율로 교과와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의 교과의 비율은 26.6%, 특기적성은 73.4%이나 중·고등학교로 교급이 올라가면서 교과의 비중이 증가하여 중학교에서의 교과 비율은 58.5%, 특기적성은 41.5%를 나타냈고,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비율은 87.1%, 특기적성

은 12.9%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급에 따라 제공되는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과의 비중이 커지면서 학습에 더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2016년)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초	중	고	계						
교과	수(개)	59,257	43,689	135,970	238,916	255,079	294,396	323,888	367,025	355,158	338,891
	비율(%)	26.6	58.5	87.1	52.7	53.6	54.7	56.8	60.9	66.9	68.5
특기적성	수(개)	163,271	31,023	20,181	214,475	220,611	243,712	246,433	235,605	175,492	156,074
	비율(%)	73.4	41.5	12.9	47.3	46.4	45.3	43.2	39.1	33.1	31.5
계	수(개)	222,528	74,712	156,151	453,391	475,690	538,108	570,321	602,630	530,650	494,965

* 출처: 교육부(2017).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나.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내 저소득 가정, 한부모 및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교육·문화·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된 이후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그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다. 보건복지부(2017f)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4년 기준 895개소였던 지역아동센터는 2016년 현재 4,107개소로 4.5배 이상 양적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용 아동 수 역시 2004년 23,347명에서 2016년 106,66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국에 걸쳐 4천개소가 넘는 시설이 지역사회 내 곳곳에 위치하면서 아동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었고, 이는 이용 아동 수가 십만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이용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보건복지부, 2017f), 전년대비 약 2,993명의 아동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미취학아동의 경우 2015년 3,133명에서 1,872명이 감소하였다. 초등학생 저학년은 41,750명, 초등학교 고학년은 40,390명, 중학생은 18,156명, 고등학생은 4,377명으로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2만여명이 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8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04년-2016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센터 개소 수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연인원 (명)	합계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106,668
	미취학		1,564	3,023	4,133	4,127	4,585	4,838	4,376	4,578	4,028	3,714	3,533	3,133	1,872
	초등	저학년	18,348	34,617	25,149	32,867	35,972	39,053	37,865	37,407	38,030	39,293	40,425	42,267	41,750
		고학년			21,426	28,177	33,163	38,032	40,233	42,324	42,396	41,025	40,662	40,113	40,390
	중학생		2,880	5,129	6,846	9,224	11,380	13,600	15,075	17,374	20,017	20,817	20,121	19,566	18,156
	고등학생		555	958	1,095	1,413	1,862	2,072	2,346	3,014	3,663	4,006	4,035	4,418	4,377
	탈학생		–	–	103	104	133	331	338	285	223	211	160	164	123
	기타주)		–	22	99	317	196	–	–	–	–	–	–	–	–

* 출처: 보건복지부(2017i).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016년 12월 기준). p. iii, p.viii.
* 주: 2004년 탈학교/기타, 2005년 탈학교, 2009년부터 기타는 별도 조사되지 않음.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과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및 체험활동 등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4년 46개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작되었다(여성가족부, 2016c). 이 사업은 당초 여성가족부를 통한 국비지원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청소년육성기금과 일반회계, 복권기금 등 예산 출처 변화를 경험하였는데(김영지 외, 2016), 2011년에 200개소에서 정체되었던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2016년 250개소에 만명이 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표 Ⅲ-4-9>).

표 Ⅲ-4-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5년-2016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개소	46	100	151	185	178	161	200	200	200	200	244	250
지원인원 (명)	2,350	4,200	6,300	7,980	7,560	6,672	8,200	8,060	8,200	8,043	9,490	10,021
연인원 (명)	225,600	1,260,000	1,890,600	2,274,300	2,177,280	1,754,736	2,148,400	2,095,600	2,205,800	1,962,492	2,325,050	–

* 출처: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VI: 총괄보고서. p.273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p.151-153.

라. 방과후돌봄서비스 만족도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있어 이용 아동·청소년의 만족도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단순히 이용현황에 대한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아동·청소년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부모가 직접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여건 속의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이들 기관·시설들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정책사업들에 대한 효과성을 가늠하게 한다.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그림 Ⅲ-4-2]), 만족한다는 응답이 2011년에는 73.8%였으나 2016년에는 84.4%를 기록하면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2016년 기준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89.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학생은 84.3%, 고등학생은 73.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학교급별 만족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6년의 만족도는 2011년과 비교할 때, 초등학생은 7.7%p가 상승한데 비해, 중학생은 17.3p%, 고등학생은 12.2%p의 상승폭을 보여, 중학생의 방과후학교 만족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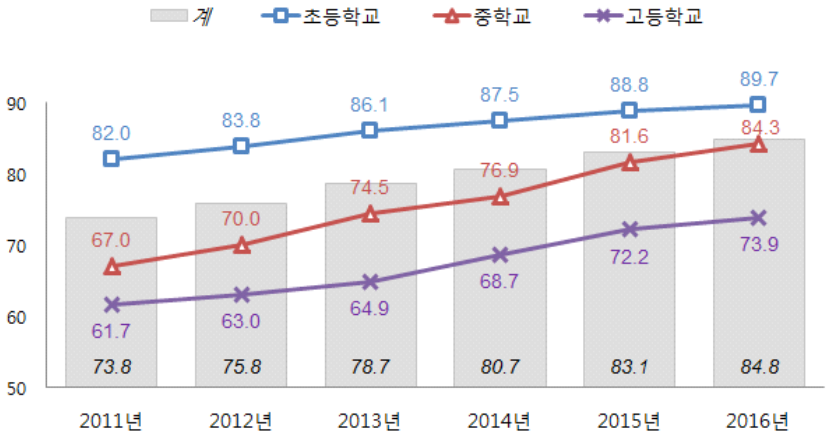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17).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3. 표를 그래프로 재구성. / 단위: %

【그림 Ⅲ-4-2】 방과후학교 교급별 학생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2]의 조사항목인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전반적 만족도, 센터에서의 활동 및 서비스의 도움정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시설

22)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주관하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상 종단조사로서 여기에 제시된 이용 만족도는 2기패널(초4~초6)을 대상으로 한 2014~2016년 조사결과이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조사결과는 [그림 Ⅲ-4-3]과 같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2014년 4.26점, 2015년 4.2점, 2016년 4.27점으로 연도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영역별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다양한 활동이나 서비스의 도움정도에 대해서 2014년 4.19점, 2015년 4.14점이었으나 2016년에는 4.29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만족도와 시설/환경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교사만족도는 2014년 3.88점에서 2015년 4점, 2016년에는 4.07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시설/환경만족도는 2014년 4.03점, 2015년 4.18점, 그리고 2016년에는 4.29점으로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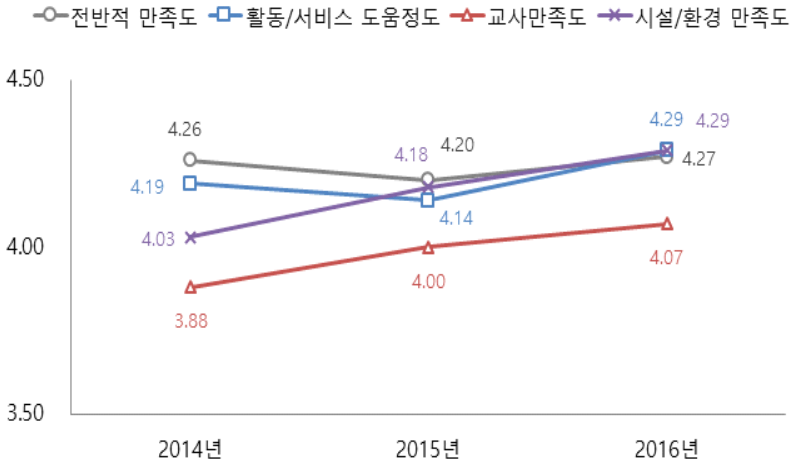

* 출처: 이종원·모상현·정윤미·유성렬·김진석(2016).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pp.257, 261, 263, 265
* 주: 5점 만점 기준 평균값 수치

【그림 Ⅲ-4-3】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Ⅲ-4-10>), 급식만족도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85%정도를 보였으며, 2010년 83.4%의 만족도를 보인 이후 1.7%p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만족도 중에서는 주중체험강사의 만족도가 거의 90%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만족도 85.3%, 지도자(PM, SM)만족도 86.3%, 교과목강사 만족도 86.8%, 시설환경 만족도 87.6%를 보였으며, 급식만족도는 74.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의 만족도가 상승한 가운데 급식만족도의 경우 2011년 81.1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Ⅲ-4-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만족도(2010-2016년) (단위 : %)

연도 / 만족도 영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만족도	83.4	83.5	83.8	83.9	84.2	84.4	85.1
프로그램 만족도	84.2	84.1	84.4	84.3	84.4	84.4	85.3
지도자(PM, SM) 만족도	84.0	83.9	84.0	85.5	85.2	85.6	86.3
교과목강사 만족도	83.2	83.3	82.8	85.0	85.2	85.6	86.8
주중체험강사 만족도	86.4	86.7	87.6	88.2	88.0	88.4	89.9
시설환경 만족도	82.0	82.3	83.6	85.1	84.2	85.2	87.6
급식 만족도	80.4	81.1	80.0	74.9	77.8	76.8	74.4

* 출처: 양계민·김승경·조영희(2010), 양계민·김승경(2011), 양계민(2012), 양계민(2013), 양계민(2014), 김영지·김정주·정은주(2015), 양계민(2016)의 연구에서 영역별 전체 만족도 평균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 점수를 정리하여 표로 재구성.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1) 입양률

① 국내·외 입양 현황과 추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아동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에서 양육 및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들을 위한 위탁양육, 입양, 아동보육기관 등의 대체보호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입양의 경우는 출생국가에서 양육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체수단으로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UNCRC, 1996).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입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해외입양 사례는 크게 감소하였고, 국내입양 사례가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2017.5.12)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2008년 국내입양 아동 수는 1,306명, 해외입양 아동 수는 1,250명으로 유사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점차적으로 국내입양의 비중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Ⅲ-4-4]). 그러나 2011년 국내입양 아동 수가 1,548명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6년에는 546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해외입양아 수 역시 계속 감소하여 2016년에는 334명을 기록했다(<표 Ⅲ-4-11>).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및 요보호 아동의 감소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보건복지부, 2017.5.12), 2011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입양율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맥락에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제', '입양숙려제'와 같은 제도가 입양절차, 그리고 궁극적으로 입양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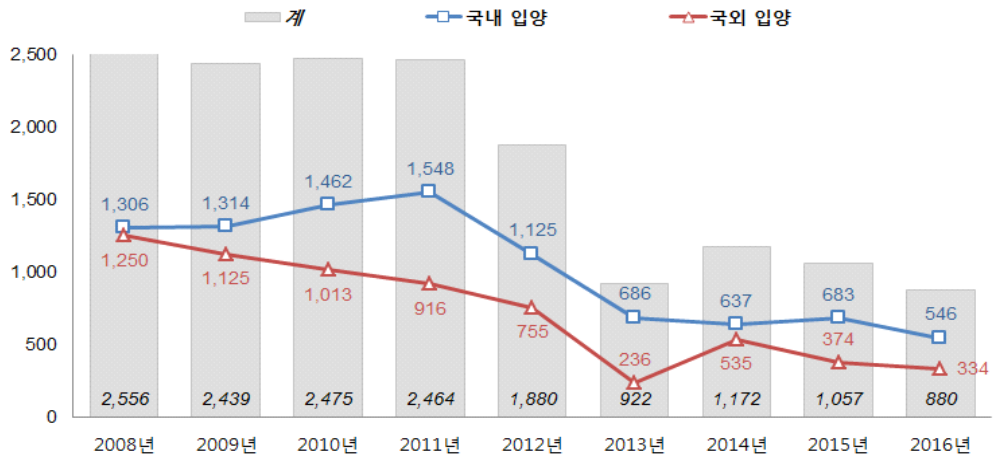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2017.5.12). 보도자료 「국내외 입양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다」. p.6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단위/명)

【그림 Ⅲ-4-4】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표 Ⅲ-4-11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단위 : 명(%))

구분	계	2007년 이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46,480	230,635	2,556	2,439	2,475	2,464	1,880	922	1,172	1,057	880
국내	79,634 (32.3%)	70,327 (30.2%)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국외	166,846 (67.7%)	160,308 (69.8%)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 출처: 보건복지부(2017.5.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내외 입양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다」. p.6.

저조한 입양현황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인 보완 뿐 아니라 여전히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사회적 인식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표 Ⅲ-4-12>),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 입양을 적극 고려해보겠다'는 18.9%,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하면 입양을 하고 싶다'는 12.3%의 응답률을 보여,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31.2%에 불과했다. 그러나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39.8%, '잘 모르겠다'는 29.5%로 나타났다. 지난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보겠다',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하면 입양을 하고 싶다')이 점차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에는 42.5%였던 긍정적 인식이 2016년에는 31.2%로 11.3%p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조사항목

은 2012년에 비해 약 7%p 정도 상승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항목 역시 4.5%p 상승하였다.

표 Ⅲ-4-12 입양에 대한 견해(2012년, 2014년, 2016년) (단위: %)

구분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보겠다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하면 입양을 하고 싶다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2012년	23.6	18.9	32.5	25.0
2014년	21.6	15.6	32.6	30.2
2016년	18.9	12.3	39.3	29.5

* 출처: 통계청(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p.6.
통계청(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p.15.
통계청(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보건·교육·안전·가족·환경). p.66.
* 주: 조사대상은 19세 이상 인구임.

통계청 사회조사는 '입양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표 Ⅲ-4-13>), 2016년 조사결과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전체 4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가 32.2%로 나타났다. 이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가 16.8%,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가 4.1%, '입양자녀의 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가 3.4%정도로 나타났다.

표 Ⅲ-4-13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2008-2016년) (단위: %)

구분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입양자녀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타	2016년 추가 응답 항목
2008년	전체	62.1	20.1	5.8	8.0	3.0	1.0	–
2010년	전체	57.9	22.7	5.6	7.5	4.6	1.7	–
2012년	전체	56.8	21.3	5.7	7.5	4.6	1.7	–
2014년	전체	57.2	19.3	6.3	9.0	6.3	2.0	–
구분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입양자녀의 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1]	재산 상속 때문에[2]	기타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3]
2016년	전체	42.9	16.8	4.1	3.4	0.5	0.2	32.2
	남	46.0	16.9	4.1	3.1	0.5	0.2	29.3
	여	40.0	16.8	4.1	3.7	0.5	0.2	34.8

* 출처: 통계청(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p.6.
통계청(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p.15.
통계청(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보건·교육·안전·가족·환경). p.66.
* 주: 1), 2), 3)은 2016 조사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조사항목임.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조사항목이 2016년 조사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전체적인 조사항목별 연도별 추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 항목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인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의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다른 조사항목 역시 응답률이 감소하였다. 2016년 조사결과 기준으로 성별차이를 보면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조사항목은 남자가 46%, 여자가 40%로 남자 응답자가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양육을 더 많이 담당하게 되는 여자 응답자들에게서 약 5%p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남: 29.3%, 여: 34.8%).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우리사회에 만연된 입양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견해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문화 확산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입양절차와 입양 후 양육관련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한 다양한 지원 및 개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②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입양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도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졌던 '국외입양인 사후 서비스 사업'을 2010년에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2012년에는 사업 대상을 국내입양인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시작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7). 입양 사후관리는 2014년 이후 중앙입양원 위탁사업으로 전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 입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 Ⅲ-4-14>와 같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입양인을 위한 사후서비스에는 입양가족을 위한 정서심리 지원, 입양가족 교육, 행사지원,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이, 그리고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에는 모국 방문, 모국어 연수, 모국 생활지원(방문입양인 일시주거시설 등), 문화예술행사와 같은 행사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7). 또한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입양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청구하면 이를 공개함으로써 입양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체성 확립, 그리고 입양가족의 신뢰도와 권익보호 등을 도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7).

국내 입양 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표 Ⅲ-4-15>), 입양부모 교육, 입양아동 치료 지원, 입양아동 자아성장 지원, 입양가족 간 자조모임(self-help group), 입양사후상담 및 사후 가정방문, 친생부모 찾기 지원과 부모 상담 등을 주 영역으로 입양아동 및 가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심리치료/상담, 코칭, 정보제공·교육, 캠프개최, 사례관리 등이 포함된다.

표 Ⅲ-4-14 국내·외 입양 사후서비스

구분	국내·외 입양 사후서비스 내용
국내입양 사후서비스	○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25조 1항 ○ 목적: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기관 담당자가 양친 및 양자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을 높이고자 함. ○ 내용: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1년간 의무 이행으로 사후관리에 대해 입양부모에게 상세 안내 필요. 아동 적응 및 발달 등에 대한 사항,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포함한 수시상담 제공. 사후관리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국외입양 사후관리	○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목적: 국외입양인의 적응 및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기관 및 단체, 입양사후서비스 전문기관, 중앙입양원에서 제공 ○ 내용: 양자와 양친 간 적응상태 조사 및 보고·국적취득 지원. 협약된 국외입양기관의 경우 아동 입국 후 1년간 사후관리 보고 의무.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제공(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지원 및 모국관련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외입양인 상담 등)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17). 2017 입양실무매뉴얼. p.36, p.55 내용 발췌 및 요약

표 Ⅲ-4-15 국내 입양 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사업명	입양기관 주요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입양부모교육	자녀양육에 대한 주제별 강의, 부모 참여형 교육. 라이프 및 셀프 코칭, 집단교육 및 상담
입양아동 치료 지원	심리치료 검사, 집단상담, 심리·신체발달 치료비 지원
입양아동 자아성장 지원서비스	집단 예술치료, 미술·놀이치료, 연기, 노래 등을 통한 자기감정 표현, 공연
유리드믹스	음악을 통한 영아의 사물인지와 오감발달, 부모–자녀 간 정서적 교류, 애착관계 극대화
자조모임	입양가족 간 친목 도모 및 정보 교류, 지역별 자조모임 운영, 멘토, 멘티 형성으로 현실적인 지지관계 형성, 가족캠프, 청소년캠프, 야유회 등
사후상담 및 사후방문	입양 삼자간의 내·외적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입양 후 가족과 아동의 애착형성 및 아동의 신체, 심리, 정서적 적응 상태 파악 등을 위한 가정방문 실시
사례관리	문제를 가진 국내입양인 및 입양가족을 위해 사례관리 실시
친생부모 찾기 및 기타 사후서비스	친생부모 찾기 및 입양확인서 등의 서류업무, 입양배경 정보상담 등 사후상담서비스
친생부모 관리	입양 후 친생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개별상담, 전문상담, 수시전화상담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17). 2017 입양실무매뉴얼. pp.38–39

국내·외 입양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파양과 관련된 부분이다. 국내 및 해외입양 시 파양과 재입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23]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23) 국내외입양 후 사후관리 미흡, 파양, 재입양과정 등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아동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체계적인 접근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재판을 통한 파양의 경우 2016년 사법연감 통계 기준으로 246건으로 보고되고 있고(법원행정처, 2017), 또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양자에 대한 학대 및 유기를 포함한 심각한 문제 발생 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파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 외에 파양과 관련된 통계 및 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파양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큰 비극적 사건으로 이에 따라 거절감, 낮은 자존감, 상실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통제력 부족과 같은 행동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ams, Juffers, & van IJzendoorn, 2002, Schwartz, 2006, 김진숙, 2015에서 재인용). 실제로 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파양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두 번 버림받았다는 절망적 감정으로 자신의 존재가치에 회의를 갖는다거나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숙, 2015). 이는 파양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서비스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례관리 및 상담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심리적 불안정과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파양에 따른 낙인 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김진숙, 2015). 최근 입양정보 DB구축 및 관리 등이 시작됨에 따라(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7)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파양에 대한 접근을 새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대안양육 비율

① 요보호아동 현황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대안적 형태의 양육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이 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4항)을 지칭한다. 빈곤, 학대, 비행, 가출, 기아 등 다양한 가정 및 경제적, 개인적 이유로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 요보호아동현황을 살펴보면(<표 Ⅲ-4-16>), 전체 4,592명으로 전년 대비 9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도별 추이를 보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생 유형별 현황을 보면,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 수는 3,148명으로 2014년의 2,965명, 2015년의 2,866명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제기를 해왔다. [예] ① [허술한 입양제도, 아이들이 위험하다] 온몸에 화상 · 멍… 4살 은비의 죽음 http://www.segye.com/newsView/20170115001844, 2017년 10월 22일 인출, ② [취재후] 인천 공항의 어떤 추모식…길 잃은 추방 입양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7964&ref=A 2017년 10월 22일 인출

나타났으며, 비행·가출 등에 따른 요보호 아동 수는 314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 미혼모 수는 856명, 기아는 264명, 그리고 미아는 10명으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Ⅲ-4-16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2007년-2016년)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8,861	9,284	9,028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92
빈곤·실직·학대[1]	5,354	5,876	4,994	4,613	3,928	3,944	3,668	2,965	2,866	3,148
비행·가출[2]	748	706	707	772	741	708	512	508	360	314
미혼모	2,417	2,349	3,070	2,084	2,515	1,989	1,534	1,226	930	856
기아	305	202	222	191	218	235	285	282	321	264
미아	37	151	35	210	81	50	21	13	26	1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원출처: 보건복지부「요보호아동현황보고」
* 주: 1) 학대, 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포함됨. 2) 비행, 가출, 부랑을 포함함.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표 Ⅲ-4-17>과 같다. 2016년 기준으로 시설보호는 2,894명으로 전년대비 212명이 증가하였으며, 가정위탁은 1,449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양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243명이었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2000년부터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고 추가 지정은 하지 않도록 하여(보건복지부, 2017c),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실제로 2015년에는 0명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6명으로 다시 보고되면서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차적으로 가정위탁보호와 같은 대안양육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대책 등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4-17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2007년-2016년)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8,861	10,534	10,153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92
시설보호[1]	3,245	4,964	4,767	4,842	3,752	3,748	3,257	2,900	2,682	2,894
가정위탁	3,378	2,838	2,734	2,124	2,350	2,289	2,265	1,688	1,582	1,449
입양[2]	1,191	1,304	1,314	1,393	1,253	772	478	393	239	243
소년소녀가정	247	178	213	231	128	117	20	13	0	6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원출처: 보건복지부 시도별 보고자료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2)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②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사유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로 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한 연고자 보호양육이나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보호와 같은 대안적 양육을 받도록 조치한다(보건복지부, 2017c). 대안적 양육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는 시설보호로, <표 Ⅲ-4-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281개 시설에 13,689명의 아동·청소년이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설 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현재 시설에서 지내는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표 Ⅲ-4-17>), 2016년 기준으로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감소한데 비해 시설보호 아동은 증가한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배치 확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Ⅲ-4-18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1] 현황(2007년-2016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설 수	282	285	280	280	280	281	281	278	281	281
현재 입소아동2)	18,426	17,992	17,586	17,119	16,523	15,916	15,239	14,630	14,001	13,689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원출처: 보건복지부 각년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 주: 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전국의 아동복지시설로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
  2) 현재 입소아동: 기아, 사생아,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실직·가정, 전입 등으로 시설에 입소된 아동으로 퇴소아동을 뺀 연말 현재 수용아동 수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지칭하며,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인 '친인척가정위탁', 그리고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가정에서의 양육인 '일반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17c). 정부에서는 18세 미만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특히 2세 미만 아동은 위탁가정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c). 요보호아동의 적절한 가정위탁배치 및 가정위탁 부모 교육 등을 위해 정부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각 지역별로 17개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위탁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대안적 양육유형으로서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보호의 확대가 더욱 제고될 필요가 있다.

[그림 Ⅲ-4-5]는 연도별 가정위탁보호 아동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위탁아동 수는 2010년 16,359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6년 현재 12,89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 유형별로 보면 2016년에 대리양육 위탁아동은 8,578명으로 전체 위탁아동 중 66.5%를 그리고 친인척 위탁아동은 3,348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어 위탁아동의 92.5%가 혈연관계에 있는 조부모 및 친인척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혈연관계의 일반위탁 아동 수는 970명에 불과했는데, 향후 시설보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반위탁보호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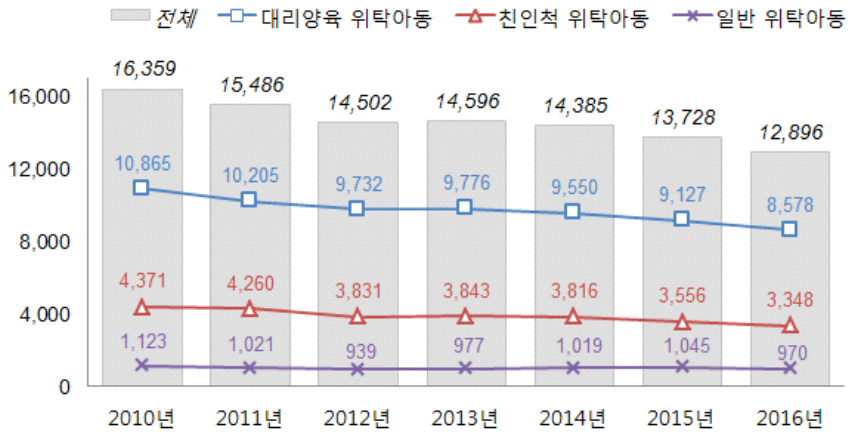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2016a).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p.314. 표를 그래프로 재구성
보건복지부(2016c). 2016년 가정위탁 현황(2016.12.31. 기준).

【그림 Ⅲ-4-5】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단위: 명)

공동생활가정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또 다른 대안양육 유형으로 보호대상 아동에게 최대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속에서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 것으로 일명 그룹홈이라고도 불린다(보건복지부, 2017a). 집단시설 위주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이 강조되면서 공동생활가정은 5~7명 보호를 원칙으로 1997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16년 현재 전국에 510개소가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17a). 공동생활가정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보면(<표 Ⅲ-4-19>), 2012년에는 489개소에서 2,438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았으나 2016년에는 510개소에서 2,758명의 아동이 보호받으면서 시설 수는 약 4.3p%, 보호 아동 수는 약 13.1%p의 증가폭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2016년 기준으로 남자아동의 숫자가 1,444명으로 여자아동(1,314명)보다 많았다.

표 III-4-19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아동 수(2012년-2016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설 수		489	480	476	480	510
수용인원	계	2,438	2,481	2,588	2,636	2,758
	남	1,233	1,309	1,351	1,364	1,444
	여	1,205	1,172	1,237	1,272	1,314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공동생활가정 현황.

(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①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본 연구의 일환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간 가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7%만이 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가출경험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20>). 남자청소년의 가출경험은 4.4%로 여자청소년의 3%보다 약간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가출경험이 2.6%,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동일하게 4.2%로 나타났다. 양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보다는(3.4%) 한부모가정(6.8%) 및 조손가정에서(6.4%)의 가출경험이 다소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높게 나타났다(상: 2.7%, 중: 3.3%, 하: 5.9%).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역시 가출경험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4-20 가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3.7	96.3	100.0(8,964)	–
성별	남자	4.4	95.6	100.0(4,664)	13.284***
	여자	3.0	97.0	100.0(4,300)	
학교급	초등학교	2.6	97.4	100.0(2,568)	13.680**
	중학교	4.2	95.8	100.0(2,898)	
	고등학교	4.2	95.8	100.0(3,49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	96.6	100.0(8,112)	23.137***
	한부모가정	6.8	93.2	100.0(652)	
	조손가정	6.4	93.6	100.0(86)	
	기타	5.0	95.0	100.0(107)	
학업 성적	상	2.7	97.3	100.0(3,020)	38.147***
	중	3.3	96.7	100.0(3,837)	
	하	5.9	94.1	100.0(2,103)	
경제적 수준	상	3.5	96.5	100.0(4,876)	2.420
	중	3.8	96.2	100.0(3,141)	
	하	4.6	95.4	100.0(942)	

**$p<.01$, ***$p<.001$

가출해본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4-6]),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의 가출경험은 5.5%였으나 2017년에는 3.7%로 감소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에 3.8%에서 2017년 2.6%로 감소했다. 이외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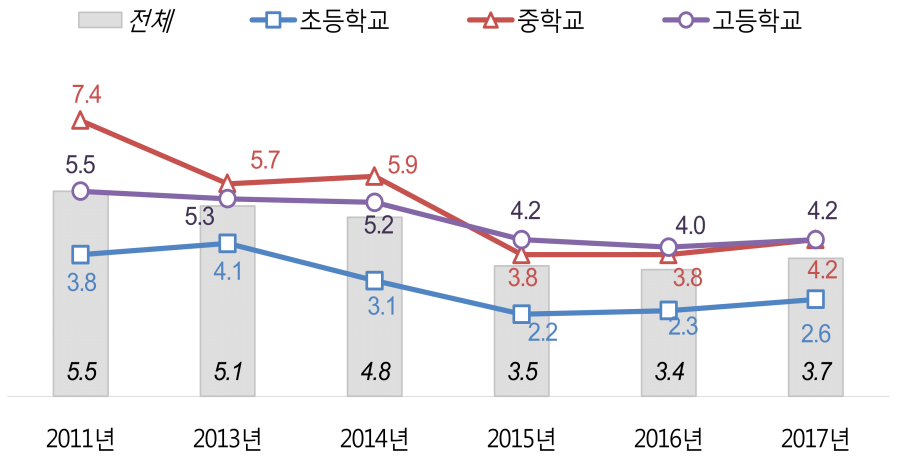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4-6】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연도별 추이)

가출한 이유로는(<표 Ⅲ-4-21>) 부모님과의 문제가 60.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문제가 14.3%,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10.6%, 학교문제가 5.1%, 기타이유가 7.4%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학업문제를 가출의 이유로 한 응답이 여자청소년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남자: 17.2%, 여자: 9.4%), 여자청소년은 부모님과의 문제(남자: 57.9%, 여자: 65.7%), 또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에서 남자청소년에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남자: 9.7%, 여자: 12.2%).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학업문제를 가출경험의 이유로 언급한 응답이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며(초: 17.7%, 중: 17.6%, 고: 9.9%),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문제를 가출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초: 45.3%, 중: 57.1%, 고: 71.0%).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에서는 가출이유 중 학업성적(상: 17.2%, 중: 13.6%, 하: 13.2%)과 부모님과의 문제(상: 67%, 중: 60.8%, 하: 57.7%) 때문이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가출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상: 4.8%, 중: 11.6%, 하: 13.6%).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학업문제가 가출이유라는 응답이 가장

낮았으나(상: 15%, 중: 15.1%, 하: 9.6%), 부모님과의 문제를 가출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상: 58.6%, 중: 62.9%, 하: 66%).

표 Ⅲ-4-21 가출을 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 때문에	부모님과의 문제	학교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타	전체(N)	χ^2
전체		14.3	60.9	5.1	1.7	10.6	7.4	100.0(330)	–
성별	남자	17.2	57.9	5.0	2.3	9.7	7.9	100.0(204)	5.815
	여자	9.4	65.7	5.3	0.9	12.2	6.5	100.0(126)	
학교급	초등학교	17.7	45.3	8.6	1.8	13.3	13.3	100.0(65)	21.702*
	중학교	17.6	57.1	2.9	3.3	11.9	7.3	100.0(120)	
	고등학교	9.9	71.0	5.4	0.4	8.4	4.8	100.0(14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2	61.4	4.6	1.5	10.1	7.3	100.0(275)	–
	한부모가정	11.0	67.9	4.4	3.8	7.5	5.4	100.0(43)	
	조손가정	12.5	52.4	19.6	0.0	15.5	0.0	100.0(6)	
	기타	0.0	0.0	25.2	0.0	61.6	13.2	100.0(5)	
학업 성적	상	17.2	67.0	4.0	2.7	4.8	4.2	100.0(80)	9.088
	중	13.6	60.8	4.3	0.8	11.6	9.0	100.0(125)	
	하	13.2	57.7	6.7	2.1	13.6	6.7	100.0(124)	
경제적 수준	상	15.0	58.6	3.9	1.2	12.7	8.6	100.0(168)	7.829
	중	15.1	62.9	5.7	1.5	9.5	5.3	100.0(118)	
	하	9.6	66.0	8.7	4.4	6.1	5.3	100.0(43)	

*$p<.05$.

가출이유에 대한 전체적인 연도별 추이를 보면([그림 Ⅲ-4-7]), 학업문제의 경우 2013년에 14.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14.3%로 다시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부모님과의 문제는 2013년 65.7%를 보인 이후로 2014년 57.4%, 2015년 63.5%, 2016년 60.7%, 2017년 60.9%로 전반적으로 60% 내외의 응답률을 나타내 특별한 증감을 보이지는 않았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가출했다는 비율은 2014년에 16.2%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는 10.6%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가출이유에 대한 연도별 추이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문제를 가출이유로 든 비율이 2013년 66.1%에서 2014년 66.2%, 2015년 55.4%, 2016년 62.8%로 증감을 반복했는데, 2017년에는 45.3%로 그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Ⅲ-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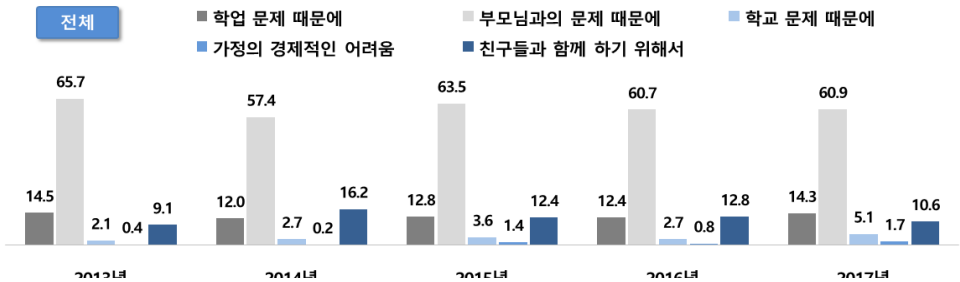

* 주: '기타' 값을 제외한 그래프(단위: %)

【그림 Ⅲ-4-7】 가출을 한 주된 이유: 전체(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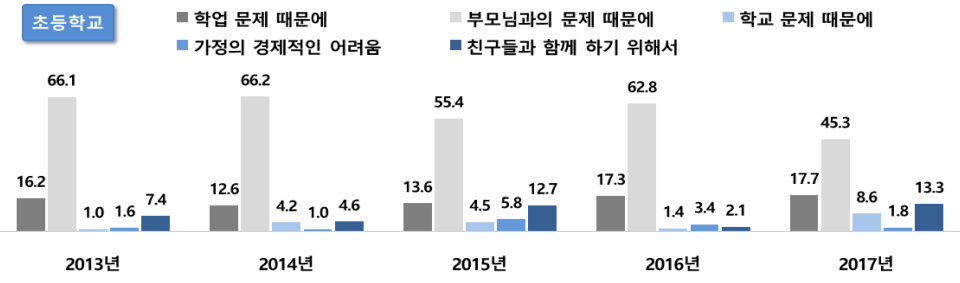

* 주: '기타' 값을 제외한 그래프(단위: %)

【그림 Ⅲ-4-8】 가출을 한 주된 이유: 초등학교(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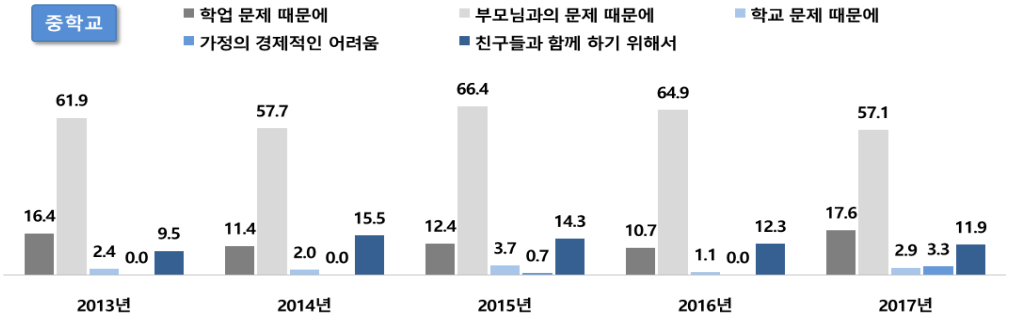

* 주: '기타' 값을 제외한 그래프(단위: %)

【그림 Ⅲ-4-9】 가출을 한 주된 이유: 중학교(연도별 추이)

중학생의 가출이유에 대한 연도별 경향을 보면([그림 Ⅲ-4-9]),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율을 보인 부모님과의 문제 응답률이 연도별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2015년 66.4%→2016년 64.9%→2017년 57.1%). 학업문제를 가출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7%p

높은 17.6%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 16.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고등학생의 주된 가출 이유로 나타난 부모님과의 문제는 2013년 69.3%, 2014년 53.1%, 2015년 64.1%, 2016년 56.2%로 계속 증감을 보이다가, 2017년에는 가장 높은 비율인 71%를 기록했다([그림 Ⅲ-4-10]). 그 다음으로 가출의 주된 이유로 나타난 학업문제는 중학생과는 달리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다(2016년 11.9%→2017년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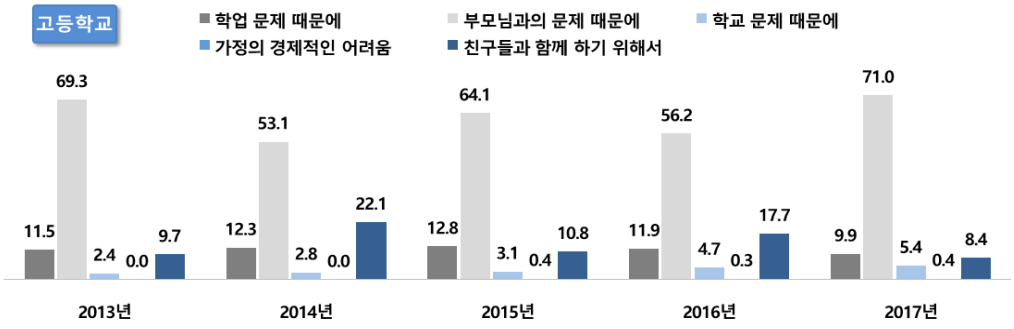

* 주: '기타' 값을 제외한 그래프(단위: %)

【그림 Ⅲ-4-10】 가출을 한 주된 이유: 고등학교(연도별 추이)

②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청소년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호시설로서 가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식주 제공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보호와 상담 및 주거, 학업과 자립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여성가족부, 2016c). 가출청소년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아웃리치)과 함께, 일시보호를 위한 일시쉼터가 2016년 6월 기준 전국에 28개가 운영 중이며, 3개월 이내 단기보호를 위한 단기쉼터는 51개소(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3년을 머무를 수 있는 중장기쉼터(필요시 1년 단위 연장 가능)는 40개소 운영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6c). 청소년쉼터의 운영현황을 연도별로 보면(<표 Ⅲ-4-22>), 특히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시 및 중장기쉼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 증액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종사자 배치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데, 그동안 쉼터 당 4명이었던 종사자가 2016년부터 6명으로 확충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점 등은 큰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6c).

표 Ⅲ-4-22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08-2016년) (단위 : 개소, 백만 원,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년 6월 기준
쉼터 수 (개소 수)	일시쉼터	9	10	10	10	13	21	22	26	28
	단기쉼터	42	47	49	48	49	50	50	52	51
	중장기쉼터	25	24	24	25	30	32	37	41	40
	총계	76	81	83	83	92	103	109	119	119
예산(백만 원)		4,639	4,651	5,874	6,262	7,287	8,137	8,710	10,002	12,666
이용인원(연인원)		235,209	245,653	267,117	400,533	405,204	455,219	584,510	545,907	249,443

* 출처: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p.145-146의 표를 재구성함.

③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시 관련 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약 7%만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기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전화 등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93%의 청소년은 이 중 어느 기관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23>). 매우 적은 비율이지만 관련 기관 중에서는 청소년쉼터가 2.9%로 그 중 높게 나타났다.

가출 후 이용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성별차이를 보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96.6% > 90.7%),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95.6% > 90.1%)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관련 기관의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대도시: 95%, 중소도시: 89.5%, 읍면지역: 96.1%), 학업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상: 92%, 중: 89.4%, 하: 96.8%).

표 Ⅲ-4-23 가출 후 이용 기관 (단위 : %(명))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쉼터	청소년 상담기관	청소년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전체		93.1	2.9	1.1	1.1	1.3	0.5	100.0(263)
성별	남자	90.7	3.9	1.8	1.9	0.9	0.9	100.0(158)
	여자	96.6	1.5	0.0	0.0	1.8	0.0	100.0(105)
학교급	중학교	90.1	3.0	1.5	1.6	2.6	1.2	100.0(118)
	고등학교	95.6	2.9	0.7	0.8	0.1	0.0	100.0(145)
지역 규모	대도시	95.0	1.5	0.8	2.7	0.0	0.0	100.0(109)
	중소도시	89.5	6.0	1.0	0.0	2.1	1.4	100.0(102)
	읍면지역	96.1	0.0	1.6	0.0	2.3	0.0	100.0(53)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쉼터	청소년 상담기관	청소년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3.5	2.5	1.3	1.0	1.4	0.3	100.0(218)
	한부모가정	93.5	6.0	0.0	0.0	0.5	0.0	100.0(39)
	조손가정	68.7	0.0	0.0	31.3	0.0	0.0	100.0(2)
	기타	77.0	0.0	0.0	0.0	0.0	23.0	100.0(3)
학업 성적	상	92.0	4.6	1.5	0.0	1.9	0.0	100.0(58)
	중	89.4	4.0	1.1	3.1	0.9	1.5	100.0(95)
	하	96.8	1.2	0.8	0.0	1.3	0.0	100.0(109)
경제적 수준	상	93.6	2.2	1.4	1.4	0.8	0.5	100.0(130)
	중	93.8	3.0	1.0	0.0	2.1	0.0	100.0(96)
	하	89.1	5.4	0.0	3.1	0.5	2.0	100.0(36)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 후 청소년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과 청소년전화 등의 이용 경험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Ⅲ-4-11]과 같다. 2013년에 6.3%였던 청소년관련 기관 이용 경험은 2015년에 11.1%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6.9% 수준으로 감소하여 청소년들이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후에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이용여부는 가출 후 심리적 지원 및 가족복귀 등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이러한 저조한 이용률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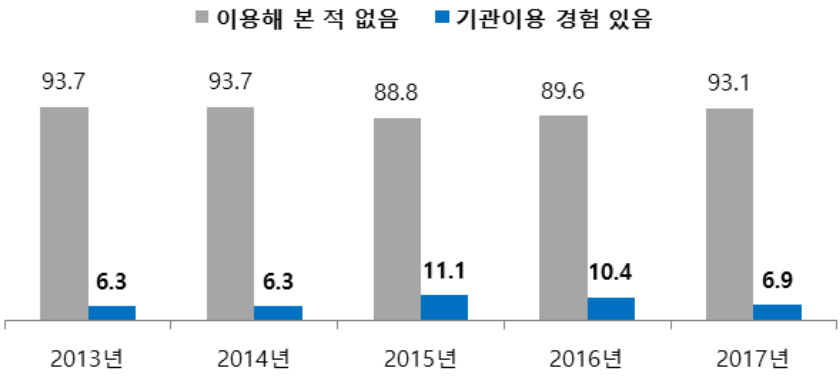

* 주: '기관이용 경험 있음'은 청소년관련 기관들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합친 것임(단위: %).

【그림 Ⅲ-4-11】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 이용 경험(연도별 추이)

청소년들이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61.2%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의 응답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례수가 매우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표 Ⅲ-4-24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전체		2.62(1.02)	18.3	20.5	41.7	19.5	100.0(25)
성별	남자	2.39(1.01)	24.6	23.6	39.7	12.1	100.0(19)
	여자	3.29(0.72)	0.0	11.6	47.5	40.9	100.0(6)
학교급	중학교	2.71(1.00)	15.0	20.3	43.3	21.4	100.0(17)
	고등학교	2.45(1.10)	24.9	21.0	38.4	15.8	100.0(9)
지역 규모	대도시	2.87(0.86)	10.3	8.3	64.9	16.5	100.0(8)
	중소도시	2.54(1.10)	19.6	30.3	26.1	24.0	100.0(15)
	읍면지역	2.17(1.37)	41.7	0.0	58.3	0.0	100.0(2)
경제적 수준	상	2.70(1.24)	28.6	5.7	33.3	32.4	100.0(13)
	중	2.48(0.85)	12.1	35.0	46.2	6.7	100.0(7)
	하	2.65(0.61)	0.0	39.0	57.4	3.7	100.0(5)

이러한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는 긍정적인 응답기준으로(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201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48.1% → 2016년 58.1% → 2017년 61.2%)([그림 Ⅲ-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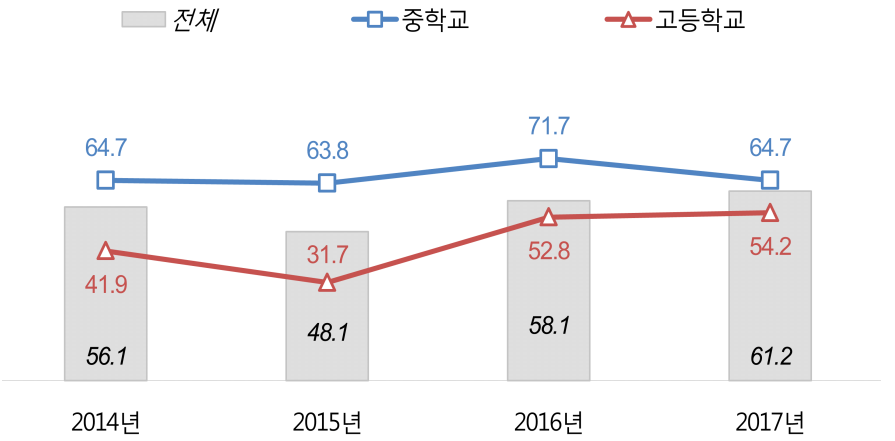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응답률을 합친 비율임(단위: %).

【그림 Ⅲ-4-12】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 서비스 만족도(연도별 추이)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1)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①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24)]

현재 아동의 양육 및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 및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아동복지시설 평가는 2016년에 실시되었으며, 주요 평가내용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의 총 69개 지표가 활용되었다(김영지 외, 2016). 일부 지표내용에서는 2013년과 차이를 보였는데, 2016년 평가에 중점을 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표 Ⅲ-4-25>), '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는 응급상황 및 화재에 대비하는 안전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으며, '재정 및 조직 운영'에서는 투명한 회계관리를, 그리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는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기록 및 학대아동에 대한 치료를 신규 지표로 포함시켰다. '아동의 권리' 에서는 아동뿐 아니라 직원의 인권보장을 포함시켰고, '지역사회관계'에서는 외부자원개발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였다.

표 Ⅲ-4-25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연도별 차이

평가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2016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시설구조, 외관 및 주차장,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 수정: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 신규: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구조(거실), 생활공간의 적절성, 식품보관 위생상태,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 삭제: 상담실 및 사무실,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위상상태의 적절성
B. 재정 및 조직운영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사업비·후원금 비율, 법인이사회, 비품관리,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관찰일지, 입 · 퇴소 관련기록 등	– 신규: 회계의 투명성 – 삭제: 관찰일지, 기관의 미션과 비전,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C. 인적자원 관리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률 및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직원채용의	– 수정: 직원복지 – 통합: 직원교육, 신입직원교육 → 직원교육

24) 본 세부 지표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평가사업은 3년 주기로 시행되며, 향후 평가는 2019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7년의 본 지표항목에 대한 기술은 불가피하게 이전년도와 유사하나, 가능한 기술을 달리하여 간결하게 제시하고자 하였음.

평가영역	2013년도 평가지표	2016년도 평가지표
	공정성, 시설장·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직원·신입직원교육, 직원복지 등	– 삭제: 직원의 이(퇴)직률, 직무분담의 적절성, 직원인사평가, 직원의 고충처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 수,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자립지원 및 퇴소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아동 · 가족 · 연고자 상담, 사례관리, 학습·정서 및 사회성프로그램,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등	– 수정: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초기적응 프로그램,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 아동 관리의 적절성,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및 퇴소지원 프로그램, 사례관리,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치료 프로그램,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 신규: 식사문화, 아동 개인별 사진첩(앨범) 기록 정도, 가족단위식 소규모 나들이,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영유아 장난감,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 삭제: 성교육 프로그램
E. 아동의 권리	아동의 고충처리, 아동의 인권보장 노력,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자치활동 보장, 체벌금지	– 수정: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 이동통합: 음식제공(→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F. 지역사회 관계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관리, 실습교육, 지역사회 연계	– 수정: 외부자원개발, 후원금(품) 사용·관리, 지역사회 연계 – 삭제: 자원봉사자의 활용, 홍보

* 출처: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총괄보고서. p.294 내용 발췌 및 정리
원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시설평가실(2015).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pp.11–14.

이러한 6개 평가영역 관련 변화 외에 평가점수 배점 역시 일부 변경되었는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경우 2013년에는 35점 만점이었으나 2016년에는 40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역사회관계'는 2013년 10점에서 2016년 5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김영지 외, 2016). 이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② 보호·양육시설 예산

2017년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표 Ⅲ-4-26>),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을 제외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들 중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201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복권기금으로 이관, 편성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14b),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약 9%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은 약 20%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외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과 가정위탁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기본운영비 지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3.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원대상 시설인 4,113개소에 월 운영비가 약간 증액되어 2017년에는 월 473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경우는 이외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특수목적형 센터 추가 지원, 토요운영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6d)

표 Ⅲ-4-26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년-2017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7,600	15,261	7,630	7,630	7,630	6,867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6,913	7,259	7,407	8,623	13,714	16,476
요보호아동자립지원	960	1,014	1,024	1,021	1,000	1,012
가정위탁지원	1,521	1,369	1,232	1,232	1,232	1,241
지역아동센터	78,700 (3,500개소, 월 395만원)	90,500 (3,742개소, 월 420만원)	97,900 (3,989개소, 월 433만원)	103,500 (4,113개소, 월 443만원)	108,500 (4,113개소, 월 458만원)	112,100 (4,113개소, 월 473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2, 2013b, 2014b, 2015b, 2016f). 각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16d, 2017e).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4~2015). 각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7). 기금사업활동.

③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에 가장 최근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16년에 평가를 받은 시설은 총 281개소로 전체 평균점수는 89.6점으로 나타나 2013년 평가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그림 Ⅲ-4-13]). 평가지표 영역별 점수를 보면, 시설·환경 영역은 94.8점, 재정·조직은 86.7점, 인적자원관리는 85.1점, 프로그램·서비스는 91.5점, 아동권리는 92점, 지역사회관계는 86.2점으로, 시설·환경과 프로그램·서비스 및 아동권리(이용자권리) 영역이 90점이 넘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법적 직원 충원 및 직원교육과 복지 등이 관련된 인적자원관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Ⅲ-4-27>).

표 Ⅲ-4-27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2016)

시설 수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아동권리	지역사회관계
281	89.6	94.8	86.7	85.1	91.5	92.0	86.2

* 출처: 보건복지부(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앞서 살펴본 영역별 평가지표에 따른 2016년 평가점수를 2013년과 비교하면 [그림 Ⅲ-4-13]과 같다. 시설·환경,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점수를 보였으나, 재정·조직에서는 2013년도 보다 1.5점 낮았으며, 아동권리 부분은 3.4점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자원개발 및 지역사회연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2013년에 비해 1.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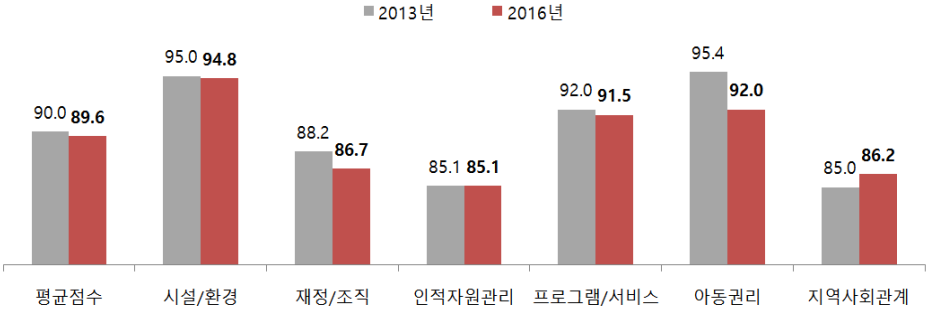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그림 Ⅲ-4-13】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2013, 2016)

2016년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의 등급별 분포를 보면(<표 Ⅲ-4-28>), A등급(90점 이상)이 67.6%, B등급(80~90점미만)은 23.8%, C등급(70~80점미만)은 3.2%, D등급(60점~70점미만)은 1.8%, F등급(60점미만)은 3.6%로, 전체 281개소 중 257개소(91.4%)가 B등급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의 평가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등급별 분포를 2013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A등급을 받은 시설의 비율이 2013년보다 3.6%(26개소) 더 높았으나,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시설 역시 2013년보다 각각 1.4%(4개소), 1.8%(5개소)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4-28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2013, 2016) (단위 : %(개소수))

연도	평균 점수	등급별 시설 수					시설 수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90점미만	C등급 70점~80점미만	D등급 60점~70점미만	F등급 60점미만	
2013	90.0	64.0(176)	29.8(82)	4.0(11)	0.4(1)	1.8(5)	100.0(275)
2016	89.6	67.6(190)	23.8(67)	3.2(9)	1.8(5)	3.6(10)	100.0(281)

* 출처: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는 우수시설의 경우, 시상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D와 F등급의 미흡 평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는 향후 개선을 위한 방문 컨설팅 지원 등에 평가결과가 활용된다(보건복지부, 2017. 2. 15). 인센티브 지원은 우수시설로서 시·도 및 권역별 상위 5%이내 A등급 시설 뿐 아니라 이전 평가대비 20점 이상 상승한 시설(20개소 내외)에게도 이루어지며, 미흡시설의 경우는 방문컨설팅 및 집합컨설팅과 우수시설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기회를 지원받게 된다(보건복지부, 2017. 2. 15: 7). 적절히 평가결과를 활용함으로써 해당 시설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나, 미흡평가를 받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러한 컨설팅과 다양한 지원이 어떻게 개선을 이끌어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4) 소결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대분류 지표영역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의 세가지 중분류로 구분된다. '부모의 지도와 책임'은 다시 '부모와의 관계',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소분류로 구분되는데,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세부지표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14a), 만9~24세의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짧아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13~24세), 부모와의 대화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보육시설의 수가 2013년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생 아동 수 및 이용 아동 수의 감소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운영주체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국·공립시설과 직장어린이집은 증가추세를, 개인이 운영주체인 가정 어린이집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이용아동 수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2016년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89.1%)과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87.6%)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법인(73.9%)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대도시 소재 보육시설의 숫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소도시 소재 시설은 다소 감소하였고, 농어촌 지역 시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접근성이 과거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역시 2013년의 4.9명에서 2016년에는 4.5명으로 감소하면서 보육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아동수가 약 0.5명 줄어들어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에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해서, 먼저 방과후 학교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55.8%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보였으며 2013년에 60.2%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내용에서 학교급 차이를 보였는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초등학교→고등학교) 교과의 비중이 커지면서 학습에 더 치중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의 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6년 기준 이용 아동수가 106,668명으로 전년대비 2,993명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미취학아동의 크게 감소하여 (1,261명), 아동 인구수 절감에 따른 것인지를 포함하여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전년대비 6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2016년 기준으로 250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만여명 정도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방과후돌봄서비스 만족도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일부 서비스의 경우는(예,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만족도)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중분류에는 '입양률', '대안양육 비율',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등이 해당된다. 입양 아동 수는 2010년에 2,475명(국내: 1,462명, 국외: 1,013명)을 최고치로 기록한 이후 2016년 기준 880명(국내: 546명, 국외: 334명)으로 나타나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 및 요보호 아동의 감소와 같은 이유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문제 또는 사회적 인식 등의 배경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 최근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조사항목의 응답률이 이전조사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2014년: 32.6%→ 2016년: 39.3%).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도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42.9%,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는 32.2%로 나타나 입양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 특히 입양자녀 양육과 관련된 인식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입양특례법 제정 후 정부 및 관련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국내외 입양 이후 사후조치가 더욱 체계화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양 및 재입양 등과 관련된 통계 및 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일차적으로 대안양육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 아동 수는 2016년 기준, 4,592명으로 전년대비 약 90명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수가 다소 증가하였고(2015년: 2,866명→2016년: 3,148명), 특히 탈시설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정책적 분위기에서 시설보호아동 수가 증가(2015년: 2,682명→2016년: 2,894명)하고 가정위탁이 감소(2015년: 1,582명→2016년: 1,449명)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가정위탁보호 현황에 대한 최근 자료 분석 결과,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 등 혈연관계를 통한 가정위탁이 92.5%로 나타나 일반가정위탁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위탁 지원 현실화를 포함한 일반가정위탁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출청소년 역시 대안양육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연도별 추이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출이유로는 부모와의 문제가 6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문제(14.3%),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10.6), 학교문제(5.1%)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학생의 경우 학업문제를 가출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전년대비 높게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이후 119개소로 유지되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가출의 주된 이유가 부모와의 문제라고 할 때 청소년들의 단기간내 원가정 복귀가 어려울 수 있어 이를 위한 중장기쉼터의 확대와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실태조사 결과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포함한 청소년관련 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6.9%), 심지어 201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2015년: 11.1%→ 2017년: 6.9%)을 보인 것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의 청소년관련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평가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2016년에 실시된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는 이전 평가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89.6점에 달하는 높은 평가점수를 보였으나, 인적자원관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장애

(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①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특수학교의 수는 170개교이며, 2015년에 비해 3개 학교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6년을 기준으로 특수학급 수는 10,065개이며, 2015년에 비해 197개의 학급이 증가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는 87,950명이며, 2015년에 비해 117명이 감소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학생 수는 장애영아 656명, 유치원 5,186명, 초등학교 33,770명, 중학교 19,793명, 고등학교 23,943명, 전공과 4,602명으로 장애영아와 중학교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교육 교원의 수는 18,772명으로 2015년에 비해 433명이 증가하였으며, 특수교육 교원의 수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Ⅲ-5-1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단위 : 교, 학급, 명)

연도	특수학교수	특수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0	150	7,792	290	3,225	35,294	19,375	19,111	2,416	79,711	15,244
2011	155	8,415	356	3,367	35,124	20,508	20,439	2,871	82,665	15,934
2012	156	8,927	403	3,675	34,458	21,535	21,649	3,292	85,012	16,727
2013	162	9,343	578	4,190	33,518	22,241	22,466	3,640	86,633	17,446
2014	166	9,617	680	4,219	33,184	22,159	22,973	4,063	87,278	17,922
2015(A)	167	9,868	742	4,744	33,591	21,108	23,422	4,460	88,067	18,339
2016(B)	170	10,065	656	5,186	33,770	19,793	23,943	4,602	87,950	18,772
B − A	3	197	−86	442	179	−1,315	521	142	−117	433

* 출처: 교육부(2016a).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②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교육 대상 아동·청소년의 수는 87,950명이며 이는 2015년보다 117명 감소한 수치이다(교육부, 2016a). 전체 특수교육 대상 아동·청소년 중 29.5%인 25,961명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었으며, 70.5%에 해당하는 61,989명은 일반학교에

배치되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46,645명으로 2015년보다 294명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15,344명으로 2015년보다 278명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1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이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1	24,741(29.9)	43,183	14,741	57,924(70.1)	82,665(100.0)
2012	24,932(29.3)	44,433	15,647	60,080(70.7)	85,012(100.0)
2013	25,522(29.5)	45,181	15,930	61,111(70.5)	86,633(100.0)
2014	25,827(29.6)	45,803	15,648	61,451(70.4)	87,278(100.0)
2015	26,094(29.6)	46,351	15,622	61,973(70.4)	88,067(100.0)
2016	25,961(29.5)	46,645	15,344	61,989(70.5)	87,950(100.0)

* 출처: 교육부(2016a).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6.

③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2016년을 기준으로 장애 청소년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 졸업생 2,460명 중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55.5%(1,354명)로 2015년 상급학교 진학률 57.5%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취업한 학생의 비율은 6.3%(155명)로 2015년 취업률 7.8%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학이나 취업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38.7%(951명)로 2015년 무직률 34.7%에 비해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보면 진학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취업률의 경우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률의 경우 2010년 16.6%에서 2016년 6.3%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직률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감소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여 이와 관련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에 발간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2월에 졸업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특수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전공과) 9,482명 중 36.6%인 3,472명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였으며, 17.9%인 1,694명은 취업하였고, 45.5%인 4,317명은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단위 : %(명))

연도	졸업자(명)	진학률(진학자수) (%, (명))	취업률(취업자수) (%, (명))	무직률(무직자수) (%, (명))
2010	2,301	47.2(1,087)	16.6(383)	36.1(831)
2011	2,428	29.9(726)	14.7(357)	55.4(1,345)
2012	2,537	29.5(748)	15.8(402)	53.9(1,367)
2013	2,536	43.5(1,104)	13.5(343)	42.9(1,089)
2014	2,615	54.8(1,433)	11.8(308)	33.4(874)
2015	2,385	57.5(1,372)	7.8(185)	34.7(828)
2016	2,460	55.0(1,354)	6.3(155)	38.7(951)

* 출처: 교육부(2016a).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p.100.

2) 생존 및 발달

(1) 사망률

①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의 사람이 그 이후 얼마나 생존할 것인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그리고 출생시 평균여명은 평균수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평균수명은 0세의 기대여명으로 출생시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한다(통계청 e-나라지표, 2016). 2016년까지의 통계청의 정부공식 통계를 토대로 기대여명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2.06세로 2005년 78.24세에 비해 3.82세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대수명이 매년 평균 약 0.42년씩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에 조사된 한국의 기대수명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78.96세, 여자의 경우 85.17세로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 보다 6.21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5년의 경우 기대수명에서 남녀 간의 차이는 6.71세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기대 수명의 차이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표 Ⅲ-5-4 0세의 기대여명 (단위 : 세)

연도	남자	여자	전체
2005	74.89	81.60	78.24
2006	75.44	82.12	78.78
2007	75.86	82.45	79.16
2008	76.25	82.96	79.60
2009	76.68	83.39	80.04
2010	76.84	83.63	80.24
2011	77.26	83.97	80.62
2012	77.57	84.17	80.87
2013	78.12	84.60	81.36
2014	78.58	85.02	81.80
2015	78.96	85.17	82.06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2016). 생명표. e-나라지표 웹 사이트.
* 주: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② 영아 · 아동 · 청소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이란 출생 후 365일 이내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수로 나눈 것이다. 이 지표는 국제적으로 국민 보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만큼 보건 수준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통계청 e-나라지표, 2016).

표 Ⅲ-5-5 연도별 영아사망률 (단위 : 명/1,000명 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신생아사망률	2.1	1.5	1.8	2.0	1.5	1.7	1.9	1.5	1.7	1.8	1.6	1.7	1.8	1.6	1.7	1.7	1.4	1.5
신생아후기사망률	1.6	1.2	1.4	1.6	1.2	1.3	1.1	1.1	1.2	1.3	1.2	1.3	1.4	1.2	1.3	1.2	1.1	1.2
영아사망률	3.7	2.7	3.2	3.4	2.7	3.0	3.1	2.7	2.9	3.1	2.9	3.0	3.2	2.8	3.0	2.9	2.5	2.7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2016). 영아사망추이. e-나라지표 웹 사이트.
* 원자료: 보건복지부.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054호).
* 주: 1) 영아사망률: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2) 통계청으로 통합된 이후 첫 조사 (2012년 실시, 2009~2011년 대상) 이후 매년 작성

2016년까지의 통계청 자료에 기초하여 기대여명의 추세를 살펴보면, 영아 사망률은 신생아 사망률과 신생아 후기 사망률을 합한 비율로 나타내는데 2015년의 경우 신생아 사망률은 1.5%,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1.2%였으며, 이 둘을 합한 영아사망률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사망률을 2015년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0세로 인구

10만명당 281.9명이었다. 그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10~14세로 8.6명이었다. 연령대별로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출생이후 10-14세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5~19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그러한 증가추세는 20~24세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들은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인 질병 이외의 사고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사망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0세에서 24세까지의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5-6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단위 : 명/10만 명 당 사망자수)

연령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0세	1,508	345.5	1,435	318.9	1,405	306.8	1,305	294.6	1,305	310.2	1,190	281.9
1-4세	386	20.9	389	20.9	377	20.2	342	18.3	289	15.4	287	15.4
5-9세	277	10.8	239	10.0	268	11.4	253	10.8	204	8.8	207	8.9
10-14세	417	12.7	402	12.6	325	10.7	272	9.5	239	8.7	220	8.6
15-19세	1,034	29.4	1,003	28.3	905	25.8	812	23.6	870	25.9	685	20.9
20-24세	1,411	45.1	1,318	41.7	1,255	38.6	1,217	36.3	1,131	32.9	1,155	32.9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웹 사이트.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③ 사고 사망률

2015년을 기준으로 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5~9세와 15~19세, 20~24세, 25~29세에서는 사고사망률이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0세와 1~4세, 10~14세는 사고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최근 6년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29세의 사고 사망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0세의 사고사망률은 2014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Ⅲ-5-7 사고 사망률 (단위 : 명/10만 명 당)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세	17.9	16.9	16.8	13.8	12.4	14.0
1~4세	6.8	5.9	5.9	5.9	4.3	4.6
5~9세	4.5	3.9	5.0	4.4	3.7	3.1
10~14세	5.8	5.3	4.7	4.0	3.1	3.9
15~19세	19.2	19.4	16.5	15.3	17.9	13.2
20~24세	32.9	29.6	26.7	25.1	22.7	21.9
25~29세	44.0	43.1	36.2	32.4	32.0	30.8

* 출처: 통계청(2016.9.27). 2015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 웹 사이트.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연령대별 사고사망의 외인을 살펴보면, 운수사고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사고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며, 1~14세까지의 연령대에서는 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자살이 가장 큰 사고사망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5세 이후부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6년간의 자살률을 살펴 볼 때에도 15세~19세 구간부터 자살로 인한 사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 추세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9세까지의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약 2~3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8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단위 : 명/10만 명 당)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0	0세	2.1	0.9	0.5	0.2	–	–	5.0
	1~4세	3.1	1.3	0.2	0.3	0.2	–	0.8
	5~9세	2.5	0.2	0.5	0.2	–	–	0.5
	10~14세	1.9	0.2	0.7	0.1	–	1.9	0.4
	15~19세	7.6	0.3	1.0	0.1	0.1	8.3	0.6
	20~24세	9.1	0.5	1.0	0.3	0.1	18.3	0.7
	25~29세	8.9	0.8	0.6	0.2	0.1	29.3	0.8
2011	0세	1.3	0.9	–	–	–	–	4.4
	1~4세	2.4	1.1	0.7	0.2	0.1	–	0.8
	5~9세	1.8	0.4	0.6	0.2	–	–	0.7
	10~14세	1.3	0.1	0.7	0.2	–	1.8	0.6
	15~19세	7.8	0.3	0.7	0.3	–	8.9	0.2
	20~24세	7.8	0.7	0.8	0.0	0.0	17.7	0.8
	25~29세	7.9	0.8	0.9	0.2	0.3	30.1	0.6
2012	0세	1.3	1.3	0.4	–	–	–	2.6
	1~4세	2.1	0.8	0.3	0.4	0.1	–	1.4
	5~9세	1.9	0.5	0.9	0.2	–	0.0	0.9
	10~14세	1.4	0.2	0.8	0.1	–	1.5	0.5
	15~19세	6.0	0.4	0.9	0.2	–	8.2	0.3
	20~24세	7.7	0.5	0.9	0.3	0.1	14.9	0.8
	25~29세	7.7	0.7	0.6	0.3	0.2	23.9	0.7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3	0세	0.5	1.1	0.2	0.2	–	–	3.4
	1~4세	2.1	1.0	0.9	0.3	0.1	–	0.9
	5~9세	2.1	0.2	0.6	0.3	–	–	0.8
	10~14세	1.1	0.3	0.4	0.1	0.0	1.3	0.5
	15~19세	5.1	0.4	0.9	0.1	0.0	7.9	0.3
	20~24세	7.0	0.5	0.7	0.1	0.1	14.5	0.6
	25~29세	7.3	0.7	0.3	0.1	0.2	21.7	0.5
2014	0세	1.7	1.4	1.0	–	–	–	1.4
	1~4세	1.2	0.9	0.3	0.1	0.1	–	1.0
	5~9세	1.3	0.3	0.6	0.1	0.0	0.1	0.9
	10~14세	0.8	0.0	0.5	0.1	–	1.1	0.4
	15~19세	8.0	0.3	0.7	0.3	–	7.2	0.5
	20~24세	5.5	0.5	0.6	0.3	0.1	13.6	0.7
	25~29세	6.7	0.4	0.4	0.2	0.2	22.4	0.4
2015	0세	0.5	0.7	–	–	–	–	5.0
	1~4세	1.9	0.6	0.5	0.1	–	–	0.8
	5~9세	1.5	0.2	0.3	0.3	–	–	0.6
	10~14세	1.2	0.3	0.4	0.1	–	1.2	0.4
	15~19세	5.0	0.2	0.4	0.2	0.0	6.5	0.4
	20~24세	5.6	0.6	0.6	0.2	0.1	13.2	0.4
	25~29세	7.4	0.7	0.6	0.3	0.2	19.9	0.4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웹 사이트
통계청(2016.9.27). 2015년 사망원인통계. p.18.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2) 안전에 대한 인식률

① 범죄 피해율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2015년에 94,650건으로 2014년의 범죄피해 건수보다 4,082건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3년부터의 추세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과 2014년에 감소추세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2015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2015년 기준 59,760건으로 2014년(56,796건)에 비해 36건 감소한 반면, 여자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34,890건으로 2014년(33,772건)에 비해 1,118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9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연도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청소년전체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2003	17,892	2,751,257	6.5	10,858	2,520,331	4.3	28,750	5,271,588	5.5
2004	25,000	2,705,387	9.2	17,038	2,463,396	6.9	42,038	5,168,783	8.1
2005	26,733	2,703,107	9.9	17,116	2,447,997	7.0	43,849	5,151,104	8.5
2006	27,526	2,729,734	10.1	17,355	2,450,374	7.1	44,881	5,180,108	8.7
2007	34,487	2,758,794	12.5	20,280	2,461,537	8.2	54,767	5,220,331	10.5
2008	38,680	2,797,367	13.8	22,580	2,480,493	9.1	61,260	5,277,860	11.6
2009	44,797	2,831,004	15.8	24,895	2,501,424	10.0	69,692	5,332,428	13.1
2010	39,695	2,841,982	14.0	24,363	2,518,442	9.7	64,058	5,360,428	12.0
2011	37,034	2,882,185	12.8	22,786	2,565,557	8.9	59,820	5,447,742	11.0
2012	65,614	2,841,888	23.1	36,657	2,539,523	14.4	102,271	5,381,411	19.0
2013	55,518	2,785,807	20.0	35,070	2,496,525	14.0	90,588	5,282,332	17.1
2014	56,796	–	–	33,772	–	–	90,568	–	–
2015	59,760	–	–	34,890	–	–	94,650	–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통계청 웹 사이트.
* 원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 주: 1) 피해율: 인구 1천 명당 피해건수 추계인구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이용
2) 청소년: 만 13세에서 만 20세

② 지역사회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지역사회 내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보면 [그림 Ⅲ-5-1]과 같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긍정적인 응답율을 기준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81.9%,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75.9%,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71%, 동네 음식점의 음식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85.6%가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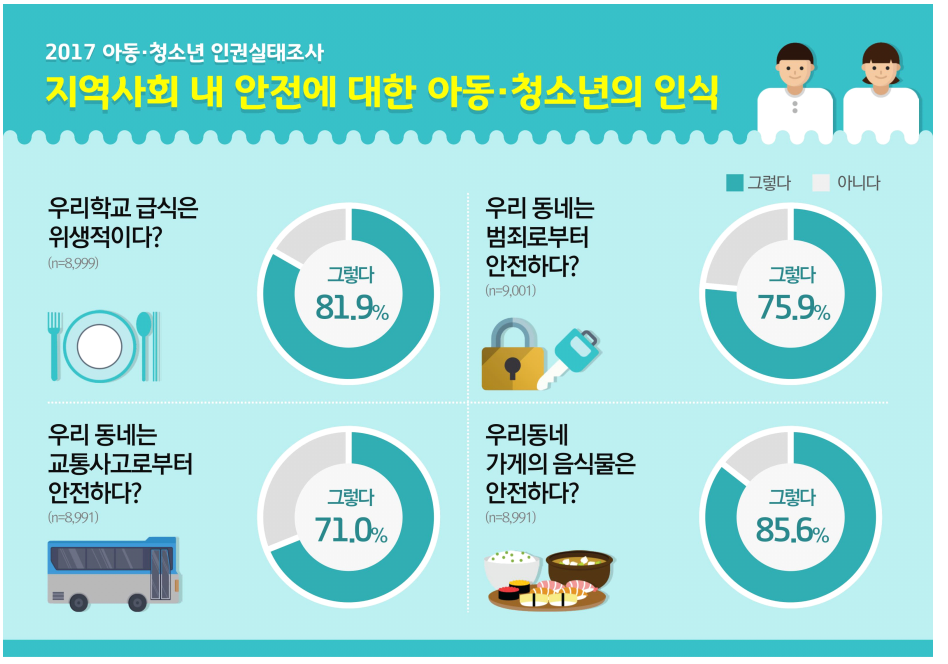

【그림 Ⅲ-5-1】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

먼저 학교 급식에 대해 안전하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우 그렇다' 24.2%, '그런 편이다' 57.7%로 학교 급식의 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81.9%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를 통해 학교 급식 안전에 관한 인식을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급식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학교 급식 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유형별로도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이 3.0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2.98점, 조손가정 2.89점의 순으로 조사되어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급식의 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10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1(0.76)	4.9	13.2	57.7	24.2	100.0(8,999)	–
성별	남자	3.02(0.80)	6.4	11.9	55.2	26.4	100.0(4,681)	85.419***
	여자	3.00(0.71)	3.4	14.6	60.3	21.7	100.0(4,318)	
학교급	초등학교	3.19(0.83)	5.7	10.1	44.0	40.3	100.0(2,597)	597.603***
	중학교	3.01(0.72)	4.3	12.9	60.8	22.0	100.0(2,906)	
	고등학교	2.88(0.70)	5.0	15.8	65.2	14.0	100.0(3,496)	
지역 규모	대도시	3.04(0.76)	4.9	12.6	56.6	25.9	100.0(3,756)	11.970
	중소도시	3.00(0.75)	4.8	13.7	58.5	23.0	100.0(3,962)	
	읍면지역	2.98(0.77)	5.5	13.5	58.1	22.8	100.0(1,28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1(0.75)	4.9	12.9	58.1	24.2	100.0(8,142)	17.630*
	한부모가정	2.98(0.77)	4.5	16.7	54.6	24.2	100.0(655)	
	조손가정	2.89(0.84)	7.0	20.7	49.2	23.2	100.0(86)	
	기타	2.98(0.85)	7.8	13.7	51.4	27.1	100.0(109)	
학업 성적	상	3.11(0.76)	4.3	11.2	54.0	30.4	100.0(3,032)	152.892***
	중	3.00(0.76)	5.2	13.1	57.9	23.8	100.0(3,853)	
	하	2.89(0.72)	5.4	16.4	62.4	15.9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3.06(0.77)	5.0	11.9	55.2	27.9	100.0(4,901)	112.588***
	중	2.98(0.73)	4.7	13.5	61.0	20.8	100.0(3,148)	
	하	2.86(0.75)	5.7	18.9	59.5	16.0	100.0(946)	

*p<.05 ***p<.001

* 주: 2017년도 조사에서는 전년도 설문문항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를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도'로 변경함.

학교 급식의 안전도에 관한 인식률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학교 급식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급식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에 78.9%에서 2014년에는 89.1%, 2015년 89.6%, 2016년 90.4%, 2017년 81.9%로 2016년까지는 매년 높아지다가 2017년에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25].

25) 통계자료집, p.176. 〈표 Ⅲ-5-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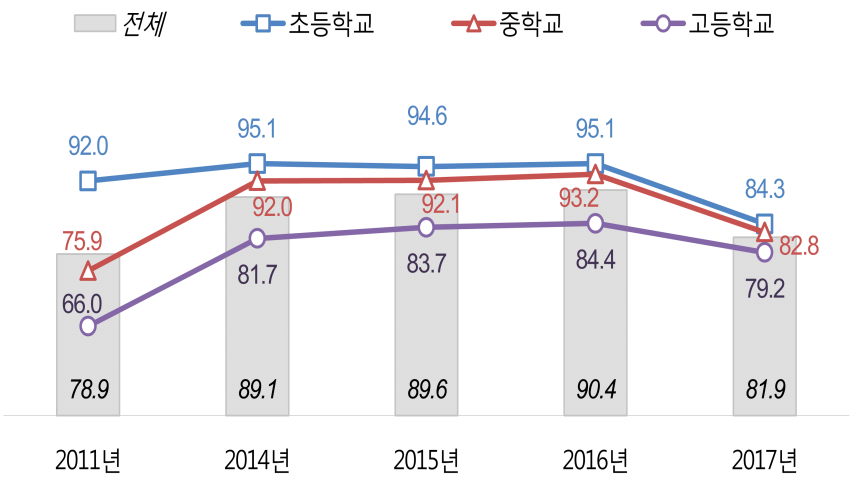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2】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연도별 추이)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을 75.9%로 부정적 응답보다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Ⅲ-5-11>). 평균 점수를 통해 집단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불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불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조사 결과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56.8%였으며, 2014년 61.3%, 2015년 64.5%, 2016년 66.5%, 2017년 75.9%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5-1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3(0.75)	4.0	20.1	54.9	21.0	100.0(9,001)	–
성별	남자	3.05(0.76)	4.0	14.1	54.5	27.4	100.0(4,681)	362.606***
	여자	2.79(0.72)	4.0	26.5	55.4	14.0	100.0(4,321)	
학교급	초등학교	3.12(0.78)	4.1	12.7	50.8	32.4	100.0(2,597)	348.643***
	중학교	2.88(0.74)	4.2	22.0	55.9	18.0	100.0(2,906)	
	고등학교	2.83(0.72)	3.9	24.0	57.2	14.9	100.0(3,498)	
지역 규모	대도시	2.95(0.75)	3.8	19.2	55.1	21.9	100.0(3,757)	15.215*
	중소도시	2.93(0.75)	3.9	20.0	55.2	20.9	100.0(3,964)	
	읍면지역	2.86(0.77)	4.9	22.9	53.7	18.5	100.0(1,28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4(0.75)	3.9	19.7	55.1	21.3	100.0(8,144)	49.127***
	한부모가정	2.80(0.73)	4.2	25.9	55.4	14.5	100.0(655)	
	조손가정	2.95(0.94)	9.6	17.4	41.1	31.9	100.0(86)	
	기타	2.91(0.86)	8.9	15.1	52.0	24.0	100.0(109)	
학업 성적	상	3.02(0.75)	3.6	16.5	54.0	25.9	100.0(3,034)	152.104***
	중	2.94(0.74)	3.7	19.7	55.6	20.9	100.0(3,852)	
	하	2.77(0.75)	5.3	25.9	54.8	14.0	100.0(2,111)	
경제적 수준	상	3.04(0.75)	3.5	15.9	54.1	26.5	100.0(4,903)	308.438***
	중	2.84(0.72)	4.1	23.0	57.4	15.4	100.0(3,147)	
	하	2.66(0.75)	6.3	32.0	51.0	10.7	100.0(946)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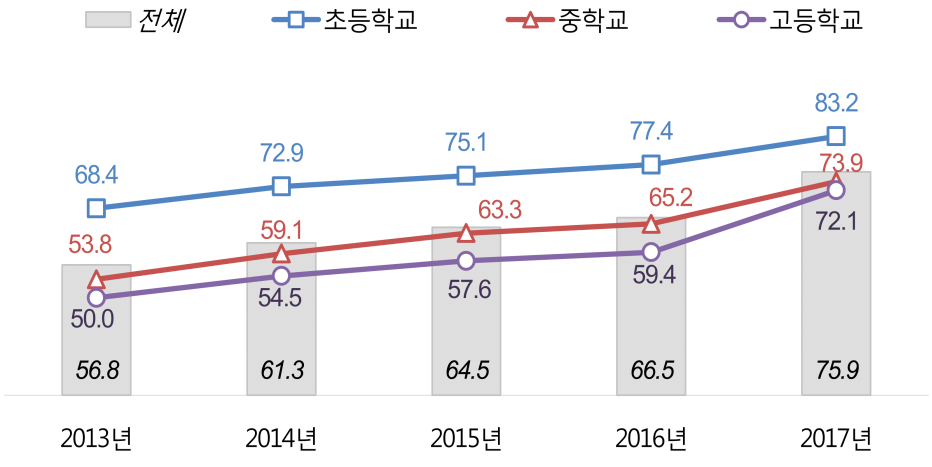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범죄) (연도별 추이)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71.0%로 긍정적 응답비율이 부정적 응답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점수를 통해 집단별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비교해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교통사고로부터 불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거주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1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2(0.75)	4.9	24.0	55.1	15.9	100.0(8,991)	–
성별	남자	2.88(0.78)	5.3	21.2	54.0	19.5	100.0(4,672)	117.287***
	여자	2.76(0.72)	4.5	27.1	56.4	12.0	100.0(4,319)	
학교급	초등학교	2.95(0.78)	4.6	19.1	52.8	23.6	100.0(2,592)	185.966***
	중학교	2.77(0.75)	5.8	25.5	55.0	13.7	100.0(2,903)	
	고등학교	2.77(0.71)	4.5	26.5	56.9	12.0	100.0(3,496)	
지역 규모	대도시	2.85(0.73)	4.1	23.0	56.4	16.5	100.0(3,757)	23.301***
	중소도시	2.81(0.76)	5.2	24.3	54.6	15.9	100.0(3,955)	
	읍면지역	2.75(0.78)	6.6	26.4	53.0	14.1	100.0(1,2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3(0.75)	4.9	23.7	55.5	16.0	100.0(8,135)	28.793***
	한부모가정	2.73(0.74)	4.9	29.7	52.7	12.7	100.0(653)	
	조손가정	2.84(0.90)	7.4	26.5	40.5	25.6	100.0(86)	
	기타	2.85(0.83)	8.2	17.7	54.8	19.3	100.0(109)	
학업 성적	상	2.88(0.77)	4.7	22.0	53.5	19.8	100.0(3,030)	98.862***
	중	2.83(0.72)	4.2	23.4	57.6	14.9	100.0(3,850)	
	하	2.70(0.77)	6.7	28.3	52.8	12.1	100.0(2,106)	
경제적 수준	상	2.90(0.75)	4.1	21.2	55.0	19.7	100.0(4,901)	207.780***
	중	2.76(0.73)	5.1	25.7	57.0	12.2	100.0(3,143)	
	하	2.57(0.77)	9.0	33.4	49.3	8.4	100.0(944)	

*$p<.05$, ***$p<.001$

거주지역의 교통사고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정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52.9%였으나 2014년에는 56.4%, 2015년에는 59.9%, 2016년에는 61.5%, 2017년에는 71.0%로 매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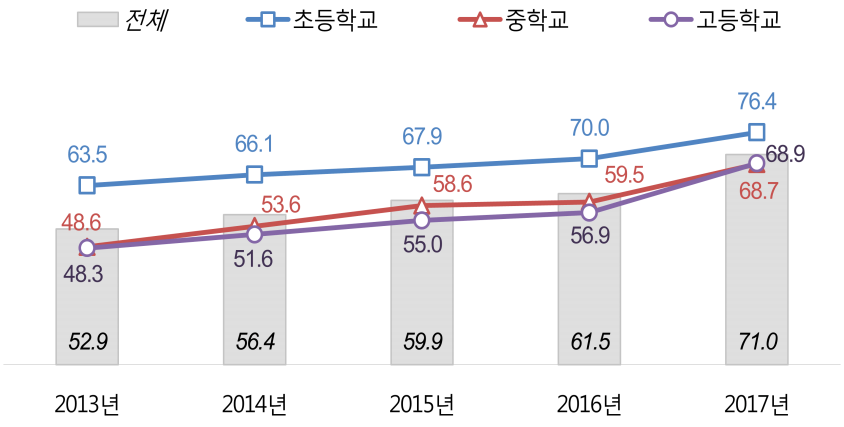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4】 거주지역의 안전수준(교통사고) (연도별 추이)

거주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85.6%로 높은 수준이었다. 평균점수를 통해 비교해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거주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거주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이 불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로 보면 거주지역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거주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이 불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거주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의 안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2014년에는 72.0%, 2015년에는 77.0%, 2016년에는 80.0%, 2017년에는 85.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학교급(초, 중, 고)이나 고등학교의 특성(일반계고, 특성화계고)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26].

26) 통계자료집, p.181, 〈표 Ⅲ-5-4-1〉 참조

표 Ⅲ-5-1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2(0.65)	2.7	11.6	66.2	19.4	100.0(8,991)	–
성별	남자	3.04(0.70)	3.7	11.6	61.8	22.9	100.0(4,672)	122.675***
	여자	3.00(0.58)	1.7	11.7	71.0	15.6	100.0(4,319)	
학교급	초등학교	3.11(0.72)	3.1	11.9	56.0	29.1	100.0(2,592)	246.447***
	중학교	3.00(0.63)	2.7	12.0	68.3	17.0	100.0(2,904)	
	고등학교	2.98(0.60)	2.5	11.2	72.1	14.2	100.0(3,496)	
지역 규모	대도시	3.07(0.62)	1.9	10.5	66.4	21.1	100.0(3,756)	40.537***
	중소도시	3.01(0.66)	3.1	11.9	66.2	18.7	100.0(3,957)	
	읍면지역	2.94(0.68)	4.1	14.0	65.5	16.5	100.0(1,2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3(0.64)	2.6	11.3	66.4	19.7	100.0(8,134)	42.212***
	한부모가정	2.95(0.63)	2.7	14.5	68.2	14.7	100.0(655)	
	조손가정	2.87(0.86)	8.4	19.0	49.6	23.0	100.0(86)	
	기타	2.88(0.79)	7.6	15.2	59.1	18.2	100.0(109)	
학업 성적	상	3.07(0.65)	2.4	10.8	64.1	22.6	100.0(3,029)	75.528***
	중	3.04(0.64)	2.3	11.5	66.3	19.8	100.0(3,851)	
	하	2.93(0.65)	4.0	13.1	69.0	13.9	100.0(2,107)	
경제적 수준	상	3.09(0.66)	2.5	10.1	63.7	23.8	100.0(4,896)	185.534***
	중	2.98(0.62)	2.7	12.0	70.0	15.3	100.0(3,144)	
	하	2.83(0.66)	4.4	18.4	66.8	10.4	100.0(946)	

***α<.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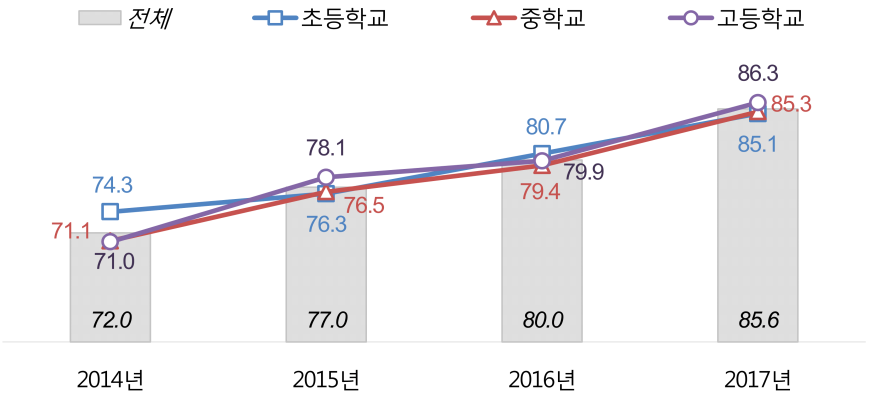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5】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음식물) (연도별 추이)

3) 보건서비스

(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①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지표는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이다. 소아 비만 유병률과 관련된 국가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까지는 소아청소년을 2세에서 18세로 보고 2~5세, 6~11세, 12~18세의 연령대로 나누어 각 연령대 별로 정상, 과체중, 비만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6세에서 18세로 조사대상 연령을 축소하고, 6~11세, 12~18세의 연령대로 나누어 비만 유병률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상과 과체중의 분율은 통계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6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6~11세, 12~18세의 연령대로 나누어 정상, 과체중, 비만 등의 비율을 모두 조사하는 방식으로 다시 변화하였다.

2015년 통계자료를 기초로 살펴보면 6~18세에 이르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은 13.9%로 2014년의 11.5%보다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2013년 이후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도 비교해 보면 6~-11세의 비만율은 2014년 5.9%에서 2015년 7.9%로 증가하였으며, 12~18세의 비만율도 2014년 15.5%에서 2015년 18.0%로 증가하였다.

표 Ⅲ-5-14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단위 : %(표준오차))

연도	연령	정상1)	과체중2)	비만3)	전체(N)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2011	전체(2–18세)	82.6(1.1)	7.7(0.8)	9.7(0.9)	1,716
	2–5세	87.8(1.8)	9.4(1.7)	2.8(0.9)	424
	6–11세	80.5(1.8)	11.1(1.5)	8.4(1.4)	632
	12–18세	82.0(1.6)	4.9(1.1)	13.1(1.5)	660
2012	전체(2–18세)	82.7(1.3)	7.8(0.8)	9.6(1.0)	1,530
	2–5세	87.5(2.3)	10.7(2.2)	1.9(1.0)	349
	6–11세	82.7(1.9)	10.3(1.6)	7.1(1.3)	557
	12–18세	80.8(1.9)	5.1(1.0)	14.1(1.7)	624

연도	연령	정상1)	과체중2)	비만3)	전체(N)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2013	전체(6–18세)	–	–	10.0(0.9)	1,291
	6–11세	–	–	6.1(1.0)	633
	12–18세	–	–	12.7(1.4)	658
2014	전체(6–18세)	80.9(1.3)	7.6(0.8)	11.5(1.1)	1015
	6–11세	83.5(1.7)	10.6(1.5)	5.9(1.1)	516
	12–18세	79.0(1.8)	5.5(1.0)	15.5(1.7)	499
2015	전체(6–18세)	78.8(1.5)	7.3(0.9)	13.9(1.2)	994
	6–11세	81.1(2.0)	11.0(1.7)	7.9(1.3)	459
	12–18세	77.2(1.9)	4.8(1.0)	18.0(1.8)	535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50, p.24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270.
* 주: 1) 정상: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Kg/㎡) 기준 85백분위수 미만
2) 과체중: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이면서 체질량지수 25미만
3) 비만: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

2015년을 기준으로 소아 청소년의 천식 유병률을 살펴보면 1~11세의 천식 유병률은 3.3%였으며, 남자의 경우 3.5%, 여자의 경우 3.1%로 남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12~-18세의 경우 전체 천식 유병률은 5.4%로 1~-11세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6.8%, 여자의 경우 3.8%로 남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중상' 6.3%, '상' 4.5%, '중하'와 '상'이 각각 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중상과 상위층의 소득층에서 천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5-15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1	천식유병률	1–11세	8.9(1.5)	606	7.6(1.4)	564	8.3(1.0)	1,170
		12–18세	3.9(1.2)	350	2.7(0.9)	306	3.3(0.7)	656
	소득수준	하	6.9(1.9)	219	7.6(2.2)	213	7.2(1.5)	432
		중하	7.2(2.1)	245	5.6(1.9)	216	6.4(1.4)	461
		중상	5.2(1.7)	246	3.1(1.5)	213	4.2(1.2)	459
		상	5.5(1.8)	239	4.1(1.4)	218	4.9(1.1)	457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2	천식유병률	1–11세	6.4(1.2)	560	3.5(1.0)	441	5.0(0.8)	1,001
		12–18세	3.3(1.2)	331	3.7(1.3)	278	3.5(0.9)	609
	소득수준	하	7.2(2.1)	218	5.2(1.9)	172	6.2(1.4)	390
		중하	4.6(1.4)	220	3.0(1.4)	178	3.8(1.0)	398
		중상	3.5(1.4)	222	2.7(1.1)	185	3.1(0.9)	407
		상	4.0(1.4)	226	3.1(1.7)	176	3.6(1.1)	402
2013	천식유병률	1–11세	7.8(1.3)	581	3.8(0.9)	526	5.9(0.9)	1,107
		12–18세	4.4(1.2)	331	5.8(1.7)	315	5.0(1.0)	646
	소득수준	하	6.5(1.9)	228	4.3(1.6)	209	5.4(1.3)	437
		중하	7.9(2.1)	224	5.5(1.5)	206	6.7(1.4)	430
		중상	5.1(1.5)	243	6.5(2.5)	211	5.8(1.5)	454
		상	5.6(1.9)	210	2.3(1.1	210	4.0(1.2)	420
2014	천식유병률1)	1–11세	3.8(1.0)	511	2.4(1.0)	457	3.1(0.7)	968
		12–18세	3.5(1.3)	261	3.0(1.1)	230	3.3(0.8)	491
	소득수준2)	하	1.9(0.9)	185	4.1(1.8)	168	2.9(1.0)	353
		중하	5.2(1.6)	196	5.0(2.4)	171	5.1(1.5)	367
		중상	3.5(1.9)	198	1.0(0.7)	173	2.3(1.0)	371
		상	3.3(1.4)	187	0.3(0.3)	173	1.9(0.7)	360
2015	천식유병률1)	1–11세	3.5(1.0)	417	3.1(0.9)	367	3.3(0.7)	804
		12–18세	6.8(1.6)	289	3.8(1.3)	240	5.4(1.0)	529
	소득수준2)	하	4.3(1.7)	176	2.0(1.3)	150	3.2	326
		중하	2.3(1.1)	181	4.1(1.5)	160	3.2	341
		중상	9.3(2.4)	176	3.0(1.5)	157	6.3	333
		상	4.5(1.9)	169	4.5(1.9)	157	4.5	326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p.28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p.317.
* 주: 1) 천식유병률: 의사로부터 천식 진단을 받은 본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25–50%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의 변화를 보면 1~11세의 천식 유병률은 2011년 8.3%에서 2014년 3.1%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5년에는 다시 3.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18세의 천식 유병률은 2011년 3.3%에서 2013년 5.0%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3.3%로 감소, 2015년에는 5.4%로 다시 증가하는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11세 천식 유병률은 2011년 8.9%에서 2015년 3.5%로 감소하였으며, 12~18세 천식 유병률은 2011년에 3.9%에서 2015년에 6.8%로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 1~11세 천식 유병률은 2011년 7.6%에서 2015년 3.1%로 감소한 반면, 12~18세 천식 유병율은 2011년의 경우 2.7%에서 2015년 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16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1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0.6(0.3)	606	1.0(0.5)	564	0.8(0.3)	1,170
		12–18세	0.0(–)	351	0.7(0.4)	306	0.3(0.2)	657
	아토피피부염	1–11세	12.0(1.6)	606	13.4(1.8)	564	12.7(1.2)	1,170
		12–18세	7.0(1.4)	351	13.1(2.0)	306	9.8(1.3)	657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9(0.5)	606	0.4(0.3)	564	0.7(0.3)	1,170
		12–18세	0.7(0.4)	351	0.4(0.2)	306	0.5(0.2)	657
	요로감염	1–11세	3.3(0.9)	606	2.4(0.7)	564	2.9(0.6)	1,170
		12–18세	1.6(0.8)	351	0.4(0.3)	306	1.0(0.5)	657
	폐렴	1–11세	12.1(1.7)	606	11.8(2.0)	564	12.0(1.4)	1,170
		12–18세	4.2(1.2)	351	4.6(1.6)	306	4.4(1.0)	657
2012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3(0.8)	560	1.0(0.6)	441	1.1(0.5)	1001
		12–18세	0.0(–)	332	1.3(0.8)	278	0.6(0.4)	610
	아토피피부염	1–11세	15.6(2.2)	560	14.1(2.0)	441	14.9(1.6)	1001
		12–18세	8.8(1.9)	332	13.3(2.5)	278	10.9(1.5)	610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6(0.4)	560	0.3(0.2)	441	0.5(0.2)	1001
		12–18세	1.4(0.7)	332	0.6(0.4)	278	1.0(0.4)	610
	요로감염	1–11세	2.4(0.8)	560	1.6(0.6)	441	2.0(0.5)	1001
		12–18세	1.1(0.8)	332	0.7(0.5)	278	0.9(0.5)	610
	폐렴	1–11세	16.2(2.2)	560	15.2(2.4)	441	15.7(1.8)	1001
		12–18세	7.9(2.0)	332	6.8(1.8)	278	7.4(1.4)	610
2013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4(0.6)	581	2.1(0.8)	526	1.7(0.5)	1,107
		12–18세	0.7(0.5)	330	1.9(0.8)	315	1.3(0.5)	645
	아토피피부염	1–11세	19.1(1.8)	581	18.8(2.1)	526	19.0(1.5)	1,107
		12–18세	10.0(1.9)	331	19.2(2.5)	315	14.4(1.5)	646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1.2(0.5)	581	0.0(–)	526	0.6(0.3)	1,107
		12–18세	2.7(1.0)	330	2.2(0.9)	315	2.5(0.7)	645
	요로감염	1–11세	5.3(1.1)	581	4.9(1.1)	526	5.1(0.8)	1,107
		12–18세	1.5(0.5)	331	1.5(0.7)	315	1.5(0.4)	646
	폐렴	1–11세	17.7(2.1)	581	17.7(1.8)	526	17.7(1.6)	1,107
		12–18세	7.9(1.8)	330	6.9(1.8)	315	7.4(1.3)	645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4	선천성심장질환1)	1–11세	0.2(0.2)	512	0.9(0.5)	457	0.6(0.2)	969
		12–18세	0.4(0.4)	261	1.8(1.1)	230	1.1(0.6)	491
	아토피피부염2)	1–11세	15.7(2.0)	511	11.1(1.7)	457	13.5(1.3)	968
		12–18세	10.8(2.1)	260	15.6(2.7)	230	13.1(1.7)	490
	주의력결핍장애3)	1–11세	1.9(0.6)	512	0.0(–)	457	1.0(0.3)	969
		12–18세	2.2(1.0)	261	1.4(1.0)	230	1.8(0.7)	491
	요로감염4)	1–11세	2.8(0.7)	511	2.5(0.8)	456	2.7(5.0)	967
		12–18세	1.5(0.8)	261	1.1(0.7)	230	1.3(0.6)	491
	폐렴5)	1–11세	14.6(1.7)	512	12.3(1.6)	457	13.5(1.2)	969
		12–18세	4.6(1.2)	261	7.5(1.9)	230	6.0(1.1)	491
2015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0(0.5)	417	1.4(0.6)	387	1.2(0.4)	804
		12–18세	0.8(0.5)	289	0.5(0.4)	240	0.7(0.3)	529
	아토피피부염	1–11세	18.7(2.0)	416	10.6(1.6)	387	14.9(1.3)	804
		12–18세	14.3(2.2)	289	16.8(2.5)	240	15.5(1.7)	529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1.4(0.6)	417	0.3(0.3)	387	0.9(0.4)	804
		12–18세	3.1(1.1)	289	0.4(0.4)	240	1.9(0.6)	529
	요로감염	1–11세	3.3(0.8)	417	3.9(1.1)	387	3.6(0.7)	804
		12–18세	1.6(1.0)	289	0.9(0.5)	240	1.3(0.6)	529
	폐렴	1–11세	15.2(2.1)	417	12.5(1.9)	387	13.9(1.5)	804
		12–18세	6.7(17)	289	6.3(2.0)	240	6.5(1.3)	529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p.28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p.323.
* 주: 1) 선천성심장질환 유병률: 의사로부터 선천성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율
2)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율
3) 주의력결핍장애 유병률: 의사로부터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은 분율
4) 요로감염 유병률: 의사로부터 요로감염 진단을 받은 분율
5) 폐렴 유병률: 의사로부터 폐렴 진단을 받은 분율
6) 분율 0.1%미만으로 표준오차 비제시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25–50%, **변동계수 50% 이상

2015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소아청소년의 각 질환별 유병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11세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 14.9%, 폐렴 13.9%로 두 개의 질환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2~18세의 경우에도 아토피 피부염이 15.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폐렴이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질환별 유병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I-5-16>). 선천성심장질환과 아토피 피부염은 1~11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 감소, 2015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12~18세의 경우에는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 감소, 2015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주의력결핍장애의 경우 1~11세는 0.5%에서 1.0%의 범위 안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12~18세의 경우에도 0.5%에서 2..5%의 폭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요로감염의 경우 1~11세는 2.0%에서 5.1%의 범위 안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18세의 경우에도 유병률은 0.9%에서 1.5% 범위 안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폐렴은 1~11세의 경우와 12~18세의 경우 모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4년에는 감소, 2015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보건교사 배치 현황

2016년 현재 전체 학교수는 11,733개교이며 총 7,547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보건교사 배치율은 6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84.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68.8%, 고등학교 6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가 51.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17 2016년도 보건교사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 수	6,001	3,209	2,353	170	11,733
보건교사배치	4,126 (68.8)	1,663 (51.8)	1,614 (68.6)	144 (84.7)	7,547 (64.3)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c). 2016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최근 5년간 보건교사 배치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2015년에 소폭 감소, 2016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4년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5.4%였지만 2015년에는 63.9%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64.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18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건교사 배치율	65.4	65.5	64.9	65.4	63.9	64.3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c). 2016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③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포함한 지역의 건강관련 시설의 수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시설 수는 66,692개소이며, 이 중 의원이 전체 시설의 44.0%인 29,363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이며, 치과의원 24.9%, 한의원 20.4% 등의 순으로 건강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 5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 건강관련 시설의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 병·의원시설 중 의원, 특수병원 중 한센 및 정신병원 관련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시설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19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단위 : 개(%))

연도	보건시설			병·의원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결핵	한센	정신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2010	253 (0.4)	1,294 (2.2)	1,912 (3.2)	312 (0.5)	849 (1.4)	1,154 (1.9)	27,334 (46.0)	3 (0.0)	1 (0.0)	143 (0.2)	188 (0.3)	14,074 (23.7)	159 (0.3)	11,804 (19.8)	59,480 (100.0)
2011	253 (0.4)	1,305 (2.1)	1,908 (3.1)	319 (0.5)	975 (1.6)	1,245 (2.0)	27,909 (45.2)	3 (0.0)	1 (0.0)	144 (0.2)	199 (0.3)	15,002 (24.3)	178 (0.3)	12,305 (19.9)	61,746 (100.0)
2012	254 (0.4)	1,315 (2.1)	1,895 (3.0)	323 (0.5)	1,087 (1.7)	1,327 (2.1)	28,762 (45.8)	3 (0.0)	1 (0.0)	156 (0.2)	202 (0.3)	14,800 (23.6)	199 (0.3)	12,440 (19.8)	62,764 (100.0)
2013	253 (0.3)	1,323 (2.0)	1,900 (3.0)	324 (0.5)	1,228 (1.9)	1,331 (2.1)	28,816 (44.9)	3 (0.0)	1 (0.0)	160 (0.2)	200 (0.3)	15,579 (24.3)	203 (0.3)	12,816 (20.0)	64,137 (100.0)
2014	254 (0.3)	1,339 (2.0)	1,904 (2.8)	321 (0.4)	1,304 (1.9)	1,436 (2.1)	30,689 (45.9)	3 (0.0)	2 (0.0)	170 (0.3)	202 (0.3)	15,933 (23.8)	234 (0.3)	13,135 (19.6)	66,926 (100.0)
2015	243 (0.4)	1,313 (2.0)	1,906 (2.9)	337 (0.5)	1,335 (2.0)	1,492 (2.2)	29,363 (44.0)	3 (0.0)	1 (0.0)	37 (0.1)	213 (0.3)	16,584 (24.9)	260 (0.4)	13,605 (20.4)	66,692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16a).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pp.193-195.
* 원자료: 의료기관정책과(2010-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년)
* 주: 2015년 이전자료는 보건소에서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보고통계, 2015년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임(시도보고통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기준 등의 차이로 통계 현황 다를 수 있음)

(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하였던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2012년까지 국민건강통계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3년에 국민건강 통계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2014년부터 다시 국민건강통계에 포함되었다(김영지 외, 2016: 319-312). 2015년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살펴보면 49.3%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45.2%에서 2012년 49.7%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 47.8%로 다소 감소, 2015년에 49.3%로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구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어릴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는 '하'가 5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 49.3%, '중하' 48.0%, '중상' 47.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5-20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0	2,115	509	516	532	524
	분율	73.9	57.4	31.7	16.3	45.2	39.3	46.9	49.7	46.1
	(표준오차)	(2.2)	(2.6)	(3.1)	(2.5)	(1.9)	(3.3)	(3.2)	(3.5)	(3.4)
2011	N	537	631	307	349	1,824	431	461	459	456
	분율	74.0	56.6	36.0	24.2	47.3	42.4	49.6	49.6	50.1
	(표준오차)	(2.7)	(2.9)	(3.8)	(2.7)	(2.0)	(3.9)	(3.6)	(3.8)	(3.9)
2012	N	446	550	315	294	1,605	289	298	403	402
	분율	78.6	59.7	38.3	23.5	49.7	48.0	50.5	51.1	48.4
	(표준오차)	(2.9)	(2.7)	(4.0)	(3.0)	(1.9)	(3.5)	(3.8)	(3.6)	(3.7)
2013	N	–	–	–	–	–	–	–	–	–
	분율	–	–	–	–	–	–	–	–	–
	(표준오차)									
2014	N	457	501	221	262	1,441	347	364	366	356
	분율	79.2	55.2	31.4	20.1	47.8	51.4	49.8	45.2	44.9
	(표준오차)	(2.0)	(3.2)	(3.7)	(2.7)	(2.0)	(4.1)	(3.4)	(3.4)	(3.3)
2015	N	346	452	239	288	1,325	321	341	332	324
	분율	76.7	56.2	42.1	19.8	49.3	53.1	48.0	47.4	49.3
	(표준오차)	(2.6)	(3.2)	(3.5)	(2.9)	(2.1)	(4.1)	(4.2)	(3.9)	(3.6)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12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p.139.

* 주: 1)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본인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6: 320).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3.9%였으며 이는 2012년 7.8%보다 3.9%p 감소한 수치이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하'가 5.0%로 미치료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하' 4.0%, '상' 3.7%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상'이 3.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간의 자료를 통해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5-21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1	2,116	510	516	532	524
	분율 (표준오차)	2.7 (0.6)	5.8 (1.0)	10.1 (1.8)	11.1 (2.1)	7.4 (0.8)	9.1 (1.9)	7.0 (1.4)	5.7 (1.1)	7.2 (1.7)
2011	N	538	632	307	349	1,826	432	461	459	457
	분율 (표준오차)	6.1 (1.5)	4.8 (1.2)	7.3 (1.7)	10.6 (2.0)	7.2 (0.9)	9.4 (2.4)	6.6 (1.6)	4.8 (1.3)	7.9 (1.9)
2012	N	447	554	315	294	1,610	390	398	407	402
	분율 (표준오차)	5.2 (2.0)*	4.8 (1.1)	8.7 (2.0)	12.5 (2.0)	7.8 (0.9)	7.6 (1.6)	9.9 (2.3)	8.1 (1.8)	5.6 (1.6)*
2013	N	485	622	292	353	1,752	437	429	454	420
	분율 (표준오차)	0.8 (0.4)	3.4 (0.9)	3.6 (1.1)	11.2 (1.9)	5.0 (0.7)	7.7 (1.7)	4.7 (1.2)*	4.9 (1.4)	2.3 (0.7)
2014	N	462	507	222	267	1,458	354	367	369	360
	분율 (표준오차)	1.0 (0.6)	2.8 (0.9)	7.9 (1.8)	8.3 (1.9)	4.7 (0.7)	5.2 (1.7)	4.7 (1.3)	5.9 (1.5)	2.4 (0.9)
2015	N	348	456	240	289	1,333	326	341	333	326
	분율 (표준오차)	1.7 (0.8)	3.4 (1.0)	4.3 (1.8)	6.5 (1.6)	3.9 (0.7)	5.0 (1.5)	4.0 (1.2)	3.2 (1.2)	3.7 (1.2)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32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141.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 25-50%, **: 50% 이상.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은 최근 1년간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6: 321). 2015년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은 10.9%로 2014년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11.8%보다 0.9%p 감소하였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5세-18세 18.3%, 6세-11세 11.0% 등의 순이었으며,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하' 15.3%, '중하'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25.3%에서 2015년 10.9%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5-22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69	359	2,112	510	514	531	523
	분율 (표준오차)	14.5 (1.7)	21.0 (2.4)	26.2 (2.8)	38.6 (3.5)	25.3 (1.5)	33.2 (2.9)	25.3 (3.2)	20.6 (2.2)	19.4 (2.2)
2011	N	538	632	308	347	1,825	433	459	459	457
	분율 (표준오차)	15.2 (2.0)	12.4 (1.8)	16.1 (2.4)	31.9 (2.6)	19.3 (1.1)	22.7 (2.1)	19.1 (2.6)	17.5 (2.3)	16.2 (2.3)
2012	N	447	554	314	294	1,609	389	399	406	402
	분율 (표준오차)	10.6 (1.8)	12.6 (1.8)	18.2 (2.6)	30.4 (2.9)	18.2 (1.3)	21.9 (2.5)	18.2 (2.4)	13.7 (2.7)	18.4 (3.2)
2013	N	485	622	289	349	1,745	436	430	451	416
	분율 (표준오차)	8.6 (1.8)	8.3 (1.5)	13.9 (2.2)	23.1 (2.8)	13.4 (1.1)	19.4 (26)	13.7 (2.0)	10.9 (1.8)	9.2 (1.8)
2014	N	462	507	224	265	1,458	353	367	371	359
	분율 (표준오차)	7.3 (1.4)	9.2 (1.8)	8.5 (2.1)	21.3 (2.9)	11.8 (1.1)	15.2 (2.3)	12.3 (1.9)	5.7 (1.5)	13.2 (2.5)
2015	N	347	456	240	289	1,332	325	341	333	326
	분율 (표준오차)	6.1 (1.5)	11.0 (1.9)	6.2 (1.7)	18.3 (2.4)	10.9 (1.0)	15.3 (2.6)	12.0 (1.9)	6.3 (1.4)	10.0 (2.0)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12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141.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 25-50%, **: 50% 이상

아동·청소년의 약국 이용률은 최근 2주간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율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의 약국 이용률은 2013년까지는 국민건강통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4년부터 국민건강통계에서 제외되었다(김영지 외, 2016: 322). 2013년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의 최근 2주간 약국 이용률은 25.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7].

27) 세부적인 내용은 2016년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를 참고 하면 된다.

표 Ⅲ-5-23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이용률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1	2,116	510	516	532	524
	분율 (표준오차)	43.1 (2.8)	23.3 (2.0)	20.3 (2.7)	14.6 (2.2)	24.8 (1.5)	24.1 (2.5)	26.8 (2.8)	22.0 (2.2)	26.3 (2.6)
2011	N	537	631	308	349	1,825	433	459	459	457
	분율 (표준오차)	42.3 (3.6)	23.5 (1.9)	18.6 (2.8)	25.0 (2.9)	27.1 (1.5)	25.0 (2.6)	26.6 (2.9)	25.8 (2.9)	31.9 (2.5)
2012	N	447	554	315	295	1,611	390	399	407	402
	분율 (표준오차)	48.3 (3.8)	22.6 (2.7)	15.9 (2.5)	20.4 (2.9)	26.6 (1.4)	24.3 (2.9)	28.3 (2.8)	27.2 (2.9)	27.1 (3.0)
2013	N	485	622	293	353	1,753	438	430	453	420
	분율 (표준오차)	39.6 (2.8)	22.8 (1.9)	17.7 (2.4)	22.1 (2.6)	25.8 (1.2)	27.1 (2.5)	25.3 (2.4)	24.9 (2.5)	26.4 (2.5)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 p.27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통계. p.25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통계. p.35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337.
* 주: 1) 2주간 약국이용률: 최근 2주간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① 흡연율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6: 323). 2016년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흡연율은 6.3%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15년 흡연율 7.8%보다 1.5%p 감소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2.5%,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9.5%로 나타났다. 각 학년별로 흡연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의 흡연율이 0.8%로 조사되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율은 12.0%로 나타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흡연율 변화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9년에는 12.8%에서 2010년에는 12.1%, 2011년에는 12.1%, 2012년에는 11.4%, 2013년에는 9.7%, 2014년에는 9.2%, 2015년에는 7.8%, 2016년에는 6.3%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5-24 현재 흡연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12.8	8.3	17.5	4.7	8.7	11.3	16.0	17.9	18.6
2010	12.1	8.0	16.2	4.9	8.7	10.4	14.8	15.6	18.1
2011	12.1	8.1	16.1	4.4	8.7	10.9	15.5	16.1	16.9
2012	11.4	7.2	15.4	3.6	6.9	10.9	14.0	15.9	16.3
2013	9.7	5.5	13.8	2.3	5.5	8.6	12.1	14.3	15.0
2014	9.2	4.7	13.5	1.7	4.1	7.9	11.3	13.5	15.7
2015	7.8	3.3	11.7	0.9	3.2	5.3	9.1	11.9	14.0
2016	6.3	2.5	9.5	0.8	2.3	4.2	7.1	9.4	12.0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6-37.
* 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② 음주율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6: 324). 2016년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음주율은 15.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의 평균 음주율 16.7%에 비해 1.7%p 감소한 수치이다. 중학생의 음주율은 6.5%, 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1.9%로 고등학생의 음주율이 중학생의 음주율보다 약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의 음주율은 3.7%, 고등학교 3학년의 음주율은 26.9%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율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015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년도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25 현재 음주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21.1	13.3	29.1	9.5	13.4	16.8	24.6	31.1	31.8
2010	21.1	13.3	28.9	9.6	12.8	17.3	24.4	30.2	32.1
2011	20.6	12.0	29.0	8.3	11.8	15.6	24.3	30.6	32.3
2012	19.4	10.3	28.2	6.6	9.8	14.3	22.4	30.0	32.2
2013	16.3	8.3	23.8	5.4	7.8	11.7	17.6	26.5	27.3
2014	16.4	8.3	24.6	4.9	7.5	12.2	18.2	25.6	29.8
2015	16.7	7.4	24.9	4.6	7.1	10.0	17.6	27.5	29.5
2016	15.0	6.5	21.9	3.7	5.9	9.6	16.6	22.4	26.9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92-93.
* 주: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③ 기타 약물 사용률

표 Ⅲ-5-26 평생 약물 경험률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학생	0.9	0.8	0.6	0.5	0.6	–	0.5
여학생	0.5	0.5	0.6	0.4	0.4	–	0.3
전 체	0.7	0.7	0.6	0.5	0.5	–	0.5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18-319.
* 주: 평생 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 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평생 약물 경험률은 11차 온라인 조사통계의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기에 2015년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지표이다(김영지 외, 2016: 325). 따라서 2015년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평생약물 경험률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전체 학생의 평생 약물 경험률은 0.5%로 2014년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없었으며, 남학생의 평생 약물 경험률은 0.5%, 여학생의 경우 0.3%로 남학생의 약물 경험률이 여학생 보다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약물 경험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2012년, 남학생의 경우 2014년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④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은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과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6: 325). 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은 65.3%로 2015년 59.6%보다 5.7%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중학생 71.4%, 고등학생이 60.2%로 중학생의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학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의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이 72.5%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중학교 2학년 71.4%, 중학교 3학년 70.5%, 고등학교 1학년 64.6%, 고등학교 2학년 6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51.5%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Ⅲ-5-27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56.2	64.8	47.6	67.7	64.4	62.3	56.5	51.0	35.2
2011	54.1	62.6	45.7	64.0	63.2	60.6	54.0	48.4	34.3
2012	61.4	68.3	54.8	67.5	68.9	68.5	59.8	59.2	45.3
2013	61.9	68.7	55.4	67.4	70.0	68.8	60.1	59.2	47.1
2014	57.5	63.5	51.9	63.3	64.0	63.3	55.5	55.1	45.2
2015	59.6	65.7	54.2	64.0	67.5	65.5	57.6	59.8	45.5
2016	65.3	71.4	60.2	72.5	71.4	70.5	64.6	64.5	51.5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72.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6: 326). 2016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38.8%였으며, 2015년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34.6%보다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46.8%로 고등학생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32.2%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이 49.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학년 47.4%, 중학교 3학년 44.1%, 고등학교 1학년 36.5%, 고등학교 2학년 35.3%, 고등학교 3학년 2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 부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28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36.3	46.6	26.1	53.5	45.8	40.7	33.2	28.5	16.5
2011	35.2	46.0	24.5	50.2	47.3	40.7	30.7	25.7	17.0
2012	34.3	44.3	24.6	47.1	44.6	41.6	29.9	25.9	18.1
2013	38.0	49.2	27.2	51.0	51.3	45.5	33.4	28.9	19.4
2014	33.1	42.0	24.8	45.5	41.5	39.5	30.6	25.3	18.8
2015	34.6	42.8	27.3	45.5	44.4	39.4	32.9	29.7	19.7
2016	38.8	46.8	32.2	49.3	47.4	44.1	36.5	35.3	24.7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24.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1) 건강에 대한 인식

① 주관적 건강평가

본 연구의 인권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조사한 결과(<표 Ⅲ-5-29>), 긍정적 응답(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비율이 전체 87.7%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긍정적인 응답이 여학생보다 약 2%정도 더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다(초: 93%, 중: 88.5%, 고: 83%). 양부모가정 응답자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88.3%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에서는 가장 낮은 81.1%로 나타났다.

표 Ⅲ-5-29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3.19(0.66)	1.0	11.3	55.4	32.3	100.0(9,000)	–
성별	남자	3.24(0.68)	1.3	10.2	51.5	37.1	100.0(4,681)	113.340***
	여자	3.13(0.64)	0.7	12.6	59.6	27.1	100.0(4,319)	
학교급	초등학교	3.36(0.63)	0.6	6.4	49.2	43.8	100.0(2,598)	328.767***
	중학교	3.19(0.65)	1.1	10.4	56.9	31.6	100.0(2,904)	
	고등학교	3.06(0.67)	1.2	15.8	58.7	24.3	100.0(3,49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0(0.66)	0.9	10.9	55.5	32.8	100.0(8,142)	106.785***
	한부모가정	3.04(0.69)	1.4	17.6	56.7	24.4	100.0(655)	
	조손가정	3.25(0.75)	2.0	12.6	44.3	41.2	100.0(86)	
	기타	3.16(0.85)	8.0	5.4	49.3	37.3	100.0(109)	
학업 성적	상	3.29(0.66)	1.0	8.3	51.5	39.2	100.0(3,034)	228.967***
	중	3.20(0.63)	0.7	9.9	58.2	31.2	100.0(3,854)	
	하	3.03(0.69)	1.4	18.3	55.9	24.4	100.0(2,108)	
경제적 수준	상	3.30(0.65)	0.7	8.3	51.2	39.8	100.0(4,903)	459.262***
	중	3.11(0.63)	1.0	11.9	62.2	24.9	100.0(3,146)	
	하	2.88(0.72)	2.4	25.0	54.5	18.1	100.0(946)	

***α<.001

학업성적(상: 90.7%→중: 89.4%→하: 80.3%)과 경제적수준(상: 91%→중: 87.1%→하: 72.6%)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특히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다른 배경변인별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집단특성 및 유형별 비교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7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평가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5-6],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는 긍정적 응답의 합이 2013년에 83.6%를 나타낸 이후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92~93% 내외로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학생은 일부 증감을 기록하여 2013년 이후로는 85~88%정도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긍정적인 답변은 대체로 75~78% 내외를 기록하다가, 2017년에 80%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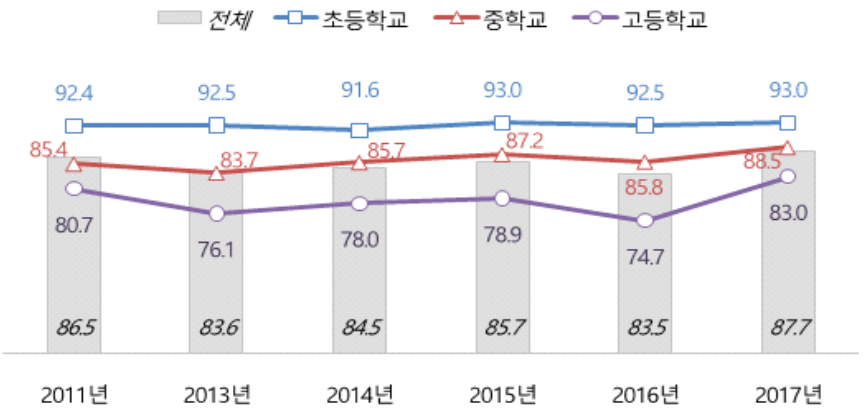

* 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6】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도별 추이)

(2) 신체적 건강

① 운동 실천율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의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그림 Ⅲ-5-7], <표 Ⅲ-5-30> 참조), 전체 응답자 중 23%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1~2회 정도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는 응답도 비슷한 수준인 21.3%로 나타났다.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1~2회 이상 운동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3.8%, 일주일에 3회 이상은 31.9%로 나타나, 일주일에 1회 이상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절반을 약간 넘는 55.7%정도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비율이 남학생은 15.3%인데 비해, 여학생은 전체 1/3 정도인 31.3%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1~2회 이상 운동한다는 비율 역시 남학생은 68%가 넘는 것에 비해, 여학생은 약 42%수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여자청소년들의 운동실천율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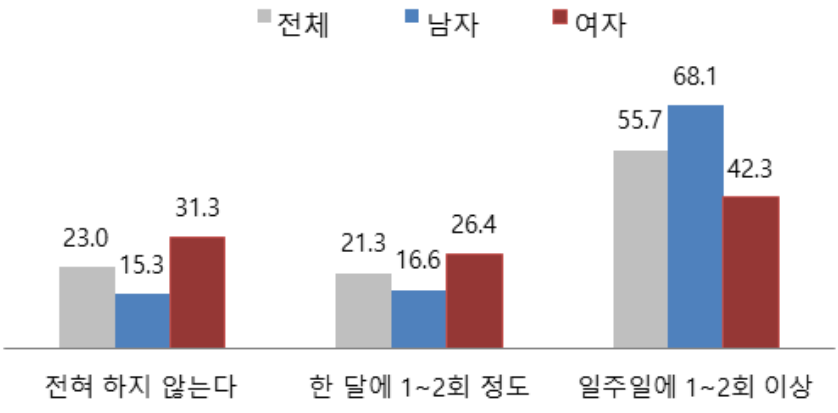

* 주: 단위는 비율(%)

【그림 Ⅲ-5-7】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율(성별)

학교급별로는 건강을 위해 한 달에 1회 이상 운동한다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90.3%, 중학생이 77.1%, 고등학생이 67.1%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운동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율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Ⅲ-5-8]과 같다. 특히 고등학생들 중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 학생을 구분해서 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학진학으로 인한 학업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일반계고 학생에게서 34.3%로 나타나 특성화계고 학생 응답률인 27.3%보다 높았다[28].

28) 통계자료집 p.184 〈표 Ⅲ-5-6-1〉 참조. 해당 표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반계고의 운동 실천율이 특성화계고 학생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학업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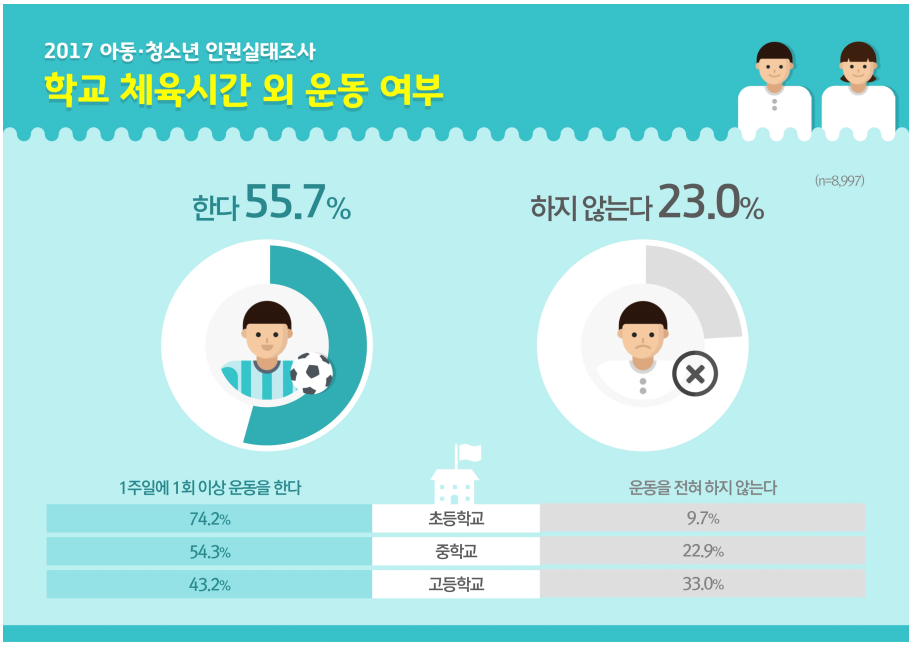

【그림 Ⅲ-5-8】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율(학교급별)

<표 Ⅲ-5-30>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의 지역규모별 차이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대도시: 22.6%, 중소도시: 22.1%, 읍면지역: 27.1%). 가족유형별 비교에서는 한달에 한번이상 운동한다는 응답기준으로 양부모가정(77.3%), 조손가정(89.6%), 기타가정(78.7%) 등에 비해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운동실천율이 7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상: 80.3%→중: 77.5%→하: 71.2%)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81.8%→중: 71.8%→하: 69.4%)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5-30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3.0	21.3	23.8	31.9	100.0(8,997)	–
성별	남자	15.3	16.6	25.4	42.7	100.0(4,676)	716.158***
	여자	31.3	26.4	22.1	20.2	100.0(4,320)	
학교급	초등학교	9.7	16.1	25.1	49.1	100.0(2,598)	776.645***
	중학교	22.9	22.8	25.3	29.0	100.0(2,904)	
	고등학교	33.0	23.9	21.7	21.5	100.0(3,494)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22.6	21.1	24.7	31.6	100.0(3,753)	21.399**
	중소도시	22.1	21.1	23.7	33.1	100.0(3,963)	
	읍면지역	27.1	22.4	21.5	29.0	100.0(1,28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2.7	21.4	24.0	31.9	100.0(8,142)	37.754***
	한부모가정	28.4	21.7	22.1	27.8	100.0(653)	
	조손가정	10.4	19.3	17.6	52.7	100.0(86)	
	기타	21.3	14.1	23.2	41.4	100.0(108)	
학업 성적	상	19.7	19.9	24.5	35.9	100.0(3,034)	91.900***
	중	22.4	21.6	25.0	30.9	100.0(3,854)	
	하	28.8	22.7	20.6	27.9	100.0(2,105)	
경제적 수준	상	18.2	19.7	25.3	36.8	100.0(4,898)	219.523***
	중	28.2	22.5	22.9	26.4	100.0(3,149)	
	하	30.6	25.3	19.5	24.6	100.0(945)	

**p<.01, ***p<.001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5-9]), 적어도 한달에 1회 이상 운동을 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2014년에 80.7%를 기록한 이후 2015년 78.9%, 2016년 77.5%, 2017년 77%로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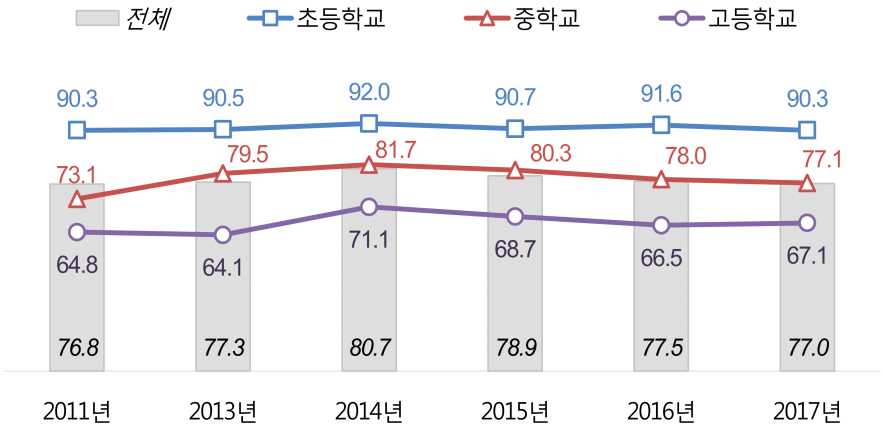

* 주: '전혀 하지 않는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5-9】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연도별 추이)

②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이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Ⅲ-5-31>과 같다. 전체적으로 아침을 먹는다는 긍정적인 응답은(보통 먹는 편이다,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73.1%로 조사대상 응답자들의 2/3가 등교 전에 대체로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5%정도 더 아침식사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으며, 학교급별로는 비교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를 보통 또는 거의 매일 먹는다는 비율이 적게 나타났다(초: 82.2%, 중: 74.8%, 고: 65.2%). 가족유형별로 보면,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 아침식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56.4%로 상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나 다른 가정유형에서의 응답과 큰 차이를 보였다(양부모가정: 74.6%, 조손가정: 72%, 기타가정: 72.5%).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아침식사 여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낮았는데, 학업성적인 '상', '중'인 집단의 경우 각각 81.4%, 72%가 보통 또는 거의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것에 비해 '하'인 집단은 63.5%만이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1 아침식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보통 먹지 않는 편이다	보통 먹는 편이다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전체(N)	χ^2
전체		3.10(1.16)	17.9	8.9	18.5	54.6	100.0(8,955)	–
성별	남자	3.16(1.12)	15.6	8.9	19.6	55.9	100.0(4,656)	37.529***
	여자	3.04(1.20)	20.4	9.0	17.3	53.3	100.0(4,300)	
학교급	초등학교	3.36(1.00)	10.3	7.5	18.2	64.0	100.0(2,569)	278.156***
	중학교	3.15(1.15)	17.2	8.1	17.7	57.1	100.0(2,899)	
	고등학교	2.87(1.23)	24.2	10.7	19.5	45.7	100.0(3,487)	
지역 규모	대도시	3.11(1.16)	17.6	9.2	17.8	55.5	100.0(3,742)	13.928*
	중소도시	3.11(1.15)	17.8	8.2	18.8	55.1	100.0(3,936)	
	읍면지역	3.02(1.18)	19.3	10.3	19.7	50.7	100.0(1,2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4(1.14)	16.8	8.7	18.5	56.1	100.0(8,110)	126.335***
	한부모가정	2.64(1.28)	31.2	12.5	17.8	38.6	100.0(648)	
	조손가정	3.06(1.21)	20.7	7.3	17.5	54.5	100.0(84)	
	기타	2.94(1.18)	22.4	5.0	28.9	43.6	100.0(106)	
학업 성적	상	3.35(1.04)	11.8	6.7	15.7	65.7	100.0(3,018)	311.260***
	중	3.06(1.16)	18.4	9.6	19.4	52.6	100.0(3,829)	
	하	2.80(1.23)	25.7	10.8	21.0	42.5	100.0(2,104)	
경제적 수준	상	3.23(1.10)	14.5	8.2	17.1	60.3	100.0(4,880)	176.051***
	중	2.99(1.19)	20.6	9.5	20.5	49.3	100.0(3,128)	
	하	2.79(1.25)	26.8	10.8	19.4	43.0	100.0(943)	

*$p<.05$, ***$p<.001$

마찬가지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집단에서는 77.4%, 중간집단에서는 69.8%가 보통 또는 거의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낮은 집단에서는 62.4%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아침식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보통 먹는 편이다,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비율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보면([그림 Ⅲ-5-10]), 보통 또는 거의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78.7%, 2013년 75.3%, 2014년 72.8%, 2015년 73%, 2016년 70.8%로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73.1%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아침식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타 교급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4%p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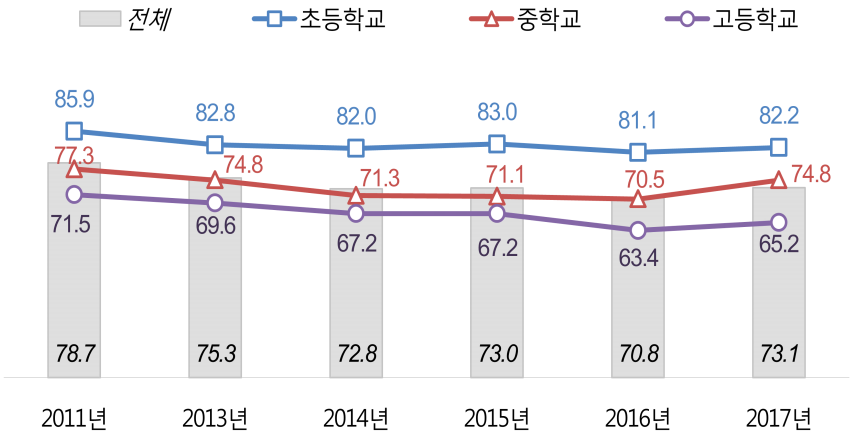

* 주: '보통 먹는 편이다'와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10】 아침식사 여부(연도별 추이)

아침식사를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와 '보통 먹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29]를 선택하게 한 결과(<표 Ⅲ-5-32>), '입맛이 없어서'가 30.6%,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는 28.1%, '일찍 등교해서'는 20.3%로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이외에 가족이 아침식사를 안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8.1%, 식사준비가 안돼서 결식한다는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44.6%로 중학생의 32.8%, 고등학생의

29) 그동안 결식 사유 항목으로 포함되었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여 2017년 조사에서 부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3.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조손가정의 응답자 53.4%가 다른 유형의 가정에서보다 일찍 등교하는 것을 결식 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양부모가정: 19.4%, 한부모가정: 24.4%, 기타가정: 12.9%).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침식사 결식의 주요 사유로 '식사준비 안됨'(상: 2.7%→중: 4.5%→하: 10%), '가족 아침식사 안함'(상: 8.1%→중: 7.3%→하: 10%)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입맛이 없어서'를 이유로 든 비율은 오히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장 낮게 나타났다(상: 33.4%→중: 31%→하: 20.6%).

표 Ⅲ-5-32 아침식사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일찍 등교	식사 준비 안됨	입맛이 없음	가족 아침 식사안함	기타	전체(N)	χ^2
전체		28.1	20.3	4.5	30.6	8.1	8.4	100.0(2,332)	–
성별	남자	27.0	19.5	3.7	33.5	7.8	8.5	100.0(1,092)	10.844
	여자	29.1	21.1	5.2	28.0	8.3	8.3	100.0(1,240)	
학교급	초등학교	21.4	15.5	3.8	44.6	7.6	7.1	100.0(445)	92.801***
	중학교	30.3	14.9	3.9	32.8	7.8	10.2	100.0(716)	
	고등학교	29.3	25.4	5.2	23.9	8.5	7.8	100.0(1,17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7	19.4	4.0	31.5	7.7	8.7	100.0(2,003)	–
	한부모가정	25.0	24.4	8.4	24.7	10.8	6.8	100.0(276)	
	조손가정	11.0	53.4	0.0	18.2	9.4	8.0	100.0(23)	
	기타	39.7	12.9	8.3	29.0	5.9	4.2	100.0(26)	
학업 성적	상	29.5	18.8	3.1	32.8	7.4	8.5	100.0(545)	14.177
	중	27.8	20.2	4.5	31.9	8.1	7.4	100.0(1,036)	
	하	27.5	21.7	5.5	26.9	8.6	9.8	100.0(747)	
경제적 수준	상	27.3	19.1	2.7	33.4	8.1	9.3	100.0(1,077)	65.495***
	중	29.8	19.0	4.5	31.0	7.3	8.5	100.0(905)	
	하	26.2	27.8	10.0	20.6	10.0	5.5	100.0(349)	

***α<.001

③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에게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질문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면시간을 도출한 결과, 전체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6분 정도로 나타났다(<표 Ⅲ-5-33>).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7시간 23분, 여학생은 7시간 7분으로 남학생 수면시간이 16분 정도 더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시간 37분, 중학생 7시간 23분, 고등학생 6시간 10분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수면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수면시간 차이는 2시간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각각 7시간 8분, 7시간 5분), 중소도시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7시간 26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의 경우 7시간 17분, 한부모가정 6시간 56분, 조손가정 7시간 35분, 기타가정에서는 7시간 25분으로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수면시간이 적었는데, 학업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 6시간 47분으로 평균보다 약 30분정도,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가장 낮게 인식한 집단에서는 6시간 41분으로 평균적인 수면시간보다 약 35분정도 낮게 나타났다.

표 Ⅲ-5-33 수면 시간

(단위 : %(명))

구분		5시간 미만	5~6 시간	6~7 시간	7~8 시간	8~9 시간	9시간 이상	평균(시간)	전체(N)
전체		4.5	14.6	20.4	23.7	22.5	14.3	7시간 16분	100.0(8,986)
성별	남자	3.5	12.1	19.5	24.9	25.0	15.0	7시간 23분	100.0(4,675)
	여자	5.6	17.3	21.3	22.4	19.8	13.5	7시간 7분	100.0(4,311)
학교급	초등학교	0.2	0.8	3.4	14.8	39.7	41.1	8시간 37분	100.0(2,597)
	중학교	1.5	7.6	20.0	36.6	27.5	6.8	7시간 23분	100.0(2,901)
	고등학교	10.2	30.8	33.2	19.7	5.6	0.6	6시간 10분	100.0(3,488)
지역 규모	대도시	5.9	15.6	21.4	22.8	22.1	12.1	7시간 8분	100.0(3,754)
	중소도시	3.1	12.5	18.7	24.7	24.1	17.0	7시간 26분	100.0(3,957)
	읍면지역	4.6	18.3	22.3	23.5	18.8	12.5	7시간 5분	100.0(1,27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3	14.5	20.0	23.6	22.8	14.7	7시간 17분	100.0(8,136)
	한부모가정	7.1	16.7	24.4	25.1	19.1	7.6	6시간 56분	100.0(650)
	조손가정	3.7	10.3	22.5	18.2	23.7	21.7	7시간 35분	100.0(86)
	기타	2.8	12.5	19.1	26.5	19.0	20.2	7시간 25분	100.0(106)
학업 성적	상	3.1	10.6	17.8	23.3	26.1	19.1	7시간 32분	100.0(3,030)
	중	4.3	14.6	19.5	23.7	22.7	15.2	7시간 18분	100.0(3,850)
	하	6.9	20.5	25.6	24.4	16.8	5.8	6시간 47분	100.0(2,102)
경제적 수준	상	3.8	12.1	17.2	23.2	25.6	18.1	7시간 29분	100.0(4,894)
	중	4.8	16.3	23.6	24.0	20.3	11.0	7시간 5분	100.0(3,144)
	하	7.0	22.2	26.2	25.4	13.3	5.9	6시간 41분	100.0(944)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5-11]), 전체적인 수면시간은 2011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7.3시간을 기록한 이후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교급별로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에게 수면이 부족한지를 조사한 결과(<표 Ⅲ-5-34>), 과반수를 약간 넘는 52.5%청소년이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2.7%p 정도 높았는데, 여학생의 실제 평균 수면시간이 남학생보다 적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았으며(초: 33.5%→중: 50.9%→고: 67.8%), 읍면지역 응답자들의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57.3%로 타 지역에서보다 높았다(대도시: 52.6%, 중소도시: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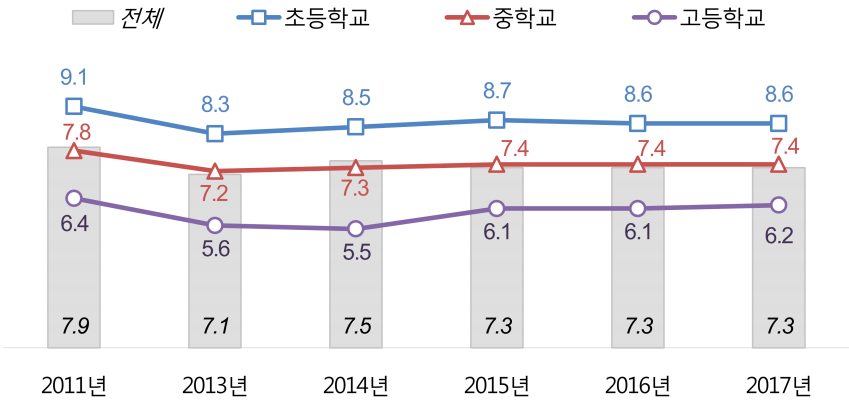

【그림 Ⅲ-5-11】 수면 시간(연도별 추이)

표 Ⅲ-5-34 수면 부족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52.5	47.5	100.0(8,990)	–
성별	남자	46.4	53.6	100.0(4,671)	144.980***
	여자	59.1	40.9	100.0(4,319)	
학교급	초등학교	33.5	66.5	100.0(2,593)	704.528***
	중학교	50.9	49.1	100.0(2,905)	
	고등학교	67.8	32.2	100.0(3,492)	
지역 규모	대도시	52.6	47.4	100.0(3,758)	16.497***
	중소도시	50.8	49.2	100.0(3,956)	
	읍면지역	57.3	42.7	100.0(1,2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2.0	48.0	100.0(8,136)	21.662***
	한부모가정	60.3	39.7	100.0(653)	
	조손가정	47.1	52.9	100.0(85)	
	기타	43.3	56.7	100.0(109)	
학업 성적	상	47.3	52.7	100.0(3,026)	127.528***
	중	50.8	49.2	100.0(3,851)	
	하	62.9	37.1	100.0(2,108)	
경제적 수준	상	46.7	53.3	100.0(4,893)	181.890***
	중	56.7	43.3	100.0(3,148)	
	하	68.1	31.9	100.0(945)	

***$p<.001$

가족유형별로는(<표 Ⅲ-5-34>)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에게서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60.3%로 나타나 다른 가족유형에서보다 높았고(양부모: 52%, 조손: 47.1%, 기타: 43.3%),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았다(상: 47.3%→중: 50.8%→하: 62.9%).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수면부족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상: 46.7%→중: 56.7%→하: 68.1%).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도별로 보면([그림 Ⅲ-5-12]), 2013년 이후 다소 증감을 보이다가 2016년에 54.1%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조사에서는 전년대비 약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고등학생은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약 5%p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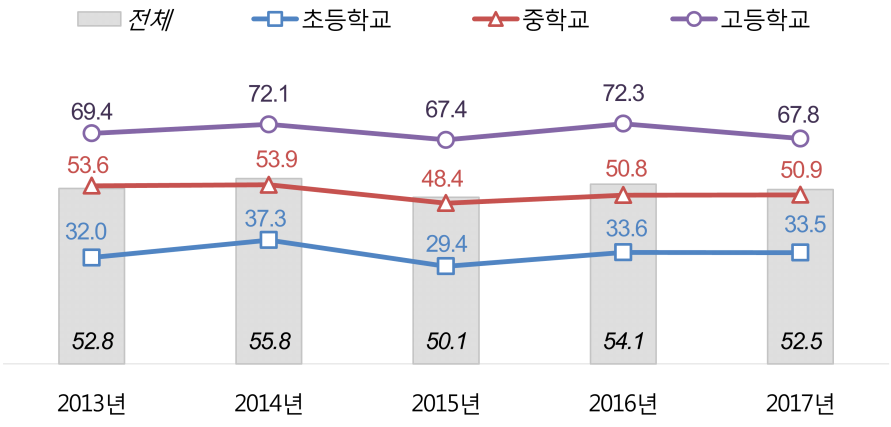

* 주: '예'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5-12】 수면 부족 여부(연도별 추이)

수면 부족의 1순위 이유는 [그림 Ⅲ-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학습이 19.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학원·과외 (18.2%), 채팅·문자 메시지(13.1%), 야간자율학습(12.1%), 드라마·영화시청·음악 청취 등(9.1%), 게임(7.7%)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부족의 이유로서 학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응답률이 총 49.9%(야간자율학습, 학원과외, 가정학습)로 응답자의 절반가까이는 학업과 관련하여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학원·과외, 가정학습 다음으로 게임을 1순위 수면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학생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남: 12.9%, 여: 3.3%). 여학생의 경우 채팅·문자메시지에서(남: 10.2%, 여: 15.6%) 남학생보다 5%p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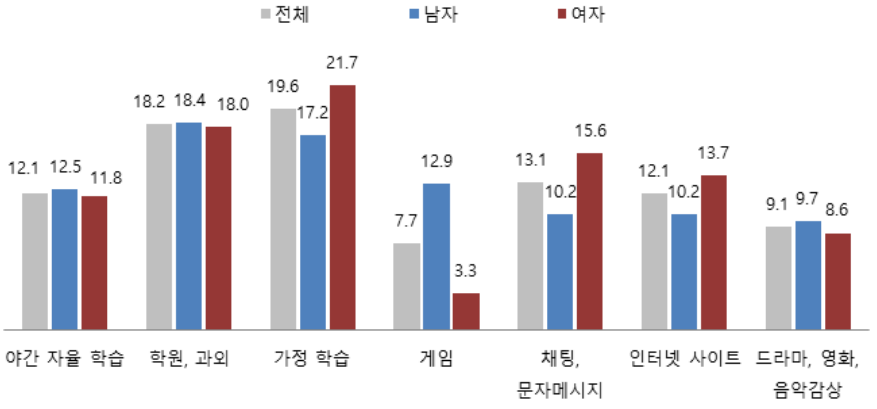

【그림 Ⅲ-5-13】 수면 부족 이유(1순위 기준)

표 Ⅲ-5-35 수면 부족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게임	채팅,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이용[1)]	드라마, 영화시청, 음악청취	기타	전체(N)
전체		12.1	18.2	19.6	7.7	13.1	12.1	9.1	8.0	100.0(4,707)
성별	남자	12.5	18.4	17.2	12.9	10.2	10.2	9.7	9.0	100.0(2,160)
	여자	11.8	18.0	21.7	3.3	15.6	13.7	8.6	7.2	100.0(2,547)
학교급	초등학교	0.0	23.1	24.4	13.5	4.6	8.2	13.6	12.5	100.0(868)
	중학교	1.7	23.0	17.9	8.9	18.3	14.4	9.6	6.3	100.0(1,475)
	고등학교	23.1	13.4	18.9	4.9	13.0	12.0	7.2	7.5	100.0(2,3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0	18.4	20.4	7.3	13.0	12.1	9.0	7.9	100.0(4,225)
	한부모가정	13.8	15.1	12.7	10.6	14.6	12.0	11.2	10.1	100.0(392)
	조손가정	12.6	22.7	14.6	4.4	13.8	16.1	4.8	10.9	100.0(40)
	기타	12.7	17.8	8.5	23.6	15.9	10.3	7.9	3.4	100.0(47)
학업 성적	상	10.8	21.6	25.9	5.7	9.1	10.8	7.3	8.9	100.0(1,428)
	중	13.1	18.7	20.1	8.0	12.1	11.4	9.1	7.4	100.0(1,955)
	하	12.3	13.8	12.2	9.5	19.0	14.3	11.0	8.0	100.0(1,321)
경제적 수준	상	9.6	20.2	22.1	7.9	12.5	10.1	9.5	8.2	100.0(2,277)
	중	14.5	17.5	17.3	7.8	13.5	12.9	8.9	7.7	100.0(1,782)
	하	14.6	12.9	17.2	7.1	14.3	17.0	8.4	8.5	100.0(644)

* 주: 전년도 보기문항 중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성인물(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은 2017년 조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으로 변경되었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1순위 수면부족 이유로 학원·과외(초: 23.1%, 중: 23%, 고: 13.4%)와 게임(초: 13.5%, 중: 8.9%, 고: 4.9%),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초: 13.6%, 중: 9.6%, 고: 7.2%)등을 다른 학교급 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중학생은 인터넷 사이트 이용(초: 8.2%, 중: 14.4%, 고: 12.0%)와 채팅·문자메시지(초: 4.6%, 중: 18.3%, 고: 13%)를, 그리고

고등학생은 야간자율학습(초: 0%, 중: 1.7%, 고: 23.1%)을 1순위 수면부족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서보다 높았다. 가정유형 중에서 양부모가정 청소년은 가정학습(양부모: 20.4%, 한부모: 12.7%, 조손: 14.6%, 기타: 8.5%)을 1순위 수면부족 이유로,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응답자는 게임(양부모: 7.3%, 한부모: 10.6%, 조손: 4.4%, 기타: 23.6%)과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양부모: 9%, 한부모: 11.2%, 조손: 4.8%, 기타: 7.9%)을, 조손가정의 청소년은 학원과외(양부모: 18.4%, 한부모: 15.1%, 조손: 22.7%, 기타: 17.8%)와 인터넷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포함)(양부모: 12.1%, 한부모: 12%, 조손: 16.1%, 기타: 10.3%) 이용을 1순위 수면부족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한 응답자와 낮게 인식한 응답자의 경우 1순위 수면부족이유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중간인 경우에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의 경우는 1순위 수면부족 이유로 학원·과외(상: 21.6%, 중: 18.7%, 하: 13.8%)와 가정학습(상: 25.9%, 중: 20.1%, 하: 12.2%)을, 그리고 '하'인 응답자는 채팅·문자메시지(상: 5.7%, 중: 8%, 하: 9.5%), 인터넷사이트 이용(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포함)(상: 10.8%, 중: 11.4%, 하: 14.3%) 등 주로 여가와 놀이로 인한 수면부족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응답자는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학원·과외(상: 20.2%, 중: 17.5%, 하: 12.9%)와 가정학습(상: 22.1%, 중: 17.3%, 하: 17.2%)을 수면부족 1순위 이유로 응답하였다.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에서는 가정학습(17.2%)과 인터넷사이트 이용(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포함)(17.0%)이 거의 유사하게 수면부족 1순위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6 수면 부족 이유(1+2+3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게임	채팅,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이용[1)]	드라마, 영화시청, 음악청취	기타	전체(N)
전체		21.6	44.6	46.9	29.3	45.3	41.4	40.4	15.3	100.0(4,707)
성별	남자	20.9	43.7	42.3	44.0	37.0	39.9	37.1	16.6	100.0(2,160)
	여자	22.1	45.5	50.7	16.8	52.3	42.8	43.2	14.2	100.0(2,547)
학교급	초등학교	0.0	47.1	56.2	40.3	26.5	33.8	48.9	22.1	100.0(868)
	중학교	5.7	49.7	42.9	35.9	53.4	45.0	44.2	12.2	100.0(1,475)
	고등학교	39.4	40.5	45.9	21.1	47.1	42.0	34.9	14.8	100.0(2,363)

* 주: 전년도 보기문항 중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성인물(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은 2017년 조사에서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으로 변경되었음.

수면부족 이유에 대해 3순위까지 중복 응답한 결과를 총합기준으로 살펴보면(<표 Ⅲ-5-36>), 1순위 이유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일부 새롭게 주목할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중복 비율을 보인 항목은 가정학습(46.9%)이지만, 채팅·문자메시지(45.3%), 학원·과외(44.6%), 인터넷사이트 이용(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포함)(41.4%),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40.4%) 등도 아동·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수면부족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면부족 이유에 대한 중복응답이 남학생의 경우 게임이 44%, 여학생은 채팅·문자메시지가 52.%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학습이 56.2%,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채팅·문자메시지에 대해 각각 53.4%, 47.1%가 응답해 가장 높은 중복 응답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들의 수면부족 원인이 학업이나 학원으로 인한 것 뿐 아니라 게임, 채팅·문자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이용 등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④ 비만율

최근 교육부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Ⅲ-5-14]). 2016년에 경도, 중등도, 고도 비만을 모두 합친 비율이 16.5%로 나타냈는데 이는 2010년의 14.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2013년(15.3%)과 2014년(15%)에는 잠시 정체상태였었으나, 이후 비만율이 다시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2.3p%, 그리고 전년대비 0.9p% 상승하여, 2016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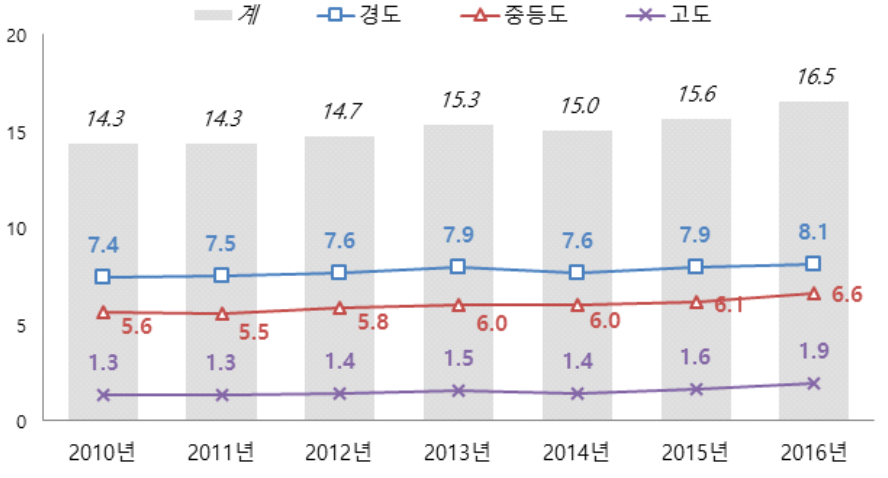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재편집/ 단위: %

【그림 Ⅲ-5-14】 2010~2016년 비만도 현황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도 비만율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교육부 2017. 2. 22), 초등 남학생의 경우 경도 비만 8.6%, 중등도 비만 7.3%, 고도 비만 1.6%로, 여학생(경도: 6.4%, 중등도: 4.4%, 고도: 0.8%)보다 비만정도가 더 높았고, 전체적으로는 17.4%의 비만율을 보여 여학생보다 5.7%p 높은 비만율을 나타냈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의 경우 경도 비만율은 9%, 중등도는 7.5%, 고도 비만은 2%로 여학생이 각각 7.5%, 4.9%, 1.4%를 나타낸 것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비만율을 보였다(약 4.7%p 차이). 그리고 남자 고등학생은 경도 비만 8.7%, 중등도 비만 8.4%, 고도 비만 3.4%로 전체 비만율이 20.5%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경우는 경도 비만 8.6%, 중등도 비만 7.5%, 고도 비만 2.7%로 전체적으로 남학생보다 다소 낮은 18.8%의 비만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비만도가 높으며, 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은 비만율을 보였는데, 이를 반영하듯 전체 남자 고등학생 중 1/5정도가 경도, 중등도, 고도 비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7 2010~2016년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단위 : %)

연도/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2010년			85.8	7.4	5.6	1.3	14.3
2011년			85.7	7.5	5.5	1.3	14.3
2012년			85.3	7.6	5.8	1.4	14.7
2013년			84.7	7.9	6.0	1.5	15.3
2014년			85.0	7.6	6.0	1.4	15.0
2015년			84.4	7.9	6.1	1.6	15.6
2016년	전체		83.5	8.1	6.6	1.9	16.5
	초등학생	남학생	82.6	8.6	7.3	1.6	17.4
		여학생	88.3	6.4	4.4	0.8	11.7
	중학생	남학생	81.5	9.0	7.5	2.0	18.5
		여학생	86.2	7.5	4.9	1.4	13.8
	고등학생	남학생	79.5	8.7	8.4	3.4	20.5
		여학생	81.2	8.6	7.5	2.7	18.8

* 출처: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재편집.
* 주: 1) 측정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에 대비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하여 경도비만(20% 이상~30% 미만), 중등도 비만(30% 이상~50% 미만), 고도비만(50% 이상)으로 구분
2) 비만도(%) = {(측정체중-표준체중)/표준체중}×100
3) 표준체중은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신체발육 표준치의 성별 표준체중 사용

(3) 정신적 건강

①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33.4%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학업문제가 40.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그림 Ⅲ-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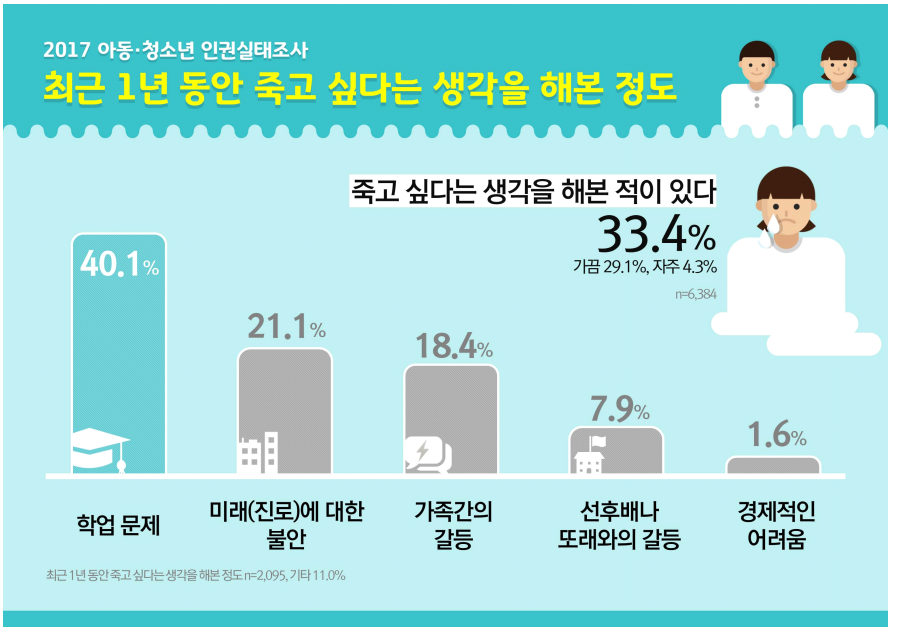

【그림 Ⅲ-5-15】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및 이유(전체)

청소년들의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표 Ⅲ-5-38>),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소년이 24.6%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42.9%로 약 18%p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보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 중 39%가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손가정 34.7%, 양부모가정 33%, 기타가정 23.4%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에게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은 3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은 32.6%, 중간인 청소년은 30%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죽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 역시 높았는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응답률은 과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상: 30%→중: 32.1%→하: 49.6%).

표 Ⅲ-5-38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단위 : %(명))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χ^2
전체		66.6	29.1	4.3	100.0(6,384)	–
성별	남자	75.3	22.1	2.5	100.0(3,329)	247.116***
	여자	57.1	36.6	6.3	100.0(3,056)	
학교급	중학교	67.2	28.0	4.8	100.0(2,896)	5.047
	고등학교	66.1	30.0	3.9	100.0(3,488)	
지역 규모	대도시	67.8	28.0	4.2	100.0(2,663)	4.174
	중소도시	65.4	29.9	4.6	100.0(2,674)	
	읍면지역	66.5	29.6	3.9	100.0(1,04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7.0	28.8	4.2	100.0(5,733)	13.696*
	한부모가정	61.0	33.3	5.7	100.0(527)	
	조손가정	65.3	26.1	8.6	100.0(45)	
	기타	76.6	19.9	3.5	100.0(74)	
학업 성적	상	67.4	29.0	3.6	100.0(1,786)	50.095***
	중	69.9	26.7	3.3	100.0(2,668)	
	하	61.4	32.3	6.3	100.0(1,927)	
경제적 수준	상	70.0	26.5	3.5	100.0(3,105)	124.244***
	중	68.0	28.0	4.1	100.0(2,431)	
	하	50.4	41.7	7.9	100.0(846)	

*$p<.05$, ***$p<.001$

청소년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의 연도별 추이를보면([그림 Ⅲ-5-16]), 2013년에 최고치인 36.9%(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를 나타낸 이후 2015년에는 27.9%까지 감소했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전년대비 상승폭이 6.1%p로 고등학생의 3.7%p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다시 증가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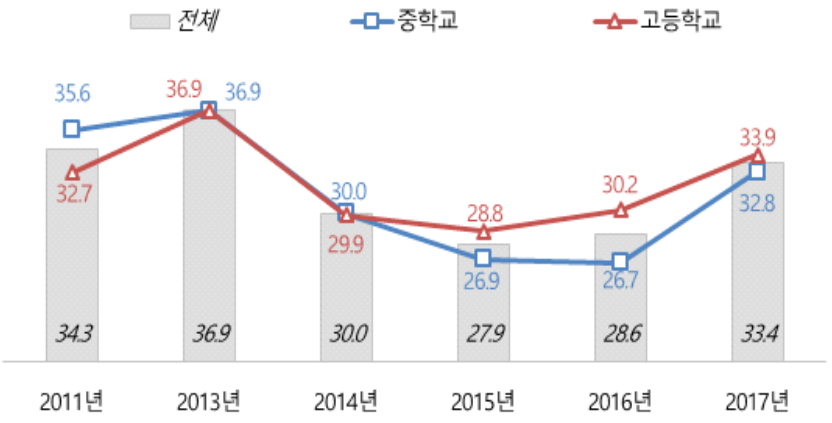

* 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의 응답율 합계(단위: %)

【그림 Ⅲ-5-16】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연도별 추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학업문제'를 40.1%로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올해 신규로 포함된 보기문항인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21.1%로 나타났다([그림 Ⅲ-5-17]). '가족 간 갈등'은 18.4%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7.9%, '경제적인 어려움' 1.6%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학업문제에 있어서는 남학생(36.5%)보다 여학생의 응답율(42.4%)이 더 높았으나,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은 남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남: 23.2%, 여: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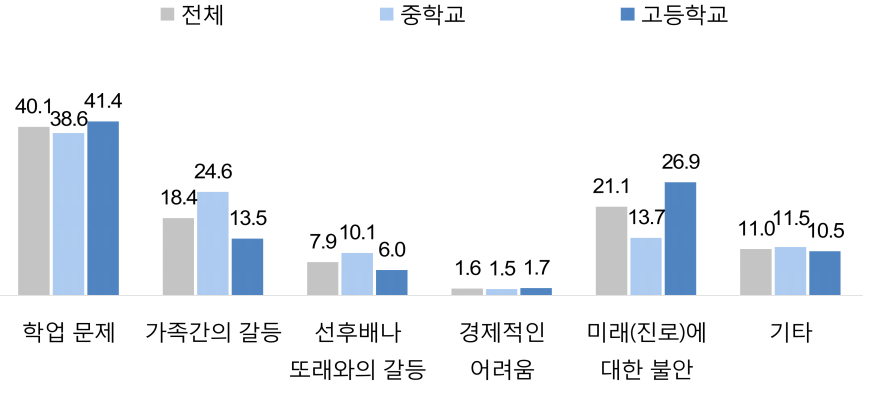

* 단위: %

【그림 Ⅲ-5-17】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학교급별)

표 Ⅲ-5-39 죽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1)]	가족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1)]	기타	전체(N)	χ^2
전체		40.1	18.4	7.9	1.6	21.1	11.0	100.0(2,095)	–
성별	남자	36.5	20.7	7.1	2.3	23.2	10.2	100.0(805)	17.174**
	여자	42.4	17.0	8.3	1.1	19.7	11.4	100.0(1,290)	
학교급	중학교	38.6	24.6	10.1	1.5	13.7	11.5	100.0(930)	90.970***
	고등학교	41.4	13.5	6.0	1.7	26.9	10.5	100.0(1,165)	
지역 규모	대도시	40.7	18.2	7.0	1.7	22.7	9.6	100.0(839)	7.637
	중소도시	40.5	18.4	8.6	1.3	19.7	11.5	100.0(908)	
	읍면지역	37.7	18.9	7.9	2.1	20.6	12.9	100.0(34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6	16.9	7.6	1.1	21.1	10.7	100.0(1,860)	–
	한부모가정	20.1	32.8	10.2	3.9	20.0	13.1	100.0(202)	
	조손가정	28.8	0.0	0.0	27.9	15.9	27.4	100.0(16)	
	기타	23.9	34.0	9.8	1.0	27.2	4.0	100.0(16)	
학업 성적	상	41.5	21.8	8.7	0.4	16.9	10.7	100.0(574)	31.370***
	중	42.1	15.4	7.9	1.6	20.8	12.1	100.0(791)	
	하	37.0	19.1	7.0	2.5	24.5	10.0	100.0(727)	
경제적 수준	상	42.0	18.5	9.2	0.9	19.4	10.0	100.0(911)	82.202***
	중	44.8	15.3	6.1	0.7	22.3	10.9	100.0(772)	
	하	27.3	24.0	7.8	5.0	22.6	13.3	100.0(411)	

**$p<.01$, ***$p<.001$

주: 1), 2) 2017년도 조사에서 전년도 보기문항 중 '학교 성적'이 '학업 문제'로 수정되었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보기 문항은 새로 추가됨.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죽고 싶다는 생각의 이유로 학업문제(중: 38.6%, 고: 41.4%)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그 다음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가족 간 갈등(중: 24.6%, 고: 13.5%)을, 고등학생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중: 13.7%, 고: 26.9%)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 죽고 싶은 이유 중 학업문제(42.6%)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가족간의 갈등(32.8%)이, 그리고 조손가정의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27.9%) 항목들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업성적이 '상' 인 청소년은 죽고 싶다는 생각의 이유로 학업성적(41.5%)과 가족 간 갈등(21.8%)을, 학업성적이 '중', '하'인 청소년은 학업성적(중: 42.1%, 하: 37%)과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중: 20.8%, 하: 24.5%)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즉,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이 학업성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성적이 낮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상', '중'인 청소년이 학업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은 각각 42%와 44.8%로 다른 이유보다 훨씬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청소년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학업성적(27.3%)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24%)과 미래에 대한 불안(22.6%) 등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② 우울증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우울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세가지 항목에 대해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합친 비율을 기준으로,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33.4%였으며,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28.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32.3%로 나타나 대체로 응답자의 1/3정도가 여러 유형의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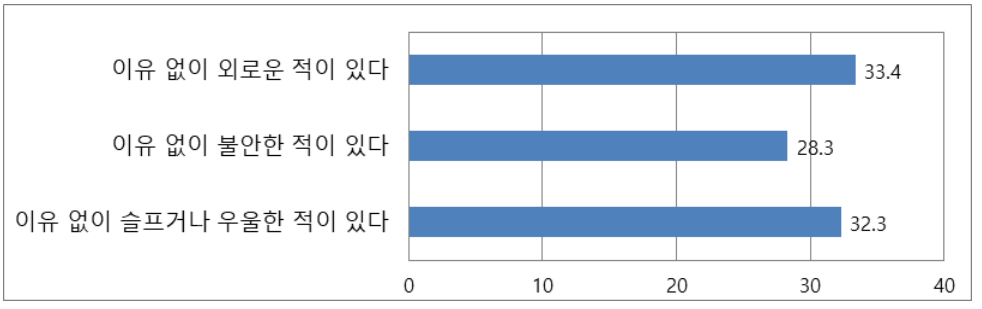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친 비율(단위: %)

【그림 Ⅲ-5-18】 우울정도 항목별 비교

먼저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 배경변인별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표 Ⅲ-5-40>), 남자는 1.74점, 여자는 2.17점으로 여자청소년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은 1.57점, 중학생은 2.04점, 고등학생은 2.16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외로운 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 응답자들의 평균값이 1.94점, 중소도시는 1.92점이었으나 읍면지역은 2.07점으로 읍면지역에서 외로운 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2.15점으로 외롭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1.93점, 1.92점으로 나타났고, 기타 가정은 1.69점이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났는데, 두 변인 모두 낮을수록 외로운 적이 있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하'인 집단은 2.20점인데 비해, '상'은 1.84점, '중'은

1.89점이었고,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은 2.41점이었으나, '상'인 경우는 1.82점, '중'은 2점이었다. 특히 긍정적인 응답률(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기준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과반 수 이상인 52.5%가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40 우울증_외로운 적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5(0.98)	44.7	21.9	27.3	6.1	100.0(8,998)	–
성별	남자	1.74(0.93)	54.7	20.6	20.3	4.3	100.0(4,680)	448.518***
	여자	2.17(0.99)	33.9	23.3	34.9	7.9	100.0(4,318)	
학교급	초등학교	1.57(0.86)	64.9	16.8	14.9	3.4	100.0(2,601)	660.572***
	중학교	2.04(0.99)	39.7	24.1	29.1	7.1	100.0(2,905)	
	고등학교	2.16(0.98)	33.8	23.9	35.1	7.2	100.0(3,491)	
지역 규모	대도시	1.94(0.98)	45.3	21.9	26.7	6.1	100.0(3,755)	29.740***
	중소도시	1.92(0.97)	46.0	22.1	26.0	5.9	100.0(3,964)	
	읍면지역	2.07(0.99)	39.0	21.5	32.9	6.6	100.0(1,2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3(0.98)	45.4	21.7	26.9	5.9	100.0(8,141)	44.376***
	한부모가정	2.15(0.98)	33.7	25.1	33.3	7.9	100.0(654)	
	조손가정	1.92(0.97)	46.1	20.0	29.3	4.6	100.0(86)	
	기타	1.69(0.94)	58.8	17.9	18.4	4.8	100.0(110)	
학업 성적	상	1.84(0.95)	49.6	22.1	23.0	5.2	100.0(3,034)	202.916***
	중	1.89(0.96)	47.3	20.9	26.9	4.9	100.0(3,855)	
	하	2.20(1.00)	32.9	23.4	34.3	9.4	100.0(2,105)	
경제적 수준	상	1.82(0.94)	50.8	20.7	24.2	4.4	100.0(4,903)	310.120***
	중	2.00(0.98)	41.3	23.6	28.5	6.6	100.0(3,146)	
	하	2.41(1.00)	24.9	22.5	39.5	13.0	100.0(944)	

***α<.00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는 조사항목의 긍정적 응답(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그림 Ⅲ-5-19]), 2013년 이후 다소 증감을 보이던 긍정적 응답률은 2017년에는 33.4%로 전년도의 32.7%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교급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42.3%로 전년대비 약 3%p 정도 감소하였으나, 초등학생은 18.3%로 전년대비 약 2%p, 중학생은 36.2%로 전년대비 약 4%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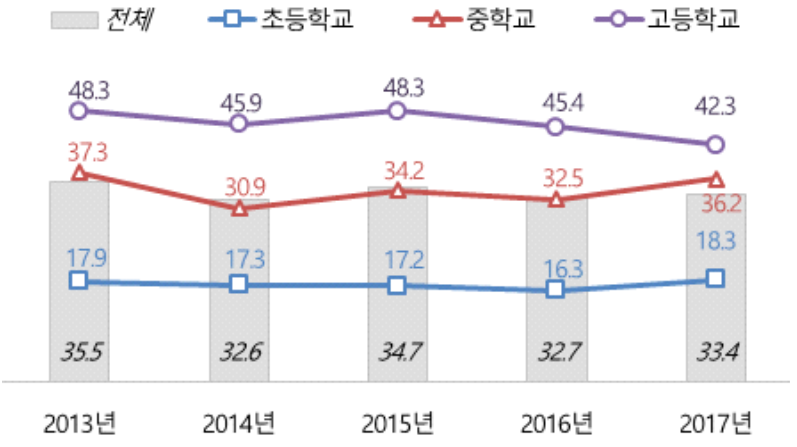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19】 우울증_외로운 적 있다(연도별 추이)

두 번째 조사항목인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에 대한 평균값은 남학생은 1.65점, 여학생은 2.06점으로 여자응답자들에게서 불안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Ⅲ-5-41>).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51점, 중학생 1.89점, 고등학생 2.05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역시 불안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많이 보였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응답자들보다 불안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대도시: 1.82점, 중소도시: 1.83, 읍면지역: 1.96점),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응답자들에게서 불안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한부모: 2.07점, 양부모: 1.83점, 조손: 1.69점, 기타: 1.61점).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가 많았는데, 두 경우 모두 낮을수록 불안한 적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2.06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은 경우는 1.73점, 중간은 1.82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2.27점으로 높은 통계치를 보인 것에 비해 높은 경우는 1.73점, 중간은 1.9점으로 불안한 적이 있다는 응답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불안한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보면([그림 Ⅲ-5-20]),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전년대비 초등학생은 1.6%p, 중학생은 1%p정도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은 1.2%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41 우울증_불안한 적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85(0.97)	49.6	22.1	22.3	6.0	100.0(8,994)	–
성별	남자	1.65(0.89)	59.2	20.0	16.9	3.8	100.0(4,677)	402.614***
	여자	2.06(1.00)	39.2	24.4	28.1	8.4	100.0(4,317)	
학교급	초등학교	1.51(0.85)	68.1	16.1	12.1	3.7	100.0(2,600)	564.846***
	중학교	1.89(0.97)	46.4	24.3	22.9	6.4	100.0(2,903)	
	고등학교	2.05(0.98)	38.5	24.8	29.3	7.4	100.0(3,491)	
지역 규모	대도시	1.82(0.97)	51.0	21.8	21.2	6.0	100.0(3,755)	24.866***
	중소도시	1.83(0.96)	49.8	22.7	21.9	5.7	100.0(3,961)	
	읍면지역	1.96(1.00)	44.9	21.4	26.7	7.0	100.0(1,2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3(0.96)	50.1	22.2	22.0	5.8	100.0(8,138)	51.336***
	한부모가정	2.07(1.02)	39.7	23.0	28.3	9.0	100.0(654)	
	조손가정	1.69(0.94)	60.1	15.5	20.1	4.3	100.0(85)	
	기타	1.61(0.95)	64.3	17.0	11.9	6.9	100.0(110)	
학업 성적	상	1.73(0.94)	55.5	21.0	18.3	5.2	100.0(3,032)	164.418***
	중	1.82(0.95)	50.8	21.4	22.7	5.0	100.0(3,854)	
	하	2.06(1.01)	39.0	24.9	27.1	8.9	100.0(2,104)	
경제적 수준	상	1.73(0.92)	55.5	21.0	18.9	4.6	100.0(4,901)	279.366***
	중	1.90(0.97)	46.2	23.1	24.5	6.1	100.0(3,145)	
	하	2.27(1.03)	30.4	24.5	32.5	12.6	100.0(94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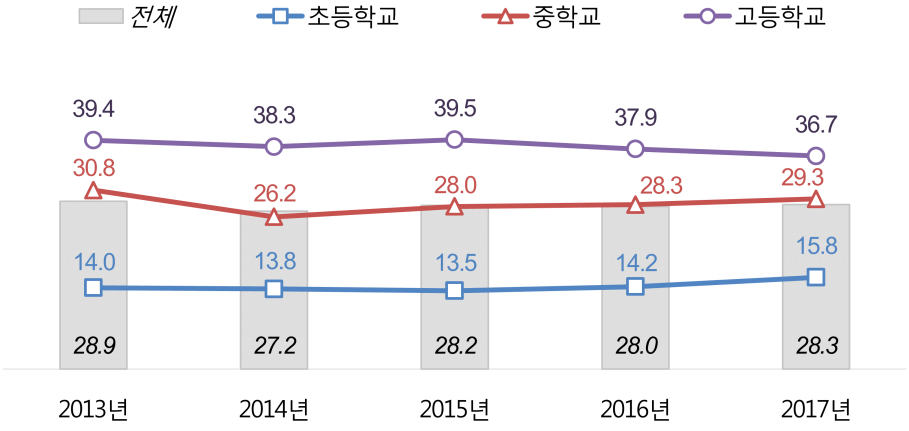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20】 우울증_불안한 적 있다(연도별 추이)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항목의 전체 평균값은 1.91점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1.63점으로 평균에 훨씬 못 미쳤으나 여학생은 2.21점으로 훨씬 높아 여자청소년들이 슬픔이나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Ⅲ-5-42>).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률도 더 높게 나타나, 평균값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1.49점, 중학생은 1.98점이었으나 고등학생은 2.17점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값이 높았는데,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2.02점인데 비해, 대도시거주 청소년은 1.88점,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은 1.9점이었다.

표 Ⅲ-5-42 우울증_우울한 적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1(1.01)	48.2	19.5	25.1	7.2	100.0(8,992)	–
성별	남자	1.63(0.90)	61.2	18.3	16.4	4.1	100.0(4,677)	771.014***
	여자	2.21(1.03)	34.1	20.9	34.5	10.4	100.0(4,314)	
학교급	초등학교	1.49(0.84)	69.6	15.0	11.7	3.7	100.0(2,599)	772.691***
	중학교	1.98(1.02)	44.7	20.6	26.7	8.0	100.0(2,903)	
	고등학교	2.17(1.01)	35.2	22.0	33.7	9.1	100.0(3,490)	
지역 규모	대도시	1.88(1.00)	49.4	19.5	24.3	6.8	100.0(3,754)	17.412**
	중소도시	1.90(1.01)	48.7	19.4	24.8	7.1	100.0(3,960)	
	읍면지역	2.02(1.03)	43.3	20.2	28.1	8.4	100.0(1,2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0(1.01)	48.8	19.4	24.6	7.1	100.0(8,135)	38.410***
	한부모가정	2.10(1.02)	38.6	21.1	31.8	8.5	100.0(654)	
	조손가정	1.81(0.94)	51.4	19.0	26.6	3.1	100.0(86)	
	기타	1.63(0.88)	60.3	19.8	16.3	3.6	100.0(109)	
학업 성적	상	1.79(0.98)	54.7	18.1	21.1	6.1	100.0(3,030)	178.464***
	중	1.88(0.99)	49.3	19.6	24.9	6.2	100.0(3,853)	
	하	2.15(1.04)	37.1	21.5	31.0	10.5	100.0(2,104)	
경제적 수준	상	1.77(0.97)	55.1	17.8	21.7	5.4	100.0(4,900)	323.025***
	중	1.99(1.01)	43.5	21.8	27.0	7.7	100.0(3,143)	
	하	2.37(1.04)	28.1	21.4	36.1	14.4	100.0(944)	

**$p<.01$, ***$p<.001$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응답자들에게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2.1점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1.9점, 조손가정 1.81점, 기타가정 1.63점 순이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특히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상: 1.77점, 중: 1.99점, 하: 2.37점). 긍정 응답률 기준(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으로 보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50.5%가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조사항목과 같이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관심이 필요한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5-21]),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조사항목의 경우 2013년에 33.4%의 긍정적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보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2017년에는 3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중학생은 34.7%로 전년대비 6.4%p, 고등학생은 42.8%로 전년대비 4.9%p의 증가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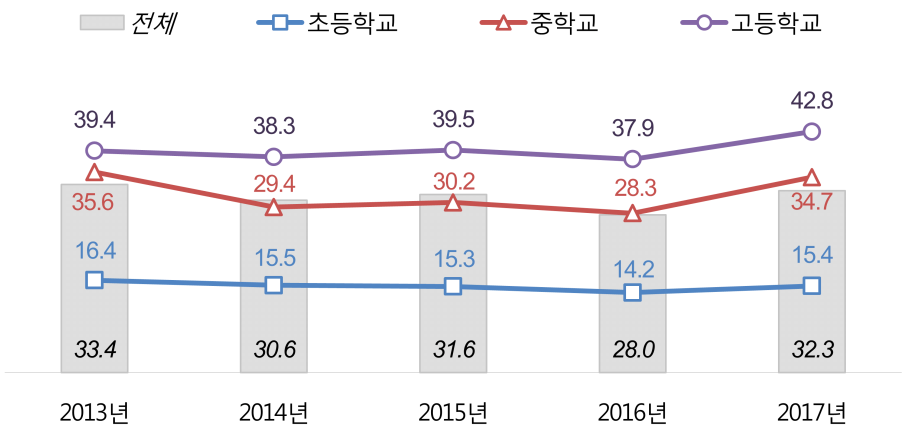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21】 우울증_우울한 적 있다(연도별 추이)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한 이 세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 alpha값이 .90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표 Ⅲ-5-43>),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를 활용한 3개 문항의 평균값은 1.90점, 표준편차는 .90으로 분석되었다(<표 Ⅲ-5-44>).

표 Ⅲ-5-43 우울증의 하위척도 신뢰도

하위척도	하위척도별 내용	Cronbach's α
우울증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903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우울증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배경변인별 차이를 t-검증 또는 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Scheffé)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Ⅲ-5-44>). 우울증 정도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평균값은 1.68점, 여학생은 2.15점으로 여학생의 우울 정도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우울증 평균치 역시 증가하여, 초등학생 1.52점, 중학생 1.97점, 고등학생 2.13점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의 우울증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M=2.11),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M=1.89), 조손가정(M=1.80), 기타가정(M=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1.79점, 중: 1.86점, 하: 2.14점), 또 경제적 수준 역시 낮을수록(상: 1.77점, 중: 1.97점, 하: 2.35점) 우울증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5-44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우울증		
		Mean	SD	t/F(Scheffé)
전체		1.90	.90	-
성별	남	1.68	.82	-25.467***
	여	2.15	.92	
학교급	초등학교	1.52	.76	371.820*** (a<b<c)
	중학교	1.97	.91	
	고등학교	2.13	.91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1.89	.90	15.244*** (d<e, d>g, e>f, e>g)
	한부모가정	2.11	.91	
	조손가정	1.80	.86	
	기타	1.64	.80	
학업성적	상	1.79	.87	102.643*** (h<i<j)
	중	1.86	.88	
	하	2.14	.93	
경제적수준	상	1.77	.86	181.224*** (k<l<m)
	중	1.97	.90	
	하	2.35	.94	

***p<.001.

* 주: 학교급(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가족유형(d=양부모가정, e=한부모가정, f=조손가정, g=기타), 학업성적(h=상, i=중, j=하), 경제적 수준(k=상, l=중, m=하)

③ 스트레스 인지율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최근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에 따르면(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은 32.6%, 고등학교 1학년은 37.5%인데 비해, 고등학교 3학년은 43.3%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Ⅲ-5-45>).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볼 때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9년도에 과반수가 넘는 53.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6년에는 43.3%로 전년대비 1.9%p가 높게 나타나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Ⅲ-5-45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40.1	39.4	40.5	42.3	44.4	53.4
2010	39.9	40.7	41.7	42.8	44.8	53.2
2011	36.9	39.2	40.8	41.1	43.5	50.5
2012	37.0	38.8	40.7	43.7	44.2	46.3
2013	35.7	40.3	41.2	40.3	44.7	46.1
2014	32.3	32.7	35.1	36.5	39.9	44.5
2015	30.3	32.5	31.9	36.0	38.7	41.4
2016	32.6	33.7	34.3	37.5	40.7	43.3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208-209.
* 주: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

본 연구의 인권실태조사에서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 [그림 Ⅲ-5-22]와 같이 나타났다. 원인별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64.9%의 응답자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49.6%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외모·신체조건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중 26.6%가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고, 또래와의 관계는 23.8%, 가정불화는 17.2%, 경제적인 어려움은 9.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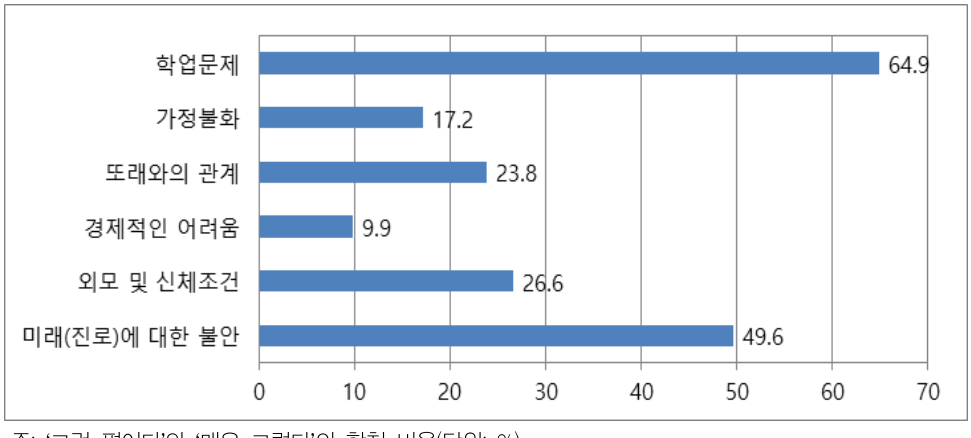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친 비율(단위: %)

【그림 Ⅲ-5-22】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

먼저, 스트레스 원인 중 학업문제 대해 평균값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Ⅲ-5-46>), 4점 만점 기준으로(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은 2.71점이었고, 표준편차는 1.0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2.54점, 여학생 2.89점으로 여학생이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평균값 기준으로 초등학생 2.32점, 중학생 2.76점, 고등학생 2.96점으로 고등학생이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인문계고 및 자율고 등이 포함된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이 82%로 나타나 조사대상 4/5정도인 일반계고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을 포함한 특성화계고 학생들은 과반수 정도인 51.7%가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5-46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학업문제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71(1.05)	19.5	15.7	39.5	25.4	100.0(8,988)	-
성별	남자		2.54(1.08)	25.2	16.6	37.3	20.9	100.0(4,671)	256.356***
	여자		2.89(0.98)	13.3	14.7	41.8	30.2	100.0(4,318)	
학교급	초등학교		2.32(1.07)	30.8	22.6	30.9	15.7	100.0(2,598)	630.772***
	중학교		2.76(1.01)	16.5	15.9	42.7	24.9	100.0(2,900)	
	고등학교	전체	2.96(0.98)	13.5	10.4	43.2	32.9	100.0(3,490)	
		일반계	3.10(0.91)	9.4	8.6	44.8	37.2	100.0(2,822)	
		특성화계	2.36(1.07)	30.5	17.9	36.6	15.1	100.0(66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2(1.05)	19.2	15.7	39.3	25.8	100.0(8,132)	43.915***
	한부모가정		2.71(1.03)	18.9	15.1	41.7	24.3	100.0(653)	
	조손가정		2.47(1.12)	31.7	7.1	43.7	17.5	100.0(85)	
	기타		2.18(1.01)	34.1	23.1	33.9	8.9	100.0(110)	
학업 성적	상		2.60(1.08)	23.1	17.8	35.5	23.6	100.0(3,031)	90.190***
	중		2.72(1.03)	18.5	15.3	41.8	24.4	100.0(3,850)	
	하		2.84(1.02)	15.9	13.5	41.0	29.5	100.0(2,104)	
경제적 수준	상		2.62(1.07)	22.4	16.4	37.7	23.4	100.0(4,896)	99.491***
	중		2.77(1.02)	16.7	15.6	41.5	26.2	100.0(3,146)	
	하		2.94(0.99)	13.2	12.0	42.1	32.7	100.0(943)	

***α<.001

가족유형 중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의 평균값이 각각 2.72점, 2.71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조손가정 2.47점, 기타가정 2.18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컸는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2.60점. 중: 2.72점, 하: 2.84점),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2.62점, 중: 2.77점, 하: 2.94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많았다.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그림 Ⅲ-5-23]), 2013년에 69.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감소하였으나, 초등학생은 46.6%로 전년대비 약 3%p 정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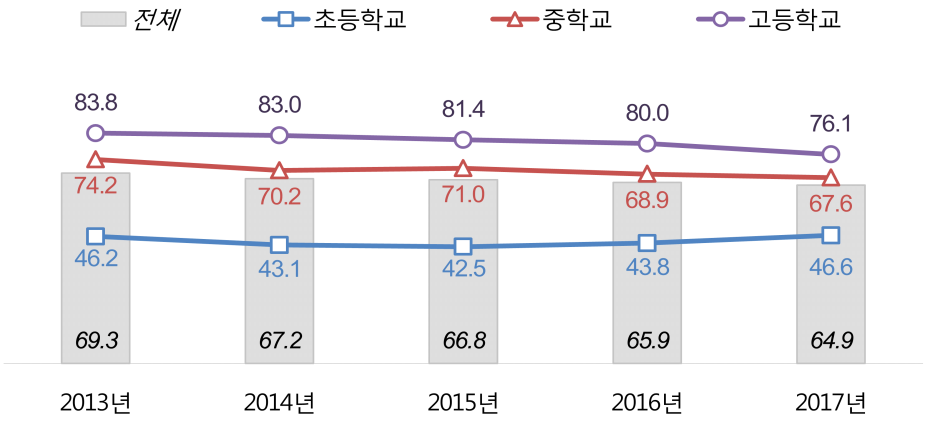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23】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학업문제(연도별 추이)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값(4점 만점) 기준으로 1.61점(SD=.86)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Ⅲ-5-47>). 성별로는 남학생이 1.55점, 여학생이 1.67점으로 여학생의 응답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58점, 중학생 1.61점, 고등학생 1,63점으로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1.95점으로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가정불화로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양부모: 1.58, 조손: 1.73, 기타: 1.64).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1.56점, 중: 1.58점, 하: 1.73점), 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1.48점, 중: 1.65점, 하: 2.13점)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특히 배경변인별 차이 중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Ⅲ-5-47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가정 불화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61(0.86)	60.5	22.3	13.2	4.0	100.0(8,921)	–
성별	남자	1.55(0.83)	63.6	21.1	11.8	3.4	100.0(4,635)	44.682***
	여자	1.67(0.89)	57.0	23.6	14.8	4.6	100.0(4,285)	
학교급	초등학교	1.58(0.88)	64.3	17.9	13.7	4.2	100.0(2,595)	48.247***
	중학교	1.61(0.86)	60.1	23.5	12.1	4.3	100.0(2,860)	
	고등학교	1.63(0.85)	58.0	24.6	13.8	3.6	100.0(3,466)	
지역 규모	대도시	1.59(0.85)	61.2	21.9	13.3	3.6	100.0(3,725)	17.810**
	중소도시	1.61(0.87)	60.2	23.0	12.2	4.6	100.0(3,928)	
	읍면지역	1.63(0.87)	59.1	21.6	16.0	3.3	100.0(1,26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8(0.84)	61.7	22.3	12.3	3.6	100.0(8,069)	125.029***
	한부모가정	1.95(1.02)	45.9	22.3	22.7	9.1	100.0(650)	
	조손가정	1.73(0.94)	56.1	19.3	20.1	4.5	100.0(86)	
	기타	1.64(0.82)	56.2	25.6	16.5	1.8	100.0(109)	
학업 성적	상	1.56(0.85)	64.3	19.6	12.1	3.9	100.0(3,006)	75.592***
	중	1.58(0.84)	61.5	22.7	12.4	3.4	100.0(3,828)	
	하	1.73(0.91)	53.0	25.5	16.4	5.1	100.0(2,083)	
경제적 수준	상	1.48(0.79)	68.0	18.8	10.4	2.8	100.0(4,850)	485.732***
	중	1.65(0.86)	56.6	25.8	13.8	3.9	100.0(3,130)	
	하	2.13(1.00)	34.4	29.0	26.1	10.5	100.0(937)	

**$p<.01$, ***$p<.001$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5-24]), 2013년 18.8%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1.7%p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의 상승폭이 3.2%p로 가장 컸으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1%p 내외의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평균값 기준 1.80점(SD=.92)으로 나타났다(<표 Ⅲ-5-48>). 여학생(M=2.03)이 남학생(M=1.59)보다 또래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더 받았으며, 중학생(M=1.87)이 초등학생(M=1.71), 고등학생(M=1.82)보다 또래관계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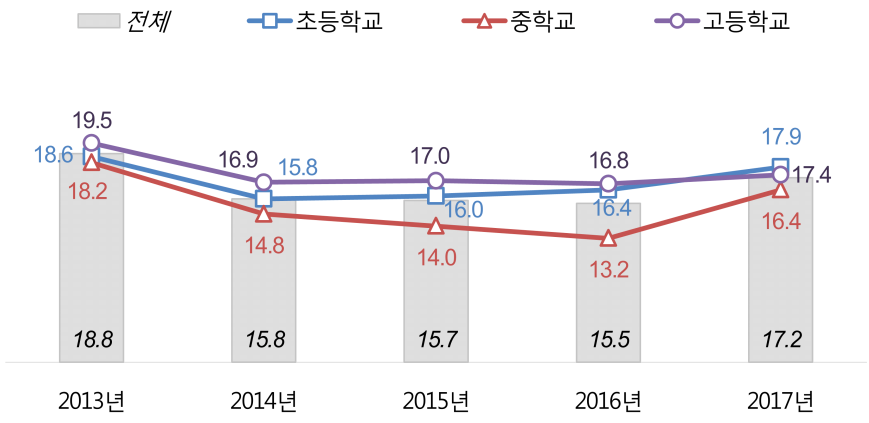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24】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가정 불화(연도별 추이)

표 Ⅲ-5-48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또래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80(0.92)	48.7	27.4	18.6	5.2	100.0(8,994)	–
성별	남자	1.59(0.81)	59.0	25.9	12.2	2.9	100.0(4,676)	531.506***
	여자	2.03(0.97)	37.7	29.0	25.7	7.6	100.0(4,318)	
학교급	초등학교	1.71(0.93)	56.5	21.8	16.2	5.5	100.0(2,600)	127.951***
	중학교	1.87(0.95)	45.9	27.2	20.8	6.1	100.0(2,900)	
	고등학교	1.82(0.88)	45.3	31.8	18.7	4.2	100.0(3,49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9(0.92)	49.4	27.1	18.4	5.1	100.0(8,138)	30.611***
	한부모가정	1.96(0.95)	40.4	30.3	22.7	6.6	100.0(653)	
	조손가정	1.79(0.91)	50.5	22.8	24.0	2.8	100.0(86)	
	기타	1.67(0.83)	51.9	33.8	10.0	4.3	100.0(110)	
학업 성적	상	1.76(0.91)	51.1	26.8	17.1	5.0	100.0(3,032)	41.940***
	중	1.78(0.91)	50.1	27.0	18.2	4.7	100.0(3,849)	
	하	1.91(0.94)	43.1	29.1	21.6	6.2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1.70(0.90)	54.8	24.6	16.1	4.6	100.0(4,901)	222.067***
	중	1.86(0.91)	44.6	30.2	19.9	5.3	100.0(3,146)	
	하	2.13(0.95)	31.3	32.8	27.8	8.1	100.0(943)	

***α<.001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또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른 가족유형에서 보다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상: 1.76점, 중: 1.78점, 하: 1.91점)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1.70점, 중: 1.86점, 하: 2.13점) 또래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표 Ⅲ-5-48>).

또래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그림 Ⅲ-5-25]), 그동안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전년대비 3.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학생은 상승폭이 6.3%p로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 보다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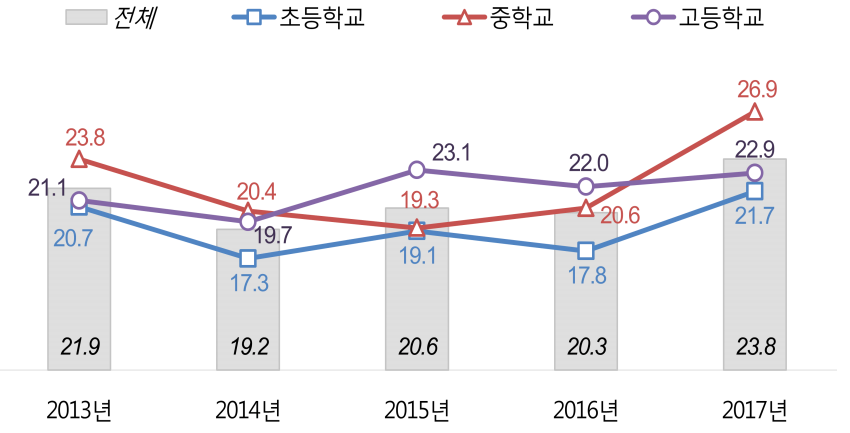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25】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또래와의 관계(연도별 추이)

스트레스 원인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45점의 평균점수(4점 만점)를 보여 다른 스트레스 원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Ⅲ-5-49>). 남학생(M=1.39)보다는 여학생(M=1.51)에게서,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초: 1.30점 → 중: 1.41점 → 고: 1.58점), 대도시(M=1.43)나 중소도시(M=1.43)보다는 읍면지역(M=1.55)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트레스 원인으로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에서(M=1.81), 그리고 학업성적(상: 1.35점, 중: 1.43점, 하: 1.63점)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1.24점, 중: 1.51점, 하: 2.32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한 집단의 경우 절반 가까이인 46%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는 2013년에 12.6%의 응답(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보인 이후, 2014년 11.2%, 2015년 10.4%, 2016년 10.2%, 2017년 9.9%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5-26]).

표 Ⅲ-5-49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경제적인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45(0.72)	67.0	23.1	8.3	1.6	100.0(8,990)	–
성별	남자	1.39(0.68)	70.9	21.3	6.2	1.7	100.0(4,673)	90.355***
	여자	1.51(0.75)	62.8	25.0	10.7	1.6	100.0(4,316)	
학교급	초등학교	1.30(0.62)	77.0	17.0	4.8	1.3	100.0(2,597)	266.312***
	중학교	1.41(0.68)	68.2	23.7	6.7	1.4	100.0(2,900)	
	고등학교	1.58(0.79)	58.5	27.0	12.3	2.1	100.0(3,492)	
지역 규모	대도시	1.43(0.70)	68.0	23.0	7.6	1.4	100.0(3,755)	34.237***
	중소도시	1.43(0.71)	67.7	22.9	7.9	1.6	100.0(3,959)	
	읍면지역	1.55(0.79)	61.9	23.9	12.0	2.3	100.0(1,27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41(0.69)	68.7	22.5	7.4	1.4	100.0(8,133)	195.330***
	한부모가정	1.81(0.89)	46.6	30.1	18.7	4.6	100.0(653)	
	조손가정	1.47(0.79)	68.2	18.9	10.1	2.8	100.0(86)	
	기타	1.57(0.79)	60.2	24.6	13.6	1.6	100.0(110)	
학업 성적	상	1.35(0.65)	73.8	18.9	6.0	1.2	100.0(3,030)	218.997***
	중	1.43(0.68)	67.1	24.4	7.5	1.1	100.0(3,850)	
	하	1.63(0.83)	56.9	26.5	13.3	3.2	100.0(2,105)	
경제적 수준	상	1.24(0.52)	80.3	16.3	2.8	0.6	100.0(4,899)	2,107.748***
	중	1.51(0.70)	59.6	31.0	8.3	1.1	100.0(3,145)	
	하	2.32(0.92)	22.5	31.4	37.2	8.9	100.0(942)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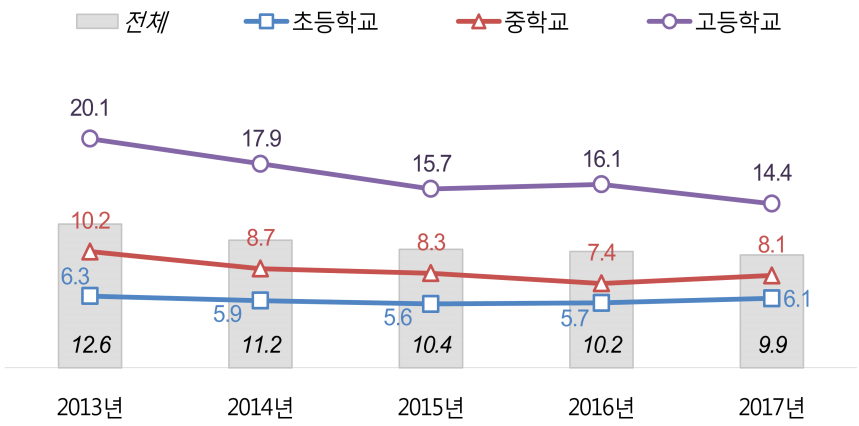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26】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경제적인 어려움(연도별 추이)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외모 및 신체 조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Ⅲ-5-50>), 4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1.87점(SD=.94)을 보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또래관계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M=1.67)보다는 여학생(M=2.09)에게서,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초: 1.55점→중: 1.94점→고: 2.04점), 또 대도시(M=1.85)나 중소도시(M=1.86)보다는 읍면지역(M=1.96)에서, 다른 가정유형에서보다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한부모: 2.04점, 양부모: 1.86점, 조손: 1.75점, 기타: 1.74점). 앞에서 다룬 다른 스트레스원인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적(상: 1.75, 중: 1.83, 하: 2.11)과 경제적 수준(상: 1.72, 중: 1.96, 하: 2.32)을 낮게 인식할수록 외모와 신체조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는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연도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미세한 수준(0.8%p)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5-27]).

표 Ⅲ-5-50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외모·신체조건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87(0.94)	45.4	28.0	20.8	5.8	100.0(8,995)	–
성별	남자	1.67(0.86)	55.6	25.8	14.9	3.7	100.0(4,677)	475.267***
	여자	2.09(0.96)	34.4	30.4	27.2	8.0	100.0(4,318)	
학교급	초등학교	1.55(0.85)	63.9	21.2	10.7	4.3	100.0(2,598)	568.020***
	중학교	1.94(0.95)	41.7	29.3	22.3	6.7	100.0(2,902)	
	고등학교	2.04(0.93)	34.8	32.1	27.1	6.1	100.0(3,494)	
지역 규모	대도시	1.85(0.93)	46.4	27.8	20.1	5.7	100.0(3,757)	16.439*
	중소도시	1.86(0.93)	45.8	28.2	20.4	5.5	100.0(3,961)	
	읍면지역	1.96(0.96)	41.2	28.0	24.0	6.8	100.0(1,2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6(0.93)	45.9	28.0	20.4	5.7	100.0(8,137)	37.116***
	한부모가정	2.04(0.95)	36.2	30.2	26.9	6.7	100.0(654)	
	조손가정	1.75(0.98)	57.7	15.7	20.9	5.7	100.0(86)	
	기타	1.74(0.90)	51.9	27.6	15.3	5.1	100.0(110)	
학업 성적	상	1.75(0.89)	51.1	27.3	17.3	4.2	100.0(3,032)	199.266***
	중	1.83(0.91)	46.3	28.9	19.8	5.0	100.0(3,850)	
	하	2.11(1.00)	35.5	27.6	27.5	9.4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1.72(0.89)	53.2	26.0	16.3	4.5	100.0(4,899)	415.075***
	중	1.96(0.92)	38.9	31.4	24.1	5.6	100.0(3,147)	
	하	2.32(1.01)	27.0	27.2	32.8	13.0	100.0(944)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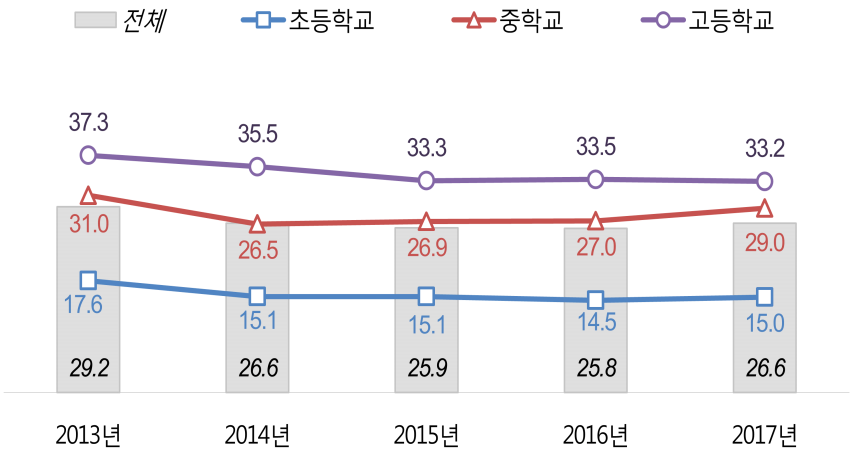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27】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외모·신체조건(연도별 추이)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평균값 기준(4점 만점)으로 전체 2.36점(SD=1.13)으로 나타나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다음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표 Ⅲ-5-51>). 여학생(M=2.57)이 남학생(M=2.16)보다, 그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1.58점→중: 2.39점→고: 2.91점), 또 대도시(M=2.34)나 중소도시(M=2.31)보다 읍면지역(M=2.57)의 응답자에게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2.12점→중: 2.34점→하: 2.74점),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상: 2.16점→중: 2.50점→하: 2.93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기준으로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65.1%가,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 중 72.7%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도별 차이를 보면([그림 Ⅲ-5-28]),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등학생은 다소 감소하였으나(2.2%p),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경우는 2016년 대비 각각 0.6%p, 0.5%p 정도 증가해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Ⅲ-5-51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36(1.13)	33.1	17.2	30.3	19.3	100.0(8,999)	–
성별	남자	2.16(1.11)	40.0	18.4	27.2	14.5	100.0(4,680)	293.469***
	여자	2.57(1.12)	25.7	16.0	33.7	24.5	100.0(4,319)	
학교급	초등학교	1.58(0.89)	64.4	18.7	11.7	5.3	100.0(2,598)	2,240.261***
	중학교	2.39(1.08)	28.5	21.0	33.1	17.4	100.0(2,907)	
	고등학교	2.91(0.99)	13.7	13.0	41.9	31.4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2.34(1.14)	34.1	17.3	29.2	19.4	100.0(3,757)	57.911***
	중소도시	2.31(1.12)	34.6	17.7	29.8	17.8	100.0(3,964)	
	읍면지역	2.57(1.11)	25.5	15.6	35.0	23.8	100.0(1,2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35(1.13)	33.6	17.2	30.0	19.2	100.0(8,142)	40.196***
	한부모가정	2.56(1.09)	24.8	16.4	36.8	22.0	100.0(654)	
	조손가정	2.16(1.12)	40.5	17.6	27.2	14.7	100.0(86)	
	기타	2.02(1.08)	43.9	22.5	21.0	12.7	100.0(110)	
학업 성적	상	2.12(1.11)	42.2	18.5	24.9	14.5	100.0(3,031)	392.011***
	중	2.34(1.11)	33.0	17.8	31.5	17.7	100.0(3,855)	
	하	2.74(1.09)	20.4	14.5	35.9	29.2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2.16(1.12)	40.8	17.4	26.8	14.9	100.0(4,902)	457.813***
	중	2.50(1.11)	26.9	18.0	33.4	21.7	100.0(3,149)	
	하	2.93(1.01)	13.9	13.4	38.4	34.3	100.0(944)	

***α<.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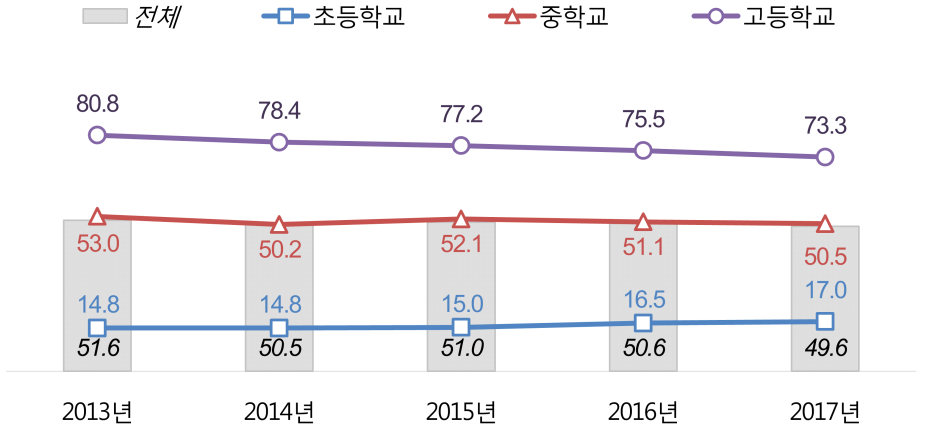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28】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연도별 추이)

각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가 평균값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표 Ⅲ-5-52>와 같이 나타났다. 앞서 각 스트레스 원인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배경변인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신체조건,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과 같은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의 평균값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5-52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성별	남	2.54	1.08	1.55	.83	1.59	.81	1.39	.68	1.67	.86	2.16	1.11
	여	2.89	.98	1.67	.89	2.03	.97	1.51	.75	2.09	.96	2.57	1.12
	t	−16.050***		−6.567***		−23.351***		−8.156***		−21.794***		−17.409***	
학교급	초등학교	2.32	1.07	1.58	.88	1.71	.93	1.30	.62	1.55	.85	1.58	.89
	중학교	2.76	1.01	1.61	.86	1.87	.95	1.41	.68	1.94	.95	2.39	1.08
	고등학교	2.96	.99	1.63	.85	1.82	.88	1.58	.79	2.04	.93	2.91	.99
	F(Scheffé)	300.317*** (a<b<c)		2.884		22.645*** (a<b, c)		119.133*** (a<b<c)		227.651*** (a<b<c)		1344.215*** (a<b<c)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2	1.05	1.58	.84	1.79	.92	1.41	.69	1.86	.93	2.35	1.13
	한부모가정	2.71	1.03	1.95	1.02	1.96	.95	1.81	.90	2.04	.95	2.56	1.09
	조손가정	2.47	1.12	1.73	.94	1.79	.91	1.47	.79	1.75	.98	2.16	1.12
	기타	2.18	1.01	1.64	.82	1.67	.83	1.57	.79	1.74	.90	2.02	1.08
	F(Scheffé)	11.091*** (d, e>g)		38.536*** (d<e, e>g)		7.301*** (d<e, e>g)		64.322*** (d<e, e>f, g)		8.942*** (d<e, e>g)		11.267*** (d<e, d>g, e>f, g)	
학업 성적	상	2.60	1.08	1.56	.85	1.76	.91	1.35	.65	1.75	.89	2.12	1.11
	중	2.72	1.03	1.58	.84	1.78	.91	1.43	.68	1.83	.91	2.34	1.11
	하	2.84	1.02	1.73	.91	1.91	.94	1.63	.83	2.11	1.00	2.74	1.09
	F(Scheffé)	35.084*** (h<i<j)		30.416*** (h<j, i<j)		19.313*** (h<j, i<j)		102.388*** (h<i<j)		99.118*** (h<i<j)		197.749*** (h<i<j))	
경제적 수준	상	2.62	1.07	1.48	.79	1.70	.90	1.24	.52	1.72	.89	2.16	1.12
	중	2.77	1.02	1.65	.86	1.86	.91	1.51	.70	1.96	.92	2.50	1.11
	하	2.94	.99	2.13	1.00	2.13	.95	2.32	.92	2.32	1.01	2.93	1.02
	F(Scheffé)	46.305*** (k<l<m)		239.844*** (k<l<m)		95.137*** (k<l<m)		1177.095*** (k<l<m)		194.134*** (k<l<m)		233.447*** (k<l<m)	

***p<.001

* 주: 학교급(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가족유형(d=양부모가정, e=한부모가정, f=조손가정, g=기타), 학업성적(h=상, i=중, j=하), 경제적 수준(k=상, l=중, m=하)

학업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신체조건,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유사한 수준으로 초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은 학업문제를 제외한 모든 스트레스 원인별 항목에서 다른 가정유형의 청소년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업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았으며, 가정불화와 또래관계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도 모든 스트레스 원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스트레스 원인과 관련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과 차이를 갖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Ⅲ-5-53>),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모든 스트레스 원인 항목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특히 학업문제와 가정불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항목의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에 따른 평균차이가 0.6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5-53 스트레스유형에 따른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차이

스트레스 유형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1)]		t
	Mean	SD	Mean	SD	
학업문제	2.67	1.02	3.27	.82	−25.690**
가정불화	1.41	.68	2.04	1.00	−25.943***
또래와의 관계	1.65	.82	2.22	.97	−23.193***
경제적인 어려움	1.39	.65	1.74	.85	−16.515***
외모 및 신체조건	1.82	.88	2.36	.95	−21.877***
미래에 대한 불안	2.47	1.06	3.09	.94	−23.878***

**$p<.01$, ***$p<.001$.

* 주: 1)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를 합쳐서 산출한 값.

④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현재 행복한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3%,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는 13.9%, '행복한 편이다'는 52.4%, '매우 행복하다'는 31.5%로 나타나 응답 청소년의 4/5 이상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 기준으로는

4점 만점에 3.13점(SD=.73)이었으며, 성별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3.20점으로 여학생(M=3.06)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행복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초: 3.40점, 중: 3.13점, 고: 2.93점), 가족유형별로는 기타가정(M=3.29), 양부모가정(M=3.14), 조손가정(M=3.09), 한부모가정(M=2.97) 순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행복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3.27점, 중: 3.15점, 하: 2.91점),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3.28점, 중: 3.02점, 하: 2.72점)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54 현재 행복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전체		3.13(0.73)	2.3	13.9	52.4	31.5	100.0(8,980)	–
성별	남자	3.20(0.74)	2.6	11.2	49.7	36.4	100.0(4,670)	142.976***
	여자	3.06(0.71)	1.9	16.8	55.2	26.2	100.0(4,309)	
학교급	초등학교	3.40(0.71)	1.5	8.4	38.8	51.3	100.0(2,580)	793.374***
	중학교	3.13(0.70)	2.1	12.4	55.5	30.0	100.0(2,905)	
	고등학교	2.93(0.70)	2.9	19.1	59.8	18.2	100.0(3,49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4(0.72)	2.2	13.5	52.2	32.1	100.0(8,131)	49.581***
	한부모가정	2.97(0.73)	3.0	19.0	56.4	21.6	100.0(649)	
	조손가정	3.09(0.77)	3.2	15.8	49.5	31.4	100.0(85)	
	기타	3.29(0.75)	3.3	7.6	45.7	43.3	100.0(108)	
학업 성적	상	3.27(0.70)	1.4	10.4	48.7	39.6	100.0(3,026)	322.135***
	중	3.15(0.70)	1.9	12.7	54.1	31.4	100.0(3,844)	
	하	2.91(0.76)	4.2	21.1	54.6	20.1	100.0(2,105)	
경제적 수준	상	3.28(0.68)	1.3	9.5	49.1	40.1	100.0(4,892)	621.025***
	중	3.02(0.71)	2.7	16.1	57.4	23.8	100.0(3,142)	
	하	2.72(0.76)	5.8	29.4	52.2	12.6	100.0(941)	

***$p<.001$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도의 연도별 추이를 긍정적 응답을 기준으로(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살펴보면([그림 Ⅲ-5-29]), 2013년에 81.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0.2%p 상승).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행복도는 전년대비 1%p 정도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은 2%p 정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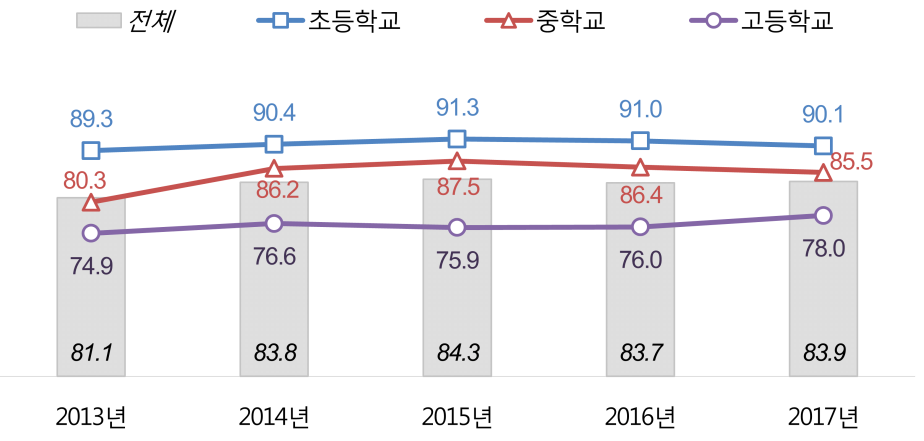

* 주: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29】 현재 행복 정도(연도별 추이)

행복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을 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Ⅲ-5-55>), 전체적으로 '학업부담 때문에'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18.6%,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10%, '외모나 신체적 불만족' 7.2%,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2.9% 순으로 나타났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의 경우 성별차이는 크기 않았으며, 남학생은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경우(남: 10.6%, 여: 7.7%)와 경제적 어려움(남: 4.3%, 여: 1.8%)이, 그리고 여학생은 친구와의 관계(남: 8.1%, 여: 11.4%)와 외모 및 신체적 불만족(남: 6.4%, 여: 7.9%)에서 응답률이 더 높았다. 모든 학교급별에서 학업부담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많이 응답했으나(초: 40.9%, 중: 36.5%, 고: 47%), 초등학생은 가정의 화목(초: 18%, 중: 11.0%, 고: 4.8%)과 친구관계(초: 14.2%, 중: 14.0%, 고: 6.3%)에서, 그리고 중학생은 친구와의 관계(초: 14.2%, 중: 14.0%, 고: 6.3%), 고등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초: 7.3%, 중: 16.9%, 고: 23.3%)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5-55>에서 보듯이 학업성적이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에게서 학업부담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상: 46.3% 중: 48.7% 하: 34.8%),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상: 18.8%, 중: 14.5%, 하: 22.4).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의 경우 학업부담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상: 49%, 중: 46.8%, 하: 26.3%).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은 특히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상: 7%, 중: 8.4%, 하: 13.2%)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상: 1%, 중: 0.2%, 하: 10.8%), 미래에 대한 불안(상: 15.3%, 중: 19.4%, 하: 22.3%)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5-55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부담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나 신체적 불만족	미래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N)	χ^2
전체		42.9	9.0	10.0	2.9	7.2	18.5	9.5	100.0(1,412)	–
성별	남자	43.2	10.6	8.1	4.3	6.4	19.4	8.0	100.0(626)	18.809**
	여자	42.6	7.7	11.4	1.8	7.9	17.8	10.7	100.0(786)	
학교급	초등학교	40.9	18.0	14.2	1.4	9.2	7.3	9.0	100.0(254)	101.506***
	중학교	36.5	11.0	14.0	3.1	8.9	16.9	9.6	100.0(414)	
	고등학교	47.0	4.8	6.3	3.4	5.7	23.3	9.6	100.0(744)	
지역 규모	대도시	43.8	8.1	9.9	4.2	6.8	17.3	9.8	100.0(585)	16.339
	중소도시	40.4	10.2	10.4	2.3	8.0	20.4	8.4	100.0(619)	
	읍면지역	47.5	7.9	8.9	1.3	6.0	16.5	12.0	100.0(20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5.3	8.1	9.8	2.5	7.6	18.0	8.8	100.0(1,246)	–
	한부모가정	23.4	17.1	10.1	5.0	5.2	25.6	13.6	100.0(137)	
	조손가정	37.2	1.2	19.4	19.2	0.0	0.0	23.0	100.0(16)	
	기타	24.4	17.9	7.0	0.0	6.9	25.7	18.1	100.0(11)	
학업 성적	상	46.3	9.1	10.6	1.9	7.4	18.8	6.0	100.0(345)	45.915***
	중	48.7	10.6	8.2	1.7	6.5	14.5	9.8	100.0(541)	
	하	34.8	7.2	11.2	4.9	8.0	22.4	11.6	100.0(523)	
경제적 수준	상	49.0	7.0	10.9	1.0	8.2	15.3	8.5	100.0(514)	144.080***
	중	46.8	8.4	10.5	0.2	6.5	19.4	8.3	100.0(573)	
	하	26.3	13.2	7.2	10.8	6.9	22.3	13.3	100.0(323)	

**$p<.01$, ***$p<.001$

* 주: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행복하지 않다'의 응답률을 합친 값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따른 조사결과를 2013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그림 Ⅲ-5-30]과 같다[30].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된 2013년과 2017년 조사결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학업부담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이 2013년에는 37.3%였으나 2017년에는 42.9%로 5.6%p 상승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2013년에는 22.8%였으나, 2017년에는 18.5%로 4.3%p 감소하였다. 이외의 다른 항목에서는 1~2%p 정도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업부담에 대한 응답률이 2017년에는 40.9%로

30) 2014~2016년도 조사에 포함되었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가 2017년 조사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2013년 조사결과와만 비교하였음. 타 연도의 조사결과는 통계자료집 p.215 〈표 Ⅲ-5-28-1〉 참조

2013년 대비 3.9%p 상승했으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1.4%로 2013년 대비 3.6%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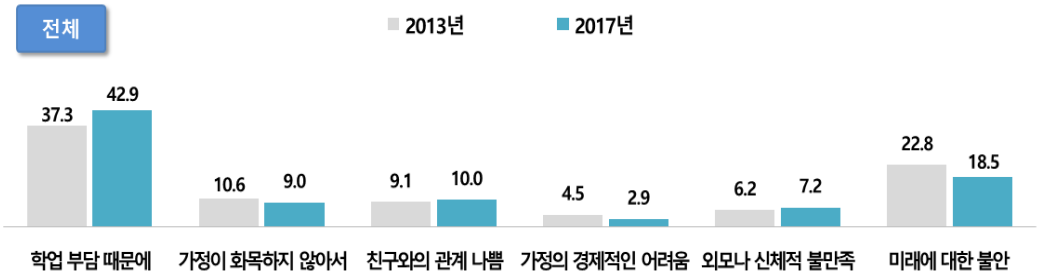

* 주: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행복하지 않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30】 행복하지 않은 이유: 전체(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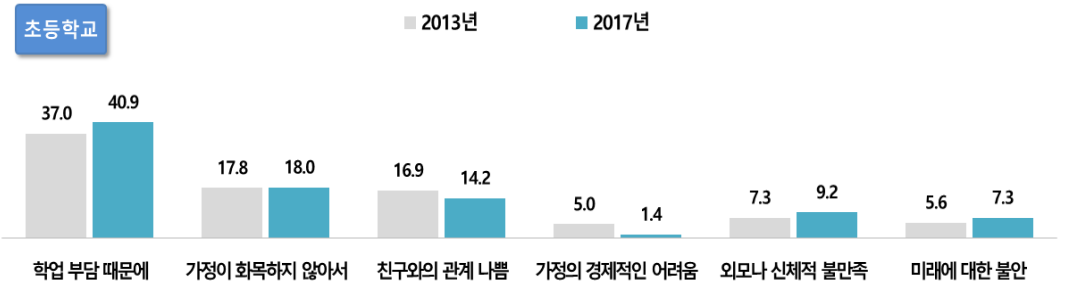

* 주: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행복하지 않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31】 행복하지 않은 이유: 초등학생(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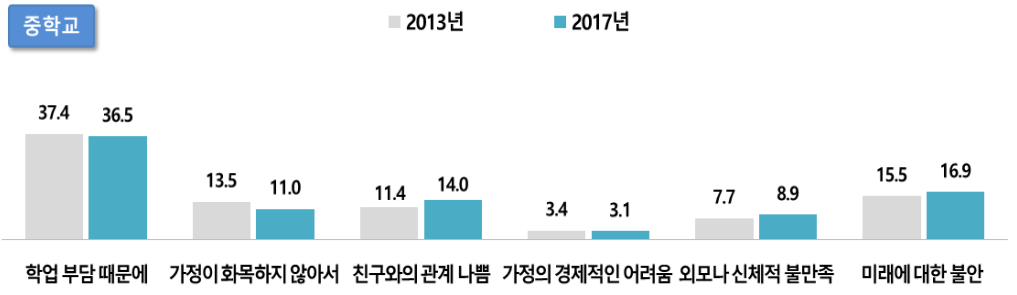

* 주: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행복하지 않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32】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학생(연도별 추이)

[그림 Ⅲ-5-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생의 경우는 201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1~2%p정도의 증감을 보이는 정도였으며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업부담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2013년 37.4%에서 2017년 47%로 나타나 약 10%p 정도 상승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미래에 대한 불안은 2013년 대비 11.2%p 감소한 23.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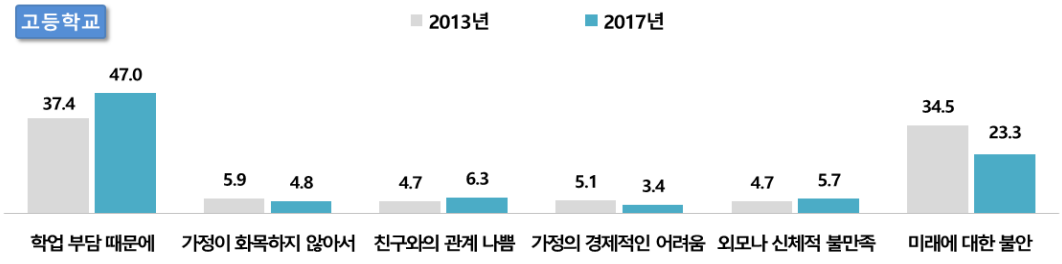

* 주: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행복하지 않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33】 행복하지 않은 이유: 고등학생(연도별 추이)

⑤ 삶의 만족도

2015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부터 포함되기 시작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인 삶의 복지수준 (subjective well-being)을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 수준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용하는 삶의 만족도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of life satisfaction) 척도를 활용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조사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0=worst, 10=best)을 의미한다.

2017년 조사결과를 보면, 1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7점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그림 Ⅲ-5-34]). 남학생의 평균은 7.34점, 여학생은 6.63점으로 여자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별차이 역시 2015년 이후 일관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삶의 만족도 평균값의 연도별 차이를 보면, 전체 평균치 기준 2015년 6.75점, 2016년 6.85점, 2017년 7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도 2015년 6.88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하여 2017년에는 7.34점으로 평균값의 상승폭이 비교적 컸다. 여학생은 2015년 6.6점에서 2016년 6.72점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17년에는 6.63점으로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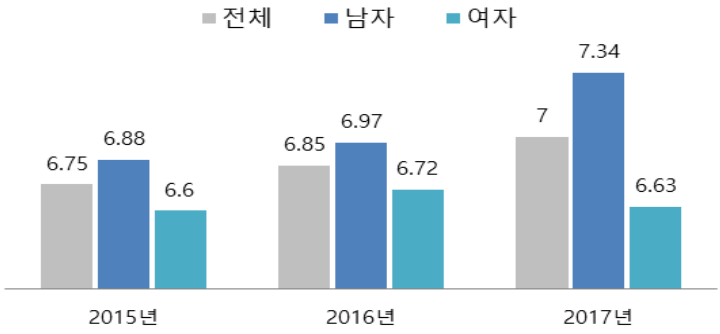

【그림 Ⅲ-5-34】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2017년의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학교급별로 보면(<표 Ⅲ-5-56>), 초등학생은 7.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은 6.95점, 고등학생은 6.32점으로 나타났는데, 고등학생 중 일반계고는 가장 낮은 6.28점을 보여 특성화계고의 6.49점보다 더 낮았다.

표 Ⅲ-5-56 삶의 만족도 (단위 : 점, 명)

구분			10점 만점 기준 평균	SD	전체(N)
전체			7.00	2.41	8992
성별	남자		7.34	2.35	4677
	여자		6.63	2.41	4315
학교급	초등학교		7.98	2.22	2596
	중학교		6.95	2.34	2901
	고등학교	계	6.32	2.35	3495
		일반계고	6.28	2.35	2824
		특성화계고	6.49	2.35	671
지역규모	대도시		7.08	2.40	3754
	중소도시		6.99	2.40	3959
	읍면지역		6.81	2.44	1279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7.05	2.39	8135
	한부모가정		6.38	2.42	654
	조손가정		6.96	2.26	86
	기타		7.01	2.67	109
학업성적	상		7.62	2.30	3029
	중		7.04	2.28	3848
	하		6.06	2.49	2110
경제적수준	상		7.61	2.21	4898
	중		6.53	2.34	3145
	하		5.39	2.47	944

또한 <표 Ⅲ-5-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규모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값이 컸는데, 대도시 거주 청소년은 7.08점, 중소도시는 6.99점, 읍면지역은 6.81점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이 7.05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가정 7.01점, 조손가정 6.96점, 한부모가정 6.38점 순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정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았다. 학업성적(상: 7.62점, 중: 7.04점, 하: 6.06점)과 경제적 수준(상: 7.61점, 중: 6.53점, 하: 5.39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차이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국제비교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4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는 "학령기아동 건강행태연구(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이하 HBSC 연구)가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3/2014년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가능한 HBSC연구와 동일한 연령대 비교를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 중 11세(2006년 출생), 13세(2004년 출생), 15세(2002년 출생) 청소년의 데이터를 별도로 선택하여, HBSC 연구에서와 같이 삶의 만족도 척도인 0점에서 10점 중 6점 및 그 이상을 응답한 비율을 산출하였다.

<표 Ⅲ-5-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HBSC연구에 포함된 41개국[31]의 전체 평균과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의 11세 응답자의 경우 6점 이상을 넘는 응답률이 전체 80%였으며, 남자청소년 81%, 여자청소년 79%인데 비해, HBSC 연구에서는 89%(전체, 남자, 여자 비율 동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13세 남자청소년의 조사결과는 HBSC 연구에서의 13세 남자청소년의 응답률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한국의 여자청소년은 68%인데 비해 HBSC 연구에서의 여자응답자의 경우 82%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15세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77%, 여자청소년은 61%인데 비해 HBSC 연구에서의 남자청소년은 87%, 여자청소년은 79%로 역시 여자청소년의 응답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비록 조사시점에 차이가 있어 동일선상에서의 비교가 어려울 수 있으나, 국제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여자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 알바니아, 그리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몰도바, 아르메니아, 스코틀랜드, 몰타, 스페인,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스위스,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영국, 이스라엘, 포르투갈, 웨일즈,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룩셈부르크, 벨기에, 라트비아, 독일, 캐나다, 폴란드, 슬로베니아, 그린란드, 러시아연방, 프랑스, 체코, 마케도니아

표 Ⅲ-5-57 삶의 만족도(한국과 WHO의 HBSC 연구결과와의 비교) (단위 : %)

구분			11세	13세	15세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전체	2016[1]	80	73	70
		2017	80	76	69
	남자	2016	82	78	74
		2017	81	82	77
	여자	2016	78	67	67
		2017	79	68	61
HBSC*	전체	2009/2010[2]	88	85	83
		2013/2014[3]	89	86	83
	남자	2009/2010	88	85	83
		2013/2014	89	89	87
	여자	2009/2010	88	83	79
		2013/2014	89	82	79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총괄보고서 p.368
2) Bradshaw, J., B. Martorano, L. Natali, & C. de Neubourg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orking Paper 2013-03. UNICEF Office of Research, Florence. p.11.
3) Inchley, J., Currie, F., Young, T., Samdal, O., Torsheim, T., Augustson, L., Mathiso, F., Aleman-Diaz, A., Molcho, M., Weber, M., & Barnekow, V. (2016). Growing up unequal. HBSC 2016 study(2013/2014 survey).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13/2014 survey. pp.76-77

* 주: 0점에서 10점 중 6점 및 6점 이상을 응답한 비율

이 HBSC 연구의 조사결과 중 15세 남녀청소년의 조사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그림 Ⅲ-5-35]), 한국의 15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 사례는 네덜란드의 15세 남자청소년으로 6점 이상의 삶의 만족도를 응답한 비율이 94%, 여자청소년은 84%로 나타났다. [그림 Ⅲ-5-35]에서 제시된 국가 중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 국가는 폴란드로 남자청소년이 83%, 여자청소년은 68%로 나타났으며[32], 전체적으로 여자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남자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32) [그림 Ⅲ-5-35]]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마케도니아의 경우 남자청소년은 74%, 여자청소년은 72%로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Inchley, J., et al., 2016: 7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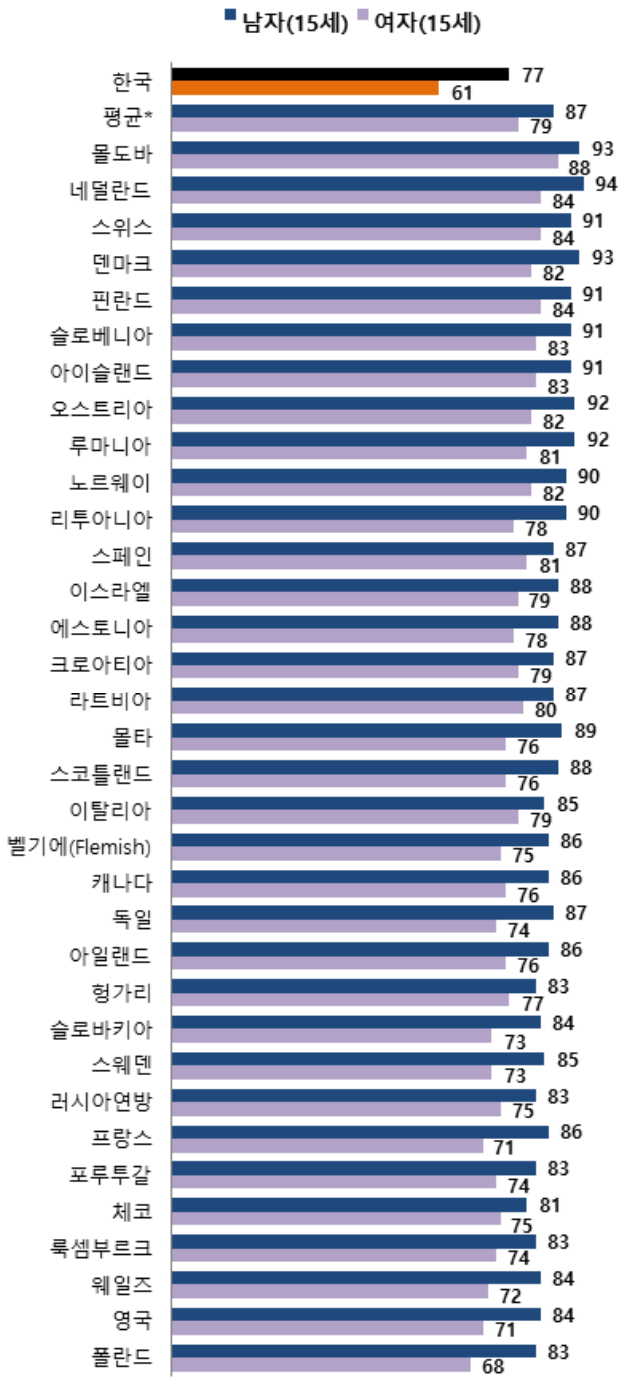

* 평균은 조사대상 국가인 42개 국가의 전체 평균이며, 유의미한 성별차이(p<.05)를 보이지 않은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그린란드, 마케도니아는 본 그래프에서 제외하였음.

**주 1):
0점에서 10점까지 중 6점 이상을 응답한 비율(단위: %)

주 2):
본 그래프의 원출처는 WHO(Inchley et al, 2016: 77)이며, 한국통계치의 경우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삶의 만족도 항목을 분석하여(15세 응답자 데이터) 이를 추가하여 그래프를 재작성한 것임.

【그림 Ⅲ-5-35】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15세 청소년 기준)

⑥ 자아존중감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4개 항목에 대해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긍정적인 응답(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그림 Ⅲ-5-36]),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76.7%,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74%,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부정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27.4%,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77.8%로 응답해 각각의 자아존중감 관련 항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조사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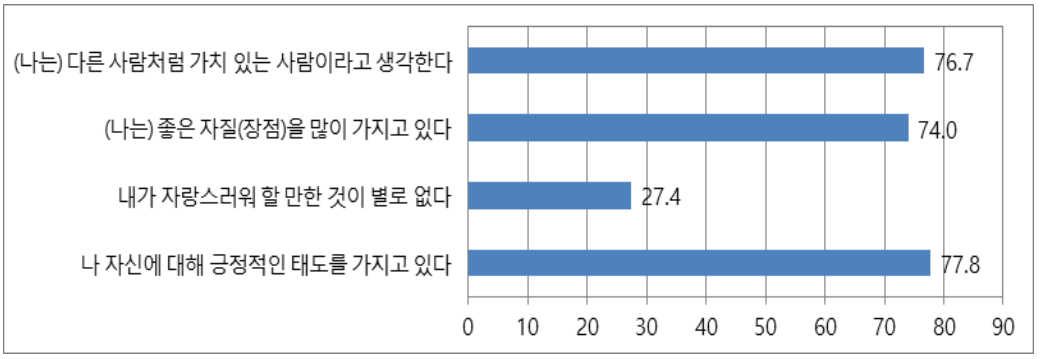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친 비율(%)

【그림 Ⅲ-5-36】 자아존중감 항목별 비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개별 항목에 대해 평균값 기준으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표 Ⅲ-5-58>), 먼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에 대해 남학생은 3.01점, 여학생은 3.0점으로 전체 평균값인 3.01(SD=.95)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가장 높은 3.06점을 보였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하게 나타났다(각각 2.97점, 2.99점). 지역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도시 거주 청소년은 3.04점,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각각 2.99점과 2.98점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3.03점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정 2.87점, 기타가정 2.76점, 조손가정 2.67점 순이었다.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2점, 중: 2.98점, 하: 2.79점),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3.1점, 중: 2.93점, 하: 2.8점)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Ⅲ-5-58 자아존중감_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1(0.95)	10.7	12.5	41.9	34.8	100.0(8,989)	–
성별	남자	3.01(1.00)	13.4	9.6	39.5	37.5	100.0(4,675)	166.518***
	여자	3.00(0.89)	7.9	15.7	44.6	31.8	100.0(4,313)	
학교급	초등학교	2.97(1.10)	18.0	8.1	32.6	41.3	100.0(2,596)	391.482***
	중학교	3.06(0.90)	8.1	12.9	43.3	35.7	100.0(2,902)	
	고등학교	2.99(0.86)	7.5	15.5	47.7	29.3	100.0(3,491)	
지역 규모	대도시	3.04(0.96)	10.8	11.4	40.7	37.1	100.0(3,753)	20.063**
	중소도시	2.99(0.94)	10.6	13.5	42.6	33.3	100.0(3,958)	
	읍면지역	2.98(0.95)	10.9	12.9	43.4	32.8	100.0(1,2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3(0.95)	10.5	12.0	41.9	35.6	100.0(8,132)	71.500***
	한부모가정	2.87(0.92)	10.3	18.7	44.6	26.4	100.0(654)	
	조손가정	2.67(1.10)	23.9	10.1	40.8	25.2	100.0(86)	
	기타	2.76(1.15)	22.0	14.3	29.6	34.1	100.0(110)	
학업 성적	상	3.20(0.95)	9.7	7.9	35.7	46.8	100.0(3,032)	426.481***
	중	2.98(0.94)	11.2	12.2	44.2	32.5	100.0(3,849)	
	하	2.79(0.91)	11.4	19.9	46.9	21.9	100.0(2,104)	
경제적 수준	상	3.10(0.97)	11.2	9.0	38.6	41.1	100.0(4,900)	337.731***
	중	2.93(0.92)	10.5	14.3	46.7	28.6	100.0(3,141)	
	하	2.80(0.89)	9.0	25.0	43.3	22.7	100.0(944)	

**$p<.01$, ***$p<.001$

긍정적인 응답을 기준으로 연도별 차이를 보면([그림 Ⅲ-5-37]), 2015년에 7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에 다소 감소하였는데, 2017년에는 전년대비 2.2%p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감소폭(초: 0.9%p, 중: 3.6%p, 고: 1.6%p)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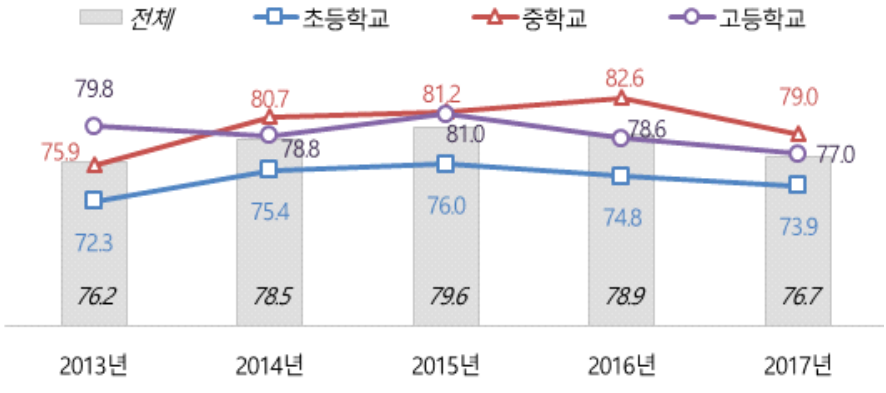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37】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조사항목의 전체 평균값은 2.97점(SD=.89)이었으며, 남자는 3점, 여자는 2.94점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표 Ⅲ-5-59>). 학교급별로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은 평균값을 보여 초등학생은 3.14점, 중학생은 2.94점이었으나 고등학생은 가장 낮은 2.87점을 나타냈다. 또한 대도시 거주 청소년은 3.01점, 중소도시는 2.95점, 읍면지역은 2.91점으로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가장 높은 2.99점을 보였고, 그 다음은 기타가정 2.93점, 조손가정 2.82점, 한부모가정 2.79점으로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에게서 가장 낮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는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3.22점, 중: 2.95점, 하: 2.66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3.09점, 중: 2.87점, 하: 2.69점) 자신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았다.

표 Ⅲ-5-59 자아존중감_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7(0.89)	7.7	18.4	43.1	30.9	100.0(8,984)	-
성별	남자	3.00(0.94)	9.9	14.6	41.1	34.4	100.0(4,669)	188.034***
	여자	2.94(0.84)	5.2	22.4	45.3	27.0	100.0(4,315)	
학교급	초등학교	3.14(0.89)	7.4	11.6	40.3	40.7	100.0(2,592)	236.701***
	중학교	2.94(0.89)	8.0	18.8	44.0	29.2	100.0(2,902)	
	고등학교	2.87(0.87)	7.5	23.0	44.5	25.0	100.0(3,490)	
지역 규모	대도시	3.01(0.89)	7.6	16.1	43.5	32.8	100.0(3,751)	28.632***
	중소도시	2.95(0.89)	7.3	19.8	43.2	29.6	100.0(3,956)	
	읍면지역	2.91(0.92)	8.7	20.4	41.7	29.2	100.0(1,2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9(0.89)	7.4	17.9	43.2	31.5	100.0(8,128)	45.972***
	한부모가정	2.79(0.89)	9.4	23.7	44.9	22.0	100.0(652)	
	조손가정	2.82(0.96)	12.7	18.7	42.7	25.8	100.0(86)	
	기타	2.93(1.04)	13.2	17.8	31.5	37.4	100.0(110)	
학업 성적	상	3.22(0.85)	5.4	11.4	38.8	44.3	100.0(3,029)	612.317***
	중	2.95(0.86)	7.4	17.8	47.6	27.3	100.0(3,849)	
	하	2.66(0.90)	11.2	29.4	41.3	18.1	100.0(2,102)	
경제적 수준	상	3.09(0.89)	7.4	13.0	42.3	37.2	100.0(4,895)	369.458***
	중	2.87(0.87)	7.7	22.3	45.8	24.3	100.0(3,140)	
	하	2.69(0.89)	8.9	32.9	38.4	19.8	100.0(944)	

***α<.001

긍정적 응답 기준으로 연도별 차이를 보면, 2013년에 69.5%를 나타낸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 73.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73~74%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Ⅲ-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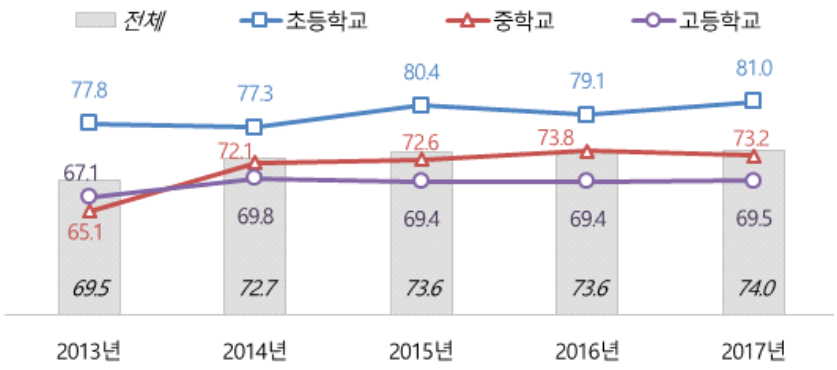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38】 자아존중감_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자아존중감 측정항목 중 유일한 부정적인 문항이다. 전체 평균값은 1.93점(SD=.88)이었으며, 남학생은 1.81점, 여학생은 2.07점으로 여학생의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Ⅲ-5-60>).

표 Ⅲ-5-60 자아존중감_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3(0.88)	38.0	34.6	23.4	4.0	100.0(8,985)	–
성별	남자	1.81(0.86)	44.4	33.4	18.6	3.6	100.0(4,672)	209.651***
	여자	2.07(0.88)	31.0	35.9	28.7	4.4	100.0(4,313)	
학교급	초등학교	1.65(0.82)	54.4	28.9	13.8	2.9	100.0(2,590)	488.474***
	중학교	1.98(0.87)	34.8	36.6	24.5	4.0	100.0(2,903)	
	고등학교	2.11(0.87)	28.4	37.2	29.7	4.8	100.0(3,491)	
지역 규모	대도시	1.88(0.87)	41.0	34.2	21.1	3.7	100.0(3,751)	33.180***
	중소도시	1.97(0.88)	36.0	34.9	25.1	4.1	100.0(3,958)	
	읍면지역	1.99(0.89)	35.2	35.0	25.2	4.6	100.0(1,2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2(0.88)	38.6	34.6	22.9	3.9	100.0(8,129)	33.420***
	한부모가정	2.11(0.88)	29.2	35.7	30.6	4.6	100.0(652)	
	조손가정	1.94(0.87)	37.6	34.5	24.5	3.4	100.0(86)	
	기타	1.88(0.92)	44.7	27.0	24.1	4.1	100.0(110)	
학업 성적	상	1.69(0.82)	51.0	31.7	14.6	2.8	100.0(3,028)	588.461***
	중	1.95(0.84)	35.4	37.9	23.7	3.1	100.0(3,848)	
	하	2.26(0.91)	23.9	33.0	35.7	7.4	100.0(2,105)	
경제적 수준	상	1.78(0.84)	46.1	33.3	17.6	3.0	100.0(4,897)	458.838***
	중	2.06(0.87)	31.0	36.6	28.4	4.1	100.0(3,141)	
	하	2.35(0.89)	19.3	34.9	37.1	8.7	100.0(942)	

***α<.001

<표 Ⅲ-5-60>에서와 같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증가했는데, 초등학생은 1.65점, 중학생 1.98점, 고등학생 2.11점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의 평균값이 1.88점으로 가장 낮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은 각각 1.97점과 1.99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 평균값이 2.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 1.94점, 양부모가정 1.92점, 기타 가정이 1.88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상: 1.69점, 중: 1.95점, 하: 2.26점)과 경제적 수준(상: 1.78점, 중: 2.06점, 하: 2.35점)이 낮을수록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부정적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높았다. 특히,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이 각각 43.1%, 45.8%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의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정적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그림 Ⅲ-5-39]), 2013년에 30.4%를 나타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2016년에 28.1%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27.4%로 다시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1~2%p 감소하였고, 초등학생의 경우 전년대비 1%p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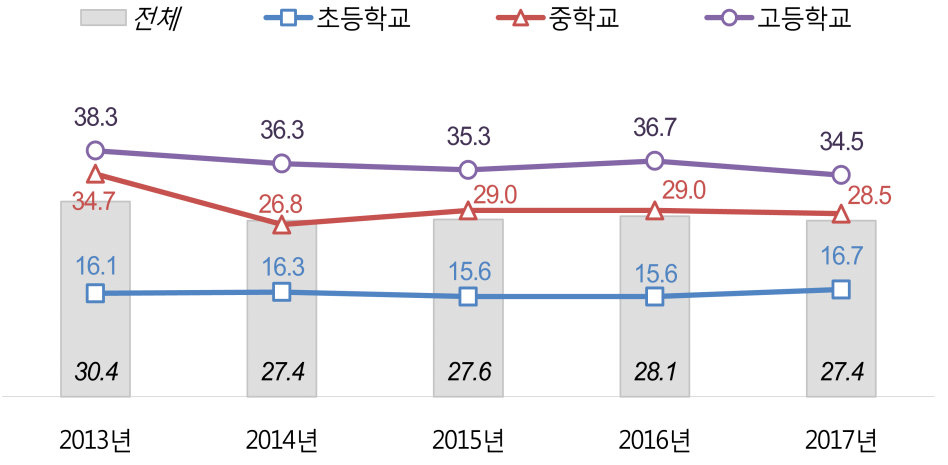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39】 자아존중감_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연도별 추이)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는 항목의 경우 전체 평균값은 3.04점(SD=.86)으로 나타났으며(<표 Ⅲ-5-61>), 남학생은 3.08점, 여학생은 3.0점으로 남학생이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값이 높았는데 초등학생 3.17점, 중학생 3.05점, 고등학생 2.94점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역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대도시: 3.07, 중소도시: 3.04, 읍면지역: 2.97). 가족유형 중에서는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3.06점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과 조손 및 기타 가정에서 각각 2.9점과 2.89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Ⅲ-5-61 자아존중감_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4(0.86)	6.3	15.9	45.0	32.8	100.0(8,990)	-
성별	남자	3.08(0.90)	8.3	12.1	42.5	37.1	100.0(4,675)	215.090***
	여자	3.00(0.80)	4.2	19.9	47.8	28.2	100.0(4,314)	
학교급	초등학교	3.17(0.85)	6.2	10.5	43.0	40.3	100.0(2,596)	181.867***
	중학교	3.05(0.87)	6.6	15.4	44.3	33.7	100.0(2,904)	
	고등학교	2.94(0.84)	6.1	20.2	47.1	26.6	100.0(3,489)	
지역 규모	대도시	3.07(0.87)	6.9	13.9	44.5	34.7	100.0(3,753)	35.497***
	중소도시	3.04(0.84)	5.5	16.7	45.7	32.0	100.0(3,959)	
	읍면지역	2.97(0.88)	7.1	18.8	44.4	29.7	100.0(1,2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6(0.85)	6.1	15.4	45.1	33.5	100.0(8,134)	44.270***
	한부모가정	2.90(0.87)	7.2	22.0	44.5	26.2	100.0(652)	
	조손가정	2.89(0.90)	11.6	11.3	52.9	24.1	100.0(86)	
	기타	2.89(1.00)	12.9	16.9	38.7	31.6	100.0(110)	
학업 성적	상	3.22(0.83)	5.1	10.2	42.0	42.7	100.0(3,031)	363.419***
	중	3.04(0.84)	6.0	16.0	46.6	31.5	100.0(3,853)	
	하	2.80(0.87)	8.6	23.8	46.5	21.0	100.0(2,102)	
경제적 수준	상	3.16(0.84)	6.0	11.2	44.0	38.9	100.0(4,899)	339.498***
	중	2.95(0.85)	6.7	19.0	47.1	27.2	100.0(3,143)	
	하	2.77(0.85)	6.9	29.5	43.5	20.1	100.0(943)	

***$p<.001$

연도별 추이를 긍정적 응답기준으로 살펴보면([그림 Ⅲ-5-40]), 2013년 75%를 나타낸 이후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가 2017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전년대비 각각 3.4%p, 1.2%p 감소폭을 보인 것에 비해 초등학생의 경우는 1.8%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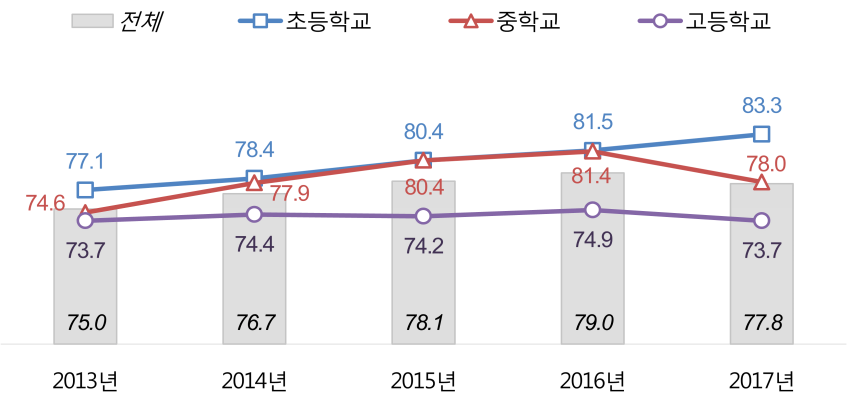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5-40】 자아존중감_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연도별 추이)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4개 항목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 alpha값이 .789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표 Ⅲ-5-62>), 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배경변인별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63>). 성별차이를 보면 남자청소년의 평균값이 3.07점으로 여자청소년의 2.97점보다 높아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16점, 중학생 3.02점, 고등학생 2.92점으로 교급이 낮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3.04점으로 한부모가정 청소년의2.86점보다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보여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62 자아존중감 하위척도 신뢰도

하위척도	하위척도별 내용	Cronbach's α
자아존중감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89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역코딩함)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표 Ⅲ-5-63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자아존중감		
		Mean	SD	t/F(Scheffé)
전체		3.00	.64	–
성별	남	3.07	.71	6.848***
	여	2.97	.69	
학교급	초등학교	3.16	.67	85.898*** (a)b)c)
	중학교	3.02	.70	
	고등학교	2.92	.71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3.04	.70	14.614*** (d)e)
	한부모가정	2.86	.72	
	조손가정	2.86	.70	
	기타	2.92	.77	
학업성적	상	3.24	.67	328.343*** (h)i)j)
	중	3.00	.67	
	하	2.75	.70	
경제적 수준	상	3.14	.68	195.869*** (k)l)m)
	중	2.92	.69	
	하	2.73	.72	

***p<.001.

* 주: 학교급(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가족유형(d=양부모가정, e=한부모가정, f=조손가정, g=기타), 학업성적(h=상, i=중, j=하), 경제적 수준(k=상, l=중, m=하)

앞서 분석한 우울감, 행복도, 그리고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정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Ⅲ-5-64>), 모든 변인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척도인 자아존중감과 행복도(r=.460), 그리고 부정적인 척도인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와 우울감(r=.467)은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우울감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r=.320), 또 현재 행복정도와도 부적 상관을(r=.470)을 나타냈다.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는 자아존중감(r=.308)과 현재 행복도와 부적 상관(r=.438)을 보였다.

표 Ⅲ-5-64 상관분석: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

구분	자아존중감	우울감	현재 행복 정도	죽고 싶다는 생각
자아존중감	1	–	–	–
우울감	-.320**	1	–	–
현재 행복 정도	.460**	-.470**	1	–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	-.308**	.467**	-.438**	1

**p<.01

⑦ 고민거리 대화상대

청소년들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누구와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Ⅲ-5-65>), 어머니와 친구라는 응답이 각각 37.8%,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없다'는 응답이 9.5%, 아버지 5.9%, 형제·자매 5.3%로 나타났으며, 담임교사와 학교상담교사, 청소년상담센터 등은 각 1%미만의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5-65 고민거리 대화 상대

(단위 : %(명))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임선생님	학교상담선생님	친구	이웃/친척	청소년상담센터	기타	전체(N)	χ^2
전체		9.5	5.9	37.8	5.3	0.8	0.4	38.0	1.0	0.3	1.0	100.0(8,822)	–
성별	남자	10.4	8.8	38.8	4.1	1.0	0.6	34.3	0.9	0.3	0.8	100.0(4,574)	224.345***
	여자	8.6	2.8	36.8	6.6	0.5	0.2	42.0	1.0	0.3	1.2	100.0(4,248)	
학교급	초등학교	9.4	7.1	51.1	5.8	0.7	0.3	22.6	1.6	0.3	1.0	100.0(2,556)	441.042***
	중학교	9.9	5.3	32.5	4.6	1.1	0.6	43.6	0.9	0.2	1.4	100.0(2,859)	
	고등학교	9.3	5.5	32.2	5.6	0.6	0.4	44.9	0.6	0.3	0.7	100.0(3,407)	
지역규모	대도시	8.8	6.0	38.8	5.5	0.5	0.4	38.2	0.8	0.3	0.7	100.0(3,688)	57.316***
	중소도시	9.8	5.5	38.6	5.6	1.0	0.4	36.4	1.3	0.2	1.2	100.0(3,891)	
	읍면지역	10.6	6.8	32.6	4.1	1.1	0.5	42.3	0.4	0.5	1.0	100.0(1,24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1	5.6	39.1	5.4	0.7	0.4	37.6	0.8	0.2	1.0	100.0(8,021)	–
	한부모가정	12.7	9.2	25.9	4.5	1.0	0.5	42.1	2.2	0.8	1.1	100.0(636)	
	조손가정	13.4	4.7	25.7	3.2	1.3	1.9	46.1	1.1	1.2	1.4	100.0(85)	
	기타	24.0	3.8	16.0	4.0	1.4	2.4	41.1	4.4	0.0	3.0	100.0(75)	
학업성적	상	8.5	6.8	42.7	5.0	0.9	0.4	33.3	1.0	0.3	1.2	100.0(2,975)	163.495***
	중	8.4	5.8	39.0	5.9	0.6	0.4	37.9	0.8	0.3	0.8	100.0(3,779)	
	하	12.9	4.7	28.6	4.8	0.9	0.4	45.0	1.2	0.3	1.0	100.0(2,064)	
경제적수준	상	7.8	6.5	42.3	5.4	0.6	0.4	34.6	1.0	0.3	1.0	100.0(4,789)	179.999***
	중	10.2	5.2	34.5	5.3	1.0	0.3	41.6	0.8	0.3	0.8	100.0(3,101)	
	하	15.9	5.0	25.6	5.1	1.0	0.7	43.4	1.4	0.4	1.4	100.0(927)	

***α<.001

이러한 경향은 배경변인별로도 거의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민거리 대화상대로 어머니와 친구를 응답한 경우 배경변인별로 약간의 증감이 있을 뿐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고민거리 대화상대로 어머니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집단은 초등학생과 양부모가정,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었으며, 이에 비해 친구를 대화상대로 더 많이 꼽은 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 그리고 중·고등학생과 조손가정의 응답자,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였다.

고민에 대한 대화상대 조사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없다'는 응답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와 학교교사·상담교사,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낮은 응답률이라고 할 수 있다(<표 Ⅲ-5-64>). 고민거리 대화 상대가 '없다'는 응답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에게서(남: 10.4%, 여: 8.6%), 그리고 양부모가정보다는 한부모·조손·기타 가정에서 더 응답률이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학업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 고민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이 12.9%였고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는 15.9%로 나타나 평균 응답률인 9.5%보다 상당히 높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학교교사·상담교사,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모두 1% 미만의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여 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고민거리 대화상대에 대해 연도별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그림 Ⅲ-5-41]), 먼저 '없다'에 대한 응답률은 2013년 9.3%을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7년 9.5%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약 10%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상대가 '어머니'라는 응답은 약간 증가한 반면(2013년 34.4%→ 2017년 37.8%), '친구'를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였다(2013년 41.6%→ 2017년 38%). 담임·상담교사, 그리고 청소년상담 센터에 대한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큰 변화 없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0.3~0.4%로 매우 미미한 수준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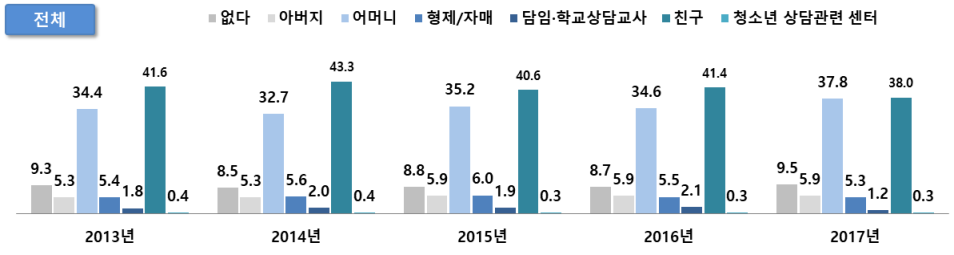

* 주: 담임교사와 학교상담교사는 합친 값을 제시하였고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이웃/친척, 기타항목은 제외함.

【그림 Ⅲ-5-41】 고민 대화상대: 전체(연도별 추이)

초등학생의 경우 고민에 대한 대화상대가 '없다' 에 대한 응답률이 2013년에 7.3%에서 2017년 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민거리 대화상대를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초등학생은 2013년 대비 2.3%p, 중학생은 2.5%p, 고등학생은 6.3%p 감소하였는데

특히 고등학생의 감소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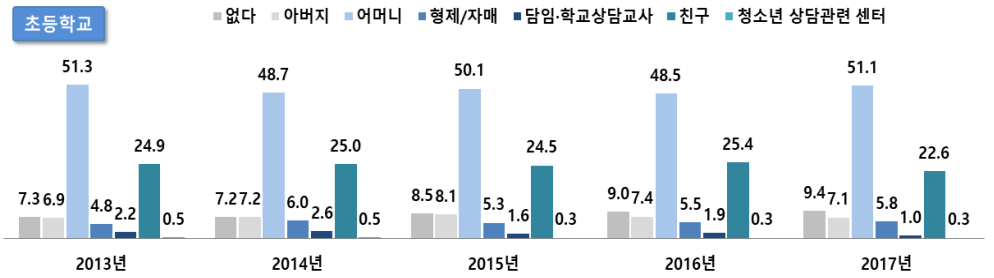

* 주: 담임교사와 학교상담교사는 합친 값을 제시하였고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이웃/친척, 기타항목은 제외함.

【그림 Ⅲ-5-42】 고민 대화상대: 초등학생(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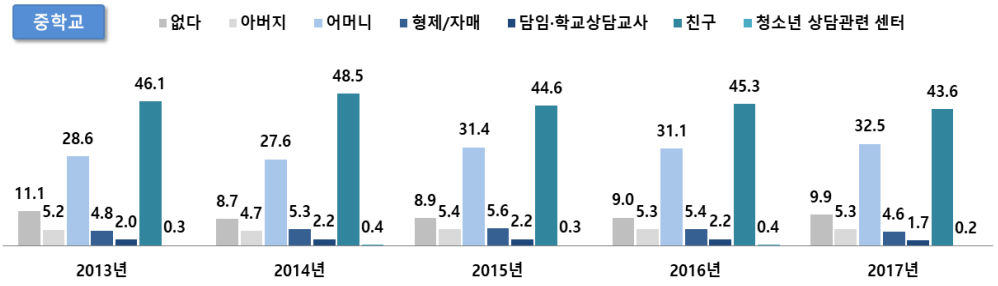

* 주: 담임교사와 학교상담교사는 합친 값을 제시하였고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이웃/친척, 기타항목은 제외함.

【그림 Ⅲ-5-43】 고민 대화상대: 중학생(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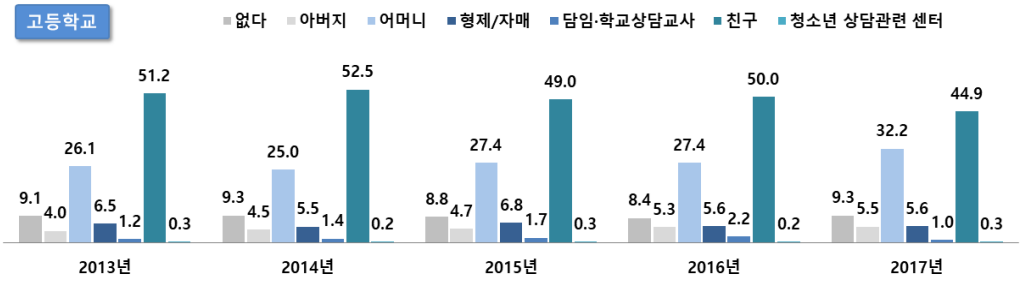

* 주: 담임교사와 학교상담교사는 합친 값을 제시하였고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이웃/친척, 기타항목은 제외함.

【그림 Ⅲ-5-44】 고민 대화상대: 고등학생(연도별 추이)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 간 비교

① 아동 · 청소년 빈곤율

빈곤선은 3년 주기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최저생계비와 중위값의 일정 비율(40%, 50%, 60%)을 사용하여 결정된다(강신욱, 유진영, 이주미, 2016: 22).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정부의 최저생계비 기준의 절대빈곤율과 중위소득 기준의 상대빈곤율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강신욱 외, 2016).

표 Ⅲ-5-66 아동빈곤율 (단위 : %)

구분		절대아동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			상대아동빈곤율(중위 50%기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가구 제외	2006	8.1	5.9	7.1	12.4	11.1	11.1
	2007	8.2	5.9	7.1	12.9	11.5	11.5
	2008	8.2	5.6	7.1	12.1	10.8	10.8
	2009	8.3	4.9	7.3	12.4	10.2	10.9
	2010	7.5	4.8	6.6	11.3	9.3	10.1
	2011	7.1	4.3	6.5	11.1	9.7	10.3
	2012	6.1	4.4	5.9	10.5	9.4	10.2
	2013	5.3	3.6	4.7	9.1	8.5	8.4
	2014	4.7	3.3	4.0	8.4	7.9	7.5
	2015	5.0	3.6	4.5	8.7	7.9	7.4
1인가구 포함	2006	8.1	5.9	7.1	12.1	10.5	10.7
	2007	8.2	5.9	7.1	12.3	11.1	11.2
	2008	8.2	5.6	7.0	11.6	10.3	10.3
	2009	8.3	4.9	7.3	11.7	9.2	10.2
	2010	7.5	4.8	6.6	10.8	8.9	9.5
	2011	7.1	4.3	6.5	10.6	9.2	9.9
	2012	6.1	4.4	5.9	9.5	9.0	9.4
	2013	5.3	3.6	4.7	8.4	7.8	7.9
	2014	4.7	3.3	4.0	7.7	7.0	7.0
	2015	5.0	3.6	4.5	8.1	7.2	6.9

* 출처: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총괄보고서. p.378
강신욱 외(2016). 2016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5, p88. 표 재구성.
*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주: 1) 전가구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농어가가구 제외
2)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연금·정부지원금,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
3)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잡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

<표 Ⅲ-5-66>에서 보듯이, 1인가구를 제외하고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의 비율을 아동빈곤율로 볼 수 있는데, 절대아동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006년 8.1%를 기록한 이후 2014년에 4.7%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5%로 약간 상승하였다. 이외에 경상소득 및 가처분 소득 역시 각각 3.6%, 4.5%로 나타나 전년대비 0.3%p, 0.5%p 상승하였다.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아동빈곤율 역시 2015년에는 시장소득 기준 8.7%로 전년대비 0.3%p 정도 증가하였으나,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각각 7.9%, 7.4%로 전년대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② 아동빈곤율 국제비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빈곤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Family database)와 관련 보고 자료를 활용하였다.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 활용되는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에 해당하는 0세~17세의 아동 비율로 OECD 자료에 따르면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36개 국가 중 덴마크(2.7%), 핀란드(4.6%), 아이슬란드(5.6%), 노르웨이(6.8%)의 뒤를 이어 스위스와 동일한 7.1%로 5번째로 낮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5-45]). 이는 OECD 국가의 전체 평균인 13%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이며 한국과 스위스 다음으로는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 슬로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러한 낮은 빈곤률 수치는 아동빈곤율이 20%가 넘는 칠레, 이스라엘, 스페인, 터키, 미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그림 Ⅲ-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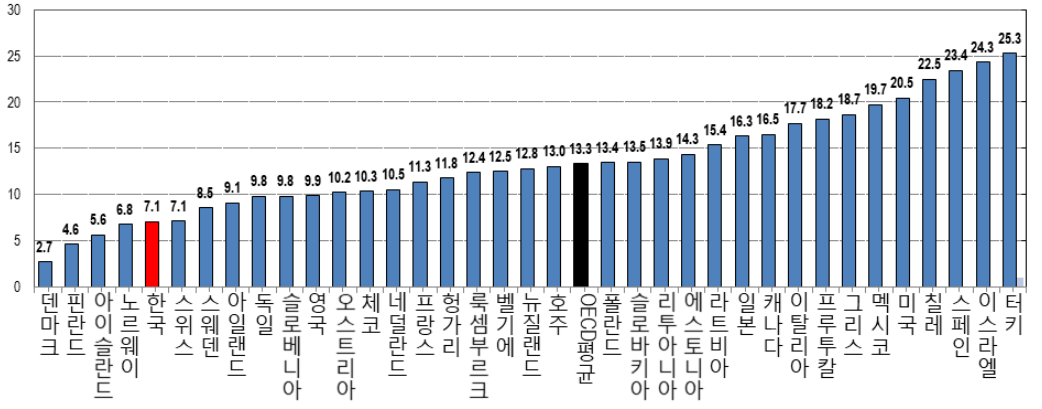

* 출처: OECD(2016),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해당 그래프를 번역 및 재작성함.
* 주: 중위소득 50%이하인 전체인구 대비 0세~17세 아동의 비율(%). 일본과 뉴질랜드는 2012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한국, 멕시코는 2014년, 나머지 국가는 2013년도 데이터 활용(OECD, 2016)

【그림 Ⅲ-5-45】 0세~17세 아동빈곤율 OECD 국제비교

(2)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

우리나라의 아동을 포함한 가족복지지출 예산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해 OECD의 SCOX(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의 GDP대비 아동가족부문(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지출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그림 Ⅲ-5-46]와 같이, 2013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은 1.3%로 2011년의 0.9%보다 0.4%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특히 영국의 4%, 덴마크와 프랑스의 3.7%, 헝가리와 아이슬란드 등의 3.6%에 비교하면 그 수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 국가는 멕시코 1%, 터키 0.4%, 미국 1.1% 정도였으며, 캐나다, 칠레,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은 1.4% 또는 1.5%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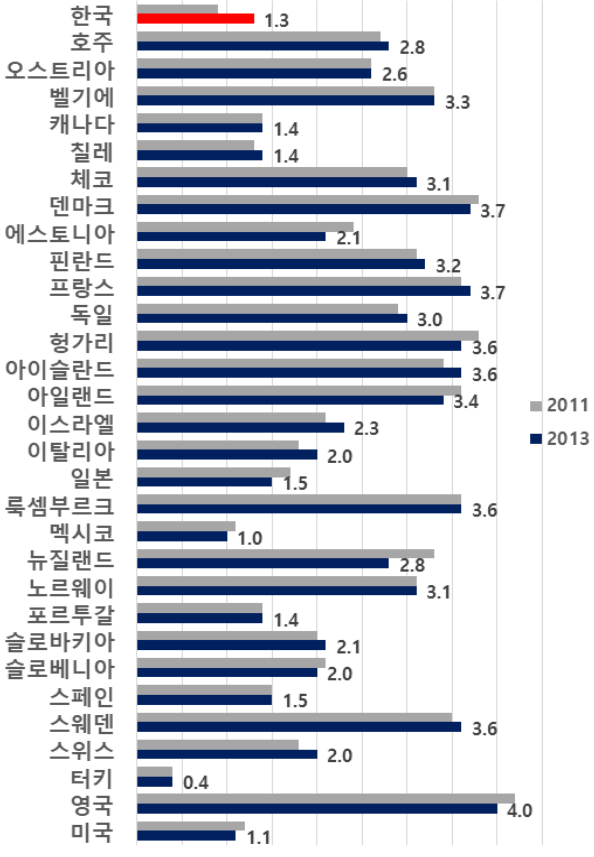

* 출처: OECD(2017), StateExtracts, Social Expenditure, Family.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에서 데이터를 인출하여 그래프 작성함.

* 주: 1) 2011년 또는 2013년 데이터가 누락된 네덜란드와 폴란드 수치는 그래프 작성 시 제외함.

2) 그래프의 수치는 가독성을 위해 2013년 것만 제시하였음.

【그림 Ⅲ-5-46】 OECD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2011, 2013)

아동가족관련 정책을 위한 지출에는 현금 급여(cash benefits)와 현물서비스[33]가 포함되는데,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아동가족정책을 위한 지출의 대부분은 현물서비스이며(1.3%중 0.9%), 현금 급여는 0.2%수준이었다(OECD, 2017). 현금 급여의 경우 2011년의 0.1%보다는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현금 급여 및 현물서비스 모두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

① 취약계층 아동현황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6년 기준 전체 수급자 1,539,539명 중 510,749명으로 약 33.2%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67>). 2015년도와 비교하면 13,460명이 감소하여 전체 수급자 수의 감소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Ⅲ-5-6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단위 : 명)

연도		0-24세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수급자 전체
2004		432,666	30,641	82,724	127,251	141,729	50,321	1,337,714
2005		464,888	32,015	87,408	143,017	150,698	51,750	1,425,684
2006		471,503	30,757	85,431	147,672	158,400	49,243	1,449,832
2007		468,795	29,405	79,163	144,829	165,833	49,565	1,463,140
2008		457,122	27,073	70,251	138,023	169,986	51,789	1,444,010
2009		466,872	28,338	65,428	135,623	179,584	57,899	1,482,719
2010		445,080	27,106	56,051	124,724	176,277	60,922	1,458,198
2011		407,415	25,104	47,787	109,979	163,648	60,897	1,379,865
2012		364,650	22,412	41,804	93,517	146,939	59,978	1,300,499
2013		337,810	20,871	37,804	81,506	136,087	61,542	1,258,582
2014	명	315,603	20,428	34,928	71,185	125,294	63,768	1,237,386
	%	100.0	6.5	11.1	22.6	39.7	20.2	-
2015	명	524,209	24,242	73,176	137,462	216,066	73,263	1,554,484
	%	100.0	4.6	14.0	26.2	41.2	14.0	-
2016	명	510,749	21,988	73,282	133,922	209,498	72,059	1,539,539
	%	100.0	4.3	14.3	26.2	41.0	14.1	-

* 출처: 보건복지부(2017b).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40. 발췌·정리.
* 주: 수급자 전체는 시설수급자(2016년도 91,075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를 말함.

33) 현금급여에는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가, 그리고 현물서비스에는 의료서비스, 보육가사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과 기타 현물지원이 포함된다(OECD, 2012, 이주연, 김미숙, 2013: 91)에서 재인용

2016년의 24세 미만 수급자를 연령구분에 따라 살펴보면(<표 Ⅲ-5-67>), 24세 미만 수급자 전체 510,749명 중 0~9세는 95,270명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했으며, 10~14세는 133,922명으로 26.2%, 15~19세 청소년은 209,498명, 41%로 가장 큰 분포를 차지했으며, 20~24세 청소년은 72,059명으로 약 14%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5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81.5%였다.

한부모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으로서의 한부모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6년 기준 한부모가구는 총 2,090천가구로 전체 19,285천가구 중 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Ⅲ-5-68>), 이는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가구 수는 전년대비 약 38천가구가 증가한 것이며, 한부모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볼 때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Ⅲ-5-68 한부모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가구(A)	16,791	17,052	17,339	17,687	18,119	18,388	18,705	19,013	19,285
한부모가구	1,509	1,551	1,594	1,639	1,796	1,880	1,970	2,052	2,090
한부모가구 비율	9	9.1	9.2	9.3	9.9	10.2	10.5	10.8	10.8

* 출처: 통계청(2017).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e-나라지표 웹 사이트
*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장래가구추계 2015-2045」
* 주: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가구형태별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5-69>와 같다. 전체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2016년 기준 231,411세대, 565,648세대원으로 전년대비 1,426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세대원은 8,63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모자가정은 전년대비 880세대가 증가한 175,281세대로 전체에서 약 75.7%를 차지해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족은 전년대비 438세대가 증가하여 51,104세대였으며, 비율은 22.1%로 나타났다. 조손가족 역시 2015년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한(108세대), 5,026세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소득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그리고 조손가족의 세대 증가에 따라 이 세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Ⅲ-5-69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4		109,039	294,648	88,179	238,341	20,860	56,307	–	–	–	–	–	–
2005		123,666	334,066	99,671	268,945	23,995	65,091	–	–	–	–	–	–
2006		140,188	374,094	112,347	299,430	27,841	74,664	–	–	–	–	–	–
2007		147,947	395,335	118,074	315,220	29,873	80,115	–	–	–	–	–	–
2008		152,853	400,646	118,116	312,718	30,534	82,456	–	–	–	–	2,203	5,472
2009		170,767	454,742	129,935	347,889	36,847	97,872	1,888	3,926	360	814	1,737	4,241
2010		184,749	480,999	138,071	361,066	40,759	106,738	2,392	5,033	379	839	3,148	7,323
2011		188,969	495,703	140,825	370,938	42,519	112,198	3,252	6,823	636	1,404	1,737	4,340
2012	명	217,547	578,663	163,171	438,365	46,839	124,611	1,782	3,696	208	422	5,547	11,569
	%	100.0	100.0	75.0	75.8	21.5	21.5	0.8	0.6	0.1	0.1	2.6	2.0
2013	명	222,593	591,818	166,152	446,428	48,670	129,266	2,123	4,432	232	479	5,416	11,213
	%	100.0	100.0	74.6	75.4	21.9	21.8	1.0	0.75	0.1	0.08	2.4	1.9
2014	명	225,472	595,624	171,260	455,318	49,152	129,845	–	–	–	–	5,060	10,461
	%	100.0	100.0	76.0	76.4	21.8	21.8	–	–	–	–	2.2	1.8
2015	명	229,985	574,285	174,401	437,903	50,666	126,516	–	–	–	–	4,918	9,866
	%	100.0	100.0	75.8	76.3	22.0	22.0	–	–	–	–	2.1	1.7
2016	명	231,411	565,648	175,281	431,538	51,104	124,372	–	–	–	–	5,026	9,738
	%	100.0	100.0	75.7	76.3	22.1	22.0	–	–	–	–	2.2	1.7

* 출처: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총괄보고서. p.384
여성가족부(2017a). 2017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7.
* 원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 주: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국가보훈법대상(2011년 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2012년 부터)

②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지원서비스 현황수준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복지, 문화적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2011년에 지방 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더욱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었다(여성가족부, 2016c).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표 Ⅲ-5-70>), 2012년 143개 교육지원청의 1,801개 학교에서 총 1,302,250명의 학생이 지원받으면서 학생 수와 지원액 기준(1,663억 원)으로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대상 교육지원청, 학교

수 및 학생수, 지원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1,795개 학교에 1,286억원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사업의 효과성과 관련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학습태도 및 학습역량, 자아존중감 등이 향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교육격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나(여성가족부, 2016c), 한편으로는 사업내용 중복, 전담인력 처우 문제 등도 지적되고 있다(조금주, 2014)

표 Ⅲ-5-7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구분	대상지역	대상지역	학교수[1] (초·중·고)	학생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지원액 (교부금/대응투자)
2006년	30지역 (기존15, 신규15)	인구25만 이상	163교 (초99, 중61, 고3)	153,175명 (16,719명)	359억 원 (209억 원, 150억 원)
2007년	60지역 (기존30, 신규30)	인구25만 이상	322교 (초187, 중132, 고3)	326,826명2) (35,110명)	642억 원 (374억 원, 268억 원)
2008년	60지역 (기존60)	인구25만 이상	322교 (초187, 중132, 고3)	304,464명 (27,904명)	514억 원 (248억 원, 266억 원)
2009년	100지역 (기존60, 신규40)	모든 市	538교 (초304, 중230, 고4)	490,081명 (40,275명)	866억 원 (504억 원, 282억 원)
2010년	100지역 (기존60, 신규40)	모든 市	534교 (초296, 중234, 고3)	452,467명 (35,725명)	810억 원 (310억 원, 417억 원)
2011년	114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356교 (초670, 중681, 고5)	1,086,434명 (71,853명)	1,566억 원 (1,188억 원, 367억 원)
2012년	143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01교 (초906, 중831, 고64)	1,302,250명 (72,881명)	1,663억 원 (1,440억 원, 223억 원)
2013년	148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33교 (초894, 중831, 고63)	1,247,836명 (65,291명)	1,493억 원 (1,172억 원, 321억 원)
2014년	144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28교 (초903, 중880, 고65)	1,256,387명 (60,056명)	1,404억 원 (1,297억 원, 107억 원)
2015년	142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23교 (초890, 중861, 고70)	1,186,303명 (54,357명)	1,286억 원 (1,232억 원, 54억 원)
2016년	–	단위학교	1,795교	–	1,286억

* 출처: 여성가족부(2015b). 2015 청소년백서. p.323.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306.
* 주: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2) 2007년 학생 수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수 포함.

나.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체계인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출발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빈곤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 아동 및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7d). 지원 대상은 0(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가족으로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d).

드림스타트는 2007년 16개 센터에서 3,769명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 전국 시군구에 229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134,853명을 지원하는 규모로 크게 확대·운영되었으며, 특히 욕구에 근거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d).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신체적 발달, 건강증진 행동, 부모애착 및 학교 적응, 자아탄력성 뿐 아니라 양육자에게도 긍정적인 결과 및 높은 만족도를 보여 드림스타트 개입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노충래, 조용남, 이대성, 송미령, 박형경, 2016). 그러나 현장인력의 과도한 사례부담과 사례관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 등 현장 및 실무자와 관련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정정호, 2016).

표 Ⅲ-5-71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실시	16	32	75	101	131	181	211	220	229	229
사업예산(억 원)	50	98	225	301	372	462	576	632	658	668
아동 수(명)	3,769	9,901	26,208	32,641	44,651	65,724	95,133	107,127	125,562	134,853
가구 수(가구)	2,465	6,516	17,141	21,699	29,332	42,387	61,630	66,551	80,102	86,681

* 출처: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160.
보건복지부(2017d).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보건복지부(2017.5.30.). '어려운 아이들의 친구, 드림스타트 2017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pp.7-8.

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 아동 등)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대학진학 및 취업, 주거 마련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보건복지부, 2017c). 아동과 정부지원의 1:1 매칭펀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이 사업은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2015년 기준 총 61,000여명의 가입자들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17c). 2015년 기준으로 월평균 적립액은 38,247원인데, 2017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이 기존의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들이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데

있어 좀 더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7c). 한편으로는 가입자 수가 매년 약 4천명에서 5천명 정도만 증가하면서 2016년 기준 61,000명 수준인데 취약계층 아동 규모를 고려할 때 지원대상 확대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Ⅲ-5-72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

연도	가입자(명)	월평균 적립액(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09	36,469	28,184	258	223	481
2010	40,829	29,129	377	308	685
2011	41,180	30,903	510	409	919
2012	46,703	37,792	670	527	1,197
2013	51,670	35,172	854	660	1,514
2014	56,479	36,601	1,061	807	1,868
2015	61,000	38,247	1,296	969	2,265

* 출처: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164.
*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6) 소결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에서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중분류로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로 나누었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이, 생존 및 발달에서는 사망률, 안전에 대한 인식률이 조사되었으며, 보건서비스에서는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이 조사되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중분류에서는 건강에 대한 인식,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대해, 그리고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중분류에서는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국가 간 비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되었다.

먼저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관련해서는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장애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를 조사하였다. 우선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과 특수교사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현재 특수학교는 170개교이고, 특수학급은 10,065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교원의 수도 2016년 현재 18,77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를 보면 2016년 현재 87,950명이었으며, 이중 29.5%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었고, 70.5%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었다. 또한 특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1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이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특수학교 졸업 후 진로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이후의 진학률과 취업률, 무직률을 살펴본 결과 진학률은 2016년 기준 55.0%이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6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률은 2016년 현재 6.3%이며,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직자의 비율은 38.7%로 2015년의 34.7%에 비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취업률의 경우 2010년 16.6%에서 2016년 6.3%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직률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감소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이는 장애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과 관련해서는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을 조사하였다.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0세의 기대여명과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사고사망률 등 3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0세의 기대여명은 2015년 현재 82.06세로,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영아의 사망률은 2015년 현재 1,000명당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사망자수와 사망률을 살펴보더라도 지난 6년간 사망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0세에서 24세까지의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연도별 사고사망률을 살펴보면 5~9세와 15~19세, 20~24세, 25~29세에서는 사고 사망률이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0세와 1~4세, 10~14세는 사고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9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0세의 사고사망률은 2014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사고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도별 사고사망의 외인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운수사고가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14세까지의 연령에서 운수사고가 주요 사망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세 이후부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29세까지의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약 2~3배정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들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접근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인식률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율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범죄 피해율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총 94,650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4,08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여자청소년의 피해건수는 1,118건이 증가하여 여자청소년의 범죄피해 감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 거주지역의 안전수준, 거주지역의 음식물 안전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의 81.9%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일수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급식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75.9%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대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양부모가정일수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안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71.0%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청소년 보다는 남자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대도시지역일수록, 가족유형은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들의 85.6%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대도시지역일수록, 양부모가정일수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 지역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역이 안전하다는 응답률은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현황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보건교사 배치 현황,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등 3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과 관련하여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2015년 현재 6~18세의 비만율은 13.9%이며,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비교해 보면 6~11세의 비만율과 12~18세의 비만율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비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소아청소년의 천식 유병률을 살펴보면 12~18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 살펴봤을 때 중상과 상위층의 소득층에서 천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질환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아토피

피부염과 폐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 측면에서의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6년 현재 전체 학교수 중 64.3%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8.8%, 고등학교 6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가 51.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배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중학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보건소, 병·의원, 특수병원 등의 건강관련 시설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병·의원시설 중 의원, 특수병원 중 한센 및 정신병원 관련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시설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이용률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살펴본 결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49.3%였으며, 연령대가 어릴수록,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과 치과 미치료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은 흡연율, 음주율, 기타 약물 사용률,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등 4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6.3%, 15.0%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과 음주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흡연예방교육과 음주예방교육의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학년 대상 음주·흡연예방교육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학교에 실시되는 음주·흡연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음주·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는 음주·흡연교육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중분류는 '건강에 대한 인식',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 소분류로 구분되는데, 먼저 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87.7%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도별로도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55.7%로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들의 운동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 응답자의 73.1%는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맛이 없어서(30.6%),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8.1%), 일찍 등교해서(20.3%)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6분으로 이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이 부족한 이유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정도가 야간자율학습, 학원/과외/가정학습을 응답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점점 증가하였는데, 특히 남학생에게서,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만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율 증가 실태와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배경변인별로 보면,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과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정도, 아침식사 결식률, 수면시간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 이러한 취약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향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세부지표항목은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일 것이다. 이에 대해 조사대상 청소년의 33.4%가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3년에 36.9%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였다가 올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업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각각 40.1%, 21.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우울증관련 항목과 관련해서 '외로운 적이 있다'는 항목은 33.4%(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였으며, '불안한 적이 있다'는 항목은 28.3%,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항목은 32.3%로 나타나 대체로 응답자의 1/3정도가 우울과 관련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학업문제가 64.9%(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49.6%), 외모·신체조건(26.6%), 또래와의 관계(23.8%), 가정불화(17.2%), 경제적인 어려움(9.9%)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에 따른 차이를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경우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에 대한 평균값이 높았고, 특히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의 평균값이 훨씬 높았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83.9%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 학업부담(42.9%)과 미래에 대한 불안(18.5%)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삶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7점으로 나타났으며(0점~10점), 41개 국가가 조사에 포함된 WHO의 '학령기아동 건강행태연구 '(HBSC)와 비교한 결과, 비교대상 11세, 13세, 15세의 한국아동·청소년, 특히 여자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70%가 넘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고민거리 대화상대로는 어머니가 37.8%, 친구가 38%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고민거리 대화상대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화 상대가 '없다'는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10%에 육박하였으며, 또 고민거리 대화상대로

담임 및 상담교사와 청소년상담센터를 응답한 비율 역시 계속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각 1% 미만) 이러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자청소년,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그리고 학교급이 높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대부분의 정신건강 관련 항목(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 우울, 스트레스, 행복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들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위한 개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유형 중에서, 또 행복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 '학업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큰 응답률을 보인 점 역시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재조명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중분류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빈곤률을 보면, 절대아동빈곤율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2014년에 4.7%였으나 2015년에는 5%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50%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아동빈곤율 역시 2014년의 8.4%에서 2015년 8.7%로 약간 높았다. 그러나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빈곤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아동 및 가족관련 복지예산을 OECD국가와 비교하면 2013년 기준 한국은 GDP대비 1.3%로 영국의 4%, 프랑스 3.7%, 헝가리 3.6%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24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33.2%를 차지했다. 한부모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모두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일환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 대상 학교 수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지원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드림스타트는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어 2016년 기준 229센터에서 134,853명의 아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담인력 처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같은 인력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2017년에 정부지원 금액이 기존의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지원금 증액뿐 아니라 지원 대상 아동의 양적 규모 확대에 대해서도 제고가 필요하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에의 권리

(1) 교육기회 보장 정도

① 학생 취학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는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함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대분류 지표 중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첫 번째 중분류 지표 '교육에의 권리'에서 학생취학률의 세부지표는 이러한 교육의 권리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학생 취학률은 보통 유치원부터 전체 고등교육기관까지의 3~21세 취학 적합 연령에 속하는 재적 학생 수를 통계청 기준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른 취학 적령 인구로 나누어 산정된 값이다.

표 Ⅲ-6-1 각급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추이(2011~2017)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치원	40.9	44.9	47.4	47.3	49.4	50.7	50.7
초등학교	99.1	98.6	97.2	96.4	98.5	98.1	97.3
중학교	96.7	96.1	96.2	97.7	96.3	94.9	94.2
고등학교	91.9	92.6	93.6	93.7	93.5	94.1	93.7
전체 고등교육기관	71.0	68.4	69.0	68.2	68.1	68.5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a). 2016 간추린 교육통계. p.11.
교육부(2017.8.31). 2017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20.

<표 Ⅲ-6-1>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급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추이가 나타나 있다. 추이 비교의 시작년도인 2011년에 유치원은 40.9%에서 2017년도에는 50.7%로 취학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각각 99.1%에서 97.3%, 96.7%에서 94.2%로 취학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고등학교는 2011년 91.9%였던 취학률이 2017년에는 93.7%로 증가하였다. 대학 이상의 취학률은 2011년 71.0%에서 2016년에는 68.5%로 감소하였다. 그래도 취학연령 10명 중 7명 가까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학벌사회이자 학력의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② 학생 진학률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학교에 배우기 위하여 입학하는 '취학'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는 교육의 기회 균등뿐 아니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의 발전적 교육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권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 진학률을 살펴보는 것 또한 취학률과 함께 교육의 기회 보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진학률의 산정은 보통 해당연도의 졸업자 중에서의 진학자 수를 해당연도의 졸업자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표 Ⅲ-6-2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2011~2016)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등학교→중학교과정		99.9	99.9	99.9	99.9	100.0	100.0
중학교→고등학교과정		99.7	99.7	99.7	99.7	99.7	99.7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전체	72.5	71.3	70.7	70.9	70.8	69.8
	일반고	(75.8)	(76.6)	(77.7)	78.7	78.9	78.0
	특수목적고	(67.4)	(64.2)	(60.0)	59.6	58.4	55.9
	특성화고	(61.0)	(50.0)	(41.7)	37.9	36.1	35.0
	자율고	(69.3)	(72.6)	(74.7)	75.7	75.8	74.9
	일반계고	75.2	76.2	77.5	–	–	–
	전문계고	63.7	54.4	46.8	–	–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a). 2016 간추린 교육통계. p.12.
* 주: 1) ( )는 참고 수치로 2015년 4월 현재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진학률임.
2) 일반계·특성화계 고교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등록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

<표 Ⅲ-6-2>는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초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까지 6개년도의 상급학교로의 진학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과정까지의 진학률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100%에 달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은 6년간 변함없이 99.7%로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과정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11년 72.5%로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가장 낮은 69.8%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는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점차 늘어나 2011년 각 75.8%와 69.3%에서 2015년 각 78.9%와 75.8%로 가장 높았다가 2016년에는 78.0%와 74.9%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대로 특목고와 특성화고에서는 2011년 각 67.4%와 61.0%였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2017년에는 각 55.9%와 35.0%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 유형 중 특성화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26%p 낮아졌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가 진학보다는 취업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③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표 Ⅲ-6-3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단위 : ppp)

구 분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2000 (2003)	한국	3,155	21	4,069	27	6,118	40
	OECD 평균	4,381	19	5,957	25	9,571	42
2005 (2008)	한국	4,691	22	6,645	31	7,606	36
	OECD 평균	6,252	21	7,804	26	11,512	40
2010 (2013)	한국	6,601	23	8,060	28	9,972	35
	OECD 평균	7,974	23	9,014	26	13,528	41
2011 (2014)	한국	6,976	24	8,199	28	9,927	34
	OECD 평균	8,296	23	9,280	26	13,958	41
2012 (2015)	한국	7,395	23	8,355	26	9,866	31
	OECD 평균	8,247	22	9,518	25	15,028	40
2013 (2016)	한국	7,957	24	8,592	26	9,323	29
	OECD 평균	8,477	22	9,811	25	15,772	41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d). OECD 교육지표 2016. p.23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a). 2016 간추린 교육통계. p.52.
* 원자료: OECD(해당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주: 1) 구분된 연도는 회계연도이며, 괄호 안의 연도는 자료 발표년도.
2) 한국의 1인당 GDP는 2000년 US$ 15,186, 2005년 US$ 21,342, 2010년 US$ 28,829, 2011년 US$ 29,035, 2012년 $1당 US$ 32,022, 2013년 $1당 US$ 32,664
3) 한국의 PPP환율은 2000년 $1당 731.19원, 2005년 $1당 788.92원, 2010년 $1당 823.67원, 2011년 $1당 854.59원, 2012년 $1당 860.25원, 2013년 $1당 871.41원

<표 Ⅲ-6-3>에서는 GDP 대비 1인당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의 공교육비 투입에 대한 OECD 국가 평균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연도별 규모와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3년을 보면 GDP 대비 1인당 공교육비를 국제 비교할 수 있는 구매력지수(PPP)에 의하면 초등교육 과정에서 한국은 7,957 PPP이고, OECD 평균은 8,477 PPP로 아직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약 94% 정도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중등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한국은 8,592 PPP이고, OECD 평균은 9,811 PPP로 OECD의 약 86% 정도이고,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이 9,323 PPP이고, OECD 평균은 15,772 PPP로 OECD 평균에 많이 못미쳐 약 5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에 GDP 대비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과거 2000년에는 72%에 미치던 수준이 이제 2013년에 와서 94%로 근접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등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2000년에 OECD 평균 수준의 약 68%에 미치던 1인당 공교육비 투자가 2013년에는 86%에 미치고 있어 발전적이고,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2000년에 OECD 평균의 약 64%에 해당되던 1인당 공교육비 투자 수준이 2013년에 와서는 59%로 격차가 더 벌어져 OECD 평균 수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미치고 있다. 이는 국가경쟁력이 대체로 고등교육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에 고등교육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확충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④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표 Ⅲ-6-4>는 피교육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조건 중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학교 유형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사 1명이 가르치는 학생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 2017년 올해 유치원에서는 12.9명, 초등학교에서는 14.5명, 중학교에서는 12.7명, 고등학교에서는 12.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의 14.6명, 17.3명, 17.3명, 14.8명과 비교했을 때에 각각 12%, 16%, 26%, 16%의 비율로 감소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기회 보장이 더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 Ⅲ-6-4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17)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치원		14.6	14.5	14.3	13.4	13.4	13.3	12.9
초등학교		17.3	16.3	15.3	14.9	14.9	14.6	14.5
중학교		17.3	16.7	16.0	15.2	14.3	13.3	12.7
고등학교	전체	14.8	14.4	14.2	13.7	13.2	12.9	12.4
	일반고	15.8	15.4	15.2	14.6	14.1	13.7	13.1
	특수목적고	11.0	10.3	10.0	9.7	9.3	9.1	8.9
	특성화고	12.5	12.1	12.0	11.6	11.4	11.0	10.6
	자율고	15.2	14.6	14.3	13.9	13.7	13.5	13.2

* 출처: 교육부(2017.8.31).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8.
* 주: 교원에는 정규 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강사는 제외됨.

<표 Ⅲ-6-5>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의 1학급당 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급에서 지도해야 할 대상 학생 수를 의미하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사로부터 자신이 보다 더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의미한다.

즉, 학생이 교사로부터 교육의 기회 보장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한 학교의 총 학생 수를 총 학급 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11년부터 살펴보았을 때에 유치원은 2011년 20.9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9명으로 소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7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25.2명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가 2017년에는 22.3명으로 12%가 감소되었고, 중학교는 같은 기간에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해 33.0명에서 26.4명으로 20%나 수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역시 꾸준히 감소되어 2011년 33.1명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가 2017년에는 28.2명으로 15% 감소되었다. 고등학교의 유형별로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업의 환경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5 학급당 학생 수(2011~2017)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치원		20.9	21.6	21.5	19.7	20.0	19.7	19.0
초등학교		25.2	24.3	23.2	22.8	22.6	22.4	22.3
중학교		33.0	32.4	31.7	30.5	28.9	27.4	26.4
고등학교	전체	33.1	32.5	31.9	30.9	30.3	29.3	28.2
	일반고	34.7	34.2	33.6	32.4	31.3	30.6	29.3
	특수목적고	28.4	26.7	25.8	25.0	24.4	24.0	24.7
	특성화고	28.5	28.0	27.6	26.9	26.4	25.7	23.7
	자율고	33.5	32.3	31.5	30.7	30.3	30.2	29.6

* 출처: 교육부(2017.8.31).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7.

(2) 학교 부적응률

① 학업중단율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지표체계의 중지표인 '교육에의 권리'에 속하는 소분류 지표 중 하나인 '학교 부적응률'은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교육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부적응의 양태는 여러 종류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학업을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학업중단율은 한국에서 학교폭력 만큼이나 매우 심각한 교육적 상황을 말해주는 중요한 세부지표이다.

표 Ⅲ-6-6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1~2016)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등학교	0.6	0.6	0.6	0.5	0.5	0.6
중학교	0.9	0.9	0.8	0.7	0.6	0.6
고등학교	1.9	1.8	1.6	1.4	1.3	1.4
계 (학업중단자)	1.1 (74,365)	1.0 (68,188)	0.9 (60,568)	0.8 (51,906)	0.8 (47,070)	0.8 (47,663)

* 출처: 교육부(2017.8.31). 2017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22.
* 주: 1)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는 학업중단자에 포함
2)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3) 사망자는 학업중단자에 미포함
4) 구분연도는 학년도로 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준이며, 학업중단자는 해당 학년도 3월에서 차년도 2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표 Ⅲ-6-6>은 우리나라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업중단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기간을 살펴보면 2011년 전체 학생 수의 1.1%였던 74,365명이 학업을 중단해었는데 2017년에는 전체 학생 수의 0.8%에 해당하는 47,663명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순히 비율로만 계산하면 지난 6년간 학업중단율은 3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지난 6년간 큰 변동없이 전체 학생 수의 0.6%이었고, 중학교는 2011년에 0.9%였던 것이 2016년에는 0.6%로 33%가 감소되었으며, 고등학교는 1.9%에서 1.4%로 26%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에서 고등학교에서 가장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은 제도적 이유를 가지고 있어 향후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학업중단율을 더 낮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학업성적이 낮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진학보다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하고자 해도 특성화고등학교 수가 제한되어 있어 입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시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서 학업성적 수준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특성화고등학교 수를 대폭 늘려서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사회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직종을 늘려주어 사회에 잘 진입하도록 한다면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 문제가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②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표 Ⅲ-6-7 자퇴 충동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28.2	71.8	100.0(8,994)	–
성별	남자	22.7	77.3	100.0(4,677)	144.515***
	여자	34.1	65.9	100.0(4,318)	
학교급	초등학교	16.5	83.5	100.0(2,593)	407.677***
	중학교	25.1	74.9	100.0(2,906)	
	고등학교	39.4	60.6	100.0(3,496)	
지역 규모	대도시	27.8	72.2	100.0(3,756)	9.719**
	중소도시	27.4	72.6	100.0(3,961)	
	읍면지역	31.8	68.2	100.0(1,278)	
학업 성적	상	19.8	80.2	100.0(3,028)	399.247***
	중	25.7	74.3	100.0(3,852)	
	하	44.6	55.4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23.1	76.9	100.0(4,897)	196.371***
	중	31.3	68.7	100.0(3,149)	
	하	44.0	56.0	100.0(944)	

**$p<.01$, ***$p<.001$

<표 Ⅲ-6-7>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퇴 충동여부의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전체 응답 청소년 8,994명 중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2%에 해당하여 거의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에 남자의 22.7%보다 여자가 자퇴 충동을 더 가지고 있어 34.1%로 3명 중 1명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자퇴 충동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6.5%, 중학생은 25.1%, 고등학생은 39.4%로 5명 중 2명에 가깝게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은 충동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규모로 보면 읍면지역의 학생들의 자퇴 충동이 31.8%로 대도시 학생 27.8%, 중소도시 학생 27.4%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퇴 충동이 학업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자퇴 충동을 물은 결과로 알 수 있는데,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학생의 자퇴 충동은 44.6%에 달해 2명 중 1명에 가까운 반면,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의 자퇴 충동은 19.8%로 5명 중 1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서도 수준이 낮은 집단 학생들의 자퇴 충동이 44.0%인 반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의 자퇴 충동은 23.1%로 나타나 낮은 집단 학생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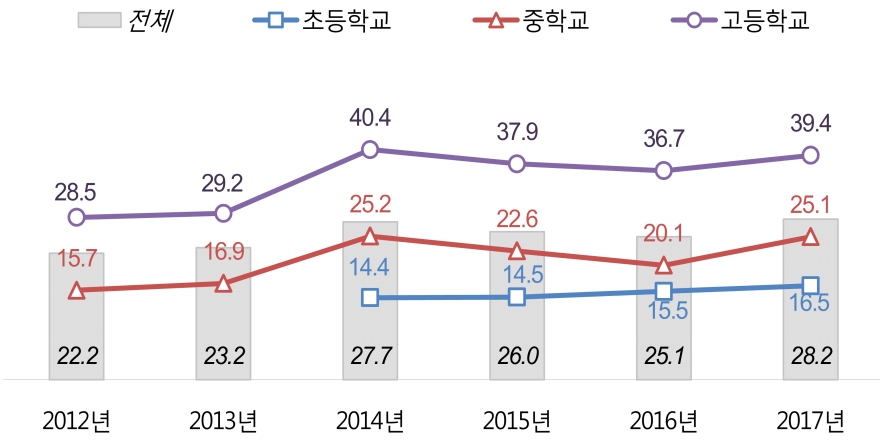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 주: 2012년~2013년 전체값에는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그림 Ⅲ-6-1】 자퇴 충동여부(연도별 추이)

[그림 Ⅲ-6-1]에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자퇴 충동여부에 관한 실태 추이가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자퇴 충동이 가장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2012년에 전체 학생의 28.5%가 자퇴 충동을 가졌는데 2014년에 40.4%로 최고 높았다가 감소추세에서 2017년 다시 39.4%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2012년 전체 학생의 15.7%였던 자퇴 충동 학생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2017년에는 25.1%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조사가 되어 14.4%였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 16.5%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지난 6년간 청소년들의 학교 자퇴 충동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부분 자퇴 충동이 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볼 때에 획기적인 상급학교 입학 경쟁을 완화하지 않고는 교육 받을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당할 수뿐이 없는 대한민국 교육의 실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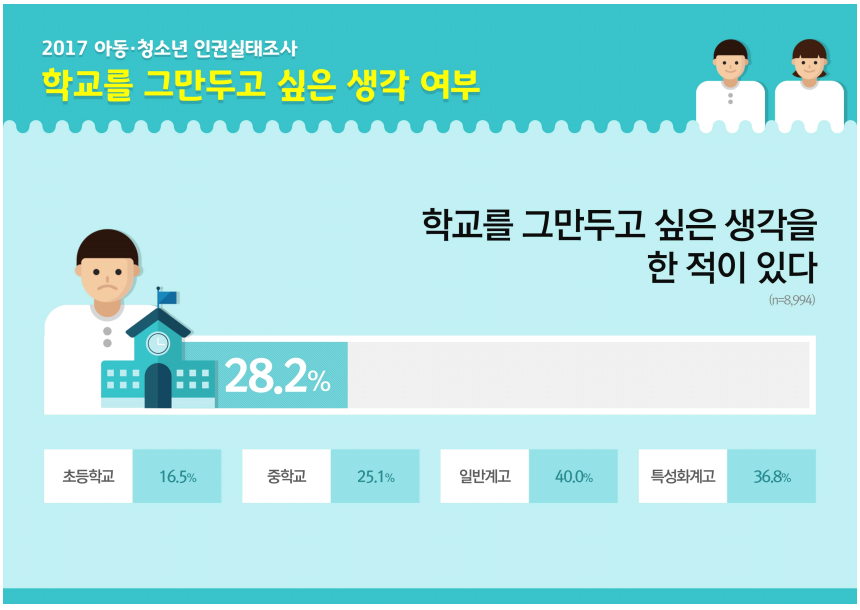

【그림 Ⅲ-6-2】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여부

표 Ⅲ-6-8 자퇴 충동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기타	전체(N)
전체			3.6	12.8	4.5	0.4	27.1	7.1	12.2	19.1	13.2	100.0(2,531)
성별	남자		4.1	12.2	6.3	0.5	28.1	6.6	13.3	17.5	11.5	100.0(1,060)
	여자		3.2	13.3	3.2	0.3	26.3	7.4	11.4	20.3	14.4	100.0(1,471)
학교급	초등학교		10.6	7.4	7.7	0.9	32.8	5.5	5.5	14.4	15.2	100.0(427)
	중학교		3.8	7.5	4.2	0.4	30.2	9.1	8.7	22.9	13.2	100.0(728)
	고등학교	전체	1.4	17.3	3.7	0.2	23.7	6.5	16.2	18.5	12.5	100.0(1,377)
		일반계고	1.3	20.2	3.9	0.1	24.1	6.1	15.5	16.4	12.3	100.0(1,130)
		특성화계고	1.8	4.4	2.8	0.6	21.6	8.2	19.0	28.2	13.4	100.0(247)
지역 규모	대도시		3.0	12.4	5.6	0.4	25.4	6.6	12.2	20.1	14.3	100.0(1,043)
	중소도시		4.2	13.7	3.4	0.3	29.6	6.7	11.5	19.7	10.9	100.0(1,083)
	읍면지역		3.5	11.7	4.9	0.4	24.7	9.4	14.1	15.1	16.3	100.0(406)
학업 성적	상		3.9	5.6	7.9	0.6	25.5	5.9	11.4	24.4	15.0	100.0(600)
	중		3.8	11.9	4.2	0.2	28.5	7.0	11.5	18.7	14.3	100.0(988)
	하		3.2	18.5	2.7	0.5	26.6	7.9	13.5	16.3	10.9	100.0(940)
경제적 수준	상		4.5	11.7	5.5	0.2	28.2	8.1	11.5	17.4	12.9	100.0(1,129)
	중		2.7	14.5	3.6	0.0	28.0	6.5	11.3	20.4	13.0	100.0(986)
	하		3.0	11.9	4.3	1.6	22.0	5.5	16.2	20.9	14.6	100.0(415)

위의 <표 Ⅲ-6-8>에는 이러한 학교를 자퇴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2,531명이 자퇴 충동 이유들 중 1순위로 택한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다. 1순위로 응답된 이유들 중에서 학업이나 학업성적과 관련된 이유로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가 27.1%로 가장 높았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2.8%,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2.2%로 이 셋을 모두 합하면 52.1%로 조사되었다. '귀찮고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를 이유로 응답한 청소년은 19.1%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한편, 학업 스트레스와 직접 관련 없다고 할 수 있는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못해서'(7.1%),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4.5%), '괴롭힘을 당해서'(3.6%),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0.4%)와 같은 이유들이 나머지 1순위 이유로 응답되었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15.6%에 불과할 뿐이다. 학교 자퇴 충동 이유 1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공부하기 싫어서'의 이유를 택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은 거의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2.8%에 달하여, 중학생 30.2%와 고등학생 23.7%와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이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이렇게 자퇴 충동 이유 중 1순위로 '공부하기 싫어서'를 택한 청소년들은 성적 수준이 상(25.5%), 중(28.5%), 하(26.6%)의 집단들에서나, 경제적 수준이 상(28.2%), 중(28.0%), 하(22.0%)인 집단들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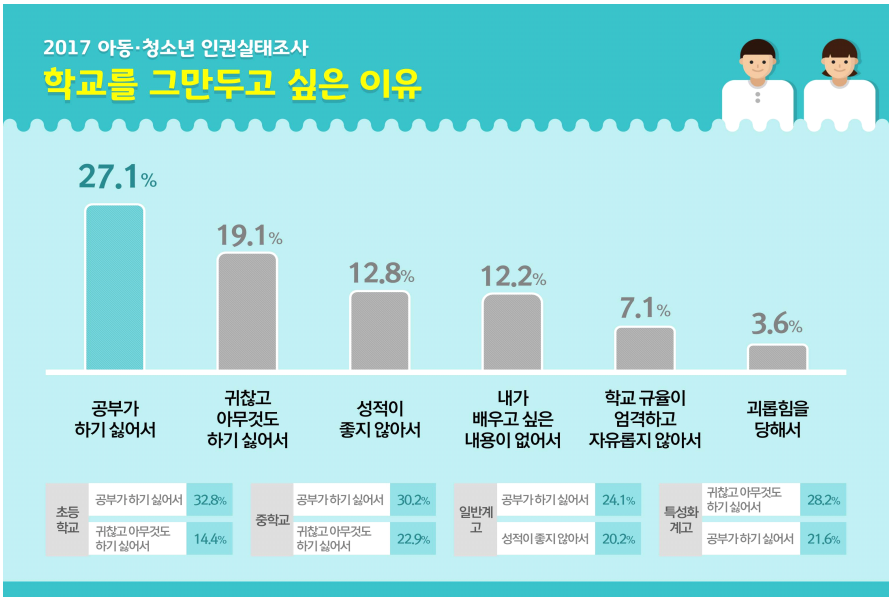

【그림 Ⅲ-6-3】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③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표 Ⅲ-6-9>에는 학교부적응을 알아보는 세부지표 중 하나인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질문 중 하나로 친구들이 응답자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는 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응답자에 대하여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 8,994명 중 92.7%로 나타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우관계는 대체로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91.7%, 여학생의 93.8%가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91.7%, 중학생의 92.6%, 고등학생이 가장 높아 93.6%로 친구가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에 있어서는 편차를 보였는데 양부모가정 학생의 93.1%가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한부모가정 자녀의 89.3%, 조손가정 자녀의 87.2%가 긍정적인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양부모가정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편차는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서도 나타나 학업성적(89.7%)과 경제적 수준(87.6%)이 낮을수록 평균보다 낮은 긍정적 응답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9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3(0.62)	1.7	5.6	60.9	31.8	100.0(8,994)	-
성별	남자		3.22(0.65)	2.2	6.1	58.9	32.8	100.0(4,677)	31.849***
	여자		3.24(0.59)	1.1	5.1	63.1	30.7	100.0(4,317)	
학교급	초등학교		3.28(0.66)	1.6	6.6	53.6	38.1	100.0(2,595)	101.710***
	중학교		3.22(0.63)	1.9	5.5	61.2	31.4	100.0(2,905)	
	고등학교	전체	3.20(0.59)	1.5	5.0	66.2	27.4	100.0(3,494)	
		일반계고	3.22(0.58)	1.3	4.5	65.3	28.9	100.0(2,823)	
		특성화계고	3.09(0.60)	2.4	6.9	69.7	21.1	100.0(67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4(0.62)	1.5	5.5	60.4	32.7	100.0(8,138)	59.242***
	한부모가정		3.07(0.66)	4.0	6.7	67.6	21.7	100.0(655)	
	조손가정		3.10(0.69)	3.1	9.8	61.0	26.2	100.0(86)	
	기타		3.23(0.62)	1.0	7.1	59.5	32.4	100.0(107)	
학업 성적	상		3.33(0.62)	1.1	4.7	54.3	39.9	100.0(3,033)	191.477***
	중		3.22(0.61)	1.5	5.3	62.9	30.3	100.0(3,848)	
	하		3.10(0.63)	2.7	7.6	66.8	22.9	100.0(2,108)	
경제적 수준	상		3.31(0.63)	1.4	4.8	55.4	38.3	100.0(4,899)	252.606***
	중		3.17(0.59)	1.5	5.8	66.9	25.8	100.0(3,146)	
	하		3.03(0.63)	3.0	9.3	69.6	18.0	100.0(94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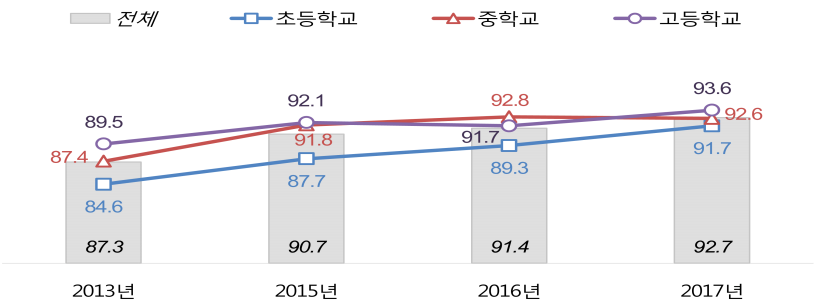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4】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연도별 추이)

[그림 Ⅲ-6-4]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친구들로부터의 존중과 배려에 대한 긍정적 응답에 대한 2013년과 2015~2017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긍정적 응답이 상승하고 있어 2013년 초등학생이 친구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6%였는데 2011년에는 91.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에 있어서도 긍정적 응답이 2013년 87.4%에서 2017년에는 92.6%로,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2013년 89.5%에서 2017년 93.6%로 상승해서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우 관계는 그다지 나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우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10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7(0.69)	2.1	7.6	51.8	38.5	100.0(8,993)	–
성별	남자		3.29(0.71)	2.7	6.8	49.9	40.7	100.0(4,676)	45.831***
	여자		3.25(0.67)	1.4	8.6	53.9	36.1	100.0(4,317)	
학교급	초등학교		3.60(0.59)	0.7	2.9	31.9	64.4	100.0(2,597)	1,133.982***
	중학교		3.20(0.70)	2.8	8.6	54.9	33.8	100.0(2,905)	
	고등학교	전체	3.08(0.65)	2.5	10.4	64.0	23.2	100.0(3,491)	
		일반계고	3.09(0.65)	2.3	10.1	63.7	24.0	100.0(2,820)	
		특성화계고	3.01(0.67)	3.2	11.8	65.3	19.7	100.0(671)	
지역 규모	대도시		3.29(0.69)	2.0	7.5	50.3	40.2	100.0(3,750)	51.719***
	중소도시		3.29(0.67)	1.8	6.9	51.9	39.4	100.0(3,965)	
	읍면지역		3.14(0.72)	3.2	10.2	55.6	30.9	100.0(1,278)	
학업 성적	상		3.39(0.68)	1.7	6.1	43.9	48.4	100.0(3,033)	287.399***
	중		3.27(0.67)	1.9	7.1	53.4	37.6	100.0(3,846)	
	하		3.09(0.69)	3.0	10.9	60.3	25.8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3.35(0.69)	1.8	7.0	45.8	45.3	100.0(4,901)	265.022***
	중		3.21(0.66)	2.2	7.0	58.3	32.4	100.0(3,146)	
	하		3.05(0.69)	2.8	12.9	61.2	23.1	100.0(942)	

***p<.001

<표 Ⅲ-6-9>는 청소년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선생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는 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8,993명의 응답자 중 90.3% 즉, 10명 중 9명은 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90.6%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90.0%도 그렇다고 응답해서 성별 차이는 미미했다. 교급별로 비교하면 초등학생의 96.3%, 중학생의 88.7%, 고등학생의 87.2%가 자신이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로 보면 읍면지역(86.5%) 학생들이 대도시(90.5%)나 중소도시(91.3%)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6-5]에서는 학교생활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도별(2013년, 2015~2017년) 추이가 잘 드러나 있다. 2013년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교급별로 각각 초등학생이 89.4%, 중학생이 79.9%, 고등학생이 75.1%였던 것이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7년에는 초등학생이 96.3%, 중학생이 88.7%, 고등학생이 87.2%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교사와 학생 사이의 존중 정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되어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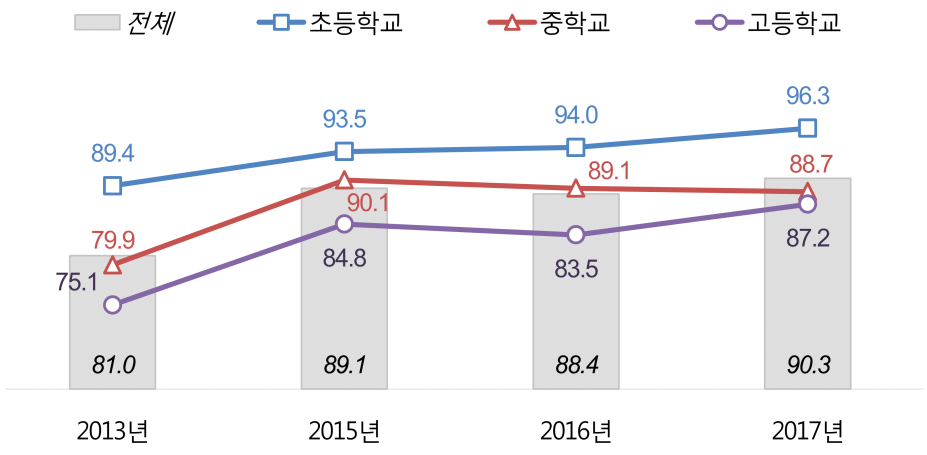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5】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표 Ⅲ-6-11>은 2017년도 청소년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 중에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가를 물은 것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응답청소년 8,989명 중 24.0%가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어 거의 4명 중 1명의 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23.9%)와 여자(24.1%)의 편차는 거의 없었다. 교급별로 비교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응답이 15.0%였으나, 중학생은 22.7%, 고등학생은 31.8%로 편차가 있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생활이 즐겁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가족유형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정 자녀(32.4%)가 양부모가정 자녀(23.4%)와 조손가정 자녀(18.9%)보다 학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하여 거의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비율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조손가정 자녀들이 학교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또래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제일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차는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먼저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37.4%)은 높은 집단(16.3%)과 중간 집단(22.8%) 청소년보다 학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도 낮은 집단 청소년이 40%로 압도적인 부정적 응답을 많이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19.2%)과 중간인 집단(26.7%) 청소년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표 Ⅲ-6-11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6(0.81)	5.4	18.6	50.8	25.2	100.0(8,989)	-
성별	남자	2.98(0.83)	5.7	18.2	48.5	27.5	100.0(4,675)	34.622***
	여자	2.93(0.78)	5.1	19.0	53.3	22.6	100.0(4,314)	
학교급	초등학교	3.22(0.77)	3.0	12.0	44.9	40.1	100.0(2,594)	582.672***
	중학교	2.96(0.80)	5.8	16.9	53.2	24.1	100.0(2,905)	
	고등학교	2.76(0.79)	6.9	24.9	53.2	15.0	100.0(3,49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7(0.81)	5.2	18.2	50.4	26.1	100.0(8,132)	72.108***
	한부모가정	2.73(0.78)	7.8	24.6	54.6	13.1	100.0(655)	
	조손가정	2.93(0.78)	7.1	11.8	61.5	19.6	100.0(86)	
	기타	3.10(0.77)	3.4	14.4	50.4	31.7	100.0(109)	
학업 성적	상	3.16(0.77)	3.2	13.1	48.4	35.3	100.0(3,032)	510.568***
	중	2.96(0.77)	4.4	18.4	53.9	23.4	100.0(3,843)	
	하	2.66(0.84)	10.5	26.9	48.7	13.9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3.08(0.80)	4.5	14.7	49.0	31.7	100.0(4,898)	377.475***
	중	2.87(0.78)	5.4	21.3	54.1	19.2	100.0(3,145)	
	하	2.61(0.81)	10.3	29.7	49.1	10.9	100.0(942)	

***p<.001

[그림 Ⅲ-6-6]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 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2013년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통해 비교해 놓은 결과이다. 전체적 추이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013년에는 71.1%였는데 2017년에는 76.0%로 증가하였다. 학교급을 보면 초등학생이 2013년 81.4%로 긍정정인 응답을 보였는데 2017년에는 85.0%로 상승하였고, 중학생은 70.2%에서 77.3%로, 고등학생은 63.4%에서 68.2%로 학교 가는 것이 더 즐거워진 것으로 조사되어 고무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긍정적 응답이 2017년에 와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시 감소한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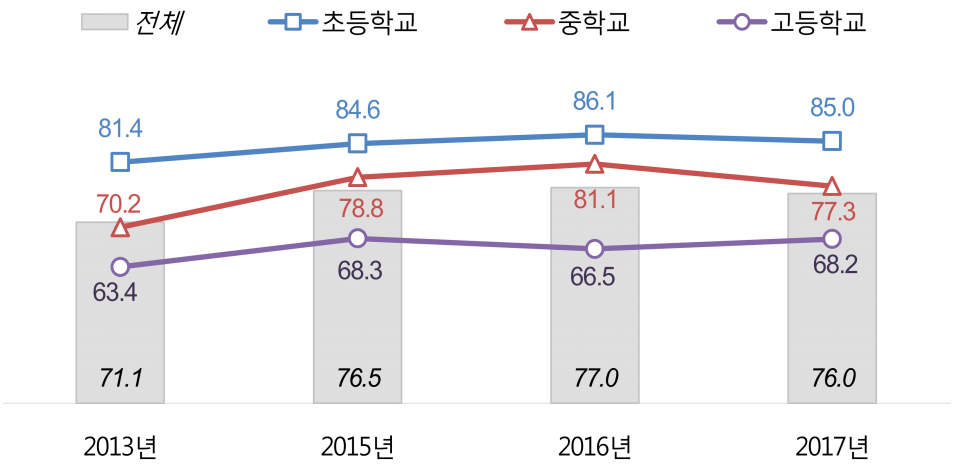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6】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2) 교육의 목표

2017년도 대분류 지표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지표들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먼저 중분류 지표 '교육의 목표' 부분의 소분류 지표 중 하나인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에서 그동안 세부지표였던 '혁신학교 운영 현황'이 빠지고, 이 자리에 소분류 지표 '대안교육 참여율'의 두 세부지표였던 '대안학교 수와 종류'와 '대안학교 학생 비율'이 '대안학교 운영 현황'으로 통합되어 '대안교육 참여 기회'라는 이름의 세부지표로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청년실업과 학업중단 문제와 관련한 직업교육 확대 차원에서 '직업교육 참여 기회'가 새로이 세부지표로 신설되었다.

(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①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표 Ⅲ-6-12 학교에 대한 생각_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7(0.74)	4.7	14.6	59.1	21.5	100.0(8,994)	-
성별	남자	3.03(0.75)	4.9	12.1	58.6	24.4	100.0(4,675)	78.337***
	여자	2.92(0.73)	4.6	17.2	59.8	18.4	100.0(4,319)	
학교급	초등학교	3.30(0.66)	2.0	5.1	53.5	39.4	100.0(2,594)	1,007.936***
	중학교	2.96(0.72)	5.0	13.0	63.3	18.7	100.0(2,905)	
	고등학교	2.75(0.73)	6.6	22.9	59.9	10.6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3.02(0.74)	4.2	14.0	57.6	24.2	100.0(3,756)	74.683***
	중소도시	2.98(0.72)	4.5	13.6	61.2	20.7	100.0(3,960)	
	읍면지역	2.83(0.78)	6.9	19.5	57.2	16.4	100.0(1,278)	
학업 성적	상	3.12(0.75)	4.2	10.3	54.5	31.0	100.0(3,032)	385.632***
	중	2.98(0.70)	3.7	14.7	61.9	19.7	100.0(3,847)	
	하	2.76(0.75)	7.4	20.6	60.7	11.3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3.08(0.73)	4.0	10.9	58.3	26.7	100.0(4,899)	320.500***
	중	2.90(0.72)	4.8	16.8	61.9	16.5	100.0(3,147)	
	하	2.69(0.78)	8.0	26.2	54.2	11.6	100.0(944)	

***$p<.001$

<표 Ⅲ-6-12>는 '학교가 자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물은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청소년 8,994명 중 19.3%는 학교가 자신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학생 중 1명에 가까운 비율이다. 남학생이 17.0%, 여학생이 21.8%로 조사되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커 초등학생의 7.1%, 중학생의 18.0%, 고등학생의 29.5%가 학교가 자신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생각에 22.4%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응답은 지역규모에 있어서는 대도시(18.2%), 중소도시(18.1%) 학생보다 읍면지역(26.4%) 학생에게서 더 나타났다. 학업성적(28.0%)

과 경제적 수준(34.2%)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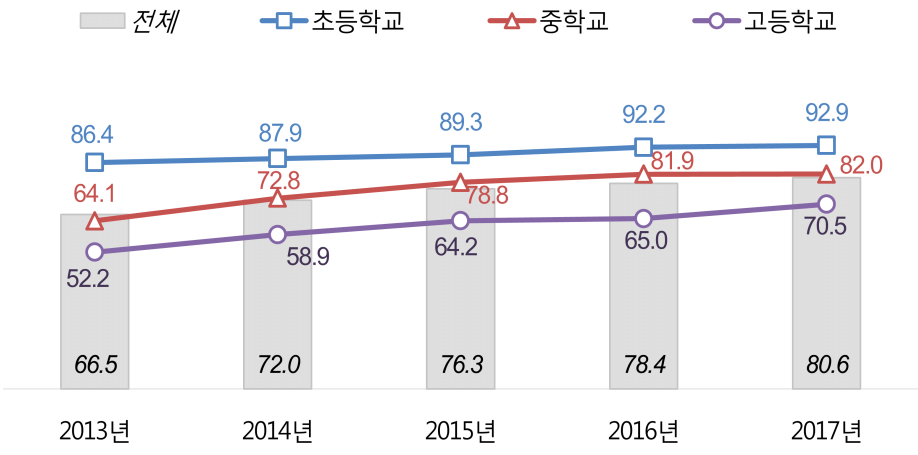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7】 학교에 대한 생각_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연도별 추이)

[그림 Ⅲ-6-7]은 학교가 자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연도별(2013년~2017년) 추이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학교급으로 보면 초등학생의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아 2013년에 86.4%였던 것이 2017년에는 92.9%가 학교가 자신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64.1%에서 82.0%로, 고등학생의 경우 52.2%에서 70.5%로 큰 상승폭을 보여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Ⅲ-6-13>은 청소년이 생각하기에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 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청소년 8,992명 중 21.6%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학생(19.2%)보다 여학생(24.2%)에게서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의 91.8%는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고 생각하였으나, 중학생은 76.6%, 고등학생은 69.9%로 초등학생과의 편차가 컸다.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고,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70.6%)이 높은 학생(82.2%)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64.2%)이 높은 학생(81.8%)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타났다.

표 Ⅲ-6-13 학교에 대한 생각_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6(0.77)	5.1	16.5	56.0	22.3	100.0(8,992)	–
성별	남자	3.01(0.78)	5.4	13.8	55.7	25.1	100.0(4,674)	76.467***
	여자	2.90(0.76)	4.9	19.3	56.4	19.3	100.0(4,318)	
학교급	초등학교	3.34(0.67)	1.6	6.6	48.4	43.4	100.0(2,592)	1,147.088***
	중학교	2.89(0.76)	5.8	17.6	58.4	18.2	100.0(2,905)	
	고등학교	2.73(0.74)	7.3	22.9	59.8	10.1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3.00(0.77)	4.7	15.5	54.9	24.9	100.0(3,754)	70.511***
	중소도시	2.96(0.75)	4.5	16.3	57.7	21.5	100.0(3,960)	
	읍면지역	2.81(0.82)	8.3	19.9	54.5	17.3	100.0(1,278)	
학업 성적	상	3.09(0.77)	4.0	13.8	51.0	31.2	100.0(3,031)	323.912***
	중	2.96(0.74)	4.5	16.0	58.5	21.1	100.0(3,846)	
	하	2.74(0.77)	8.1	21.3	58.8	11.8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3.05(0.76)	4.2	14.0	53.9	27.9	100.0(4,898)	295.773***
	중	2.89(0.74)	5.4	17.2	60.4	17.0	100.0(3,146)	
	하	2.66(0.80)	9.4	26.5	53.0	11.2	100.0(944)	

***α<.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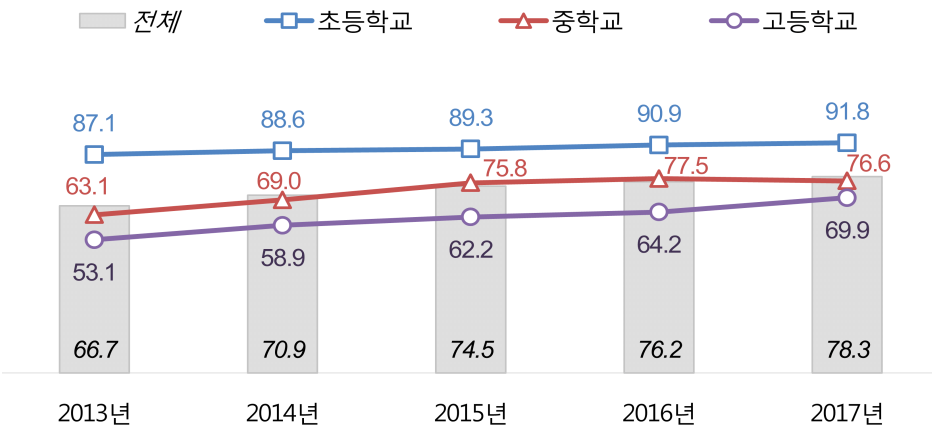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8】 학교에 대한 생각_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연도별 추이)

[그림 Ⅲ-6-8]은 학교가 자신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 가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13년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초등학생은 87.1%였는데 2017년에는 91.8%로 상승하였

다. 초등학생에 비해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 중학생은 63.1%, 고등학생은 53.1%로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적 응답을 했지만 2017년에는 각각 76.6%, 69.9%로 긍정적 응답률이 상승하였다.

표 Ⅲ-6-14 학교에 대한 생각_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4(0.73)	4.4	11.7	59.8	24.1	100.0(8,986)	–
성별	남자	3.06(0.75)	5.0	10.3	58.0	26.7	100.0(4,671)	57.678***
	여자	3.01(0.70)	3.7	13.3	61.7	21.3	100.0(4,315)	
학교급	초등학교	3.33(0.67)	1.9	5.9	49.7	42.5	100.0(2,587)	796.068***
	중학교	2.98(0.74)	5.4	12.1	61.3	21.2	100.0(2,904)	
	고등학교	2.86(0.70)	5.4	15.8	65.9	13.0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3.08(0.74)	4.0	11.7	56.9	27.4	100.0(3,751)	62.151***
	중소도시	3.03(0.71)	4.1	11.3	61.8	22.8	100.0(3,959)	
	읍면지역	2.92(0.76)	6.4	13.3	61.8	18.5	100.0(1,276)	
학업 성적	상	3.16(0.74)	3.7	10.0	53.3	33.1	100.0(3,029)	291.760***
	중	3.04(0.69)	3.6	11.4	62.6	22.5	100.0(3,843)	
	하	2.85(0.74)	6.9	14.9	64.0	14.2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3.12(0.73)	3.7	9.7	56.9	29.7	100.0(4,894)	263.456***
	중	2.98(0.69)	4.1	13.0	64.1	18.9	100.0(3,144)	
	하	2.77(0.78)	8.8	17.9	60.4	12.9	100.0(944)	

***α<.001

<표 Ⅲ-6-14>는 학교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주고 있는 가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 결과이다. 전체 8,986명의 응답청소년 가운데에 16.1%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학교급으로 보면 초등학생의 7.8%, 중학생의 17.5%, 고등학생의 21.2%가 부정적인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규모에 있어서는 읍면지역(19.7%)이 대도시(15.7%), 중소도시(15.4%)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낮은 집단(21.8%)이 높은 집단(13.7%), 중간인 집단(15.0%)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고,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도 낮은 집단(26.7%)이 높은 집단(13.4%), 중간 집단(17.1%)보다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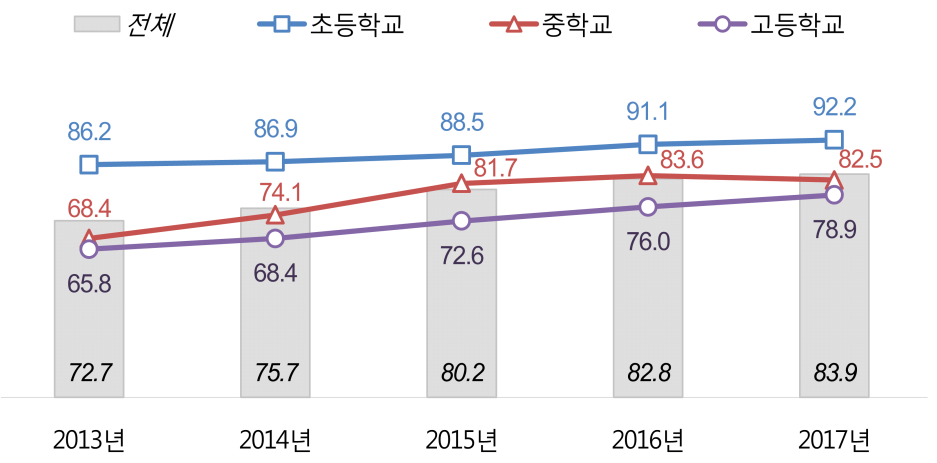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9】 학교에 대한 생각_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연도별 추이)

위의 [그림 Ⅲ-6-9]는 위에서 서술한 물음에 대한 2013년~2017년 기간 동안의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학교가 학생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3년에 86.2%가 긍정적 응답을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2017년에는 92.2%를 보이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2013년에 긍정적 응답률이 초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각각 68.4%와 65.8%를 보였는데 2017년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해서 82.5%와 78.9%를 보이고 있어 학교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Ⅲ-6-15>는 학교가 청소년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8,989명의 응답 청소년 중 17.5%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을 보였다. 여학생(19.0%)이 남학생(16.2%)보다 더 부정적이었으며, 교급에서는 초등학생의 부정적 응답률이 7.4%, 중학생이 18.3%, 고등학생이 24.5%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응답의 경향은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6-15 학교에 대한 생각_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4(0.77)	4.9	12.6	55.7	26.7	100.0(8,989)	–
성별	남자	3.07(0.78)	5.3	10.9	54.7	29.0	100.0(4,672)	47.587***
	여자	3.01(0.75)	4.5	14.5	56.9	24.2	100.0(4,317)	
학교급	초등학교	3.39(0.68)	1.9	5.5	44.4	48.1	100.0(2,589)	1,005.000***
	중학교	2.99(0.75)	5.0	13.3	58.9	22.8	100.0(2,905)	
	고등학교	2.83(0.75)	7.1	17.4	61.5	14.0	100.0(3,49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5(0.77)	4.9	12.5	55.5	27.1	100.0(8,133)	16.594
	한부모가정	2.97(0.75)	4.8	14.9	58.8	21.5	100.0(653)	
	조손가정	3.12(0.81)	6.5	7.4	53.4	32.6	100.0(86)	
	기타	2.99(0.80)	6.9	11.7	57.5	23.9	100.0(109)	
학업 성적	상	3.16(0.78)	4.2	10.9	49.6	35.3	100.0(3,030)	269.429***
	중	3.05(0.75)	4.4	12.5	57.0	26.1	100.0(3,844)	
	하	2.86(0.75)	6.9	15.5	62.3	15.3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3.12(0.78)	4.6	11.1	52.1	32.2	100.0(4,896)	221.935***
	중	2.99(0.73)	4.7	13.0	60.7	21.6	100.0(3,144)	
	하	2.80(0.78)	7.5	19.6	57.9	14.9	100.0(944)	

***p<.001

[그림 Ⅲ-6-10]에는 학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가에 대한 청소년 응답의 연도별 추이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2016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하였다. 2013년을 보면 초등학생은 90.0%의 긍정적 응답을 보였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는 편차가 커 각각 74.8%와 67.6%만 학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17년에도 초등학생 92.5%, 중학생 81.7%, 고등학생 75.5%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이 상승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지난 해 2016년에는 긍정적 응답이 85.1%였는데 올해 3.4%로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추이가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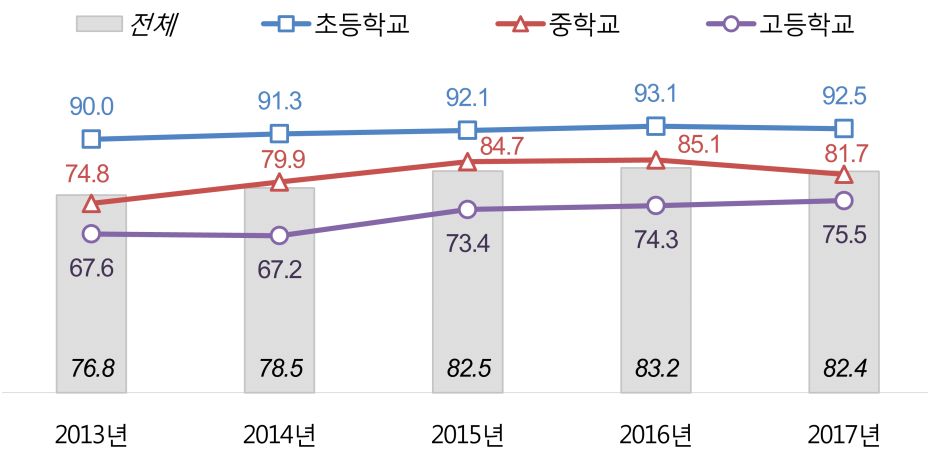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0】 학교에 대한 생각_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연도별 추이)

(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① 대안교육 참여 기회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이다. 앞에서 2017년도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서술한 소분류 지표 '학교 부적응률'에 관한 내용들은 모두 위의 아동권리협약 29조에서 말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잠재력을 계발하려는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가 이미 30만 명이 넘었으며,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 충동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같은 조사의 전체 청소년 8,994명 중에서 28.2%에 해당되었는데 이를 우리나라 2017년 현재 전체 초, 중, 고 총 학생 수 5,725,230명에 적용하면 16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잠재적인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일반학교를 떠나 다른 교육의 길을 모색하는 것 중 하나가 대안교육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안교육은 여러 종류의 학교형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교형태들은 직접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각종학교'로 불리며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대안학교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에서는 대안학교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각종학교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이곳에서 수학한 학력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가 있다.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은 원래 서구에서 산업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제도를 탈피하여 자유로운 교육이념과 자연친화적 교육을 목표로 한동안 유럽의 서머힐학교(Summerhill School)나 발도르프학교(Waldorfschule), 미국의 자유학교운동(free-school movement) 등에서 시도되었으나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한국에서는 1997년 간디청소년학교가 최초의 대안학교로 출발하였다. 2005년 대한민국 정부는 대안학교 설립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제60조3(대안학교) 조항을 신설하여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2007년에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설립 절차와 기준을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2015년 3월 학업중단 학생이 계속 누적적으로 증가하자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대안교육의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16년에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전국의 권역별로 설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김영지 외, 2016: 413), 2017년 1월에는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안학교 설립 시 체육장 기준을 완화하고 설립인가 필수 서류에서 학교헌장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간디청소년학교로 출발하여 2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의 현황은 아직 일천한 것이 사실이다.

<표 Ⅲ-6-16>는 2017년 1월 교육부 보도 자료에 첨부된 자료로서 정부로부터 인가 받아 학력이 인정되는 25개 대안학교들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25개 대안학교 중 공립은 6개이고 19개 학교는 사설 대안학교이다. 학교급으로 보면 고등학교는 7개 학교이고, 중학교는 6개교, 초등학교가 2개교이며, 초·중·고 통합 대안학교가 3개교, 중·고 통합형이 4개교, 초·중 통합 대안학교가 2개교로, 중·고 통합형태의 대안학교가 1개로 되어 있다. 운영형태로 보면 통학형이 7개교, 기숙형이 11개교, 기숙·통학 혼합형이 7개교인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7개교로 가장 많고, 서울과 경북 지역에 각각 4개교이며, 인천에 3개교, 경남과 충북에 각각 2개교, 광주, 대전, 충남에 각 1개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 25개 대안학교의 정원은 총 4,325명인데 2,950명이 재학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공표된 교육통계에 의하면 위의 25개 대안학교가 각종학교에 포함되어 기타학교로 분류되어 있는데 각종학교는 문화예술정

보학교나 산업정보학교 등을 포함하여 초·중·고 학교를 합하여 총 51개에 달하고 있다. 각종학교에는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와 인정되지 않는 학교로 분류되는데 아래의 25개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속하고 있다.

표 Ⅲ-6-16 공립 · 사립 대안학교 25개교 현황(2016년 12월 기준) (단위 : 명)

시·도	학교명	구분	학교급	운영형태	현원(정원)	비고
서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사립	고	통학형	147(150)	
서울	여명학교	사립	고	기숙·통학 혼합형	77(89)	탈북
서울	지구촌학교	사립	초	통학형(그룹홈)	69(90)	
서울	서울다솜학교	공립	고	통학형	109(120)	다문화
인천	인천청담고등학교	사립	고	통학형	44(45)	
인천	인천해밀학교	공립	중·고 통합	통학형	43(90)	Wee스쿨
인천	인천한누리학교	공립	초·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72(225)	다문화
광주	월광기독학교	사립	초	통학형	214(216)	
대전	그라시아스음악학교	사립	고	기숙·통학 혼합형	54(120)	
경기	새나래학교	사립	중·고 통합	기숙형	– (120)	
경기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사립	고	기숙형	30(39)	
경기	쉐마기독학교	사립	초·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175(270)	
경기	티엘비유글로벌학교	사립	초·중 통합	기숙형	35(90)	
경기	경기새울학교	공립	중	기숙형	17(60)	Wee스쿨
경기	광성드림학교	사립	초·중 통합	통학형	312(360)	
경기	하늘꿈학교	사립	중·고 통합	기숙형(그룹홈)	42(57)	탈북
충북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사립	고	기숙형	142(57)	
충북	음성글로벌선진학교	사립	중·고 통합	기숙형	376(600)	
충남	여해학교	공립	중	기숙형	6(60)	Wee스쿨
경북	한동글로벌학교	사립	초·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385(480)	
경북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	사립	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406(600)	
경북	산자연중학교	사립	중	기숙·통학 혼합형	37(90)	
경북	나무와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26(72)	
경남	경남꿈키움학교	공립	중	기숙형	99(135)	학교부적응
경남	지리산중학교(어울림학교)	사립	중	기숙형	50(90)	
계					2,950 (4,325)	

* 출처: 교육부(2017.1.3). 교육부 보도자료, p.6.

표 Ⅲ-6-17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단위 : 명)

지역	학 교 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고등학교과정	학생 수 소계
경기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03	화성시	–	59
	이우중학교	사립	'03	성남시	–	164
	헌산중학교	사립	'03	용인시	–	97
	중앙기독중학교	사립	'06	수원시	–	251
	한겨레중학교	사립	'06	안성시	–	79
강원	팔렬중학교	사립	'11	홍천군	–	49
경남	남해상주중학교	사립	'15	남해군	–	49
광주	평동중학교	공립	'14	광주시	–	47
전북	전북동화중학교	공립	'09	정읍시	–	78
	지평선중학교	사립	'02	김제시	–	120
전남	용정중학교	사립	'03	보성군	–	132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02	영광군	–	115
	청람중학교	공립	'13	강진군	–	74
중학교 : 13교(공립3, 사립10)						
부산	지구촌고	사립	'02	연제구	72	72
대구	달구벌고	사립	'03	동구	121	121
인천	산마을고	사립	'00	강화군	62	62
광주	동명고	사립	'99	광산구	216	216
경기	두레자연고	사립	'99	화성시	117	117
	경기대명고	공립	'02	수원시	110	110
	이우고	사립	'03	성남시	242	242
	한겨레고	사립	'06	안성시	103	103
강원	전인고	사립	'05	춘천시	83	83
	팔렬고	사립	'06	홍천군	55	55
	현천고	공립	'15	횡성군	45	45
충남	한마음고	사립	'03	천안시	120	120
	공동체비전고	사립	'03	서천군	110	110
충북	양업고	사립	'98	청원군	72	72
전북	세인고	사립	'99	완주군	182	182
	푸른꿈고	사립	'99	무주군	114	114
	지평선고	사립	'09	김제시	110	110
전남	영산성지고	사립	'98	영광군	102	102
	한빛고	사립	'98	담양군	218	218
	한울고	공립	'12	곡성군	119	119
경북	경주화랑고	사립	'98	경주시	124	124
경남	간디고	사립	'98	산청군	116	116
	원경고	사립	'98	합천군	97	97
	지리산고	사립	'04	산청군	47	47
	태봉고	공립	'10	창원시	142	142
고등학교 : 25교(공립4, 사립21)			계		2,950	4,013

* 출처: 교육부(2016b), 2016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p.173.

<표 Ⅲ-6-16>에는 대안교육과 관련된 특성화학교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중학교 공립 3개교와 사립 10개교 총 13개교와 고등학교 공립 4개교와 사립 21개교 총 25개로서 총 38개교이다. 이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와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조항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 정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개념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경기도에 제일 많은데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가 4개교로 총 9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전국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중·고등학생 모두 합하여 4,013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렇게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나누어지는데 2017년 현재 직업교육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총 466개교가 설립되어 있다(교육부, 2017.8.31.: 5). 여기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25개교를 합하면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수는 총 493개교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수는 2014년 이래로 교육부에서 집계하지 않고 있다. <표 Ⅲ-6-18>에는 2014년에 교육부 보도 자료로 발표된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당시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237개 중 조사 대상이었던 170개에만 총 6,76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교육부, 2014.11.10.: 9).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그 교육대상이 다양해 다문화 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종교나 선교 관련 학생, 국제교육 관련 학생, 미혼모와 학교부적응 학생,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로 조사되었다.

표 Ⅲ-6-18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	학생 수	(%)
다문화		1			4	6	11	6.5	299	4.4
탈북					2	4	6	3.5	148	2.2
종교·선교	3		2	5	8	9	27	15.9	2,471	36.5
국제교육	1	1	1	1	1	1	6	3.5	319	4.7
미혼모					4	1	5	2.9	9	0.1
부적응학생		5	9	4	46	19	83	48.8	2,248	33.2
대안교육	7	1	2	5	12	5	32	18.8	1,268	18.8
합계	11	8	14	15	77	45	170	100%	6,762	100

* 출처: 교육부(2014.11.10). 교육부 보도자료. p.9.
* 주: 부적응학생 : 학업중단학생 / 위기학생
대안교육 : 인성 / 인문 / 특기·적성계발 / 전인교육 / 자아발견 등

한편 최근 미인가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신체적 체벌이나 폭력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기도 하여(경향신문, 2017.5.18.) 대안학교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잠재적인 학업중단 학생과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재입학을 위하여 정부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확대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적 환경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직업교육 참여 기회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인권지표체계 중 대분류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속하는 소분류 지표들 중 하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 정도'이다. 앞에서 서술된 학업중단률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떠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6년간 30만 명이 넘게 학교교육을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사회로 뛰쳐나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학교의 교육목표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이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목표는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서 교육의 목표로 정하고 있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이라는 협약국의 과제에도 부응하는 변화를 나타나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에의 참여 기회를 청소년에게 일찍부터 열어주는 것은 교육계에 있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책무이다.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에게 꿈이요 희망이며, 그들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이를 보장해 주는 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가장 높은 편향된 진로교육의 상황에서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의 학생들과 이미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진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 Ⅲ-6-19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교

구 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유형이 아닌 교육방식)
학교 수	47개교	465교	60개교 (특성화고 수에 포함)
운영 범위	학교 전체	학교 전체	특성화고 내 도제교육 적합 학과
재학생 지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전액 면제 ○기숙사 설치 필수 ○학급당 학생수 20명	○(수업료 · 입학금) 장학금으로 지원 ○(학교운영비) 학생 부담	(좌동) ○(기업) 도제교육생에게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학생 모집단위	○전국 단위 학생 선발 - 단, 정원 중 일부는 지역 단위 내 선발	○광역단위 학생 선발 ※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전국단위 선발 가능	(좌동) ○특성화고 1학년생 중 기업견학, 사업설명회를 거쳐 1학년 2학기에 참여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운영 자율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전면 운영 -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과정 지향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원칙) ○자율학교로 지정 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교육과정 운영 자율 ○NCS 기반의 교육훈련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필요 인력 양성 * 2년간 평균적으로 1,297시간이 NCS 기반 과정으로 구성 ○학교 -기업 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학생은 2~3년간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교육
지원 규모	○마이스터고 선정 시 기반 조성금 50억 지원(특교) ○운영비로 보통교부금 산정 시 9~11억원 반영	○취업역량 강화사업, 글로벌해외 인턴십 등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	○(고용부) 연 20억원 상한 시설장비비 · 운영비 · 인건비 지원 ○(교육부) 특교로 교재개발비, 방과후 프로그램비, 연수비 등 지원

* 출처: 교육부(2016.8.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7년까지 특성화고 200여개로 확대 " 보도자료. p.12.
* 주: 2016년 4월 1일 기준.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정부는 2016년 8월 보도 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9개 학교에 처음 시생하여 도입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특성화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교육부, 2016.8.19.). 이에 따르면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에 있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도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해온 도제학교 60개교 2,643명 학생과 새롭게 특성화고등학교 140개교를 선정하여 2017년까지 총 200개 학교 7,000여명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교육부, 2016.8.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원래 독일의 전통적인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교육 체제(Dual

System)를 벤치마킹하여,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국가직무표준능력(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초로 교육을 받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훈련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기존의 공업계열 외에 서비스, IT, 경영사무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전 교육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교육부, 2016.8.19).

<표 Ⅲ-6-19>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현행 우리나라 직업교육에서 대표적인 학교유형인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일목요연하게 잘 비교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엘리트 직업교육 학교로, 도입 당시 전문계 고등학교 중 우수한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경쟁을 도입하려는 의도로 전환된 학교이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학교유형이다. 특성화고는 인문계의 일반고와 같은 위치를 가진 과거 전문계 고등학교이자 각종학교의 성격으로 1997년부터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학교유형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내 도제교육에 적합한 학과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향후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심한 경쟁을 시키려는 엘리트 교육을 지양해서 독일과 같은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도제학교로 모든 직업학교 유형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Ⅲ-6-20>에는 이렇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 학교,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먼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에게는 근로자의 지위가 보장되고 산업기능요원에 1순위로 지정된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시간은 교육훈련시간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다. 학교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매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5년간 연간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교육부로부터는 사업관리비와 교원연수비, 전문교과 교재 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장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근로자로 간주하여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월 4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학습도구 컨설팅을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 받게 되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580만원~890만원, 기업현장교사 수당비로 연 4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 내 인력개발(HRD) 담당자의 수당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고, 기업현장 교수와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수행되는 HRD 담당자의 연수도 지원받을 수 있다.

표 Ⅲ-6-2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참여기업 지원내용

대상	지원 내용	세부내용	지원 부처
학생	지위	· 교육근로계약 체결로 기업 내 현장교육훈련 기간은 학생이자 근로자 지위 보장 · 참여기업 및 학생, 산업기능요원 1순위 지정	고용부 병무청
	보수	· 기업 내 근로 시간(교육훈련시간 포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업
학교	시설 기자재 및 운영비	· 시설기자재: 연간 10억 한도 · 일반운영비(인건비포함): 연간 10억 한도 ※ 사업계획서를 매년 심사하여 지원 금액 결정(5년간 연간 20억원 한도)	고용부
	사업 보조비	· 사업관리비 · 교원연수비 · 전문교과 교재 개발비 · 학생·학부모 사업설명회 등	교육부
기업	훈련 지원금	· 현장훈련비용 지원 : 직종 및 시간을 고려하여 지급 ·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지원(사업주) *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급	고용부
	인프라 구축 지원	·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최대 300만원, 개발기관에 지원) · 프로그램 개발비(580만원~890만원, 개발기관에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연 400~1,600만원) · HRD 담당자 수당 지원(연 300만원 한도) · 기업현장교수 및 HRD 담당자 연수 지원(한국기술교육대학)	

* 출처: 교육부(2016.8.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7년까지 특성화고 200여개로 확대" 보도자료, p.13.
* 주: 2016년 8월 18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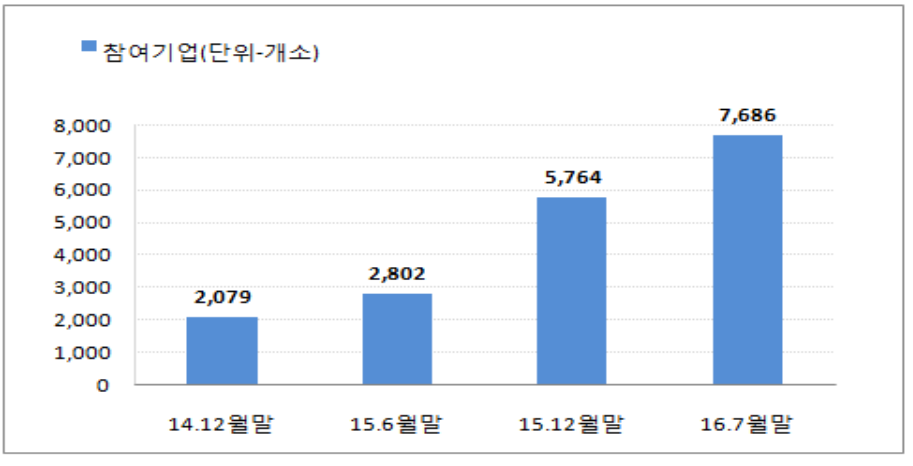

【그림 Ⅲ-6-1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도별 추이

[그림 Ⅲ-6-11]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도별 추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4년 12월에 2,079개의 기업이 새로운 정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에 참여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7월말까지 7,686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3년도 채 안 되어 약 370% 가까이 기업들의 참여가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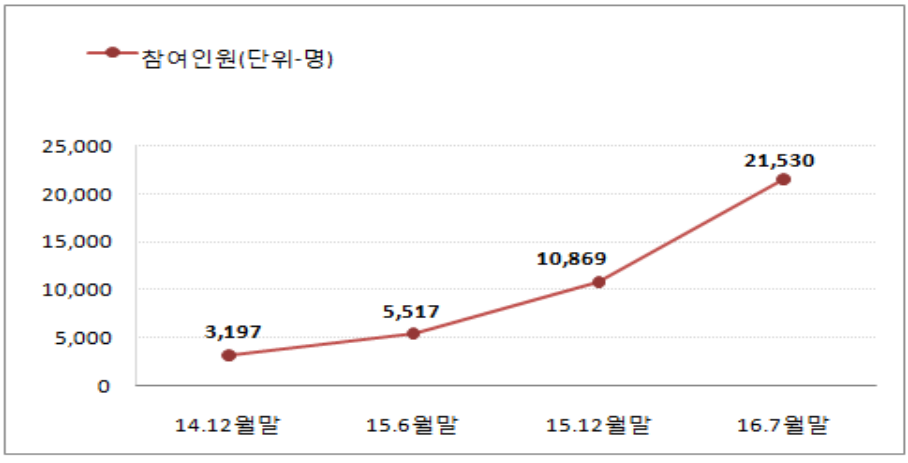

【그림 Ⅲ-6-1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연도별 추이

[그림 Ⅲ-6-12]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시작 연도인 2014년 12월에는 3,197명의 도제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으나 가장 최근인 2016년 7월에는 21,530명이 참여하여 무려 약 673%을 넘어서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폭발적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학생과 기업의 수요에 대하여 고무되어 2016년 11월 9일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의 이유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산업계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교과목에 대한 편성·운영 자율성을 부여하고자"하기 때문이다(교육부, 2016.11.9: 1).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계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를 설치한 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 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6.11.9).

표 Ⅲ-6-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현황 개요 (단위 : 개)

연번	시 · 도	사업단유형					학교수
		공동 실습소형	거점형	단일형	산업계 주도형	합계	
1	서울특별시		7	1	3	11	36
2	강원도		2	0		2	7
3	경기도		6	2	1	9	26
4	인천광역시		2	2	1	5	15
5	대전광역시		1			1	3
6	대구광역시	1	3	1		4	17
7	광주광역시		1	2		3	4
8	울산광역시			1		1	1
9	부산광역시		4			4	15
10	충청북도		3			3	12
11	충청남도	1	3			4	17
12	경상북도	1	2	1		3	15
13	경상남도	1	1	1		2	9
14	전라북도		1			1	3
15	전라남도		3	2		5	16
16	세종특별자치시			1		1	1
17	제주특별자치도			1			1
합계		4	39	15	5	63	198

* 출처: 교육부(2017.1.16.). '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p.8.
* 주: 2016년 12월 기준.

<표 Ⅲ-6-21>에는 2016년 12월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현황이 잘 나타나 있다. 전국에 198개교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36개교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26개로 다음으로 많았다. 아직 한 자리 수를 나타내고 있는 광역시도는 강원도 7개교, 대전 3개교, 광주 4개교, 경남 9개교, 전북 3개교, 울산, 세종, 제주가 각 1개교로 아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단은 몇몇 학교가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이다.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한 개의 특성화고 내에서 전공(학과)이 다른 경우 각각 전공과 연계된 사업단에 중복 참여할 수 있어 <표 Ⅲ-6-21>에서 제시된 총 198개의 도제학교는 중복학교(2개 사업단 19교, 3개 사업단 참여 6교)를 포함한 수이며 중복을 제외하면 총 167개교이다. 이러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의 시행이외에도 교육부는 2017년 5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력적인 직업계 고등학교 총 150개교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중에서 선정하여 3년간 총 900억원을 투입하여 직업계 고등학교의 종합적 혁신을 유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7.5.1).

그러나 지난 2017년 1월 전북 전주 엘지유플러스(LG U+) 고객센터로 현장실습 나간 특성화고 여학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은 이러한 계획에 다각적인 고려와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대는 학업중단과 자퇴충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의 기회이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절한 조정과 준비된 법제도의 도입만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이 오히려 이들의 학습권과 노동권 침해를 넘어 생존권까지 저해하는 일로 악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4월 3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9개 청소년노동 관련 단체들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7대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실습환경에서 전문교과를 익힐 권리, 다양한 현장실습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위험한 현장실습에서 자신과 동료를 보호할 권리, 현장실습을 중도에 중단하고 학교에 돌아갈 권리, 적절한 노동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 받을 권리, 교육부·교육청·학교에 현장실습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요구하였다.[34] 이러한 요구는 모두 정당한 요구이고, 반드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대 시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서 법제도로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실습생은 학생으로서, 도제교육생은 근로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를 위해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에 부응해 교육부도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시각에 맞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성공적 결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4) 한겨레신문, 보도자료 (2017.4.3).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삶을 포기시키지 않도록 하라'.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

① 전국 문화예술 기반 시설 수

<표 Ⅲ-6-22>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현황이 나타나 있다. 문화기반시설이란 말 그대로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과 같은 곳에서 문화를 향수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2012년에는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이 총 2,072개소였는데 2016년에는 2,595개소로 5년간 약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기반시설 중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공공도서관으로 2016년 전국에 978개소에 이른다. 이 표에는 서울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국립도서관 1개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표 Ⅲ-6-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연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2012	2,072	786	694	154	209	229	–
2013	2,182	828	740	171	214	229	–
2014	2,266	865	754	198	221	229	116
2015	2,519	930	809	202	232	229	116
2016	2,595	978	826	219	229	228	114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2.2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p.1

<표 Ⅲ-6-23>에서는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현황을 잘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기반시설의 설치 비율은 현재 수도권이 총 945개소로 전체의 36.4%이고 지방은 총 1,650개소로 63.6%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3지역을 나타내는데 전국의 36.4%에 달하고 있는 것은 문화기반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가 492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갖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356개소, 강원이 206개소로 나타났다. 강원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이한데 특히 박물관에 있어서는 96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서울의 120개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 네 번째로 많은 경북과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모든 문화기반시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시·도별	총 계	공공 도서관	등록 박물관	등록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
지역1	서울	356	146	120	37	19	25	8
	부산	87	36	19	6	11	14	1
	대구	72	33	16	4	11	8	–
	인천	97	46	30	4	8	8	1
	광주	56	21	10	9	7	5	4
	대전	56	24	16	5	3	5	3
	울산	39	17	9	–	4	5	4
	세종	12	4	6	–	1	1	–
	경기	492	228	139	49	34	31	11
	강원	206	53	96	11	18	18	10
	충북	126	42	45	8	12	11	8
	충남	154	58	46	9	18	16	7
	전북	149	56	40	13	15	14	11
	전남	181	64	46	25	19	22	5
	경북	196	64	65	11	26	23	7
	경남	190	65	60	9	20	20	16
	제주	126	21	63	19	3	2	18
	총계	2,595	978	826	219	229	228	114
지역2	수도권	945(36.4%)	420	289	90	61	64	20
	지방	1,650(63.6%)	558	537	129	168	164	94
	계	2,595(100%)	978	826	219	229	228	114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2.2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p.3
* 주: 2017년 2월 21일 기준.

경기도가 비록 모든 문화기반시설의 수에서 1위를 차치하고 있지만 [그림 Ⅲ-6-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에 있어서는 39.29개로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10위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비례 당 가장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인구 백만 명 당 201.8개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원도가 인구 백만 명 당 132.95개소로 많았고, 전남이 문화의 지역답게 94.81개소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인구 백만 명 당 35.52개로 17개 광역단체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도시치고는 문화도시라고는 불릴 수 없는 것이 현주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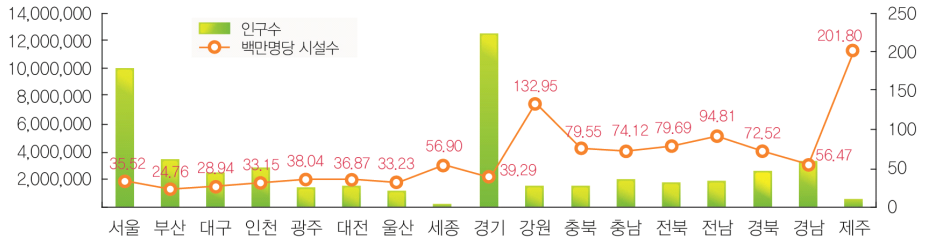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2.2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p.4(단위: 명, 개소)

【그림 Ⅲ-6-13】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

①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수

청소년수련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 주로 체험을 위주로 하는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름이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속하고 있는 시설들은 <표 Ⅲ-6-2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로 모두 법에 적시되어 있는 시설이다.

표 Ⅲ-6-24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99	185	248	191	45	120	10
공 공	537	183	243	62	19	20	10
민 간	262	2	5	129	26	100	0

* 출처: 여성가족부(2017c).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주: 2016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79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가장 많은 시설로서는 주로 도시지역에 있는 비숙박형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이 전국에 2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으로 많은 수련시설은 주로 자연 속에 설치되어 있는 숙박형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이 191개소이다. 세 번째로 많은 수련시설은 도시권의 가장 대표적인 수련시설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전국에 18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주로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숙박하며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은 세계유스호스텔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수련시설로서 전국에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전국의 총 799개의 수련시설 중 정부가 설치한 시설은 537개소로

전체의 67.2%에 해당하고, 민간이 설립한 수련시설은 262개소로 33.8%에 해당하고 있다. 주로 도시의 생활권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은 대부분 정부가 지은 것이고, 반대로 자연권 속에 있는 대표적인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은 민간이 설립한 것이 대다수이다.

표 Ⅲ-6-25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99	185	248	191	45	120	10
서울	62	33	16	3	0	4	6
부산	28	8	13	4	2	1	0
대구	13	5	4	2	0	1	1
인천	29	8	5	5	7	4	0
광주	12	5	5	1	0	0	1
대전	15	4	7	3	0	1	0
울산	10	1	8	1	0	0	0
세종	2	1	1	0	0	0	0
경기	154	31	53	43	8	19	0
강원	81	16	29	17	5	13	1
충북	46	6	11	21	1	7	0
충남	47	11	10	15	2	9	0
전북	54	10	18	14	3	8	1
전남	55	10	18	14	6	7	0
경북	68	15	15	15	5	18	0
경남	74	18	14	28	4	10	0
제주	47	3	21	5	2	18	0

* 출처: 여성가족부(2017c).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주: 2016년 12월 31일 기준.

<표 Ⅲ-6-25>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의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154개소의 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 62개소의 2.5배에 가깝게 많은 숫자다. 경기도는 청소년특화시설과 청소년수련관만 서울보다 적으며 모든 수련시설의 유형에서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수련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강원이 서울 62개소보다 수련시설 수가 더 많아 총 81개소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다.

표 Ⅲ-6-26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공공도서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1.8	24.9	22.3	18.9	12.2	100.0(8,978)	–
성별	남자	26.7	23.9	20.4	17.3	11.7	100.0(4,671)	146.154***
	여자	16.3	25.9	24.4	20.6	12.7	100.0(4,308)	
학교급	초등학교	16.3	23.1	18.1	22.1	20.4	100.0(2,593)	339.299***
	중학교	21.1	26.8	25.2	18.7	8.2	100.0(2,893)	
	고등학교	26.3	24.6	23.1	16.6	9.4	100.0(3,49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9	24.7	22.7	19.3	12.4	100.0(8,129)	56.896***
	한부모가정	28.7	25.8	20.9	15.5	9.2	100.0(651)	
	조손가정	28.3	31.5	17.6	10.2	12.4	100.0(86)	
	기타	37.8	25.8	9.9	14.9	11.6	100.0(105)	
학업 성적	상	16.3	22.0	21.8	23.8	16.1	100.0(3,025)	285.512***
	중	21.7	25.6	22.6	18.0	12.1	100.0(3,844)	
	하	29.6	27.6	22.8	13.4	6.6	100.0(2,105)	
경제적 수준	상	20.1	24.0	22.1	20.5	13.2	100.0(4,891)	44.211***
	중	23.7	25.5	22.8	17.3	10.7	100.0(3,141)	
	하	23.5	27.3	22.0	15.5	11.7	100.0(942)	

***$p<.001$

공공도서관은 여성가족부 주관 관련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 이용시설에 속한다. 청소년 이용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구별되고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시설들을 말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공공도서관은 전국에 978개소가 있는데, <표 Ⅲ-6-26>의 2017년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체 청소년 8,978명 중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8.3%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공공도서관 이용률(83.6%)이 남학생(73.3%)보다 약 10%이상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83.7%로 가장 높고, 이어서 중학생 78.9%, 고등학생이 73.7%의 이용률을 보였다. 양부모가정 자녀(79.1%)가 한부모가정 자녀(71.4%)나 조손가정 자녀(71.7%)보다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많지 않았지만 학업수준이 높은 학생(83.7%)이 중간(78.3%)이거나 낮은(70.4%)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27>은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학생 8,931명 중 57.1%가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하였다. 반면에 1주일에 1~2회 이상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3.1%에 해당하였다. 청소년시설을 1년에 1~2회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두 번째로 많아 29.8%에 해당하였으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57.1%였다. 학교급에서는 청소년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81.0%, 중학생은 87.9%, 고등학생은 90.2%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에서는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았으나, 학업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게서 청소년시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Ⅲ-6-2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청소년시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57.1	29.8	5.5	4.5	3.1	100.0(8,931)	–
성별	남자	58.0	28.4	5.8	4.6	3.3	100.0(4,644)	9.479
	여자	56.1	31.2	5.3	4.4	3.0	100.0(4,287)	
학교급	초등학교	55.5	25.5	7.9	5.2	6.0	100.0(2,564)	241.086***
	중학교	52.0	35.9	5.9	3.7	2.5	100.0(2,879)	
	고등학교	62.4	27.8	3.5	4.6	1.6	100.0(3,489)	
지역 규모	대도시	56.1	32.4	4.9	3.6	3.1	100.0(3,739)	35.595***
	중소도시	57.9	27.9	5.8	5.2	3.1	100.0(3,929)	
	읍면지역	57.3	27.5	6.6	5.2	3.5	100.0(1,263)	
학업 성적	상	52.2	32.5	6.5	4.8	4.0	100.0(3,005)	63.954***
	중	57.9	29.2	5.4	4.9	2.7	100.0(3,821)	
	하	62.4	27.0	4.6	3.3	2.8	100.0(2,101)	
경제적 수준	상	54.7	30.7	6.4	4.7	3.6	100.0(4,863)	35.668***
	중	59.6	29.0	4.6	4.1	2.7	100.0(3,122)	
	하	61.1	27.3	4.3	4.7	2.7	100.0(941)	

*p<.05, ***p<.001

* 주: 설문문항에서 응답 학생에게 제시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말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 칭하기고 함.

<표 Ⅲ-6-28>은 청소년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체육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은 위에서 서술한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청소년수련시설보다 빈도가 높아 전체 8,946명의 청소년 중 32.5%만 1년에 한 번도 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자(28.3%)보다 여자(37.1%)에게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의 경우 14.7%, 중학생은 30.1%, 고등학생의 경우 47.5%로 나타나 역시 상급학교로 갈수록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향은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Ⅲ-6-28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32.5	26.0	14.6	11.5	15.4	100.0(8,946)	–
성별	남자	28.3	20.7	15.3	13.7	22.1	100.0(4,655)	481.584***
	여자	37.1	31.8	13.8	9.1	8.2	100.0(4,291)	
학교급	초등학교	14.7	25.4	16.6	15.6	27.7	100.0(2,572)	1,013.384***
	중학교	30.1	27.1	16.9	11.7	14.1	100.0(2,884)	
	고등학교	47.5	25.6	11.2	8.2	7.4	100.0(3,489)	
지역 규모	대도시	31.7	26.7	13.9	11.4	16.3	100.0(3,743)	61.025***
	중소도시	30.4	26.1	15.7	12.1	15.7	100.0(3,936)	
	읍면지역	41.2	23.7	13.2	9.9	12.0	100.0(1,267)	
학업 성적	상	25.1	25.0	15.7	13.6	20.6	100.0(3,009)	250.825***
	중	32.6	27.4	14.2	11.4	14.4	100.0(3,829)	
	하	42.8	24.9	13.7	8.7	9.8	100.0(2,104)	
경제적 수준	상	26.0	25.2	16.1	13.2	19.5	100.0(4,870)	325.795***
	중	38.7	26.8	13.4	9.9	11.2	100.0(3,130)	
	하	45.3	27.9	10.7	7.9	8.2	100.0(941)	

***$p<.001$

* 주: 설문문항에서 응답 학생에게 제시된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말함.

<표 Ⅲ-6-29>에서는 청소년의 문화 예술 공간의 이용률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서술해온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과 같은 청소년의 시설 이용 중에서 청소년의 문화 예술 공간 이용률이 84.1%로 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에 1~2회 정도 문화 예술 공간을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24.9%였으며, 한 번도 가지 않는 비율은 16.0%로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자(44.9%)가 여자(36.4%)보다 많았으나, 초등학생이 42.5%, 중학생이 40.5%, 고등학생이 40%로 나타나 학교급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른 시설과 달리 문화 예술 공간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청소년의 이용률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 상대적으로 특이한데 이는 고등학생들이 동아리활동 등 공연이나 전시의 기회가 더 많아 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양부모가정의 자녀와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의 문화 예술 공간의 이용률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문화 예술 공간에의 이용에는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Ⅲ-6-29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문화 예술 공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16.0	24.9	30.8	24.7	3.7	100.0(8,968)	-
성별	남자	20.5	24.4	28.5	22.6	4.0	100.0(4,661)	164.864***
	여자	11.1	25.3	33.3	27.0	3.3	100.0(4,307)	
학교급	초등학교	12.1	30.4	28.9	23.6	5.0	100.0(2,590)	119.538***
	중학교	16.3	24.2	30.2	25.8	3.5	100.0(2,887)	
	고등학교	18.7	21.3	32.7	24.6	2.8	100.0(3,49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1	25.2	31.0	25.1	3.6	100.0(8,120)	84.314***
	한부모가정	22.2	20.8	31.5	22.3	3.2	100.0(651)	
	조손가정	28.6	27.4	23.3	15.4	5.4	100.0(86)	
	기타	36.3	19.1	18.4	17.7	8.5	100.0(105)	
학업 성적	상	11.6	23.5	33.2	27.2	4.5	100.0(3,021)	130.459***
	중	16.0	26.5	30.8	23.4	3.4	100.0(3,841)	
	하	22.3	23.8	27.4	23.5	3.0	100.0(2,102)	
경제적 수준	상	13.4	24.2	30.5	27.4	4.5	100.0(4,885)	117.664***
	중	18.0	26.0	31.1	22.2	2.6	100.0(3,136)	
	하	22.9	24.4	31.1	19.2	2.5	100.0(943)	

***$p<.001$

* 주: 설문문항에서 응답 학생에게 제시된 문화예술 공간이란 공연장, 전시장 등을 말함.

(2)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①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표 Ⅲ-6-30>은 청소년이 평일과 휴일에 여가·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의 조사는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응답을 15~19세 청소년 872명을 대상으로 복수로 물어 조사한 결과이다. 평일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문화·예술 활동은 1위가 취미, 오락 활동(97.2%)으로, 다음으로는 휴식활동(96.4%), 세 번째는 사회 및 기타 활동(89.5%)이었다. 휴일에 휴식활동이 96.2%로 근소하게 취미, 오락 활동의 96.0%보다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 및 기타 활동으로 94.7%를 나타냈다. 반대로 평일에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여가·문화·예술 활동은 문화, 예술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34.1%를 나타냈다. 실제로 여가·문화·예술 활동은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문화, 예술 활동을 관람(49.5%)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표 Ⅲ-6-30 여가·문화·예술 활동 평일과 휴일의 청소년 참여율 (단위 : %)

구 분		휴식 활동		관광 활동		취미, 오락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평일/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대상별	청소년	96.4	96.2	47.3	71.0	97.2	96.0	44.1	48.7	56.8	55.6	49.5	81.6	34.1	27.1	89.5	94.7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pp.39~40.

* 주: 1) 2016년 9.1~10.28일 동안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는 전국 17개 사도 참가자 10,602명이었고, 그 중 청소년은 총 827명으로 연령은 15~19세였으며 조사결과는 복수 응답한 결과임

2) 여기서 말하는 휴식활동이란 일상생활에 피로해진 심신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기분전환 활동으로 산책 및 걷기, 목욕, 찜질방, 낮잠, TV나 영화 시청, 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신문이나 잡지 보기, 아무 것도 안하기 등을 의미함

3) 사회 및 기타 활동은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회봉사활동, 종교활동, 클럽가기와 같은 활동을 뜻함

②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응답에 참여한 학생이 평소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있거나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6-31>와 같다. 전체 응답학생 9,001명 중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84.3%이고, 가입은 했으나 활동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 6.4%,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9.3%에 해당하였다.

표 Ⅲ-6-31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입 X	가입 O, 활동 X	가입 O, 활동 O	전체(N)	χ^2
전체		84.3	6.4	9.3	100.0(9,001)	–
성별	남자	85.2	6.5	8.4	100.0(4,681)	9.471**
	여자	83.3	6.4	10.3	100.0(4,320)	
학교급	초등학교	74.1	7.1	18.8	100.0(2,600)	411.604***
	중학교	87.3	6.9	5.8	100.0(2,906)	
	고등학교	89.4	5.6	5.0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83.3	6.3	10.4	100.0(3,758)	31.100***
	중소도시	86.3	5.9	7.8	100.0(3,964)	
	읍면지역	81.1	8.6	10.3	100.0(1,279)	
학업 성적	상	80.6	6.7	12.7	100.0(3,033)	96.511***
	중	84.5	6.5	8.9	100.0(3,854)	
	하	89.3	5.8	4.9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82.2	6.5	11.3	100.0(4,902)	65.756***
	중	85.7	6.8	7.5	100.0(3,151)	
	하	90.5	4.7	4.8	100.0(944)	

**$p<.01$, ***$p<.001$

<표 Ⅲ-6-31>에서 보듯이, 실제로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남학생은 8.4%인 반면 여학생은 더 많아 10.3%로 나타났다. 학교급을 보면 초등학생의 18.8%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학생은 5.8%, 고등학생은 5.0%로 초등학생과는 큰 편차를 보였다.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 청소년(10.4%)와 읍면지역 청소년(10.3%)은 비슷한 비율로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 청소년은 이보다 낮은 7.8% 학생들만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이 높은(12.7%) 학생들이 중간(8.9%)이거나 낮은(4.9%) 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역시 경제적 수준이 높은(11.3%) 학생이 중간(7.5%)이거나 낮은(4.8%)에 속하는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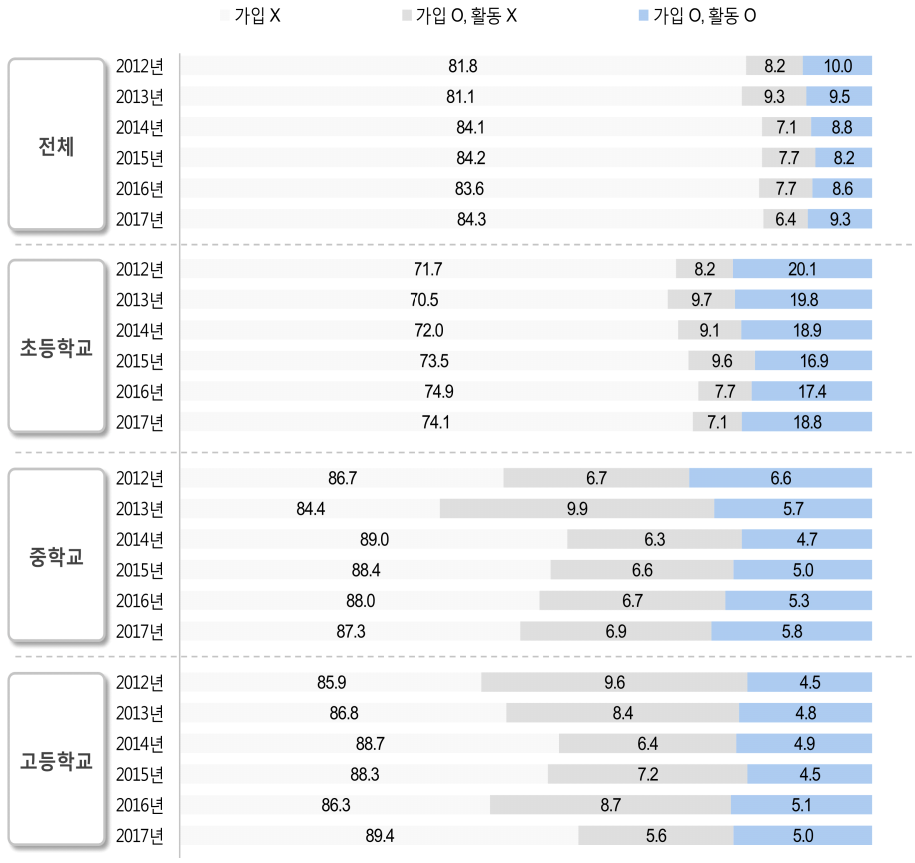

* 주: (단위: %)

【그림 Ⅲ-6-14】 청소년 단체 가입/활동 여부(연도별 추이)

[그림 Ⅲ-6-14]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소년단체의 가입과 활동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단체 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2012년보다 청소년단체 활동이 줄어든 반면,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2012년 4.5%에서 2017년 5.0%로 조금 증가한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③ 동아리활동 참가율

<표 Ⅲ-6-32>에는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가율이 나타나 있다. 실태조사 응답에 참여한 전체 8,998명의 학생 중 77.6%는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79.1%)이 남학생(76.3%)보다 동아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으로 보면 초등학생이 80.3%로 중학생(76.2%)이나 고등학생(76.8%)보다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동아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중소도시(74.8%) 지역 청소년보다 대도시(80.6%)나 읍면지역(77.4%)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에의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차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이 더 많이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32 동아리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77.6	22.4	100.0(8,998)	–
성별	남자	76.3	23.7	100.0(4,681)	10.121**
	여자	79.1	20.9	100.0(4,318)	
학교급	초등학교	80.3	19.7	100.0(2,597)	15.279***
	중학교	76.2	23.8	100.0(2,906)	
	고등학교	76.8	23.2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80.6	19.4	100.0(3,758)	37.670***
	중소도시	74.8	25.2	100.0(3,962)	
	읍면지역	77.4	22.6	100.0(1,278)	
학업 성적	상	80.2	19.8	100.0(3,030)	34.744***
	중	77.9	22.1	100.0(3,854)	
	하	73.3	26.7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78.5	21.5	100.0(4,901)	5.784
	중	76.8	23.2	100.0(3,148)	
	하	75.6	24.4	100.0(944)	

**p<.01, ***p<.001

[그림 Ⅲ-6-15]는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초등학생은 47.6%만 동아리활동에 참여하여 중학생(58.0%), 고등학생(53.5%) 비해 가장 적게 참여했는데, 2017년에는 학교급 중 참여율이 가장 높아 80.3%에 이르렀다.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의 도입 이후 초등학생들도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기회가 새롭게 주어졌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입학 시험을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생도 2012년에 동아리활동 참여율이 53.5%에 불과했는데 올해에는 76.8%에 달하고 있고, 중학생도 2012년 58.0%의 참여율이 2017년 76.2%로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유형 중 동아리활동의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서 소규모 집단의 활동으로 활동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지·덕·체가 조화된 청소년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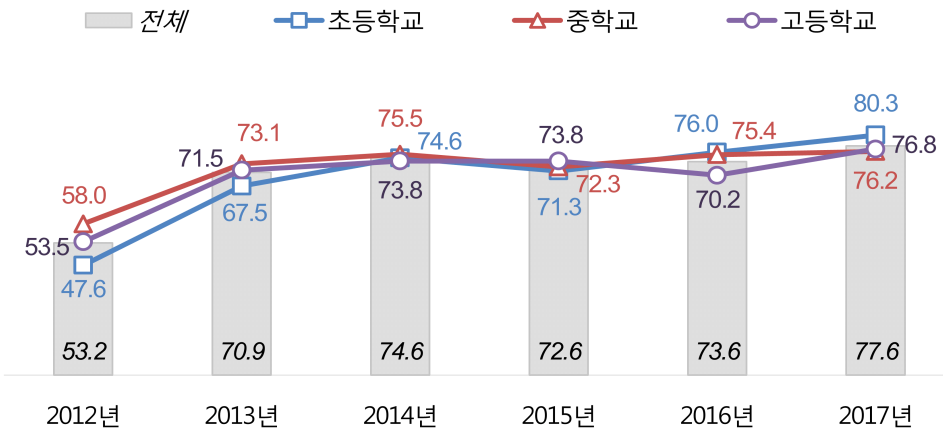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6-15】 동아리활동 여부(연도별 추이)

④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표 Ⅲ-6-33>에는 청소년들의 평일 여가 시간 실태가 잘 드러나 있다. 평일 하루에 1시간도 채 못 미치는 여가 시간을 가진다는 학생이 전체 8,981명 중 19.7%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5시간 이상 평일 여가 시간을 가진다는 학생도 두 자리 수에 해당되는 11.1%에 달했다.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은 보인 학생은 평일 하루에 1~2시간의 여가 시간을 가진다는 학생으로 29.2%에 해당되었다. 1시간 미만의 평일 여가 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여학생(21.0%)이 남학생(18.5%)보다 여가 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 여가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학생들을 교급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5.7%, 중학생은 14.6%, 고등학생은 27.0%로 고등학생이 가장 여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 일반계고 학생이 29.5%이고, 특성화고 학생이 16.6%로 역시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느라 학업에 더 시달리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규모와 학업성적에서는 편차가 작았으며,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경제가 어려운 학생이 평일 여가 시간이 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33 평일 여가 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5 시간	5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9.7	29.2	19.5	13.7	6.8	11.1	100.0(8,981)	–
성별	남자		18.5	28.8	19.6	13.9	6.6	12.5	100.0(4,670)	25.694***
	여자		21.0	29.6	19.5	13.4	6.9	9.5	100.0(4,311)	
학교급	초등학교		15.7	21.5	18.1	17.1	9.9	17.6	100.0(2,585)	562.214***
	중학교		14.6	29.9	22.6	15.2	7.3	10.5	100.0(2,902)	
	고등학교	전체	27.0	34.4	18.1	9.9	4.0	6.6	100.0(3,494)	
		일반계고	29.5	37.1	17.6	8.3	2.9	4.6	100.0(2,823)	
		특성화계고	16.6	22.8	20.1	16.6	8.7	15.0	100.0(671)	
지역 규모	대도시		20.6	30.5	19.0	12.4	6.6	11.0	100.0(3,751)	25.768**
	중소도시		18.5	27.9	19.9	15.0	7.2	11.5	100.0(3,955)	
	읍면지역		21.0	29.6	20.0	13.4	5.9	10.1	100.0(1,275)	
학업 성적	상		20.1	31.2	20.2	12.5	6.9	9.1	100.0(3,026)	44.360***
	중		19.2	29.1	19.1	14.3	7.1	11.1	100.0(3,844)	
	하		20.2	26.5	19.4	14.3	5.9	13.8	100.0(2,106)	
경제적 수준	상		18.4	29.1	20.4	13.8	7.5	10.7	100.0(4,893)	33.032***
	중		20.6	29.3	18.8	14.1	6.0	11.2	100.0(3,140)	
	하		23.6	29.3	17.3	12.0	5.2	12.6	100.0(943)	

**$p<.01$, ***$p<.001$

[그림 Ⅲ-6-16]은 평일 여가 시간이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이 넘는 집단의 합계로 살펴본 평일 여가 시간의 학교급에 따른 연도별(2012~2017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평일 여가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증가 추세가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2년 26.6%였던 평일 여가 시간이 2017년 44.6%로 상승해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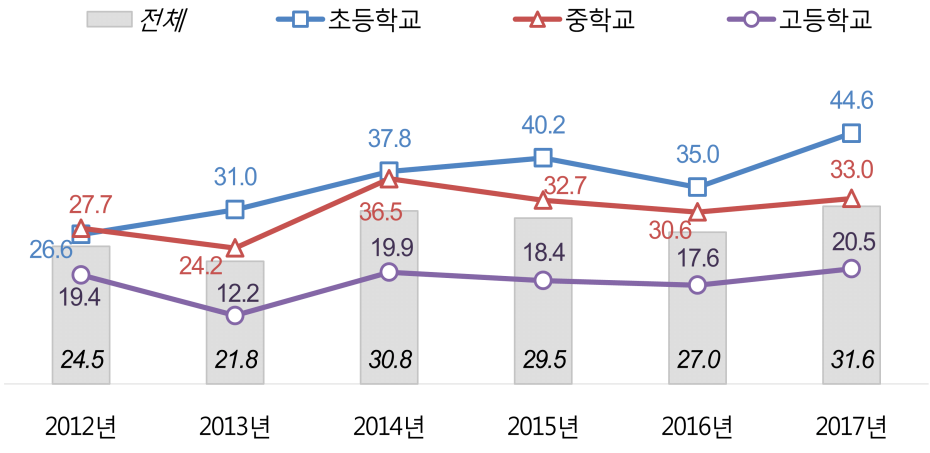

* 주: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6】 평일 여가 시간(연도별 추이)

⑤ 하루 평균 학습시간

<표 Ⅲ-6-34>는 <표 Ⅲ-6-33>의 평일 여가 시간과는 달리 청소년이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하루에 방과 후 6시간 이상 공부하는 응답학생의 비율은 전체 응답학생 8,993명 중 6.2%에 해당되었다. 가장 많은 분포도는 방과 후 하루에 2~3시간이 20.9%, 3~4시간이 19.8%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방과 후 5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4~5시간, 3~4시간, 2~3시간, 1~2시간, 1시간미만으로 공부한다는 학생들은 두 자리 수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편차가 서로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공부시간에 있어서 가장 비율이 높은 2~3시간의 공부시간(20.9%)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학교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23.5%, 중학생이 22.2%, 고등학생이 17.9%로 나타냈다. 방과 후 공부시간에 있어서 편차가 가장 심한 집단은 고등학생에 있어서 일반계고 학생이 1시간미만으로 공부하는 비율이 11.7%로 응답된 반면, 특성화고 학생은 45.1%로 나타나

33.4%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6-34 정규 수업시간 제외 공부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5 시간	5~6 시간	6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4.5	17.7	20.9	19.8	13.3	7.7	6.2	100.0(8,993)	–
성별	남자		16.3	19.1	20.6	18.7	11.7	7.0	6.5	100.0(4,674)	66.774***
	여자		12.5	16.1	21.2	20.9	15.0	8.5	5.7	100.0(4,319)	
학교급	초등학교		12.4	20.7	23.5	19.2	11.5	6.8	5.9	100.0(2,595)	170.394***
	중학교		11.9	17.2	22.2	23.0	14.0	7.1	4.4	100.0(2,902)	
	고등학교	전체	18.1	15.8	17.9	17.5	14.1	8.9	7.7	100.0(3,496)	
		일반계고	11.7	14.6	18.0	19.6	16.3	10.8	9.0	100.0(2,825)	
		특성화계고	45.1	21.0	17.3	8.7	4.8	0.9	2.2	100.0(671)	
지역 규모	대도시		12.8	15.7	19.9	20.9	14.6	9.1	7.0	100.0(3,753)	93.997***
	중소도시		14.4	19.2	22.1	19.8	12.4	6.6	5.6	100.0(3,962)	
	읍면지역		19.8	18.8	20.3	16.5	12.1	7.2	5.3	100.0(1,278)	
학업 성적	상		7.2	14.4	20.0	22.6	16.2	10.2	9.3	100.0(3,025)	683.949***
	중		12.3	18.7	23.0	20.4	13.0	7.4	5.1	100.0(3,853)	
	하		28.8	20.5	18.4	14.4	9.7	4.6	3.6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11.3	17.8	20.8	20.6	14.2	8.1	7.1	100.0(4,896)	132.490***
	중		16.7	17.7	21.8	19.2	12.5	7.2	4.9	100.0(3,150)	
	하		23.3	17.2	19.0	17.0	11.3	7.1	5.1	100.0(943)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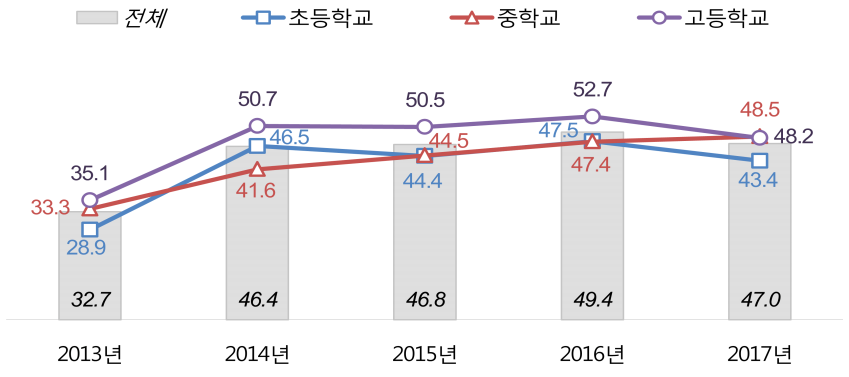

* 주: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7】 정규 수업시간 제외 공부시간(연도별 추이)

[그림 Ⅲ-6-17]은 학생들의 방과 후 3~4시간, 4~5시간, 5~6시간의 각 응답률을 합한 결과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추이로 비교해 놓은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방과 후 공부시간이 모든 학교급에서 2013년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다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3년 33.3%의 방과 후 공부시간을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48.5%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방과 후에 3~6시간 공부하는 중학생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부정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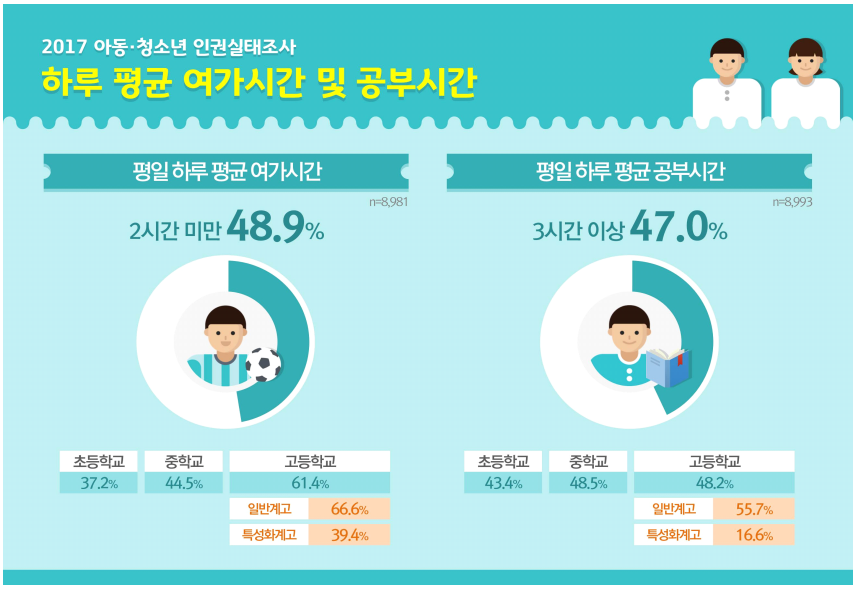

【그림 Ⅲ-6-18】 평일 여가 시간 및 공부 시간(연도별 추이)

(3)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① 여가시설 이용 만족도

<표 Ⅲ-6-35>는 전체 8,226명의 학생 중 청소년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미하는데, 응답 결과 '매우 만족한다' 25.9%와 '만족하는 편이다' 69.5%를 합하면 95.4%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 기준(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으로 성별로는 남학생이 95%, 여학생은 95.8%를 나타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96.4%, 중학생은 95.6%, 고등학생은 94.5%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지역규모나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모든 집단에서도 90%가 훨씬 넘게 나타나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35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3.21(0.53)	0.7	3.9	69.5	25.9	95.4	100.0(8,226)	–
성별	남자	3.22(0.56)	1.1	4.0	66.6	28.4	95	100.0(4,143)	44.397***
	여자	3.19(0.50)	0.3	3.8	72.4	23.5	95.9	100.0(4,083)	
학교급	초등학교	3.37(0.58)	0.8	2.9	54.5	41.9	96.4	100.0(2,464)	503.373***
	중학교	3.18(0.51)	0.7	3.7	72.9	22.7	95.6	100.0(2,621)	
	고등학교	3.10(0.47)	0.7	4.8	78.4	16.1	94.5	100.0(3,140)	
지역 규모	대도시	3.24(0.52)	0.5	3.1	68.4	28.1	96.5	100.0(3,432)	41.709***
	중소도시	3.20(0.54)	0.7	4.2	69.6	25.5	95.1	100.0(3,650)	
	읍면지역	3.13(0.55)	1.3	5.5	72.3	21.0	93.3	100.0(1,143)	
학업 성적	상	3.26(0.55)	0.6	3.5	64.8	31.1	95.9	100.0(2,853)	83.540***
	중	3.20(0.52)	0.5	3.7	70.8	25.0	95.8	100.0(3,524)	
	하	3.13(0.52)	1.1	4.8	74.2	19.9	94.1	100.0(1,846)	
경제적 수준	상	3.26(0.55)	0.7	3.2	65.4	30.7	96.1	100.0(4,544)	139.631***
	중	3.16(0.51)	0.6	4.4	73.8	21.2	95	100.0(2,837)	
	하	3.08(0.51)	1.2	5.7	76.9	16.2	93.1	100.0(841)	

***p<.001

* 주: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말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 칭하기고 함.

[그림 Ⅲ-6-19]에서는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5년 간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 정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에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상승한 교급은 고등학교로 2013년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가 82.5%였다가 2017년에는 94.5%로 1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시설이 최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과 시설이 조성되고,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청소년학을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하여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국가 청소년지도자격증을 취득한 양질의 지도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서비스가 과거보다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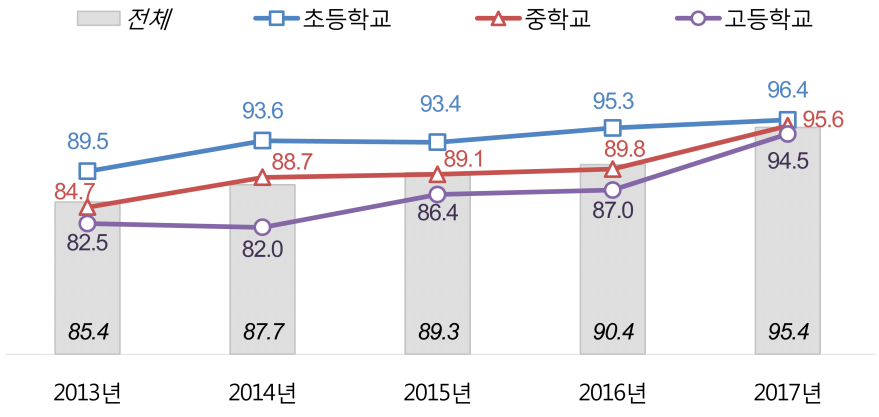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9】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②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정도

<표 Ⅲ-6-36>에는 청소년들이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에 대하여 가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장 받고 있는 가를 알아본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 받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물은 질문은 청소년이 얼마나 가정으로부터 청소년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지지받고 있는 가이다. 전체 9,001명의 청소년 중 29.3%는 대체로 그들의 부모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가정이 자신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하여 '전혀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1.7%였고,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로 응답한 청소년은 17.6%에 해당되었다. 가정으로부터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 남학생은 31.6%, 여학생은 26.8%로 조사되었다. 교급별로는 가정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25.5%, 중학생이 32.7%, 고등학생이 29.1%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성적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이 가정으로부터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23.4%인 반면, 중간 집단 학생은 29.6%, 낮은 집단 학생은 37.0%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생이 가정으로부터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지받는 경우가 25.9%이며, 중간 집단 31.9%, 낮은 집단 37.4%로 각각 나타났다.

표 Ⅲ-6-36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가정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χ^2
전체		2.79(0.89)	11.7	17.6	51.1	19.7	100.0(9,001)	–
성별	남자	2.74(0.94)	14.6	17.0	48.6	19.9	100.0(4,679)	82.489***
	여자	2.84(0.83)	8.6	18.2	53.8	19.4	100.0(4,321)	
학교급	초등학교	2.93(0.94)	11.0	14.5	45.0	29.5	100.0(2,599)	243.022***
	중학교	2.71(0.89)	12.6	20.1	50.9	16.3	100.0(2,906)	
	고등학교	2.75(0.85)	11.4	17.7	55.7	15.1	100.0(3,49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0(0.89)	11.3	17.3	51.3	20.1	100.0(8,142)	26.375**
	한부모가정	2.65(0.90)	14.9	19.6	51.2	14.3	100.0(655)	
	조손가정	2.70(0.94)	14.7	19.5	47.3	18.5	100.0(86)	
	기타	2.66(0.97)	14.9	24.1	40.6	20.4	100.0(110)	
학업 성적	상	2.94(0.88)	9.3	14.1	50.1	26.5	100.0(3,031)	219.564***
	중	2.77(0.86)	10.9	18.7	52.7	17.8	100.0(3,855)	
	하	2.60(0.91)	16.5	20.5	49.7	13.3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2.88(0.90)	10.6	15.3	49.9	24.2	100.0(4,902)	167.983***
	중	2.70(0.87)	12.7	19.2	53.4	14.7	100.0(3,151)	
	하	2.62(0.88)	13.7	23.7	49.8	12.8	100.0(944)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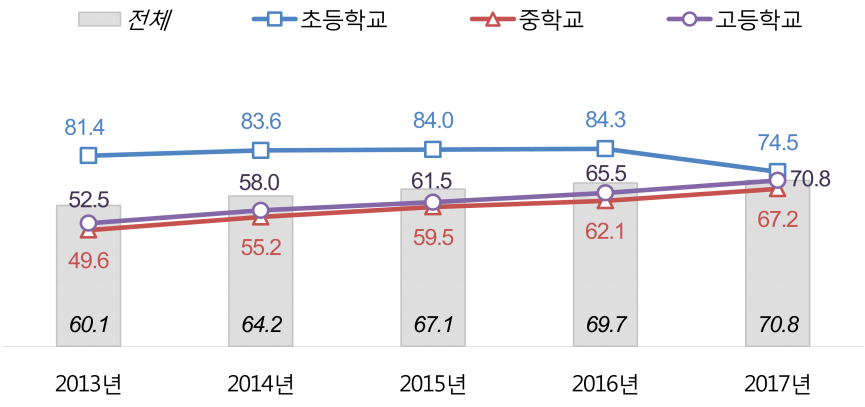

* 주: '지지하는 편이다'와 '매우 지지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20】 청소년단체 활동의 지지수준_가정(연도별 추이)

[그림 Ⅲ-6-20]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정에서 청소년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지수준을 보여주는 연도별 추이이다. 전체적으로 가정으로부터 청소년의 청소년단체 활동은 지속적으로 지지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부터 지속적인 지지도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 84.3%의 지지에서 2017년에만 74.5%로 가정으로부터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지지가 1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3년에 49.6%와 52.5%의 지지에서 2017년에는 각각 67.2%와 70.8%의 지지 상승을 보여 그 상승폭이 중학생에게서는 17.6%p, 고등학생에서는 18.3%p를 보여 매우 긍정적인 지지 상승이 가정으로부터 있음을 보였다.

표 Ⅲ-6-37 청소년단체 활동의 지지수준_학교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χ^2
전체			2.88(0.82)	8.7	14.3	57.7	19.3	100.0(8,994)	–
성별	남자		2.83(0.87)	11.0	14.5	54.4	20.1	100.0(4,675)	81.845***
	여자		2.92(0.75)	6.3	14.0	61.4	18.4	100.0(4,319)	
학교급	초등학교		3.05(0.83)	7.3	10.2	52.7	29.9	100.0(2,598)	288.303***
	중학교		2.81(0.82)	10.0	15.0	59.2	15.8	100.0(2,900)	
	고등학교	전체	2.80(0.79)	8.8	16.7	60.3	14.2	100.0(3,496)	
		일반계고	2.84(0.77)	7.6	16.0	61.2	15.1	100.0(2,825)	
		특성화계고	2.64(0.85)	13.7	19.4	56.3	10.5	100.0(671)	
지역 규모	대도시		2.94(0.81)	7.8	12.7	57.3	22.1	100.0(3,756)	49.897***
	중소도시		2.84(0.81)	8.9	15.6	58.4	17.1	100.0(3,960)	
	읍면지역		2.81(0.85)	10.8	14.7	56.9	17.5	100.0(1,278)	
학업 성적	상		3.03(0.79)	6.2	11.4	56.1	26.4	100.0(3,029)	246.968***
	중		2.86(0.79)	8.1	15.1	59.3	17.5	100.0(3,850)	
	하		2.69(0.85)	13.4	16.9	57.3	12.4	100.0(2,110)	
경제적 수준	상		2.95(0.82)	7.7	12.7	56.0	23.6	100.0(4,897)	145.779***
	중		2.79(0.81)	10.0	15.6	60.0	14.5	100.0(3,150)	
	하		2.75(0.79)	9.5	18.3	59.4	12.8	100.0(943)	

<표 Ⅲ-6-37>은 학교가 청소년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지수준을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이다. 전체 8,994명의 응답 청소년 중 77.0%는 자신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교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각은 여학생(79.8%)이 남학생(74.5%)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급을 보면 초등학생은 82.6%가, 중학생은 75.0%가, 고등학생은 74.5%가 각각 학교가 자신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유형에서는 일반계고 학생(76.3%)이 특성화고 학생(66.8%)보다 학교가 자신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가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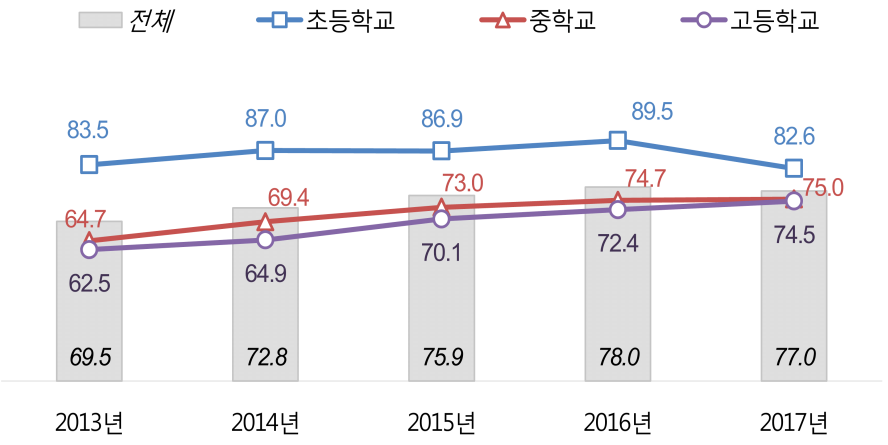

* 주: '지지하는 편이다'와 '매우 지지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21】 청소년단체 활동의 지지수준_학교(연도별 추이)

[그림 Ⅲ-6-21]은 학교가 청소년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얼마나 지지해주고 있는 가에 대한 2013년부터 5년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로부터의 지지는 가정으로부터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지지정도와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인 지지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지속적인 지지 상승의 추세가 2017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고무적인 현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교로부터 지지를 덜 받고 있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지 상승의 폭이 각각 10.3%와 12.0%로 나타나 비교적 큰 폭의 지지도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4) 소결

2017년 대분류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세 개의 중분류 지표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개의 중분류 지표들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제31조와 관련된 지표들이다. 아동권리협약 제28조를

적용하고 있는 중분류 지표 '교육에의 권리'는 다시 두 개의 소분류 지표 '교육기회 보장 정도'와 '학교 부적응률'로 구성되었다. 2016년까지 이 소분류 지표에 속했던 '대안교육 참여율'은 빠지게 되었다. 소분류 지표 '교육기회 보장 정도'에는 세부지표 '학생 취학률', '학생 진학률',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4개가 있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량적 평정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제29조의 취지를 담고 있는 중분류 지표 '교육의 목표'는 2개의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과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에는 같은 내용의 지표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다른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는 세부지표로 '대안교육 참여 기회'와 '직업교육 참여 기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세부지표 '대안교육 참여 기회'는 2016년 중분류 지표 '교육에의 권리'에 속해있던 소분류 지표 '대안교육 참여율'이 이름을 달리해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의 세부지표로 이동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지표체계 구성에서 중요한 세부지표들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에서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과정까지의 진학률은 지난 3년 간 100% 지속되었고, 고등학교로의 진학도 6년 동안 동일하게 99.7%로 보이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교육 과정은 많이 따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중등교육 과정도 현재 OECD 평균 수준의 86%에 이르고 있으나,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점차 줄어들어 OECD 평균 수준의 반 정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는 교육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발전적 수치를 보이고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25.2명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가 현재 22.3명으로 감소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수업환경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교육상황이라 할 수 있는 학업중단율에 있어서는 2011년 74,365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2017년에는 47,663명으로 약 36%가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학생의 자연 감소 경향을 감안하면 여전히 심각한 학업중단율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학업중단 학생 수는 30만 명이 넘고 있는 수치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학생들의 자퇴 충동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2%에 이르고 있다. 이는 청소년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결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의

자퇴 충동은 44.6%에 달해 2명 중 1명에 가깝게 나타난 반면,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의 자퇴 충동은 19.8%로 5명 중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가 27.1%로 가장 높았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2.8%,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2.2%로 이를 모두 더하면 52.1%로 2명 중 1명은 공부 스트레스로 자퇴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가에 대한 응답에서 거의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4.0%가 즐겁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나마 긍정적인 응답의 추이가 지난 4년 간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조사 결과이다.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대안적 교육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는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공성을 가지고 마련한 공립과 사립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수는 50개 정도이다. 대안교육에서 대안학교들이 실질적인 대안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진로 대안은 직업교육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확대이다. 2017년 현재 직업교육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수는 총 466개교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거나 신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학생들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이후 원래 독일의 전통적인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교육 체제(Dual System)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특성화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도 2016년 7월말까지 7,686개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79.9%가 1년 동안 거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비율은 초등학생이 81.0%, 중학생이 87.9%, 고등학생이 90.2%로 조사되었다. 반면 체육시설은 응답 청소년의 32.5%가, 문화 예술 공간은 16.0%가 1년 동안에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문화·예술 활동의 어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복수 응답형태로 질문했을 때 평일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은 1위가 취미, 오락 활동, 다음으로는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휴일에는 휴식활동 다음으로 취미, 오락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학생은 15.7%이나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9.3%에 불과하였다. 한편, 청소년 중 77.6%는 동아리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이 80.3%로 중학생 76.2%나 고등학생 76.8%보다 동아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하루에 1시간도 안되는 여가 시간을 가진다는 학생은 19.7%였고, 5시간 이상 여가 시간을 가진다는 학생도 11.1%나 되었다. 반대로 방과 후 6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은 6.2% 정도였다. 방과 후 공부시간에 있어서 편차가 가장 심한 집단은

고등학생으로, 일반계고 학생이 1시간미만으로 공부하는 비율이 11.7%로 응답된 반면, 특성화고 학생은 45.1%로 나타나 33.4%p의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가정이 자신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하여 '전혀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1.7%였고,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로 응답한 청소년은 17.6%에 해당되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5.5%, 중학생이 32.7%, 고등학생이 29.1%가 가정으로부터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특별보호조치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① 아동 · 청소년 난민 비율

<표 Ⅲ-7-1>에서와 같이 법무부의 최근 자료(2017)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의 난민신청자 누적 총수는 22,792명이며, 심사 종료된 13,393명 중 인정은 67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1,156명, 불인정은 11,565명, 철회는 2,538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2016년 말에는 인정 98명, 인도적 체류허가 246명, 불인정 5,050명에 대한 심사결정이 내려졌으며, 철회자는 73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까지 전체 난민보호율은 13.6%, 2016년 난민보호율은 6.4%로 보고되고 있다(법무부, 2017). 연도별 난민현황을 살펴보면, 난민신청자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신청자는 2013년에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32.1% 증가하였다(법무부, 2017. 6: 90-91).

법무부(2017. 6)의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까지의 전체 난민신청자 22,792명을 대상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 의견이 5,523명(24.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종교 5,265명(23.1%),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신분 2,515명(11.0%), 인종 1,399명(6.1%)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2016년 신청자 7,542명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종교가 1,856(24.4%), 정치적 의견이 1,360명(18.0%),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신분 1,224명(16.2%) 등의 순이었다(법무부, 2017. 6: 94).

난민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김영지 외, 2015: 419-420).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난민현황은 연령별 난민신청자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16년까지의 현황을 요약하면 <표 Ⅲ-7-1>과 같다. 2016년 12월 말까지의 전체 난민신청자 22,792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1,015명(4.5%)이며, 2016년의 신청자 7,542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342명(4.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난민신청자 인원수는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 7. 1.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처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수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69명, 2014년 129명, 2015년 315명, 2016년에 34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난민인정자의 숫자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Ⅲ-7-1>에서처럼 난민인정자의 수는 2012년 이후부터 90명 이상의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며, 2016년에는 98명이 난민으로 인증받았다. 이 중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전체 인정자 98명 중 18세 미만은 47명으로 48.0%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다. 이 비율은 2016년까지의 전체 난민인정자(674명)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171명)이 차지하는 비중인 25.4%과 비교할 때 22.6%p 높은 수치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말 기준으로 총 1,156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2016년 한해 동안 246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법무부, 2017. 6: 99).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말 기준 총 1,156명의 인도적 체류허가자 중 18세 미만은 23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비중은 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의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46명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는 114명(46.3%)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20.4%보다 2016년의 인도적 체류허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이후부터는 18세 미만 난민신청자에 대한 불인정 숫자와 비율 그리고 철회 숫자와 비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 중 불인정과 철회를 받은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2013년의 경우 불인정과 철회를 받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2.6%인 점을 고려할 때 이와 비슷한 비율의 경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불인정과 철회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2013년의 경우 854명으로 전체 난민신청자의 54.3%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총 2,896명 중 2,108명(72.8%)이 불인정과 철회 결정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총 5,711명의 난민신청자 중에서 4,256명(74.5%)이 불인정과 철회결정을 받았다. 2016년에는 총 7,542명의 난민신청자 중에서 5,781명(76.7%)이 불인정과 철회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난민신청자에 대한 불인정과 철회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전체 18세 미만 신청자 대비 인정을 받은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10.1%, 2015년 12.7%, 2016년 1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도적 체류의 경우에도 2014년 34.1%, 2015년 16.5%, 2016년 33.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체적인 수치에 비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해서는 전반적

으로 비호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7-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구분 / 연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연 령 (세)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4	0	0.0	148	2	11.1	18	0	0.0	1	0	0.0	12	0	0.0	10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06	7	2.5	278	0	0.0	11	0	0.0	13	2	1.9	108	0	0.0	46
2007	11	1.5	717	5	38.5	13	2	22.2	9	2	2.4	84	1	1.5	67
2008	20	5.5	364	8	22.2	36	0	0.0	14	1	1.3	75	0	0.0	117
2009	20	6.2	324	6	8.6	70	4	18.2	22	15	1.9	804	3	1.5	206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1	29	2.9	1,011	7	16.7	42	4	20.0	20	8	4.0	202	3	3.2	95
2012	38	3.3	1,143	14	23.3	60	7	22.6	31	9	2.0	454	3	1.4	211
2013	69	4.4	1,574	23	40.4	57	2	33.3	6	12	2.3	523	1	0.3	331
2014	129	4.5	2,896	13	13.8	94	44	8.2	539	–	–	1,745	–	–	363
2015	315	5.5	5,711	40	38.1	105	52	26.8	194	–	–	3,976	–	–	280
2016	342	4.5	7,542	47	48	98	114	46.3	246	–	–	5,050	–	–	731

* 출처: 김경준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529.
법무부(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33.
법무부(2016.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88–99.
법무부(2017.6).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90–101.

② 탈북 난민 아동 수

통일부(2016)의 북한이탈주민통계에 기초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은 2011년 이후 다소 주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청소년의 규모도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체제 단속의 결과로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남한 입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 탈북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c: 327).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0세~19세 사이의 탈북 아동·청소년은 총 4,700명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2,180명(46.4%)이고, 여자청소년은 2,520명(53.6%)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부, 2016c: 327). 하지만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은 통일부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학령기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탈북청소년의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여성가족부, 2016c: 327).

표 Ⅲ-7-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22	1,558	2,378	2,017	1,269	476	323	8,643
여	619	1,901	5,972	6,585	3,701	1,127	916	20,821
합계	1,241	3,459	8,350	8,602	4,970	1,603	1,239	29,464

* 출처: 통일부(2016).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표 Ⅲ-7-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

연도 / 대상	~'98	~'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월)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213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823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036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1%	73%	76%	78%	80%	80%

* 출처: 통일부(2016).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③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는 <표 Ⅲ-7-4>와 같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은 9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는 응답은 성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경험에 관한 정보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따라서 3년마다 조사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2015년에 실시되었고, 3년마다 조사되기 때문에 2017년 현재의 실태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15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경험 정도를 유추해볼 수는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친구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로 나타났으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심한 차별이 7.5%, 교사로부터의 심한 차별이 4.4%, 이웃으로부터의 심한 차별이 3.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Ⅲ-7-5>). 이상의 조사결과에 기초할 때, 일반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경험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친구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차별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Ⅲ-7-4 차별받은 경험: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8.8	0.7	0.3	0.1	0.1	100.0(8,999)	-
성별	남자	98.2	0.8	0.6	0.1	0.2	100.0(4,679)	-
	여자	99.4	0.5	0.0	0.0	0.0	100.0(4,320)	
학교급	초등학교	99.5	0.5	0.0	0.0	0.0	100.0(2,600)	-
	중학교	98.7	0.6	0.6	0.0	0.1	100.0(2,904)	
	고등학교	98.3	0.9	0.3	0.2	0.2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98.7	0.8	0.2	0.2	0.1	100.0(3,758)	-
	중소도시	99.0	0.5	0.4	0.0	0.1	100.0(3,964)	
	읍면지역	98.3	0.9	0.4	0.0	0.4	100.0(1,2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9	0.6	0.3	0.1	0.1	100.0(8,142)	-
	한부모가정	97.9	1.8	0.3	0.0	0.0	100.0(655)	
	조손가정	95.9	1.7	2.4	0.0	0.0	100.0(85)	
	기타	95.2	1.3	2.3	0.0	1.2	100.0(110)	
학업 성적	상	99.0	0.6	0.2	0.0	0.1	100.0(3,031)	-
	중	98.9	0.7	0.3	0.1	0.1	100.0(3,855)	
	하	98.3	0.8	0.5	0.2	0.2	100.0(2,109)	
경제적 수준	상	99.1	0.6	0.2	0.0	0.1	100.0(4,903)	-
	중	98.6	0.6	0.5	0.1	0.1	100.0(3,148)	
	하	97.6	1.3	0.4	0.4	0.3	100.0(943)	

표 Ⅲ-7-5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단위 : %(명))

구분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차별받지 않았다	약간 차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친구	11.1(631)	10.9(619)	68.2(3,856)	9.7(551)	100.0(5,657)
교사(교수)	57.6(3,104)	26.3(1,419)	11.6(625)	4.4(239)	100.0(5,387)
친척	71.3(3,740)	19.9(1,044)	8.0(421)	0.8(43)	100.0(5,248)
이웃	54.6(3,087)	22.6(1,277)	19.7(1,115)	3.1(177)	100.0(5,657)
모르는 사람	51.7(2,922)	16.0(905)	24.8(1,405)	7.5(426)	100.0(5,657)

*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464-469에서 수정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①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교육부(2017.1.13)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99,186명이며, 이중 초등학생이 74,024명(7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15,105명(15.2%), 고등학생이 10,057명(10.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7-6>에서 보듯이 학생수가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은 국내출생(79,134명)이었으며, 외국인 자녀는 12,634명, 중도입국은 7,418명의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문화학생수는 2014년에는 67,806명, 2015년에는 82,536명, 2016년에는 99,18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현재 1.68%이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0.70%, 2013년에는 0.86%, 2014년에는 1.07%, 2015년에는 1.35%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6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 출생	41,575	10,325	5,598	57,498	50,279	11,075	6,745	68,099	59,988	11,489	7,657	79,134
중도 입국	3,268	1,389	945	5,602	3,988	1,393	880	6,261	4,583	1,627	1,208	7,418
외국인 자녀	3,454	811	441	4,706	6,016	1,397	763	8,176	9,453	1,989	1,192	12,634
계	48,297	12,525	6,984	67,806	60,283	13,865	8,388	82,536	74,024	15,105	10,057	99,186
비율	71.2%	18.5%	10.3%	100%	73.0%	16.8%	10.2%	100%	74.6%	15.2%	10.1%	100%

* 출처: 교육부(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p.6.

표 Ⅲ-7-7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6년) (단위 : 명)

연도 / 인원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다문화 학생 수(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전체 학생 수(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6,097,297	5,890,949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7%	1.35%	1.68%

* 출처: 교육부(2016.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6.
교육부(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p.6.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상태는 매년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6: 458). <표 Ⅲ-7-8>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5년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61,828명(75.0%)이며,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녀는 7,892명(9.5%)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자녀는 12,756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다수(84.5%)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15.5%로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향후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8 2015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대학교, 대학원 재학	학교를 다니지 않음 (중퇴, 미취학, 졸업 등)	합계
성별	여성	31.9	12.9	14.0	100.0
	남성	32.7	9.7	16.9	100.0
연령	9~10세	46.8	0.0	0.4	100.0
	12~14세	33.3	0.0	0.5	100.0
	15~17세	24.8	0.0	3.9	100.0
	18세 이상	7.3	68.4	51.0	100.0
전 체		75.0(61,828)	9.5(7,892)	15.5(12,756)	100.0(82,476)

*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420-421에서 수정.

2016년 4월 기준, 탈북학생의 학교 유형별 재학현황을 살펴보면(<표 Ⅲ-7-4>), 총 2,688명 중 2,517명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전일제 대안교육 시설에는 171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1,143명이며, 중학교에는 773명이, 고등학교에는 601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9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16.4)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학생수	599	544	376	397	273	328	171	2,688
	1,143		773		601			
	2,517							

* 출처: 교육부(2017. 3. 24). 2017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p.9.

그리고 연도별로 탈북학생의 재학현황을 살펴보면(<표 Ⅲ-7-4>), 전체 수는 2010년 1,143명, 2011년 1,417명, 2012년 1,681명, 2013년 1,992명, 2014년 2,022명, 2015년 2,475명, 2016년 2,51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탈북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학교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 Ⅲ-7-10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16.4) (단위 : 명(%))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	중	고	
2010.4	562(49.2)	305(26.7)	276(24.1)	1,143
2011.4	773(54.5)	297(21.0)	347(24.5)	1,417
2012.4	1,020(60.7)	288(17.1)	373(22.2)	1,681
2013.4	1,204(60.4)	351(17.6)	437(21.9)	1,992
2014.4	1,159(57.3)	478(23.6)	385(19.0)	2,022
2015.4	1,224(49.5)	824(33.3)	427(17.3)	2,475
2016.4	1,143(45.4)	773(30.7)	601(23.9)	2,517

* 출처: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329.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2015년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0.8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대비 0.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11>). 하지만 학업중단자수가 2012년에는 461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572명, 2014년에는 688명, 2015년에는 7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1.4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1.15%, 초등학교 0.70%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Ⅲ-7-11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초	중	고	계
2012.3.~ 2013.2.	재학생 수	33,792	9,647	3,515	46,954
	학업중단자 수	278	110	73	461
	학업중단율(%)	0.8	1.1	2.1	1.0
2013.3.~ 2014.2.	재학생 수	39,430	11,294	5,056	55,780
	학업중단자 수	328	140	104	572
	학업중단율(%)	0.9	1.2	2.1	1.0

연도	구분	초	중	고	계
2014.3.~ 2015.2.	재학생 수	48,297	12,525	6,984	67,806
	학업중단자 수	435	146	107	688
	학업중단율(%)	0.9	1.2	1.5	1.0
2015.3.~ 2016.2.	재학생 수	60,283	13,865	8,388	82,536
	학업중단자 수	423	159	118	700
	학업중단율(%)	0.70	1.15	1.41	0.85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65에서 재구성
여성가족부(2015c).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5
여성가족부(2016d). 2016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6
교육부(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p.6.
* 주: 1) 재학생수는 4월 1일 기준, 학업중단자수는 해당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2) 학업중단자 비율=학업중단 자녀/(현재 재학자녀+현재 학업중단 자녀)×100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7-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6년 현재 탈북 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은 2.1%로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도탈락률보다 높은 수치이다. 탈북 청소년 중도탈락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 10.8%에서 2016년에 2.1%로 8.7% 감소하였으며,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급별로 중도탈락률을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0.6%, 중학교 2.3%, 고등학교 6.1%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중도탈락률은 6.1%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의 감소 방안에 대한 관심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표 Ⅲ-7-4>중인 탈북청소년에 대해서 중도탈락률 감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Ⅲ-7-12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08년도	'07. 4. 재학생 수(명)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명)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11년도	'10. 4. 재학생 수(명)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명)	19	13	35	6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12년도	'11. 4. 재학생 수(명)	1,021	286	374	1,681
	중도탈락생 수(명)	27	11	18	56
	중도탈락률(%)	2.6	3.8	4.7	3.3

구 분		초	중	고	계
'13년도	'12. 4. 재학생 수(명)	1,204	351	437	1,992
	중도탈락생 수(명)	37	26	7	70
	중도탈락률(%)	3.1	7.4	1.6	3.5
'14년도	'13. 4. 재학생 수(명)	1,159	478	385	2,022
	중도탈락생 수(명)	7	15	29	51
	중도탈락률(%)	0.6	3.1	7.5	2.5
'15년도	'14. 4. 재학생 수(명)	1,128	684	371	2,183
	중도탈락생 수(명)	2	20	27	49
	중도탈락률(%)	0.2	2.9	7.3	2.2
'16년도	'15. 4. 재학생 수(명)	1,224	824	427	2,475
	중도탈락생 수(명)	7	19	26	52
	중도탈락률(%)	0.6	2.3	6.1	2.1

* 출처: 교육부(2017.3.24). 2017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p.11.
* 주: 중도탈락률 = (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 /연도별 재학생 총수)×100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①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예비학교를 들 수 있다. 교육부의 2017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과 2016년까지의 다문화예비학교 운영결과 자료에 의하면 한국어 집중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및 외국인 학생 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문화 예비학교는 2012년에 26개, 2013년에 50개, 2014년에 80개, 2015년에는 100개가 운영되었으며, 2016년에는 총 124개교가 운영되었다(교육부, 2016. 3). 그리고 2017년에는 총 160개의 학급으로 예비학교를 확대하고,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별학급을 다수 운영하는 예비학교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7. 1. 13: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 정도는 무지개청소년센터(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레인보우스쿨은 한국어지도, 정체성 및 교우관계, 편·입학지도, 진로지도, 심리안정 등으로 구성되며, 2010년에 2개 지역에서의 시범실시과정을 거친 후 2016년 현재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c: 149). 무지개청소년센터의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전일제와 여름·겨울학교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레인보우스쿨의 참가인원수는 2016년 현재 1,538명에 이른다.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일제가 92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여름학교가 406명, 겨울학교

20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표 Ⅲ-7-13>),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839명과 837명이 참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913명, 2015년에는 1,178명, 2016년에는 1,538명이 참가하여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면서 레인보우스쿨에 참가하는 인원수도 동시에 증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Ⅲ-7-13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단위 : 명)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전일제	521	512	600	721	924
주말 · 야간학교	18	65	50	65	
방과후학교	14	–	–	–	–
여름학교	286	190	246	278	406
겨울학교	–	70	17	114	208
계	839	837	913	1,178	1,538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pp.86–88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16–24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16–38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24–47에서 재구성

②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는 2016년에 7,410건으로 2015년 대비 1,948건이 증가하였다(<표 Ⅲ-7-14>).

표 Ⅲ-7-14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단위 : 건수)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온라인상담	2,195	2,311	1,930	2,696	3,408
내방상담	340	500	1,473	1,665	2,044
찾아가는 상담	97	218	340	578	1,258
집단상담	–	248	37(심리검사 포함)	523(심리검사 포함)	700(심리검사 포함)
계	2,632	3,277	3,780	5,462	7,410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p.99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44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55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73

그리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2012년 시범실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표 Ⅲ-7-14>), 이러한 심리정서 상담건수 증가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 실시된 심리정서 상담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상담이 3,408건(46.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내방상담 2,044건(27.6%), 찾아가는 상담 1,258건(17.0%), 집단상담/심리검사 700건(9.4%)의 순이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지원을 위한 '대학생 지식멘토링 사업'을 토대로 작성하였다(김영지 외, 2016: 465). '대학생 지식 멘토링'이란, 학업능력과 인성을 갖춘 대학생들이 방학 중 또는 학기 중에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학습 동기부여, 진로상담, 돌봄 등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학생 재능봉사캠프사업,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한국장학재단, 2017).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탈북학생 가정 학생과의 멘토링 결연을 맺은 대학생들의 숫자는 5,000명이며, 이중 다문화가정 학생들과의 멘토링에는 4,805명이 참여하고 있고, 탈북학생과의 멘토링에는 195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2014년(7,122명)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학생과 탈북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감소추세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7-15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단위 : 명)

배움지기(멘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다문화가정 학생	4,626	4,561	6,652	4,851	4,805
탈북 학생	107	223	470	264	195
합계	4,733	4,784	7,122	5,115	5,000

* 출처: 한국장학재단 내부자료(2017.9.19)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①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여성가족부, 2016c: 411).

표 Ⅲ-7-16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단위: 명(%))

기간 / 연도	7호(의료)	8호(1개월)	9호(단기)	10호(장기)	계	평균수용기간(개월)
2008(08.6.22~)	66(2.6)	895(35.6)	783(30.9)	782(30.9)	2,526(100)	6.9
2009	52(2.0)	1,218(45.6)	684(25.6)	718(26.8)	2,672(100)	4.93
2010	56(2.0)	1,339(48.6)	771(28.0)	589(21.4)	2,755(100)	5.1
2011	69(2.7)	1,329(51.9)	644(25.2)	517(20.2)	2,559(100)	5.1
2012	103(3.2)	1,660(51.7)	792(24.7)	656(20.4)	3,211(100)	4.6
2013	105(3.7)	1,317(45.9)	938(32.7)	507(17.7)	2,867(100)	5.17
2014	93(3.7)	930(36.7)	842(33.2)	666(26.3)	2,531(100)	7.30
2015	106(5.3)	846(42.3)	612(30.6)	437(21.8)	2,001(100)	–

* 출처: 여성가족부(2015b). 2015 청소년백서. p.429.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412.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 주: 1) 2008.6.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 과정을 10호 처분으로 통합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 처분(1개월 미만) 인원 증가에 따라 평균 수용기간 단축됨.

현행 소년법에서의 소년원 처우과정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자익과정(10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7호 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6c: 411). 8호 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 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6c: 411). <표 Ⅲ-7-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총 2,001명이며, 이중 1개월 이하 8호 처분에 수용된 소년은 846명(42.3%), 9호 처분(단기 소년원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은 612명(30.6%), 2년 이하 10호 처분(장기소년원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은 437명(21.8%)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표 Ⅲ-7-16>), 8호 처분의 경우에는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9호 처분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장기에 해당하는 10처분의 경우에는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②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은 2015년 기준 130명이며, 2014년 대비 1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17>).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9년 196명에서 2015년 130명으로 전반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소년범죄자 중 가장 많은 원인은 기타 원인을 제외하고, 강간 등(20.8%)와 절도(20.0%)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범죄유형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년교도소 수용자의 범죄유형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17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69(100)	146(100)	114(100)	170(100)	152(100)	114(100)	130(100)
절도	62(36.7)	45(30.8)	26(22.8)	42(24.7)	43(28.3)	32(28.1)	26(20.0)
사기·횡령	3(1.8)	3(2.1)	0(0.0)	2(1.2)	1(0.7)	1(0.9)	10(7.7)
폭력·상해	8(4.7)	1(0.7)	5(4.4)	17(10.0)	17(11.2)	10(8.8)	10(7.7)
강간 등	44(26.0)	32(21.9)	33(28.9)	54(31.7)	46(30.2)	29(25.4)	27(20.8)
강도 등	32(18.9)	33(22.6)	18(15.8)	24(14.1)	16(10.5)	11(9.6)	14(10.8)
살인	6(3.6)	11(7.5)	10(8.8)	11(6.5)	7(4.6)	5(4.4)	5(3.8)
과실범	2(1.2)	3(2.1)	1(0.9)	2(1.2)	–	2(1.8)	2(1.5)
기타	12(7.1)	18(12.3)	21(18.4)	18(10.6)	22(14.5)	24(21.0)	36(27.7)

* 출처: 여성가족부(2015b). 2015 청소년백서. p.435.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417.
* 원자료: 법무부(2015). 교정본부 통계자료.

(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①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법률조력인 제도는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에 관한 규정과 2013년 4월 5일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변호사 제도 및 그 권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도입된 국선변호사제도를 말한다(법무연수원, 2016: 219).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학대피해 아동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형사절차상 독자적인 권리실현이 불가능한 아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법률적 부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6: 219).

<표Ⅲ-7-18>에 제시된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총 16,138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에서 국선보호사가 지정된 건수는 16,106건으로 지정률은 9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국선변호사 접수 건수와 지정 건수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선변호사 지정률도 2013년에는 9.17%, 2014년에는 93.4%, 2015년에는 99.8%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선변호사의 지정률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관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경찰신청이 8,80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원스톱센터신청(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이 6,487건, 검사지정 786건, 상담소 신청 6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별 접수건수를 2014년도와 비교해보면, 경찰신청과 검사지정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원스톱센터 신청과 상담소 신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할 때 국선변호사 신청 및 지정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지원대상이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로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인권의식 증대 등으로 피해자 국선번호사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법무연수원, 2016: 220).

표 Ⅲ-7-18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경찰신청			원스톱센터신청 (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			상담소신청			검사지정		누적 합계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접수	지정
2012	2,556	2,401	155	–	–	–	238	233	5	280	274	3,074	2,908
2013	3,455	3,127	328	4,813	4,418	395	91	91	–	453	448	8,812	8,084
2014	6,334	5,959	375	7,149	6,578	571	223	222	1	604	604	14,310	13,363
2015	8,807	8,778	29	6,487	6,479	2	64	63	1	786	786	16,138	16,106

* 출처: 법무연수원(2016). 2016 범죄백서. p.220.
* 주 : 1) 법무부 인권국 아동여성인권과 자료
2) 2012년 원스톱센터 신청 관련 건수는 경찰신청 건수에 포함됨
3) '12.3.1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입
4) '13.6.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5) '14.9.2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 학대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②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제

소년원은 사법적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비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년들의 보호자가 되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특성화교육, 교과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처우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왜곡된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서의 인격도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교도소와는 법적·이념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6: 633).

소년원의 교육체계는 총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체계와 내용은 전년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그림 Ⅲ-7-1]). 즉, 1단계는 신입자교육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10일 이내에 생활안내와 처우심사(교육기간 및 학교지정 등)가 이루어진다. 제2단계는 기본교육(1~23개월)의 단계로서 비행소년 각자의 처분기간 내에서 이루어진다. 2단계에서는 교과교육(일반 중고교, 검정고시), 의료·재활교육(의학적 치료, 심리치료, 특수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 제빵, 사진영상, 한식조리, 매직엔터테인먼트, 자동차정비, 용접,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 긴축환경설비,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자동차 외장관리, 공간디자인, 예술분장, 피부미용, 서비스 마케팅, 가발전문, 스포츠마사지, 골프매니지먼트 등), 인성교육(집단지도, 집단상담, 사회봉사활동, 체험활동), 특별활동(자치활동, 행사활동, 계발활동, 적응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제3단계는 마지막 단계로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10일 이내로 이루어지며, 진로지도, 사회적응지도, 취업알선 등의 행태로 진행된다(법무연수원, 2016).



* 출처: 법무연수원(2016). 2016 범죄백서. p.634.

【그림 Ⅲ-7-1】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③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소년교도소 수용 청소년이 처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용 청소년은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그리고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불복제도를 두고 있다(법무연수원, 2016: 402).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은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로 구분되는데, 2015년의 경우 청원이 9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소·고발이 733건, 행정심판이 552건, 행정소송이 7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Ⅲ-7-19>).

표 Ⅲ-7-19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단위 : 건)

내용 / 연도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2008년	2,330	309	110	1,205
2009년	2,205	360	91	1,185
2010년	1,573	245	75	801
2011년	1,313	235	75	646
2012년	1,094	253	49	681
2013년	1,071	458	74	647
2014년	903	458	79	614
2015년	957	552	74	733

* 출처: 법무연수원(2015). 2015 범죄백서. p.398.
법무연수원(2016). 2016 범죄백서. p.402.
* 원자료: 법무부(2015). 교정본부 통계자료.

(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 비율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 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소년법의 개정으로 보호관찰 부과연령이 10세로 하향되었으며,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다(여성가족부, 2016c: 420-421).

표 Ⅲ-7-20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전체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비율
2008	95,137	36,099	37.9
2009	115,191	46,686	40.5
2010	86,435	45,990	53.2
2011	121,188	46,336	38.2
2012	108,495	47,621	43.9
2013	105,495	45,040	42.6
2014	121,517	34,362	28.3
2015	129,681	31,432	24.2

* 출처: 여성가족부(2015b). 2015 청소년백서. p.439.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421.
* 원자료: 법무부(2015).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표 Ⅲ-7-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인원은 129,681명이며, 이 중 소년보호관찰인원은 31,432명으로 24.2%를 차지하고 있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c: 423). 청소년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집행은 주로 처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해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c: 423). 2015년의 경우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7,222명이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553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5,659명이었다(<표 Ⅲ-7-21>.

표 Ⅲ-7-21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08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65
2009	8,178	1,443	6,735	7	6,429	184	48	67
2010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19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67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74
2013	8,857	1,941	6,916	1	6,293	220	314	88
2014	7,742	1,816	5,926	2	5,291	152	386	95
2015	7,222	1,553	5,659	3	5,208	133	301	24

* 출처: 여성가족부(2015b). 2015 청소년백서. p.442.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423.
* 원자료: 법무부(2015).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c: 423). 특히 대상자의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 등 대상자에게 적합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c: 423).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강명령 부과 연령도 12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6c: 423). <표 Ⅲ-7-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수강명령을 집행 받은 청소년은 총 4,410명으로 2014년 대비 1,116명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2015년의 경우 4,375명이었으며, 협력기관(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 집행한 인원은 35명이었다.

표 Ⅲ-7-22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08	5,847	5,620	227	–	40	77	–	14	96
2009	10,397	9,954	443	3	–	2	–	46	382
2010	9,779	9,212	567	–	–	78	2	43	444
2011	10,135	9,518	617	–	11	277	–	74	255
2012	10,612	10,026	586	4	8	152	–	63	359
2013	7,864	7,374	490	2	9	240	–	48	191
2014	5,526	5,340	186	–	2	103	2	23	56
2015	4,410	4,375	35	–	2	26	1	4	2

* 출처: 여성가족부(2015b). 2015 청소년백서. p.442.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424.
* 원자료: 법무부(2015).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16c: 393). 본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에게 청소년을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따라, 1978년에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여성가족부, 2016c: 393). <표 Ⅲ-7-23>에 따르면, 2015년에는 1,395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소년범죄 71,035명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소년범죄 전체 인원수 대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4%에서 2015년 2.0%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7-2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소년범죄(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인원(명)	비율(%)
2008	134,992	5,886	4.4
2009	113,022	7,104	6.3
2010	89,776	2,967	3.3
2011	89,068	1,363	1.5
2012	107,490	5,812	5.4
2013	91,633	4,548	5.0
2014	77,594	3,473	4.5
2015	71,035	1,395	2.0

* 출처: 대검찰청(2015a). 검찰연감. p.686.
대검찰청(2015b). 2015 범죄분석. p.664.
대검찰청(2016a). 2016 범죄분석. p.678.

③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직접 선도업무를 관장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16c: 39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은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는 그 대상을 소년범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여성가족부, 2016c: 396).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의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도 있고, 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학비보조, 취학·취업 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여성가족부, 2016c: 395). <표 Ⅲ-7-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의 경우 전체 기소유예자는 354,370명이었으며, 이 중 5,184명(1.5%)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가 선도위탁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표 Ⅲ-7-24>), 기소유예자 전체 인원은 2009년 467,132명에서 2014년 324,748명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5년 354,37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선도대상자는 2013년을 제외하고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Ⅲ-7-2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07	262,823	5,258(2.0)	12,134	4,218	66
2008	361,907	3,421(0.9)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0.8)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1.2)	3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1.4)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1.4)	7,423	2,912	408
2013	330,407	4,495(1.4)	7,900	2,439	269
2014	324,748	5,112(1.6)	4,360	2,638	255
2015	354,370	5,184(1.5)	4,052	3,098	353

* 출처: 여성가족부(2015b). 2015 청소년백서. p.413.
여성가족부(2014b). 2014 청소년백서. p.383.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396.
* 원자료: 대검찰청(2008–2016). 검찰연감

3) 경제적 착취

(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①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2015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25>). 2015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2.2일이었으며, 2014년 대비 1.8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6.7시간이었으며, 2014년 대비 8.2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4세 청소년의 근로시간이 19세 이하의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모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25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도	연령별	남 자		여 자		전 체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2008	전 체	21.9	191.6	21.8	182.6	21.8	188.7
	19세 이하	21.0	176.8	22.2	192.0	21.7	185.6
	20-24세	22.3	204.6	21.7	181.3	21.9	188.9
2009	전 체	22.7	197.2	22.8	189.6	22.8	194.8
	19세 이하	21.2	186.9	21.2	179.9	21.2	182.1
	20-24세	22.7	205.9	22.6	188.5	22.6	193.9
2010	전 체	22.5	195.7	22.5	186.9	22.5	192.8
	19세 이하	19.7	165.4	19.9	162.2	19.8	163.5
	20-24세	22.6	200.3	22.4	184.9	22.5	189.9
2011	전 체	22.2	192.7	22.2	182.4	22.2	189.3
	19세 이하	20.3	172.6	20.9	172.6	20.7	172.6
	20-24세	22.4	200.0	22.0	181.5	22.1	187.9
2012	전 체	21.4	185.8	21.3	175.7	21.4	182.3
	19세 이하	19.7	166.9	20.4	172.7	20.1	170.5
	20-24세	21.7	194.3	21.1	174.9	21.3	181.6
2013	전 체	20.9	186.2	20.5	169.2	20.7	175.3
	19세 이하	19.9	174.4	19.6	159.5	19.7	165.6
	20-24세	21.0	187.6	20.6	170.1	20.8	176.3
2014	전 체	20.5	173.8	20.7	182.8	20.4	168.5
	19세 이하	19.1	161.5	19.5	168.9	18.9	155.0
	20-24세	20.7	175.1	20.9	184.7	20.5	169.7
2015	전 체	22.4	184.2	22.5	188.5	22.2	176.7
	19세 이하	20.2	158.8	20.8	164.9	19.6	151.9
	20-24세	22.0	180.3	22.2	187.3	21.9	176.3

* 출처: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334.
여성가족부(2014b). 2014 청소년백서. p.342.
여성가족부(2015b). 2015 청소년백서. p.370.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350.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②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

[그림 Ⅲ-7-2]에서 보듯이,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5년의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는 월평균 1,435,000원, 20~24세 청소년은 월평균 1,885,000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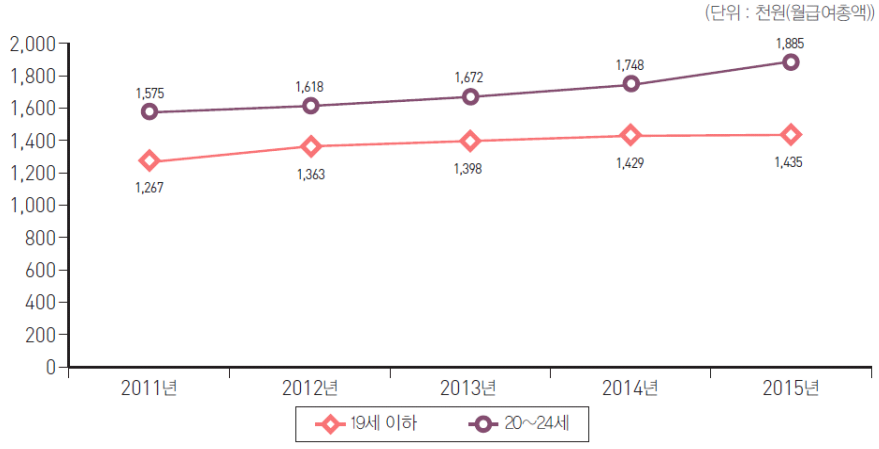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 X Ⅳ.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Ⅲ-7-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반적으로 2012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구분해서 비교하더라도 그러한 증가추세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었다(<표 Ⅲ-7-26>). 하지만 전체 평균과 2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의 경우 29세 이하 청소년은 시간당 평균 11,134원을 받았으며, 전체 평균인 15,978원과는 4,844원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2015년의 경우 29세 이하 청소년은 시간당 평균 11,674원을 받았으며, 전체평균인 16,709원과는 5,035원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2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다른 연령대와 동일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증가폭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26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 원(%))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전체	15,001	15,684	17,480	18,212	11,019 (73.5)	11,253 (71.7)	11,452 (65.5)	12,076 (66.3)	14,075	14,587	15,978	16,709
19세 이하	8,358	11,068	12,452	12,975	6,612 (79.1)	8,609 (74.2)	8,660 (77.3)	9,161 (70.6)	7,006	10,583	11,134	11,674
20~29세	11,142				8,854 (79.5)				10,455			
30~39세	14,903	15,759	17,457	18,382	13,049 (87.6)	13,183 (83.7)	13,521 (77.5)	13,860 (75.4)	14,659	15,392	16,892	17,749
40~49세	16,866	17,703	20,059	20,682	12,632 (74.9)	13,058 (73.8)	13,519 (67.4)	14,217 (68.7)	16,088	16,803	18,860	19,575
50~59세	16,445	16,964	18,910	19,565	12,143 (73.8)	12,308 (73.8)	12,464 (65.9)	13,362 (68.3)	15,332	15,624	17,094	17,860
60세 이상	13,100	13,360	14,038	14,831	9,777 (74.6)	9,777 (74.7)	10,190 (72.6)	10,922 (73.6)	11,518	11,685	12,099	12,874

* 출처: 고용노동부(2013b).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8.
고용노동부(2014b).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18.
고용노동부(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5.
고용노동부(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18.
* 주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①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은 2015년에 23.8%로 OECD 평균인 30.8%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7-3]). 하지만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2010년의 22.9%보다 0.9% 상승한 수치이며,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고용된 청소년의 파트타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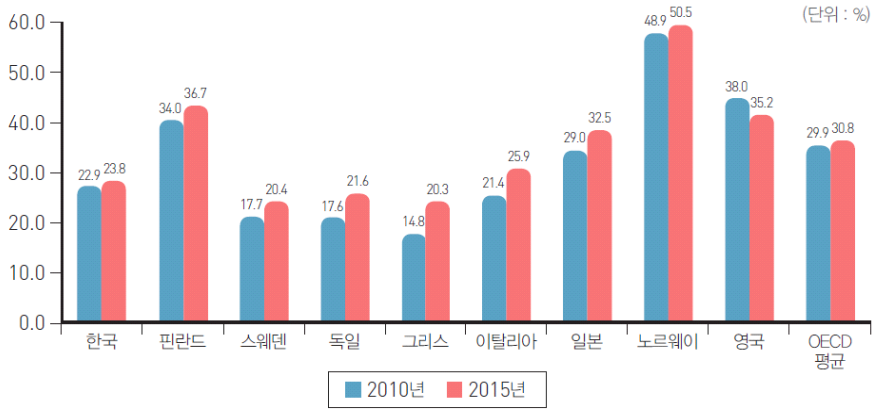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VII
* 원자료: OECD(2016). Labour Force Statistics.

【그림 Ⅲ-7-3】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10/2015)

②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는 <표 Ⅲ-7-27>과 같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11.9%, 여자청소년이 12.5%로 여자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8.1%로 중학교의 5.9%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1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11.5%, 대도시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 19.4%, 양부모가정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가 1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 10.9%, '상'이 8.2%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가 2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 12.5%, '상'이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7-27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12.2	87.8	100.0(6,398)	–
성별	남자	11.9	88.1	100.0(3,337)	0.446
	여자	12.5	87.5	100.0(3,061)	
학교급	중학교	5.0	95.0	100.0(2,903)	252.833***
	고등학교	18.1	81.9	100.0(3,495)	
지역 규모	대도시	11.2	88.8	100.0(2,670)	21.156***
	중소도시	11.5	88.5	100.0(2,681)	
	읍면지역	16.4	83.6	100.0(1,04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0.7	89.3	100.0(5,743)	120.668***
	한부모가정	26.5	73.5	100.0(528)	
	조손가정	19.4	80.6	100.0(47)	
	기타	20.3	79.7	100.0(75)	
학업 성적	상	8.2	91.8	100.0(1,787)	86.557***
	중	10.9	89.1	100.0(2,678)	
	하	17.7	82.3	100.0(1,930)	
경제적 수준	상	9.4	90.6	100.0(3,114)	87.085***
	중	12.5	87.5	100.0(2,438)	
	하	21.3	78.7	100.0(844)	

***p<.00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3년 13.3%, 2014년 13.5%, 2015년 12.2%, 2016년 13.5%, 2017년 12.2%로 나타났다([그림 Ⅲ-7-4]). 따라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 볼 때에도 중학생의 경우 2013년 6.5%, 2014년 6.7%, 2015년 4.3%, 2016년 5.1%, 2017년 5.0%로 나타나 2013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3년 19.8%, 2014년 19.9%, 2015년 19.5%, 2016년 21.0%, 2017년 18.1%로 2016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 15.2%, 2014년 15.1%, 2015년 13.7%, 2016년 14.4%, 2017년 12.6%로 나타나 2013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 41.1%, 2014년 42.2%, 2015년 45.0%, 2016년 48.1%, 2017년에는 41.2%로 나타났으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5].

35) 통계자료집, p.245. 〈표 Ⅲ-7-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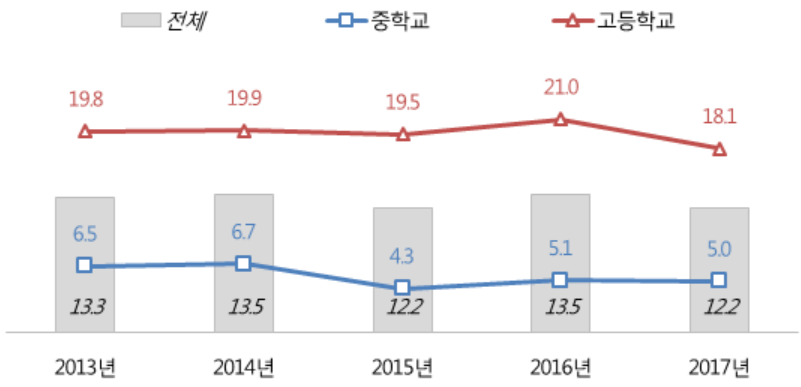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7-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5개년 추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떠한 부당처우를 경험했는지 조사하였는데, 그 중 먼저 주요 항목에 대한 경험률을 살펴보면 [그림 Ⅲ-7-5]와 같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7.5%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4%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2.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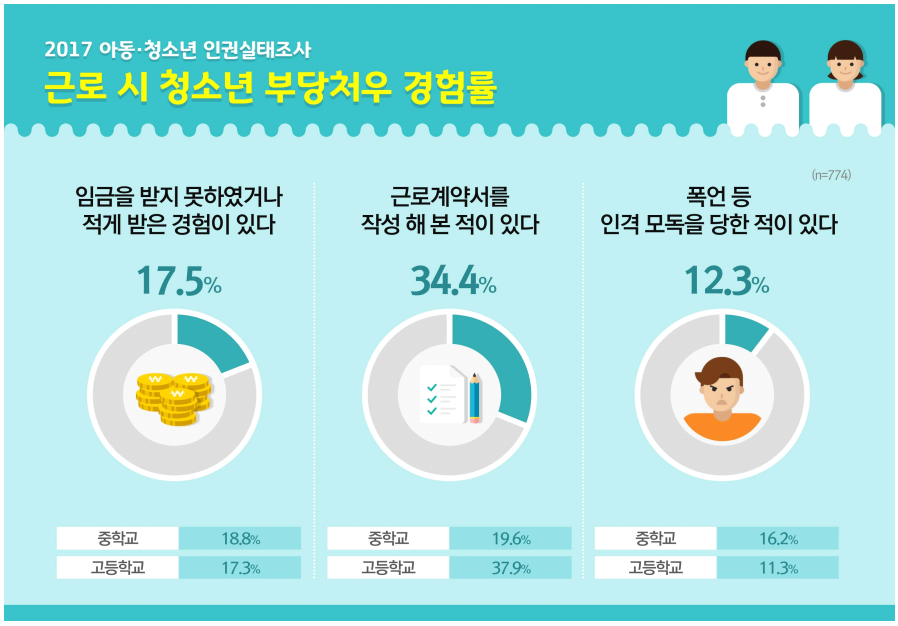

【그림 Ⅲ-7-5】 아르바이트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Ⅲ-7-28>와 같다. 임금을 1~2번 정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17.5%였으며, 이 중 1~2회 정도가 15.4%, 3회 이상이 2.1%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을 성별로는 여자청소년이 18.8%로 나타난 반면, 남자청소년은 16.4%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의 피해경험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번 이상의 경우는 남자 청소년이 3.1%로 여자청소년 1.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7-2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2.4	15.4	2.1	100.0(774)	-
성별	남자	83.6	13.3	3.1	100.0(397)	6.180*
	여자	81.2	17.7	1.1	100.0(377)	
학교급	중학교	81.3	15.7	3.1	100.0(146)	0.420
	고등학교	82.7	15.4	1.9	100.0(627)	
지역 규모	대도시	83.1	15.3	1.6	100.0(296)	2.201
	중소도시	83.6	14.1	2.3	100.0(306)	
	읍면지역	79.2	18.1	2.7	100.0(17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3.2	14.6	2.1	100.0(607)	12.136
	한부모가정	81.7	17.7	0.5	100.0(140)	
	조손가정	47.8	37.8	14.4	100.0(9)	
	기타	85.9	5.2	8.9	100.0(15)	
학업 성적	상	79.3	17.2	3.5	100.0(146)	2.376
	중	82.4	15.9	1.7	100.0(286)	
	하	83.8	14.3	1.9	100.0(342)	
경제적 수준	상	81.3	16.6	2.1	100.0(291)	1.257
	중	83.0	15.4	1.6	100.0(303)	
	하	83.2	13.7	3.0	100.0(179)	

**α.01

임금과 관련된 피해경험이 한번이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표 Ⅲ-7-28>과 같다. 우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한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응답율은 중학교가 18.8%로 고등학교 1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2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도시가 16.9%, 중소도시가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18.2%, 양부모가정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20.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 17.6%, '하'가 16.2%의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이 1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 17.0%, '하'가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피해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Ⅲ-7-6]). 아르바이트 중 임금과 관련된 피해경험은 2013년 15.1%에서 2014년 17.5%, 2015년 17.1%, 2016년 15.0%, 2017년 17.5%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추이는 학교급별로 구분하더라도 거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에 12.5%, 2014년에 17.0%, 2015년에 15.7%, 2016년에 20.4%, 2017년에 18.8%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는 2013년에 15.9%, 2014년에 17.6%, 2015년에 17.3%, 2016년에 13.8%, 2017년에 17.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중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에 16.5%, 2014년에 17.5%, 2015년에 17.5%, 2016년에 13.1%, 2017년에 14.7%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에 14.9%, 2014년에 18.0%, 2015년에 17.1%, 2016년에 14.9%, 2017년에 20.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해볼 때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하여 임금과 관련된 피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하겠지만, 특히 중학생과 특성화고의 피해 경험의 증가추세가 일반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학생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임금과 관련된 피해경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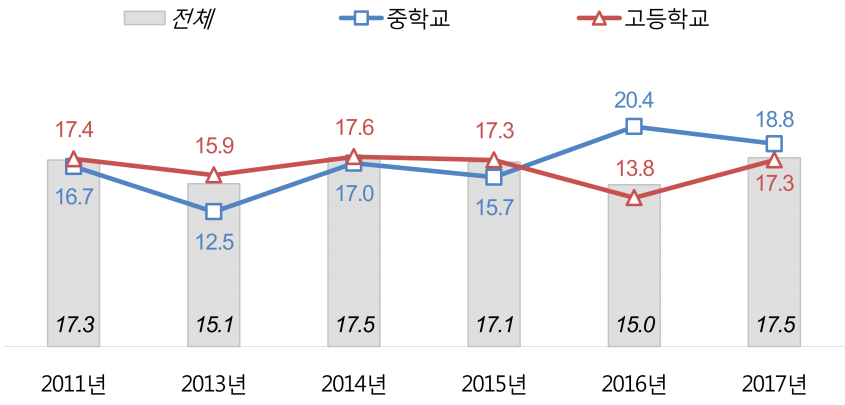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7-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음(연도별 추이)

36) 통계자료집, p.246. 〈표 Ⅲ-7-2-1〉 참조

아르바이트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피해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7.1%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1~2번은 11.9%, 3번 이상이 5.2%로 나타났다(<표 Ⅲ-7-29>).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18.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청소년들은 15.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7.4%로 중학교 1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가 15.9%, 읍면지역이 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19.7%, 양부모가정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 17.0%, '하'가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가 1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 16.7%, '상'이 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7-2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2.9	11.9	5.2	100.0(775)	-
성별	남자	81.2	13.1	5.7	100.0(397)	1.956
	여자	84.7	10.7	4.6	100.0(378)	
학교급	중학교	83.8	12.1	4.1	100.0(146)	0.430
	고등학교	82.7	11.9	5.5	100.0(629)	
지역규모	대도시	80.5	13.8	5.7	100.0(299)	4.218
	중소도시	84.0	11.9	4.0	100.0(305)	
	읍면지역	85.1	8.6	6.3	100.0(17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3.9	11.4	4.7	100.0(608)	-
	한부모가정	80.3	14.7	5.0	100.0(140)	
	조손가정	56.3	7.8	35.9	100.0(9)	
	기타	91.1	0.0	8.9	100.0(15)	
학업성적	상	81.1	14.4	4.5	100.0(146)	1.060
	중	82.9	11.6	5.4	100.0(288)	
	하	83.6	11.1	5.3	100.0(341)	
경제적 수준	상	83.5	12.6	3.9	100.0(293)	2.589
	중	83.3	11.0	5.7	100.0(303)	
	하	81.2	12.3	6.5	100.0(178)	

***α<.001

아르바이트 시간 초과근무 및 전혀 다른 일을 한 경험과 관련하여 한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지난 5년간의 변화추이는 전체적으로 2013년 14.8%에서 2014년 18.5%, 2015년 13.8%, 2016년 15.6%, 2017년 17.1%로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7-7]).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중학교의 경우 2013년 13.7%에서 2014년 13.5%, 2015년 10.5%, 2016년 16.5%, 2017년 16.2%로 나타나 2015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6년 이후 다시 16%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 15.0%에서 2014년 20.2%, 2015년 14.5%, 2016년 15.4%, 2017년 17.4%로 2015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 15.9%에서 2014년 22.1%, 2015년 13.0%, 2016년 15.1%, 2017년 16.6%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 13.7%에서 2014년 22.1%, 2015년 16.4%, 2016년 15.7%, 2017년 18.1%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부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7]. 따라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해서는 학교급별 구분없이 전반적으로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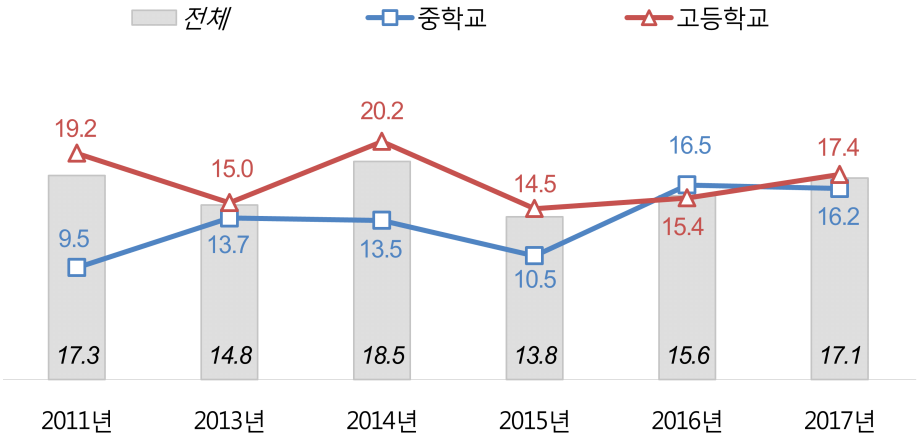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7-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함(연도별 추이)

<표 Ⅲ-7-30>에서 알 수 있듯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65.5%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37) 통계자료집, p.247. 〈표 Ⅲ-7-3-1〉 참조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이 66.1%로 나타나 남자청소년 65.0%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았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험은 중학생이 80.4%로 고등학생 6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7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도시가 64.7%, 중소도시가 6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64.3%, 조손가정 5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6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 66.4%, '하'가 63.8%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이 6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 67.7%, '하'가 56.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7-3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65.5	26.2	8.2	100.0(774)	-
성별	남자	65.0	25.8	9.2	100.0(395)	1.014
	여자	66.1	26.7	7.2	100.0(378)	
학교급	중학교	80.4	14.3	5.3	100.0(146)	17.662***
	고등학교	62.1	29.0	8.9	100.0(627)	
지역규모	대도시	64.7	26.6	8.6	100.0(299)	3.552
	중소도시	63.2	27.6	9.2	100.0(304)	
	읍면지역	71.1	23.1	5.9	100.0(17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64.3	26.8	8.9	100.0(608)	-
	한부모가정	69.0	24.4	6.5	100.0(139)	
	조손가정	56.3	43.7	0.0	100.0(9)	
	기타	81.5	13.8	4.6	100.0(15)	
학업성적	상	67.9	22.0	10.2	100.0(146)	9.542*
	중	66.4	28.9	4.7	100.0(288)	
	하	63.8	25.8	10.4	100.0(339)	
경제적 수준	상	68.7	25.5	5.8	100.0(293)	11.286*
	중	67.7	24.5	7.7	100.0(302)	
	하	56.5	30.4	13.1	100.0(178)	

*$p<.05$, ***$p<.001$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과 관련하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7-8]), 2013년에 21.6%, 2014년 22.9%, 2015년 28.6%, 2016년 30.2%, 2017년 34.4%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2013년에 19.5%, 2014년 18.3%, 2015년 8.7%, 2016년 21.2%, 2017년 19.6%로 2015년까지 감소하다

가 2016년에 증가, 2017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22.3%, 2014년 24.4%, 2015년 32.6%, 2016년 32.2%, 2017년 37.9%로 나타나 2013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중 일반계고의 추이를 보면 2013년에는 21.1%, 2014년 24.6%, 2015년 29.2%, 2016년 28.8%, 2017년 34.7%로 나타나 2013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 24.3%, 2014년 24.2%, 2015년 37.4%, 2016년 36.4%, 2017년 42.2%로 나타나 일반계고와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65.5%로 상당히 높다는 점은 향후 더욱 강도 높은 개선방안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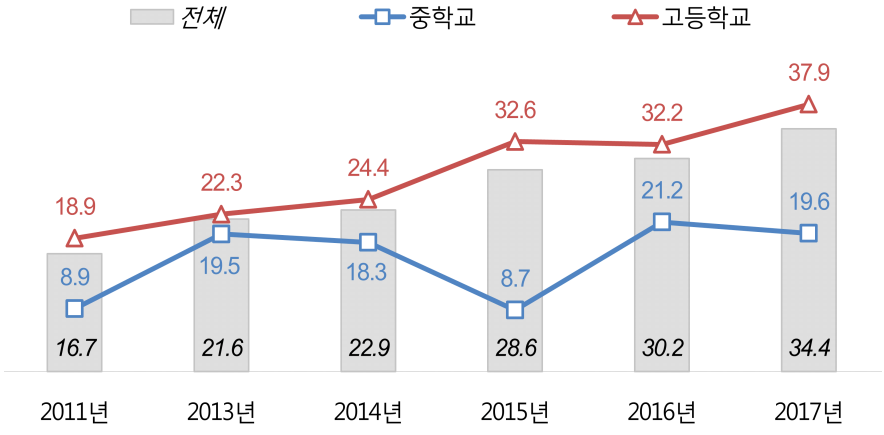

【그림 Ⅲ-7-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연도별 추이)

<표 Ⅲ-7-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7.9%로 나타났으며, 1~2번은 6.7%, 3번 이상은 1.2%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7.7%로 여자 청소년(8.0%)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8.4%, 고등학교가 7.8%로 중학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가 7.6%, 대도시가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11.7%, 양부모가정 6.8%의

38) 통계자료집, p.248. 〈표 Ⅲ-7-4-1〉 참조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가 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이 8.0%, '중'이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 7.0%, '하'가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부당해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2.2	6.7	1.2	100.0(772)	-
성별	남자	92.3	6.1	1.6	100.0(394)	1.371
	여자	92.0	7.3	0.7	100.0(378)	
학교급	중학교	91.6	6.7	1.7	100.0(145)	0.079
	고등학교	92.3	6.7	1.1	100.0(627)	
지역 규모	대도시	92.9	6.2	0.8	100.0(299)	10.818*
	중소도시	92.4	7.3	0.3	100.0(302)	
	읍면지역	90.3	6.3	3.4	100.0(17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3.2	5.9	0.9	100.0(608)	-
	한부모가정	88.3	9.7	2.0	100.0(138)	
	조손가정	82.1	17.9	0.0	100.0(8)	
	기타	91.1	4.3	4.6	100.0(15)	
학업 성적	상	92.0	6.3	1.7	100.0(146)	2.643
	중	92.6	5.8	1.6	100.0(288)	
	하	91.8	7.6	0.6	100.0(338)	
경제적 수준	상	90.8	7.6	1.6	100.0(293)	4.897
	중	92.9	6.8	0.2	100.0(300)	
	하	93.0	4.8	2.1	100.0(178)	

*$p<.05$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7-9]), 전체적으로 2013년에는 9.3%, 2014년에는 7.3%, 2015년에는 6.9%, 2016년에는 6.0%, 2017년에는 7.9%의 순으로 나타나 2016년까지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7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우선 중학교의 경우 2013년에 12.7%, 2014년에 10.8%, 2015년에 9.7%, 2016년에 12.1%, 2017년에 8.4%로 나타나 2015년까지 감소하다 2016년과 2017년에 증가와 감소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에 8.1%, 2014년에 6.2%, 2015년에 6.4%, 2016년에 4.7%, 2017년에 7.8%로

나타나 2016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2017년에 증가하는 패턴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일반계고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계고의 경우 2013년에는 9.1%, 2014년에 7.2%, 2015년에 6.6%, 2016년에 4.6%, 2017년에 6.3%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성화계고의 경우 2013년에는 6.6%, 2014년에 4.6%, 2015년에 6.0%, 2016년에 5.0%, 2016년에 9.5%로 나타났다[39]. 2013년부터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경험률이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7년에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특성화계고에서 부당해고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커서 특성화계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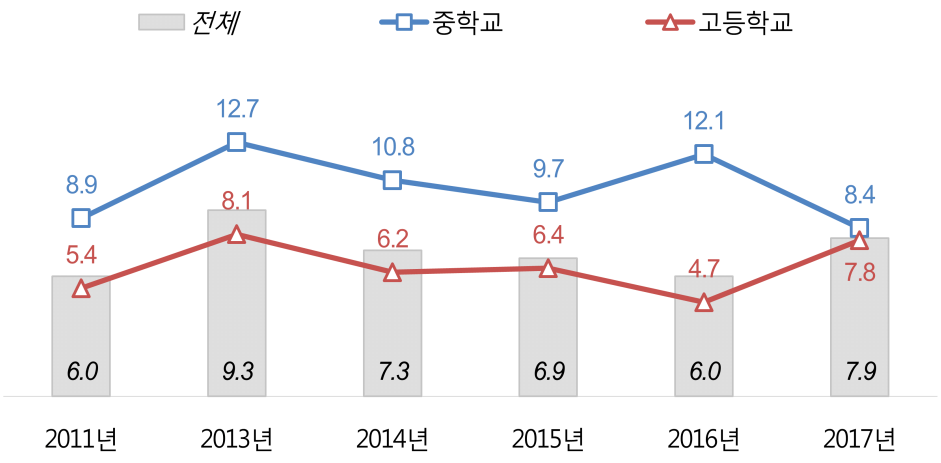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7-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부당한 해고(연도별 추이)

<표 Ⅲ-7-32>에 나타난 것처럼, 아르바이트 직업 환경에서의 불결함과 위험 경험과 관련하여 한번이라도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이 15.2%, 여자청소년이 14.8%로 남자청소년의 상대적으로 여자청소년에 비해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8.4%로 고등학교 1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1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읍면지역이 15.6%, 대도시가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

39) 통계자료집, p.249. 〈표 Ⅲ-7-5-1〉 참조

가정 17.4%, 양부모가정 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가 14.2%, '중'이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이 1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가 14.3%, '중'이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이,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측면에서는 높은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불결함과 위험경험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작업환경과 관련된 정책적 관심이 이들 청소년에게 보다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3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5.0	11.6	3.4	100.0(774)	-
성별	남자	84.9	11.2	4.0	100.0(395)	0.817
	여자	85.2	12.0	2.8	100.0(378)	
학교급	중학교	81.6	11.6	6.8	100.0(146)	6.650*
	고등학교	85.8	11.6	2.6	100.0(627)	
지역 규모	대도시	87.6	10.4	2.0	100.0(299)	4.390
	중소도시	82.8	12.8	4.5	100.0(304)	
	읍면지역	84.5	11.6	4.0	100.0(17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5.5	10.9	3.6	100.0(608)	-
	한부모가정	82.5	14.1	3.3	100.0(139)	
	조손가정	62.2	37.8	0.0	100.0(9)	
	기타	100.0	0.0	0.0	100.0(15)	
학업 성적	상	78.9	15.7	5.4	100.0(146)	6.424
	중	87.3	9.8	2.9	100.0(288)	
	하	85.8	11.2	3.0	100.0(339)	
경제적 수준	상	82.8	13.1	4.1	100.0(293)	9.496*
	중	87.1	8.6	4.4	100.0(302)	
	하	85.6	13.7	0.6	100.0(178)	

*α.05

아르바이트 작업환경에서 불결함과 위험 경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7-10) 전체적으로 2013년에 13.6%, 2014년에 13.0%, 2015년에 10.3%, 2016년에 9.5%, 2017년에 15.0%로 나타났으며 2016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2017년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2013년에는 13.4%, 2014년에는 11.2%, 2015년에는 9.9%, 2016년에는 14.3%, 2017년에는 18.4%로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 13.5%, 2014년 13.6%, 2015년 10.4%, 2016년 8.4%, 2017년 14.2%로 나타나 2016년까지의 감소추세에서 2017년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

다.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 16.1%, 2014년 13.6%, 2015년 10.8%, 2016년 9.0%, 2017년 12.4%로 나타났으며, 일반계고 역시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 9.3%, 2014년 13.5%, 2015년 9.7%, 2016년 7.8%, 2017년 16.5%로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0]. 따라서 아르바이트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최근 부정적 응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그 원인과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성화계고 학생들의 작업환경 피해경험이 2017년에 상대적으로 급상승하였다는 것은 특성화계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의 피해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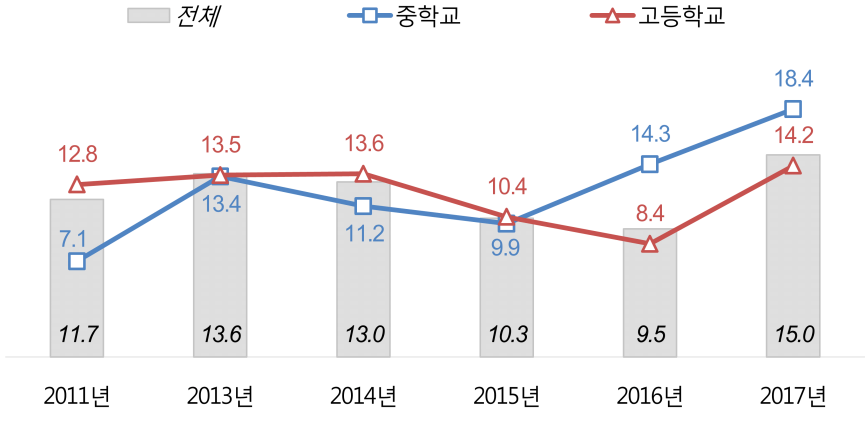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7-1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의 인격 모독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33>). 성별로는 여자청소년이 13.6%로 남자청소년(11.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6.2%로 고등학교 1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1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읍면지역 11.8%, 대도시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2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19.2%, 양부모가정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가 1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이

40) 통계자료집, p.250. 〈표 Ⅲ-7-6-1〉 참조

12.7%, '중'이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가 1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이 12.7%, '중'이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인격모욕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인격모욕 피해경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폭언 등의 인격모독 경험이 가장 높은 조손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3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7.7	10.4	1.9	100.0(774)	–
성별	남자	89.0	8.8	2.2	100.0(395)	2.643
	여자	86.4	12.1	1.5	100.0(378)	
학교급	중학교	83.8	13.3	2.9	100.0(146)	2.356
	고등학교	88.7	9.7	1.6	100.0(627)	
지역 규모	대도시	89.1	8.6	2.3	100.0(299)	3.494
	중소도시	86.2	12.6	1.2	100.0(304)	
	읍면지역	88.1	9.5	2.3	100.0(17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9.4	8.8	1.8	100.0(608)	–
	한부모가정	80.8	17.3	1.9	100.0(139)	
	조손가정	77.8	22.2	0.0	100.0(9)	
	기타	90.2	4.6	5.2	100.0(15)	
학업 성적	상	87.3	11.1	1.6	100.0(146)	1.096
	중	89.0	9.4	1.6	100.0(288)	
	하	86.9	10.9	2.2	100.0(339)	
경제적 수준	상	87.3	10.6	2.1	100.0(293)	1.991
	중	89.1	8.9	2.0	100.0(302)	
	하	86.1	12.6	1.3	100.0(178)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7-11]), 전체적으로 2013년에 14.5%이던 것이 2014년에는 11.5%, 2015년 11.8%, 2016년 10.6%, 2017년 12.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증가와 감소를 매년 반복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우선 중학교의 경우 2013년에 11.7%, 2014년에 8.8%, 2015년에 7.4%, 2016년에 13.4%, 2017년에 16.2%로 나타났으며, 2015년까지 감소하다 2016년부터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에 15.4%, 2014년에 12.3%, 2015년에 12.7%, 2016년에 10.0%, 2017년에 11.3%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에 15.3%, 2014년에 11.4%, 2015년에 12.3%, 2016년에 10.2%, 2017년에 10.4%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전반적 추세와 마찬가지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 15.4%, 2014년 13.8%, 2015년 13.4%, 2016년 9.8%, 2017년 12.5%로 나타났으며, 2016년까지 매년 감소하다 2017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41]. 따라서 아르바이트에서의 인격모독 피해경험 역시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학생과 특성화계고에서의 피해경험이 일반계고에 비해 2017년에 큰폭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은 중학생과 특성화계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인격모독 피해경험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상대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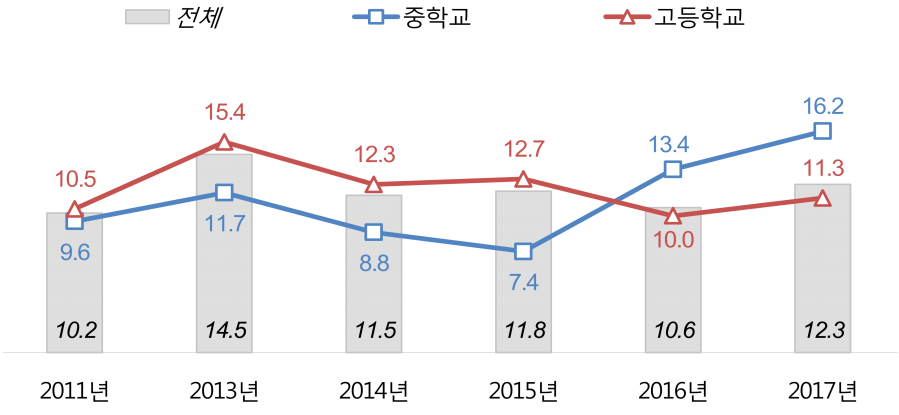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7-1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폭언 등 인격 모독(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3.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34>).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5.2%로 여자청소년의 응답률 0.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5.9%로 고등학교 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가 2.9%, 읍면지역이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6.3%,

41) 통계자료집, p.251. 〈표 Ⅲ-7-1〉 참조

양부모가정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 3.3%, '하'가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이 3.4%, '중'이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의 경험은 빈번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남자 청소년과 중학생,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구타나 폭행의 경험이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 집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3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7.0	2.6	0.4	100.0(774)	-
성별	남자	94.8	4.4	0.8	100.0(395)	-
	여자	99.3	0.7	0.0	100.0(378)	
학교급	중학교	94.0	4.3	1.6	100.0(146)	6.217
	고등학교	97.7	2.2	0.1	100.0(627)	
지역 규모	대도시	95.9	3.8	0.2	100.0(299)	-
	중소도시	97.1	2.9	0.0	100.0(304)	
	읍면지역	98.6	0.0	1.4	100.0(17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7	1.8	0.5	100.0(608)	-
	한부모가정	93.7	6.3	0.0	100.0(139)	
	조손가정	92.2	7.8	0.0	100.0(9)	
	기타	100.0	0.0	0.0	100.0(15)	
학업 성적	상	95.5	2.8	1.6	100.0(146)	-
	중	96.7	3.1	0.2	100.0(288)	
	하	97.8	2.2	0.0	100.0(339)	
경제적 수준	상	96.6	2.6	0.8	100.0(293)	-
	중	97.7	2.1	0.2	100.0(302)	
	하	96.4	3.6	0.0	100.0(178)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 경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7-12]), 전체적으로 2013년에 5.4%, 2014년에 4.7%, 2015년에 2.5%, 2016년에 3.1%, 2017년에 3.0%로 나타났으며, 2015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우선 중학생의 경우 2013년에 11.1%, 2014년에 9.7%, 2015년에 6.0%, 2016년에 10.8%, 2017년에 5.9%로 나타났으며,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에 증가하고 2017년에 다시 감소하

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3년에 3.7%, 2014년에 3.0%, 2015년에 1.7%, 2016년에 1.4%, 2017년에 2.3%로 나타났으며,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패턴을 보였다.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에 4.9%, 2014년에 3.2%, 2015년에 1.8%, 2016년에 2.1%, 2017년에 2.3%로 나타나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에 1.5%, 2014년에 2.7%, 2015년에 1.7%, 2016년에 0.6%, 2017년에 2.4%로 나타나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2]. 따라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과정에서 구타나 폭행경험은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특히 특성화계고의 경우에 2017년에 전년대비 증가폭이 커져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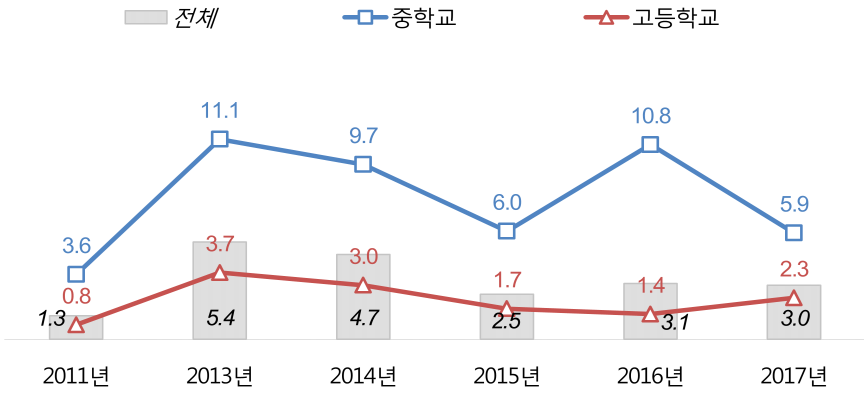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7-1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구타나 폭행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20.5%로 나타났다(<표 Ⅲ-7-35>).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21.4%로 남자 청소년의 응답률 19.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23.8%로 고등학교 1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읍면지역이 20.4%, 중소도시 19.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4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이 22.6%, 양부모가정이 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42) 통계자료집, p.252, 〈표 Ⅲ-7-8-1〉 참조

‘상;이 2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가 21.0%, ’중‘이 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가 2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이 20.3%, ’중‘이 19.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7-3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79.6	14.9	5.6	100.0(776)	–
성별	남자	80.5	13.8	5.7	100.0(397)	0.839
	여자	78.6	16.0	5.4	100.0(378)	
학교급	중학교	76.2	14.2	9.6	100.0(146)	5.520
	고등학교	80.3	15.0	4.6	100.0(629)	
지역 규모	대도시	78.8	16.9	4.4	100.0(299)	4.719
	중소도시	80.3	14.2	5.4	100.0(305)	
	읍면지역	79.6	12.5	7.9	100.0(17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9	13.9	6.1	100.0(609)	–
	한부모가정	77.4	19.8	2.8	100.0(140)	
	조손가정	55.7	30.3	14.0	100.0(9)	
	기타	95.4	0.0	4.6	100.0(15)	
학업 성적	상	77.0	16.7	6.2	100.0(146)	2.258
	중	81.6	14.4	4.1	100.0(289)	
	하	79.0	14.5	6.5	100.0(341)	
경제적 수준	상	79.7	15.8	4.5	100.0(293)	1.740
	중	80.4	13.6	6.0	100.0(304)	
	하	78.3	15.1	6.6	100.0(178)	

*$p<.05$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경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7-13]), 전체적으로 2013년에 27.2%, 2014년에 27.1%, 2015년에 25.0%, 2016년에 20.2%, 2017년에 20.5%로 나타나 2017년에 전년대비 0.3%의 증가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의 경우 2013년에 19.1%, 2014년에 20.8%, 2015년에 22.8%, 2016년에 20.1%, 2017년에 23.8%로 나타나 2013년 대비 2017년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에 29.8%, 2014년에 29.1%, 2015년에 25.4%, 2016년에 20.1%, 2017년에 19.6%로 나타나 2013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계고의 경우 2013년에 29.6%, 2014년에 26.4%, 2015년에 27.5%, 2016년에 20.8%, 2017년에 18.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에 30.0%에서 2014년에 33.5%, 2015년 22.6%, 2016년 19.4%, 2017년 21.6%로 나타나 2016년까지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17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3].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2013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개선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며, 특히 중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피해경험에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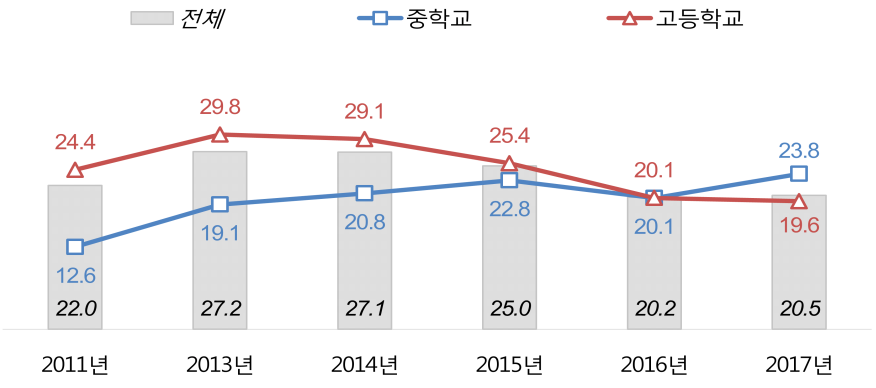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7-1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 함(연도별 추이)

(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 정도

①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대상 업소 수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2014. 5)''을 마련하여 사업장 감독, 신고체계 정비,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고용노동부, 2015: 242-243).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백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던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결과는 2015년 이후부터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결과와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법 위반내용은 2016년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Ⅵ'의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7-36>, <표 Ⅲ-7-37>과 같다. 고용노동부

43) 통계자료집, p.254. 〈표 Ⅲ-7-10-1〉 참조

에서 발표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점검실시 기관수 대비 법위반 적발 업소수의 비율이 2008년 78.2%, 2009년 85.7%, 2010년 84.1%, 2011년 87.9%, 2012년 91.8%, 2013년 84.1%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고용부에서 발표된 2013년까지의 청소년 근로관련법의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주지(근로조건 미명시)가 전체 적발건수의 78.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2013년, 488건)의 순으로 많았다(김영지 외, 2016: 496-497).

표 Ⅲ-7-36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건))

연도	점검실시	법위반	조 치				
			시정완료	사법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시정중
2008	1,318	1,031 (2,567)	1,017 (2,545)	7 (7)	–	–	–
2009	1,621	1,389 (4,704)	1,389 (4,701)	1 (1)	1 (2)	–	–
2010	1,545	1,300 (4,979)	1,298 (4,977)	2 (2)	–	–	–
2011	2,711	2,384 (9,681)	2,381 (9,676)	3 (5)	–	–	–
2012	1,940	1,780 (7,589)	1,776 (7,581)	3 (7)	1 (1)	–	–
2013	3,057	2,572 (8,395)	2,558 (8,374)	12 (19)	2 (2)	–	–

* 출처: 고용노동부(2009). 노동백서. p.186. 고용노동부(2010). 고용노동백서. p.233.
고용노동부(2011). 고용노동백서. p.252. 고용노동부(2012) 고용노동백서. p.210.
고용노동부(2013a). 고용노동백서. p.234. 고용노동부(2014a). 고용노동백서. p.246.

표 Ⅲ-7-37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 (단위 : 건)

연도	최저임금 주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미달
		연소자증명서 비치	야간·휴일 근로 인가	근로시간 준수	취직인허증	
2008	314	469	41	86	6	314
2009	76	496	188	63	3	76
2010	885	432	209	61	2	86
2011	1,605	847	401	217	7	296
2012	1,253	431	262	117	4	206
2013	1,787 (근로조건 미명시)	99	35	15	–	488

* 출처: 고용노동부(2009). 노동백서. p.186. 고용노동부(2010). 고용노동백서. p.233.
고용노동부(2011). 고용노동백서. p.253. 고용노동부(2012). 고용노동백서. p.210.
고용노동부(2013a). 고용노동백서. p.235. 고용노동부(2014a). 고용노동백서. p.246.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합동점검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로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이루어지며, 점검대상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전국 주요도시지역의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이다(여성가족부, 2017.8.30). <표 Ⅲ-7-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여름방학에 실시된 점검결과를 보면 344개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적발업소는 177개소로 나타나 51.5%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가족부의 합동조사결과를 토대로 점검업소 대비 적발업소의 비율을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3년에는 513개소 중 125개소(24.4%), 2014년에는 661개소 중 187개소(28.3%), 2015년에는 438개소 중 141개소(32.2%), 2016년에는 577개소 중 247개소(42.8%), 2017년에는 344개소 중 117개소(51.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표 Ⅲ-7-38>).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청소년근로관련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변화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노동법규 위반사례 406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표 Ⅲ-7-38>), 근로조건 명시위반(최저임금)이 217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및 야간휴일 근로 미인가 및 임금체불이 37건,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이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근로조건 명시위반,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야간휴일 근로 미인가 및 임금체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소자증명 대장과 인허증 등 서류 미비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위반내역이 증가하고 있는 근로조건 명시위반(최저임금 등)과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문제, 그리고 야간휴일 근로 미인가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Ⅲ-7-38 청소년 고용사업장 법령위반 내역 및 건수 (단위 : 건)

연도	점검업소	적발업소	위반 내역 및 건수					
			근로조건 명시위반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연소자증명 대장, 인허증 등 서류 미비치	야간휴일 근로 미인가 및 임금체불 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계
2013년 여름방학	353	86	131	3	60	20	29	243
2013년 겨울방학	160	39	57	6	22	3	13	101
2014년 여름방학	364	102	101	18	33	14	19	185
2014년 겨울방학	297	85	84	3	29	4	43	163
2015년 여름방학	197	73	68	11	42	3	31	155
2015년 겨울방학	241	68	71	3	32	1	25	132
2016년 여름방학	299	110	74	9	50	5	13	178
2016년 겨울방학	278	137	137	13	1	7	2	236
2017년 여름방학	344	177	217	21	7	37	14	406

*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6.8.2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2.20). “근로청소년 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8.30).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②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피해경험 중 심각한 피해경험이라 할 수 있는 성적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4%로 나타났다(<표 Ⅲ-7-39>),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5.7%로 여자청소년의 응답률 2.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7.9%로 고등학교 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도시 4.7%, 읍면지역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4.7%, 양부모가정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 3.7%, ‘하’가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가 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이 3.9%, ‘상’이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성적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특히 요구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성적 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남자청소년, 중학교, 중소도시, 조손가정,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3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성적 피해를 경험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5.6	3.7	0.7	100.0(773)	-
성별	남자	94.3	4.5	1.2	100.0(395)	4.554
	여자	97.1	2.7	0.2	100.0(377)	
학교급	중학교	92.1	6.3	1.6	100.0(146)	4.846
	고등학교	96.4	3.0	0.5	100.0(626)	
지역 규모	대도시	95.3	4.2	0.5	100.0(298)	6.546
	중소도시	94.6	4.8	0.6	100.0(304)	
	읍면지역	97.9	0.7	1.4	100.0(17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7	3.5	0.8	100.0(607)	-
	한부모가정	95.3	4.2	0.5	100.0(139)	
	조손가정	92.2	7.8	0.0	100.0(9)	
	기타	95.4	4.6	0.0	100.0(15)	
학업 성적	상	91.6	6.2	2.2	100.0(146)	7.625
	중	96.3	3.1	0.6	100.0(287)	
	하	96.8	3.0	0.2	100.0(339)	
경제적 수준	상	96.3	2.9	0.8	100.0(293)	3.157
	중	96.1	3.3	0.6	100.0(302)	
	하	93.7	5.5	0.9	100.0(177)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성적 피해 경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Ⅲ-7-14]), 전체적으로 2013년에 6.3%, 2014년에 6.0%, 2015년에 3.2%, 2016년에 3.3%, 2017년에 4.4%로 나타나 2015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2013년에 8.9%, 2014년에 10.2%, 2015년에 6.1%, 2016년에 11.2%, 2017년에 7.9%로 2013년 이후부터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에 5.6%, 2014년에 4.6%, 2015년에 2.7%, 2016년에 1.7%, 2017년에 3.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16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 6.0%, 2014년 4.1%, 2015년 2.2%, 2016년 2.1%, 2017년 2.7%로 나타나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는 2013년 4.8%, 2014년 5.6%, 2015년 3.4%, 2016년 1.1%, 2017년 4.7%로 나타났으며,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4]. 따라서 아르바이트에서의 성적 피해경험은 전반적으로는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지만 2017년에 다시 증가한 점에 기초할 때 청소년의 성적 피해경험은 아르바이트과정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인식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특히 특성화계고 학생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에 기초할 때 특성화계고 학생이 겪는 아르바이트 상황에서의 성적피해경험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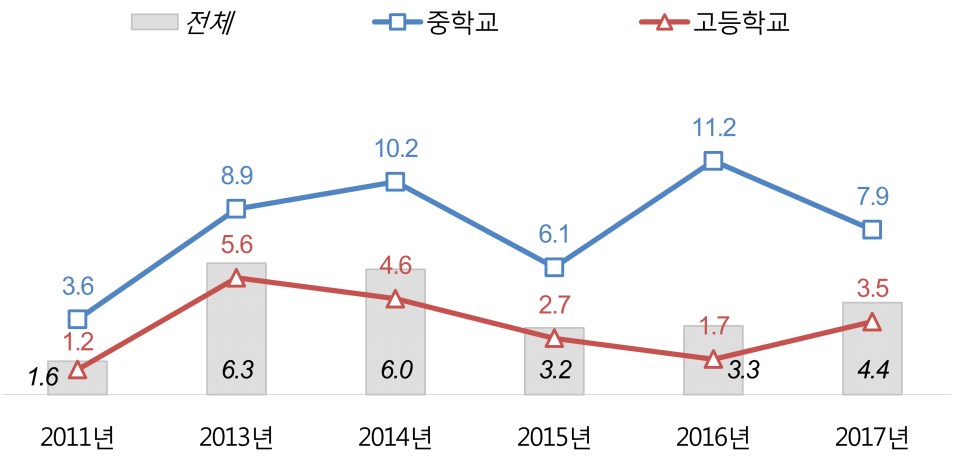

* 주: '없다'를 제외한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Ⅲ-7-1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성적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청소년고용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14년까지 제시된 고용노동부의 요청자료와 여성가족부의 합동점검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2014년까지 제시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고용 점검사업장 중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장은 2014년의 경우 6,721개소 대비 2,934개소였으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장의 비율은 43.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표 Ⅲ-7-40>). 또한 <표 Ⅲ-7-38>에 제시된 여성가족부의 합동점검결과를 보면 2017년 여름방학 점검기간 중에만 14건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2016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총 15건, 2015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56건이 적발되었다. 따라서 청소년고용사업장에서의

44) 통계자료집, p.253. 〈표 Ⅲ-7-9-1〉 참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상당히 열악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부처의 관심과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40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단위 :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청소년 고용 점검사업장(건)	2,711	1,940	3,057	6,72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건)	896	718	758	2,934
미실시 사업장 비율(%)	33.1	37.0	24.8	43.7

* 출처: 김경준 외(2014).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IV-총괄보고서. p.559.
* 원자료: 경원일보(2015.9.13). 청소년 알바 청년인턴 다수고용 사업장은 노동법 무풍지대.

4) 성적 착취

(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①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총 1,2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55명, 2010년에는 198명, 2011년에는 334명, 2012년에는 412명, 2013년에는 457명, 2014년에는 737명, 2015년에는 879명, 2016년에는 1,194명, 2017년에는 1,259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4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단위 :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9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전문강사	55	198	334	412	457	737	879	1,194	1,259

*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9.21)

2016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연간 성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표 Ⅲ-7-42>), 중학생은 78.7%로, 고등학생 66.2%보다 12.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더라도 매년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년별로 살펴보더라도 중학교 1학년이 가장 성교육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간 성교육 경험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42 연간 성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68.9	76.4	61.3	81.3	75.5	72.7	74.8	65.2	43.8
2011	66.1	74.2	58.1	77.1	74.8	70.9	69.0	61.7	43.1
2012	68.0	73.7	62.5	75.1	74.6	71.5	67.6	67.8	52.0
2013	71.6	78.1	65.5	80.8	78.8	74.8	70.1	70.1	56.3
2014	71.8	77.6	66.3	82.3	76.9	74.1	71.0	69.5	58.5
2015	73.3	79.8	67.6	84.5	79.7	76.2	71.6	73.5	58.0
2016	71.9	78.7	66.2	82.8	78.1	75.5	70.8	70.8	57.1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04.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②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와 관련하여 2016년의 경우 성범죄자 수는 총 46,415명이었으며, 이 중 신상공개자는 총 4,337명으로 약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43>), 그리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수는 2011년 2,167명, 2012년 3,818명, 2013년 12,652명, 2014년 22,582명, 2015년 33,616명, 2016년 46,415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상공개자는 2011년 151명, 2012년 1,261명, 2013년 3,786명, 2014년 4,161명, 2015년 4,552명, 2016년 4,337명으로 나타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215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43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단위 :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성범죄자	신상 공개자	성범죄자	신상 공개자	성범죄자	신상 공개자	성범죄자	신상 공개자	성범죄자	신상 공개자	성범죄자	신상 공개자
2,167	151	3,818	1,261	12,652	3,786	22,582	4,161	33,616	4,552	46,415	4,337

* 출처: 여성가족부(2011). 2011 청소년백서. p.246.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p.248.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256 여성가족부(2014b). 2014 청소년백서. p.268.
여성가족부(2015b). 2015 청소년백서. p.287.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272.
* 주: 2011년까지의 신상공개자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이나 2013년 신상공개자는 아동과 성인 대상임. 2011년은 12월 31일 기준이며, 2013년도와 2014년도는 11월 30일 기준임. 2015년도는 9월 30일 기준임.

표 Ⅲ-7-44 지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단위 : 명)

특별시 * 광역시/도	성범죄자 수
서울특별시	630
부산광역시	258
대구광역시	197
인천광역시	257
광주광역시	105
대전광역시	93
울산광역시	79
경기도	987
강원도	158
충청북도	134
충청남도	222
전라북도	186
전라남도	209
경상북도	260
경상남도	278
제주특별자치도	65
세종특별자치시	7
총 계	4117

* 출처: 성범죄자 알림e(2017.9.5) 웹사이트
* 주: 본 통계자료는 행정동기준(주민자치센터 관리기준)으로 집계하여 공개한 자료이며, 통계는 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 수임.

(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률

① 성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인구비율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은 다음 <표 Ⅲ-7-45>와 같다.

표 Ⅲ-7-45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단위 : 명, %)

연도	계(명)		피 해 자 연 령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0세 미만	60세 이상	미상
2009년	전체	33,659	944	4,375	10,287	15,115	546	2,392
		100%	2.8	13.0	30.6	44.9	1.6	7.1
	장애인	4,603	6	228	1,312	2,828	122	107
		100%	0.1	5.0	28.5	61.4	2.7	2.3
2010년	전체	39,299	1,042	5,581	11,761	18,225	381	2,309
		100%	2.7	14.2	29.9	46.4	1.0	5.9
	장애인	1,722	36	189	574	879	9	35
		100%	2.1	11	33.3	51	0.5	2.0
2011년	전체	33,749	786	3,813	9,914	15,927	401	2,908
		100%	2.3	11.3	29.4	47.2	1.2	8.6
	장애인	2,431	7	234	983	1,137	25	45
		100%	0.3	9.6	40.4	46.8	1.0	1.9
2012년	전체	30,642	565	3,088	9,371	15,325	405	1,888
		100%	1.9	10.1	30.6	50.0	1.3	6.2
	장애인	3,449	10	166	1,251	1,681	109	232
		100%	0.3	4.8	36.3	48.7	3.2	6.7
2013년	전체	31,323	600	2,722	7,329	16,664	350	3,660
		100%	1.9	8.7	23.4	53.2	1.1	11.7
	장애인	3,225	57	247	743	1,894	49	233
		100%	1.8	7.7	23.0	58.7	1.5	7.3
2014년	전체	31,764	591	2,405	7,866	16,244	483	4,175
		100%	1.9	7.6	24.8	51.1	1.5	13.1
	장애인	4,965	16	208	1,196	2,680	31	834
		100%	0.3	4.2	24	54	0.6	16.8
2015년	전체	34,489	552	2,317	8,839	19,949	470	2,362
		100%	1.6	6.7	25.6	57.8	1.4	6.8
	장애인	3,986	18	179	1,158	2,430	49	152
		100%	0.5	4.5	29.1	61.0	1.2	3.8
2016년	전체	33,005	303	2,100	7,068	19,901	687	2,946
		100%	0.9	6.4	21.4	60.3	2.1	8.9
	장애인	3,038	16	133	764	1,972	34	119
		100%	0.5	4.4	25.2	64.9	1.1	3.9

* 출처: 여성가족부(2016b). 2016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5.

<표 Ⅲ-7-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수는 33,005명이었다. 이 중 19세미만 청소년은 총 9,471명으로 나타나 전체 성폭력 피해자중 28.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7세 미만이 303명(0.9%), 7-13세 미만이 2,100명(6.4%), 13-19세 미만이 7,068명(21.4%)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수도 2016년의 경우 총 913명으로 상당히 많았으며,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 7세 미만이 16명, 7~13세미만이 133명, 13~19세 미만 764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성폭력 피해자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성적인 피해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표 Ⅲ-7-46>), 조사대상 청소년 중 3.8%의 청소년이 '성적인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청소년이 3.5%, 여자청소년이 4.2%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5.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3.8%, 고등학교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10.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4.4%, 양부모가정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가 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상'이 3.8%, '중'이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하'가 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이 3.9%, '중'이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7-46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3.8	96.2	100.0(8,968)	-
성별	남자	3.5	96.5	100.0(4,659)	2.446
	여자	4.2	95.8	100.0(4,309)	
학교급	초등학교	5.3	94.7	100.0(2,589)	27.234***
	중학교	3.8	96.2	100.0(2,898)	
	고등학교	2.7	97.3	100.0(3,481)	
지역 규모	대도시	3.8	96.2	100.0(3,746)	0.570
	중소도시	4.0	96.0	100.0(3,946)	
	읍면지역	3.5	96.5	100.0(1,2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7	96.3	100.0(8,120)	11.655**
	한부모가정	4.4	95.6	100.0(646)	
	조손가정	10.2	89.8	100.0(85)	
	기타	2.3	97.7	100.0(109)	
학업 성적	상	3.8	96.2	100.0(3,021)	5.311
	중	3.4	96.6	100.0(3,845)	
	하	4.6	95.4	100.0(2,097)	
경제적 수준	상	3.9	96.1	100.0(4,891)	2.884
	중	3.4	96.6	100.0(3,138)	
	하	4.6	95.4	100.0(935)	

**p<.01, ***p<.001

연도별로 성적인 피해 경험여부를 살펴보면([그림 Ⅲ-7-15]), 전체 성적인 피해경험자 비율은 2013년 3.3%, 2014년 4.0%, 22015년 3.9%, 2016년 4.3%. 2017년 3.8%로 나타나 3.3%~4.3% 사이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에 2.6%, 2014년에 4.8%, 2015년에 4.3%, 2016년에 4.8%, 2017년에 5.3%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2013년에 3.8%, 2014년에 3.8%, 2015년에 3.9%, 2016년에는 4.4%, 2017년에 3.8%로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에 3.3%, 2014년에 3.4%, 2015년에 3.6%, 2016년에 4.0%, 2017년에 2.7%로 나타나 2016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반계고는 2013년에 3.5%, 2014년에 3.4%, 2015년에 3.6%, 2016년에 3.9%, 2017년에 2.7%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계고는 2013년에 2.8%, 2014년에 3.8%, 2015년에 3.9%, 2016년에 4.1%, 2017년에 2.9%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전체의 경우처럼 2016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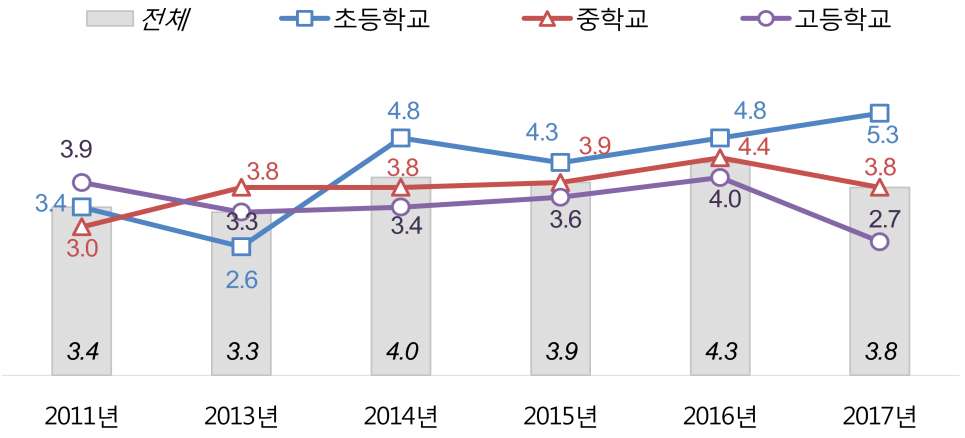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Ⅲ-7-15】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45) 통계자료집, p.255. 〈표 Ⅲ-7-11-1〉 참조

③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표 Ⅲ-7-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제공한 사람과 관련된 질문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3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가 27.6%, 부모님 18.6%, 교사 7.5%, 형제자매 2.9%, 선후배 1.5%, 경찰 1.3%, 전문상담가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로부터의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47 성적인 피해 시 도움을 받은 사람 (단위 : %(명))

구분		없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	형제자매	교사	전문상담가	경찰	기타	전체(N)
전체		39.2	27.6	1.5	18.6	2.9	7.5	0.6	1.3	0.9	100.0(341)
성별	남자	40.2	25.5	1.1	20.8	2.6	7.8	0.7	1.3	0.0	100.0(163)
	여자	38.3	29.5	1.9	16.5	3.2	7.2	0.5	1.3	1.7	100.0(178)
학교급	초등학교	20.3	26.4	0.6	37.8	5.0	8.5	0.0	1.6	0.0	100.0(137)
	중학교	52.7	26.8	1.3	4.2	1.7	8.4	1.0	2.0	1.9	100.0(110)
	고등학교	50.8	30.2	3.2	7.6	1.3	4.9	0.9	0.0	1.0	100.0(95)
지역규모	대도시	36.7	30.7	2.1	17.6	4.4	4.9	0.6	2.3	0.8	100.0(141)
	중소도시	41.3	23.6	1.4	19.8	1.7	10.1	0.7	0.8	0.6	100.0(155)
	읍면지역	39.8	31.7	0.0	17.4	2.6	6.5	0.0	0.0	2.0	100.0(4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39.7	27.0	1.2	18.7	2.5	7.8	0.7	1.5	1.0	100.0(300)
	한부모가정	33.9	37.5	0.0	12.3	9.2	7.1	0.0	0.0	0.0	100.0(28)
	조손가정	33.5	29.0	9.4	28.0	0.0	0.0	0.0	0.0	0.0	100.0(9)
	기타	42.5	0.0	0.0	57.5	0.0	0.0	0.0	0.0	0.0	100.0(3)
학업성적	상	42.8	25.3	1.7	21.2	1.0	6.9	0.0	1.1	0.0	100.0(112)
	중	31.0	29.9	1.4	23.2	3.7	6.8	0.0	2.4	1.6	100.0(131)
	하	45.3	27.5	1.6	9.5	4.1	9.1	2.1	0.0	0.9	100.0(97)
경제적수준	상	41.3	24.6	1.2	23.1	1.4	6.2	0.6	1.7	0.0	100.0(190)
	중	32.2	34.5	0.0	17.1	3.4	9.1	0.8	1.1	1.9	100.0(107)
	하	45.8	24.5	6.8	2.9	8.7	9.2	0.0	0.0	2.1	100.0(43)

주) 2017년 조사에서는 전년도 보기문항 중 '선배'가 '선·후배'로 수정되었으며, '인터넷'이 제외되었음.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더라도([그림 Ⅲ-7-16]),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친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과 교사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상담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과 학교유형별로 살펴봤을 때에는 중학교와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교와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의 경우 성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친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 부모의 순으로 많았다[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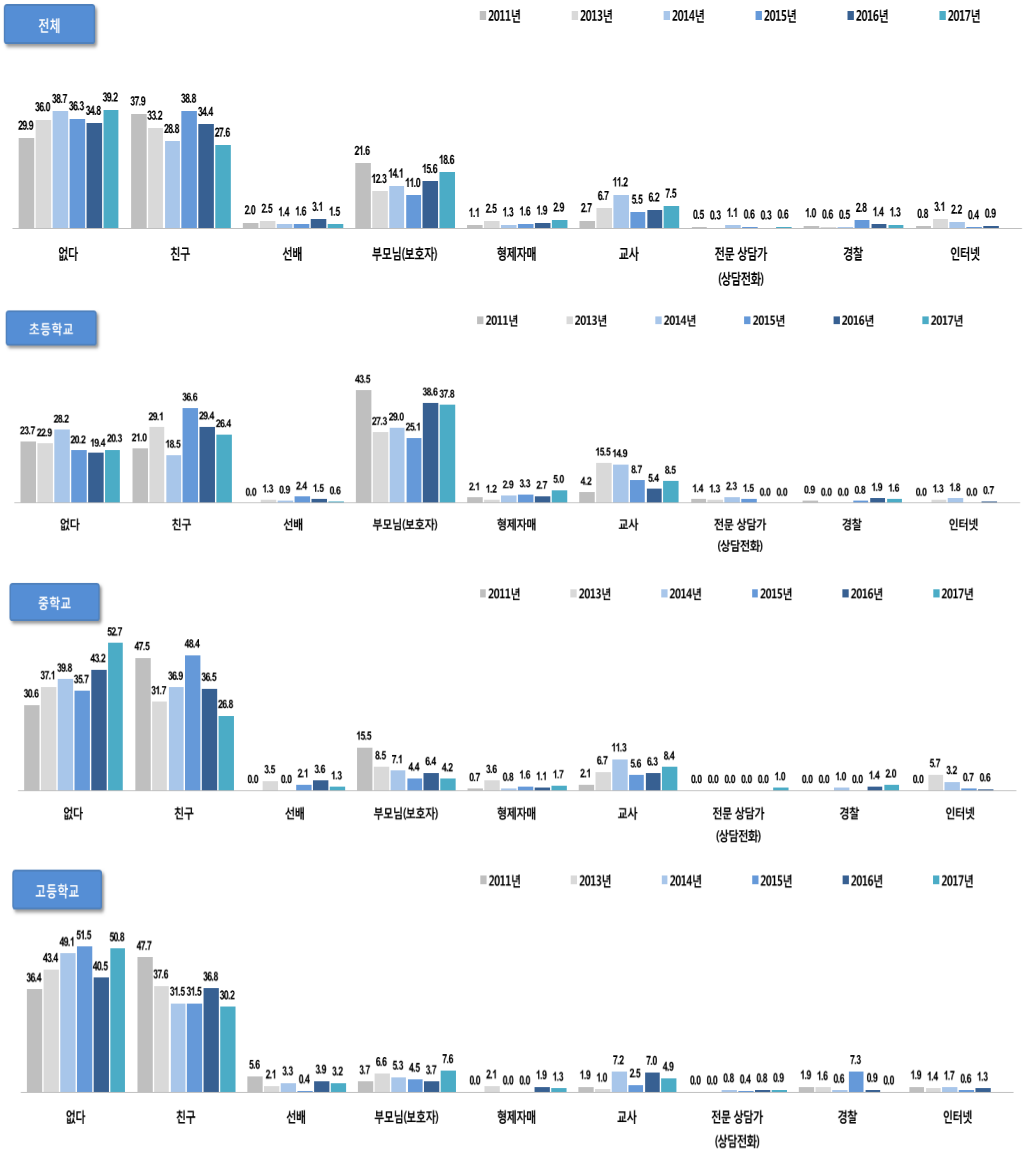

* 주 : 2017년 조사항목에는 '인터넷' 미포함. 그래프작성시 '기타' 값 제외함(단위: %)

【그림 Ⅲ-7-16】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연도별 추이)

46) 통계자료집, p.257. 〈표 Ⅲ-7-12-1〉, 〈표 Ⅲ-7-12-2〉 참조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약간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높다. 하지만 부모님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교사로부터의 도움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① 아동 ·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4,412명이 접수되었으며 이 수치는 전년대비 6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48>). 처분과 기소현황도 2015년에는 4,399명이 처분 받았으며, 이 중 1,684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자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2,587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4,412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처분자 역시 2008년에는 2,593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4,399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48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08	2,587	2,593	951	198	1,095	349
2009	2,699	2,696	920	167	1,197	412
2010	3,722	3,661	1,312	399	1,253	958
2011	3,978	3,922	1,312	399	1,253	958
2012	4,215	4,147	1,482	388	1,220	1,057
2013	4,431	4,443	1,808	153	1,280	1,202
2014	4,352	4,423	1,748	14	1,367	1,294
2015	4,412	4,399	1,684	0	1,399	1,316

* 출처: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p.539. 대검찰청(2014). 검찰연감. p.492.
대검찰청(2015a). 검찰연감. p.537. 대검찰청(2016b). 검찰연감. p.516.
* 주: 1) 산출죄명: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
2)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②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에는 2013년 이후 변화가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7-49>와 같다.

표 Ⅲ-7-49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개정 전	개정 후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 의제유사강간	–	징역 2년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목적판매·배포·전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상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출처: 법제처(20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① 성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표 Ⅲ-7-50>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30개소이며, 전년대비 동일한 수의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개소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에 20개소에서 2016년에 30개소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성폭력 피해율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5: 468). 2016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은 363명이며, 성폭력 피해자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총 166명으로 전년대비 13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7-5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 도	개소수	입소정원	종 사 자 수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
2009년	20	214	116	69	47
2010년	19	209	100	72	28
2011년	19	209	90	64	26
2012년	22	249	104	96	8
2013년	23	264	124	104	20
2014년	29	310	153	193	14
2015년	30	353	179	150	29
2016년	30	363	166	150	16

* 출처: 여성가족부(2016b). 2016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0.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의 연령별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표 Ⅲ-7-51>), 2016년 현재 총 295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이중 24세 이하는 226명으로 총 76.6%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미만은 1명(0.3%), 5~12세 이하는 13명(4.4%), 13~18세 이하는 117명(39.7%), 19~24세 이하는 95명(32.2%)이었다.

표 Ⅲ-7-5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7세 미만	7-13세	14-19세	20세 이상
2009년	전체	312	13	33	125	141
		100%	4.2	10.6	40.1	45.2
	장애인	90	0	3	33	54
		100%	0	3.3	36.7	60.0
2010년	전체	282	10	30	120	122
		100%	3.5	10.6	42.6	43.3
	장애인	90	0	5	29	56
		100%	0	5.6	32.2	62.2
2011년	전체	226	14	15	88	109
		100%	6.2	6.6	38.9	48.2
	장애인	64	–	–	22	42
		100%	–	–	34.4	65.6
2012년	전체	236	10	12	108	106
		100%	4.2	5.1	45.8	44.9
	장애인	78	1	1	25	51
		100%	1.3	1.3	32.1	65.4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3년	전체	238	5	15	113	44	60	1
		100%	2.1	6.3	47.5	18.5	25.2	0.4
	장애인	103	-	3	36	26	37	1
		100%	-	2.9	35.0	25.2	35.9	1.0
2014년	전체	285	2	19	141	59	63	1
		100%	0.7	6.7	49.5	20.7	22.1	0.4
	장애인	167	0	4	66	42	54	1
		100%	-	2.4	39.5	25.1	32.3	0.6
2015년	전체	286	4	20	132	77	53	0
		100%	1.4	7.0	46.2	26.9	18.5	0
	장애인	165	0	4	62	54	45	0
		100%	0	2.4	37.6	32.7	27.3	0
2016년	전체	295	1	13	117	95	68	1
		100%	0.3	4.4	39.7	32.2	23.1	0.3
	장애인	180	0	2	54	69	55	0
		100%	0	1.1	30.0	38.3	30.6	0

* 출처: 여성가족부(2016b). 2016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1.

②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표 Ⅲ-7-52>), 2016년의 경우 전체 상담자 1,353명 중 여성이 1,267건으로 93.6%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81건으로 6.1%를 차지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7세 이하가 36건(2.7%)이었으며, 8~13세가 92건(6.8%), 14~19세가 179건(13.2%)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의 성인은 1,027건으로 전체 상담인원의 75.9%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체 상담건수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Ⅲ-7-52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연령대 / 성별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964 (71.2)	168 (12.4)	87 (6.4)	33 (2.4)	15 (1.1)	1,267 (93.6)
남	61 (4.6)	11 (0.8)	5 (0.4)	3 (0.2)	1 (0.1)	81 (6.1)
총계	1,027 (75.9)	179 (13.2)	92 (6.8)	36 (2.7)	19 (1.4)	1,353 (100.0)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17.2.7). 2016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p.3.

<표 Ⅲ-7-53>에서 보듯이 현재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2016년에 377명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대비 8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94명에서 2016년 377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7-53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단위 : 명)

연도별	중앙센터	40시간 교육									지적장애	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2006	24	–	20	10	26	–	–	–	–	–	14	94
2007	108	5	58	62	47	–	–	–	–	–	25	305
2008	–	45	47	45	43	–	–	–	–	–	25	205
2009	–	44	43	36	39	34	42	–	–	–	17	255
2010	–	52	60	40	48	29	46	50	18	–	29	372
2011	–	38	46	31	31	31	43	50	18	24	21	333
2012	–	31	44	43	41	31	39	48	24	29	25	355
2013	12	22	30	31	29	27	32	26	16	30	23	278
2014	–	39	42	43	36	40	18	41	17	42	37	355
2015	–	34	40	39	43	42	24	38	34	40	35	369
2016 (12월)	–	35	40	39	49	34	36	39	30	39	36	377

* 출처: 여성가족부(2016c). 2016 청소년백서. p.269.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6). 내부통계자료.

③ 재활을 위한 심리 · 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은 2016년에 총 97,566건으로 전년대비 4,55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Ⅲ-7-54>), 2009년 이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서비스 유형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49,942건(51.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립지원이 10,661건(10.9%), 의료지원 8,807건(9.0%), 학교문제 지원 7,204건(7.4%), 수사·법적지원 1,018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의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Ⅲ-7-5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단위 : 건, %)

연도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 지원	기타
2009년	14,570	8,165	417	2,626	789	401	2,172
	100%	56.0	2.9	18.0	5.4	2.8	14.9
2010년	18,218	12,666	311	2,276	688	868	1,409
	100%	69.5	1.7	12.5	3.8	4.8	7.7
2011년	21,274	15,843	268	2,824	528	453	1,358
	100%	74.5	1.3	13.3	2.5	2.1	6.4
2012년	28,581	15,395	453	3,894	2,096	791	5,952
	100%	53.9	1.6	13.6	7.3	2.8	20.8
2013년	42,678	23,246	1,126	6,021	2,749	2,595	6,941
	100%	54.5	2.6	14.1	6.4	6.1	16.3
2014년	56,960	26,015	2,448	7,369	3,425	5,144	12,559
	100%	45.7	4.3	12.9	6	9	22
2015년	93,012	50,046	2,260	11,560	6,444	9,163	13,539
	100%	53.8	2.4	12.4	6.9	9.9	14.6
2016년	97,566	49,942	1,018	8,807	7,204	10,661	19,934
	100%	51.2	1.0	9.0	7.4	10.9	20.4

* 출처: 여성가족부(2016b). 2016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4.

5) 소결

특별보호조치의 지표체계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중분류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소년사법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로 나누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관련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 등 3개의 소분류로 구분하여 관련 지표들을 조사하였다. 소년사법아동의 인권실태과 관련해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수용률,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비율,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등 3개의 소분류로 구분하여 관련 지표들을 조사하였다.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정도 등 3개의 소분류로 구분하여 관련 지표들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정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 등 3개의 소분류로 구분하여 관련 지표들을 조사하였다.

먼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우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탈북 난민 아동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조사되었다. 우선 아동·청소년 난민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총 22,792명이며, 이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총 1,015명(4.5%)이었다. 그리고 2016년 한해 동안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7,542명이었으며, 이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342명(4.5%)이었다. 특히 2013년 7. 1.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처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수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69명, 2014년 129명, 2015년 315명, 2016년에 34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난민인정자의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의 경우 전체 인정자 98명 중 48.0%에 해당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을 한 전체 인원 중에서 불인정이나 철회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중이 2014년에는 72.8%, 2015년에는 74.5%, 2016년에는 76.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입국자수는 2011년 이후 다소 주춤한 상태이며,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청소년의 규모도 북한정권의 지속적인 체제 단속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의 남한 입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탈북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탈북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5년도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친구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로 나타났으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심한 차별이 7.5%, 교사로부터의 심한 차별이 4.4%, 이웃으로부터의 심한 차별이 3.1%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경험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은 한국사회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과 관련하여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향후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다수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자녀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탈북학생의 정규학교

재학생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의 학교생활 지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심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률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도탈락률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학업중단자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며, 고등학교에서의 중도탈락률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다문화예비학교 수와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을 돕는 다문화예비학교의 수는 매년 강화되고 있고,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의 수용,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과 관련하여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는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이 2015년에 총 2,001명이며, 이중 1개월 이하 8호 처분에 수용된 소년은 42.3%, 9호 처분(단기소년원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은 30.6%, 2년 이하 10호 처분(장기소년원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은 21.8%이었다. 그리고 수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8호 처분과 9호 처분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장기에 해당하는 10호 처분의 경우에는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 역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범죄유형은 강간(20.8%)과 절도(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인 배치인원수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와 학대의 피해를 받은 아동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이 주목적인 국선변호사 접수건수와 지정건수, 지정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국선변호사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비행소년 대상 소년원의 교육체계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등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교도소 수용청소년의 처우불복제도와 관련하여 처우불복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청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소·고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청원과 행정소송, 고소·고발은 2008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수는 2013년 이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 인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자 수는 2014년 대비 2015년에도 소폭 감소하였으며,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수도 2015년에 총 4,410명으로 2014년 대비 1,11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2012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년범죄 전체 인원수 대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4%에서 2015년 2.0%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과 관련해서도 전체 기소유예자의 수와 비율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추세들은 소년사법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징계방침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적인 청소년의 근로조건, 근로시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시 폭력예방 노력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였다. 우선 인권침해적인 청소년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과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2.2일이었으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176.7시간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2014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1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연령별로 구분하더라도 증가추세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연령대의 시간당 임금총액과 2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근로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과 관련해서는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과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비율은 2015년 23.8%로 OECD 평균인 30.8%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과 비교할 때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체 청소년의 12.2%가 경험한 적이 있으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그리고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나 대도시보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7.5%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임금피해 경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중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거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한 경우도 17.1%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도 65.5%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측면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과정에서의 부당해고 경험도 7.9%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부당해고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취약 청소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폭언 등의 인격모독을 경험한 청소년도 12.3%로 나타났으며, 작업환경의 불결함과 위험을 경험한 비율도 15.0%로 나타났다. 특히 불결함과 위험의 경험비율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로 2016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성적피해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4.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적 피해에 대해서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성적 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남자청소년, 중학교, 중소도시, 조손가정,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피해경험은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20.5%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청소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은 표면적으로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근로시 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정도와 관련해서는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결과와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 교육률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청소년근로관련법 점검결과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공식통계는 2014년 이후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그 이전의 통계결과에 기초하여 유추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2014년에 제시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점검과정에서 평균 85.3%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청소년근로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적발건수는 근로조건 미명시였다. 따라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청소년근로관련법 위반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연소자인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김영지 외, 2016: 517). 청소년고용사업장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율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시행된 청소년 근로권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점검업소 대비 적발업소의 비율은 51.5%이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청소년근로관련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변화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노동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근로조건 명시위반(최저임금)이 217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및 야간휴일 근로 미인가 및 임금체불이 37건,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이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정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청소년 성폭력예방 노력정도는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2017년 9월 현재 총 1,259명이며,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신상공개자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청소년의 성적피해 경험률,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16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수는 33,005명이었으며, 이 중 아동·청소년은 9,471명으로 28.7%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도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중 3.8%가 성적인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와 관련해서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가 27.6%, 부모님 18.6%, 교사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형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2015년의 경우 총 4,412명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4,399명이

처분을 받았고, 1,684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전년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수,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인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말 현재 30개소, 입소정원은 363명, 성폭력 피해자시설 종사자 수는 16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 중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226명으로 총 76.6%를 차지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서비스를 받은 사람 중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2.7%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총 377명의 청소년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정서적 지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자립지원, 의료지원, 학교문제 지원, 수사·법적지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Ⅳ 장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현황과 과제

1. 아동권리협약 이행 성과와 과제
2. 아동·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제 Ⅳ 장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현황과 과제[47]

Ⅳ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절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성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협약 영역별로 관련 협약 조항과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협약 이행 성과를 정부의 법·제도·정책 등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한 신규 추진사항 제안이나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개선하거나 강화할 점 등 협약이행 방향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은 본 연구진과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집필진이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협약이행 성과 평가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검토하였다.[48]

---

47) 이 장의 1절의 집필자는 다음과 같다. 이호균 고문(아동행복포럼)이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을, 김형욱 시민인권보호관(서울시)은 1) 일반원칙과 2)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전경숙 교수(평택대학교)는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및 7) 특별보호조치 중 다문화와 노동분야를, 이승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3) 폭력 및 학대, 7) 특별보호조치 중 성매매와 소년사법 등을, 김미숙 교수(서울기독대학교)는 5)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를, 이은주 교수(동국대학교)는 6)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분야를 집필하였다. 2절은 네 명의 연구진이 담당하고 있는 지표별로 집필하였으며 분담사항은 Ⅱ장의 집필자별 담당영역과 동일하다.

48) 본 연구진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작업을 추진하면서 국가보고서 집필진과 전문가협의회 구조를 마련하여 협약이행 성과 평가작업을 수행하였다. 국가보고서 작업은 2016년 7월 협약이행 실적자료 수집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유엔에 제출할 영문번역 작업을 거쳐 2017년 12월 22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기까지 전문가협의회와 함께 작업과정을 거쳤다.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협약이행 성과는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협약이행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1차 취합 : 2016년 7~9월, 2차 취합 : 11월)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 수행한 협약이행 성과 평가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분석 대상으로 국가보고서 초안인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2017년 3월 7일 공청회 발표자료로 활용됨)'와 최종본인 '대한민국정부 (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둘 다를 분석자료로 참고하였다. 국가보고서 최종본은 유엔의 영문단어 21,200단어 분량제한으로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 구체적인 정보·자료는 국가보고서 초안을 병행 참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에서 인권정책과제 개발 워크숍을 통해 국가보고서 초안을 중심으로 협약이행 현황을 요약 정리한 바 있다(2016년도 보고서 부록 5.). 2017년도 작업은 국가보고서 초안 이후 변화된 정보를 추가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행과제 제안을 강화하였다. 제3·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부처별 추진실적을 취합·정리한 세부자료는 '부록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부처별 추진

본 장의 2절에서는 Ⅲ장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설문조사와 행정통계 등을 통해 파악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요약하면서 정책과제 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절과 2절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과제 아이템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Ⅴ장에서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1. 아동권리협약 이행 성과와 과제[49)]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협약조항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인권일반 영역은 아동권리협약 상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제4조), 협약 홍보(제42조),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등과 관련된다.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에는 유보조항,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과 담당조직, 예산배분, 국제협력, 독립적 인권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동권리와 기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제3·4차 권고를 통해 입양허가제 도입 등 유보조항 철회, 국내법에 협약 적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아동 인권증진 관련 국가행동계획 수립, 아동예산 확충 및 자료수집 방법 개선,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국제원조 및 기업참여 독려, 독립적 아동 모니터링 기구 설치 등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8-27).

일반원칙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 4가지를 말한다. 따라서 차별금지(제2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제3조),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아동의 의견 존중(제12조)은 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모든 정책 및 제도 등의 추진에 있어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사항'으로 제시하였고, 협약이행 평가를 통해 이행과제별 이행노력 정도(적극이행, 이행추진 중, 이행미흡)를 실험적으로 정리해본 결과는 '부록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표'로 제시하였다.

49) 본 절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과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등 국제기구 공식문서의 경우는 출처표기 시 가급적 문서의 문단번호(paragraph)를 표기하여 정확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단번호 표기방법은 출처자료의 연도 다음에 'para' 표시형태로 제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①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②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③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하여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과 관련해서는 ① 법률·행정·사법절차정책·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이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② 모든 사법·행정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① 아동의 가정 내 및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② 아동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및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의 의견 존중과 관련해서는 ①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 ②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 등 조치를 취할 것, ③ 부모·교육자·정부행정공무원·사법부 등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 ④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⑤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28-35).

(2) 협약이행 평가

① 인권일반(일반이행조치)

유보조항과 관련하여 입양특례법, 민법 및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도가 도입되었고, 협약 가입 당시 유보하였던 협약 제21조(a)항을 비준하고 유보가 철회된 것(대한민국정부, 2017: para. 3)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입양의 절차와 조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3년 5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서명하였고, 2016년 9월 '헤이그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과 함께 '헤이그협약'의 비준도 진행할 예정이었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4).

그러나 아직 소관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진전이 되지 않고 있어서(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

입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협약이행을 위하여 정부는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해 왔으나 이러한 법들이 아동의 이익 최우선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이어졌고, 상응하는 예산이 배정되고,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국가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법 집행 이후 법 제·개정으로 인하여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이로 인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법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모니터링 차원의 평가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잦은 법 개정은 현장에서의 필요를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법 개정에 근거한 정책의 수시 변화로 인하여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이후 법 집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재개정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한부모 등 취약상황에 있는 청소년 지원 법률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11년과 2014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 학습비 지원 등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요청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7).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아이를 입양시키라는 강요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방지하는 법조항도 도입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8).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고 주거지원 및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로서의 지원혜택 상실을 우려하여 항구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현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보완대책 고민이 필요하다. '10대에 출산한 모의 자녀양육과 양육지원에 관한 일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 모의 양육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사'에 응답한 한국 청소년 미혼모 응답자의 57.8%는 자녀 출산 시 출산시설에서 기거하였고, 22.5%는 출산아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森田明美, 2016: 78), 현재 동거 중인 사람으로 출산아의 아버지는 1%라고 응답하였고(森田明美, 2016: 91), 이는 청소년 미혼모의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동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첫째아이 출산 후 3세가 될 때까지 출산아의 아버지나 파트너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60%대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森田明美, 2016: 15) 양국의 제도나 서비스에 어떤 면이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청소년 한부모에게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녀양육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지원 상실 우려로 출산아 아버지와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이 대상별로 나뉘어져 있어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한계를 보이는 경우로 보여 아동가족복지법 안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 자체를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미혼모가 불법낙태의 위험과 입양 강요에서 보호받도록 관계 법령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청소년 임신과 관련하여 동 자료에 의하면 첫 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임신 12주에 16.7%인 것을 제외하고 임신 2주~11주, 임신 13주~24주 모두 10%미만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보여준다(森田明美, 2016: 77).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매우 박약한 것은 비현실적인 교육에서 기인한 면이 있으므로 법적 논의와 함께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임신을 예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조정과 관련된 권고에 대해 아동정책은 아동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위원회나 부총리 주재의 사회관계장관 회의 또는 장·차관이 주관하는 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조정하고 있고(대한민국정부, 2017: para. 9-10) 그 대표적인 것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소년청소년기본정책'과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등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기본계획과 정책은 연령이 중복되면서 정책 또한 중복되고 이로 인한 위원회의 역할 역시 일정 부분은 중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포괄적으로 평가, 조정, 심의하는 정례화된 회의 또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1).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상위 위원회를 검토하거나 이분화되어 있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관련법과 부처를 통합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합한 아동·청소년미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대한민국국회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260).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행동계획 수립 권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2015년 5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이행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2016년 9월 정부에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1). 국가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정책 중에서 5~7개 정도 선별하여 정부에 권고한 사항들이 포함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1기 인권정책기본계획(NAP)는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에, 제2기 인권NAP는 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3기 인권NAP는 정부가 수립한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관한 평가, 인권상황실태, 국내외 기준과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아동인권분야에서는 아동학대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1)아동의 불법입양 등 출생신고 제도 개선, 2)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확대, 3)교육권 및 놀권리, 4)경쟁적 입시 및 교육제도 개선, 5)각종 아동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9.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아동인권분야는 주로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는 바, 우리나라 아동의 인권현황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대표지표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2). 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 목표달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약의 이행은 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국가인권위원회, 2017. 5: 6)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중에서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지표들을 선별하고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상황을 포괄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대표지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 모니터링 실시 권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이행하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가 201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으로 이관되었고, 2017년부터 2월 아동·청소년인권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4월 소위원회 내에 위원장과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8).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5월에 11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인권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17)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위원장만 상근인력이고 2명의 위원은 비상근이며 자문위원회 성격의 아동인권전문위원회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이 향상될수록 권리침해 사례에 대한 진정사건은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상근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에 대해 국가보고서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방과후 돌봄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영유아 보육료,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보육·가족·여성 예산, 유·초·중등학교 교육예산 등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아동예산과 관련하여 연도별 예산증액과 서비스 대상의 증가만 보여줄 뿐 자원의 할당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동예산은 GDP대비 3%에 머물러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6-7).

정부는 2019년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아동정책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5). 이에 따라 재정투자가 아동의 삶에 끼친 영향은 그 이후 확인가능한 상황이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중장기적인 재정투자 계획은 예산규모가 확실한 제1차 년도를 제외하고는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정부의 중기투자계획에 기초한 대략적인 수치라고 판단된다.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완전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아동·청소년 예산을 좀 더 치밀하게 추산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자료수집 방법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별로 자료가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다. 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무엇보다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21).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분야별 국가통계를 통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정부 부처별로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교육 관련 전수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다양한 패널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체계적인 이행에 필요한 통계생산을 위해 지표체계를 분석하고 있고, 빈곤아동의 규모와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20). 이후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자료들을 협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별로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였고, 학교 교육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킬 것과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할 것과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23). 국가보고서는 이 권고에 부합하고자 아동권리교육 활성화와 협약 홍보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별로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대상의 다양한 권리교육 내용과 홍보를 실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21-22).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과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인권강사를 양성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교재를 개발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아동권리교육을 포함시켜 아동관련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청소년지도자 대상의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권역별 순회교육, 찾아가는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및 검찰수사관, 소년보호기관 종사자 대상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9-20).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가 주로 아동·청소년 업무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정부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관련 홍보물이나 교육자료 또한 각 부처별로 제작・배포되고 있는데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아동권리 인식개선 효과 평가결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권리 교육 강사의 인력풀을 전담 기구에서 일관되게 관리·양성하고, 관련 교육교재나 홍보물에 대한 심의창구를 마련하여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내용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교재와 홍보물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는 아직 미흡하고, 따라서 국민전체의 아동권리 인식도는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서 대중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든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아동권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자료의 배포와 영상물의 상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일반원칙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문화와 개선을 위한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칭)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과정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보수단체 등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개별 국내법들과의 법체계적 조화 등을 고려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 중' 이라고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33).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시민의 인권보장 위한 조례 제정과 이행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있어 왔다(서울특별시청, 2017: 84). 하지만 조례 제정과 추진 또한 일부 보수단체 등의 폐지 운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시민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간의 기본 질서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도지사에게 요구한 것에 대해, 폐지는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차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에 13~18세 청소년 성소수자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에서 동성애자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하거나 동성 간의 교제를 금지하고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징계하며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정부정책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차별실태 파악과 대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36).

다문화 가구는 2005년에 154,333가구였으나, 2015년에는 278,036가구로 80% 증가하였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동법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추진되고 있다.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근거가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34). 교육부는 2013년에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부당한 징계나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38). 하지만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2014년 발표한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에 의하면 많은 중·고등학교가 이성교제에 관한 '퇴학'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5: 12).

아동자살 방지를 위해 정부는 2012년에 자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규정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관련 부처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Wee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에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어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인증제를 도입하였다. 2016년에는 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내용이 법제화되었고, 2015년에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한민국정부, 2017: para. 40-41).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해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5년 5월,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이 수립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과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는 2016년 기준 20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46).

정부는 2016년 3월 아동복지법에 '아동정책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아동총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보호시설의 아동·청소년자치위원회 등)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아동·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47-48).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이나 정책, 사법부 판결례 등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언급되는 비율이 낮은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에 관한 활동 및 결정례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포함한 협약상의 권리가 언제나 언급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5: 13).

학교에서의 학생의 의견표명은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학생참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를 적극 개선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의회 등 참여기구를 운영하여 의견표명권을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51-52). 학교 밖에서는 대한민국아동총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다양한

참여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참여기구가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에 기여했는지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관련 연구를 통해 청소년 참여활동의 영향을 파악한 결과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이 반영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58).

(3) 협약이행 과제

일반이행조치 분야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와 자원 등 인프라와 관련되며, 향후 개선 방향은 앞의 협약 이행성과 평가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 제・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아동・청소년 관련법이 제・개정 되었으나 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법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아동 삶의 질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취약집단 지원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현장 적용 과정의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청소년 한부모와 그 가족(출산아의 부 또는 파트너)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등 아동인권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상위 위원회 설치 방안, 중장기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의 통합과 부처 통합에 대한 논의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자료수집 관련 권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통계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아동인권의 변화와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아동인권 지표를 SDGs 지표 등 국제적 지표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통계에서 아동・청소년 연령별 분리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분야 중장기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의 산출 및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자료 개발과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권리 강사 현황, 교육과정, 교육교재, 홍보물 등이 산발적으로 발간·교육되고 있어,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 기획·관리하여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교육 전문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협약의 일반원칙을 이행한다는 것은 아동권리보장의 형식적 차원의 이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다양한 권리 영역들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모니터링 지표가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협약 이행과 관련한 성과의 내용을 보듯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

첫째, 우리 사회의 모든 형태의 차별적 관행이나 관습을 없애기 위해 (가칭)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성적지향과 관련한 일부 제정 반대운동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황옥경 외, 2015: 37-38).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포함) 폐지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아동의 삶의 공간이다. 아동·청소년들은 정부보다는 지자체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협약의 정신을 구현하고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추진전략인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조례라는 지자체 입법조치를 통해서, 또는 개별정책이나 사업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은 당면한 과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중앙 및 지자체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 추진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16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정책영향평가 조항이 신설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과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가 복지영역뿐만이 아니라 교육, 소년사법 등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지자체에서도 아동영향평가가 정책추진의 기본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시기, 절차 및 추진체계,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영향평가는 필요하면 설문조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끔 대표단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는 자리 마련하고, 평가지표 몇 가지 만들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다. 아동·청소년권리의 관점에서 협약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면서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한 세밀한 과정과 노력이 중요하다.

넷째,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의 법적근거 정비 및 운영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는 필요에 따른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가 법적근거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하더라도 참여와 관련된 시간, 공간, 방법, 지원체계 등에 있어 아동·청소년 인권친화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협약조항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의 협약조항은 제7조(출생등록 및 국적), 제8조(성명권 등),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4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5조(결사집회의 자유), 제16조(사생활의 자유), 제17조(정보접근권)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생등록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법적 지위 및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하고,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명시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36-37).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협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조치할 것, 식단 등 특정 종교의 구체적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38-39).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법률·교육부 발행지침·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40-41).

(2) 협약이행 평가

아동의 출생등록은 2016년 5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 의무자가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자체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60). 2017년에는 대법원과 행정자치부가 협력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24(정부민원포털), 분만병원 전산망을 연계하여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60). 이 제도가 조속히 추진되는 것과 더불어 공적의료기관 이외에서 출산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적법에 따라 부모양계 혈통주의와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어 출생등록은 본국법에 따라 자국 공관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자국 공관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자녀의 경우에는 병원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59). 하지만 난민 등에 대한 외국인 등록은 체류자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는 갖추어져 있지 않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5: 15).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를 포함한 초·중등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종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학생에게는 대체식품을 추가하여 주는 등 개별관리 및 영양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영양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 식단정보를 사전에 가정통신문 등으로 가정에 알려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61-62).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과 관련하여,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교사, 보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63).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학교는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으며, 일기장 등 사적 기록물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성적이나 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 관련 학생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64).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안전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학생선도 및 징계를 위한 목적 외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5: 17).

학교에서 학생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보장은 학교규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법률과 제도를 통해 형식적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에 실시한 학교규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36개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 중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는 곳은 27곳에 불과하며, 학생의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곳은 113곳,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갖고 있는 곳이 1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집회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사나 학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두는 규칙이 현저히 많았다(국가인권위원회, 2016c: 201).

(3) 협약이행 과제

아동·청소년들도 마땅한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성인사회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다.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지만,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일부 권리의 제한은 관행적으로 당연시 되는 경우도 있다.

첫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미등록 아동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은 우선 병원에서의 분만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외 조산원이나 일반가정 등 사각지대 출산아동의 미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보완하여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관리하고,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적과 별도로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영지, 김희진, 2015: 46).

둘째, 학교규칙 내 인권침해 조항 모니터링 및 개정 작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규칙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은 즉시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교육자치단체에서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규칙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이나 징계 사실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자치활동이나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차별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 행사와 관련해서는 교사나 학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두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벌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어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선도로 이어지는 경우 등도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6c).

셋째,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보장 관련 법률조항 및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991년 협약 비준 이후, 유엔아동아동권리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권고가 있었고,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은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참여권 보장을 위한 조항은 여러 법률에서 보완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 그치고 있고, 선언적 규정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령기준과 내용에 대한 인권적·합리적 검토 등도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에서 의견표명 및 참여권 보장 조항은 무엇인지, 이 조항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청소년인권보호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와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보호기구(학생인권옹호관제도 등)가 운영되는 곳은 17개 광역교육자치단체 중 4곳(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 불과하다. 여전히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보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대한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3) 폭력 및 학대

(1) 협약조항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와 관련된 협약조항으로는 아동에 대한 체벌, 고문 등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학대를 포함한 혹사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제19조),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 폐지(제24조 제3항), 아동학대, 유기 및 어떠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해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① 가정·학교·기타 기관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할 것, ②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 아동학대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 실시, ③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및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며, 처벌피해자 아동이 처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41-43)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학대·방임·폭력에 대하여는 ① 아동학대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재활지원 등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③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를 고려할 것, 아동폭력보고서(A/61/299) 권고사항 이행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를 우선할 것, ④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개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하는 법 도입, 자료수집 및 분석, 보급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 관련 연구 등의 내용을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 ⑤ 아동폭력에 관하여 UNICEF, UNOHCHR, WTO, ILO등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44-49).

(2) 협약이행 평가

정부는 체벌 관련 법령을 제·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체벌을 할 수 없고, 체벌은 아동학대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 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의 훈육방법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7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근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 동행출동 근거도 마련되었다.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교육 지원과 아동학대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금지, 피해아동 취학 원활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하여도 규정을 마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71). 2015년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자의 책임 관련 규정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2016년 유아교육법에 유아의 인권보장의무와 체벌금지조항을 각각 마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72).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한 대중교육을 위해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2016년 '아동학대 방지대책'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였고, 올바른 부모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학부모 On누리 홈페이지(www.parents.go.kr)를 통해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등 16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 학부모역량개발 자녀교육서 6종을 개발·보급하고, 2014년에 학부모 교육자료 가이드북 6종도 개발·보급하였다. 대안적 훈육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벌대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권리구제절차 실시 등 학생체벌 사례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체벌관련 법 제·개정,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한 대중교육 캠페인 실시, 대안적 훈육방법 장려, 학생체벌사례에 대한 신고제도 마련을 통해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 체벌에 관하여 여전히 단위학교 학칙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훈육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간접체벌 등의 허용가능성은 열려 있으므로 이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확대하였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2013년 3,706건에서 2016년 8,302건으로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2016년 63,669개 기관 중 63,666개 기관이 99.9% 교육을 완료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80).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관련인프라 확대를 통해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1년 43개소에서 2017년 60개소로 증가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2014년 36개소에서 2017년 5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6년 5월부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개소당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83-85).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근직 전문인력을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 치료를 위해 1인의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사례수가 너무 많다. 2014년 한 해 동안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업무량은 1인단 총 245.4회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1인당 업무량은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업무 포화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기관 내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년부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동행 출동제도를 마련하고, 법무부에서 2014년 '아동학대 사건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전국 검찰청에 '아동학대범죄 대응전담검사 책임수사제'를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 및 체계를 확립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87-88).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폭력성과 충동성을 교정할 수 있는 처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원판결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수반한 단기자유형과 같은 일회성 형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으나,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일시적 형벌에 그치고 있어, 학대행위자의 폭력 성행을 교정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탁희성, 이승현, 이강민, 2014).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 2016년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을 개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90). 유엔아동기금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 및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 협력하는 등 아동폭력에 대한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92).

(3) 협약이행 과제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정부는 체벌금지관련법 제·개정 노력, 아동폭력 관련 대중캠페인 실시, 대안적 체벌방법 고안, 아동폭력 수사체계 확립, 아동폭력 관련 국가적 포괄전략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성과 외에도 아동폭력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절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체벌금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체벌금지가 직접체벌 금지뿐만 아니라 간접적 형태의 체벌도 금지된다는 세부지침의 개선이 필요하고, 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체벌금지 관련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사 체벌시 제재조항 및 간접적 체벌금지도 명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수련시설 등)에도 체벌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관련기관이 체벌금지에 대하여 명확한 이행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확충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전국 시군구에 1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2015년 55개소에 불과하다. 국비50:지방50 예산지원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기관 증설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도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율은 급증하나,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지원예산은 미확보된 상태(한국 상담원 1인당 24,998명 담당, 미국 캘리포니아주 1인당 1,860명 담당)이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인구비례단위로 전국에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전문인력 확대배치를 위한 별도의 국가지원예산을 편성하며, 아동보호전문인력의 인건비를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사례 발생시 학대행위자의 분리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노력이 있어야 하나, 경찰의 현장출동 동행횟수는 2015년 11,912건으로 30%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현장출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경찰의 현장체포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방해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현장조사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 피해아동과 장기간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력성과 충동성을 교정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함에도 학대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형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치료교정프로그램 개발,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의 경우에도 행위자 상담 및 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치료교정을 위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협약조항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영역의 협약조항에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부모지원 및 아동돌봄서비스(제18조 1, 2항), 부모와 함께 살 권리(제9조, 제10조), 가정환경 상실 아동 지원(제20조),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입양(제2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제11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가정환경 상실아동(para. 47~48)과 입양(para. 49~50)에 관한 부분으로, 가정환경 상실아동에 대하여는 ① 대안돌봄기관의 서비스 질,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강화, ②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보장 및 학대피해자 회복지원 서비스 제공, ③ 대안돌봄시설 아동의 원가족 연계지원, ④ 유엔의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의 충분한 고려 등을 권고하고 있다. 입양에 대하여는 ① 헤이그협약 기준으로 중앙입양원의 임무권한 규정 및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② 해외입양인을 위한 언어지원을 통해 입양 후 서비스체계 마련, ③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를 중요시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고려, ④ 청소년 미혼모 자녀 입양 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⑤ 모든 입양(해외입양 포함)이 명확한 임무권한과 사법적 감독 및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를 것, ⑥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 고려 등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47~50).

(2) 협약이행 평가

가정환경과 부모의 책임, 부모지원 및 아동돌봄서비스(제5조, 제18조) 관련 협약이행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미이용 부모에 대하여는 가정양육수당을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2014년에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아빠의 달'제도를 도입한 결과,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하였다.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적 책무의 일환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2016년 기준, 전국 93개소 설치)와 건강가정지원센터(2016년 기준, 전국 151개소 설치) 운영을 통해 영유아 양육 정보 제공, 부모교육, 양육 관련 도서 및 장난감 대여를 비롯하여 가족교육, 가족상담, 다양한 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93-95).

일하는 여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법률 제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법률 규정 외에 아동양육에 초점을 두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의 다변화와 사회전반의 정책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 지원 체계가 법적, 제도적으로는 상당부분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과 양육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88~90).

부모와 함께 살 권리(제9조, 제10조)의 협약이행을 위해 노력한 성과는 크다. 2013년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2015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 2016년 인천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여 이혼가정 자녀의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97). 또한 가족의 재결합(제10조)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를 허용하고,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미성년 아동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99). 한편,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아동처우에 관한 부분을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추가하고, 미등록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그 자녀가 학령기 자녀일 경우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당 학년의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항을 두어 아동보호 및 부모 자녀 간 관계유지를 보장하였다(황옥경 외, 2015).

법 개정을 통해 친권이나 양육권 결정과정에서 자녀 의견제시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추었지만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나 과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안돌봄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친가정 복귀에는 어려움이 상존한다. 아동의 의견청취가 활발히 작동되고,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친가족 복귀를 돕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가정환경 상실 아동 지원(제20조), 보호 및 양육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와 관련해서는 유엔의 권고사항이 있었던 조항으로 협약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가정 내에서 아동의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로 인정하고,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00-101). 가정해체나 빈곤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이 대안양육체제에서 성장하는 동안 원가정 지원 및 친권에 대한 적절한 개입 등을 통해 원가정 복귀를 돕고 있는데, 2016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아동이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98). 또한 대안양육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시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데, 2012년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무' 등의 법 규정을 마련하여 2013년부터 시설장 대상 아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04).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보호아동이 발생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아닌 보호시설 여건에 따라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특성을 고려할 때 위탁가정 배치가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예산도 열악하여 배치할 일반 위탁가정이 없어 그룹홈이나 시설 등에 배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요보호아동의 조치과정에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위탁가정을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조항에 따라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원활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소송지원, 양육비 채권의 추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육비 미확보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03).

향후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대비하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가 국제적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부모의 책임 및 아동보호조치에 대한 관할, 적용법률,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검토하여 부모의 국적이 아동의 생활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입양(제21조) 관련 조항도 권고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만큼 입양특례법 제정, 입양숙려제, 입양허가제 및 입양정보공개제도 도입, 중앙입양원 설치·운영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에 기존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고, 2013년에 '헤이그협약'에 서명한 후, 2016년에는 동 협약 이행법률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이행입법 준비와 함께 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친부모가 출산 전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입양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양허가 과정 중 청소년 미혼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동의 철회권을 보장하였다. 이는 출산 전 혹은 출산 직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직접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윤성승, 허남순, 2014; 전경숙, 2013). 또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를 도입하여 입양허가 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해당아동의 입양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입양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입양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 및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2012년에 '중앙입양원'을 설치하여 입양아동의 가족정보 및 친가족을 찾기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입양 아동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 불어, 덴마크어 등 외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07-111).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청취를 중요시하여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아동이 동의한 경우에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0~3세 영유아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의견청취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국제입양이든 국내입양이든 법원에 의한 허가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나 입양절차 진행에서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게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과 심사, 입양 의뢰된 아동의 보호,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등 모든 절차를 일임하고 있어 공적 기관보다는 여전히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이 주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협약이행 과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에 관한 협약은 부모가 최적의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해체나 빈곤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이 대안양육체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러 조항가운데, 가정환경 상실아동(para. 47-48)과 입양(para. 49-50)에 관하여는 유엔의 권고사항에 따라 협약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47~50). 상술된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향후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추진 방향은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의 확대 및 강화이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첫째, 대안돌봄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대안양육시설 및 기관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적절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와 지도·감독을 하는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김영지, 김희진, 2015).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의무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아동학대 관련 신고보장을 비롯하여 시설 운영 전반이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대안돌봄시설에서 학대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 대상 지도·감독과 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담기구 지정·운영 및 인력배치를 고려한다.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대안돌봄시설 아동의 원가족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이다.

가정해체나 빈곤 등의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이 대안양육체제에서 성장하게 될 경우라도 원만한 친가정 복귀를 위해 대안돌봄시설에서 아동의 원가족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아동의 트라우마 극복,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 가족의 회복탄력성(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해 아동 대상 개별 프로그램, 부모 대상 개별 프로그램, 아동·부모 대상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인지/정서/

행위적 경험을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양정선, 2015). 프로그램은 상처에 대한 표현과 소통으로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와 적응과정을 시도하며,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래설계를 통해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3단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1단계는 아동의 상처 극복 및 부모와의 애착증진을 위한 치료중심 프로그램, 2단계는 부모의 죄책감을 극복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및 집단상담, 3단계에서는 가족의 회복탄력성(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체험과 교육 중심의 캠프로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입양과정에서 아동의견 청취제도를 강화한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입양특례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입양절차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대다수 입양대상 아동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0~3세 영유아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심문 및 조사과정에 아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의 배석 및 조력을 통해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김영지, 김희진, 2015). 또한 13세 이상 아동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입양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사법기관 및 담당자들의 교육이 요구되며, 향후 장애아동, 다문화 아동 및 난민아동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효과적 의견청취를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 직접양육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성교육의 확대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에 의한 유기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입양숙려기간에 상담사를 매칭하여 직접양육을 유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미혼모 발생 및 영아유기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공동책무를 강화하여 올바른 성교육과 성숙한 출산·임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년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미혼모의 입양숙려기간 동안 심층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소년미혼모의 양육의사를 정확히 평가한다. 출산 후 1주일간의 모자보호지원(최대 70만원)과 입양철회 비용(최대 73만원) 및 직접 양육시 정부지원(양육수당 월 15만원, 의료비 등) 등 정부정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 직접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협약조항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의 협약조항에는 장애아동(제23조), 생존 및 발달(제6조),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약물남용 보호조치(제33조), 돌봄서비스(제18조 3항),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제26조, 제27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장애아동(para. 51-52)으로 ① 일반논평 9호를 고려하여 모든 장애아동 대상 적절한 재원제공, ② 장애아동 교육 수요를 충족하도록 특수교사 확대 및 교육연수 강화, ③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효과적 이행과 예산 및 인력 지원, ④ 장애아동 통합교육 시행 촉구 등을 권고하고 있다. 건강 및 보건서비스(para. 53-54)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소아과와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지방 중소병원 지원확대를 권고하였다. 정신건강(para. 55-56)에 대하여는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기반한 아동정신건강 관리정책 및 자살예방 시스템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청소년 보건(para. 57-59)에 대하여는 ①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 위험요인 인식제고 교육·홍보 확대, ② 아동건강 유해식품 판매 규제조치 마련, ③ 학교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생활수준(para. 60-61)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 보장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2) 협약이행 평가

장애아동(제23조) 관련 협약이행의 일환으로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기간은 유치원(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로 하고 있으며, 0~2세와 고등학교 이후 전공과정은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1년 82,665명에서 2016년 87,950명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거하여 장애아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을 신·증설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16).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최근 6년간(2011~2016) 교원을 충원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특수교사 2,828

명, 특수교육 보조인력 2,324명을 증원・배치하였다. 또한 특수교육 담당교원 등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17). 한편, 유엔에서는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고, 전체 장애학생 중 평균 70.4%(2011~2016)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18).

장애아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이 필요하고, 일반학교와 함께 하는 장애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의 활동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이기주의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장애학교 설립상의 주민과 학교와의 갈등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생존 및 발달(제6조),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 영역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아동의 정신건강분야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19). 사회적 우려가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해서는 2015년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학생정신건강 지역 협력모델 구축 확대, 교사 연수 강화, 범국민적 인식 개선,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초1, 초4, 중1, 고1 학생 대상으로 3년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센터(241개소) 내에 아동 대상 사업 특화센터(130개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0). 아동정신건강특화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 고위험군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을 담당한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1). 그리고 부족한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12년 기숙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설치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2). 동 센터는 정서·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자립,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일상생활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건강 및 보건서비스 분야에서도 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이주아동 의료지원, 학생 건강검진, 어린이 병원 확충, 체육활동 강화, 체험형 성교육 강화, 급식지원서비스 개선 등을 수행하였다. 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해 모자보건사업과 신생아 대상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3-124).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무료 예방 접종을 하고 있고(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5), 일반학생을 대상으로는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6). 학교 청소년들도 2016년부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무료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어린이병원을 총 5개소 운영하여 어린이 전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고,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 설치를 법제화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7). 아동의 체력 강화를 위해서는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8). 청소년 특성 맞는 성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체험형버스를 운영하며 농어촌 등 성교육 취약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성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29). 아동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하고 있고, '제3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2016~2018)을 수립하여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1).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은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낮은 실정이고(아동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 학업 스트레스, 왕따, 학교폭력 피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중한 학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서 체육 및 여가활동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미진한 상황이므로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약물남용 보호조치(제33조)와 관련해서는 음주 및 흡연예방 사업과 중독 예방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음주·흡연 예방을 위해서 초·중등학교에서 음주·흡연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2). 중독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중독 위험수준별 맞춤형 상담·치유 연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4).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확산을 홍보하기 위해 '로그out 가족in'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중독관리를 위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24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208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1개) 등 관련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최고이고, 스마트폰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취약하다. 유아 및 아동(3세~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15년 12.4%

→ '16년 17.9%),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16년의 경우 30.6%로 전년대비(31.6%)로 1%p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7.1.23).

돌봄서비스(제18조 3항),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제26조, 제27조)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성과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돌봄 지원, 빈곤아동 지원 법체계 마련, 위기 및 빈곤아동·청소년 지원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아동돌봄과 관련해서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영유아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공립·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5). 아울러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는 2008년 9개에서 2016년 1,828곳으로 증가하였다. 빈곤아동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한부모가족지원법(200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등을 제정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6). 아울러 빈곤아동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년)에 의해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2005)을 제정하여 아동 빈곤의 예방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2년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저소득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활동 분야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7).

위기 및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방과후 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교육부) 등이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8).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였고, 고위험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인 '청소년 동반자(Youth Companion: Y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39). 2015년에는 청소년 동반자 1,044명이 활동하여 34,775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부터 저소득층 아동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사업의 정부매칭지원금 한도를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40). 2016년 기준 총 70,417명의 아동을 지원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2007년에는 33억 원에서 2017년에는 17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41). 2016년에는 총 332,865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전 영유아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은 2017년 현재 1.04로 역대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 돌봄이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률이 적지 않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가정보육시설의 비율이 여전히 높아서 보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하여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 빈곤아동과 관련해서는 각종 법에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빈곤아동의 방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족 및 기타 해체 가족 아동의 방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돌봄기관에의 접근이 낮은 상황이다. 방과후 돌봄기관은 종사자의 업무과중과 일부 시설의 열악한 환경으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마련된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경우는 정부매칭 지원금이 증액되어 아동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상 아동을 점차 확대하여 차상위아동까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3) 협약이행 과제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에 관한 협약은 장애아동의 통합교육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정신 및 신체건강을 보장하고, 각종 중독으로부터 보호되며, 빈곤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이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러 조항 가운데, 건강 및 보건 서비스(para. 53-54), 정신건강(para. 55-56), 사회보장 및 생활수준(para. 60-61)에 관하여는 유엔의 권고사항에 따라 협약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상술된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향후 협약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추진 방향은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제에 대한 사업의 확대 및 강화이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아동 이해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고, 이로 인해서 장애아동은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장애아동 수용성은 50.7%에 불과하다(관계부처합동, 2015). 이를 '19년에는 70%로 올릴 계획에 있다. 이에 어려서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특히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문경희, 2004; 이미나, 2010).

둘째, 소수아동의 의료권 보장이다.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에서는 이주,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내 무상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이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무상 건강검진이나 의료서비스에의 접근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취약한 상황이다. 일부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2011년에 개정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외국국적 영유아에 대해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이주아동의 건강권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이주아동의과반수 이상이 제때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라는 결과가 있다(정상훈, 2015).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아동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응제도 마련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인터넷 중독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 및 홍보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에서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잠재 위험군에 대한 예방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전예방을 할 계획에 있다(보건복지부, 2017g). 이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협업할 계획에 있고, 나아가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 기관 간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관계부처합동, 2015). 이러한 계획이 잘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행히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매년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으로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재원은 OECD 국가 중에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 중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대상은 영유아이다. 영유아 보육 및 양육지원 재정규모는 이미 OECD 평균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즉, 지원 규모로 봐서 영유아기에 집중된 지원이 학동기로 되면 가정의 책임으로 돌려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사교육비 부담이 큰데서 비롯된다고 보는 연구가 많음을 염두에 두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일반가정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예산 확충, 아동의 놀권리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 지역사회 아동관련 시설 및 활동기관 확충 등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엔에서는 이를 법제화까지 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협약조항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교육·여가 및 문화의 영역의 협약조항에는 직업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제 28조), 교육의 질과 함께 교육의 목표(제 29조), 원주민 및 소수인종의 아동권리(제 30조), 여가 및 문화활동(제 31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70. 협약 제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를 고려한 교육 및 시험제도 평가, 71.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공교육 강화방안 마련, 72. 아동의 여가·문화·오락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73. 교육평등 실현성과에 대한 체계적 정보 수집, 74. 사이버 공간 및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따돌림 방지 및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조치 등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70-74).

(2) 협약이행 평가

교육받을 권리(제 28조)와 관련하여 정부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교육복지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교육격차 해소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취약계층 학생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2017년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여 학습결손 조기예방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학계층 학생의 진학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사회통합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43-144). 정부는 아동교육과 관련된 취학률, 진학률, 전체 학교와 교원 수를 늘렸으며,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줄였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34-135). 특히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특수학교, 교원, 학급수를 계속 늘려서 학급당 학생 수를 크게 감소시켰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35). 또한 학업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학업중단 예방 및 청소년지원방안'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위한 대안학교 확대와 진로교육 및 체험학습 확대,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45-146).

정부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학률과 진학률 증가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획일적인 교육체계를 유지하여 학업중단학생이 증가하여, 이들의 교육수요 욕구와 학업중단 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기회를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교육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여 취약계층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교육의 목적(제 29조)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여 선행학습을 억제하고 공교육 체계에서 정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47-152). 또한 정부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부터 모국어는 공교육에서 책임지도록 초등학교 한글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등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통한 학습을 줄이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38). 특히 그동안 지적되었던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의 창의·인성 함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6년부터 전국의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여 중학교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폭력 유형에 사이버폭력을 포함시켜, 2013년 이후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을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정책을 제공하고 있고 사이버폭력 신고체계를 구축하였다.

정부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교육 참여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사교육비와 참여시간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통계청, 2017. 3. 14). 최근 예체능 사교육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황에 주목하여 공교육에서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지출과 참여비율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체험위주의 참여형 수업 중심이므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2015년 초·중·고 학생 10명 중 2명(17.2%)은 최근 1년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고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17.5%였다. 2014년과 비교하면 피해 경험은 1.8%p 줄었지만 가해 경험은 3.5%p 증가(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하여 가해경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피해 학생들의 대처는 상대방 차단, 내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39.1%·복수응답),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27.5%) 등으로 대부분 소극적인 수준이다.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17.4%),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3.3%)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한 학생은 소수(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로 나타나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들이 외부에 신고해서 적극적으로 폭력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활동(제 31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 여가와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5년부터 '학교 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1스포츠, 1예술 활동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해 놀이터와 공원 조성, 놀권리 종합계획 수립, 놀권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59-160). 특히 정부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6세로 연령을 낮추어서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40).

이와 같이 정부는 아동의 여가와 놀이 및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13~24세 청소년 87.1%는 문화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6a) 가시적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하루 놀이시간의 확대는 교육정책의 변화 없이 기대할 수 없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하루 10분 이상 놀이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범사업 1년 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2016년 현재 학교별로 20, 30분 정도 놀이시간을 운영하라고 권고하는 게 전부였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15~24세)들은 하루 평균 7시간 50분으로 OECD 평균보다 약 3시간 정도를 더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국 3시간 49분, 독일 5시간 2분, 핀란드 6시간 6분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시간이다. 주당 시간으로 환산하면 OECD평균보다 약 15시간 정도를 더 학습시간에 투입(노용운 외, 2015)하는 것이다. 놀이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 학생의 약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2시간 5분 정도이고 미국학생은 약 4시간 3분이다. 결국 우리나라 학생은 미국학생과 비교하여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놀이시간은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노용운 외, 2015)으로 아동 놀권리 보장은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소수인종 아동의 권리(제 30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3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탈북 청소년의 진학을 확대지원 하였다.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무지개학교'를 통해 교육과 사회적응 등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중도입국 자녀 등의 입국 적응을 조기지원하고 소수민족 아동의 언어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육을 위한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을 정규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62-164). 특히 정부는 소수인종 아동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과 외국인채용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39-140).

다문화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은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다문화 아동의 2015년 취학률은 초등 97.6%, 중등 93.5%, 고등 89.9%, 고등교육기관 53.3%로 '12년 대비 고등학교(4.8%p)와 고등교육(4.0%p) 취학률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취학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그 격차가 커져 고등학교 3.6%p, 고등교육기관 14.8%p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고등교육의 진학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여성가족부, 2016a). 다문화 아동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18.3%), 학교공부가 어려워서(18.0%), 편입학 및 유학준비(15.3%), 돈을 벌어야 해서(14.4%), 그냥 다니기 싫어서(11.1%) 등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a). 한편 2015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차별이나 무시 경험은 9.4%로 '12년 조사에 비해 4.4%p 감소하였고, 학교폭력 피해율은 5.0%로 '12년 조사에서의 8.7%보다 3.7%p 감소(여성가족부, 2016a)하여 이들을 위한 학교폭력 정책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2년에 비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하는 폭력이 증가하여 학교폭력은 감소하지만 사이버폭력은 증가추세이다(여성가족부, 2016a).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적극적인 대응(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이야기,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 친구들과 상의하는 경우 등)이 '12년보다 증가하여 다문화 아동이 외부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협약이행 과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교육, 여가 및 문화영역부분은 교육을 받을 권리보장을 위해 직업훈련과 진로교육 확대,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 목표달성, 여가와 문화활동 보장과 소수인종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의해 아동의 교육권 증진이 이루어졌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또한 소수인종 아동을 지원하기 관련 법 제정과 정책이 마련되어 사회적 적응과 문화적 통합을 추진해 왔다. 앞에 기술한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협약이행을 실행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평가체계와 입시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었던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에서 탈피하여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지킬 수 있는 진로·취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이외에 개별아동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제도와 입시제도를 마련한다면 궁극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교육 확대 노력으로 취학률이나 진학률이 상승하고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공교육의 민간부담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정부부담비율을 OECD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둘째,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을 개편해야 한다. 최근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사교육도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정비례하고 있다.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학습위주의 사교육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예체능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증가추세에 있다. 전체적으로 사교육 참여비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트렌드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예체능 위주로 재편되는 사교육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교육체계를 개편하여 다양한 예체능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아동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공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놀이, 여가 및 문화활동 정책은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OECD 국가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아동은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인해 놀이·여가·문화활동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여가와 놀이권리 보장은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과도한 학습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한 후, 공교육체계에서 놀이·여가·문화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이버폭력 가해를 예방대책 수립과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사이버폭력 피해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해 비율은 성별과 초·중·고등학교 구분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이버권리교육이나 사이버안전교육 등을 확대하여 가해비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와 안내 등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 확대와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사회적 적응과 학업문제로 고등교육진학 비율이 낮은 편이므로, 이들의 언어와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학교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직접적인 학교폭력보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유형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이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지원체계에 대한 홍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7) 특별보호조치

(1) 협약조항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특별보호조치의 협약조항에는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제22조),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제30조),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제32조),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제34조),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제35조), 소년사법 운영(제40조), 범죄 목격 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제39조), 무력분쟁에 참여한 아동(제38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협약의 대다수 조항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다. 먼저, 난민아동 및 무국적아동(para. 64-67)과 관련하여 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출생등록 및 망명희망자 지원, ②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 배제 및 본국 송환 과정 시 인권침해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이주아동(para. 68-69)에 대하여는 ① 이주아동(불법체류 자녀 포함)의 교육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전략 개발, ②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아동노동 및 경제적 착취(para. 70-71) 조항에서는 ① 아동노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 모색 및 해결안 제시, ② 18세 미만 아동의 법적 근로조건 보장, ③ 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 규제 법 조항 제정, ④ 아동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체제 마련, ⑤ 아동의 근무환경 내 발생하는 폭력과 성추행 문제 예방 및 개선 제도 마련, ⑥ 18세 미만 아동연예인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폭력과 성추행 문제에 대한 조치 등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64-71).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특별조치에 관한 협약조항으로는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제34조),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유괴(제35조), 소년사법 운영(제40조)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성적 착취에 관하여 ①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② 성적 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③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형사사법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④ 형사책임 면제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 ⑤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 ⑥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여 지원활동을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44-49).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72-73),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①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해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해당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74-75).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 운영과 관련하여 ①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② 소년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제공할 것, ③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교육·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⑤ 아동의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대안을 장려할 것, ⑥ 유엔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 간 패널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80-81). 마지막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범죄피해자 목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프라이버시, 존엄성 등)를 받도록 하며, 유엔사법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에 대하여도 권고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82-83).

(2) 협약이행 평가

난민아동 및 무국적아동(제22조)과 관련한 협약이행의 성과는 난민법 제정, 난민인정절차 담당부서의 신설, 이의신청제도와 통역서비스 제공,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의 특별보호대상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2012년 2월 난민법을 제정하고 강제소환금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가족재결합(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의무, 난민인정자의 처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난민업무는 국제적인 난민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지녀야 하므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업무와 별도로 처리를 제시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6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난민과를 설치하여 난민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민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결과 불인정을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난민업무 수행과정에서 통역사 또는 번역가가 필요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19세 미만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을 특별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전담공무원 지정, 시설 배정 등 특별한 지원조치를 명시하였으며 난민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전문교육(13시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난민아

동의 부모가 난민인정을 받았을 경우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을 받게 되며, 부모가 난민 신청 중일 때는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미성년 난민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65-166).

그러나 난민아동의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만 인정하고 있어서 부모가 난민신청 중에 태어난 아동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난민신청 중 아동의 생계 및 주거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기간이 6개월~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난민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과반수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것과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배제 및 본국 송환과정 시 최대 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국적 부여는 못 하더라도 출생등록 제도를 보완하여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 부모의 출신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출생등록과 함께 국적취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난민아동의 구금배제 원칙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탁양육이나 시설보호 등 대안양육에 대한 상세규칙이나 지침마련이 요구된다.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제30조) 관련 조항에서는 미등록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의 교육보장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과 재학률 제고 및 공교육 이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출입국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공무원 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또는 면제'하도록 2013년 1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67).

이민배경의 소수민족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및 법무부로 구분되며, 주요 정책으로는 다문화유치원, 대안학교,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레인보우스쿨,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유아의 언어교육과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6년 다문화 유치원 60개소를 시범운영 하였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출입국관리소에 배치된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해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학교적응을 위한 예비학교 124개교를 운영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적응, 진로, 직업교육을 위해 대안학교 4개교와 학교구성원의 다문화 인식개선과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 중점학교 180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생활문화, 교우관계 등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레인보우스쿨을 2015년 17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였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중도입국 자녀에게 외국인 등록 시, 입국초기 사회적응 및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2015년 조기적응지원센터를 23개 기관에 지정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67).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제32조)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다수 제시된 조항으로 협약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근무 금지,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시 이전에는 시정 지시 후 미 시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2015년부터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예방 등) 준수를 위한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교육 및 홍보, 전문상담, 무료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2016년 기준 7개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 민간 퇴직인력 150명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하여 법위반 의심 사업장 411개소를 적발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57-158).

또한 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을 제정하라는 권고(81호)에 따라 2016년 2월 일 경험 수련생(인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최근 인턴 등 일 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이 아닌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문제해결의 일환이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아동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체제를 마련하라는 권고(제82호)를 받아들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전문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편의점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였다. 한편 2014년 12월 근로권익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노동법 특강 등 수요자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였다. 향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및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공인노무사 지원 확대 등 인프라 확충을 실현할 계획이며, 관리 감독 강화, 홍보 내실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할 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68-169;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57-158).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배달 아르바이트 대행업

체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고발생 시 치료·재활 등의 보호가 미흡하여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인턴 등 일 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이 아닌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 제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제3조에 합치되도록 아동성폭력 예방조치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아동・여성성폭력 근절대책' 및 2013년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안' 등 아동성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70). 정부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폭력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74-176).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제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제2조와 제3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성범죄 수사 및 기소체계 개편, 성범죄자 처벌 및 교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 등의 마련을 통해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자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처벌을 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다. 그러나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외적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해외 성매매의 경우 일시적인 단속과 처벌에 그치고 있고, 해외성매매 범죄자가 단속되어 구속되는 사례는 5% 미만에 불과하다. 해외 아동성매수자에 대한 기소나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체포된 성매수자에 대하여도 조건부 기소유예나 존스쿨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성매매 근절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박선영, 박찬걸, 2012).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단속시스템의 완비와 국제수사공조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등이 요구된다.

정부는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소년부를 두어 소년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법원·가정법원 내 소년부에서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4). 아동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국선보조인제도,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5).

정부는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소년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과 19세 미만 소년을 분리수용하고 있고, 소년수형자에 대한 전문적 수용처우와 구분수용을 위해 김천소년교도소를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7: para. 186). 정부는 과밀수용 문제 해소 및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소년원의 집단생활실 소규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7: para.186). 환경조성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소년원은 심각한 과밀수용 상태이고, 소년범의 증가에 맞춘 시설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소년수용자에 대한 가족사랑캠프, 주말가정학습 등 가족기능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7),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통해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7). 소년원 출원생 재비행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직업훈련 교육을 위한 사회정착지원센터인 YES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8).

소년수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처우에 관한 의견개진이나 청원도 가능하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9). 정부는 소년에 대한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적 형태로 조건부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강명령, 집행유예 등 다양한 처분을 활용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9). 2015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원 송치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90).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있고(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91), 2014년에 구조금 지급액을 33% 상향하였다. 성폭력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아동해바라기센터를 8개소, 강력범죄 피해자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1개소 운영하여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92).

(3) 협약이행 과제

첫째, 난민아동의 구금배제와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가급적 배제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설의 대안양육체제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상세규칙 및 지침을 마련한다. 난민아동의 인도적 체류와 보호를 위해 보호자 유무와 관계없이 구금을

배제하며,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 하에 시설보호 및 대안양육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후견인이나 조언자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도 규칙이나 지침에 포함되도록 한다.

둘째,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난민 혹은 이주아동이 한국에 입국하여 곧바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지역의 예비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곳으로 한국어교육과 기초학습지도, 간단한 인사말 및 예절교육 등 학교적응에 필요한 사전지도를 실시한다. 초·중학교 입학 전 준비교육, 학교생활 적응지도, 한국어교육, 기초학습지도를 목적으로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몇 개교를 예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레인보우스쿨 혹은 지역아동센터 몇 곳을 초기준비교실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 등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다. 입학 초기 6개월 동안 멘토링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처럼, 예비학교나 초기준비교실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한 1:1 멘토링 혹은 멘토 1인에 학생 2~3인을 연결하여 개별 적응지도가 병행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주아동이 체험입학 형식으로 입학하여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후, 한국어 습득을 비롯하여 일정의 적응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적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중간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최근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이 아닌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열정페이'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대학 초년생이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일자리를 발굴하여 연계한다. 동 사업은 청소년에 대한 변칙적 노동관행 규제, 청년층 일자리 발굴 및 제공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목적으로 후기청소년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연계함으로써 대학 초년생에게는 단순 아르바이트를 대체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먼저, 대학 초년생 및 후기청소년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조사·발굴하여, 각 지자체 일자리센터나 유관기관을 통해 관련 분야별 대학생 및 후기청소년을 선발하여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전공이나 지금까지의 경험 등을 토대로 사회적일자리를 희망하는 후기청소년을 선발하여 연계하는데, 특히 사회적 기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각종 학습지원 관련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해당 분야 전공자들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사회진출에 앞서서 의미 있는 일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기간은 가능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분야

업무수행 평가내용을 기록하고, 향후 이들의 진학이나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 및 근로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서는 아동·청소년 연계인 근로보호를 위하여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활동시간을 주당 35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우려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포함한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권 침해에 대한 보다 강경한 처벌과 규제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김영지, 김희진, 2015). 또한 연예기획 종사자도 청소년 고용 사업주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보호 교육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시행을 고려한다. 특히 대중문화예술발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야간공연금지, 성추행 예방 및 학습권 보장 등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연예인 근로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아동성폭력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수사체계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성매매 단속이라든지, 성매매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약한 점 등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성폭력 예방 및 해외성매매 근절을 위해 정부의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매매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성매매 피해아동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법에 아동성매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50]

둘째, 해외아동성매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간헐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는 해외성매매 단속을 단속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통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신속한 기소를 위해 국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기준을 마련하고, 해외성매매사범에 대한 양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년사법 운영과 관련하여 소년부 확대 설치, 인권친화적 소년보호 운영, 범죄피해아동

50)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김삼화의원, 남윤인순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다(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에 대한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소년사법 영역이 실질적으로 범죄아동에 대한 교정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소년법원 설치, 과밀수용 해결 등 소년사법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내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긴 하나,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각각 담당하기 때문에 사건처리의 지연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을 오가며 미결구금상태에 있게 되어 인권침해의 소지도 큰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처우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소년법원 설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년사법 관련기관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법원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소년전담검사제의 내실화된 운영을 위해 소년전담검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소년전담인력에 대한 장기보직 부여 등을 통해 소년전담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유박탈아동의 수용 과밀화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전국에 소년원이 10개에 불과하고 이들 소년원간에도 지역별 수용인원 편차가 큼으로 인해 소년보호기관의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3년 5월 부산소년원 난동사건 이후로 시설개선이 있었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소규모 소년원 확대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행진단을 위한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소년원 시설을 전국지역단위별로 규모있게 설치하고, 비행진단에 전문화된 소년분류심사원의 전국지역 단위 확대 설치도 필요하다.

2. 아동·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Ⅳ장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본 제2절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표결과인 Ⅲ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인권실태를 요약・검토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51] 종합적으로 Ⅳ장 1절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협약 이행성과 모니터링과 2절에서 인권지

51) 이에 따라 여기에 제시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요약문의 출처는 Ⅲ장의 각 지표영역별 본문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표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점검을 통해 Ⅴ장에서 제안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1)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는 2개의 중분류(인권일반, 일반원칙), 5개의 소분류(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 차별 경험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1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인권일반' 중분류의 첫 번째 지표(소분류)인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는 법제도, 기구・조직, 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법제도 지표항목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학교 밖 및 가정 밖 청소년과 근로청소년 보호, 부모교육 활성화, 한부모가정 지원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치단체 수준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노력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영향평가 조례, 다양한 활동・문화 지원 조례, 학생선수 등 취약집단 인권보호 조례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으로는 독립적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독립 부서인 아동・청소년인권팀의 아동・청소년인권과로의 확대・개편, 청소년 인권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 안정화, 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인 아동옴부즈퍼슨 제도 도입 등 2017년도에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았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2013년과 2014년에 3.2%였던 것에서 2015년과 2016년은 2.9%로 감소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정책분야 예산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지표(소분류)인 인권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그리고 인권의식 및 태도를 살펴보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10.7%, 6.1%, 14.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아동권리협약 홍보와 교육이 확대되었음에도 협약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45.0%로 절반에 가까웠고 '이름만 들어봤다'는 응답이 44.4%로 높게 나타나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독립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독립 소위원회인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진정과 조사,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등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할 주 고객인 아동・청소년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권교육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친화적 홍보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생활영역별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는 가정(94.8%), 지역사회(90.9%), 학교(89.3%), 사이버 공간(80.2%), 우리나라 전체(77.3%) 순으로 나타나, 존중 정도의 순위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률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주목할 점은 매년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는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보고 이들을 시민적 권리 향유의 주체보다는 권리유예의 시기로 인식하는 성인중심주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성인대상의 인권교육이 함께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인권의식과 태도를 살펴보는 지표항목에서는 청소년의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 사회참여 필요성, 학생자치조직의 의의 등에 대한 생각과 기본적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와 3가지 평등권(경제적 이유, 성별, 이주배경 아동 교육권 관련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87.6%)과 학생자치조직 의의(81.9%)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95.6%), 경제적 이유로 차별금지(96.5%), 양성평등(95.5%),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평등권(93.5%) 등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아동・청소년은 아직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여 성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률이 29.3%(초 42.0%, 중 25.6%, 고 23.0%)로 나타나(그렇지 않다 70.7%),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인권의식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추이는 청소년의 결정능력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모든 문항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세 번째 지표(소분류)인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실시 현황과 인권교육 경험을 살펴보았다. 인권교육 경험률은 66.7%(초 69.0%, 중 70.2%, 고 61.8%)였으며, 인권교육 경험률은 전년(70.0%)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권교육을 경험한 곳은 학교 정규 교과시간 59.6%,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9.6%,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13.7%로 나타났으며(복수응답), 초등학생은 정규 교과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늘어나

는 추세이며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경험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인권교육 경험자의 74.5%가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초 90.1%, 중 71.6%, 고 64.2%) 중・고등학생 대상의 인권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원칙' 중분류는 차별 경험률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로 구성된다. 1년에 1회 이상 차별 가해 경험은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1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12.7%), 성별(11.3%), 연령(11.0%), 장애(4.6%)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1년에 1회 이상 차별 피해 경험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28.3%), 성별(25.0%), 외모 및 신체조건(23.0%), 지역(4.7%) 등의 순으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차별상황(한 달에 1회 이상)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별 가해 경험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차별 피해 경험은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차별유형에 있어 차별 가해 경험보다 차별 피해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인권 민감성 차원에서 주목할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과 보편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적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하겠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영역은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 중분류, 10개 지표(소분류), 20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시 의견존중정도)는 진로(직업)(94.1%), 상급학교 진학(93.1%), 집안 중대사(90.7%), 공부시간과 방법(89.2%) 등의 순으로 자녀 의견 존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정도는 자치권 향유 수준 31.5%, 학생회 의견존중도 38.4%, 예산・장소・시간 보장 39.6%, 학생회 임원 후보 성적 제한 없음 35.4% 등으로 나타나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급회의를 운영하는 경우는 70.1%로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급회의 시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한 정도는 87.7%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우는 17.3%로 전년 대비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73.2%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2013년 이후

더 늘어나지 않고 각각 189개, 305개로 정체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0.8%로 전년도 14.1%보다 낮아졌으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4.9%로, 전년도 49.7%보다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해 본 경험은 2016년 2.9%에서 2017년 2.1%로 감소하였다.

선거연령을 현재 만 19세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47.3%로 전년도 24.7% 대비 두 배 가까이로 대폭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역시 60.7%로 전년도 54.2%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 26.9%, '참여활동 정보 부족' 18.6%, '참여할 기회나 방법 부족'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상의 자유는 가정(91.7%), 학교(85.3%), 사회(73.4%)에서 70% 이상 보장받고 있었고 연도별 추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62.7%로 전년도 73.3%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도 80.9%로 전년도 76.2%보다 높아졌다.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은 15.6%였으며,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은 17.2%로 2016년도 7.3%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용모(53.3%)와 복장(50.1%) 검사는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소지품(19.4%) 검사 경험은 전년도 대비 소폭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자 이름(11.6%), 징계사항(25.0%), 시험성적(21.6%) 공개실태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규칙 공지(87.0%),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책 홍보자료(17.0%),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15.7%), 권리상담 및 구제기관 정보(26.9%) 등의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중・고등학교에서 인권관련 정보 제공 정도는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10대 청소년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5.4시간,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9.6시간이며 인터넷 이용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95.1%를 차지하며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또한 커뮤니케이션(채팅, SNS 등)이 83.4%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소통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27.6%)와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9.1%)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사이버 공간의 청소년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의 지표결과를 볼 때 여러 지표에서 개선된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학급회의 운영 활성화 정도, 학생회의 자율적 운영 정도, 참여권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참여 등은 소폭이나마 개선된 지표들이 있어 긍정적이나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율의 저하, 용모 및 복장 검사 증가,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시간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낮은 인식은 생활밀착형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생활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여러 경로와 공간에서 참여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 단위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의 공간으로 재구성해내는 실험적 시도와 사례들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많은 아동·청소년이 민주적 훈련을 통해 시민적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가이드라인과 자료를 마련·지원하고 학생과 교사 대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폭력과 학대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서 폭력 영역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문내용이 구성되어 조사되었다. 먼저 2017년 초·중·고 청소년 8,999명을 대상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정신적 또는 심리적 폭력이라 할 수 있는 모욕적인 말(욕설)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를 물었을 때에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전체 31.9%에 해당하였다. 학교유형을 비교했을 때에는 초등학생은 26.6%, 중학생은 37.4%, 고등학생은 30.9%로 나타나 중학생의 피해가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3~4명 중 1명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피해는 가정보다는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의 이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인한 정서적 인권 침해의 피해는 전체 20.6%로 5명 중 1명이 해당되었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피해가 가장 낮아 7.5%였고, 중학생은 25.9%, 고등학생은 26.0%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4명 중 1명이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성인들로부터 언어폭력을 통해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여 인권교육을 받는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체벌을 통한 신체적 폭력도 아동권리협약의 제19조에

위배되는 실태인데 가정에서의 체벌은 전체 응답 청소년 8,999명 중 26.2%에 해당되었고, 학교에서는 이보다 적어 15.6%가 체벌로 인해 신체적 폭력의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유형에서는 초등학생이 가정에서 가장 피해가 심해 35.6%에 해당되었고, 중학생 30.3%, 고등학생이 16.1%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이 7.6%, 중학생이 19.8%, 고등학생이 18.1%로 체벌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의 비율이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추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학계의 중론을 볼 때에 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폭력에 비해 오히려 학생 간의 폭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2017년 9월에 발생한 부산에서의 여중생 폭력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금번 조사에서도 전국의 초·중·고 9,003명의 전체 응답청소년 중에서 15.2%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폭행이나 구타는 6.9%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7%가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사생활이 노출되는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이 요청된다. 특히, 실효성이 낮고 학교 편향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폭력 및 학대' 와 관련해 먼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29,674건으로 2015년도 19,21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32.0%였으나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68%건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대피해아동 중 80.5%는 친부모 및 계부모 등으로부터, 4.3%는 친인척, 11.6%는 아동보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급증하는 아동학대신고건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설치가 필요하며,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인력의 업무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어 정적수준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학대(19.1%), 방임(15.7%), 신체학대(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복학대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방임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연 1회 이상 경험을 기준으로 밤늦게까지 부모님 없이 있었던 경험률은 60.8%,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 경험은 9.5%, 질병발생 시 부모님이 방치한 경험은 5.2%, 결식을 해도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6%로 나타났으며, 학교 결석 시 가정에서 무관심했다는 응답은 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방임경험은 배경변인별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방임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특히 한부모가정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취약한 청소년의 야간시간 방임, 의복 및 침구의 위생문제, 질병발병 시 방치, 결식 및 결석 시 무관심(결석의 경우는 특히 조손가정)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약한 여건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에서의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실태 및 이를 보완할 대안양육 현황,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보면,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짧았으며,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다.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수준을 보면, 2016년 기준 전체 보육시설은 2013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생 아동 수 감소와 이용 아동 수 감소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공립시설과 직장어린이집은 증가추세를, 개인이 운영주체인 가정 어린이집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이용률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역시 2013년의 4.9명에서 2016년 기준 4.5명으로 감소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2016년 기준으로 55.8%로 2013년에 60.2%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과의 비중이 커지면서 학습에 더 비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시간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의 이용률을 보였으나 미취학아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보육시설 이용률, 방과후학교 참여율,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등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배경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전년대비 6개소가 추가 설치되었으며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이용도를 보였다. 이러한 방과후보호 및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서비스의 경우(예,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만족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으로 먼저 입양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내외 입양 모두 상당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국내: 1,462명, 국외: 1,013명/ 2016년 국내: 546명, 국외: 334명). 저출산 및 요보호 아동의 감소 등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나 입양특례법 제정과 같은 법·제도의 변화, 그리고 여전히 입양을 선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 최근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조사항목의 응답률이 이전조사에서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2014년: 32.6%→2016년: 39.3%).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도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42.9%,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는 32.2%로 나타나 입양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 특히 입양자녀 양육과 관련된 인식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파양 및 재입양 등과 관련된 통계 및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대안양육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 아동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4,592명으로 전년대비 약 90명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수가 다소 증가하였다(2015년: 2,866명→2016년: 3,148명). 또한 전년대비 시설보호 아동 수가 증가하고 가정위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 이상 요보호아동을 시설에 배치하기보다 가정적 환경인 위탁보호에 배치하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정위탁의 92.5%가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 등 혈연관계에 의한 것이었으며 일반가정위탁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일반가정위탁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7%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연도별 추이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출이유로는 부모와의 문제가 6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문제(14.3%)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이후 119개소로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 가출의 주된 이유가 부모와의 문제라고 할 때 청소년들이 원가정 복귀는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중장기쉼터의 확대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가장 최근 평가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2016년에 실시된 평가결과 이전 평가결과와 유사한 결과(89.6점)를 보였으나, 인적자원관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 기초적 보건 및 복지에서는 중분류로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등 5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먼저 특수교육 현황과 특수교사 수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교원의 수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일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청소년의 특수학교 졸업 후 진로를 확인한 결과 진학률과 취업률은 감소한 반면, 무직률의 경우에는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관련하여 특수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효성 있는 지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과 관련해서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을 조사한 결과 0세의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영아의 사망률은 2015년 현재 1,000명당 2.7명이며, 0세에서 24세까지의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0세의 사고사망률은 2014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사고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사고사망의 외인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운수사고가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5세 이후부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29세까지의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약 2~3배정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들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향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령대별로 사망원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과 관련해서 우선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전년대비 4,082건 증가하였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여자청소년의 피해건수는 1,118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의 범죄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마련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거주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집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먼저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중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비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배치율 상대적으로 낮아서 중학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과 음주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흡연예방교육과 음주예방교육의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 대상 음주·흡연예방교육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과 관련하여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87.7%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건강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과반수가 약간 넘는 55.7%였으나, 여자청소년들의 운동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 학교체육시간 외 운동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의 73.1%는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6분으로 이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도가 가장 높았다. 비교적 높지 않은 학교체육시간외 운동실천율, 또 증가하는 비만율 등을 고려할 때, 소아비만의 위험성을 더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청소년의 33.4%가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3년에 36.9%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였다가 올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요 이유로는 학업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각각 40.1%, 21.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우울증관련 항목과 관련해서 '외로운 적이 있다'는 항목은 33.4%(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였으며, '불안한 적이 있다'는 항목은 28.3%,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항목은 32.3%로 나타나 대체로 응답자의 1/3정도가 우울관련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학업문제가 스트레스인 경우는 64.9%(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은 49.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경우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에 대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의 평균값이 훨씬 높았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83.9%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 학업부담(42.9%)과 미래에 대한 불안(18.6%)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스트레스, 죽고 싶다는 생각 등은 향후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고민거리의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이 10%에 가깝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상담센터 및 매체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삶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7점으로 나타났으며(0점~10점), 41개 국가가 조사에 포함된 WHO의 '학령기아동 건강행태연구 '(HBSC)와 비교한 결과, 비교대상 11세, 13세, 15세의 한국아동·청소년, 특히 여자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70%가 넘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자청소년,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그리고 학교급이 높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대부분의 정신건강 관련 항목(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 우울증, 스트레스, 행복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들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 이러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특히 상담체계의 조기개입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빈곤률은 절대아동빈곤율의 경우 2015년에는 5%(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의 시장소득 기준의 상대아동빈곤율 역시 8.7% 정도여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 및 가족관련 복지예산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1.3%수준이어서 영국의 4%, 프랑스 3.7%, 헝가리 3.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24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33.2%를 차지했으며, 한부모가구와 조손가족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여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 대상 학교 수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지원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드림스타트는 지속적으로 확대·설치되어 2016년 기준 229개 센터에서 134,853명의 아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담인력 처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같은 인력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2017년에 정부지원 금액이 기존의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지원금 증액뿐 아니라 지원 대상 아동의 확대에 대해서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서 대분류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관련이 있는 '교육에의 권리', 제29조와 관련 있는 '교육의 목표', 그리고 제31조와 연관이 있는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중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교육의 기회 보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학생취학률, 학생진학률,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 등 각종 지표들에서 OECD 수준에 뒤지지 않는 긍정적인 지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에 있어서 특목고와 특성화고에서 변화를 보였는데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2011년 각 67.4%와 61.0%였는데 2017년에는 각각 55.9%와 35.0%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고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26%나 낮아져 가장 큰 폭으로 진학률이 떨어졌는데,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졸업생들의 청년실업에 직면하여 상급학교로의 진학보다는 취업으로 일찍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조사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보다 교육에 있어서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소분류 지표 '학교 부적응률'에 해당되는 세부지표들이다. 먼저 2011년에 전국 학생 수의 1.1%였던 74,365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2017년에는 전체 학생 수의 0.8%에 해당하는 47,663명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6년 전에 비해 학업중단율은 1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6년 동안 누적된 총 학업중단 학생 수는 309,760명으로 30만 명이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또 다른 조사결과는 자퇴 충동여부인데, 전체 응답 청소년 8,994명 중 학교에 대한 자퇴 충동을 갖고 있는 학생은 28.2%로 나타났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 자퇴 충동이 높아, 초등학생은 16.5%, 중학생은 25.1%, 고등학생은 39.4%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5명 중 2명 가까이가 자퇴충동을 갖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초등학생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심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퇴충동의 이유는 모두 학업성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유들 중에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가 27.1%,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2.8%,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2.2%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모두 합하면 52.1%로 나타났다. 특히, '귀찮고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가 19.1%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러한 무기력한 학생들에서 곧 바로 학업을 중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017년도 대분류 지표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서 소분류 지표 '대안교육 참여율'의 두 세부지표였던 '대안학교 수와 종류'와 '대안학교 학생 비율'이 그 성과가 미진하여

'대안교육 참여 기회'로 통합되어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의 세부지표가 되었다. 이 소분류 지표에 있었던 혁신학교와 관련된 2개의 세부지표가 빠지고 우리나라의 심각한 학업중단 및 청년실업과 연관하여 취업 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직업교육 참여 기회'가 새로운 세부지표로 신설되었다. 정부는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한 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이를 1997년부터 있어 왔던 특성화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업중단에 대응한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7년 현재 직업교육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총 466개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25개교를 합하면 총 493개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학생들의 수요에 못 미치는 수치이기에 정부는 2017년까지 새로이 도입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를 총 200개 학교로 늘리고 7,000여명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려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도 2016년 7월까지 7,686개에 이르러 일련의 노동착취 부작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는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도제학교를 늘려가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부정적 요소들을 개선하면 유럽식 도제학교 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Ⅲ장 6절 본문 참조).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과 같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7.1%에 달했다. 1년에 1~2회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두 번째로 많아 29.8%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청소년 10명 중 9명은 1년 동안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그 만큼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조사결과이다. 결국 정부가 민간과 함께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어도 상급학교 입학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동권리협약 제31조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향수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활동 형태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학생 9,001명 중 청소년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9.3%에 지나지 않았고, 반면에 77.6%는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아리활동에의 참여는 초등학생이 80.3%로 중학생의 76.2%나 고등학생의 76.8%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의 기회를 알아 볼 수 있는 여가시간에 대한 응답에서는 평일 하루에 1시간도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학생이 전체 8,981명 중 19.7%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5시간 이상 평일 여가 시간을 가진다는 학생도 11.1%에 해당되었다. 평일 여가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학생들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15.7%, 중학생은

14.6%, 고등학생은 27.0%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방과 후에 하루 6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은 전체 응답학생 8,993명 중 6.2%에 해당되었고, 1시간 미만으로 공부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일반계고 학생이 11.7%, 특성화고 학생은 45.1%로 나타나 두집단 간에 33.4%p의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연계와 협력의 가운데서 획기적인 정부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7)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소년사법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 등 4개의 중분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난민신청자의 급증 추세는 2013년 7. 1. 난민법 시행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수도 2013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다. 난민인정자의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을 한 전체 인원 중에서 불인정이나 철회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매우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입국자수는 2011년 이후 다소 주춤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의 남한 입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탈북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탈북학생의 정규학교 재학생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학교생활 지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고등학교에서의 중도탈락률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과 관련하여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과 관련해서도 국선변호사 접수건수와 지정건수, 지정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국선변호사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과 관련해서도 전체 기소유예자의 수와 비율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들은 소년사법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징계방침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인권침해적인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4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수준은 2011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 연령대의 시간당 임금총액과 2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과 관련해서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비의 비율과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비율은 2015년 23.8%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체 청소년의 12.2%가 경험한 적이 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다. 아르바이트 피해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표면적으로는 많아졌지만 심층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소자인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변화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성폭력예방 노력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성폭력예방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성교육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비율, 청소년의 성적피해 경험률,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도 3.8%로 나타나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와 관련해서도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특히 전문가로부터의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와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도 매년 증가하였다. 심리·정서적 지원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자립지원, 의료지원, 학교문제 지원, 수사·법적지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의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V 장

정 책 제 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2. 주요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제 Ⅴ 장

정책제언[52]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 협약이행 관련 법·제도, 정책 등을 모니터링하며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진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Ⅳ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권고사항과 2017년에 제출하는 제5·6차 국가보고서 분석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성과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협약과 유엔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부가 노력한 점과 미흡한 점, 개선해 나갈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제2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와의 연계선상에서 진행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017'에 따라 양적지표를 통해 현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추이변화를 가늠하고 실태진단에 따라 필요한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작업을 통해 제안된 인권증진 정책과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사와 전문가협의회 및 정책개발 워크숍 등을 통해 타당성과 중요성을 검토하여 각 대분류 영역별로 1~3개 과제를 선정·제안하였다.

연구진은 201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안한 제3·4차 권고사항과 협약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로 18개 부처 96개 부서 업무와 관련되는 148개 과제를 개발한 바 있으며(김영지, 김희진, 2015), 본 연구의 제2기(2011~2016) 연구과정 중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7개 대분류 영역에서 총 67개의 정책과제 풀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삶과 관련하여 매우 방대한 정책범위를 가지므로 다양한 인권영역별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

52) Ⅴ장 정책제언은 네 명의 연구진이 담당하고 있는 지표별로 집필을 담당하였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1영역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과 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을, 김희진 연구위원은 3영역 폭력 및 학대의 3-1 중분류와 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그리고 5영역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대분류 영역 5-4와 5-5 중분류를, 이민희 교수는 3영역의 3-2 중분류와 6영역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을, 김진호 교수는 5영역의 5-1, 5-2, 5-3 중분류와 7영역 특별보호조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 영역에 대한 정책과제를 집필하였다.

여러 단계에서 발굴된 과제 중에서 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가급적 선행연구에서 이미 제안된 과제는 제외하고자 하였으나 기존과 정책영역은 같더라도 더욱 심화된 과제나 재강조해야 할 과제들도 과제 풀로 고려하였다(Ⅶ-2. 연소자 근로권 관련 과제가 2016년도에 유사한 제안을 했으나 시행이 미흡하여 재강조하기 위해 2017년도에 다시 제안한 경우임). 정책개발 워크숍을 통해 협약에 비추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과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전략이나 방법을 새롭게 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해야 할 과제, 시의성과 시급성이 있는 과제 등 2017년도에 제안할 과제에 대해 다각적 검토를 추진하였다. 1차 발굴된 과제에 대해 정부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정책과제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 개발된 14개 정책과제에 대해 제안배경과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 절차, 관련 법 개정 사항,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표 Ⅴ-2-1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1.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제3 선택의정서 기초연구 법적 검토	국내 법·제도 보완사항 논의 및 의견수렴	법·제도 정비 및 비준절차 진행	제3선택의정서 안내 및 홍보 자료 개발·배포	법무부 보건복지부
과제2. 인권교육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허브 구축(인권교육원 설립)	인권교육원 설립기본계획 연구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시설·공간 확보 및 설립	운영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읍·면·동 단위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및 보급(풀뿌리 지역참여기구)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모델 개발	시범실시 및 성공 모델 발굴	모델 확산	모델 확산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Ⅲ. 폭력 및 학대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제1.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효적 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 및 공청회 개최와 최종 확정 공시	관련법 시행 및 지속적 홍보	시행	시행	교육부 법무부
과제2.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조사 시 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담당 경찰관의 인력 증원	현장조사 시 상담원과 경찰의 권한 및 조사거절/아동 보호조치 불응에 대한 처벌 강화	시행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1. 입양 및 파양 관련 체계적 DB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효과성 검토	입양 후 적응 및 파양 관련 정보 수집 및 DB구축	파양아동 · 청소년 사후관리 방안 및 파양예방 대책 수립	시행	보건복지부
과제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가정위탁 감소 원인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	일반가정위탁 지원 확대 및 위탁가정부모 교육 강화	시설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시행	보건복지부
Ⅴ.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 중장기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중장기계획의 단계적 시행 및 통합교육의 사회적 정착	시행	교육부
과제2.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 방안 수립 · 시행	소아비만 및 운동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소아비만율 감소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적 계획 수립	학교에서의 체육 시수 증가 및 지역사회 내 운동시설 접근성 증대	확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제3. 청소년상담체계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기관 홍보 및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지원 및 정신건강	확대	확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접근성 제고	증진을 위한 조기 개입 강화			
Ⅵ.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직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성공사례 DB 구축과 멘토 제도 도입	직업계고 직업교육 성공사례 발굴 및 DB구축	직업계고 직업교육 성공사례 졸업생 멘토(mentor) 발굴	시행	시행	교육부
과제2.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창의적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발굴 및 인력풀 구축 및 관련법 개정	코디네이터의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연계·협력 네트워크 조성	시행	시행	교육부 시·도교육청 여성가족부
Ⅶ. 특별보호조치					
과제1.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에 대한 대안양육과 예비학교 확대 운영	난민아동의 구금배제와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마련	난민 혹은 이주아동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 운영	시행	시행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과제2.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단속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활동 강화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및 관리 · 감독 강화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청소년집중 고용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체계 구축 및 가중처벌 강화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과제 Ⅰ-1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한국정부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규약으로 아동권리협약(1991년)과 두 개의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4년)[53]를 비준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정부의 노력정도와 인권 진전 상황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협약 모니터링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제3선택의정서인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가[54] 채택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제3선택의정서는 2014년 발효된 이후 2017년 현재 37개국이 비준하고 22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55] 제3선택의정서는 제1부 총칙, 제2부 청원절차, 제3부 조사절차, 제4부 최종규정 등 총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을 참여권의 주체로 규정하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아동을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법인격체로 인정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이미 제1·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의 비준을 반대할 근거가 부족하다(이노홍, 2015: 139). 제3선택의정서 상의 국제적 청원절차 참여를 위해서는 당사국내 권리구제절차가 모두 소진된 이후여야 하므로 제3선택의정서 비준 논의를 통해 아동 권리침해에 대한 국내적 구제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3선택의정서 전문에서도 아동이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한 고충을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지역적 체계를 강화·보완하고, 가입국이 권리침해를 받은 아동이 국내에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국가적 체계를 개발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2).

제3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국내적 논의는 2012년 4월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한변호사협회,

53) 아동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
54)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A/RES/66/138&Lang=en
55) 국제조약의 비준 현황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http://indicators.ohchr.org)에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UNCRC한국NPO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Jean Zermatten 위원장 초청 포럼에서가 유일하다. 포럼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오재창변호사는 제3선택의정서가 아동권리를 위해 필수적 절차이나 국내절차 완료의 원칙, 아동권리위원회의 비상임 구조, 제한된 심의 횟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시의적절하게 침해 아동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법무부 오유진 사무관은 개인진정 제기 주체 관련 문제와 아동권리협약 상 사회권적 성격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 등 선택의정서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제시하였다(국제아동인권센터 외, 2012: 68-75).

학술논문으로는 이노홍교수가 2013년도에 법제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제3선택의정서의 내용을 처음 검토한 것에 이어, 2015년도에 아동권리 구제절차에 대한 국내법적 문제를 아동의 재판청구권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 권리구제절차의 핵심인 재판청구권 차원에서 아동소송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동 보호 목적의 소송적격 입법들이 아동의 권리구제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아동의 독자적 소송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이노홍, 2015: 140).

제3선택의정서는 한국정부의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 이후 채택되어 당시 권고사항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사항으로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조만간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제3선택의정서에 대한 이해와 국내법적 쟁점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비준 필요성과 의의, 비준 시 문제점, 비준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과제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의 내용 검토 및 국내법적 쟁점 과제 정리

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청소년이 인권침해를 당하여 모든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노력을 하였으나 이것이 불가능하였을 때 국제적 아동인권 감시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에 개인청원을 할 수 있는 절차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2년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3선택의정서를 주제로 한 차례 공개 포럼이 개최된 적이 있었으나 이후 제3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이나 비준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 등에 대해 범사회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제3선택의정서의 기본적 인권 보장 내용과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국내 법규와 사법절차 등과

관련하여 불일치하거나 보완이 필요하거나 운용상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선행 논의에 이어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개선과제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제3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② 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및 비준절차 진행

아동 권리침해 시 국내적·국내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립적 소송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미성년자의 재판청구권은 제한되어 있다(이노홍, 2015: 139-140).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서는 사법절차상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이행을 위해 미성년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연령기준 개정과 아동·청소년 친화적 사법절차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 외 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법적 쟁점과 개선과제가 도출되면 이에 따라 법·제도 정비 작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실제로 개인청원절차가 진행되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을 경우 이후 국내적 절차 진행 방안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제3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 및 비준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년): 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기초연구 및 의견수렴

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의 목적과 의의, 조항별 세부내용, 비준 시 국내적 법·제도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한 사항, 개인청원절차 진행 시 유엔 권고에 대한 국내 대응 절차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공론화 장을 마련하여 선택의정서 비준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8년~2019년):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법·제도 보완 및 비준 절차 진행

제3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국내법과 제도 보완 및 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나면 이를 추진하도록 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요 관련 부처와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

보완 절차를 추진하고 외교부를 통해 제3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20년~): 제3선택의정서 안내 및 홍보 자료 개발·배포

제3선택의정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정부가 국제조약에 따른 청원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관련 주체들이 청원이 가능한 조건(제7조), 청원관련 권고안에 대한 당사국의 조치(제11조), 조사절차(제13~14조) 등 제3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도록 한다. 제3선택의정서 제17조는 가입국이 선택의정서를 널리 알리고 배포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홍보와 교육은 가입국의 의무이기도 하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8년)	제 2단계 (2018~2019년)	제 3단계 (2020년~)
주요내용	제3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기초연구 및 의견수렴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법·제도 보완 및 비준 절차 진행	제3선택의정서 안내 및 홍보 자료 개발·배포

4) 관련 법 개정 사항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은 별도 법 개정없이 일반적인 국제조약 비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으나, 제3선택의정서상의 아동·청소년의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내법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선택의정서 비준 논의를 계기로 아동·청소년 친화적 사법절차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법과정 보조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청문권과 재판청구권 부여 연령을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참여권 원칙에 따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가사소송법 등 모든 사법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한다. 세부적인 법령 개정사항은 1단계 기초연구 과정에서 도출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년)	제3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기초연구 및 의견수렴	• 제3선택의정서 관련 연구 용역 50,000,000 • 제3선택의정서 관련 논의(공청회, 포럼 등) 2회 × 10,000,000 = 20,000,000	50 20
2단계 (2018~2019년)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법·제도 보완 및 비준 절차 진행	• 법·제도 정비 및 개정 관련 전문가 회의 5회 × 1,000,000 = 5,000,000	5
3단계 (2020년~)	제3선택의정서 관련 자료 개발·배포 및 홍보	• 아동권리협약 및 3개의 선택의정서 관련 설명자료 제작 및 배포(성인용, 아동용) 100,000,000	100
		총계	175

6) 참고자료

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국은 2017년 현재 37개국으로, 2014년 4월 발효 시 10개국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다. 본 연구 일환으로 수행한 국외출장 중에 방문한 국제적 아동권리 분야 민간기구인 Child Rights Connect는 제3선택의정서 비준 촉구를 목적으로 결성된 연합체(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OPCRC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의 핵심기관으로서 다양한 관련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었다. 당시 면접대상인 Beatrice Schulter 국장은 연합체에서 발간한 제3선택의정서 홍보 리플릿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할 것을 허락하여 이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56] 스위스의 경우도 엔지오 단체의 노력으로 2017년 4월에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사회전반적인 인식과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56)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Ratify OP3 CRC) (2014). Answers to Key Questions About the Optional Protocol – Empower children to secure their rights. Geneva: The International Coalitio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에 대한 FAQ

아동 청원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이하 OP3 CRC) 아동이 국가의 인권 침해에 청원할 두 가지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신규 국제 조약은 다음을 확립합니다.

1. 청원 절차 : 아동 또는 그 대표자는, 국가 법정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절차 : 심각하거나 제도적인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절차

□ 왜 OP3 CRC가 필요합니까?

인권이 실질적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가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 사례를 해결하는 사법제도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국 정부는 국가 사법체계에서 권리 침해를 처리해야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체계가 적절한 해법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인권이 충분히 보호 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청원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CRC는 유일하게 청원 절차가 없는 유일한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이었습니다. OP3 CRC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폭력, 착취 또는 차별과 같은 심각한 위반 사항을 아동이 국제 무대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OP3 CRC 덕분에 아동은 다음 사항이 가능합니다.

- 18명의 독립된 아동 권리 전문가로 이루어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 Committee of Child of Rights)가 개별사례를 심의
- 특정 권리에 적합한 청원 절차를 통해 침해 사례에 관해 국가에 구체적 권고 제공
- 겪은 침해 사례에 대한 국제적 인정

□ OP3 CRC는 어떤 권리를 보호합니까?

OP3 CRC는 아동 권리 협약 (CRC), 아동 매매 ·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OPSC),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등 세 가지 UN 협약에 포함된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OP3 CRC는 어떻게 아동의 권리 보호를 향상시킵니까?

OP3 CRC 비준을 통해 각국은 아동은 완전한 인권을 지니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 될 수 없다면 국제적 차원으로 청원할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OP3 CRC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위원회는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관련 국가에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권고안은 국가가 위반 사항을 해결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특정조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권고안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 않지만, 국가는 이를 준수하고 피해자에게 구제조치를 취합니다.

□ OP3 CRC는 어떻게 작동됩니까?

발효되면, OP3 CRC는 OP3 CRC를 비준한 각 국가에 적용되고, 그 국가들이 비준한 아동 권리 협약들을 다룹니다.

1. 청원 절차

아동 또는 그 대리인은 CRC, OPSC 또는 OPAC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 권리침해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OP3 CRC 비준
- 이미 국가 법원에 동일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구제조치를 받지 못함(단, 국가의 구제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연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국가가 비준한 조약에 보장된 권리의 침해에 관한 청원

2. 조사 절차

아동 개인 및 NGO를 포함한 누구나 다음의 경우 CRC, OPSC 및 OPAC에 따라 보장된 심각하거나 제도적인 권리침해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OP3 CRC를 비준하고 조사 절차를 수락
- 국가가 비준한 조약에서 보장된 권리와 관련있는 침해 사례

위원회가 정보를 신뢰할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국가가 동의하면 국가 방문을 포함하는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작업방법 : 청원이나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OP3 CRC와 자체의 아동 수칙을

준수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과 아동의 권리와 견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원/조사 결과 : 위원회가 절차를 통해 위반이 발생함을 입증하면 국가에 지원, 재정적 보상 또는 가해자 기소 요청 등의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 OP3 CRC를 국가에 적용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 10개국 비준 시 OP3 CRC 발효

OP3 CRC는 CRC, OPSC 또는 OPAC 비준국 중 10개의 유엔 회원국이 비준하면 발효됩니다. 이 경우에 OP3 CRC를 비준한 각국 및 향후 비준하는 각 국가마다 OP3 CRC가 적용됩니다

• OP3 CRC 국가 비준 동의 절차

OP3 CRC의 적용을 위해 국가가 비준해야 합니다. 과정은 국가마다 다르며, 종종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조약을 비준하면, 국가는 그 조항의 법적 구속에 동의합니다.

• 국가의 OP3 CRC 비준

CRC, OPSC 및/또는 OPAC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언제든지 OP3 CRC를 비준, 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OP3 CRC 비준 여부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ratifyop3crc.org

□ 왜 정부가 OP3 CRC를 비준해야 합니까?

1. 아동의 인권 보유 재확인

OP3 CRC는 아동 인권 침해가 다른 인권 침해처럼 국제적 해결법을 보장합니다.

2. 국가 구제 수단 강화

OP3 CRC 시행으로 인해 국가는 CRC 및 다른 2개의 선택 협약 및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의 이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최소한의 이행 의무로 아동 인권에 관한 책무 강화

OP3 CRC는 다른 모든 유엔 인권 조약의 청원절차와 유사한, 아동 인권의 이행을 위한 추가 도구입니다. 새로운 실질적인 인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가 이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4. 아동 인권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 입증

국가는 OP3 CRC를 비준하여 아동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이행의 국제 수준에서 모범 사례를 선도합니다.

□ 정부가 OP3 CRC를 비준하도록 어떻게 장려합니까?

여러 OP3 CRC 비준 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 정보 공유, 행사 개최, 국가 차원의 토론을 통해 OP3 CRC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정부 비준 절차에 참여하고 전국 NGO와 아동 인권 기관을 지원
- OP3CRC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에 알리고 OP3 CRC 비준을 위한 국제 연합과 협력

전략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ratifyop3crc.org/Material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출처 :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Ratify OP3 CRC) (2014). Answers to Key Questions About the Optional Protocol - Empower children to secure their rights. Geneva: The International Coalition.

과제 Ⅰ-2 인권교육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허브 구축(인권교육원 설립)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 일환으로 진행된 2017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 중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6.7%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70.0%에 비하면 소폭 감소한 비율이지만 2012년 39.4%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을 받은 경로는 학교 정규 교과시간이 59.6%로 가장 많았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9.6%,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13.7%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중에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5%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5.4%였다. 인권교육이 도움된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나, 10명 중 2~3명은 인권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성인 대상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교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법무·검찰 공무원 및 소년보호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21과 해당 부록표 참고).[57]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수준에서는 지역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여러 영역과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인권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시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이의 운영내용에 대한 종합적 실태파악이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흐름 등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인권교육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어떠한 교육과정과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진 전문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교육의 효과는 어떠한지 등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양적으로 늘어가는 인권교육이 인권교육의 목적에 맞게 인권적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인권교육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4년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2014년 10월 10일 발의, 2014년 11월 6일 철회됨). 이 법안은 인권교육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을 두어,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공공기관의 인권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인권교육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인권교육 관련 학술연구 및 인권교육자료 제작, 인권교육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과 보급·관리, 인권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법안 제13조).[58] 또한 법안 제14조에서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지역인권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위 법안에 따르면, 인권교육원은 부처별,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인권 정보와 자료 및 인력 등 인권 전문성을 지원해줌으로써 인권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교육의 체계화

57) 아동·청소년 및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근거조항
-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58) 인권교육지원법안 (201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L4U1O0L1F0U1J7S4H1Y4H3K1Q8T9 에서 2017년 9월 18일 인출.

및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권교육 허브로서 인권교육원 설치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관련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인권교육원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원은 학교, 공공부문, 시민대상 인권교육 등 다양한 인권교육을 총괄·관리하고 인권교육 관련 전문 정보·자료 제공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파견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 및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인권교육원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이의 기능과 추진전략, 조직체계 및 교육과정, 인권교육원 시설·공간 설계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원의 위상과 조직체계는 법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인권교육 분야 전문성을 구축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연수, 인권특강,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해 왔고, 인권교육기획과와 인권교육운영팀에서 인권교육원의 기능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59]

② 인권교육원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설립 추진

인권교육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4년도에 발의된 바 있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으로 인권교육원 설립에 대한 근거조항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의 제정 논의를 재개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다른 방안은 현실적 가능성과 실현 용이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규정에 인권교육원 설치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59)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제8조에 따른 인권교육 담당부서 업무
- ○ 인권교육기획과 :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2.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조사·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3.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등
- ○ 인권교육운영팀 : 1.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평가, 2.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 및 관리, 3. 대상별·주제별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4.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연수과정 운영 등

현실적 방안이기는 하나 이 또한 인권교육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국가예산과 부처별 정원 관련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년): 인권교육원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원의 기능과 업무, 추진전략, 조직체계 및 교육과정, 시설·공간 설계 등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 예산 추계 작업을 통해 조직 설립을 위한 세부설명자료를 작성한다.

② 제 2단계(2018년~2019년): 인권교육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1단계 연구에서 인권교육지원법 등 별도 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에 근거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③ 제 3단계(2020년~): 인권교육원 설립 및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을 설립하여 인권교육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 양성, 인권교육 자료 개발,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시작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8년)	제 2단계 (2018~2019년)	제 3단계 (2020년~)
주요내용	인권교육원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인권교육원 설립 및 운영

4) 관련 법 개정 사항

앞에서 검토한 두 가지 방안, 즉 인권교육지원법안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직제규정 개정 중에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 추진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년)	인권교육원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 인권교육원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50,000,000	50
2단계 (2018~2019년)	인권교육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5회 × 1,000,000 = 5,000,000	5
3단계 (2020년~)	인권교육원 설립 및 운영	• 인권교육원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예산 추계 : 시설·공간, 인력 포함)	–
		총계	55

과제 II-1 읍면·동 단위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및 보급(풀뿌리 지역참여기구)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이들의 진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언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협약의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UN, 1989).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급회와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나 교육의 한 주체인 아동·청소년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과정 참여도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참여정책·사업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9년, 청소년특별회의와 아동총회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54.9%, 이름은 들어봤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경우가 34.3%로 참여기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89.2%나 되었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권고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23(a), (b))."고 권고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간을 중심으로한 참여프로그램과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삶과 밀접한 생활공간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의견을 제시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직접 참여하는 경험과 성인과 청소년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활동하는 경험을 통해 참여역량과 민주시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참여의 장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다(동법 제28조).[60]

주민자치회는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하여 주민자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범실시 지역은 2013년 31개에서 2015년 49개 읍·면·동으로 확대되었고 (행정자치부, 2017. 4: 301)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2017년 26개에서 2018년에는 91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서울특별시, 2017. 9: 3).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민대표 조직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자치와 참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인 아동·청소년도 주민자치조직의 한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가치와 원칙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시범사업 지역 이외의 더 많은 지역에서는 자치위원 자격에 '만19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 청소년도 다른 세대들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모집공고에 신청조차

6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250&efYd=20171024#AJAX)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생활밀착형 주민자치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시킴으로써 풀뿌리 지역참여기구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파악 및 청소년참여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전국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 2017.1: 1).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5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의 수탁,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행사 등의 주민자치업무 등을 수행한다. '청소년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 시 해당 연령대를 대표하는 정식 위원으로 결합하는 형태부터 체험형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분과를 두는 형태까지 지역역량에 따라 여러 수준의 참여 논의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참여는 주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로서 주민자치회 위원에 청소년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소년 주민자치회 매뉴얼 발간 및 시범사업 실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연구를 통해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한 후, 이의 시범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을 발간·보급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매뉴얼에는 청소년 주민자치회의 근거조항 예시안, 위원 구성 방법, 자치역량교육 실시 방안, 자치회 사업 추진 방안 등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이 과정에 청소년 참여의 가치와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 중에 청소년분야 역량이 있는 지역을 특성별로 선정하여 '청소년 자치위원회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전국적 확산 모델을 마련하도록 한다.

③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의 전국적 확산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진정한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와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 행정기구, 주민자치회 추진단 및 지원단 등 주민자치회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체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 청소년 참여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 청소년참여의 의의와 특징, 착안점 등을 고려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 자치위원회는 지역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각급 학교의 학생회 및 학생회연합회 등과도 유기적 연계를 가져 나갈 수 있다. 청소년 주민자치회는 청소년 눈높이에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전국적 사업으로 확산하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년~2019년): 청소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모델 개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청소년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을 연구・개발하되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서울시가 공동논의를 통해 청소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청소년 참여'의 철학과 의의가 결합되어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과 매뉴얼에 청소년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기본 내용에 청소년 위원 참여의 의의, 성인-청소년간 파트너십 구축 방안, 위원 대상 교육과정과 내용 등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이해를 돕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 매뉴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② 제 2단계(2019년~2020년): 청소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성공 모델 발굴

청소년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과 운영 매뉴얼 개발에 따라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을 실시한다. 시범적용을 통해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제도적 개선사항이나 보완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과제로 반영하여 운영 모델을 보완한다.

③ 제 3단계(2020년~):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 확산

시범실시를 통해 개선된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도록 한다. 지역특성과

역량에 따라, 특히 지역의 청소년 분야 인식과 역량에 따라 운영모델의 적용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요인을 추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8~2019년)	제 2단계 (2019~2020년)	제 3단계 (2020년~)
주요내용	청소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모델 개발	청소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성공 모델 발굴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 확산

4) 관련 법 개정 사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역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2017.2월 개정)'[61]을 따르고 있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2017.10.18. 제정)'[62]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조례안은 위원 자격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행정안전부 조례안은 만 19세 이상인 자로 규정) 대신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원의 위촉방법은 개인 공모 60% 이내, 직능·공공 단체 추천 40% 이내로 공개 추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에 일반주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 활동 계획의 결정 및 평가기능을 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의 의의를 보다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청소년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을 보완한다면 제17조 분과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아동·청소년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기본적인 자치위원 자격에 연령 제한은 없으나 연구 및 모델개발 과정에서 실제 적용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1) 행정자치부(2017.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차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5&nttId=59187 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62) 서울특별시(2017.10).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3546720?tr_code=open 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2019년)	청소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모델 개발	•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 연구 용역 50,000,000 • 청소년 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 개발·배포 50,000,000	50 50
2단계 (2019~2020년)	청소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성공 모델 발굴	• 청소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5개 지역 × 10,000,000 = 50,000,000 • 시범사업 워크숍 및 성과 발표회 5회 × 10,000,000 = 50,000,000	50 50
3단계 (2020년~)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 확산	• 청소년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 확대 (추후반영) • 청소년 주민자치회 전국워크숍 40,000,000	– 40
		총계	240

과제 Ⅲ-1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효적 제도 개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동안의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 간의 폭력은 아직도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초, 중, 고 9,003명의 전체 응답청소년 중에서 15.2%가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학교보다 더 높아 전체의 16.2% 학생이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동일한 실태조사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학생 중 6.9%에 해당되었는데, 이는 전체 응답학생 9,003명 중 621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물리적 폭력은 남자가 9.9%로 여자 3.6%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아 15.9%로 조사되었고, 중학생은 3.9%, 고등학생이 2.5%로 나타났다.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하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학교 내외에서 폭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과 같이 주기적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학교폭력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부산일보, 2017.9.7.).

한편 이러한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중 위에서 언급한 언어폭력 이외에 청소년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시키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입고 자살한 경우도 있다. 금번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응답 청소년 9,003명 중 5.7%가 사이버 폭력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의 5.3%보다 여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가 6.3%로 더 많았다.

학교폭력의 원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료 대책은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 학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 학생 간의 폭력은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 내에서 예방되어야 하고,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역시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학교의 노력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마련된 기구가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다. 이 기구의 기능이 현재 실효성이 크지 않기에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문영희, 2016: 40).

또한 본 실태조사 결과 또래집단보다도 부모와 교사의 폭력(정서적 폭력 및 체벌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가정의 부모와 학교 교사가 자신들의 폭력적 태도를 먼저 성찰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교우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서 이들 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정례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가정과 학교가 상호 협력해서 개입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항 2호에는 임명이나 위촉 위원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를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항 1호에 '교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교감의 경력은 이미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학교에서 두 명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항에는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⑤항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말하고 있다. 위의 2조항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보면 실제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최소 구성 가능 위원 수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교감, 교사, 학부모대표 3인 외 외부인사 2명 위원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과반수 출석에 해당하는 위원들은 교감, 교사, 학부모대표이고 이 중 의사결정의 과반수는 교감, 교사의 의사에 따라 즉, 학교 측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의결 사항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 ④항도 학교의 장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또한 학교 측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예방은 1차적으로 학교에 책임이 있으므로 학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위원회의 한계로 지적되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늘리고, 학부모대표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② 폭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사 정례회’ 제도 도입

본 실태조사 결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과 학교에서 교사의 폭력은 학생 간 폭력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교사는 가정과 학교에서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또한 인권 침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해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분기별로 즉, 3월, 6월, 9월, 12월에 학급의 부모들과 학급 담임 교사가 함께 하는 폭력예방을 위한 만남의 정례회 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이와 유사한 ‘부모와 함께하는 저녁(Elternaben)’을 전통적으로 개최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의 헤센(Hessen) 주(州)에서는 헤센 주 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63] 물론 독일의 ‘부모와 함께하는 저녁(Elternabend)‘은 학급의 전반적인 교육적 내용을 가지고 담임교사, 학부모대표, 학급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학기 초 첫 번째 모임에서 학급의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고 이 모임을 조직화하게 된다. 이 모임에서는 주로 1년 동안의

63) https://de.wikipedia.org/wiki/Elternversammlung, 2017.9.27일 인출

학교와 학급에 대한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학칙 내용들을 공유하고 학교 측의 요청사항, 학부모의 건의사항 등의 의제가 토론형태로 이루어져 이를 학부모대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부모·교사 정례회' 기구가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함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호를 교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학급의 교우관계 및 학교의 학업 전반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갖도록 한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성을 판단한 후 필요 시 교육청 조례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년 상반기) : 관련법 개정 및 공청회 개최와 최종 확정 공시

학교의 학생 간 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교육부가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해당 조항을 법률 전문가와 학교폭력예방 시민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조항들을 개정하고, 공청회를 일선의 교육청, 학교, 학부모대표, 학계,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법안을 최종 확정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부모·교사 정례회' 제도의 법제화의 경우에는 법제화하기 이전에 1년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이 제도의 운영을 지침으로 하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부가 상반기에 확정하고, 시범운영 할 학교도 17개 광역 자치단체 소속 교육청이 각 초·중·고 학교유형별로 5개 학교씩 지정한 후 1년 간 시범운영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8년 하반기) : 관련법 시행 및 지속적 홍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 각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학교폭력 관련 부처와 기구를 통해 개정 법안을 전국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곧바로 개정 법안에 따라 현장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부모·교사 정례회'의 경우에는 1년 간의 시범운영을 마친 후 평가를 거쳐 제도를 보완한 후, 제도를 입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친 후 조례안을 공표하고 201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각 학교에 홍보한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항 2호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는 1호의 '해당 학교의 교감'과 중복 구성의 의미가 있음으로 2호를 교사 대신 '학생회 대표'로 개정한다(논의 필요). 또한 ①항 말미에 단서조항을 넣어 '다만, 아래의 4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아니어야 한다.'로 명시함으로서 위원들이 학교로부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폭력사안에 대한 학교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학교장의 자치위원에 대한 해촉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의 내용을 자치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 구성 정족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개정함으로서 회의 정족수인 과반수 출석 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들(법조인, 경찰공무원, 의사, 청소년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보다 법의 취지에 맞는 법의 시행과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는 학부모대표를 제외하고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모든 의결사항이 학교 측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불합리성이 개선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년)	관련법 개정 후 공청회 개최 및 확정 고시	• 법 개정 및 공청회 개최 비용 20,000,000원	20
	'부모·교사 정례회' 제도 마련 및 시범운영(2019년 3월까지)	• 제도 마련 및 시범운영 비용 17개 광역자치단체 × 5개 학교 × 100,000만원 × 1년 4회= 34,000,000원	34
2단계 (2019년)	관련법 시행 및 지속적 홍보	• 전국 홍보비 80,000,000원	80
	부모·교사 정례회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및 교사학부모 대상 연수	• 매뉴얼 개발 66,000,000원	66
		총계	200

과제 Ⅲ-2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조사 시 대응체계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언론[64]을 통해 빈번하게 전달되고 있고, 또 학대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학대신고건수가 급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과거에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아동학대사건도 이제는 보다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인권보장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육시설, 학교, 병원 등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이를 간과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관련 직무관계자를 중심으로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고 범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체계의 큰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2%,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68%로 나타나(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사례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관련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위한 출동 시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동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자료인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에 따르면, 2016년에 이루어진 총 53,401건의 현장조사에서 경찰이 동행한 경우는 27.3%인 14,594건이었으며(경찰 단독 현장조사 10.7%, 경찰과 공무원 출동 0.2% 제외), 경찰이 동행하지 않고 상담원이 혼자 조사하거나(30,210건, 56.6%) 또는 상담원과 공무원이 동행 조사한 경우가(718건, 1.3%)가 많아 경찰이 동행한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65]. 경찰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6년 학대전담경찰관을 신설하는 등 대응노력이 있어 왔다(박우현, 이용욱, 2016).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과 상담원 각각의 인력부족으로 상호

64) 헤럴드경제(2017. 10. 4). 아동학대 갈수록 흉포화.. 5년간 사망자 수 450% 급증.
메디컬투데이(2017. 10. 15). 아동학대 하루 평균 9.5건 발생…1년8개월간 14명 사망–성학대 297건.

65) 상담원이 단독 출동하는 경우는 시급한 사건이 아니거나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일 확률이 높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과 상담원의 동행출동 비율이 과반이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112로 신고체계가 통일되면서 경찰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데 비해, 상담원의 경우 접근성의 문제로 현장 출동에 시간이 걸려 경찰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많다는 관련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원의 빈번한 현장출동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와 같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많아 결국 상담인력 증원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전문가 자문의견).

동행 출동을 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현장조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의 아동보호 및 격리 시에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박우현, 이용욱, 2016; 장응혁, 2017). 따라서 적절한 인력충원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경찰력과 전문가의 협업에 따른 효과적인 현장조사 및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학대행위자가 경찰이나 상담원의 아동보호조치 불응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처벌규정 등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66].

2) 주요 내용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

아동과 밀접한 생활환경에 있는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불이행시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다.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은 아동학대 신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과 이에 따른 학대행위자에 의한 비난이나 협박 등으로 신고가 꺼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67]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관계기관(예, 보육시설, 병원 등) 등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의 인력 증원

아동신고건수 및 학대사례 급증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소진 우려로 지속적인 상담원 충원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빈번한 아동학대 현장조사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담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이들 상담원과 동행해야하는 경찰력 부족 역시 지적되고 있는 바[6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정 상담원 배치를 우선한 관련

66) 현장조사 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안은 동행 출동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담원과 경찰의 시각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다. 학대피해 아동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측면과 사회복지적 개입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상담원과 보다 가시적인 피해상황이나 처벌 및 법적 조치에 초점을 둔 경찰과의 관점차이로 인한 의견불일치나 갈등 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분석에 기반 한 매뉴얼 뿐 아니라 갈등조정을 위한 협의회와 같은 기구들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자문의견).

67) 세계일보(2017. 9. 26). 보복 무서워… 아동학대 신고 꺼린다.

68) 연합뉴스(2016. 10. 5). 아동학대 신고 급증세…학대전담경찰관은 '태부족'

전문 인력 충원이 매우 필요하다.

③ 현장조사 시 상담원과 경찰의 권한 및 조사거절/아동보호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경찰대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박우현, 이용욱, 2016; 장응혁, 2017)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학대행위자의 조사거절과 아동보호조치 및 격리 등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하고 효과적인 현장조사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거부 및 아동보호조치 불응 시 처벌내용이 학대행위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처벌규정이 필요함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 제기된 문제로 현장 조사 시 상담원과 경찰의 권한 및 조사 거절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사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년~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며 이들 신고의무자가 속한 병원과 같은 기관들에서도 신고의무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② 제 2단계(2020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담당 경찰관의 인력 증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정 상담원 배치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5년 기준으로 상담원이 200여명 가까이 증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대사건담당 경찰관이 배치되기는 했으나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의 큰 규모의 인력 증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점진적인 증원을 통해서라도 현장조사 시 담당 상담원과 경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피해가 경감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과 관련한 계획이 우선 수립되고 이후 점진적인 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 3단계(2021년~): 현장조사 시 상담원과 경찰의 권한 및 조사거절/아동보호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과거보다는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같은 외부공권력의 개입에 대해 여전히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 의심 시 현장 조사에서 부모나 보호자의 조사거절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현장 조사 시 학대행위자의 불응과 협박 등의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 시 체포 권한과 또 아동보호조치 불응 등에 있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또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인식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8~2019년)	제 2단계 (2020년~)	제 3단계 (2021년~)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담당 경찰관의 인력 증원	현장조사 시 상담원과 경찰의 권한 및 조사거절/아동보호조치 불응에 대한 처벌 강화

4) 관련 법 개정 사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10조와 제62조에는 신고인에 대한 익명성 보장관련 내용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처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그치고 있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법률에 상담원과 담당경찰관의 적절한 인력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현장 조사 시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방해 및 거절 등의 상황에서 현장 체포 및 형사 처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8~2019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홍보를 위해 총 1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리고 2단계(2020년~)에서는 인력증원계획 수립에는 약 50백만원, 그리고 상담원 및 경찰관의 긴급 추가배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재원을 고려하여 추후 반영하며, 3단계(2021년~)에서는 경찰과 상담원의 권한강화

및 현장조사/아동보호조치 시 거절 및 불응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공청회 개최 등으로 130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신고의무자 교육 및 워크숍 등 개최 50,000,000원 • 미디어 홍보 및 관계 기관 홍보물 배포 50,000,000원	50 50
2단계 (2020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담당 경찰관의 인력 증원	• 상담원과 경찰관 인력증원계획 수립 50,000,000원 • 상담원 및 경찰관 긴급 추가 배치 추후 반영	50
3단계 (202'년~)	현장조사 시 상담원과 경찰의 권한 및 조사거절/아동보호조치 불응에 대한 처벌 강화	•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구 80,000,000원 • 공청회개최 50,000,000원	80 50
		총계	280

과제 Ⅳ-1 입양 및 파양관련 체계적 DB 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의 입양사례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입양을 위한 과정과 절차에서 뿐 아니라 입양 후 사후관리까지 입양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2014년 국내·외 입양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사건[69]이후로 아동 입양 후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는 빗발쳤고, 특히 이 입양 아동들이 모두 학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아동인권차원에서 학대예방을 위한 입양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더욱 강조되었다. 당초 정부에서도 입양특례법을 제정하고 입양 이후 사후조치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도 제시한 바, 중앙입양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입양 사후서비스 관리와 모니터링, 또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

69) 연합뉴스(2014. 10. 29). 2살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로 어머니 구속수감.
MBC NEWS(2014. 2. 19). 美 한국인 입양아 양아버지 학대로 사망.

템 구축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와 사망사건(대구 입양아동 사망 사건[70])은 이어지고 있으며, 추방된 해외 입양아 사건[71] 역시 국내·외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진행 중인 사후관리가 입양 아동 및 가족의 적응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될 필요가 있다.

입양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파양에 대한 것이다.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양부모의 자격강화 뿐 아니라 파양요건이 엄격해졌고(보건복지부, 2016e), 또 입양 및 파양 모두 법원의 허가와 재판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으나, 비밀입양이 여전히 선호되는 사회분위기에서 모든 입양 및 파양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재판을 통한 파양의 경우는 2016년 기준으로 246건이 보고되었으나(법원행정처, 2017) 이외에 파양원인 및 현황파악과 이후 대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선행연구들에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입양아동의 연령, 장애 및 질병의 유무, 양부모의 입양 준비 정도, 양부모의 양육태도 문제 등을 주 파양원인으로 보기도 하지만(예, 이미선, 박미정, 2010), 국내에서의 파양원인과 관련된 보다 체계적인 연구 및 실태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파양에 따른 재입양 문제(예, 국내·외 파양 후 재입양된 아동의 학대사망사건 등[72])와 이때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여러 심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앙입양원의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는 국내외 입양기관 DB와 연결되어 입양가정 뿌리 찾기나 입양가정과 아동 매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중앙입양원, 2017). 그러나 파양현황 및 원인(예, 아동 및 부모 부적응의 구체적인 내용,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에 따란 입양 아동 거취 등), 재입양을 포함한 사후추적 및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더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내외 입양 아동 및 해당 가정의 특성을 포함한 정보, 이후 사후서비스 관련 내용, 특히 향후 파양 예방을 위한 더욱 적극인 개입을 위해 파양 시 원인과 현황파악이 가능한 내용이 더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파양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70) 서울신문(2017. 2. 8). 3세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양아버지 징역 10년
71) KBS(2017. 7. 18). [취재후] 인천 공항의 어떤 추모식…길 잃은 추방 입양인
72) 경북일보(2016. 10. 31). 입양父 폭력에 뇌사 여아, 106일 만에 하늘나라로.
연합뉴스(2016. 10. 26). 두번의 파양과 학대…'기구한 운명' 韓입양인, 美서 추방위기.

2) 주요 내용

①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효과성 검토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정부차원에서도 국내외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를 과거에 비해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입양원을 통해 국내외 입양의 사후관리 및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73] 그러나 이러한 사후관리 및 서비스가 어떻게 입양아 및 입양가족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부적응 및 파양위기 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후관리의 긍정적인 영향과 효과성,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제공 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② 입양 후 적응 및 파양 관련 정보 수집과 DB구축

개별 입양아동과 가족의 적응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입양성립 후 1년간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아동의 적응 및 발달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아동파양 후 재입양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부정적 영향이 크지만, 재입양 후 학대피해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좀 더 기간을 연장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입양 후 적응상태 및 파양관련 정보 수집을 더욱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양아동의 적응 및 발달상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된다면 파양의 원인에 대한 분석 역시 용이하게 이루어져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파양의 원인이나 계기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입양사전 및 사후에 축적된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입양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입양상담 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고지 및 교육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③ 파양아동 · 청소년 사후관리 방안 및 파양예방 대책 수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양경험을 한 아동·청소년은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문제 뿐 아니라 행동이나 태도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파양경험을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에 따른 파양과 아동의 부적응,

73) 사후관리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이나 입양아동 발달에 대한 종단 연구 수행,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체계화된 사후관리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는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파양은 그 원인과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 원인별로 파양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입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 또한 파양 후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되는 경우, 그리고 또 재입양되는 경우 등 각 사례에 따라 파양경험을 한 아동·청소년의 사후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입양 후 사후관리와 파양 시 적절한 개입 등을 통하여 파양을 예방할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년~2019년):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효과성 검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입양 후 사후관리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입양원 뿐 아니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입양기관의 해당 사업 및 서비스가 실제로 입양아동과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

② 제 2단계(2020년~): 입양 후 적응 및 파양 관련 정보 수집과 DB구축

입양아동의 적응상태와 이후 발달과정, 그리고 파양위기와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또 파양이후에 대한 내용들까지 DB를 구축하여 향후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개입 및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포함하여 입양가족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③ 제 3단계(2021년~): 파양아동 · 청소년 사후관리 방안 및 파양예방 대책 수립

입양 및 파양에 대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파양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히 개입하고, 불가피하게 파양이 결정된 경우 필요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지침의 개선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파양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8~2019년)	제 2단계 (2020년~)	제 3단계 (2021년~)
주요내용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효과성 검토 연구 수행	입양 후 적응 및 파양 관련 정보 수집과 DB구축	파양아동 · 청소년 사후관리 방안 및 파양예방 대책 수립

4) 관련 법 개정 사항

현재 입양특례법 제17조에는 파양과 관련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입양아를 학대 및 유기하거나 복리를 해하는 경우, 패륜행위로 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입양아의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으로 입양과 파양의 요건과 절차 및 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외 파양과 관련된 다른 내용은 관련 법률에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파양과정 및 절차, 그리고 파양 이후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파양에 대한 내용이 입양특례법 및 관련 규칙 등에 보다 상세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 및 파양 관련 정보 수집과 DB구축 역시 입양특례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민감한 관련 개인정보 취급 및 보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8년~2019년)에서는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 연구와 입양 후 사후관리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사후관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연구의 기초연구비로 총 14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후관리 개선과 관련된 비용은 추후 예산에 반영한다. 2단계(2020년~)에서는 입양 후 적응 및 파양과 관련된 정보가 수집·관리 될 수 있는 DB를 구축하는데, 이를 위해 총 300백만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입양가족의 협조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의 비용으로 100백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2021년~)에서는 파양 아동·청소년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를 위해 70백만원, 파양 아동·청소년 사후관리 사업에 3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파양 예방 대책 수립으로 100백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2019년)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효과성 검토 연구 수행	•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및 효과성 방안 연구 100,000,000원	100
2단계 (2020년~)	입양 후 적응 및 파양 관련 정보 수집과 DB구축	• 입양 후 적응 및 파양관련 DB구축 300,000,000원 • 입양가족 협조 위한 교육 및 워크숍 100,000,000원	300 100
3단계 (2021년~)	파양아동 · 청소년 사후관리 방안 및 파양예방 대책 수립	• 파양 아동 · 청소년 사후관리 방안 연구 70,000,000원 • 파양 예방 대책 수립 100,000,000원 • 파양 아동 · 청소년 사후관리 사업 300,000,000원	70 100 300
		총계	970

과제 Ⅳ-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보호대상 아동(요보호아동)이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이 아닌 가정에 위탁하는 것을 지칭한다. 가정위탁은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가정위탁, 그리고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가정위탁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위탁아동의 92.5%가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아동으로 약 7.5% 정도인 970여명 정도만 일반가정 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일반가정 위탁 중에서도 상당부분은 국내외 입양을 앞둔 영유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일반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는 사례는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의 요보호아동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수가 전년대비 282명 증가하여 10%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고, 동일한 수준으로 시설보호 역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정위탁보호는 전년대비 9.2%가 감소하여 탈 시설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정책적 분위기와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어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또 본 인권 연구를 통해서도

가정환경 양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가정위탁제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시설보호가 증가하고 가정위탁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사회각계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위탁 감소에 대한 원인파악과 일반가정위탁에 대한 인식개선, 정부지원의 현실화, 장기적으로는 시설보호대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주요 내용

① 가정위탁 감소 원인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

가정위탁이 감소하는 이유로 출산율 감소와 요보호아동 수의 감소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증가한 상황이다. 과거부터 가정위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오히려 가정위탁이 감소한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근거한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여전히 사회일반에 친숙하지 않은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 역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② 일반위탁가정 지원 확대 및 위탁가정부모 교육 강화

일반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가정위탁보호 시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상해보험료나 심리치료비 지원, 위탁가정 전세자금 대출, 디딤씨앗통장, 자립지원정착금, 위탁아동 소득공제와 같은 지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6), 대부분 아동대상의 지원으로 현실적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은 월 15만원 수준으로 권고되는 양육보조금과 전세자금 대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단순히 양육보조금 인상만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아니며, 또 이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동 1인당 월 양육보조금은 인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위탁가정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및 아동양육방식에 대한 교육,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 예방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③ 시설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아동인구 수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시설 아동 수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2016년 기준으로 13,689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며 성인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치료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보호는 가정위탁보호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사안으로 특히 혈연관계가 아닌 비혈연관계로 이루어지는 일반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수반되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년): 가정위탁 감소 원인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

가정위탁보호의 중요성이 누차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적, 혹은 사회적 인식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시설보호를 가정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

② 제 2단계(2019년~): 일반위탁가정 지원 확대 및 위탁가정부모 교육 강화

위탁가정, 특히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원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가정환경에서의 성장기회 제공이라는 의미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위탁부모의 경우 또 재정적인 부담이 없어 양육보조금에 특별히 관심을 없는 경우라도 해도 현재의 월 15만원 수준의 양육보조금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양육보조금의 인상을 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하되, 양육보조금의 부정적 사용 예방을 포함하여 위탁가정부모에 대한 강화된 교육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③ 제 3단계(2020년): 시설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강력한 정책적인 의지로 시설보호를 가정위탁보호 전면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특히 관련 연구 및 현황파악 등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위탁보호로의 전면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8년)	제 2단계 (2019년~)	제 3단계 (2020년)
주요내용	가정위탁 감소 원인 파악 및 활성화방안 연구 수행	일반위탁가정 지원 확대 및 위탁가정부모 교육 강화	시설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4) 관련 법 개정 사항

현재 아동복지법 제59조에는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시 이에 따른 비용보조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되고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라도 양육보조금 인상 및 재원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8년)에서는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약 1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단계(2019년~)에서는 일반위탁가정 대상의 양육보조금 인상과 관련하여 약 7,200백만원이, 그리고 위탁부모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으로 1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2020년)에서는 가정위탁보호로의 전면 전환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100백만원이, 그리고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방송 및 인터넷, SNS 홍보 및 캠페인으로 3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월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년)	가정위탁 감소 원인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	• 가정위탁 활성화 방안 연구 100,000,000원	100
2단계 (2019년~)	일반위탁가정 지원 확대 및 위탁가정부모 교육 강화	•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인상 1,000명×월300,000원×12개월 • 위탁부모 교육 및 워크숍 100,000,000원	3,600 100
3단계 (2020년)	시설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계획 수립	• 가정위탁보호 전환 장기계획 수립 100,000,000원 • 방송 및 인터넷, SNS 홍보 및 캠페인 300,000,000원	100 300
		총계	4,200

과제 Ⅴ-1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①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② 장애아동의 교육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아동이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교사와 감독관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③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것, ④ 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79-480).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무상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기초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신설·증설하고 있다. 통합교육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을 위한 재원과 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장애아동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성별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이 부족하여 통합교육에서의 학습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경준 외, 2014: 121). 본 연구결과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6년 현재 87,950명이며, 그 수는 2011년 82,665명 수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 수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그리고 특수학교수와 특수학급 수, 그리고 특수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이며, 그 지원액의 매년 증감추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면, 일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적 청사진과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반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주요 내용

①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이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분리교육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점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현장도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만 형식적으로 통합된 상황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시청각 장애아동은 통합교육을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수화통역, 대필, 점자도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수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이 분리된 학급에서 장애유형과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개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주간에 아동을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김경준 외, 2014: 121). 결과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속에서 통합교육의 의미와 법적·정책적 정체성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 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학교현장에서의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합리적 편의제공, 장애아동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개별화 맞춤교육의 방법과 그에 따른 교재·교구의 확보계획 등 실질적인 내용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②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 중장기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계획을 곧바로 시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수반될 수 있다. 우선 통합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이에 따른 심각한 저항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부딪치게 될 실무적인 문제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을 수정·보완한다면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③ 중장기계획의 단계적 시행 및 통합교육의 사회적 정착

공청회를 통해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중장기계획을 학교교육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학교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평가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도록 함으로써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2019년):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국가수준에서의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교육제도 하에서 통합교육의 의미와 법적·제도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아울러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합리적 편의제공, 장애아동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개별화 맞춤교육의 방법, 교재·교구의 확보계획 등 실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단계별 실행계획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한다.

② 제 2단계(2020년):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 중장기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통합교육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 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단위와 시·도단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며,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수정해서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한다.

③ 제 3단계(2021년~계속): 중장기계획의 단계적 시행 및 통합교육의 사회적 정착

공청회를 통해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중장기계획을 일선 학교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연단위 세부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대한 공청회 단계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연단위 실행계획을 학교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도 제도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진단계	제 1단계(2018~2019년)	제 2단계(2020년)	제 3단계(2021년~)
주요내용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 중장기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중장기계획의 단계적 시행 및 통합교육의 사회적 정착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8~2019년)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연구비로 총 200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리고 2단계(2019년)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100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단계의 공청회는 전국단위와 시·도단위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각각의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중장기계획을 수정하는데 반영되도록 한다. 3단계(2021년 ~)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후에 예산을 반영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2019년)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중장기계획수립 기초연구 200,000,000원	200
2단계 (2020년)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 중장기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100,000,000원	100
3단계 (2021년~)	중장기계획의 단계적 시행 및 통합교육의 사회적 정착	• 향후 예산 반영	–
		총계	300

과제 Ⅴ-2 아동 · 청소년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 방안 수립 · 시행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고등학생의 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의 건강을 위한 운동 실천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013년에 12.7%였던 비만율은 2014년 15.5%, 2015년 18%로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014년 19.3%에서 2017년 23%로 증가하였으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31.3%, 즉 1/3이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을 기준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각각 22.6%, 22.1%), 읍면지역은 27.1%로 나타나 지역규모별 차이를 보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및 성장에 있어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식습관이 바뀌고 또 학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비만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운동은 단순히 비만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건강한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성인기 삶의 기초체력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소아비만 및 운동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학교현장에서는 체육 시수를 늘려 절대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또 지역사회 내 운동시설 및 장소 미흡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운동관련 장소 및 시설 접근성을 확대하여야 있다.

2) 주요 내용

① 소아비만 및 운동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소아비만의 위험성과 운동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 남학생, 그리고 학업부담이 가장 큰 고등학생의 비만율 증가와 여학생의 저조한 운동실천율 등을 재조명하고, 이러한 인구집단과 관련한 운동 실천을 더욱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아비만율 감소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적 계획 수립

비만율을 감소 및 운동실천 활성화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문제를 포함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이 성장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 체력의 근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③ 학교에서의 운동시간 증가 및 지역사회 내 운동시설 접근성 증대

학교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매우 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먼저 학교에서의 체육 시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정과목의 시수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이 신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및 장비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실 및 운동장에서의 단체·개별 운동시간, 다양한 클럽 및 동아리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신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는 필요한 운동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하고 접근성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운동실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년~2019년): 소아비만 및 운동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소아비만이 성장기와 이후 성인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와 함께, 현재 이동·청소년의 낮은 운동실천율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기초로 운동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② 제 2단계(2020년): 소아비만율 감소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적 계획 수립

비만율 감소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등 범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해당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21년~): 학교에서의 운동시간 증가 및 지역사회 내 운동시설 접근성 증대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초로 학교에서의 체육시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운동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체육시수 증가가 어려운 경우, 이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동안 실질적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장비나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와 여성가족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내 관련 시설, 특히 청소년관련기관의 운동기구 및 시설 구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8~2019년)	제 2단계 (2020년)	제 3단계 (2021년~)
주요내용	소아비만 및 운동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소아비만율 감소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적 계획 수립	학교에서의 운동시간 증가 및 지역사회 내 운동시설 접근성 증대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8~2019년)에서는 소아비만의 위험성 및 운동실천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300백만원의 예산이, 2단계(2020년)에서는 소아비만율 감소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적 계획 수립과 관련 공청회 등 개최로 2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3단계(2021년~)부터는 전국의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관련 기관 등 아동·청소년들과 밀접한 환경속에서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장소, 장비, 시설 등의 보강에 1,1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 1단계와 2단계를 국고지원, 3단계는 국고와 지방비가 지원하도록 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2019년)	소아비만 및 운동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방송 및 인터넷, SNS 홍보 및 캠페인 300,000,000원	300
2단계 (2020년)	소아비만율 감소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적 계획 수립	• 국가계획 수립 200,000,000원 • 관계기관 간담회, 공청회 개최 50,000,000원	200 50
3단계 (2021년~)	학교에서의 운동시간 증가 및 지역사회 내 운동시설 접근성 증대	• 학교 운동/체육관련 장비 및 시설 보강 500,000,000원 • 지역사회 운동시설 보강 300,000,000원 •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 시설의 운동장비 및 시설보강 300,000,000원	500 300 300
		총계	1,650

과제 Ⅴ-3 청소년상담체계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 상담을 위한 관련 기관의 인프라구축 현황을 보면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225개소가 확대·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주요 청소년상담채널인 '1388'(전화 1388, 문자상담, 사이버 상담 포함)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7d, 2017e). 그러나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인 발달 및 인권관련 지표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가출, 스트레스, 죽고 싶다는 생각 등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특히, 중학생의 전년대비 가출경험률이 다소 증가하였고 또 청소년의(중1~고3)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상담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가끔' 또는 '자주'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 33.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42.9%로 나타나 간과할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죽고 싶은 이유로는 학업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가족 간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실태조사에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지인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2014년 이후로 증가하여(8.5%→9.5%) 10%에 육박하였으며, 특히 학교교사와 상담교사에 대한 응답은 전년대비 모두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각각 0.8%, 0.4%). 또 앞서 언급한 청소년상담채널 이용현황과는 전혀 다른,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청소년상담센터 이용 응답률(0.3%)을 보여 청소년의 고민 해결과 정서적 지원 강화, 그리고 학교 밖 지역사회 내에서의 상담체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이용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내용

①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기관 홍보 및 접근성 제고

고민거리가 있고 또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 중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단순한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아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반드시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기관 및 이용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많은 노력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

및 지역사회 내에서 상담기관이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같이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 등에 상담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거나, 전문상담사를 파견·배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기 개입 강화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일시적인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가정불화와 같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간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계속 누적되면서 청소년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국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 조기 개입 및 지원은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사와 치료사들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기 발굴 및 개입 역시 요구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년~):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기관 홍보 및 접근성 제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는 관련 시설이나 기관들을 통해 청소년상담기관 및 활용 가능한 상담매체(전화, 문자메시지, 사이버상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와 관련한 접근성 제고와 이용률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관련 시설과 장소 등에 정기·비정기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제 2단계(2019년~):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기 개입 강화

청소년상담기관 및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승된 인지도를 기초로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우울, 스트레스)에 조기에 개입하고, 다양한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상담사와 치료사를 각 상담복지센터(CYS-Net)에 확대 배치하여, 조기에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를 발굴,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의 인력충원 배치가 당장 어려운 경우 바우처를 제공하여 인근의 민간 상담치료센터나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8년~)	제 2단계 (2019년~)
주요내용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기관 홍보 및 접근성 제고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기 개입 강화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8년)에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기관 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홍보물 제작 배포 등으로 100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2단계(2019년~)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과 위기청소년 발굴 및 조기개입을 위한 전문 상담사 및 치료사의 추가배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원을 고려하여 추후 반영하고, 정서지원 및 치료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으로는 5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는 국고와 지방비로, 그리고 2단계의 경우 바우처 지원은 지방비로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 및 치료사와 관련해서는 안정적 추가배치를 위해 관련 기금 등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년)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기관 홍보 및 접근성 제고	•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배포 100,000,000원 • 지역사회 내 상담프로그램 운영 예산 추후 반영	100
2단계 (2019년~)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기 개입 강화	• 정서지원 및 치료프로그램 이용 바우처 지원 500,000,000원 • 전문 상담사 및 치료사 추가 배치 예산 추후반영	500
		총계	600

과제 Ⅵ-1 직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성공사례 DB 구축과 멘토 제도 도입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1997년 특성화고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고, 2009년 엘리트 직업계고를 만들기 위하여 마이스터(Meister) 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어서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이스터고는 문턱이 너무 높고, 인기있는 특성화고도 성적기준이 있어서 직업교육에 관심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일반고의 학업과정을 따라 가기 어려워 학업에 흥미를 잃기 쉬웠다.

2015년에 처음 일・학습 병행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업중단학생의 급속한 증가와 청년실업 등 청소년의 사회진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유럽 사례에서 벤치마킹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도제학교에 대한 수요자와 도제학교와 연계한 기업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2017년부터 특성화고도 점차 도제학교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계 고등학교 150개를 선정하여 총 900억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7. 5. 1). 이러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제도들은 현재의 학업중단 교육 상황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진로기회를 열어주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초기라 학교나 기업이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지만, 기존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함께 점차 좋은 모범사례나 성공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각 직업학교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들을 DB로 구축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학교나 직업학교와 연계한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직업계 학교 학생들에게 수많은 직업 기회들 앞에서 어느 직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하는 가에 대한 know-how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이미 직업계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 사회에 진입한 멘토(mentor)를 발굴하여 직업계 학교 학생들과 결연을 맺어주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제도 도입한 초기에 기업의 노동착취를 통해 특성화고 실습생의 자살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여, 도제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직업계고 직업교육 성공사례 발굴 및 DB(data base) 구축

1997년부터 시작된 특성화고와 2009년 도입된 마이스터고는 졸업생이 나온 지 17년, 5년이나 되므로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공적으로 직업을 얻어 사회에 진입한 사례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직업교육을 새로운 진로 기회로 정한 학생이나 정하려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2015년 일·학습 병행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산학일체형 최초 9개의 도제학교도 내년 2월이면 첫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한다. 향후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지금부터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제대로 DB화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DB로 구축된 성공사례는 자료집으로 만들어 홍보와 교육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교과과정에 반영할 수도 있는 유용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② 직업계고 성공사례 졸업생 멘토(mentor) 제도 도입

위에서 구축된 직업교육 성공사례 DB를 통해서 직장이나 상급학교 전문 직종 학과에 진학한 졸업생이 자신의 출신학교나 거주 근린지역 직업계고 후배에게 멘토가 되어 직장실습이나 도제의 직장경험, 직업 및 직장의 선택 등 진로에 관하여 코칭을 해주면서 사회 진입의 동반자가 되어 주도록 한다. 이 제도는 법제화하기보다는 학교와 기업이 산학협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제도와 문화로서 정착되도록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년 상반기) : 직업계고 직업교육 성공사례 발굴 및 DB구축

기존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졸업생 중에서 자신의 전공에 맞는 직종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각 학교마다 DB를 구축하고 각 학교는 다시 학교 소재 교육지청이나 교육청의 해당 부서에 DB를 구축하도록 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DB화 한 후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을 매년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책자로 만들어 직업계 직업학교와 협력 기업에 배포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8년 하반기) : 직업계고 직업교육 성공사례 졸업생 멘토(mentor) 발굴

기존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학교 졸업생 중에서 이론 학습과 직장에서의 실습을 잘 마치고 성공적으로 자신이 원하고 공부한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멘토로 발굴한 후 그를 선배 멘토로 선정한다.

③ 제 3단계(2019년 3월) : 직업계고 성공사례 졸업생 멘토(mentor) 제도 시행

직업계고 성공사례 졸업생이 멘토로 선정된 후에는 자신이 졸업한 학교나 거주지 소재 직업계고 학교와 결연을 맺어 자신의 전문 직종에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교 후배나 후학 집단에게 자신의 수학 경험과 직장 체험, 진로 및 직업, 직장 선택, 일상에 관한 멘토로서 길라잡이와 상담사, 때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역할을 해줌으로서 인생과 진로의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멘토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자원하여 하도록 하고, 경비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하도록 한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직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성공사례 DB 구축과 멘토 제도 도입 등은 별도의 법제화보다는 제도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 졸업생이 함께 노력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년 상반기)	성공사례 발굴 및 DB구축	• 성공사례 발굴 및 DB구축 개발 비용 100,000,000원	200
2단계 (2018년 하반기)	성공사례 졸업생 멘토(mentor) 발굴		
3단계 (2019년 3월)	성공사례 졸업생 멘토(mentor) 제도 시행	• 성공사례 졸업생 멘토링 비용 각 학교마다 월 1회 멘토링 100,000원	추정 유보
		총 계	20

과제 Ⅵ-2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1항에는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2항에는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아동·청소년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차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한 후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63)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2009년 12월 23일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2010년 1월 5일「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를 기존의 교과 외 활동이었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전인적 인성교육을 꾀하려는 긍정적인 학교교육의 방향 설정이었다. 또한, 진로설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청소년이 증가하자 정부는 1974년 처음 아일랜드 정부가 도입한 전환학년제를 벤치마킹하여 2013년 4월 처음으로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42개교에 도입한 후 지난 2016년부터는 전면 실시되어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미래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이 없는 토론 및 실습 위주의 학생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활동, 예술・체육활동,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수업과 활동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지만, 고등학교 입학시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2018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교육부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다소 활성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과거의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과 다를 바 없게 형식적으로 단위 시수를 이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창의적 체험활동보다는 중학교 1, 2학년에서 한 학기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자유학기제는 체험활동의 기회가 체계적으로 새롭게 이루지고 있으나 이도 한 학기 동안 주로 오후시간에 한정되어 있고 모든 초・중・고의 교육과정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와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었어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오락,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민간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향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2) 주요 내용

① 퇴임 교원의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력으로의 활용

2010년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상급학교 입학시험에만 몰입하는 학교와 학부모, 안전문제를 염려하는 학교장, 학교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소극적 태도 등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 지도인력을 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근린 생활권과 숙박이 가능한 자연권에 805개소 설치되어 있다. 이는 학교가 필요 시 근린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해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제도 안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을 연계해주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투입된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시범적으로 지정받아 운영해 보았던 코디네이터 기관들은 코디네이터 양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 업무 과중, 향후 예산확보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189-191).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는 근린 청소년수련시설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수련시설에 보내 수련시설에서 잘 준비된 시설,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인력을 통해 양질의 체험활동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이 체험활동 활성화의 핵심이다. 이러한 연계・협력의 열쇠 역할을 하는 중개자로서의 코디네이터로서는 최근 퇴임한 전직 교장이 가장 적격이다. 왜냐하면 퇴임한 교장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지역사회 내 동료 또는 후배 학교 교장들과 이미 라포를 형성하고 있고, 이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에 따른 지역사회 학생들의 체험활동들을 청소년수련시설에 실질적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그 누구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 및 기관에서는 퇴임 교장의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구축하여 이들로 하여금 수시로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허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퇴임 교원 코디네이터를 통한 학교와 수련활동시설 간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조성

2010년 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을 발표한 후 여성가족부는 같은 해 5월 24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다. 그 이후 7년이 경과되었지만 교육부 소속 시설인 학교와 여성가족부 소속 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계・협력은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간혹 성공사례가 나타나는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퇴임한 전직 학교장이 이 둘을 연계시켜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이를 제도화 하여 지역사회 내 학교 - 퇴임 교장 코디네이터 - 청소년수련시설의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추진 절차

① 제1단계(2018년 상반기) :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퇴임 교원 인력풀 구축 및 관련근거 마련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청이나 교육지청에 퇴임 교장들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유휴 자원인력으로 발굴하고 인력풀을 담당부서에서 구축한다.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② 제 2단계(2018년 하반기) : 코디네이터의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연계·협력 네트워크 조성

발굴된 퇴임 교장 코디네이터는 각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을 연계해 주는 허브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자원활동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급여 형태로 지원받도록 한다. 코디네이터 비용의 재원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MOU를 체결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에 ⑤항을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퇴임 교원 등을 청소년수련시설의 협력 진행자로 임명할 수 있다."로 하여 신설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년 상반기)	창의적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발굴 및 인력풀 구축 및 관련법 개정	• 창의적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발굴 및 DB 구축 프로그램 비용 20,000,000원	20
2단계 (2018년 하반기)	코디네이터의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연계·협력 네트워크 조성	• 창의적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비용	추후 산정
		총 계	20

과제 Ⅷ-1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의 대안양육과 예비학교 확대 운영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특별보호조치 협약조항과 관련하여 난민아동 및 무국적아동과 관련된 권고사항에서 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출생등록 및 망명희망자 지원, ②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배제 및 본국 송환 과정 시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① 이주아동(불법체류 자녀 포함)의 교육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전략개발, ②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64-71).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난민법을 제정하였으며, 난민인정절차 담당부서의 신설, 이의신청제도와 통역서비스 제공,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의 특별보호대상 규정 제정과 같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14년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19세 미만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을 특별보호대상으로 규정하였으

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전담공무원지정, 시설배정 등 특별한 지원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전문교육(13시간)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난민아동의 부모가 난민으로 인정받았을 때에는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 난민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52-159).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난민신청자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신청자는 2013년에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3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난민신청자 인원수도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난민법 시행 이후 전체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하는 것처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난민인정자수는 많지 않다. 난민인정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2012년 이후부터 90명 이상의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며, 2016년에는 98명이 난민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전체 인정자 98명 중 18세 미만은 47명으로 48.0%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다. 하지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난민아동의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만 인정하고 있어서 부모가 난민신청 중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즉, 난민신청 중 아동의 생계 및 주거지원은 가능하지만 지원기간이 한시적(6개월에서 1년 이내)으로 제공되고 있고, 난민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과반수이상으로 많아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의 출생등록 보장과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배제 및 본국 송환과정에서 최대 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국적은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출생등록 제도를 보완하여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또한 난민아동의 구금배제 원칙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탁양육이나 시설보호 등 대안양육에 대한 상세 규칙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52-159).

2) 주요 내용

① 난민아동의 구금배제와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마련

난민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가급적 배제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설의 대안양육 체제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반영된 상세규칙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난민아동의 인도적 체류와 보호를 위해 보호자 유무와 관계없이 구금을 배제하며,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 하에 시설보호 및 대안양육의 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그리고 난민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후견인이나 조언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이나 지침에 포함되도록 한다.

② 난민 혹은 이주아동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확대

난민 혹은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하여서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 교육을 보장하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들 난민 혹은 이주아동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곧바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지역의 예비학교 혹은 초기 준비교실에서 예비교육을 받는 곳으로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습지도, 간단한 인사말 및 예절교육 등 학교적응에 필요한 사전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예비학교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난민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예비학교의 필요성은 더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예비학교를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더 증대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예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레인보우스쿨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초기 적응준비교실로 지정하는 운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1:1 멘토링 혹은 멘토 1인에 멘티학생 2~3인을 연결하여 개별 적응지도를 병행하는 방식도 효과성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년) : 난민아동의 구금배제와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시행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은 가급적 배제하고,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설의 대안양육 체제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규칙과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제 2단계(2019년) : 난민 혹은 이주아동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 운영

난민 혹은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 교육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교육 진입 지원을 돕는 예비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확대운영 계획이 마련되면 새롭게 마련된 '난민 혹은 이주아동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 운영 계획(안)'에 기초하여 예비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8년)	제 2단계 (2019년)
주요내용	난민아동의 구금배제와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마련	난민 혹은 이주 아동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 운영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8년)에서는 난민아동의 구금배재와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단계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운영모형과 지침을 마련하는 용역을 발주하는데 약 1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단계(2019년~)에는 운영모형과 관련 지침에 기초하여 난민 혹은 이주아동을 위한 예비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단계로 약 2,0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년)	난민아동의 구금배제와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마련	• 연구용역비 100,000,000원	100
2단계 (2019년~)	난민 혹은 이주아동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 운영	• 난민/이주아동을 위한 예비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2,000,000,000원	2,000
		총계	2100

과제 Ⅷ-2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단속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활동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①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②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을 엄격히 시행할 것, ③ 변칙적인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조항을 제공하고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할 것, ④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묻고 재활을 돕는 효과적인 제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84-485). 이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의 수준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4년까지 청소년 집중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관련된 통계를 공지했었으나 2015년부터는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2016.7.25.).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다. 즉, 2017년 여름방학동안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전국 주요도시지역의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 344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적발업소는 177개소로 나타나 51.5%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고용사업장 위반율이 높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근로계층인 청소년들을 집중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청소년 집중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감시할 프로그램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단속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정책과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김영지 외, 2016: 578-581). 하지만 이 과제와 관련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보고서에서 특별보호조치 영역의 정책과제로 다시 제안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①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 실태 점검 및 관리 ·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청소년의 근로관련법 준수실태를 점검·관리·감독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와 관련법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근로관련 법령위반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청소년 집중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② 청소년 집중 고용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체계 구축 및 가중처벌 강화

청소년집중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집중되어 있는 합동점검만으로는 부족하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동점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집중되어 있는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시기에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점검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등 더욱 강력한 후속조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③ 노동현장에서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노동현장에서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교육 및 홍보, 전문상담, 무료 권리구제 지원 등을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전문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하지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2016년 기준 7개의 지역거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전국의 근로권익 침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기능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확보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8년):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 실태 점검 및 관리 · 감독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청소년의 근로관련법 준수실태를 점검·관리·감독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와 관련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전국적인 규모의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② 제 2단계(2019년): 청소년집중 고용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체계 구축 및 가중처벌 강화

청소년집중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만 실시하던 점검체계 방식을 상시적인 점검방식으로 변환하고, 점검대상 지역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확장시켜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점검결과 청소년근로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③ 제 3단계(2020년~):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노동현장에서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기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의 근로권익 침해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8년)	제 2단계 (2019년)	제 3단계 (2020년~)
주요내용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및 관리 · 감독 강화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청소년집중 고용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체계 구축 및 가중처벌 강화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4) 관련법 개정사항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청소년의 근로조건과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청소년고용사업장에서의 관련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8년)에는 청소년근로관련법 위반사례 실태조사의 문제점 및 법·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9년)에는 청소년 집중 고용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체계 구축 및 가중처벌 강화는 청소년 집중 고용사업장에 대해서 상시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단계로 점검체계 운영을 위한 예산을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2020년~)에는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단계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운영비용을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8년)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및 관리 · 감독 강화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 연구용역비 100,000,000원	100
2단계 (2019년)	청소년집중 고용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체계 구축 및 가중처벌 강화	• 향후 예산 반영	–
3단계 (2020년~)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 향후 예산 반영	–
		총계	100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강신욱, 유진영, 이주미 (2016). **2016년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북일보 (2016.10.31). 입양父 폭력에 뇌사 여아, 106일 만에 하늘나라로.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74965 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경향신문 (2017.5.18.). 대안학교 학생 학대 혐의 교장·교사 등 7명 붙잡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80948001&code=940202 에서 2017년 5월 20일 인출.

고용노동부 (2009). **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0).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1).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2).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a).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b).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서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4a).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4b).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관계부처합동 (2015).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세종: 보건복지부·관계부처합동.

교육부 (2014.11.10).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보도자료**. p.9.

교육부 (2016a).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6b). 2016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6.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6.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6888/ko/board/view.do ?bbsId=339&boardSeq=58722&mode=view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교육부 (2016.8.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7년까지 특성화고 200여개교로 확대' 보도자료.** http://ww

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4091&lev=0&searchType=S&statusYN=W&page=29&s=moe&m=0503&opType=**에서 2017년 10월 5일 인출**

교육부 (2016.11.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교육부 (2017).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7&boardSeq=70367&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02&opType=**에서 2017년 8월 2일 인출**.

교육부 (2017.1.3).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p.6.

교육부 (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p.6.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22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17년 9월 5일 인출.

교육부 (2017.1.16). '**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517&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17년 8월 16일 인출**.

교육부 (2017.3.24). 2017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p.9. 교육부 웹 사이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825&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에서 2017년 9월 5일 인출.

교육부 (2017.5.1).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매직) 사업, 100개교 선정' 보도자료.

교육부 (2017.8.31). '2017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보도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OECD **교육지표** 2015. 세종: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a). 2016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b).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c). 2016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6&publSeq=2&menuSeq=0&itemCode=02&language=en에서 2017년 8월 14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d). OECD **교육지표**. 세종: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구정우, 서창록, 유영수, 김영완, 정병은, 신인철, 김두년 (2015).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

국가인권위원회 (2005). **유엔인권해설집 : 아동의 권리**(United Nations Human Rights Fact Sheet No. 10).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5).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9.5). **인권위,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권고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612571에서 2017년 9월 23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16a). 2015 **인권통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b). 2016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c).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7).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2017.6.8).

국가인권위원회 (2017.5).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표명**.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UNCRC한국NPO연대 (201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증진과 제3선택의정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Jean Zermatten 위원장 초청 포럼 자료집.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권율, 이상미, 송지혜, 유애라 (2015). Post-2015 개발어젠다의 주요 특징과 이행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5(27).

기획재정부 (2012~2017). 2012~2017 **나라살림 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4). **201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pageNum=3&seq=75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5). **201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pageNum=3&seq=75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7). **기금사업활동**.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 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4-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 박병식, 이석구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연구보고 14-R1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미정, 최말옥 (2012). **아동보호전문기관 퇴직 상담원의 2차적 외상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8(3), 153-183.

김세원 (2016). 아동의 중복학대 피해 경험과 부모 및 가족 특성에 대한 연구. **아동과 권리**, 20(4), 583-608.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연구Ⅲ** (연구보고 13-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김정주, 정은주 (201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김영지, 김희진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5-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6-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현 (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 **개발과 이슈** 19, 1-40. 한국국제협력단.

김진숙 (2015). 국내 입양 후 파양된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1), 27-40

김진희, 김은영, 김철희, 유성상, 장은정, 우승희 (2015). Post 2015 **교육개발협력사업 활성화 전략: 교육의 제 실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태균, 이성훈, 허태욱, 황원규 (2015). **유엔의**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주요내용과 의의**. 서울: action/2015 Korea.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II (연구보고

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용운, 홍민정, 김혜령, 최현주 (2015).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 놀권리 침해 가능성과 현황, 그리고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pp.21-84.

노충래, 조용남, 이대성, 송미령, 박형경 (2016). 2016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보고서**. 보건복지부·드림스타트·(재)한국보육진흥원

대검찰청 (2013).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4).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5a).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5b). 2015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6a) 2016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6b).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각 연도).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대한민국국회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여성·아동 미래비전, 여성·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 서울: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대한민국정부 (2017).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세종: 대한민국정부.

메디컬투데이 (2017.10.15). 아동학대 하루 평균 9.5건 발생…1년8개월간 14명 사망-성학대 297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8025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문경희 (2004). 장애통합 보육교사 현직연수프로그램 모형. **한국유아교육 보육행정 연구**, 8(10), 137-158.

문영희 (201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p.19~4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6년도('15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7.2.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전년 대비 3.02% 증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2017.1.23.).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선영, 박찬걸 (2012). **동남아시아 아동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영실, 이영미, 김석호, 차은지 (201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할. **조사연구**, 18(2), 77-96.

박우현, 이용욱 (2016).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단계의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사항 연구, **경찰학연구**, 16(4), 77-97

박환보, 안해정, 윤종혁, 최동주, 남신동, 김명진, 우한솔, 전예지 (2014).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사업의 추진 전략과 과제: 교육개발협력 연구·사업의 협업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환보, 윤종혁 (2014). 교육에서 희망을 발견하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에 관한 고찰. **교육연구정보** 65. 강원도교육연구원, 91-103.

박환보, 조혜승 (2016).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연구동향 분석. **교육학연구**, 54(2), 197-227.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pp. 15-24.

법무부 (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경기: 법무부.

법무부 (2016.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경기: 법무부.

법무부 (2017.6).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경기: 법무부.

법무연수원 (2015). 2015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6). 2016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3&gubun=719 에서 10월 26일 인출

법제처 (20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69&efYd=20161130#0000에서 2017년 9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3a). 2013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3b).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4a). 2014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4b).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http://www.mohw.go.kr/front_ne

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8285&SEARCHKEY=TITLE&SEARCHVALUE=%BB%E7%C8%B8%BA%B9%C1%F6%BD%C3%BC%B3%20%C6%F2%B0%A1에서 2017년 10월 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5a). 2015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5b).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a).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b). 2016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c). 2016년 가정위탁 현황(2016.12.31. 기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39674&page=1에서 2017년 10월 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d).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http://library.mohw.go.kr/에서 2017년 10월 5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e):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201. 5. 25).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no=202&listSize=10&pageNo=2&bcode=06_1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f).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a). **공동생활가정 현황**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0870&page=1에서 2017년 10월 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b).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38690&page=1에서 2017년 10월 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d).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http://www.mohw.go.kr/front_new/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703&page=1&CONT_SEQ=293115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e).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http://library.mohw.go.kr/에서 2017년 10월 5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f).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016년 12월 기준). p.iii, p.viii.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웹사이트 https://www.icareinfo.go.kr/NEW_USR_main.asp??=CENTERINFO/DATA/STAT_GUIDE/view&bbs_no=225&page=1&bbs_option_cd=&search_option=&search_value=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g).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2017.2.15). **보도자료「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8434&SEARCHKEY=TITLE&SEARCHVALUE= 에서 2017년 8월 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5.12). **보도자료: 국내외 입양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다**.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9603&page=1**에서 2017년 8월 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5.30). '**어려운 아이들의 친구, 드림스타트 2017보고대회'개최 보도자료**. pp.7-8.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9803&SEARCHKEY=TITLE&SEARCHVALUE=드림스타에서 2017년 8월 16일 인출

보건복지부 (각 연도). 공동생활가정 현황.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2014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5.2).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각 연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17). 2017 **입양실무매뉴얼**. p. 36, p. 55 내용 발췌 및 요약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no=25&listSize=10&pageNo=1&bcode=06_3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 2010 **국민건강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2011 **국민건강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2 **국민건강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2014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2015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7).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 **2012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굿네이버스.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3).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굿네이버스.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산일보 (2017.9.7.).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 요구 목소리 - 학폭법(학교폭력예방법) 매뉴얼 따랐지만 보복폭행 못 막았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

ler.jsp?newsId=20170906000267에서 2017년 9월 10일 인출.

서울신문 (2017.2.8). 3세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양아버지 징역 10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9009032&wlog_tag3=naver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서울특별시 (2017.10).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3546720?tr_code=open 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서울특별시 (2017.9).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2017). **2017서울인권컨퍼런스 자료집**. 서울: 서울특별시청.

성범죄자 알림e (2017.9.5) 웹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m3s3.nsc에서 2017년 9월 8일 인출.

세계일보 (2017.1.17). [허술한 입양제도, 아이들이 위험하다] 온몸에 화상·멍… 4살 은비의 죽음 http://www.segye.com/newsView/20170115001844. 2017년 10월 22일 인출

세계일보 (2017.9.26). 보복 무서워… 아동학대 신고 꺼린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26005701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안해정, 서예원, 윤종혁, 김은영, 임후남, 박환보, 최동주, 김명진 (2016). **2030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방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양계민 (2012).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보고 12-R42).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3).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KYWA-2013-031).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4). **20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돌봄연계모형 개발연구**(KYWA-2014-031).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6).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도 및 만족도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김승경 (2011).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보고 11-R3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 (2010).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연구**(연구보고 10-R2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정선 (2015). **경기도 시설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족 교류에 관한 연구**.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부 (2011). 201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3a).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3b).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4a).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4b).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5a). 2015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5b).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5c).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a).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pp. 423-437

여성가족부 (2016b). 2016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c). 2016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d). 2016**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e).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연구보고 2017-04).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8.2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3532에서 인출.

여성가족부 (2017a). 2017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699에서 2017년 10월 10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7b).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7c).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5.do에서 2017년 10월 14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7d).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2017년 5월 기준 CYS-Net 현황).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162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7e). 청소년상담채널 1388(전화, 모바일문자, 사이버 상담 포함) 상담실적(2016년 12월 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167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7.2.20). "근로청소년 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jsessionid=VMRjStKrwJozwpVh7HhTJ7C2.mogef10?mid

=mda700&bbtSn=704842에서 인출.

여성가족부 (2017.8.30).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357에서 인출.

연합뉴스 (2014.10.29) 2살 입양아'학대치사'혐의로 어머니 구속수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16869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연합뉴스 (2016.10.5). 아동학대 신고 급증세…학대전담경찰관은 '태부족'.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5/0200000000AKR20161005092600061.HTML?input=1195m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연합뉴스 (2016.10.26). 두번의 파양과 학대…'기구한 운명' 韓입양인, 美서 추방위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6/0200000000AKR20161026009700071.HTML?input=1195m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사업 사이트 http://www.unicef.or.kr/education/korea/choice_city.asp 에서 2017년 10월 13일 인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ohchr.org/EN/HRBodies/CRC/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pp. 467-489).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대한변호사협회 (2011. 12).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자료집**.

윤성승, 허남순 (2014).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비추어 본 국제입양 관련법의 개선방안. **법과 기업연구**, 4(2).

이노홍 (2015).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상 개인청원제도와 아동의 재판청구권. **세계헌법연구**, 21(2), 113-144.

이미나 (2010). 통합 독서치료를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의 장애인식과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행동연구**, 2(2), 61-75.

이미선, 박미정 (2010). 국내입양 파양에 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국내 입양 실무자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129-163

이재영 (2017). 성경험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간호학회**, 23(3),

259-267.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2016.7.25).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근로감독 및 프랜차이즈업의 법령위반 관리감독 폐기. 이정미 의원 웹사이트 http://justice551.tistory.com/122에서 인출.

이종원, 모상현, 정윤미, 유성렬, 김진석 (2016).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서울: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이주연, 김미숙 (2013).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1: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건복지포럼**, 203, 90-103.

인권교육지원법안 (201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L4U1O0L1F0U1J7S4H1Y4H3K1Q8T9 에서 2017년 9월 18일 인출.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377-40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장응혁 (2017).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개선방안: 경찰의 초기 대응과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7(1), 89-111.

전경숙 (2013).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문제와 향후과제. **이슈분석** 1호. 경기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상훈 (2015).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정호 (2016).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현황과 강화방안 고찰. **학교사회복지**, 35, 339-358.

조금주 (20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재구조화를 위한 개선 과제. **청소년학연구**, 21(2). 491-513.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6). 가정위탁 업무 안내서(공무원용). 서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7. 1. 1기준).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stats&wr_id=30에서 2017년 10월 15일 인출

중앙입양원 (2017). 중앙입양원 홈페이지: 입양정보 통합관리시스템. https://www.kadoption.or.kr/system/system_guide.jsp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250&efYd=20171024#AJAX)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탁희성, 이승현, 이강민 (2014).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대검찰청.

통계청 (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269287&pageNo=1&row

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82%AC%ED%9A%8C%EC%A1%B0%EC%82%AC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통계청 (2013).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 7_2009_HJ035&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5년 5월 인출.

통계청 (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2322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통계청 (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보건·교육·안전·가족·환경)**.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6FA090R&vw_cd=MT_ZTITLE&list_id=D211_201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7년 10월 6일 인출.

통계청 (2016.9.27). 2015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통계청 (2017).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quick_02; 에서 2017년 10월 5일 인출

통계청 (2010~2016). 각년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http://kostat.go.kr

통계청 (2017.3.14).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9420에서 2017년 10월 10일 인출.

통계청 (각 연도).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17년 8월 3일 인출**.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6&inputYear=2017

통계청 (각 연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conn_path=I2에서 2017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3&vw_ cd=MT_OTITLE&list_id=MT_CTITLE_CB&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7년 8월 14일 인출.

통계청 (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웹 사이트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 e=read&aSeq=308559에서 2016년 6월 23일 인출.

통계청 (각 연도). 장래가구추계 2015-204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3&vw_cd=MT_ZTITLE&list_id=A42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인출

통계청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SubCont에서 2017년 8월 29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2016). 생명표.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35에서 2017년 8월 14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2016). 영아사망추이.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quick_02;에서 2017년 8월 14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I2에서 2017년 10월 7일 인출. 인출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4.17). 2017 **청소년 통계**. p.23.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60039에서 2017년 8월 2일 인출.

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웹 사이트 https://www.data.go.kr/dataset/15019661/fileData.do에서 2017년 9월 5일 인출.

한겨레신문 (2017.4.3).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삶을 포기시키지 않도록 하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89157.html#csidx3ca07f8770e81a78d1c33d9c4d2a56e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시설평가실 (2015).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https://www.cswe.co.kr/bo ard/data/view.do?bd_gb=data&bd_cd=2&bd_item=0&po_item_gb=data2&field=searchTC&query=%EC%95%84%EB%8F%99&po_item_cd=&po_no=2982에서 2016년 10월 7일 인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2.7). 2016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1. 12).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보고 및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7).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3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사이트 http://www.kocconet.or.kr/에서 2017년 8월 17일 인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2016.9.2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한국양성평등진흥원 내부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7.7.19).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17년 7월 19일 인출.

한국장학재단 (2017.9.19).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한국장학재단 내부자료.

한국장학재단 (2017). 인재육성사업 소개. 한국장학재단 웹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2017년 9월 29일 인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웹 사이트 https://www.kyci.or.kr/userSite/index.asp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제 규칙.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popSusiView21110.do에서 2017년 9월 22일 인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 KPIPA 출판산업 동향(2017 상반기) - 통계 및 경기동향. 전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행정자치부 (2017.1). 20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 서울: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17.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5&nttId=59187 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행정자치부 (2017.4). 2016 행정자치백서. 서울: 행정자치부.

허선, 유서구, 김은정, 이수진 (2014). **복지사각지대 빈곤아동가구 현황분석 및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헤럴드경제 (2017.10.4). 아동학대 갈수록 흉포화.. 5년간 사망자 수 450% 급증.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01000243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현지희 (201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차외상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1), 229-254.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세종: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황세영, 김남수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연구보고 16-R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옥경, 안동현, 이호균, 강현아, 홍관표, 현소혜, 정선영 (2015). **아동·청소년의 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KBS [취재후] (2017.7.18) 인천 공항의 어떤 추모식…길 잃은 추방 입양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7964&ref=A에서 2017년 10월 22일 인출

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MBC NEWS (2014.2.19). 美 한국인 입양아 양아버지 학대로 사망.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19147_13490.html에서 2014년 11월 13일 인출.

森田明美 (2016). *10代で出産した母の子育てと子育て支援に關する日韓調査報告書*. 日本 東京: 東洋大學校.

Bradshaw, J., B. Martorano, L. Natali, & C. de Neubourg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orking Paper 2013-03. UNICEF Office of Research, Florence.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EU, FRA) (2009).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Summary Report. http://www.eurochild.org/fileadmin/public/05_Library/Thematic_priorities/01_Childrens_Rights/European_Union/FRA_Developing_indicators_for_the_protection__respect_and_promotion_of_the_rights_of_the_child_in_the_EU_-_Summary_report.pdf에서 2017년 10월 15일 인출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EU FRA) (2010).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Conference Edition). Vienn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IAEG-SDGs (2017). Revised list of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SDGs.

Inchley, J., Currie, F., Young, T., Samdal, O., Torsheim, T., Augustson, L., Mathiso, F., Aleman-Diaz, A., Molcho, M., Weber, M., & Barnekow, V. (2016). Growing up unequal. HBSC 2016 study(2013/2014 survey).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13/2014 survey.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http://www.euro.who.int/en/health-topics/Life-stages/child-and-adolescent-health/health-behaviour-in-school-aged-children-hbsc/growing-up-unequal.-hbsc-2016-study-20132014-survey**에서 2017년 10월 17일 인출**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Ratify OP3 CRC) (2014). Answers to Key Questions About the Optional Protocol – Empower children to secure their rights. Geneva: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ECD (2016).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http://www.oecd.org/els/soc/CO_2_2_Child_Poverty.pdf 에서 2017년 5월 9일 인출

OECD (2017). StateExtracts. Social Expenditure, Family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에서 2017년 8월 21일 인출

OECD (각 연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Save the Children (2016). Save the Children submission for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ave the Children.

Schwartz. L. L. (2006). *When adoptions go wrong : psychological and legal issues of adoption disruption*. New York: The Hawworth Press.

Stams,G., Juffers, J.J.M,, & van IJzendoorn, M. H. (2002) Maternal sensitivity, infant attachment, and temperament predict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The case of adopted children and their biologically unrelate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8, 806-821.

Theytaz Bergman, Laura, Fegan, Roisin, Myers, Lisa (2014). The reporting cycle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va: Child rights Connect.

UN (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NY: United Nations.

UN Office of the Higher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New York: United Nations.(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Human_rights_indicators_en.pdf) 2017년 2월 13일 인출.

UNICEF (2014). A post-2015 world fit for children: A review of the open working group repo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om a child rights perspective. UNICEF.

UNICEF (2016). Mapping the global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UNICEF.

UNICEF (2017). Is every child counted?: Status of data for children in the SDGs. UNICEF.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1996).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2).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A/RES/66/138).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A/RES/66/138&Lang=en 에서 2017년 10월 4일 인출.

United Nations(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United Nations (2017).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E/CN.3/2017/2). 통계청 번역초안(내부자료).

Vaghri, Z., Arkadas, A., Hertzman, C., Krappmann, L., Gertsch L., Cabral., M., Ulkuer, N., & Kikuchi-White, A (2010). *Manual for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Manual of the indicators of General Comment 7)*, from http://resourcecentre.savethechildren.se/ sites/default/files/documents/6717.pdf에서 2014년 11월 2일 인출.

부 록

1. 2017년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2.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3.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리스트
4. 2017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초등용·중등용)
5. 2017 아동 · 청소년 인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부처별 추진사항
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표

부록 1. 2017년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td><td rowspan="4">1-1.
인권일반
(제4조, 42조)</td><td rowspan="3">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td><td>1-1-1-1.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법제도 발전</td><td>·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법 제·개정 현황
– 출처: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등</td></tr>
<tr><td>1-1-1-2.
아동 · 청소년 인권기구 · 조직</td><td>·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기구 및 조직 현황
– 출처: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등</td></tr>
<tr><td>1-1-1-3.
GDP 대비 아동 · 청소년 관련 예산</td><td>· 2012–2017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 출처: 1) 기획재정부. 2012–2017년 나라살림 예산
2)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td></tr>
<tr><td>1-1-2.
인권에 대한 인식</td><td>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td><td>·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문44.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모른다</th><th>이름만 들어봤다</th><th>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th></tr>
<tr><td>(1) 유엔(UN) 아동권리협약</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2) 학생인권조례</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국가인권위원회</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td></tr>
<tr><td>1-1-2-2.
아동 · 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전체, 사이버공간)</td><td>·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가정,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사이버공간)
문45.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h>내용</th><th>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th><th>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th><th>존중받는 편이다</th><th>매우 존중 받는다</th></tr>
<tr><td>(1) 가정</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학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내가 살고 있는 지역</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우리나라 전체</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r><td></td><td></td><td></td><td>1-1-2-3. 인권의식 및 태도*</td><td>· 다양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문46.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r><td></td><td></td><td>1-1-3.</td><td>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td><td>· 인권교육 실시 현황</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16). 2016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인권교육	1–1–3–2. 인권교육 경험 (횟수, 장소, 도움정도)*	· **인권교육 경험여부** 문47.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 · 타인의 권리존중, 차별 · 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 **인권교육 실시 기관/장소** 문47–1. (위 문항 47번의 '① 1회'부터'⑤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국어, 사회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인권교육 도움 정도** 문47–2. (위 문항 47번의 '① 1회'~'⑤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해 본 경험*	· **차별의 이유 및 경험 정도** 문49.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r><td></td><td></td><td></td><td>1-2-1-2. 차별받은 경험*</td><td>· 차별 받은 이유 및 경험 정도
문48.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시행현황** – 출처: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협약 7, 8, 13-17, 39(a)조)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2">2.
시민적
권리와 자유</td><td rowspan="2">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td><td>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td><td>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td><td>·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문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 rowspan="2">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td><td>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td><td>·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문2.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아니다</th><th>그렇다</th><th>잘 모르겠다</th></tr>
<tr><td>(1)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td></tr>
<tr><td>2-1-2-2.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
(운영 여부, 의견제시 정도)*</td><td>· 학급회의 운영 여부
문3.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운영되고 있다
② 운영되지 않는다</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3"></td><td></td><td>· 학급회의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문3-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td></tr>
<tr><td>2-1-2-3.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td><td>·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문4.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교과서,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td></tr>
<tr><td>2-1-2-5.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td><td>·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문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td><td>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td><td>·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출처: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백서. p.86.
·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6)
·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6)
– 출처: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백서. pp.83-85.</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6) – 출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6).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3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사이트)
			2-1-3-2. 아동 ·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참여경험 여부** 문6.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 **투표연령에 대한 의견** 문7.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예: 만 18세 등) ②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③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예: 만 20세 등) ④ 잘 모르겠다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문8.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문9.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td></tr>
<tr><td></td><td rowspan="3">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td><td>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td><td>2-2-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td><td>·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
문1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2)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 rowspan="2">2-2-2.
종교자유
보장정도</td><td>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td><td>· 학교의 종교재단 학교 여부
문11.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② 아니오
· 종교행사 시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문11-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td></tr>
<tr><td>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td><td>· 가정에서의 종교 자유 보장수준
문1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r><td></td><td>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td><td>2-3-1.
결사・집회 경험률</td><td>2-3-1-1. 결사・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td><td>
・결사・집회 경험률
문12.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없다</th><th>거의 없다</th><th>가끔 있다</th><th>자주 있다</th></tr>
<tr><td>(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문12-1. (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td></tr>
<tr><td></td><td>2-4.
사생활의 보호(제16조)</td><td>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td><td>2-4-1-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td><td>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문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용모(머리 모양 · 길이 ·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r><td></td><td></td><td>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td><td>2–4–2–1. 학교에서 개인정보 공개정도(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td><td>
·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문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문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문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 ① | ② | ③ | ④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 출처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VI: 총괄보고서. pp.208-209. 2)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7-38.
				· **인터넷 이용 목적**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5-2016). 2015-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230.
				·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470.
			2-5-1-2. 유해매체 이용률	·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p.77-78.
				·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p.82-83.
			2-5-1-3. 아동·청소년 매체 접근성	·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2-2016). KPIPA 출판산업 동향. pp.69-70.
				·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도('15년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 **학생 1인당 장서 수**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p.116.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2-5-2.
정보제공 정도</td><td>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td><td>·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문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r>
<tr><td>2-5-2-2. 아동 · 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td><td>· 아동 ·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청소년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침해시 상담기관
문14.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 · 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table><tr><th>내용</th><th>아니다</th><th>그렇다</th></tr><tr><td>(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r><tr><td>(2)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 · 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r><tr><td>(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 · 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r></table></td></tr>
</table>

3) 폭력 및 학대 (협약 19, 24(3), 28(2), 34, 37(a), 39)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3.
폭력 및 학대</td><td>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td><td>3-1-1.
청소년폭력 경험률</td><td>3-1-1-1. 폭력피해 경험*</td><td>
· 정서적 학대 경험 여부 및 정도
문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 colspan="2">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td><td>2) 모욕적인 말(욕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학교선생님
으로부터</td><td>4) 모욕적인 말(욕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학원선생님
으로부터</td><td>6) 모욕적인 말(욕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
문1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따돌림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협박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7) 강제적인 심부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td><td>·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문17.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 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협박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성희롱(놀림)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 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r><td></td><td></td><td>3-1-2. 체벌 경험률</td><td>3-1-2-1. 체벌 경험률*</td><td>· 신체적 체벌 경험 여부 및 정도
문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 colspan="2">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td>1) 신체적 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학교선생님으로부터</td><td>3) 신체적 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학원선생님으로부터</td><td>5) 신체적 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4">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td><td rowspan="4">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td><td>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td><td>·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사례접수 경로, 신고자 유형,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td></tr>
<tr><td rowspan="3">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td><td>· 아동학대사례 유형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td></tr>
<tr><td>· 아동학대 발생빈도
– 출처: 1) 통계청(2013).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5)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중복학대사례 유형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재학대사례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td></tr>
<tr><td>3-2-1-3. 방임정도</td><td>·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문18.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7. 1. 1. 기준)
			3-2-2-2.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2-2-3.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 출처: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7). 2011–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결과**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협약 5, 9–11, 18(1–2), 20, 21, 25 및 27(4))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 **부모와의 대화시간** – 출처: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1–2. 보호 · 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 · 운영 현황** – 출처: 1)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 **어린이집 정원 · 현원 및 이용률** – 출처: 1)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 출처: 1)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 **어린이집 1개소 및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 – 출처: 1)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 출처: 1)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 **방과후학교 참여실태** –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2017.4.17). 2017 청소년 통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출처: 교육부(2017).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및 이용 아동 현황 · 추이** – 출처: 보건복지부(2017).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016년 12월 기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 VI: 총괄보고서 2)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방과후학교 교급별 학생만족도** – 출처: 교육부(2016).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 – 출처: 이종원 · 모상현 · 정윤미 · 유성렬 · 김진석(2016).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만족도** – 출처: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2010), 양계민, 김승경(2011), 양계민(2012), 양계민(2013), 양계민(2014), 김영지 · 김정주 · 정은주(2015), 양계민(2016)에서 영역별 전체 만족도 평균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 점수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 **연도별 국내 · 외 입양 아동 수** – 출처: 보건복지부(2017.5.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내외 입양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다」 · **국내 · 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출처: 보건복지부(2017.5.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내외 입양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다」 · **입양에 대한 견해** – 출처: 1) 통계청(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 교육 · 보건 · 안전 · 환경) 2) 통계청(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 교육 · 보건 · 안전 · 환경) 3) 통계청(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보건 · 교육 · 안전 · 가족 · 환경)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출처: 1) 통계청(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 교육 · 보건 · 안전 · 환경) 2) 통계청(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 교육 · 보건 · 안전 · 환경) 3) 통계청(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보건 · 교육 · 안전 · 가족 · 환경)
			4–2–1–2.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 **국내 · 외 입양 사후서비스**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17). 2017 입양실무매뉴얼
				· **국내 입양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17). 2017 입양실무매뉴얼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요보호아동 현황	·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 · 청소년 비율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출처: 1) 보건복지부(2016).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16). 가정위탁 현황(2016.12.31. 기준)
				·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아동 수**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공동생활가정 현황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문19.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가출한 이유 문19-1. (위 문항 19번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	**·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 및 서비스** 문19-2. (위 문항 19번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문19-3. (위 문항 20번의 ②번 ~ ⑥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연도별 차이**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VI: 총괄보고서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시설평가실(2015).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 **보호양육시설 예산** – 출처: 1) 보건복지부(2012).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보건복지부(201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 보건복지부(2014).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4) 보건복지부(2015).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5) 보건복지부(2016).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6) 보건복지부(2016).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7)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6)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2014). 201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7)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2015). 201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8)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2017). 기금사업활동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2016) – 출처: 보건복지부(2017.2.15).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2013, 2016) – 출처: 1)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2) 보건복지부(2017.2.15)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등급분포**(2013, 2016) – 출처: 1)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2) 보건복지부(2017.2.15)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 (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수	·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 출처: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5–1–1–2.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 – 출처: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 출처: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 **0세의 기대여명**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2016). 생명표
			5–2–1–2. 영아 · 아동 · 청소년 사망률	· **연도별 영아사망률**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2016). 영아사망추이 – 원자료: 보건복지부, 사망원인통계조사 ·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5–2–1–3. 사고 사망률	· **사고 사망률** – 출처: 1)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2) 통계청(2016.9.27). 2015년 사망원인통계 ·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 출처: 1)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2) 통계청(2016.9.27). 2015년 사망원인통계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 출처: 통계청(각 연도). 범죄별/피해자 성별 · 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 원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5–2–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 인식** 문20.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 급식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21.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td><td rowspan="4">5-3.
보건서비스
(제24조)</td><td rowspan="4">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td><td rowspan="2">5-3-1-1.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td><td>·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td></tr>
<tr><td>·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td></tr>
<tr><td>· 소아청소년 질환별(선청성심장질환, 아토피피부염, 폐렴 등) 유병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td></tr>
<tr><td rowspan="2">5-3-1-2. 보건교사 배치 현황</td><td>· 보건교사 배치현황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도 교육통계연보</td></tr>
<tr><td>·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도 교육통계연보</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3-1-3.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 출처: 보건복지부(2016).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 원자료: 의료기관정책과(2010-20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이용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 통계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 통계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 **현재 흡연율 추이(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흡연)**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5-3-3-2. 음주율	· **현재 음주율 추이(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음주)**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 **평생 약물 경험률(부탄가스, 본드같은 각성제 마약, 기침 및 신경안정제 오남용 등)**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22.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5-4-2. 신체적 건강	5-4-2-1. 운동 실천율*	**·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문23.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문24.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합니까? 빵, 시리얼, 미숫가루 등도 식사에 포함됩니다 ①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② 보통 먹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 먹는 편이다 ④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문24-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4-2-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 수면시간** 문25.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①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시 □□분 **·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문26.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수면부족 이유** 문26-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5-4-2-4. 비만율	**· 2010~2016년 비만도 현황 및 2010~2015년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 비만율** – 출처: 교육부(2017). 보도자료'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5-4-3. 정신적 건강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와 이유** 문27.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③ 자주 생각한다
문27-1. (위 문항의 ②, ③에 응답한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td></tr>
<tr><td></td><td></td><td></td><td>5-4-3-2. 우울증*</td><td>· 우울정도
문28.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나는 …</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td><td></td><td></td><td>5-4-3-3. 스트레스 인지율*</td><td>· 스트레스 인지율
–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스트레스 인지율
문29.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가정 불화</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또래와의 관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d>(4) 경제적인 어려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외모 · 신체조건</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r><td></td><td></td><td></td><td>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td><td>· 현재 행복 정도
문30.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행복하지 않은 이유
문30–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td></tr>
<tr><td></td><td></td><td></td><td>5–4–3–5.
삶의 만족도*</td><td>문31.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d colspan="3">삶의 만족도 낮음</td><td colspan="2">〈–</td><td>중간</td><td colspan="2">–〉</td><td colspan="3">삶의 만족도 높음</td></tr>
<tr><td>⓪</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⑥</td><td>⑦</td><td>⑧</td><td>⑨</td><td>⑩</td></tr>
</table>
·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한국과 WHO의 HBSC와의 비교)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총괄보고서 p. 368</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2) Bradshaw, J., B. Martorano, L. Natali, & C. de Neubourg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orking Paper 2013-03.
3) Inchley, J., Currie, F., Young, T., Samdal, O., Torsheim, T., Augustson, L., Mathiso, F., Aleman-Diaz, A., Molcho, M., Weber, M., & Barnekow, V. (2016). Growing up unequal. HBSC 2016 study(2013/2014 survey).</td></tr>
<tr><td></td><td></td><td></td><td>5-4-3-6. 자아존중감*</td><td>· 자아존중감
문28.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나는 …</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4)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td><td></td><td></td><td>5-4-3-7. 고민거리대화상대*</td><td>·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문32.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② 아버지 ⑦ 친구
③ 어머니 ⑧ 이웃/친척
④ 형제/자매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⑤ 담임선생님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 · 청소년 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1. 아동 · 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 **아동빈곤율**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총괄보고서 2) 강신욱 외(2016).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세~17세 아동빈곤율 OECD 국제비교** – 출처: OECD(2016).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5-5-1-2. 아동 · 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2011, 2013) – 출처: OECD(2017). StateExtracts. Social Expenditure, Family.
		5-5-2.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한부모가구 비율** – 출처: 통계청(2017).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총괄보고서. p.384 2) 여성가족부(2017). 2017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원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 출처: 1)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2)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3) 보건복지부(2017.5.30). '어려운 아이들의 친구, 드림스타트 2017 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6)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28, 29, 30, 31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 **각급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추이** – 출처: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간추린 교육통계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2017.8.31.기준)
			6-1-1-2. 학생 진학률	·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간추린 교육통계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출처: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OECD 교육지표 2016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간추린 교육통계 ·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 추이**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간추린 교육통계
			6-1-1-4.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2017.8.31.기준) · **학급당 학생 수**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2017.8.31.기준)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2017.8.31.기준)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 **자퇴 충동여부** 문33.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자퇴 충동의 이유** 문33-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td></tr>
<tr><td></td><td></td><td></td><td>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td><td>문34.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r>
<tr><td></td><td rowspan="2">6-2.
교육의 목표
(제29조)</td><td rowspan="1">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td><td>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td><td>· 학교에 대한 생각
문35.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r>
<tr><td></td><td>6-2-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td><td>6-2-2-1. 대안교육 참여 기회</td><td>· 공립 · 사립 대안학교 25개교 현황
– 출처: 교육부(2017). 교육부 보도자료(01.03)
·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현황
– 출처: 교육부(2016). 2016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중 · 고등학교)
·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현황
– 출처: 교육부(2014). 교육부 보도자료(11.10)</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5"></td><td></td><td></td><td>6-2-2-2. 직업교육 참여 기회</td><td>· 교육부(2016.8.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보도자료
· 교육부(2016). 교육부 보도자료(01.16)</td></tr>
<tr><td rowspan="4">6-3.
여가, 놀이 및 문화 · 예술 활동
(제31조)</td><td rowspan="4">6-3-1.
여가 · 문화 · 예술 활동기반 시설수</td><td>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td><td>·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2.21)</td></tr>
<tr><td>· 전국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2.21)</td></tr>
<tr><td rowspan="2">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td><td>·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5.do, 2017년 10월 14일 인출

· 시 · 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5.do, 2017년 10월 14일 인출</td></tr>
<tr><td>·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
문36.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 · 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공공도서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전시장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6-3-2. 여가 · 문화 · 예술활동 참여율	6-3-2-1. 여가 · 문화 · 예술활동 참여도	**· 청소년의 성별 · 지역별 체험활동 참여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6-3-2-2. 아동 · 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 청소년단체 가입 여부** 문37.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과학우주청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가입하지 않았다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 동아리 활동여부** 문38.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 평일 여가시간** 문39.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6-3-2-5. 하루 평균 학습 시간*	**· 정규 수업시간 제외한 하루 평균 공부시간** 문40.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합니까?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td><td></td><td>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td></tr>
<tr><td rowspan="2">6-3-3.
여가 · 문화 · 예술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td><td>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td><td>·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 이용 만족도
문36-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td></tr>
<tr><td>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 · 학교지지 정도*</td><td>·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지지수준
문41.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지지하지 않는다</th><th>지지하지
않는 편이다</th><th>지지하는
편이다</th><th>매우
지지한다</th></tr>
<tr><td>(1) 가정</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학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able>

7)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2, 33, 3 5, 36, 37(b–d), 38–40)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6">7.
특별보호
조치</td><td rowspan="6">7–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td><td rowspan="4">7–1–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의
인권 침해율</td><td>7–1–1–1.
아동 · 청소년 난민 비율</td><td>· 아동 · 청소년 난민 현황
– 출처: 1) 김경준 외(2014).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총괄보고서
2) 법무부(2015.12).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3) 법무부(2016.5). 2015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4) 법무부(2017.6). 2016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td></tr>
<tr><td>7–1–1–2.
탈북 난민 아동수</td><td>·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 출처: 통일부(2016).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 출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td></tr>
<tr><td>7–1–1–3.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td><td>·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
문48.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td></tr>
<tr><td>7–1–2.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의
교육실태 및</td><td>7–1–2–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교육 참가율</td><td>·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 출처: 교육부(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 출처: 1) 교육부(2016.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2) 교육부(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참가율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 출처: 교육부(2017.3.24).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계획' 보도자료
				· 탈북학생 학교 연도별 재학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 백서
			7–1–2–2.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중도탈락률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 출처: 1)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 여성가족부(2015).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3) 여성가족부(2016). 2016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4) 교육부(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 출처: 교육부(2017.3.24.).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계획' 보도자료
		7–1–3.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 출처: 1)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2)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3)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4)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 출처: 1)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2)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3)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4)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 출처: 한국장학재단 내부자료(2017.9.19)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2. 소년사법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원자료: 법무부(2015). 교정본부 통계자료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 출처: 법무연수원(2016). 2016 범죄백서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 소년원의 배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 출처: 법무연수원(2016). 2016 범죄백서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 출처: 1) 법무연수원(2015). 2015 범죄백서 2) 법무연수원(2016). 2016 범죄백서 – 원자료: 법무부(2015). 교정본부 통계자료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원자료: 법무부(2015).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원자료: 법무부(2015).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 출처: 1) 대검찰청(2015). 검찰연감 2) 대검찰청(2015). 범죄분석 3) 대검찰청(2016). 범죄분석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출처: 1)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3)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원자료: 대검찰청(2008-2015). 검찰연감
	7-3. 경제적 착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 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출처: 1)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3)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4)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 출처: 고용노동부(2013, 2014, 2015, 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_OECD평균 및 국가간 비교**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원자료: OECD(2016). Labour Force Statistics.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문42.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율** 문42-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h>내용</th><th>없다</th><th>1–2번</th><th>3번 이상</th></tr>
<tr><td>(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8) 성적 피해(성희롱 · 성추행)를 경험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9) 최저임금(2016년 기준 시간 당 6,030원, 2017년 기준 시간 당 6,47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
</td></tr>
<tr><td></td><td></td><td rowspan="2">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 정도</td><td>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td><td>·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 출처: 고용노동부(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고용노동백서
·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
– 출처: 고용노동부(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고용노동백서
· 청소년 고용사업장 법령위반 내역 및 건수
- 출처: 1)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6.8.2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2)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2.20). ‘근로청소년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3)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8.30). ‘청소년알바, 한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td></tr>
<tr><td></td><td></td><td>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td><td>·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 출처: 김경준 외(2014).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Ⅳ: 총괄보고서
– 원자료: 경원일보(2015.9.13). 청소년 알바 청년인턴 다수고용 사업장은 노동법 무풍지대</td></tr>
<tr><td></td><td>7–4.
성적 착취</td><td>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td><td>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td><td>·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 출처: 한국양성평등진흥원 내부자료(2017.9.21)
· 연간 성교육 경험률
– 출처: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통계</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 **신상공개 성범죄자수** – 출처: 여성가족부(2011-2016). 2011-2016 청소년백서 · **자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수** – 출처: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2017.9.5)
		7-4-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문43.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 **성적인 피해 시 도움요청** 문43-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⑥ 선생님 ② 친구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③ 선·후배 ⑧ 경찰 ④ 부모님(보호자)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⑤ 형제·자매
		7-4-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 출처: 1)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2) 대검찰청(2014). 검찰연감 3) 대검찰청(2015). 검찰연감 4) 대검찰청(2016). 검찰연감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 출처: 법제처(20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7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17.2.7). 2016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6). 내부통계자료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부록 2.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1) 승인통계 활용지표[74]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20005) (미래창조과학부)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국내 가구의 인터넷 이용환경, 국민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이용 행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국제기구 ICT관련 국제지수 산출 등의 기초자료 제공	가구 (전국 25,000가구 (약 65,000명)	1년 (2003)	면접조사 (조사원→전담조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미래창조과학부)	조사기준년도 12월 (전산망(인터넷)+간행물 인터넷이용실태조사보고서(매년 10월)) (시도)	2-5-1-1. 매체 이용률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167001) (여성가족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청소년의 매체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주변의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일반청소년 16,500명 (초·중·고등학생을 대상,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위기청소년 2,000명 (가출, 범죄, 비행청소년 대상)	2년 (2006)	면접조사 (조사대상(학생)→위탁기관(조사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여성가족부)	조사기준년도 익년 1월 (언론(보도자료)+간행물) (시도)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이용률
전국도서관통계 (113016)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통계 (보고통계) (전수조사)	도서관 관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서관 현황을 파악하여 도서관 정책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2015년 12월31일 기준 개관 도서관)	1년 (2008)	행정집계 (통계조사용역기관→문화체육관광부)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 (전산망(인터넷)+간행물) (전국)	2-5-1-3. 아동·청소년 매체 접근성

74) 통계별 설명자료 출처: 통계청 승인통계 현황 http://www.narastat.kr/pms/pub/scs/css/selectConfmStatsList.do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54013) (여성가족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개인 (-청소년 : 만9세~24세 총 3,000명 이상 (가구내 대상 청소년 전원) - 성 인 : 조사 청소년의 부모(주양육자) 2,000명)	3 년 (2011)	면접조사 (조사대상→위탁기관(통계청)→여성가족부)	조사기준년도 익년 1월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전국)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사회조사 (101018) (통계청)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개인 (전국 25,233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13세이상인 자)	1년 (1977)	면접조사 (조사대상→ 지방통계청→통계청)	조사기준년도 11월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시도)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요보호아동현황보고 (117034) (보건복지부)	일반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요보호아동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개인 (-)	- (1994)	보고 (시·군·구→시·도→ 보건복지부)	작성기준년도 익년 5월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시도)	4-2-2-1. 요보호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5-3-1-3.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생명표 (101035) (통계청)	일반통계 (가공통계) (해당없음)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장래의 기대여명을 산출하여 보건·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의 기초자료 및 장래인구 추계작성, 국가간 경제·사회·보건 수준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전국 및 시도의 성 및 연령별 사망자수, 주민등록연앙인구)	1 년 (1994)	- (기초자료수집→인구동태신고자료보정→연령별사망률산출→연령별사망확률산출→연령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언론(보도자료) +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별 사망자수 및 생존자수 산출→연령별 정지인구산출→연령별총생존년수산출→연령별 기대여명산출)	(전국)	
사망원인통계 (101054) (통계청)	지정통계 (가공통계) (해당없음)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개인	1년 (1999)	– (가공분석: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과 통계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에서 신고된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영아 모성·태아사망 건에 대한 조사자료로 작성)	작성기준년도 익년 9월(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시도)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3. 사고 사망률
범죄분석통계 (135001) (검찰청)	일반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범죄의 현황과 범죄심리 및 그 양적·질적 변화를 조사 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제공	개인	1년 (1976)	보고 (전국 각 지방경찰청→경찰청→검찰청)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 (간행물) (전국)	5–2–2–1. 범죄 피해율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국민건강영양조사 (117002) (보건복지부)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 통계 산출 –만성질환 및 관련 위험요인의 시계열 추이 파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책목표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근거자료 제공	가구 (제7기, 2016~2018) – 전국 11,520여 가구 내 만1세이상 가구원 – 3년 간 576개 조사구, 조사구당 목표 20가구(16~23가구) – 매년 전국 192개 조사구, 3,840개 가구	1년 (1973)	면접조사 (조사원(설문, 검진 및 계측)→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사대상연도 익년 12월 (전산망(인터넷)+간행물) (전국)	5–3–1–1.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117058) (보건복지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우리나라 청소년(중. 고등학생)의 건강행태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보건지표 제공 및 관련분야의 기초 연구자료 제공	개인 (17개 시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 400개교, 학교당 학년별 1개 학급 ※전체 유효목표 인원수=67,200명(800개교*3학급*약28명)	1년 (2005)	인터넷조사 (표본학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학교컴퓨터실에서 일괄조사 – 조사수행협조 : 교육부, 교육청)	조사기준년도 12월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시도)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5–4–3–3. 스트레스 인지율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
교육기본통계 (334001) (한국교육 개발원)	지정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유초중등 교육통계〉 : 학교, 교원, 학급, 학생, 사무직원 등 〈고등교육통계〉 : 학교, 교원, 학급, 학생, 사무직원 등	1년 (1963)	보고 (○유초중등교육기관 : 각급학교,지역교육청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 각급학교→한국교육개발원")	작성기준년도 8월 (언론(보도자료)) (시도)	6–1–1–1. 학생 취학률 6–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6–1–2–1. 학업중단율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117079) (여성가족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다문화가족의 실태, 사회통합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 27,120가구 –유효 16,000가구)	3년 (2009)	면접조사 (조사대상→통계청 통계대행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조사년도 익년3월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전국)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부록 3.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리스트[75]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현재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1.1.1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성 · 연령 · 고용상태 및 지역(도시/농촌)별)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의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floors/systems)의 적용을 받는 인구비율 (성 · 특수아동 · 실업자 · 노령자 · 장애인 · 임산부/신생아 · 산업재해피해자 ·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1.4.1 기초 서비스(basic services)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갖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여기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토지권 종류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	1.5.1 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affected)를 받은 인구 수
		1.5.2 전국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적인 재난위험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위험감축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게 모든 차원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증진을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자원의 동원을 보장	1.a.1 정부가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한 국내 생산자원(domestically generated resources)의 비율
		1.a.2 필수(essential) 서비스 (교육, 보건 및 사회적 보호)에 소요되는 정부의 총지출 비율
		1.a.3 GDP 대비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되는 비부채성 자금유입과 총 그랜트의 합
	1.b 빈곤종식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 인지적 재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저그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성	1.b.1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부문에 배당되는 정부의 반복적(recurrent) 및 자본(capital) 지출 비율

75) 통계청 내부자료, UN(2017).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E/CN.3/2017/2) 문서의 SDGs 지표부분에 대한 번역초안임(2017. 7.18일 개최한 인권지표체계 검토 전문가워크숍에서 통계청 박영실 사무관님 발표 참고자료로, 작성자 동의 하에 게재함).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1.1 영양부족인구비율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인구비율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쇠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부족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태 개선	2.2.1 5세 미만(under) 아동의 발육부진인구비율(연령 대비 신장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미만)
		2.2.2 5세 미만 아동의 영양불량인구비율(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증가	2.3.1 노동단위당 생산규모(농업, 축산업, 임업규모에 따른 계층별)
		2.3.2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 (성 및 토착지위별)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을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하의 농업지역 비율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을 개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
		2.5.2 멸종위험여부(멸종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에 따라 분류된 지역품종 비율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2.a.1 정부지출대비 농업지향지수(the agriculture orientation index)
		2.a.2 농업부문에 대한 공적지원금(ODA+다른 공적 지원금)
	2.b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농산품 보조금 철폐를 포함하여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 시정	2.b.1 농업수출보조금
	2.c 지나친 식품가격 변동성 제어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상품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조치 채택	2.c.1 식품가격이상지표(food price anomalies)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3.1 2030년까지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명 당 70명으로 감소	3.1.1 모성사망비
		3.1.2 숙련된 보건인력에 의한 출산비율
	3.2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12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5세 이하 유아의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25명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예방 가능한 신생아와 5세 이하 유아 사망 종식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3.2.2 신생아 사망률
	3.3 2030년까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열대병 및 주요 비전염성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부담 감소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연령, 성 및 주요 인구별)
		3.3.2 연간 100,000명 당 TB(결핵) 발병건수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건수
		3.3.4 인구 100,000명 당 B형 간염 발병건수
		3.3.5 소외열대성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3.4 2030년까지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감소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3.4. 자살 사망률
	3.5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마약 및 알코올 남용 포함)	3.5.1 약물사용장애치료(의약, 사회심리,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보장범위
		3.5.2 (15세 이상인구) 1인당 알코올의 연간 해로운 소비량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3.7 2030년까지 성 및 생식적인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3.7.1 현대적 방식의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는 가임기 여성(15–49세) 비율
		3.7.2 각 연령층별 여성 1,000명당 청소년 (10–14세, 15–19세) 출산율
	3.8 재정리스크 보험,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보장 서비스 제공	3.8.1 필수 보건 서비스의 보장범위(일반 대중과 가장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임신, 모성, 신생아 및 아동 건강, 감염병, 비전염성질병 그리고 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여 추적개입에 기반한 필수 서비스의 평균적인 보장으로 정의)
		3.8.2 총 가구수입 혹은 지출에서 의료비 비율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3.9.1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처리 그리고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3.9.3 의도하지 않은 중독에 의한 사망률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3.a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연령표준화를 적용한 15세 이상 인구중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인구 현황
	3.b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의 연구개발 지원과, 도하선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공중보건 보호 및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연성 조항을 개발도상국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재확인함 – 에 따른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의 제공	3.b.1 국가 정책 상 모든 백신으로 커버 가능한 대상인구(target population)의 비율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부문에 대한 순ODA총액
		3.b.3 필수적으로 연관된 의약품의 핵심세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가능하고 구매가능한 의료시설 비율
	3.c 최빈개도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재원을 상당 수준 증가	3.c.1 보건의료인력 밀도 및 분포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조기 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평등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	4.1.1 (a) 초등학교 2/3 시점,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중학교 졸업학년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숙달(proficiency)기준을 달성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 (성별)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미만 아동의 비율 (성별)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동안) 체계화된 학습 참여비율 (성별)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성별)
	4.4 2030년까지 전문.직업기술 등 취업,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성인의 비율 (기술유형별)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4.5.1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parity indices) (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영향 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세분화)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4.6.1 기능적인 (a) 문해력과 (b) 수리력에서 적어도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연령 집단별 인구 비율 (성별)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	4.7.1 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4.a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e) 기초식수 (f)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기초위생시설;(g)기초손씻기 시설(WASH 지표(물, 위생시설, 위생관념) 지표 정의에 따른)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비율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4.b.1 장학금의 공적개발원조(ODA) 금액 규모(연구부문 및 연구유형별)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	4.c.1 해당 국가에서 (a) 취학전; (b) 초등학교; (c) 중학교; (d)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화된 예비교사 연수 및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5.1 소녀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중지	5.1.1 성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할 수 있는 법적체계 존재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및 기타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공간에서의 소녀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소녀와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로 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별)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별 및 사건발생 장소별)
	5.3 아동 결혼 및 여성할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위험한 관행 근절	5.3.1 20~24세 여성 중에서 15세 이전/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여성의 비율
		5.3.2 15–49세 소녀와 여성 중에서 여성할례를 경험한 비율 (연령별)
	5.4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 제공을 통하여 무보수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가정 내에서의 책임공유를 촉진	5.4.1 무급가사 및 돌봄 노동에 소요한 시간 비율 (성, 연령 및 지역별)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5.5 공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완전참여 및 평등한 리더십 기회 보장	5.5.1 (a)국회의 여성 의석 비율 (b)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5.5.2 관리직에서 종사하는 여성 비율
	5.6 ICPD 및 북경 행동강령에 따라 성적 및 생식적인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비율
		5.6.2 15세 이상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 및 생식 보건에 대한 보건 의료, 정보, 교육에 대하여 완전하고 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5.a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등의 평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도록 개혁 실시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 (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 (보유기간별)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한 증대를 위해 유용한 기술사용 강화 (특히 ICT)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 (성별)
	5.c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탄탄한 정책 및 시행 가능한 법규 채택	5.c.1 성평등과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자원 배분과 추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의 비율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6.1 2030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제공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각별히 여성 및 소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충분하고 공평한 위생시설 보장; 노상배변(open defecation) 근절	6.2.1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폐수의 비율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bodies of water)의 비율
	6.4 2030년까지 전 부문에서의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공급에 맞는 담수 회수(freshwater withdrawals) 및 공급으로 물 부족에 대응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6.4.2 물 스트레스 수준: 담수취수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된 물 자원 관리 이행	6.5.1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0–100)
		6.5.2 물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초국적 유역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6.a 물 · 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을 확대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
	6.b 물 ·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7.1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 접근성을 갖고 있는 인구비율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비율
	7.2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상당하게 증가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7.3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을 두 배 증가	7.3.1 1차 에너지와 GDP의 측면에서 측정한 에너지 집약도
	7.a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이행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7.b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 현대화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에너지 기반 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7.b.1 지속가능한 발전 서비스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재정이전 분야에서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률 유지	8.1.1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2 노동집약적 산업부문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3 생산적 활동, 일자리 창출, 기업가 활동,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형 정책 촉진; 중소기업 육성	8.3.1 비농업부문에서 비공식 고용율 (성별)
	8.4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	8.4.1 물질발자국, GDP 대비 및 1인당 물질발자국
		8.4.2 국내 물질 소비량, GDP 대비 및 1인당 물질소비량
	8.5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을 달성;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 보장	8.5.1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직업, 연령 및 장애별)
		8.5.2 실업률 (성, 연령, 장애인별)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 (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5-17세 아동 중 아동노동인구와 비율(성 및 연령별)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8.8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촉진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빈도(성별 및 이주 상태별)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 (성 및 이주 상태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전체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GDP
		8.9.2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jobs)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 수의 비율
	8.10 보험업, 금융업 및 금융지원서비스의 접근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내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8.10.1 성인 100,000명 당 상업은행 지점들과 ATM의 개수
		8.10.2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5세 이상) 성인인구 비율
	8.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원조의 증가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관계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포함)	8.a.1. 무역원조(Aid for Trade) 약정 및 지불
	8.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및 운영여부 -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 인지 여부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9.1 경제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9.1.1 사계절 도로(all-season road)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인구비율
		9.1.2 승객 및 운송량 (교통수단별)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최빈개도국의 경우 2배로 증가)	9.2.1 GDP와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 강화(특히 개발도상국)	9.3.1 총 산업부가가치 중 소규모(small-scale) 산업 비율
		9.3.2 부채 혹은 신용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자원사용 효율 제고와 청정/환경 친화 기술 및 산업공정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및 개조하고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행함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
	9.5 2030년까지, 인구 백만 명 당 연구 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 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율
		9.5.2 거주자(inhabitants) 백만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개도국들,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공적지원 (ODA+기타공적자금)
	9.b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부가시키는 산업 환경 정책을 보장하여 개발도상국가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9.c ICT 접근성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access) 달성을 위해 노력	9.c.1 모바일네트워크 사용 인구 비율(기술별)
10. 국가내 및 국가간 불평등 완화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10.1.1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가구지출 혹은 1인당 소득 성장률
	10.2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 권한 확대 및 촉진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및 장애별)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감소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 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평등을 달성	10.4.1 GDP 중 임금과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노동소득비율
	10.5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 개선 및 이행조치 강화	10.5.1 금융건전성지표(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10.6 글로벌 국제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개발도상국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화	10.6.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 (voting rights) 비율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토록하고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비용의 비율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10.a WTO협약에 따른 개발도상국(특히,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이행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개도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선 비율
	10.b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서도서개발국) ODA, 재원 지원, 직접투자 권장	10.b.1 공여국과 수원국별 개발을 위한 총자원 자원투입(예: ODA,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
	10.c 2030년까지 이민자송금 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10.c.1 송금총액에서 송금비용의 비율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도시인구비율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안전 및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시스템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 (연령, 성 및 장애별)
	11.3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1 인구성장률 대비 토지소모 비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비율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유산종류(문화, 자연, 복합, 세계유산센터 등재),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 지출종류(운영비/투자)), 민간자금종류(기부, 민간, 비영리, 스폰서)별)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0,000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1.6 대기의 질과 지자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인구 1인당)을 감소	11.6.1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고형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에 따른 가중)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공용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연령, 성 및 장애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 (성, 연령, 장애, 발생장소별)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를 지원	11.a.1 인구 추계와 자원 수요를 통합하여 수립된 도시 및 지역발전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도시크기별)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재난위기관리를 구축하고 시행함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11.c 최빈개도국이 지역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재원 및 기술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11.c.1 최빈개도국 내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효율적인 건물을 짓고 재건축하는데 소요되는 최빈개도국 재정지원비율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12.1 선진국 주도하에, 개발도상국들의 역량과 발전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CP) 국가실행계획이나 SCP를 주류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및 GDP대비 물질발자국
		12.2.2 국내 물질 소비량, 1인당 및 GDP대비 물질소비량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1/2로 감소하고 식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12.3.1 글로벌식량손실지수(GFLI)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수명 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12.4.2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과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12.5 2030년까지 방지, 감축, 재생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12.6 기업들이(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토록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이행하도록 권고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들의 수
	12.8 2030년까지 자연과 조화롭게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개발 및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식 및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주류화 정도
	12.a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환경 친화적인 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금액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관광업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 개발 및 이행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수단을 가진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나 정책 그리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
	12.c 조세구조 조정 및 유해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시장왜곡 요인 제거를 포함하여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이행 (이때,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취약계층을 보호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함)	12.c.1 GDP 단위(생산과 소비)당 화석연료보조금액수 및 화석연료에 대한 총 국가지출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13.1 기후관련 위험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 및 탄력성 강화	13.1.1 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affected)를 받은 인구 수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적인 재난위험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3.1.3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13.2 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13.2.1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회복력을 배양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통합된 정책, 전략, 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논의해 온 국가의 수(국가 적응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국가보고서, 격년별로 갱신되는 보고서 등을 포함)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3.1 완화, 적응, 영향 저감, 조기 경보를 초중고등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국가들의 수
		13.3.2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시스템, 그리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논의해온 국가의 수
	13.a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이행 및 녹색기후펀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상의 선진국들의 공약인 연간 $1000억 동원 즉각 이행	13.a.1 약속된 1천 억 달러 재원 조성에 대해 2020~2025년 실제 모금되는 연도별 금액
	13.b 최빈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 메카니즘 촉진(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소외집단 포함)	13.b.1 여성, 청소년, 지역 및 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매커니즘 개발을 위해 금융, 기술, 역량배양을 비롯한 특별지원과 지원금을 받고 있는 최빈 개도국과 군소 도서개발국의 수
14.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14.1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14.1.1 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부유성 플라스틱 부유성 폐기물 밀도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하여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pH)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의 비율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 · 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 지역의 10% 보호	14.5.1 해양 면적 대비 보호구역의 비율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14.6.1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을 이행하는 국가별 진척도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서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14.a.1 전체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비율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규제/정책/제도적인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비율 (생태계 유형별)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가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국토면적 대비 황폐화 지역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보장	15.4.1 산림생물다양성 관련 중요 보호지역 면적
		15.4.2 산림피복 지수(Mountain Green Cover Index)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15.5.1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보장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촉진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불법야생동식물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및 대상종을 통제 및 박멸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 및 회계에 반영	15.9.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2011–2020」의 Aichi 타겟2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b 지속가능한 삼림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발도사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삼림 관리를 즈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15.b.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c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의 추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제고를 포함하여 멸종위기종의 밀렵 및 밀매 활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 강화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1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	16.1.1 인구 100,000 명당 의도된 살인범죄의 피해자 수 (연령별 및 성별)
		16.1.2 인구 100,000 명당 분쟁관련 사망 (연령별, 성별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 동안 육체적, 심리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16.1.4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홀로 안전하게 걷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16.2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고문, 학대, 착취, 매매 근절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보육자?의 신체적 체벌이나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아동 비율
		16.2.2 인구 100,000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 (성별, 연령별, 착취형태별)
		16.2.3 18–29세 남녀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비율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16.3 국제 및 국가수준에서 법치 촉진 및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피해자 비율
		16.3.2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재산 회수 및 환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현 미국달러화 기준)
		16.4.2 압수,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16.5.1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16.5.2 지난 12개월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인의 비율
	16.6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의 부문별 또는 예산코드별 비율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16.7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반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표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	16.7.1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직 분포비율(연령, 성별, 장애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수용적(responsive)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 (성, 연령, 장애, 및 인구 집단별)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 (voting rights)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16.9.1 5세미만 아동 중 행정 당국에 출신고된 비율 (연령별)
	16.10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정보에 대한 공공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 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폭력예방 및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가 제도를 강화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및 정책 증진 및 강화	16.b.1 국제인권법의 차별금지에 근거해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음을 보고한 인구의 비율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17.1 조세 및 기타 수입 징수 국내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재원 동원 강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17.1.1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율(항목별)
		17.1.2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예산의 비율
	17.2 선진국은 개도국에 GNI의 0.7%를, 최빈개도국에 GNI의 0.15–0.20%를 ODA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ODA 공약달성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ODA 제공 국가는 적어도 GNI의 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할 것을 권장	17.2.1 OECD/개발 원조 위원회(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1) 총 순ODA의 비율 2) LDC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17.3 개발도상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재원 동원	17.3.1 총 정부예산 중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의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의 비율(미달러 기준)
	17.4 필요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율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능력을 갖출수있도록 지원; 고채무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북–남, 남–남, 삼각협력 등의 지역 및 국가 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 확대	17.6.1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 (협력 형태별)
		17.6.2 인구 100명 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속도별)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 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 승인 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카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을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하여,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도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17.9.1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지원금액 (달러기준)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공평한 다자무역제도 촉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	17.11.1 전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

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4개)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규정 투명성 및 명료성을 포함하여 최빈개도국의 무관세 및 수량규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WTO 결정을 시의성 있게 이행	17.12.1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발도상국 주도 성과 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 · 전문성 · 기술 · 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의수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저긴 공공, 민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17.17.1 민-관 및 시민단체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 · 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17.18.1 세부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적 단위에서 생산된 완전히 세분화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가진 국가의 수 (재정지원 출처별)
	17.19 2030년까지 GDP 보완을 위한 지속가능바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	17.19.1 개발도상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부록 4. 2017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초등용 · 중등용)

승인(협의)번호 제 402001 호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6 201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044-415-2136
김희진 연구위원 044-415-2106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 080-67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01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기 번호(① ② ③ ④)에 동그라미(O)로** 해주세요.
표시한 응답을 바꾸고 싶을 때는 **가위표(X)를 하고, 바꾼 보기에 다시 동그라미로 표시** 해주세요.

02 보기 중 **'기타'**에 응답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괄호 안에 적어주세요.**
단, 다른 항목을 잘 살펴보고, 유사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지 말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

03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항목만 선택**해야 합니다.
단, 질문에 **'모두'** 또는 **'3가지만'** 등이 있는 문항(18-1, 24-1, 37-1, 배문2) 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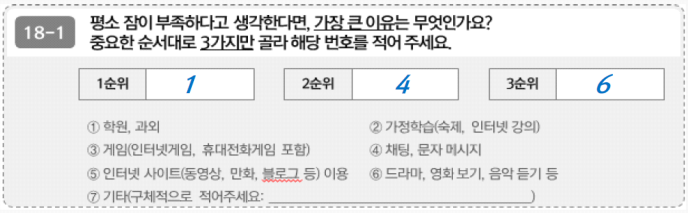

04 선택한 항목 뒤에 **'화살표'**나 **'음영이 있는 화살표'**가 있는 **문항**에서는 그 화살표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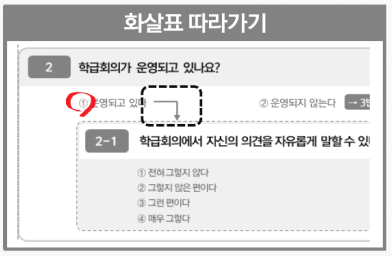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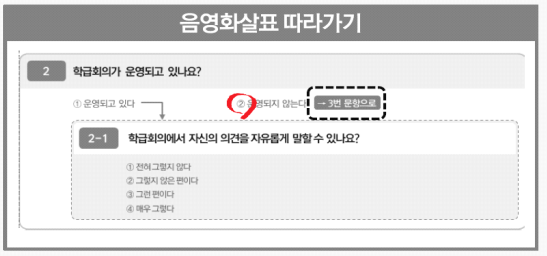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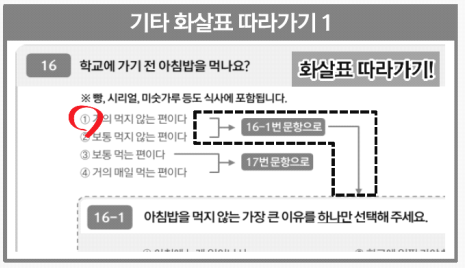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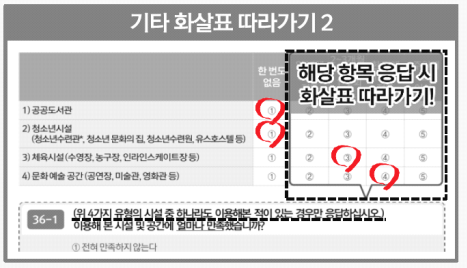

05 질문 아래에 설명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잘 읽고 응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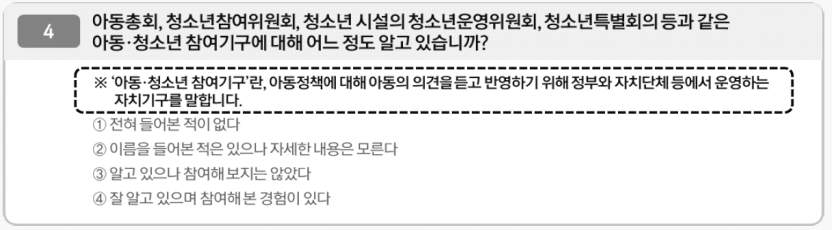

Ⅰ. 참여활동

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학원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나요?

① 운영되고 있다 → ② 운영되지 않는다 → 3번 문항으로

2-1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3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이 잘못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학생생활규정 등)을 알려주고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4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아동정책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5 우리 사회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이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6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학교운영,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아동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Ⅱ. 가정 및 학교 환경

7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2)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3)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4)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5)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6)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몸을 만짐)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7)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9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카톡 등),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이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2번 문항으로

11-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등)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Ⅲ. 건강 및 복지

12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 급식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3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4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1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16 학교에 가기 전 아침밥을 먹나요?

※ 빵, 시리얼, 미숫가루 등도 식사에 포함됩니다.

①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② 보통 먹지 않는 편이다 → 16-1번 문항으로
③ 보통 먹는 편이다
④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 17번 문항으로

16-1 아침밥을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u>하나만</u> 선택해 주세요.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17 <u>학교에 가는 날(평일)</u>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간은 모두 <u>24시간 기준</u>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 21시 30분, 22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 (예: 9시 0분, 22시 0분)

① 일어나는 시간 보통 [ ] 시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 ] 시 [ ] 분

18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 18-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9번 문항으로

18-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u>가장 큰 이유</u>는 무엇인가요?
<u>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u>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처럼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0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공부하는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2) 가정에서 서로 싸우는 문제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신체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21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21-1번 문항으로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22번 문항으로

21-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2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삶의 만족도 낮음		중간							삶의 만족도 높음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3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Ⅳ. 교육 및 여가·문화

24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25번 문항으로

24-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25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6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27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해 보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①	②	③	④	⑤

27-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부록

28 최근 1년 동안 아동·청소년 단체(예: 컵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과학우주청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나요?

① 가입하지 않았다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았다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9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3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31 평일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32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단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도움 등)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Ⅴ. 보호

33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② 없다 → 34번 문항으로

33-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Ⅵ. 인권 일반

34 다음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 · 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적 약속을 말합니다.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35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36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7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나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 37-1번 문항으로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 38번 문항으로

37-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국어, 사회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37-2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38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9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년			월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4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⓪	①	⑧
2) 어머니	⓪	①	⑧

배문5 학생의 학업 성적(2017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6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

승인(협의)번호
제 402001 호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부록

6 201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044-415-2136
김희진 연구위원 044-415-2106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 080-67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01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기 번호(① ② ③ ④)에 동그라미(O)로** 해주세요.
표시한 응답을 바꾸고 싶을 때는 **가위표(X)를 하고, 바꾼 보기에 다시 동그라미로 표시** 해주세요.

02 보기 중 **'기타'**에 응답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괄호 안에 적어주세요.**
단, 다른 항목을 잘 살펴보고, 유사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지 말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

03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항목만 선택**해야 합니다.
단, 질문에 **'모두'** 또는 **'3가지만'** 등이 있는 문항(26-1, 33-1, 47-1, 배문2) 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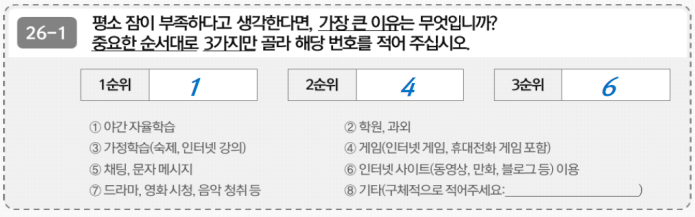

04 선택한 항목 뒤에 **'화살표'**나 **'음영이 있는 화살표'**가 있는 **문항**에서는 그 화살표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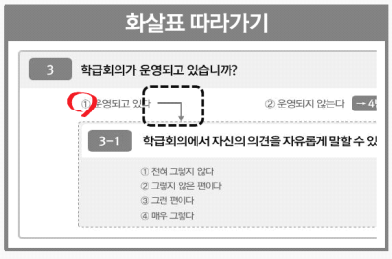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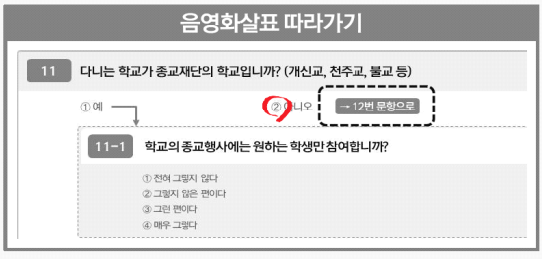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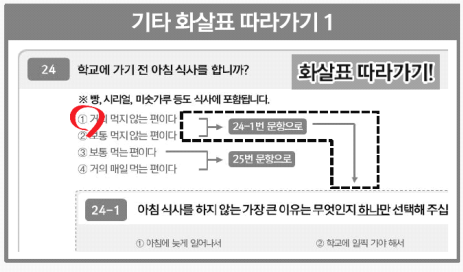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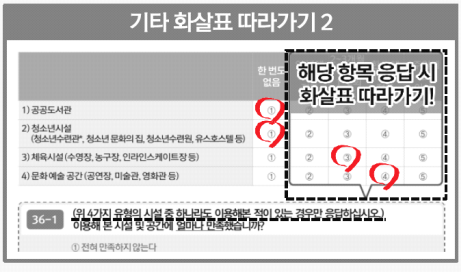

05 질문 아래에 설명 표시 (※)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잘 읽고 응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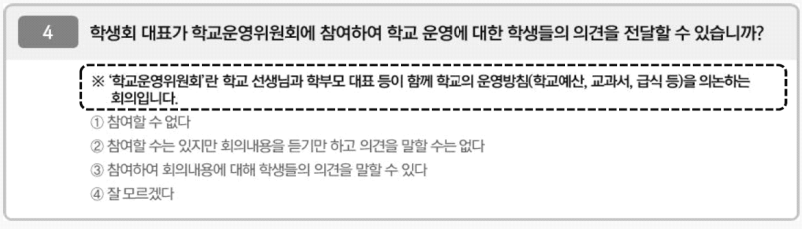

Ⅰ. 참여활동

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3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운영되고 있다 →

② 운영되지 않는다 → 4번 문항으로

3-1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4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교과서,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등)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7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예 : 만 18세 등)
②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③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예 : 만 20세 등)
④ 잘 모르겠다

8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9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1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 **11-1**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② 아니오 → 12번 문항으로

12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12-1 (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 · 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아니다	그렇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 · 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II. 가정 및 학교 환경

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원 선생님 으로부터	5)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6)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1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7)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17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카톡 등),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8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지난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20번 문항으로

19-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19-2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주십시오.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 20번 문항으로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기관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9-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부록

Ⅲ. 건강 및 복지

20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 급식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1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2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23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24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합니까?

※ 빵, 시리얼, 미숫가루 등도 식사에 포함됩니다.

①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 24-1번 문항으로
② 보통 먹지 않는 편이다 → 24-1번 문항으로
③ 보통 먹는 편이다 → 25번 문항으로
④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 25번 문항으로

24-1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25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간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 22시 30분, 23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 (예: 9시 0분, 22시 0분)

① 일어나는 시간 보통 [ ] 시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 ] 시 [ ] 분

26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26-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7번 문항으로

26-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27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28번 문항으로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27-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28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9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2) 가정 불화	①	②	③	④
3) 또래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신체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30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31번 문항으로

30-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u>하나만</u>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31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삶의 만족도 낮음		중간							삶의 만족도 높음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2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u>한 사람만</u>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Ⅳ. 교육 및 여가·문화

33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34번 문항으로

33-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34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35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36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①	②	③	④	⑤

36-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37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과학우주청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① 가입하지 않았다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았다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38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동호회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9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40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41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V. 보호

42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43번 문항으로

42-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16년 기준 시간 당 6,030원, 2017년 기준 시간 당 6,47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43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② 없다 → 44번 문항으로

43-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VI. 인권 일반

44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45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46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7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 47-1번 문항으로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 48번 문항으로

47-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국어, 사회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47-2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48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9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년			월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4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⓪	①	⑧
2) 어머니	⓪	①	⑧

배문5 학생의 학업 성적(2017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6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

부록 5. 2017 아동 · 청소년 인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 1] 2017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세부지표항목 중요도 조사결과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 · 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4.55	0.52
			1-1-1-2. 아동 · 청소년 인권기구 · 조직	4.36	0.50
			1-1-1-3. GDP 대비 아동 · 청소년 관련 예산	4.91	0.30
		1-1-2. 인권에 대한 인지도	1-1-2-1.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4.27	0.47
			1-1-2-2. 아동 · 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전체, 사이버공간)	4.18	0.40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4.18	0.40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경험*	4.00	0.63
			1-1-3-2. 인권교육 받은 기관*	3.09	0.70
			1-1-3-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3.73	0.79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해 본 경험*	3.91	0.54
			1-2-1-2. 차별받은 경험*	4.36	0.50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4.27	0.65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4.45	0.52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4.18	0.60
			2-1-2-2. 학급회의 운영 여부*	3.55	1.21
			2-1-2-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4.27	0.65
			2-1-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4.45	0.69
			2-1-2-5. 교칙 제 · 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4.73	0.47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 · 청소년정책 · 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4.55	0.69
			2-1-3-2. 아동 ·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3.91	0.70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4.18	0.75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4.18	0.75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4.09	0.83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4.09	0.70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3.82	0.60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 · 집회 경험률	2-3-1-1. 결사 · 집회 경험률*	3.82	0.75
			2-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4.18	0.60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표준편차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4.00	0.63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4.36	0.67
			2-4-2-2.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4.27	0.65
			2-4-2-3.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4.45	0.69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3.73	0.47
			2-5-1-2. 유해매체 이용률	4.18	0.60
			2-5-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3.55	0.69
		2-5-2. 정보제공 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4.18	0.75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4.45	0.52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폭력피해 경험*	4.64	0.50
			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4.82	0.40
		3-1-2. 체벌 경험률	3-1-2-1. 체벌 경험률*	4.73	0.47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4.36	0.50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4.55	0.52
			3-2-1-3. 방임 정도*	4.73	0.47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4.64	0.67
			3-2-2-2.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업무량)	4.64	0.50
			3-2-2-3.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36	0.67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3.91	0.83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4.18	0.40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18	0.60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7	0.65
			4-2-1-2. 입양 사후조치(입양성공률/파양률)	4.64	0.50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요보호아동 현황	4.45	0.52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36	0.50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45	0.52
			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4.36	0.67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4.36	0.50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64	0.50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4.45	0.69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4.45	0.52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표준편차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4.36	0.67
			5-1-1-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4.18	0.75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4.36	0.67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4.09	1.04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4.36	0.50
			5-2-1-3. 사고 사망률	4.45	0.82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4.55	0.52
			5-2-2-2. 지역사회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4.09	0.83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4.00	0.77
			5-3-1-2. 보건교사 배치 현황	4.09	0.70
			5-3-1-3.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4.27	0.47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4.36	0.50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4.27	0.65
			5-3-3-2. 음주율	4.27	0.65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4.09	0.70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4.09	0.70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4.00	0.89
		5-4-2. 신체적 건강	5-4-2-1. 운동 실천율*	3.73	1.01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4.27	0.65
			5-4-2-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4.27	0.90
			5-4-2-4. 비만율	4.18	0.87
		5-4-3. 정신적 건강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4.45	0.69
			5-4-3-2. 우울증*	4.64	0.50
			5-4-3-3. 스트레스 인지율*	4.36	0.50
			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4.36	0.50
			5-4-3-5. 삶의 만족도	4.45	0.69
			5-4-3-6. 자아존중감*	4.18	0.87
			5-4-3-7. 고민거리대화상대*	3.73	0.90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4.27	0.90
			5-5-1-2.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4.55	0.69
		5-5-2.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4.55	0.69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4.73	0.47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표준편차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4.09	0.70
			6-1-1-2. 학생 진학률	4.09	0.70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4.27	0.79
			6-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4.09	0.94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4.55	0.52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4.36	0.67
			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4.27	0.47
		6-1-3. 대안교육 참여율	6-1-3-1. 대안학교수와 종류	4.18	0.87
			6-1-3-2. 대안학교 학생 비율	3.64	1.21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4.00	0.77
		6-2-2. 지속가능발전교육	6-2-2-1. 대안교육 현황	3.91	0.30
			6-2-2-2. 직업교육 현황	3.91	0.30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수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3.82	0.60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4.27	0.65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율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4.36	0.81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4.00	0.45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4.09	0.70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4.55	0.52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4.36	0.67
		6-3-3. 여가·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4.36	0.81
			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4.09	0.70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4.36	0.50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4.45	0.52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4.82	0.40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4.64	0.50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4.64	0.50
		7-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4.18	0.60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4.00	0.63
	7-2. 소년사법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4.45	0.52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4.45	0.52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4.36	0.67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4.55	0.52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4.27	0.65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평균	표준편차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4.36	0.50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4.27	0.47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4.27	0.47
	7-3. 경제적 착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4.45	0.69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4.55	0.69
		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3.91	1.04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4.73	0.47
		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4.00	0.89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4.27	0.47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	3.64	0.92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3.36	0.92
		7-4-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4.36	0.50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4.55	0.52
			7-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4.18	0.75
		7-4-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4.55	0.52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4.55	0.52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4.45	0.52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4.45	0.52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4.45	0.52

[조사 2] 아동 · 청소년인권 정책과제 중요도 조사 결과

대분류	정책과제	평균	표준편차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협약이행법률 제정 등)	4.55	0.69
	1-2.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상소권)의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진행	3.91	0.70
	1-3.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 권고사항별 소관부서 설정,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영향평가 연계 등	4.82	0.60
	1-4. 개인청원권에 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3.73	0.79
	1-5. (가칭) 차별금지법 제정	3.91	1.22
	1-6. 지방자치단체 아동친화도시 사업 지원	3.73	0.79
	1-7. 지방자치단체(교육행정기관 포함) 아동 · 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자치법률 제정 및 운영 지원	3.91	0.83
	1-8. 아동 · 청소년정책 및 제도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아동 · 청소년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4.27	0.90
	1-9. 아동권리증진 위해 제 · 개정된 법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4.45	0.69
	1-10.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조정 – 단기: 대통령 직속의 상위 위원회 설치 – 중장기: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의 통폐합과 정부부처 통폐합 방안	4.36	0.50
	1-11. 우리나라 아동인권 변화 · 추이 관찰위한 포괄적 아동인권 대표지표 개발	4.00	0.45
	1-12. 아동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충실한 예산 산출 및 확보방안 마련	4.64	0.50
	1-13. 다양한 아동 · 청소년관련 현행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 통계청 국가통계자료 등의 일관적인 분야별 분류 및 체계화 방안 모색	4.09	0.70
	1-14. 부처별 실시되는 현행 아동권리 강사 현황, 교육과정, 교육교재, 홍보물 등에 대한 분석 및 통합 방안 마련	3.91	0.7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4.64	0.50
	2-2. 아동 · 청소년 참여 실태파악 및 참여 영향평가	4.00	0.63
	2-3. 아동 의견표명권(의견청취) 제도화: 학교, 사법체계 등	4.09	1.04
	2-4. 아동 · 청소년 참정권 확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화	4.18	0.98
	2-5. '시민으로서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4.10	0.57
	2-6. 학교규칙 내 인권침해조항 모니터링 및 개정 유도	4.36	0.67
	2-7.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의무화	4.36	0.67
	2-8. 아동 · 청소년의 의견표명권 관련 법률조항 및 이행 실태조사 실시	4.36	0.67
	2-9. 지방 교육자치단체 내 인권보호기구 설치 및 운영 지원	3.82	0.75
	2-10. 학생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원	4.00	0.77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금지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관련법 체벌금지조항 명시 –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체벌금지 규정 명시	4.36	0.50
	3-2. 아동보호 전문인력 확대(인건비기준 마련 등)	4.64	0.50
	3-3.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4.73	0.47

대분류	정책과제	평균	표준편차
	– 경찰 현장출동 강화 및 현장체포 근거규정, 현장조사 방해 시 제재규정 등		
	3-4. 아동학대 행위자 교정치료 시스템 마련	4.18	0.40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확대를 통한 입양률 제고 – 입양아동수가 급감하고 있음.	3.82	0.87
	4-2.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 직접양육을 위한 다각적 지원 확대	4.73	0.47
	4-3. 청소년 한부모와 그 가족(아동 부)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방안	4.45	0.52
	4-4. 청소년 대상 성교육의 실태와 효과성 점검 방안	3.91	0.83
	4-5. 입양 사후관리 및 파양 관련 DB구축	4.18	0.75
	4-6. 입양과정에서의 아동의견 청취제도 강화	4.09	0.70
	4-7.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 시설보호가 증가하고 가정위탁보호 감소하는 추세	4.45	0.52
	4-8. 조손가정 아동 · 청소년 발달 지원 확대(교육적 방임 심각)	4.09	0.70
	4-9. 대안양육시설 종사자의 아동권리교육 강화	4.09	0.94
	4-10. 대안양육시설 아동의 원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4.09	0.70
	4-11. 친권 및 양육권 결정과정에서의 아동의사 반영 절차 마련	4.36	0.67
	4-12. 요보호아동의 대안양육기관 배치 시 아동 최우선의 원칙 적용	4.64	0.67
	4-13. 대안돌봄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4.36	0.50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5-1. 장애아동의 일반아동과의 통합교육률 제고 –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아동 도우미 확충 등	4.36	0.50
	5-2. 아동 · 청소년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 방안 강화 – 소아비만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제고 및 신체활동 증대 방안	4.09	0.54
	5-3. 아동 ·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모델학교 확대	3.60	0.84
	5-4. 청소년상담체계 접근성 강화 – 고민에 대한 상담자가 '없다'는 청소년 응답률 증가	4.36	0.50
	5-5. 무직(NEET) 장애청소년의 진학 및 취업 지원	4.27	0.65
	5-6. 약물남용(흡연 · 음주 포함) 예방교육 확대	4.00	0.77
	5-7. 무국적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 지원 확대	4.45	0.52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공교육 정상화 노력을 위한 공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확대 – 선행학습 규제 강화, 공교육 정부부담비율 확대 방안 필요	4.73	0.47
	6-2. 아동의 여가, 문화, 놀이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	4.45	0.82
	6-3.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노력 및 교원과 학교수급 계획 수립	3.82	0.87
	6-4. 사이버권리 교육 확대 방안 마련	4.18	0.40
7. 특별 보호조치	7-1. 성매매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아동성매매 피해아동 보호규정 마련	4.36	0.50
	7-2.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재활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확대 강화	4.73	0.47
	7-3. 해외아동성매매 단속 및 처벌 강화	4.27	0.65
	7-4. 난민아동의 구금배제와 대안양육관련 지침 마련	4.40	0.52

대분류	정책과제	평균	표준편차
	7-5.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상담, 멘터링 등) 확대	4.36	0.67
	7-6.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확대	4.45	0.52
	7-7.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지원 강화	4.36	0.50
	7-8.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년구금 최소화 노력 – 형사처벌강화가 아닌 저연령범죄자에 대한 수사 · 기소절차 강화, 재범율 감소방안 모색	4.36	0.50
	7-9. 소년사법 관련 기관의 전문화 – 소년전문법원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4.45	0.52
	7-10. 자유박탈 아동 · 청소년의 과밀화현상 해소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문제 해소	4.55	0.52
	7-11. 비행청소년을 위한 자유박탈외 대안적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 모색	4.27	0.47
	7-12.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임금, 부당처우 등) 개선	4.55	0.52
	7-13.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4.09	0.70
	7-14. 후기청소년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연계사업 확대	4.09	0.70
	7-15. 아동 · 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 및 근로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4.36	0.50

부록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부처별 추진사항[76]

Ⅰ. 일반이행조치

권고 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추진내용 (2011 ~ 2016)
8~9항	□ 입양관련 유보조항 철회 ○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최대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협약 제21조(a)항에 대한 유보 철회	○ 입양특례법 개정('12.8월 시행)으로 가정법원 허가에 의해서만 아동의 입양이 성립되도록 개선, 제21조(a)항 준수 중 (보건복지부) – 유보철회 완료('17년 8월)
	□ 아동 상소권 보장 관련 유보조항 철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제40조 제2항 (b)(v)에 대한 유보 철회	○ 비상계엄 시 상소권 제한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유보를 철회하기 곤란함.(국방부) ○ 정부는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단심제를 보완하고자 '군사에 관계되는 죄'중에서 법률이 정하는 제한적 경우를 단심제 적용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7년도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 상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단심제 재판에서 관할관이 한번 더 심사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상소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있음. 아울러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방부)
10~11항	□ 협약이행 법규 제정 및 사법판결 적용 ○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협약 전반 조항을 이행하는 법규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16.5) (보건복지부) – 관련 법률 제정안 및 아동관련 개별법별 개정안 검토 중

76) 본 작업은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업팀과 협업으로 진행된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업과정에서 취합된 부처별 추진실적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협약이행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기초자료는 본 연구진이 작성한 양식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각 관계부처별로 협약이행 실적과 추진계획을 취합한 문서자료이다. 이행성과 기준시점은 대부분 2016년 중반이나, 정부가 2017년 8월에 입양관련 협약 유보조항을 철회한 실적은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거나 수정·보완하여 국가보고서에 활용되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권고 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추진내용 (2011 ~ 2016)
	취할 것	
	□ 청소년 미혼모 지원법률 마련 ○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되도록 검토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위험과 학업중단 강요 및 강요에 의한 입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청소년산모의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은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시술이 가능함(보건복지부)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 교육비 등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정책 시행(여성가족부) ○ 강요에 의한 입양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20조 4항 개정 완료('11.4월 개정, '15.7월 시행)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임신한 미혼모 보호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개정 (여성가족부) ○ 위탁형 교육제도 시작으로 학습권 보장('11년~)(여성가족부)
12~13항	□ 협약 업무의 조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 및 강화하고, 가급적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 기술적 ·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기구 수립 ○ 아동권리 관련 부처간 연계강화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간, 국가 및 지역 단체 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하고 협약 이행 관련 사항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것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재정비로 위원회 기능 복구(보건복지부) – 위원회 재구성('13년) 및 연중 1회 이상의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 정례화 ○ 아동정책기본계획('15.5월), 아동학대방지종합대책('16.3월), 아동권리헌장 제정('16.5월) 등 아동권리 관련 정책 추진 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의견조정, 업무협의 등 연계체계 구축(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간 청소년정책 총괄 ·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청소년정책위원회 출범('15.12월~) 및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여성가족부)
14~15항	□ 아동 관련 국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강화 ○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 · 시행 하고 충분한 인적 · 기술적 · 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2012~2016). 제3차 기본계획(2017~2021) 수립 중(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기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2016. 9.5.) ○ 아동정책기본계획('15.5월) 및 시행계획('15.11월. '16.3월) 수립(보건복지부) –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등 평가('16.3~10월)(보건복지부)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3년~'17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추진(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 ·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시범

권고 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추진내용 (2011 ~ 2016)
		분석 · 평가 실시('16년)(여성가족부)
16~17항, 7항	□ 독립적인 아동 인권모니터링을 위한 자원 제공 ○ 독립적 아동 인권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인적 · 기술적 ·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소위원회 설립	○ 독립적 인권모니터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 모니터링 기능 강화 – 2014년 8월에 아동 · 청소년 인권업무 전담부서인 아동청소년인권팀 신설.'아동청소년인권과'로 인력 및 조직 확대 추진 중(국가인권위원회) ○ 2016. 4. 28. 아동권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및 공포 –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지정('16.4.28.) 및 운영(2016.5.16., 7.8.)(국가인권위원회)
18~19항	□ 아동인권 관련 자원의 할당 ○ 아동예산 증액, 아동권리 관점의 재원배정 평가, 국가예산 수립시 아동영향 평가 실시, 재원배정의 효과 측정이 가능한 결과기반예산 설립, 예산수립과정의 아동참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전략적 예산 수립 및 보장 등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2019년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 추진(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제1항 신설 ('16.3.23 개정, '19.3.23 시행) ○자치단체별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인천, 수원 등)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드림스타트('06년~),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게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04년~) 사업 추진(보건복지부)
20~21항	□ 아동인권 관련 종합적 자료수집 체계 구축 ○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적인 자료수집 체계를 설립 및 다각적 연구 수행	○ 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위해 유 · 초 · 중등교육기관 대상으로 학교, 학생, 교원, 시설현황 등 교육관련 전수 조사 및 조사 결과 DB 구축('13년)(교육부) ○ 아동 · 청소년 실태의 종합적 파악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13 실시. 5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14년 실시. 3년 주기.여성가족부) 실시 ○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매년실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23항	□ 협약 보급, 인식제고, 인권교육 강화 ○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 확대 ○ 아동 관련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 ○ 협약 홍보 강화	○ 학교 인권교육 확대 – 인권교육 내용을 반영한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9.23.)(교육부) – 초중등 교과서 인권 모니터링 추진('09년~'13년, '15년), 인권교육 교재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 아동 관련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 –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인권교육, 아동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16년. 11월), 교(원)장, 교

권고 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추진내용 (2011 ~ 2016)
		(원)감,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학생·교원 인권 교육 및 양성평등' 내용 포함(교육부)('14.12) 등을 통해 교사 인권감수성 함양 (교육부) – 교사 및 학교관리자 대상 인권강사 양성과정 추진('11년, '14년~'15년), 교사 및 학교관리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추진('13년~'15년), 교사 및 학교관리자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국가인권위원회) –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 지속 추진(연 1회~8회), 소년보호기관 직원대상 인권교육 지속 실시(법무부) – 드림스타트('09년 4월~) 및 지역아동센터 실무자('07년 3월~), 아동복지교사('09년 1월~) 등 아동복지 분야 주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보건복지부) – 청소년단체 및 기관, 시설 등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사 등) 대상 권리교육 실시('11년 5월~)(여성가족부) ○ 협약 홍보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제정('16.5월) 선포. 아동권리협약 포스터 제작·배포 등(보건복지부) – 청소년용 권리교재 핸드북('12.6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권리 홍보 리플릿('12.12월) 등 개발 및 보급(여성가족부) – 아동인권 캠페인 전광판 광고, 인권만화, 결정례 동영상, 인권상담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국가인권위원회)
24~25항	□ 국제협력 ○공적개발원조의 국제적 목표 달성 –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일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가지 도달하고 가능하면 이를 넘어서도록 할 것 ○국제협력 협약시 아동권리의 우선적 고려 – 개발도상국과 개발협력 관련 협약체결시 아동권리실현을 주요 우선순위로 다루고 상대국의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	○ 비록 유엔 권고사안인 2015년까지 ODA/GNI 0.7%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ODA/GNI 목표치를 0.2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외교부) ○ 2015.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 계기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구상을 발표하여, 개도국 소녀의 교육·보건·미래역량강화에 지원 예정(2016–2020) ※ 우리정부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 : 326만불(11년) → 350만불(12년) → 1,230만불(13년) → 2,375만불(14년) → 3,058만불(15년) → 4,000만불(16년(잠정))(외교부)

권고 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추진내용 (2011 ~ 2016)
	○ 협약과 다른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하 아세안(ASEAN) 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	
26~27항	□ 아동권리와 재계 ○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법체계 마련 –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 체제를 마련할 것,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 지표가 포함되도록 장려하고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 ○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 수입 금지 –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시 아동권리 존중 조치 –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조치할 것, 인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해외 정부와 협력하여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동의 절차를 수행할 것 ○ 자유무역협정 협상시 아동권리 존중 조치 –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할 것	○ 아동노동의 금지를 포함한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 개선 권고(2014.9.)(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경영가이드라인 적용권고 관련 사후 관리 진행중(국가인권위원회) ○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마련하며 정부에 권고하는 것을 추진중(2016.1~)(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관련 법체계 마련은 인권, 노동 관련 부서에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산업부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진출 예정기업 · 기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설명회(연2회 이상) 및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 시(연2개국)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비롯한 국제노동기준 준수 권고(고용노동부) ○ 진출국의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안내하는 노무관리 안내서 제작 · 배포(고용노동부) ○ 해외진출기업이 아동권리 존중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포럼」 개최('16년 5회)(고용노동부)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홍보를 통하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시 아동권리 존중을 촉구(산업통산자원부) ○ FTA 협상시 노동챕터에 아동노동 금지 등 ILO 선언 준수를 명시하여 아동권리 보호에 노력중(산업통산자원부) *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등 ○ FTA 관련 인권평가 등은 한국에만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에서 재고할 필요 있음(산업통산자원부)

II. 일반원칙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28~29항	□ 비차별 ◦협약 제2조에 합치되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하여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	○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14.6.19~12.18.)(국가인권위원회)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제정을 포함시켜 추진 중(’13.5월). 차별금지 관련 국내외 입법례 분석(’15.10월) 및 의견수렴(’15.10월~12월) 절차 진행 중 (법무부) ○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 제1차(’08. ~ ’12.) 및 제2차(’13. ~ ’17.)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이행 (법무부) –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추진 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업평가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아동 및 돌봄 지원 아동의 빈곤 및 낙인, 차별 방지 업무 추진(보건복지부)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개정완료)(2015년)(보건복지부)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기관을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 ○ 미혼모 지원 확대 –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전국단위 지정(‘16.2), 임신 · 출산 휴학 인정 근거 마련(’16.3), 교원 이해증진 교육자료 개발(교육부)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추진 중(’10년~) :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실비), 고교생 학비(고등학교 학비 실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한부모 전용 홈페이지, 한부모 전용 상담전화 개통(’15.7월) (여성가족부)
30~31항	□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의 자살관련 연구를 통한 대책마련 및 서비스 제공	○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설립(‘12.6) 및 과학적 학생자살예방대책 수립 · 추진을 위한 근거 기반 접근으로 자살학생 심리부검 실시(’15년~) (교육부) ○ ‘13년 자살실태조사 실시. ‘14년부터 중앙심리부검센터 설치 · 운영(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전담인력** 확충 (보건복지부) * (’11) 164개소 → (’14) 212개소 → (’16) 225개소 ** (’13) 100개소 → (’14) 130개소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32~33항	□ 정책 수행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 원칙 적용 ○ 법률·행정·사법절차·정책·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 소년사법과정에서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 고려 (법무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 처우의 기본원칙 명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2.8.~'15.3.)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5.5.~'15.12.) 개정 :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의 근거 규정 마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13.7월~)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및 시행 등 ○ 아동이 관련된 사건에서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절차적 권리 강화 및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사건처리 절차 및 관련 규정 개선(법원행정처) –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부부에 대한 상담, 캠프,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 도모 – 입양특례법 개정 및 입양특례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정('12.8.5.) 및 민법,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 개정 : 요보호아동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의무화, 입양허가재판 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 의무화 등 ○ 아동복지법에 아동영향평가 도입 조항 신설('16.3월)(보건복지부) ○ 아동·청소년 정책결정과정에 아동·청소년 참여 제도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특별회의('04년~), 청소년참여위원회('98년~), 청소년운영위원회('99년~) 운영 및 지원,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을 통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내실화('16년~)
34~35항	□ 아동견해의 존중 : 참여권 확대 ○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 개정 ○ 학교 및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 ○ 아동참여권에 대한 성인 대상 교육정보 제공 ○ 아동 참여 영향 평가 등	○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 개정 – 아동복지시설 휴·폐업 시 아동의 의견을 고려한 전원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의2 개정('16.9.22)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이 휴업 또는 폐업 시 동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 등 아동의 권익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 청소년의 의견표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기본법」 개정(여성가족부) –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 신설('12.2.1 시행) ○ 학교 및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 – 학교에서 아동의 청문권 존중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11.3.18., '12.4.20., '13.2.15.) :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수렴,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발간 등 (교육부)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중 : 모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 여부 검토 중 (법무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1.29.개정, '14.1.31.시행) : 징계대상 행위 조사 시 충분한 진술 기회 부여 (법무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소년수용자 포함)에 대한 징벌 등 불이익 처분절차에서의 청문권 보장 (법무부) ○ 아동참여권에 대한 성인 대상 교육정보 제공 –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수사 및 아동에 대한 보호·선도가 필요한 사안 등에서 아동의 청문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속 추진, 소년보호기관 등 근무자에 대한 아동인권교육 실시(법무부)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교육기관의 부모, 교사, 종사자 등 대상 아동권리 교육과정 운영(보건복지부)

Ⅲ. 시민권과 자유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36~37항	□ 출생신고 : 출생등록제 도입 ○ 협약 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 되도록 조치하고,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명시되도록 보장할 것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16.5.29.개정, '16.11.30.시행)(법무부) – 부모가 출생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 가능 – 생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출생신고 가능
38~39항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한 학교급식 메뉴 선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9.23.) : 총론에 종교과목 개설 지침 제시 (종교과목 개설 시 종교 이외 과목을 포함하여 학생 선택권 부여) ○ 특정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학생에게는 대체식품 또는 다른 음식의 양을 추가하여 주는 등 개별관리 및 영양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영양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교육부)
40~41항	□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 법률 · 교육부 발행지침 ·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아동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및 표현의 자유 보장(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동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 학교규칙 제 · 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수렴) 등 이행 학생자치법정 운영,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지원,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발간 등 학생자치활동 지원

Ⅳ. 폭력 및 학대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42~43항	□ 체벌 금지 ◦가정 · 학교 · 기타기관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할 것 ◦아동학대 폐해 캠페인 등 대중교육 실시를 통해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 · 비폭력적 형태의 훈육 장려 및 체벌사례 신고제도 마련	○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11.3.18.)(교육부)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8항 : 학생 지도 시 단위학교 학칙으로 훈육 · 훈계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13.7.30.개정, '14.1.31.시행)(법무부) : 처우의 기본원칙 규정에 유치소년을 포함시킴(제5조 제1항) ○ 아동학대 폐해 캠페인 등 대중교육 실시를 통해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 –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시, 온오프라인 교육자료 개발 · 보급, 예비 부모(대학생) 대상 부모교육 추진(교육부) – 관계부처 · NGO 합동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연중 홍보 캠페인 실시 중(보건복지부) – 보라데이(가정폭력 예방의 날, 매달 8일) 캠페인 등을 통해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홍보('14. 8월~),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 예방 동영상 송출 (여성가족부)
44~45항	□ 학대 · 방임 등 아동에 대한 폭력 금지 ◦아동학대 신고자 법적의무 및 신고자 보호조치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학대피해자 대상 인적 · 기술적 · 재정적 자원 배정	○ 아동학대 신고자 법적의무 및 신고자 보호조치 확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16.5.29.개정, '16.11.30.시행)(법무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를 통하여 신고의무자의 법적 의무 강화, 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강화 – 신고의무자 직군확대 및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등「아동학대처벌법」 개정(11.30 시행)(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속 확충 중(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 : 50('14년)→55('15년)→60('16년말) 학대피해아동쉽터 : 36('14년)→46('15년)→58('16년말)
46항	□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유엔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 노력 : 포괄적 국가대책, 법 제 · 개정, 연구및 자료 생산 등	○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교육부) – 학교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폭력예방기본계획(1차: '05~'09, 2차: '10~'14, 3차: '15~'19)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권고사항 및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포함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 연구 · 교육 · 계도 등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이화여대학교폭력예방중점연구소('12.8.6.개소)를 통해 조사 · 연구 등의 기능 수행중 –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이상 실시토록 규정 ○ 아동학대 관련 규정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14.1.28.제정, '14.9.29.시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를 규정, 피해아동 보호절차 및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 (법무부) ○ 관계부처 합동「아동학대 방지대책」('16.3.29) 수립 후 지속 추진 중(보건복지부) ○ 가정폭력 방지 대책 등 수립(여성가족부) –「아동 ·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12)」 등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각종 대책 수립 및 추진(여성가족부) – 관계부처합동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13.6월)하고, 이를 점검하여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여성가족부) ○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처리 관련 대책 (경찰청)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12.2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12.6월~), 아동학대 예방, 수사, 사후관리 등 전담체계 구축,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 ·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Ⅴ.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47~48항	□ 가정환경 상실로 대안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 ◦대안돌봄기관의 서비스 질,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돌봄유형 등에 대한 정기적 평가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 보장 및 학대피해자 회복지원 서비스 제공 ◦대안돌봄시설 아동의 원가족 연계 지원 ◦200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 고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실시 의무화(6개월 1회 연간 8시간 이상) 및 실시여부 평가(이하 전체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시설 보호아동과 원가족의 관계 회복 지원('12년~계속) – 아동복지시설 평가(3년 주기) 시 시설보호아동과 원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평가('13년, '16년) ○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 제한, 후견인 선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12.8.5 시행) ○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16.9.23 시행) ○ '유엔의 아동 대안 돌봄에 관한 지침'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 하도록 아동분야 사업지침에 반영('11~)
49~50항	□ 협약 원칙에 합치하도록 입양제도 보완 ◦헤이그협약 기준으로 중앙입양원의 임무권한 규정 및 인적 · 기술적 · 재정적 자원 ◦해외입양인을 위한 언어지원을 통해 입양 후 서비스체계 마련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를 중요시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고려 ◦청소년 미혼모 자녀 입양 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확보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 고려	○ 중앙입양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자원 확보 (보건복지부) – 입양특례법 개정('12.8월 시행)으로 중앙입양원 설립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입양정보 전산화 등 사업예산 확보, 전산, 상담 인력 등 입양인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등 조직 확대 ○ 국외입양인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외국어인력 배치, 정기적인 포럼 개최 등 실시 ○ 입양과정 아동의견 청취 및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법원행정처) – 입양특례법 개정 및 입양특례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정('12.8.5.) : 요보호아동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입양허가재판 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민법,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 개정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입양허가재판 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입양특례법령 등을 통해 입양을 보내려는 친생모의 동의 확인 절차 강화 및 양육지원 정보 제공 의무화('12.8월~)(보건복지부) – 가정법원의 허가과정 중 입양동의 의사 확인 가능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 친생부모에게 직접양육에 대한 지원사항 등 안내의무 가짐 ○ 강요에 의한 입양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20조 4항 개정 완료('11.4월 개정, '15.7월 시행)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임신한 미혼모 보호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개정(여성가족부)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서명('13.5월) 이후 이행법안 및 입양제도 개선을 통한 비준 추진 중 : 국제입양법률안 마련('15.12월), 전문가 · 관계부처 · 입양기관 등 대상 구체적인 이행방식 논의('15~'16년) (보건복지부)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51~52항	□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하여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 장애아동 교육 수요를 충족하도록 특수교사 확대 및 교육연수 강화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효과적 이행과 예산 및 인력 지원 ◦ 장애아동 통합교육 시행	○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을 위하여 특수학교(급) 신·증설 추진(교육부) : 특수학교 ('13년) 162교 → ('16년) 170교, 특수학급 ('13년) 9,343개 → ('16년) 10,065개 – (발달재활서비스)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자 ('12년) 31,450명 → ('16년) 45,012명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보건복지부) ○ 특수교사 확대 및 교육연수 강화 (교육부) –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연차적 특수교사 증원 확대 : 최근 6년간('11년~'16년) 특수교사 2,828명 증원·배치 완료 – 특수교사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수교사 연수 실시 : 집합연수 159개 과정 17,806명 이수, 원격연수 301개 과정 88,374명 이수 ○ 장애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교육부) – 특수교육 총예산은 '11년 1,966,284,753천원에서 '15년 2,227,638,518천원으로 최근 5년간('11~'15) 261,353,765천원 증액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을 위해 최근 6년간('11~'16) 특수교육보조인력 2,324명 증가 ○ 장애아동 통합교육(교육부) –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장애 학생 적정 배치 : 전체 장애학생 중 평균 70.4%가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사 대상 연수 실시 : 133,988명 이수 – 교육과정적 통합 수업 참여 증진과 학업성취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 최근 6년간 82종
53~54항	□ 건강 및 보건서비스 ◦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소아과와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지방 중소병원 지원 확대	○ 지역·분야·계층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6~2020)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지원 중 (이하 전체 보건복지부)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대상 시설 · 장비 · 인건비 지원 중 –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의료 분야(어린이 · 노인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 관리하여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 ○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 야간, 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 ○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라도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시군구 지역(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55~56항	□ 정신건강 ◦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기반한 아동정신건강 관리 정책 및 자살예방 시스템 개발	○ 아동정신건강 종합대책 및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종합대책'(제3차 생명사랑플랜, 2016~2020) 및 '정신건강종합대책'('16.2.25) 수립 – 5개 국립병원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설치 · 운영,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130개소)에 아동 · 청소년 전담인력 배치(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심리상담, 사례관리 등) 등을 통해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학생 자발예방 및 치유대책 (교육부)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자살징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12년), 전문기관 연계 · 치유 지원 시스템(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 구축('13년),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설립 · 운영을 통해 위기개입 시스템 구축('14년), 과학적 학생자살예방대책 수립 · 추진을 위한 근거기반 접근(심리부검 등) 등
57~59항	□ 청소년보건 ◦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 위험요인 인식제고 교육 · 홍보 확대 ◦ 아동건강 유해식품 판매 규제 조치 마련 ◦ 학교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체계적 실시	○ 학교단위 예방교육 등(교육부) – 매년 건강행태 조사를 통해 중 · 고등학생 흡연 · 음주 실태파악('15년~), 초 · 중등학교 흡연 ·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12년~, 연 1회 이상), 담당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 추진('16.3월) ○ 보건복지부의 중독예방 사업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학교의 약 10% 에서 금연선도학교 운영, 2015년부터 전국 17개 시 · 도교육청 및 초 · 중 · 고등학교(100%)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 확대 추진 – 흡연 청소년 금연지원 프로그램(END) 개발 및 배포('11.12월),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Jr. END) 개발 · 배포('13.12월)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활동, 홍보 및 캠페인 등 실시 – 유아(5~7세), 교사 및 학부모 대상 흡연예방교육 자료 개발 · 보급 및 홍보 · 캠페인 실시 – 2015년부터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및 교사 대상 흡연예방교육 실시 – 전국 50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11~) – 주류 광고 규제 강화 및 중독예방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확산 홍보, 영상물 및 팸플릿 제작 · 배포(여성가족부) – 영상물 2편 제작('16.3월), 팸플릿 150,000부 제작하여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250개소) 배포('16.3~4월) ○ 아동건강 유해식품 판매 규제 조치 마련 – 학교 등 판매금지 및 TV방송 광고 제한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개정 완료('16.2.3)(식품의약품안전처) ○ 학교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발 · 보급(2015.2.)(교육부) – 학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계한 통합적 교육 컨텐츠를 통한 아동 · 청소년 대상의 폭력예방 교육(여성가족부)
60~61항	□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 보장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60조의9('12.3.21)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104조의7을 신설('13.2.15)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 중(교육부) ○ 청소년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 개정 완료('12.8월 시행)(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위기청소년 발견 ·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Ⅶ.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62~63항	□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 협약 제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를 고려한 교육 및 시험제도 평가 –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와 사회경제적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며 협약 제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를 고려하여 교육 및 시험제도를 평가할 것 ○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공교육 강화방안 마련	ㅇ 선행학습 관행 근절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정상화법('14.3.11) 및 시행령('14.9.11.) 제정(이하 전체 교육부) ㅇ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낮추고 학교 내 교육활동 및 평가에 집중하도록 하여 대학진학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도입·확대 및 학생부 위주 대입전형체계 도입 ㅇ 고입선발고사 폐지('98년~)를 추진하고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선발 방식을 전환하여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 – 고교 입시에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ㅇ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 근거 마련('16.11.30 시행) 및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지도·점검('11년~)
63항 c	□ 아동의 여가·문화·오락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문화·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를 보장할 것	ㅇ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추진('16.5.3) – 수준별·단계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확대, 자유수강권 지원,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교육부) ㅇ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수업 및 활동 전개를 위해 시범학교 지정·운영('16년 25교)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지도자료 2종, 프로그램 2종) 개발·보급(교육부)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연령 확대(문화체육관광부) – '13년 10세 이상 → '14년~ 6세 이상 ㅇ 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이정책 수립 추진('16.9월)(보건복지부) ㅇ 방과 후나 주말에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인프라 확충 지원(여성가족부)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개소수 : ('11년 70개 → '16년 102개)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16.12.31) : 청소년수련관 181개, 청소년문화의집 245개, 청소년수련원 193개, 청소년야영장 43개, 유스호스텔 126개, 청소년특화시설 9개 등 총 797개소
63항 c	□ 사이버 공간 및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따돌림 방지 및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조치	ㅇ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지원 : ('15년) 100개교 → ('16년) 150개교 (이하 전체 교육부) ㅇ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Wee센터 선정·운영('14.10월) ㅇ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및 역기능 예방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실시 ○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교원 대상의 다문화 이해 연수 확대 –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내용 반영 ('14.11.22. 고시) –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및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속 확대 : ('13년) 100교 → ('16년) 180교



Ⅷ. 특별보호조치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64~67항	□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출생등록 및 망명희망자 지원 ○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 배제 및 본국 송환 과정 시 인권침해 개선(최대구금일수 규정 및 시설에 대한 정기검토)	○ 출생등록 및 사회적 지원 (이하 전체 법무부)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난민신청자 등 자녀에 대한 외국인등록 가능 – 「난민법」 시행('12.2.10.제정, '13.7.1. 시행)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취업허가, 초중등교육 보장, 주거지원 등 제공 ○ 난민아동 인권보호 (법무부) – 난민신청자는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외국인 외에 부양가족이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외국인의 요청 시 예외적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난민 아동의 인권 침해 개선교육을 지속 추진 ○ 사이버 전문교육 – 난민법 교육프로그램:「난민법」상 난민처우 관련 내용 등 13시간 교육실시 – 난민처우 등 지침 교육: 난민처우 관계 지침 내용(생계비 지원, 취업허가, 교육의 보장) 등 13시간 교육실시 ○ 출입국관리직 직무교육 – '난민심사실무과정'(구 난민심사관양성과정(3일 또는 5일)에서 'UNHCR'과 난민보호 등의 교과를 연 1회(2011~2016) 운영, 총 109명 교육
68~69항	□ 이주상황의 아동 ○ 이주아동(불법체류 자녀 포함)의 교육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전략 개발	○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08년, '10년, '13.10월) : 거소 증명만으로 초·중학교 입학 가능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학습 및 학교적응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거점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08년~'11년), 공교육적 적응 지원 및 다문화 수용도 향상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중점학교 지속 확대('12년~) – 다문화 예비학교 : ('13년) 50교 → ('15년) 100교 다문화 중점학교 : ('13년) 100교 → ('15년) 150교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70~71항	□ 아동 노동권 보호 ◦18세 미만 아동의 법적 근로조건 보장 ◦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 규제 법 조항 제정 ◦아동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체제 마련 ◦아동의 근무환경 내 발생하는 폭력과 성추행 문제 예방 및 개선 제도 마련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사업장 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추진(고용노동부) – 청소년 야간 근로 인가 시 심야시간(00시~6시)인가 요건 강화('14.7월 시행)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16.6월 개정법안 국회 제출) ○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16.2.1)(고용노동부) – 가이드라인 확산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활동 추진 중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상담·지원 및 사업장 감독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등 종합적 정책 추진 중 (고용노동부)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 인사노무 담당자 등 관계자 교육 실시(고용노동부) ○ 청소년 문자상담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중재 및 현장도우미 지원('13.7월부터 시험 연계중)(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14.7.29)(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장 2절 19조~25조
72~73항	□ 성적착취 ◦아동 성폭력 예방 조치 ◦아동 대상 성매매 및 성범죄 처벌 법적 강화 및 아동학대의 효과적 기소방안 마련 ◦형사사법 제도 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아동 성폭력 예방 조치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초·중·고·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신고방법 홍보 (경찰청) –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에서는 굿네이버스 지부 40개소와 협업, 지역별 특색을 살린 아동성범죄 근절 캠페인 실시 (경찰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의 수강(이수)명령 집행 시 자체 개발한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아동 성폭력 재범 억제(법무부) –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아동 성폭력 재범 억제(법무부) ○ 아동 대상 성매매 및 성범죄 처벌 강화 –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 강화('15.12월), 아동학대범죄 엄정 대처 지시 등 (법무부)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료('12.12.18.개정, '13.6.19.시행) (여성가족부)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법정형 상향 ○ 형사사법 제도 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 아동에 대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12.12.18.개정, '13.6.19.시행)(법무부)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형사소송법 '15.7.31. 개정 및 시행)(법무부) –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원행정처) : 아동청소년강간·유사강간죄 법정형 상향,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적용범죄 확대 – 2014. 1.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원행정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20년간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점검(반기 1회), 재범 의지 억제(경찰청) ○ 성폭력 범죄자의 근본적인 범죄유발요인 제거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심리치료 강화(법무부)
74~75항	□ 인신매매 ◦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 범죄자 처벌 조치 및 여성·아동 인신매매 관련 의정서 비준 고려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 및 발효('15.12.5.)(법무부)
80~81항	□ 소년사법운영 ◦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지원을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제공할 것 ◦ 소년수용자 대상 인권친화적 사법 서비스 제공 ◦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 결정에 대해 주기적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소년사범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등 대안 장려	○ 2011년 부산가정법원, 2012년 대전·대구·광주가정법원, 2016년 인천가정법원이 각각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6개의 가정법원이 있음(법원행정처) ○ 피의자 혐의 아동 지원 (법무부) – 아동이 피의자인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가족 참관 등 인권보호 지속 노력 – 위탁·유치소년에 대한 국선보조인의 조력 및 전문가 진단 지원 : 국선보조인 조력 23,125회('11~'16.7) ○ 인권친화적 사법 서비스 (법무부) – 소년수용자 처우 : 소년수용자와 성인수용자의 구분수용, 소년수형자에 적합한 교정처우 및 교육의 시행, 소년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음식·직업훈련 제공 등 – 보호소년 처우 : 소규모 생활실 조성으로 인권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상급학교 진학 및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체험학습 실시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 소년수용자에 대한 청원, 진정 제도 운영(법무부) – 보호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배치 및 처우와 관련, 의견 개진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수시 교육 실시 : 최근 6년간('11~'16) 보호소년 청원 건수 총 27건 ○ 소년범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원칙을 시행하고, 다양한 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재범 방지 노력 지속(법무부)
82~83항	□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이 협약에 따른 보호(프라이버시, 존엄성 등)를 받도록 하며, 유엔 사법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아동),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대상 보호시설 등을 통한 성폭력 피해 아동 지원(여성가족부) – 해바라기센터 ('13년) 33개소 → ('15년) 36개소 –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13년) 3개소 → ('15년) 6개소 ○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 및 진술조력인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법무부)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 ('13년) 11명 → ('16년) 17명 진술조력인 총 70명 양성('13.6 ~'15.12) 및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등 상근 배치 ○ 범죄피해자 경제적·심리적 지원강화를 통해 실질적 범죄피해 회복 지속 추진(법무부) – 스마일센터 설치 확대(강력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 : 전국 8개소 ('16. 7) –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비스 신속 제공(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

Ⅸ.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76~77항	□ 국내법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제3조와 합치되도록 필요조치 마련 ○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성매매 및 음란물 관련 범죄에 한국인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역외 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조치 시행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해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	○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사범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환수조치 철저를 통한 범죄 유발 요인 차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사건 처리기준 준수 지시('15.11.)(법무부)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료('12.12.18) : 성매매 범죄 등 법정형 상향(여성가족부) ○ 인신매매 범죄에 있어서 세계주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형법」 개정(제296조의2 신설)('13.4.5. 개정) –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의 범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법무부)

X.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권고문단번호	권고사항 (2011. 10)	개선조치 (2011. 11 ~ 2016)
78~79항	□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 법적으로 금지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하여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할 것 □ 모든 법률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내용상 일치하도록 보장 ◦모든 법률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할 것 □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기타 군사 지침서들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 시행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기타 군사 지침서들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할 것	○ 현재 「국제 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소관부처:법무부) 제10조에 의거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는 「병역법」 등 소관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고 있어 후속조치 사항이 없음.(국방부) ○ 국방부는 「병역법」 등 소관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고 있어 후속조치 사항이 없음.(국방부) ○ 국방부는 지원입대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도록 병역법 및 공군규정 등을 개정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근거조항을 삭제함.(국방부) ○ 또한 국방부 소관 법률, 소책자 및 기타 군사 지침서들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일치되도록 하였다는 것을 '14년도에 답변한 바 있음.(국방부)

부록 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표[77]

Ⅰ.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최종 작업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이행여부
8–9 (유보 조항)	1	1	입양관련 유보조항 철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적극이행
	2	2	아동 상소권 보장 관련 유보조항 철회	국방부 인권담당관	*이행미흡*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0 – 11 (입법)	3	3	협약이행 법규 제정 및 사법판결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적극이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4	4	청소년 미혼모 지원법률 마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적극이행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2 – 13 (조정)	5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적극이행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6	6	아동권리 관련 부처간 연계강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적극이행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14 – 15 (국가 행동 계획)	7	7	아동 관련 국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적극이행
				법무부 인권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6 – 17 (독립 모니터 링)	8	8	독립적인 아동 인권모니터링을 위한 자원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적극이행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 예산기준과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9	9	국가위원회 아동권리 소위원회 설립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적극이행
18 –	10	10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재원 검토 및	교육부 예산담당관	*이행미흡*

77)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여부' 판단은 부처별 협약 이행실적 자료와 2016년도 인권실태연구 일환으로 추진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017년도 추가 이행자료, 그리고 협약점검 전문가협의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사항의 국내적 상황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 이행' 48개, '이행추진 중' 41개, '이행 미흡' 9개 권고사항으로 분류함. 2016년 협약 이행성과 검토 작업 시에는 권고사항을 103개로 구분하고 이행정도와 중요도를 양적 점수로 표시하도록 하여 작업하였으나, 2017년 최종 이행여부 판단 시에는 일반논평 고려 등 포괄적인 권고사항은 제외하고 최종 권고사항을 98개로 산정하여 구분하였음. 또한 2016년 이후 추가로 진행된 협약이행 성과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질적 판단을 하고자 함. 2011년 권고 당시 이행목표 설정과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시범적 시도라 할 수 있음. 특히 사회권적 성격의 권고사항은 국내적으로 자원 검토를 통해 '협약이행' 수준의 성과지표를 미리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음(관련 부처·부서명은 2016년 양식 기준임).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최종 작업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이행여부
19 (자원 할당)			확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11	11	지역간 아동격차 예방을 위한 아동권리 관점의 재원 평가	교육부 예산담당관	이행중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12	12	국가예산 수립시 아동영향 평가 실시	교육부 예산담당관	이행중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청소년정책과	
	13	13	재원배정의 효과 측정이 가능한 결과기반예산 설립	교육부 예산담당관	*이행미흡*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14	14	예산수립과정의 아동 참여	교육부 예산담당관	이행중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15	15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전략적 예산 수립 및 보장	교육부 예산담당관	이행중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16		'07년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일반 논평의 날'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 고려	교육부 예산담당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20 – 21 (자료 수집)	17	16	협약 관련 종합적 자료수집 체계 구축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이행중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2 – 23 (보급,	18	17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 확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이행중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최종 작업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이행여부
인식 제고, 교육 연수)	19	18	아동 관련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근로기준정책과, 청년취업지원과	이행중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20	19	협약 홍보 강화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적극이행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24 – 25 (국제 협력)	21	20	공적개발원조의 국제적 목표 달성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이행중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22		국제협력 협약시 아동권리의 우선적 고려	외교부 개발협력국	
	22-1		협약과 다른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ASEAN) 여성아동 위원회와 협력	법무부 인권정책과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인권사회과	
26 – 27 (아동 권리와 재계)	23	21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법체계 마련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이행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24	22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 수입 금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이행미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25	23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시 아동권리 존중 조치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이행중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26	24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 아동권리 존중 조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이행중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II.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최종 작업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이행여부
28 – 29 (비차별)	27	25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인권정책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이행중
	28	26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이행중
	29	27	미혼모 지원 확대(청소년 미혼모 포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이행중
30 – 31 (생명, 생존 및 발달)	30	28	아동의 자살관련 연구를 통한 대책마련 및 서비스 제공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행중
32 – 33 (아동 이익 최우선)	31	29	정책 수행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 원칙 적용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대검찰청 형사2과	이행중
34 – 35 (아동 견해 존중)	32	30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이행중
	33	31	학교 및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년과, 보안과	**적극이행**
	34	32	아동참여권에 대한 성인 대상 교육정보 제공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소년과, 인권조사과 법무연수원 기획과	이행중
	35	33	아동 참여 영향 평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이행중
	36		아동의 청문권에 대한 일반논평 12호 고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Ⅲ.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최종 작업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이행여부
36 – 37 (출생 신고)	37	34	출생등록제 도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외국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이행중
38 – 39 (사상 양심 종교 자유)	38	35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이행중
	39	36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한 학교급식 메뉴 선정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이행중
40 – 41 (평화 결사 집회 자유)	40	37	아동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학교생활문화과	이행중

Ⅳ. 폭력 및 학대 (협약 19, 24(3), 28(2), 34, 37(a), 39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최종 작업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이행여부
42 – 43 (체벌)	41	38	체벌 전면금지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소년과	적극이행
	42	39	아동학대 폐해 캠페인 실시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적극이행
	43	40	긍정적·비폭력적 형태의 훈육 장려 및 체벌사례 신고제도 마련	교육부 교원정책과, 학교생활문화과	이행중
44 – 46 (학대, 방임, 폭력)	44	41	아동학대 신고자 법적의무 및 신고자 보호조치 확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적극이행
	45	42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학대피해자 대상 인적 · 기술적 · 재정적 자원 배정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이행중
	46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고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47	43	유엔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 우선 ※「47~49번」 종합의견 제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적극이행
	48	44	유엔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노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적극이행
	49	45	아동폭력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외교부 인권사회과	적극이행

V.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협약 5, 9–11, 18(1–2), 20, 21, 25 및 27(4)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최종 작업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이행여부
47 – 48 (가정 환경 상실 아동)	50	46	대안돌봄기관의 서비스 질,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적극이행
	51	47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 보장 및 학대피해자 회복지원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이행미흡*
	52	48	대안돌봄시설 아동의 원가족 연계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적극이행
	53		유엔의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2009년 유엔총회 결의안)을 충분히 고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49 – 50 (입양)	54	49	헤이그협약 기준으로 중앙입양원의 임무권한 규정 및 인적 · 기술적 · 재정적 자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적극이행
	55	50	해외입양인을 위한 언어지원을 통해 입양 후 서비스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적극이행
	56	51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를 중요시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고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적극이행
	57	52	청소년 미혼모 자녀 입양 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적극이행
	58	53	모든 입양(해외입양 포함)이 명확한 임무권한과 사법적 감독 및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를 것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적극이행
	59	54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 고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외교부 조약과	적극이행

Ⅵ.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27(1-3), 33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최종 작업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이행여부
51 – 52 (장애 아동)	60	55	일반논평 9호('장애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여 모든 장애아동 대상 적절한 지원 제공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적극이행
	61	56	장애아동 교육 수요를 충족하도록 특수교사 확대 및 교육연수 강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적극이행
	62	57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효과적 이행과 예산 및 인력 지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적극이행
	63	58	장애아동 통합교육 시행 촉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적극이행
53 – 54 (건강 및 보건 서비스)	64	59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소아과와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지방 중소병원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적극이행
55 – 56 (정신 건강)	65	60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기반한 아동 정신건강 관리정책 및 자살예방 시스템 개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행중
57 – 59 (청소년 보건)	66	61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 위험요인 인식제고 교육·홍보 확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적극이행
	67	62	아동건강 유해식품 판매 규제 조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안전과	적극이행
	68	63	학교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적극이행
60 – 61 (사회 보장, 생활 수준)	69	64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 보장	교육부 학생복지지원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이행중

Ⅶ.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28-31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최종 작업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이행여부
62 – 63 (직업 훈련 및 생활 지도 포함 교육)	70	65	협약 제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를 고려한 교육 및 시험제도 평가	교육부 학교정책과, 대입제도과, 학원정책팀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이행미흡*
	71	66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 진학 시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공교육 강화방안 마련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대입제도과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이행미흡*
	72	67	아동의 여가 · 문화 · 오락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이행중
	73	68	교육평등 실현 성과에 대한 체계적 정보 수집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방과후학교지원과, 학교정책과, 학생복지정책과	이행중
	74	69	사이버 공간 및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따돌림 방지 및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조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다문화교육지원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이행중

Ⅷ.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2-36, 37(b-d), 38-40조)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최종 작업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이행여부
64 – 67 (망명 신청 및 난민 아동)	75	70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출생등록 및 망명희망자 지원	법무부 난민과	적극이행
	76	71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 배제 및 본국 송환 과정 시 인권 침해 개선	법무부 이민조사과	이행중
68 – 69 (이주 상황 아동)	77	72	이주아동(불법체류 자녀 포함)의 교육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전략 개발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팀	적극이행
	78	73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인권정책과	*이행미흡*
70 – 71 (아동 노동, 경제적 착취)	79	74	아동 노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 모색 및 해결안 제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이행중
	80	75	18세 미만 아동의 법적 근로조건 보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이행중
	81	76	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 규제 법 조항 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이행중
	82	77	아동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체제 마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이행중
	83	78	아동의 근무환경 내 발생하는 폭력과 성추행 문제 예방 및 개선 제도 마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적극이행
	84	79	18세 미만 아동연예인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폭력과 성추행 문제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적극이행
72 – 73 (성적 착취)	85	80	아동 성폭력 예방 조치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법무부 보호관찰과, 특정범죄자관리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적극이행
	86	81	아동 대상 성매매 및 성범죄 처벌 법적 강화 및 아동학대의 효과적 기소방안 마련	법무부 형사기획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보호환경과	적극이행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최종 작업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이행여부
	87	82	형사사법 제도 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여성청소년과 법무부 형사기획과, 형사법제과	적극이행
	88	83	성범죄자의 교화 노력 지속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적극이행
	89	84	남아 대상 재활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이행미흡*
	90	85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한 다국어 지원활동 서비스 마련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복지정책과	적극이행
74 – 75 (인신매매)	91	86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 범죄자 처벌 조치 및 여성·아동 인신매매 관련 의정서 비준 고려	법무부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적극이행
76 – 77 (OPSC)	92	87	국내법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제3조와 합치되도록 필요조치 마련	법무부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적극이행
	93	88	성매매 및 음란물 관련 범죄에 한국인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역외 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조치 시행	법무부 형사법제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적극이행
78 – 79 (OPAC)	94	89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 법적으로 금지	국방부 인력정책과	적극이행
	95	90	모든 법률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내용상 일치하도록 보장	국방부 인력정책과	적극이행
	96	91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기타 군사 지침서들이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 시행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적극이행
80 – 81 (소년사법 운영)	97	92	전국에 소년전문법원 설립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이행중
	98	93	형법위반 혐의 아동 대상 법률 및 기타지원 제공	법무부 소년과, 형사기획과	적극이행
	99	94	소년수용자 대상 인권친화적 사법 서비스 제공	법무부 분류심사과, 사회복귀과, 소년과	적극이행
	100	95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 결정에 대해 주기적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법무부 소년과, 분류심사과	적극이행

유엔 권고문 번호	일련 번호	최종 작업 번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2011년) 및 이행과제	소관부처(부서)	이행여부
	101	96	소년사범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보호관찰 등 대안 장려	법무부 형사기획과	적극이행
	102	97	소년사법 관련 국제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 요청	법무부 소년과	이행중
82 – 83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103	98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이 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하며, 유엔 사법지침을 충분히 고려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인권구조과	적극이행

Abstract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 The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in Korea in 2017

This is the first year study of the third phase stud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with the aim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by carrying out organized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o identify tasks to improve human rights by diagnosing the nation's and society's efforts for human rights promotion. The third phase study features further strengthened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for example, examining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improvements following recommendations from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under the Convention.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1991 and has the obligation to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and its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on a regular basi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producing basic insights on the status and progres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and the nation's policy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The year 2017 marked the submission due for the fifth and sixth consolidated report. The authors, the working group on the report, and government ministries have cooperated to check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analyze accomplishments. To systematically monitor the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he research team has developed 'the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ndicator system' and survey tools with which it has been conducting surveys to about 10,000 students from four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to third grades in high schools (National Statistics No. 402001).

The authors also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using major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statistical material from other fields as complementary data.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reports: the basic report show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to promote their human rights. 'The advanced analysis report' selected specific human rights-related issues and conducted an advanced analysis with an aim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nd youth'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heir accessibility to human rights-related information. 'The statistics' contains the statistic tables to be registered to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 site(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for the users of statistics.

Keywords: Children's rights, youths' rights, human rights indicators, status of human right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onitoring.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 김기헌 · 이윤주 · 유설희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헌 · 이윤주 · 유설희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V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억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V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정책제언 – / 양계민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III / 김경준 · 정은주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II / 윤철경 · 성윤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VIII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정윤미 · 한지형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VIII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 · 박상현 · 한지형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VIII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고강혁 · 정윤미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VIII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7-R17)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 · 중 · 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 · 홍영란 · 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 · Ainley, J · Losito, B · Agrustii, G (자체번호 17-R17-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 · 백혜정 · 이지연 (자체번호 17-R1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 · 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 · 유민상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 · 김영한 · 윤옥경

수 시 과 제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 · 이윤주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 · 중 · 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 · 김기헌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 · 김기헌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 · 진은설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헌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욱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헌 · 한지형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헌 · 하형석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 · 하형석 · 한지형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 · 이유진 · 정은진 · 강동영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 · 연보라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 · 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 콜로키움 (6/22)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17-S36 2017년「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9.1)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 세미나 (9.9, 9.16)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 · 중 · 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보고 17-R15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인 쇄 2017년 12월 22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계문사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69-1 94330
979-11-5654-146-2 (세트)

연구보고 17-R1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4330
9 791156 541691
ISBN 979-11-5654-169-1
ISBN 979-11-5654-146-2 (세트)